연구보고서 2009-33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

The 2009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Family Health and Welfare in Korea

김승권 · 김유경 · 조애저 · 김혜련 · 임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33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발 행 일 2009년 12월
저 자 김 승 권 외
발 행 인 김 용 하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전 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처 대명기획
가 격 14,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ISBN 978-89-8187-619-7 93330

머리말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 이슈 중의 하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이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합계출산율로 인하여 저출산에 대응하는 각종 사회정책을 강구하는데 정책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의 회복은 전혀 가시화되고 있지 않아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같은 출산율의 저하는 지난 세기 말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와 함께 본격적으로 나타났다고 하겠다. 즉, 한국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구직난, 소득격감 등은 한국사회에서 결혼연기, 출산연기 등으로 귀결되었고, 이는 합계출산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1999년 1.42명, 2000년 1.47명, 2001년 1.30명으로 낮아졌고, 2002년에는 더욱 낮아져 1.17명으로 저하되었다. 이 때부터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위기'라는 용어가 널리 회자(膾炙)되기 시작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정책적 관심을 두게 되었다. 2003년에는 출산율이 다소 상승하여 1.19명을 나타냄으로써 다소 안정되는 듯하였으나 2004년에는 다시 1.16명으로 낮아졌고, 더욱 심해져 2005년에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인 1.08명으로 급락하였다. 이후에는 급락에 따른 반발의 결과인지, 정책투입의 효과인지 불분명하지만 출산율이 다소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1.2명의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출산력관련 조사로서 21번째 실시되는 본 조사는 당 연구원 김승권 선임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연구진에 의해 완성되었다. 연구진의 구체적인 연구 및 조사수행과 보고서 집필을 위한 분담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구기획 및 총괄 (김승권)

표본추출 (손창균)

조사관리 및 자료처리 (이연희·장충남·신창우·김평강·고혜연 등)

보고서 집필:

제1장 서 론 (김승권)
제2장 선행연구 및 정책동향 (김승권)
제3장 혼인가치관 및 자녀가치관의 변화 (김승권·조애저)
제4장 임신·출산 행태와 출생아·현존자녀수 (김승권)
제5장 피임수용실태 (김유경)
제6장 인공임신중절 실태 (김승권)
제7장 남아선호 가치관과 임신·출산 (김승권)
제8장 초경·폐경 및 불임 실태 (김승권)
제9장 모자보건실태 (김혜련·임성은)
제10장 가족생활실태 (김승권·임성은)
제11장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의 변화 (조애저)
제12장 기혼여성의 취업과 가족생활 (조애저·임성은)
제13장 자녀양육 태도와 양육비 및 결혼비용 (김승권)
제14장 출산 및 가족정책 욕구 (김유경)
제15장 종합논의 및 정책제언 (김승권)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현지조사를 위해 행정적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보건복지부, 각 시·도 및 시·군·구 관계기관과 어려운 여건 하에서 조사관리에 만전을 기한 이연희 팀장, 장충남 1급 관리원, 면접조사에 참여한 지도원 및 조사원에게 사의를 표한다. 또한 표본추출을 맡은 손창균 박사와 자료처리를 담당한 신창우 팀장, 김평강 전문원, 고혜연 전문원께도 감사드린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검독하여 주신 당원의 장영식 연구위원과 이상영 연구위원, 강남대학교 이성용 교수, 충남대학교 전광희 교수에게 특히 감사드린다.

200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 용 하

목 차

Contents

Abstract ····· 1

요약 ····· 3

제1장 서 론 ·····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5

제2절 연구의 내용·대상 및 방법 ····· 30

제3절 표본설계 개요 ····· 38

제4절 현지조사 및 자료처리 ····· 43

제5절 응답자의 특성과 통계해석시 유의사항 ····· 46

제2장 선행연구 및 정책동향 ····· 53

제1절 선행연구 ····· 53

제2절 정책동향 ····· 69

제3장 혼인가치관 및 자녀가치관의 변화 ····· 79

제1절 혼인가치관의 변화 ····· 79

제2절 자녀가치관의 변화 ····· 116

제3절 혼인가치관 및 자녀가치관 변화의 시사점 ····· 125

제4장 임신·출산 행태와 출생아·현존자녀수 ····· 129

제1절 임신경험 횟수 ····· 129

제2절 임신종결 형태 ····· 132

제3절 출산율의 변동 ····· 137

제4절 출생아·현존자녀수 ····· 143

제5절 임신·출산 행태와 출생아·현존자녀수 분석결과의 시사점 ····· 147

제5장 피임수용실태 ····· 151
제1절 피임실천의 변동추이 ····· 152
제2절 피임실천양상 ····· 158
제3절 피임비실천실태 ····· 172
제4절 임신노출상태 및 자녀희망 여부별 피임실태 ····· 180
제5절 피임수용실태의 시사점 ····· 186

제6장 인공임신중절 실태 ····· 191
제1절 인공임신중절률의 변화 ····· 192
제2절 인공임신중절경험 실태 ····· 194
제3절 첫 번째와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특성 ····· 199
제4절 인공임신중절 실태의 시사점 ····· 210

제7장 남아선호 가치관과 임신·출산 ····· 215
제1절 남아선호 가치관의 변화 ····· 215
제2절 이상자녀수의 성선호와 남아출산 노력 ····· 223
제3절 태아 성감별과 자녀 성비 ····· 227
제4절 남아선호 가치관과 임신·출산의 시사점 ····· 231

제8장 초경·폐경 및 불임 실태 ····· 235
제1절 초경 및 폐경 ····· 235
제2절 불임 및 치료 ····· 238
제3절 초경·폐경 및 불임 실태의 시사점 ····· 248

Contents

제9장 모자보건실태 ····· 253

제1절 조사대상 출생아 출생분포 ····· 253

제2절 산전 및 산후관리 실태 ····· 255

제3절 분만실태 ····· 260

제4절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태 ····· 279

제5절 수유양상 ····· 282

제6절 영유아 예방접종 ····· 294

제7절 모자보건실태의 시사점 ····· 299

제10장 가족생활실태 ····· 305

제1절 가구경제 ····· 305

제2절 주거유형 및 주거소유 ····· 321

제3절 가족생활의 질(質) ····· 325

제4절 가족관계 ····· 342

제5절 가족생활실태의 시사점 ····· 374

제11장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의 변화 ····· 379

제1절 결혼양상 ····· 379

제2절 해혼실태 ····· 387

제3절 가족주기 ····· 400

제4절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 변화의 시사점 ····· 406

제12장 기혼여성의 취업과 가족생활 ····· 411

제1절 결혼 전·후 취업실태 ····· 411

제2절 현 취업실태 ····· 414

제3절 생애단계별 취업실태 ····· 441
제4절 기혼여성의 취업과 가족생활의 시사점 ····· 455

제13장 자녀양육태도와 양육비 및 결혼비용 ····· 459
제1절 자녀양육 태도 ····· 459
제2절 자녀양육비 ····· 470
제3절 결혼비용 ····· 475
제4절 자녀양육태도와 양육비 및 결혼비용의 시사점 ····· 479

제14장 출산 및 가족정책 욕구 ····· 483
제1절 출산정책 ····· 483
제2절 가족정책 ····· 499
제3절 출산 및 가족정책 욕구의 시사점 ····· 503

제15장 종합논의 및 정책제언 ····· 507
제1절 종합논의 ····· 507
제2절 정책제언 ····· 516

참고문헌 ····· 523

부록 ····· 531

표 목차

〈표 1- 1〉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의 표본조사구 추출 ····40
〈표 1- 2〉 조사대상가구 응답자의 특성 ····48
〈표 2- 1〉 한국에서의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 관련조사의 연혁 ····54
〈표 2- 2〉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주요 지원내용의 변화 ····75
〈표 3- 1〉 15~64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결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82
〈표 3- 2〉 15세 이상 기혼남성의 특성별 결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83
〈표 3- 3〉 15~64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이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86
〈표 3- 4〉 15세 이상 기혼남성의 특성별 이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87
〈표 3- 5〉 15~64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88
〈표 3- 6〉 15세 이상 기혼남성의 특성별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89
〈표 3- 7〉 15~64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재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90
〈표 3- 8〉 15세 이상 기혼남성의 특성별 재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91
〈표 3- 9〉 15~64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남성의 적정 결혼연령' 에 대한 태도 ····93
〈표 3-10〉 15세 이상 기혼남성의 특성별 '남성의 적정 결혼연령' 에 대한 태도 ····94
〈표 3-11〉 15~64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여성의 적정 결혼연령' 에 대한 태도 ····95
〈표 3-12〉 15세 이상 기혼남성의 특성별 '여성의 적정 결혼연령' 에 대한 태도 ····97
〈표 3-13〉 15~64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본인의 결혼연령 적절성' 에 대한 태도 ····98

〈표 3-14〉 15세 이상 기혼남성의 특성별 '본인의 결혼연령 적절성' 에 대한 태도 ·····99
〈표 3-15〉 15~64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결혼을 빨리한 이유 ····101
〈표 3-16〉 15세 이상 기혼남성의 특성별 결혼을 빨리한 이유 ····102
〈표 3-17〉 15~64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결혼을 늦게 한 이유 ···104
〈표 3-18〉 15세 이상 기혼남성의 특성별 결혼을 늦게 한 이유 ···105
〈표 3-19〉 기혼남녀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106
〈표 3-20〉 15~64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 에 대한 의견 ·····107
〈표 3-21〉 15세 이상 기혼남성의 특성별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 에 대한 의견 ·····109
〈표 3-22〉 15~64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110
〈표 3-23〉 15세 이상 기혼남성의 특성별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111
〈표 3-24〉 15~64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에 대한 의견 ·112
〈표 3-25〉 15세 이상 기혼남성의 특성별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에 대한 의견 ·113
〈표 3-26〉 15~64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115
〈표 3-27〉 15세 이상 기혼남성의 특성별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에 대한 가치관 ·····116
〈표 3-28〉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자녀필요성 ·····118
〈표 3-29〉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 ·····119

〈표 3-30〉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이상자녀수에 대한 의견 ····121
〈표 3-3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연령별 평균 이상자녀수 변동추이 ···122
〈표 3-32〉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이상자녀수 분포 ·····123
〈표 3-3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지역별 및 연령별
이상자녀수 분포 ·····124
〈표 4- 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총 임신횟수 변화 ·····130
〈표 4- 2〉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총 임신횟수 분포 ·····131
〈표 4- 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종결 형태별 평균횟수 ····132
〈표 4- 4〉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종결형태의 구성비 ·····134
〈표 4- 5〉 15~44세 유배우부인의 지역별 임신종결형태 ·····134
〈표 4- 6〉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임신소모 횟수 분포 ··135
〈표 4- 7〉 15~44세 유배우부인의 거주지역별 평균 임신소모 횟수 ··136
〈표 4- 8〉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 ·····139
〈표 4- 9〉 합계출산율의 변화 ·····141
〈표 4-10〉 연령별 유배우출산율의 변동추이 ·····142
〈표 4-11〉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평균 출생아수 ·····144
〈표 4-12〉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출생아수 분포 ·····145
〈표 4-13〉 15~44세 유배우부인의 현존자녀수 분포 ·····146
〈표 4-14〉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현존자녀수 분포 ·····147
〈표 5- 1〉 15~44세 유배우부인의 피임실태 변화 ·····154
〈표 5- 2〉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피임실천율 변화 ·····156
〈표 5- 3〉 15~44세 유배우부인의 피임방법별 피임실천율 변화 157
〈표 5- 4〉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피임실태 분포 ·····160
〈표 5- 5〉 15~44세 유배우부인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피임실태 분포 ··161
〈표 5- 6〉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 및 방법별 피임실천율 분포 ··163

〈표 5- 7〉 15~44세 유배우부인의 지역, 연령 및 취업여부별 피임실천율 분포 ····· 164
〈표 5- 8〉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피임실천율 및 불임실천율 ·· 166
〈표 5- 9〉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피임목적에 따른 피임실태 분포 ····· 168
〈표 5-10〉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단산 및 출산연기 이유 분포 ····· 169
〈표 5-11〉 15~44세 유배우 피임실천부인의 피임방법별 피임목적 분포 ····· 170
〈표 5-12〉 15~44세 유배우부인 중 비영구적 피임실천부인의 방법별 계속 사용의향 및 변경희망 피임방법 ····· 172
〈표 5-13〉 15~44세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 피임방법 분포 ····· 174
〈표 5-14〉 15~44세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 중 피임중단 및 무경험 비율과 이유 분포 ····· 176
〈표 5-15〉 15~44세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의 향후 실천의향 분포 ··· 178
〈표 5-16〉 15~44세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 중 피임희망부인의 선호 피임방법 분포 ····· 179
〈표 5-17〉 15~44세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 중 피임불원부인의 이유 분포 ····· 180
〈표 5-18〉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임신노출상태 분포 ··· 182
〈표 5-19〉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피임정책 대상자 분포 183
〈표 5-20〉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자녀추가 희망여부 및 피임실천 ····· 184
〈표 6- 1〉 20~44세 유배우부인의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 변동추이 ·· 193

〈표 6- 2〉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변동추이 ··195
〈표 6- 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횟수 분포 ··196
〈표 6- 4〉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인공임신중절 횟수 분포 ··197
〈표 6- 5〉 15~44세 유배우부인의 총 임신 및 임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 변화 ····198
〈표 6- 6〉 15~44세 유배우부인의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임신순위 ····200
〈표 6- 7〉 15~44세 유배우부인의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부인연령 ····202
〈표 6- 8〉 15~44세 유배우부인의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자녀수 ····203
〈표 6- 9〉 15~44세 유배우부인의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자녀 성비 ····203
〈표 6-10〉 15~44세 유배우부인의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 ····204
〈표 6-11〉 15~44세 유배우부인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임신순위 ····206
〈표 6-12〉 15~44세 유배우부인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부인연령 ····207
〈표 6-13〉 15~44세 유배우부인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자녀수 ····208
〈표 6-14〉 15~44세 유배우부인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자녀 성비 ····209
〈표 6-15〉 15~44세 유배우부인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 ···210
〈표 7- 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아들 필요성의 변화 ····216

〈표 7- 2〉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아들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218
〈표 7- 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아들의 필요이유 ……222
〈표 7- 4〉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이상자녀수의 성별 구분여부 ……224
〈표 7- 5〉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성별 구별하여 이상자녀수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의 이상 남아수 및 이상 여아수 ……225
〈표 7- 6〉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전·후 남아출산 노력 경험률 ‥227
〈표 7- 7〉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시 태아 성감별 여부 ‥229
〈표 7- 8〉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현존자녀의 성비 ……230
〈표 8- 1〉 15~64세 기혼부인의 초경연령 ……236
〈표 8- 2〉 40세 이상 기혼부인의 폐경연령 ……237
〈표 8- 3〉 40세 이상 폐경부인의 '초경~폐경' 소요기간 ……238
〈표 8- 4〉 15~49세 유배우부인의 임신노력 방법 ……239
〈표 8- 5〉 15~49세 유배우부인 연령별 임신노력 ……240
〈표 8- 6〉 15~49세 유배우부인 교육수준별 임신노력 ……241
〈표 8- 7〉 15~49세 유배우부인 자녀수별 임신노력 ……241
〈표 8- 8〉 불임진단 또는 치료를 위한 부부의 결혼 후 양방병원 방문시기 ……242
〈표 8- 9〉 15~49세 유배우부인의 불임진찰 여부 ……243
〈표 8-10〉 15~49세 유배우부인의 연령별 불임진찰 여부 ……243
〈표 8-11〉 15~49세 유배우부인의 교육수준별 불임진찰 여부 …244
〈표 8-12〉 15~49세 유배우부인 자녀수별 불임진찰 여부 ……244
〈표 8-13〉 15~49세 유배우부인 중 연령별 불임진찰률 ……245
〈표 8-14〉 부부의 불임진찰 결과 불임의 원인 ……246

〈표 8-15〉 15~49세 유배우부인 부부의 불임치료 여부 및 미치료 이유 ·····247
〈표 8-16〉 15~49세 유배우부인의 거주지역별 불임치료 기간, 결과 및 비용 ·····248
〈표 9- 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출생분포 ·····254
〈표 9- 2〉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의 성별 연령별 분포 254
〈표 9- 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산전수진율 ·····256
〈표 9- 4〉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임신기간 중 초진시기 ···257
〈표 9- 5〉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임신기간 중 산전수진횟수 ·····258
〈표 9- 6〉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출생아 출산후 산후수진율 ··260
〈표 9- 7〉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시설분만율 및 분만장소 ··261
〈표 9- 8〉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출생아 분만장소 ·····262
〈표 9- 9〉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제왕절개분만 비율 ····263
〈표 9-10〉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출생아 출산시 분만형태 ···264
〈표 9-1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출산시 제왕절개분만 권유자 ·····265
〈표 9-12〉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출산시 제왕절개분만 이유 ···266
〈표 9-1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제왕절개분만 권유자별 권유 이유 ···266
〈표 9-14〉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출산시 분만장소별 분만형태 ·····267
〈표 9-15〉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출생시 임신 주수 ····268
〈표 9-16〉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출생아의 조산 여부 ·269
〈표 9-17〉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출생시 체중 ·····271
〈표 9-18〉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출생아 체중 ·····272

〈표 9-19〉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저체중 이유 ·····273
〈표 9-20〉 15~44세 유배우부인의 미숙아에 대한 정부 지원 인지율 및 인지방법 ·····275
〈표 9-21〉 15~44세 유배우부인의 미숙아에 대한 정부 지원경험 여부 및 지원액 ·····276
〈표 9-22〉 15~44세 유배우부인의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정부지원 인지 및 수혜 여부 ·····278
〈표 9-2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정부 지원경험 여부 및 지원액 ·····279
〈표 9-24〉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수검률 ·····281
〈표 9-25〉 15~44세 유배우부인 출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수검 종류 ·····282
〈표 9-26〉 15~44세 유배우부인 특성별 출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추가비용 ·····282
〈표 9-27〉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월령별 모유수유율 추이 ···283
〈표 9-28〉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의 모유수유 중단 시기 ··285
〈표 9-29〉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의 인공수유(조제분유) 시작 시기 ·····286
〈표 9-30〉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의 보충식(이유식) 시작 시기 ·····287
〈표 9-3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의 생후 14개월간 모유수유 양상 ·····288
〈표 9-32〉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출생아의 생후 1개월시 수유양상 ·····289

〈표 9- 33〉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출생아의 생후 3개월시 수유양상 ·····290
〈표 9- 34〉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출생아의 생후 6개월시 수유양상 ·····291
〈표 9- 35〉 15~44세 유배우부인의 전혀 모유를 먹이지 않은 이유 ··292
〈표 9- 36〉 15~44세 유배우부인의 모유수유 중단이유 ·····293
〈표 9- 37〉 15~44세 유배우부인의 모유수유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294
〈표 9- 38〉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의 예방접종률 ·····297
〈표 9- 39〉 월령 12개월 이상 및 월령 24개월 이상아의 예방접종률 ·····297
〈표 9- 40〉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의 적기 예방접종 현황 ·298
〈표 9- 4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의 예방접종시 접종장소 299
〈표 10- 1〉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보유재산 규모분포 ·····307
〈표 10- 2〉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부채 규모 ·····309
〈표 10- 3〉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부채의 주된 원인 ·····311
〈표 10- 4〉 소득·소비·저축 규모별 가구분포 ·····314
〈표 10- 5〉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구소득 수준 분포 ·····316
〈표 10- 6〉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구 소비지출 수준 분포 ·····317
〈표 10- 7〉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구 저축 수준 분포 ·····318
〈표 10- 8〉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경제적 자립정도 ·····319
〈표 10- 9〉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족의 사회적 지위 인지정도 ··321
〈표 10-10〉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현 거주주택의 유형 ·····322
〈표 10-11〉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주택소유 유형 ·····323

〈표 10-12〉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족소유의 집(자가)이 있는 경우 소유명의 ····· 325
〈표 10-13〉 15~64세 기혼가구의 가정행복의 중요요건 ····· 326
〈표 10-14〉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정행복의 중요요건(1순위) ····· 327
〈표 10-15〉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족생활 비교(1년전 대비) ····· 328
〈표 10-16〉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족생활이 더 나빠진 주된 이유(1년전 대비) ····· 329
〈표 10-17〉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족 내에서 본인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만족도 ····· 331
〈표 10-18〉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사노동 분담 정도에 대한 만족도 ····· 332
〈표 10-19〉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에 대한 만족도 ····· 333
〈표 10-20〉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이웃 또는 친인척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 335
〈표 10-21〉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주 특성별 가족의 의식주 수준에 대한 만족도 ····· 336
〈표 10-22〉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족원의 갈등문제 해결에 대한 만족도 ····· 337
〈표 10-23〉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 338
〈표 10-24〉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족원의 건강수준에 대한 만족도 ····· 339

〈표 10-25〉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삶에서의 성취도에 대한 만족도 ····· 340
〈표 10-26〉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전반적인 가족생활 만족도 ····· 341
〈표 10-27〉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가사분담 형태 ····· 344
〈표 10-28〉 15~64세 기혼가구의 부부권력관계 ····· 346
〈표 10-29〉 15~64세 기혼가구의 일상생활비 지출에서의 의사결정 ····· 347
〈표 10-30〉 15~64세 기혼가구의 주택매매 및 이사에서의 의사결정 ····· 350
〈표 10-31〉 15~64세 기혼가구의 투자 및 재산증식에서의 의사결정 ····· 352
〈표 10-32〉 15~64세 기혼가구의 자녀양육 및 교육에서의 의사결정 ····· 354
〈표 10-33〉 15~64세 기혼가구의 배우자 만족도 ····· 356
〈표 10-34〉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배우자의 이해도에 대한 만족도 ····· 358
〈표 10-35〉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배우자와 함께 있는 시간의 길이(양)에 대한 만족도 ····· 359
〈표 10-36〉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부부의 성생활에 대한 만족도 ····· 361
〈표 10-37〉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배우자 부담 가사량에 대한 만족도 ····· 362

〈표 10-38〉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배우자의 소비성향에 대한 만족도 ·····364
〈표 10-39〉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부부간 대화에 대한 만족도 ·····365
〈표 10-40〉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부부간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 ·····367
〈표 10-41〉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전반적인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 ·····368
〈표 10-42〉 15~64세 기혼가구의 자녀 만족도 ·····370
〈표 10-43〉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자녀와의 대화정도에 대한 만족도 ·····370
〈표 10-44〉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자녀와의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 ·····371
〈표 10-45〉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부모의 의견·기대 충족정도에 대한 만족도 ·····372
〈표 10-46〉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전반적인 자녀관계에 대한 만족도 ·····373
〈표 11- 1〉 기혼여성의 지역별 결혼상태 ·····380
〈표 11- 2〉 기혼여성 및 남편의 결혼경력별 분포 ·····380
〈표 11- 3〉 기혼여성 및 남편의 결혼경력별 분포의 비교 ·····381
〈표 11- 4〉 15~49세 기혼여성과 남편의 결혼경력 ·····382
〈표 11- 5〉 남편 및 부인의 특성별 평균 초혼연령 ·····383
〈표 11- 6〉 15세 이상 기혼여성과 남편의 초혼연령별 분포 ·····384
〈표 11- 7〉 15세 이상 기혼여성 및 남편의 교육수준별 분포 ·····386
〈표 11- 8〉 기혼여성의 특성별 평균 혼인지속기간 ·····387

Contents

〈표 11- 9〉 사별·이혼·별거부인의 일반특성 ·····388
〈표 11-10〉 사별 및 이혼·별거부인의 해혼유형별 특성 ·····390
〈표 11-11〉 해혼유형별 해혼당시 부인 및 남편의 연령분포 ·····391
〈표 11-12〉 이혼·별거부인의 특성별 이혼·별거 이유 ·····393
〈표 11-13〉 이혼·별거부인의 결혼연도별 이혼·별거 이유 ·····394
〈표 11-14〉 해혼부인의 결혼연도별 평균 혼인지속기간 ·····395
〈표 11-15〉 이혼·별거부인의 특성별 이혼·별거 제의자 ·····396
〈표 11-16〉 이혼·별거부인의 이혼·별거 당시 연령별 18세 미만 자녀수 ·····397
〈표 11-17〉 이혼·별거당시 18세 미만 자녀수별 현재의 18세 미만 자녀수 ·····398
〈표 11-18〉 현재의 18세 미만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의 특성별 동거자 ·····398
〈표 11-19〉 현재의 18세 미만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 및 동거자별 주 양육비 제공자 ·····400
〈표 11-20〉 15~64세 이하 초혼부인의 초혼연도별 출생아 유무 ···401
〈표 11-22〉 15~64세 이하 가족주기 분석대상 부인의 초혼연도별 특성 ·····402
〈표 11-23〉 15~64세 이하 초혼 출산경험 부인의 초혼연도별 특성 ···403
〈표 11-24〉 가족주기 각 단계의 시작 및 종결당시 부인의 평균연령 ···405
〈표 12- 1〉 15세~49세 기혼여성의 결혼전·후 취업실태 ·····412
〈표 12- 2〉 15세~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결혼직전 및 현 취업률 413
〈표 12- 3〉 가구 및 남편 특성별 15세 이상 기혼여성의 취업률 ·415
〈표 12- 4〉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현 취업 직종 ·····416
〈표 12- 5〉 15~49세 기혼여성 남편의 특성별 현 취업 직종 ····418

〈표 12- 6〉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현 취업 종사상 지위 ·419
〈표 12- 7〉 15~49세 기혼여성 남편의 특성별 현 취업 종사상 지위 ··420
〈표 12- 8〉 15~49세 현 취업 기혼여성의 특성별 현 직장유형 ·422
〈표 12- 9〉 15~49세 기혼여성 남편의 특성별 현 직장유형 ·····423
〈표 12-10〉 현 취업부인 및 남편의 특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소득 ·····424
〈표 12-11〉 현 취업부인 및 남편의 직종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소득 ·····425
〈표 12-12〉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현 직장에서의 총 취업기간 ··426
〈표 12-13〉 15~49세 기혼여성 남편의 특성별 현 직장에서의 총 취업기간 ·····427
〈표 12-14〉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일과 가정생활 병행상 어려움 ·····428
〈표 12-15〉 15~49세 현 취업여성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별 일과 가정생활 병행상 어려움 ·····430
〈표 12-16〉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현재 일 만족도 ·····431
〈표 12-17〉 15~49세 기혼여성의 직종별 현재 일 만족도 ·····431
〈표 12-18〉 15~49세 기혼여성의 종사상 지위별 현재 일 만족도 ···432
〈표 12-19〉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현재 일 계속 여부 ····433
〈표 12-20〉 15~49세 기혼여성의 직종별 현재 일 계속 여부 ····434
〈표 12-21〉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현 취업이유 ·····435
〈표 12-22〉 15~49세 기혼여성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별 현 취업이유 ·····436
〈표 12-23〉 15-49세 기혼여성의 거주지역 및 연령별 비취업이유 ···437

〈표 12-24〉 15-49세 기혼여성의 교육수준, 현존자녀수별 비취업이유 ·····438
〈표 12-25〉 15세~49세 비취업 기혼여성의 향후 취업의향 ·····439
〈표 12-26〉 15~49세 비취업 기혼여성의 특성별 향후 취업희망 직종 ·····440
〈표 12-27〉 생애단계별 부인의 취업여부 ·····442
〈표 12-28〉 15~49세 기혼여성의 결혼직전·직후 취업 직종 ·····443
〈표 12-29〉 15~49세 기혼여성의 결혼직전·직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444
〈표 12-30〉 15~49세 기혼여성의 첫째아 출산전·후 취업 직종 ···445
〈표 12-31〉 15~49세 기혼여성의 첫째아 출산전·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445
〈표 12-32〉 15~49세 기혼여성의 막내아 출산전·후 취업 직종 ···446
〈표 12-33〉 15~49세 기혼여성의 막내아 출산전·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447
〈표 12-34〉 15~49세 기혼여성의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전·후 취업 직종 ·····448
〈표 12-35〉 15~49세 기혼여성의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전·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448
〈표 12-36〉 생애단계별 취업부인의 동일 직장 여부 ·····450
〈표 12-37〉 결혼 전·후 취업을 지속한 부인의 취업직장의 변화 ··451
〈표 12-38〉 첫째아 출산전·후 취업을 지속한 부인의 취업직장의 변화 ···452
〈표 12-39〉 막내아 출산 전·후 취업을 지속한 부인의 취업직장의 변화 ··453
〈표 12-40〉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전·후 취업을 지속한 부인의 취업직장의 변화 ·····454

〈표 12-41〉 생애단계별 취업 중단 이유 ·····455
〈표 13- 1〉 15~59세 기혼가구의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460
〈표 13- 2〉 15~59세 기혼가구의 남성특성별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461
〈표 13- 3〉 15~59세 기혼가구의 여성특성별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462
〈표 13- 4〉 15~59세 기혼가구의 남성특성별 '아버지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463
〈표 13- 5〉 15~59세 기혼가구의 여성특성별 '아버지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464
〈표 13- 6〉 15~59세 기혼가구의 남성특성별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잘 키울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465
〈표 13- 7〉 15~59세 기혼가구의 여성특성별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잘 키울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466
〈표 13- 8〉 15~59세 기혼가구의 자녀양육 책임한계 ·····469
〈표 13- 9〉 지출항목별 세부 내용 ·····471
〈표 13-10〉 자녀 1인당 평균 자녀양육비의 구조: 가족공동비용 중 개인자녀 몫 ·····472
〈표 13-11〉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의 구조: 자녀 개인비용 ·····473
〈표 13-12〉 자녀연령별 1인당 평균 양육비 ·····474
〈표 13-13〉 자녀 1인당 각 단계별 및 전체 양육비용 추정 ·····475
〈표 13-14〉 15~64세 가구의 가장 최근 결혼당사자 특성별 결혼비용 ··476
〈표 13-15〉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정의 경제능력 대비 결혼비용 정도 ·····478
〈표 13-16〉 15~64세 기혼가구의 결혼관련 비용중 부담스러운 항목 ···479

〈표 14- 1〉 15~64세 기혼가구의 혼인장려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정책 분포(1순위) ·····485
〈표 14- 2〉 15~64세 기혼가구의 혼인장려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정책 분포(2순위) ·····487
〈표 14- 3〉 15~64세 기혼가구의 자녀 출산·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1순위) ·····490
〈표 14- 4〉 15~64세 기혼가구의 자녀 출산·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2순위) ·····493
〈표 14- 5〉 15~64세 기혼가구의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여건 분포(1순위) ·····496
〈표 14- 6〉 15~64세 기혼가구의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여건 분포(2순위) ·····498
〈표 14- 7〉 15~64세 기혼가구의 국제결혼에 대한 견해 분포 및 평균 ··500
〈표 14- 8〉 15~64세 기혼가구의 다문화가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분포 ·····502

그림 목차

[그림 2-1] 한국 가족정책의 비전과 목표 ·····72
[그림 5-1] 15~44세 유배우부인 중 임신노출상태에 있는 부인의 추가자녀 희망여부별 피임실천상태 ·····185
[그림 9-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월령별 모유수유율 추이 ·····284

Abstract

The demographic change of a country is closely correlated with its socioeconomic change: demographic changes, of which changes in fertility are a factor, affect the socioeconomic realm in some cases, and the other way around in others. The need arises, therefore, to come up with better policy options and to do this by continuously monitoring and analyz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that are found to affect the fertility and family structure of the country.

This study surveyed randomly selected subjects—married households with members of ages between 15 and 64 and married women of ages between 15 and 49—living in a number of sample areas.

Some of the questions the survey asked were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useholds and members and their economic status. The survey also asked questions concerning marriage, family life cycle, pregnancy, childbirth, contraception, mother and child health, familial relationships, the employment of married women, child rearing, and policies on fertility and family.

The findings of the survey include the following. First, despite the government's 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 the total fertility rate of the country has declined, not increased. Second, pregnancy wastage still remains, indicating limited use of efficient contraceptive methods. Third, induced abortions have been on the decline, but not at a sufficient rate, calling for strengthened policy-level prevention and control. Fourth, the practice of breastfeeding is found to be less common than in advanced countries. Fifth, in addition to the

deep-seated norm of having few children, having children at allis increasingly seen as of no use, and marriage itself is increasingly viewed as a matter of choice. All these social tendencies have been detrimental to the formation of family, contributing to fertility decline. Last, the excessive cost parents have to bear for rearing their children and tutoring them outside the classroom is a factor that adds to the fertility decline Korea is facing today.

요약

1. 서론

□ 연구의 필요성

○ 저출산, 고령화 위기와 관련하여 출산과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국사회의 급격한 대내외적 변화의 양상과 원인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여 학문적, 정책적 대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목적

○ 부인의 임신행태, 출산행태, 피임행태 등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최근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장단기 인구정책의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함.

○ 부부의 취업, 가족주기, 가족생활, 자녀양육과 임신 및 출산 행태 변화와의 관계 분석을 통해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등 거시적 측면에서의 가족복지 증진방안을 모색함.

○ 남아선호, 임신소모, 특히 인공임신중절 등 사회병리현상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함.

○ 산전산후관리, 저체중출생아, 모유수유, 영유아 예방접종 등 모자보건의 실태 파악 및 수준 분석으로 인구자질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함.

○ 궁극적으로 출산율 안정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을 지연시키고, 가족안정화를 도모함으로써 가족생활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함.

□ 연구내용 및 대상

○ 가구조사

– 가구원의 특성, 출생에 관한 사항, 가구에 관한 사항

○ 개인조사

– 결혼 및 가족주기에 관한 사항, 임신·출산·피임에 관한 사항,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기혼부인의 취업에 관한 사항,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 출산 및 가족정책에 관한 사항

□ 조사방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진이 설계한 조사표를 기초로 사전 훈련된 전문조사원이 조사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직접면접조사」를 실시함.

○ 조사는 가구조사와 개인조사로 구분되었으며, 연구진에 의하여 표본추출된 조사지역 내의 가구에 살고 있는 15~64세 기혼가구조사와 15~49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함.

□ 현지조사 및 자료처리

○ 조사준비절차

– 당 연구원의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 이력서 및 면접을 통해 본 조사를 위해 60명의 조사인력을 확보함.

– 조사원 교육훈련은 조사원 교육훈련을 위해 개발된 조사표, 조사지침서, 양·음력 환산표, 가구명부, 조사지역 요도 등이 활용되었으며, 이들 자료는 조사표와 함께 현지조사를 위해서도 사용됨.

– 현지조사를 담당하는 60명의 조사인력은 15개 팀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팀은 지도원 1명과 조사원 3명으로 구성됨.

○ 현지조사의 운영 및 지도·감독

– 현지조사는 2009. 6~9월 기간 중 실시되었으며, 연구진에 의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지도원과 조사원의 원만한 관계, 조사팀과 조사지역 행정기관 및 주민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요청을 추진함.

○ 조사자료 처리

– 조사완료된 자료는 일차적으로 현지에서 지도원에 의해 오류수정을 실시하고, 조사완료 후 일부 지도원과 조사원에 의하여 약 1개월간 「부호화 지침서」에 의해 오류수정 작업이 수행

– 오류수정 작업이 완료된 조사자료는 입력요원에 의하여 전산화 작업 실시

– 전산화된 자료의 정확한 수정을 위해 전 연구진과 4명의 전문 자료정리요원이 투입

– 자료분석을 위한 파일이 재구성되었고, 연구진은 SPSS와 SAS 팩케이지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분석 실시

2. 혼인가치관 및 자녀가치관의 변화

□ 15~64세 기혼여성들의 결혼의 필요성에 관한 태도는 '반드시 해야 한다' 28.5%, '하는 편이 좋다' 32.1%로 60.6%가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임.

○ 2000년 55.6%, 2003년 54.4%, 2006년 57.7%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이혼에 대한 태도는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가 3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31.8%,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하거나 하는 것이 좋다' 20.5%,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8.4% 등의 순이었음.

○ 이혼을 수용하는 부인의 비율(반드시 하는 것이 좋음+하는 것이 좋음+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음)은 2000년 45.7%, 2003년 48.9%로 증가하였다가 2006년 48.6%로 다소 감소하는 듯했으나 2009년 52.3%로 다시 증가함.

□ 재혼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전체 부인의 20.9%는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는 적극적이거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짐.

○ 그 외 49.5%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27.2%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

□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중,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에 대해 찬성하는 경우가 75.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84.2%가,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에는 67.8%가, 그리고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67.9%가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부부가 결혼하면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15~44세 유배우 부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09년 조사에서 55.9%로 지난 10여 년간의 감소를 반전하는 결과를 보여줌.

○ 2000년 58.1%, 2003년 54.5%, 2006년 53.8%로 수준의 차이는 있었지만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음.

□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이상자녀수는 2009년 조사에서 2.3명으로 2006년과 동일한 수준이었음.

○ 1990년 중반부터는 약간 상승하는 징후를 보였으나 2000년은 약간 저하하여 2003년까지 지속되었으며, 2006년 조사에서는 2.3명으로 미미하나마 증가하였음.

3. 임신·출산행태와 출생아·현존자녀수

□ 부인들의 임신횟수에 관한 분포는 2회의 임신경험을 한 부인이 2000년 29.5%, 2003년 30.3%, 2006년 33.5%. 2009년 35.4%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임.

○ 조사대상 부인의 평균임신횟수는 2000년과 2003년 조사에서는 2.7회이었으며, 2006년 2.5회, 2009년 2.3회로 빠른 속도의 감소를 보였음.

□ 15~44세 유배우부인이 경험한 임신종결형태는 2009년 조사에서 정상출생 1.68회, 인공임신중절 0.34회, 자연유산 0.25회 등이었음.

○ 정상출생은 2000년 1.72회, 2003년 1.78회, 2006년 1.69회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음.

○ 인공임신중절은 2000년 0.65회, 2003년 0.63회, 2006년 0.47회로 감소하는 추세임.

□ 15~44세 유배우부인의 평균 출생아수는 2009년 조사에서 1.79명으로 2006년과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현존자녀수는 2006년에 비해 1명 이하의 자녀를 가진 비율은 증가하였고,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비율은 감소함.

4. 피임수용실태

□ 15~44세 유배우부인의 피임실천율은 80.0%로 2000년의 79.3%, 2006년 79.6%에서 다소 높은 피임실천율을 보였음.

□ 피임비실천율은 2009년 20.0%로 2000년대에 지속적으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후반에 이르러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음.

○ 2000년에는 20.7%에서 2003년에는 15.5%로 감소하다가 2006년에는 다시 20.4%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다소 감소하여 20.0%

에 이르고 있음.

□ 피임방법별 피임실천율은 연도별로 뚜렷한 변화를 보임.

○ 난관수술은 2000년 19.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에는 7.3%에 이르렀음.

○ 먹는 피임피임약의 실천율은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6년에 일시적으로 감소를 보였고, 2009년에는 다시 상승하여 2.7%로 나타남.

○ 정관수술은 2009년 21.0%까지 증가하였으며, 콘돔실천은 2003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다가 2009년에 다시 25.0%로 증가하였음.

□ 15~44세의 유배우부인의 68.2%가 단산을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였고, 출산연기 목적의 피임실천부인은 11.7%, 그리고 기타 등으로 피임을 하는 경우는 0.1%에 불과하였음.

□ 현 피임방법을 계속 사용할 의향을 가진 부인은 77.6%였으며, 다른 피임방법으로 변경할 의향을 갖고 있는 부인은 6.7%,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부인은 15.7%로 적지 않았음.

○ 다른 방법으로 바꾸겠다는 의향을 가진 부인의 바꾸고자 하는 피임방법은 정관수술이 7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궁내장치 9.9%, 난관수술 6.8%, 미결정 5.6%, 콘돔 2.4%의 순으로 나타났음.

□ 피임비실천 부인 중 과거에 피임경험이 있는 부인이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피임방법은 콘돔이 48.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월경주기법 17.0%, 기타 피임방법 11.9%, 먹는 피임약 10.1%, 자궁내장치 9.3%의 순이었음.

□ 피임을 실천하지 않은 부인의 비율은 20.0%로 이 중 과거에 피임을 실천한 경험이 있으나 중단한 부인은 10.0%, 그리고 피임경험이 전혀 없는 부인은 10.0%였음.

○ 피임경험이 전혀 없는 부인의 피임 무경험이유로는 자녀를 원하기 때문이 83.3%로 가장 많았고, 자연불임이 9.3%, 피임지식 부족이 6.4%였음.

□ 피임비실천 부인 중 59.3%가 실천할 의향을 가지고 있으며, 19.9%는 실천할 의향이 없었고, 아직 의향을 결정하지 못한 부인은 20.8%였음.

○ 2006년의 실천하지 않겠다는 부인의 비율은 22.6%로 2009년에 감소한 반면, 실천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57.8%로 2009년에 증가하였음.

□ 15~44세 유배우부인 중, 임신불가능 상태에 있는 부인은 25.1%, 임신가능상태에 있는 부인은 74.8%였음.

○ 임신이 불가능한 부인은 불임수술을 수용한 부인이 22.7%, 자연불임인 부인 2.3%, 임신이 불가능한 부인이 0.1%였음.

○ 임신가능부인은 일시피임실천 중에 있는 부인이 57.3%, 피임비실천 중인 부인 12.5%, 현재 임신 중인 부인이 5.0%였음.

5. 인공임신중절 실태

□ 인공임신중절은 2003년에서는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06년과 2009년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1980～1990년대 초반까지는 50% 이상의 높은 수준에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2000년에는 30%대로 낮아졌으며, 2009년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음.

□ 인공임신중절을 2회 이상 반복경험한 부인은 2000년 17.1%에서 2003년 15.8%, 2006년 10.1%, 2009년 6.6%로 지속적인 저하를 보였음.

○ 인공임신중절의 평균 경험횟수도 2000년 0.7회에서 2003년 0.6회, 2006년 0.5회, 2009년 0.3회로 지속적으로 낮아져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음.

□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 부인의 첫 번째 임신인 경우가 23.3%, 두 번째 임신은 36.7%, 셋째 이상 임신은 40.0%로 2006년 조사결과보다 임신순위가 앞당겨 졌음.

□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는 자녀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 3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터울조절 14.6%, 임부의 건강과 자궁외 임신 14.1%, 태아이상에 의한 임부위험 12.2%, 경제적 곤란 10.7%, 혼전임신 9.5% 등의 순이었음.

□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이 부인의 첫 임신인 경우가 12.0%, 두 번째 임신은 22.8%, 세 번째 이상의 임신은 65.1%를 차지하여 비교적 높은 임신순위에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음.

○ 2006년 결과와 비교하면, 첫째 임신순위는 감소하였고, 셋째 이상 임신순위는 증가한 것임.

□ 15~44세 유배우부인이 수용한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는 자녀를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3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임부의 건강과 자궁외 임신 14.5%, 태아이상에 의한 임부위험 12.7%, 터울조절 11.2%, 경제적 곤란 11.9% 등의 순이었음.

6. 남아선호 가치관과 임신·출산

□ 유배우부인 중 '아들이 꼭 있어야 함'의 의견을 제시한 부인은 2000년 16.2%, 2006년 10.2%, 그리고 2009년에는 8.9%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음.

□ 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정신적 만족감을 증대하는 요인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2006년 조사결과보다는 감소됨.

□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이상자녀수에 대한 성 구성을 분석한 결과, 이상자녀수를 성 구별 없이 원한다는 부인은 71.9%로 나타나 2006년의 74.4%보다는 감소하였음.

□ 2009년 조사에 따르면, 남아출산을 위한 노력을 한 경험률은 3.6%로 2006년의 6.1%보다 현저히 감소하였음.

○ 노력한 유형으로는 자연요법이 2.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초음파 검사(1.3%), 양수검사(0.4%), 융모막 검사(0.1%) 등이었음.

□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 당시 태아 성감별을 실시한 부인은 1.8%로 2006년의 2.5%보다 0.7%pt 감소하였음.

○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 태아 성감별을 실시한 부인은 2.0%로 2006년의 2.6%보다 0.6%pt 감소하였음.

□ 15~44세 유배우부인의 평균 현존자녀수는 1.67명이었으며, 남아 0.87명, 여아 0.81명으로 현존자녀 성비는 107로 나타났음.

○ 이는 2006년 조사의 현존자녀 성비 110보다 완화된 것임.

7. 초경·폐경 및 불임실태

□ 15~64세 기혼부인의 초경연령을 파악한 결과, 14세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16~19세, 13세, 15세 등이었음.

○ 한국 여성의 평균 초경연령은 14.3세로 나타났음.

□ 전체 40~64세 기혼여성 중 생리를 지속중인 경우는 49.5%이었고, 폐경된 경우는 50.5%를 차지하였음.

□ 15~49세 유배우부인 중 임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방법은 2006년과 비교하여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음.

○ 무엇보다도 노력이 매우 약하였고, 방법으로는 '불임전문 병원의 치료'가 12.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한의원/한방병원의 치료' 5.7%, '일반 병의원의 치료' 4.3% 등의 순이었음.

□ 피임비실천 및 피임불필요 15~49세 유배우부인의 불임검사를 받은 비율은 15.6%로 2006년의 54.2%보다 현저히 낮았음.

○ 결과적으로 전체 유배우부인 중 불임진찰률은 2.35%로 2006년의 4.26%보다 절반수준으로 낮았음.

□ 불임진단을 받은 15~49세 유배우부인 중 불임치료를 받은 비율은

77.2%로 나타났음.

○ 불임진단 및 불임치료를 받은 15~49세 유배우부인 중 과거 치료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치료받지 않는 부인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불임치료기간은 평균 1.78년이었고, 치료결과는 55.3%가 결과가 좋지 않아 포기하였음.

○ 불임치료에 소요된 비용은 평균 317만원이었으며, 전액 본인부담이 83.5%, '본인부담+정부지원'이 15.5%로 나타남.

8. 모자보건실태

□ 2007년 1월 이후 출생한 최종아는 전체 975명이며, 이 중 2007년 42.4%, 2008년 34.6%, 2009년 23.0%를 차지함.

□ 산전 및 산후관리 실태

○ 산전수진율의 전국 평균은 100.0%로 조사대상 부인의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부인이 임신 중 한번이라도 산전수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07~2009년 동안 출생한 자녀를 가진 부인이 산전관리를 위해 초진을 받은 평균시기는 임신 후 5.53주였으며, '임신 5~8주'에 초진을 받은 부인이 전체 조사대상의 52.5%로 가장 많았음.

○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산후검진을 받은 비율은 2000년 85.0%, 2003년 90.9%, 그리고 2006년도에는 91.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09년에도 91.9%에 이르고 있음.

□ 분만실태

○ 시설분만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99.9%, 2003년 99.3%, 2006년과 2009년 모두 99.9%에 달해 안전분만율이 매우 높음.

○ 시설분만 장소로는 '병원(58.2%)'이 가장 많았고, '의원(23.1%)', '종합병원(18.4%)' 등의 순이었음.

○ 분만형태는 '제왕절개 분만율'은 36.9%로 나타났으며, 제왕절개 분만의 주요 이유는 '첫 출산이 제왕절개'이기 때문이 32.9%로 가장 많았음.

○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의 출생시 임신 주수는 정상분만인 '37주 이상'이 93.3%였고, '33~36주 이하'가 5.2%, '32주 이하'가 1.4%로 전체 출생아 중 6.6%는 조산아로 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9년 조사대상아의 출생시 체중은 저체중아가 전체의 3.8%였고, 정상체중아는 91.7%, 과체중아는 4.5%로 나타났음.

○ 2007년 1월~2009년 9월 중 출산경험이 있는 15~44세 유배우 부인 중 미숙아 정부지원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36.9%로 2006년 25.8%에 비해 11.1%pt 향상함.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조사대상 부인의 23.1%였으며, 인지 방법은 '의료기관(28.3%)', '대중매체(27.4%)', '인터넷(22.7%)', '보건소(15.4%)' 순이었음.

□ 모유수유율은 2000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모유수유율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영유아의 예방접종률은 BCG 99.8%, DPaT 및 Polio 1, 2, 3차 각각 99.7%, 99.3%, 98.2%, MMR과 홍역 95.3%, B형간염 1차 98.7%에 이르는 매우 높은 접종수준을 보임.

9. 가족생활실태

□ 재산보유현황을 살펴보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가구는 전체의 3.5%에 불과함.

○ '1억원 미만'의 재산을 가진 가구는 44.4%, '1~2억 미만'은 19.9%,

‘2~3억원 미만’ 11.1%, ‘3~5억원 미만’ 10.8%, 그리고 ‘5억원 이상’은 10.3%로 나타나 전체 가구의 평균 재산 보유액은 2억 1,207만원이었음.

□ 부채가 전혀 없는 가구는 전체의 57.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 ‘1억원 미만’의 부채를 가진 가구는 35.3%, ‘1억원 이상’은 6.9%이었으며,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액은 2,389만원임.

○ 부채의 원인은 주로 주거생활과 경제터전의 마련 때문으로 ‘주거비 및 주택마련’ 49.1%, ‘사업자금’ 15.9%, ‘생계비’ 14.9%의 순으로 많게 나타남.

□ 조사대상가구의 월평균 소득 분포를 보면, 전체가구의 19.7%가 월 ‘99만원 이하’였으며,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275만원이었음.

□ 주관적 사회·경제수준

○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적 자립정도를 조사한 결과, ‘자립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은 전체의 54.1%였음.

○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가족의 사회적 지위 정도를 살펴본 결과, ‘중산층’이라는 인식은 전체의 54.2%였음.

□ 주거유형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은 42.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단독주택’으로 41.1%였음.

□ 현 거주주택의 소유형태를 보면 전체의 57.1%가 ‘자가’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전세’ 20%, ‘전·월세’ 12.6%, ‘월세’ 2.7% 등의 순이었음.

□ 가족생활의 질(質)

○ 가정행복의 중요요건 1순위로는 ‘가족의 건강’이 60.3%로 월등하게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정의 안정’ 22.2%, ‘권력이나 재산’ 6.0%, ‘자식이 사회에 나가 제 구실하기’ 5.4%의 순으로 나타났음.

○ 기혼가구의 1년전 대비 가족생활을 비교한 결과, 가족생활이 ‘더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전체의 9.9%에 불과함.

○ 전반적인 가족생활 만족도는 ‘매우 만족’을 포함하여 ‘만족한다’는

응답은 40.2%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가족관계

○ 부부의 가사분담 형태는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고,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는 경우'가 40.2%로 가장 많았음.

○ 배우자 만족도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53점으로, 자녀와의 대화 정도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69점이었음.

10.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의 변화

□ 혼인상태는 유배우 89.8%, 사별 4.7%, 이혼·별거 5.5%로 대부분의 부인이 유배우 상태였음.

○ 부부의 결혼경력별 결합형태를 살펴보면, 부부가 모두 초혼인 경우가 97.3%였으며,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 1.3%, 부인 초혼·남편 재혼과 부인 재혼·남편 초혼은 각각 0.7%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함.

○ 남편과 부인의 평균 초혼연령은 남편 27.49세, 부인 24.58세로 남녀간에 2.91세의 차이를 보였음.

□ 전체 응답대상 부인 중 10.2%가 해혼상태였음(사별 4.7%, 이혼·별거 5.5%).

○ 해혼당시 평균연령은 사별부인 44.73세, 이혼·별거부인은 38.23세로 나타났음.

○ 이혼·별거한 부인만을 대상으로 해혼이유를 살펴본 결과, 성격차이 28.6%, 경제문제 22.8%, 배우자의 외도 25.2%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

□ 가족주기 분석대상은 15~64세 초혼부인 중 자녀출산 경험이 있는 유배우 또는 사별 부인만을 대상으로 부부의 결혼에서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을 가족생애사건 시기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함.

○ 각 단계는 형성기, 확대기, 확대완료기, 축소기, 축소완료기, 해체기 등 6단계로 구분함.

○ 최근의 초혼연령의 상승,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자녀규모의 축소, 그리고 사망률 개선에 따른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부인의 결혼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족주기 전체기간은 길어지고 있음.

11. 기혼여성의 취업과 가족생활

□ 결혼 전·후 취업실태를 살펴보면, 조사대상부인 중 결혼전에 취업경험이 있으면서 현재에도 취업중인 부인은 전체의 50.5%, 결혼 전 비취업 부인 중 현재 취업중인 부인은 전체의 47.5%이었음.

○ 전체 부인의 결혼 전 취업률은 83.3%, 현 취업률은 50.0%이었음.

□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는 가구의 특성이나 남편의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가구특성별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많은 경우 부인 취업률이 높은 편임.

○ 이는 고소득층은 고학력 젊은 부인의 자아성취를 위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부인의 취업으로 인한 소득이 가구소득에 기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현 취업여성의 직종은 서비스·판매직 종사자가 35.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사무직 종사자 18.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8.4%, 단순노무자 및 기타 15.1% 등의 순이었음.

○ 현 취업 기혼여성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 42.9%, 임시근로자 22.2%, 무급가족종사자 13.5%, 자영업자 11.1% 등의 순이었음.

□ 현 취업부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부인은 44.87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초과하고 있음.

○ 부인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34.94만원으로 남편의 근로소득을

100%로 봤을 경우 부인의 근로소득은 45.1%에 불과함.

□ 일과 가정생활 병행에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가사부담'이 2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녀양육 부담' 23.0%,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 12.8% 등의 순이었음.

□ 현재의 일 계속여부에 있어서 '건강이 허락할 때 까지'가 32.2%, '경제적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26.9%, '정년으로 일할 수 없을 때까지' 21.6%, '쉬고 싶을 때까지' 14.8% 등의 순이었음.

□ 취업부인의 주요 취업 이유로는 '생활에 보탬'이 40.9%로 가장 많았으며, 비취업 부인의 비취업이유로는 '자녀양육'이 61.7%로 가장 많았음.

□ 생애단계별 취업부인의 직장 변화

○ 결혼직전·후 모두 취업한 부인의 경우 동일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가장 낮은 비율로 다른 생애단계에 비해 다른 직장이나 직종으로 옮기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12. 자녀양육태도와 양육비 및 결혼비용

□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음'에 찬성하는 비율은 59.6%로 2006년보다 증가하였고, 반대로 찬성하지 않는 비율은 40.4%로 2006년보다 감소함.

□ 자녀양육 책임

○ 15~59세 기혼가구 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파악된 부모들의 자녀양육 책임한계는 '대학 졸업 할 때까지'가 49.6%로 가장 많았음.

□ 개별아동의 양육비 구조 및 규모에 있어 가족공동비용인 주거 및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소비지출 등은 2003년 29만 4천원, 2006년 35만 6천원, 2009년 41만원으로 증가함.

○ 자녀 1인당 식료품비, 의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사교육비 등의 자녀양육을 위한 개인비용은 2003년 45만 4천원, 2006년 55만 6천원, 2009년 59만 9천원으로 증가함.

□ 가구 내 결혼 1건당 결혼비용은 평균 4,492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결혼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은 1884만 8천원으로 42.0%에 해당함.

13. 출산 및 가족정책 욕구

□ 15~64세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혼인장려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국가정책'은 '청년실업 해소'(36.1%)가 가장 많았음.

○ 자녀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은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시설 확충' 18.6%, '아동 양육수당 지급' 12.4%, '영유아 보육비 지원' 12.0%순 이었음.

○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 여건은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이 21.7%로 가장 많았음.

□ 국제결혼에 대한 의견으로 국제결혼에 대하여 '찬성'하는 비율은 41.5%였고, '그저 그럼'이 39.0%, '반대'가 19.5%이었음.

○ 다문화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언어통역서비스'가 3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녀양육 지원' 24.9%순 이었음.

14. 정책제언

□ 혼인 및 자녀관련 가치관

○ 바람직한 혼인관 형성과 성평등 가치관확립을 위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강화해야 함.

○ 가족친화적인 고용문화 조성을 위한 직장인의 인식 및 태도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재혼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생활교육,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 보급할 필요가 있음.

○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임신·출산·피임·인공임신중절

○ 이상자녀수가 실제 출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결혼 및 출산 장애요인을 제거해야 함.

○ 부인의 임신소모율을 획기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함.

○ 임신소모의 한 형태인 사산의 절대횟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건의료적 측면의 관심이 요구됨.

○ 자연유산이 더욱 감소될 수 있도록 임신전 관리, 산전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불원임신의 예방을 위한 효과가 높은 피임방법의 사용을 홍보함.

○ 보다 효과적, 효율적, 성평등적 측면의 피임방법에 의한 실천이 이루어져야 함.

○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은 현행법상 불법행위이므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을 강화하면서 불원임신일지라도 출산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초경 및 폐경과 불임

○ 초경연령이 빨라지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증대할 수 있는 학교교육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 접근이 있어야 할 것임.

○ 조기폐경 여성에 대한 원인규명과 치료방안이 정책적으로 강구되어야 함.

○ 불임대책은 불임부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복지적 관점과 불임을 질병으로 간주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처럼 보건의료적 측면에서도 접근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불임에 대한 후속 심층연구가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불임치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모자보건

○ 제왕절개의 실시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OECD의 권고수준인 5~15%선으로 낮추도록 노력해야 함.

○ 신생아의 저체중 및 조산을 예방하기 위한 산모의 건강관리 및 임신중 생활습관 관리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요구됨.

○ 모유수유는 건강한 모체를 유지하고,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단순히 출산여성과 신생아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전체와 사회가 함께 지지하고 노력해야 함.

□ 가족생활

○ 가족 내 가사노동 분담 정도, 의식주 수준,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 삶의 성취도 증대를 위하여 가족원들이 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가족문화 및 환경이 개선되어야 함.

○ 부부의 가사분담이 성평등적이 될 수 있도록 가족원, 특히 남편의 노력이 요구됨.

○ 부부간의 문화생활을 공유함으로서 배우자 만족도를 증진하여야 할 것임.

□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

○ 이혼가정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사회적 차원에서 경제활동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가족주기의 총기간이 연장되고 있음을 적극 반영하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보완과 경제적 지원 강화, 보건·의료서비스의 증대 및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대책이 강화되어야 함.

○ 여성 노인단독가구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이들을 위한 사회

적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함.

□ 기혼여성의 취업과 가족생활

○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남성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문화 및 사회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직장이 출산 및 가족친화적 경영을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세제혜택 및 재정지원을 확대함.

□ 자녀양육 태도와 양육·결혼비용

○ 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자녀양육이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문화적 접근이 필요함.

○ 보육료 및 양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아동연령이 높아질수록 양육비가 많이 지출된다는 점을 고려한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은 자녀양육 부담의 핵심요인이므로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양적 및 질적 강화를 도모하고 중산층 아동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균등한 방과후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함.

○ 저소득층 아동의 교양오락프로그램의 제공을 확대하여 소득에 따른 문화향유의 격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

○ 결혼비용 중 가장 부담이 큰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이 정책적으로 강화되어야 함.

□ 출산 및 가족정책 욕구

○ 현재의 저출산 대책을 포함한 사회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추가자녀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출산지원정책들이 광범위하게 마련해야 함.

○ 청년실업 해소, 자녀양육비 지원,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강화,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조성,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혼인 및 출산가치관 확립, 서민층 주택 융자, 최저임금의 인상 및 보장, 양성평등가치관 확립 및 문화조성 등의 정책을 제시함.

01

서론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한 사회의 인구변동은 제반 사회경제적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출산력 변동을 포함한 제반 인구변동은 한편으로는 사회경제적 변화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경제적 변화가 인구변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갖는다(김승권 외, 2000, 2004, 2006).

1960년의 총인구는 25,012천명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계출산율은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인구증가율은 3.2%로 높아 향후 인구증가로 인한 부담은 엄청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높은 출산율로 인해 유년부양비는 무려 77.3%에 달하여 총 부양비(82.6%)의 약 94%이었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자연자원이 부족하고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하여 1인당 국민소득은 79달러로 최빈국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인구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한 국가는 1960년대 초부터 강력한 인구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즉, 한국의 인구정책은 1962년부터 경제개발계획과 병행하여 추진된 가족계획사업 중심의 인구증가억제정책이 그 효시라 하겠다. 이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산업화 초기단계의 높은 출산율 및 높은 사망률(高出産率·高死亡率)을 뒤따르는 높은 인구증가율로 인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높은 인구증가율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빈곤

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으로 연평균 8%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룩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소득의 향상, 교육수준의 향상, 가족계획사업의 목표달성 등에 힘입어 합계출산율은 1960년의 6.0명에서 1983년에는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함으로써 2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출산율이 안정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국민의 가치관과 삶의 양식이 변화되는데 힘입어 합계출산율은 1987년에 1.6명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서구 선진국의 출산율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출산율 저하에 따라 1988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추진되어 오던 가족계획사업의 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저소득층 중심'의 피임보급사업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출산율 전환은 불과 25년이라는 단기간에 이룩된 것으로 서구 선진국에서 100여 년이 소요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세계에서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높은 성과로 평가되었다.

합계출산율이 서구 선진국 수준에서 약 10년 이상 장기간 안정을 유지하게 되자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노동력 부족과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른 복지부담이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부작용으로 나타난 출생성비의 불균형, 인공임신중절의 증가 등 「인구자질 측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즉, 인구증가억제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구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1995년 3월 보건복지부 산하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정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1996년 6월 그간 추진되어온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철폐하고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김승권 외, 2006). 그렇지만 이러한 정부의 정책전환에 대해서 사회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았다. 즉, 서구 선진국의 출산력 전환은 사회·문화적 발전과 병행하여 장기간에 걸쳐 성취한 것이지만, 한국의 경우는 정부의 강력한 인구증가억제정책에 의한 단기간의 성과이기 때문에 정책전환으로 인하여 그 동안 이룩한 높은

피임실천율과 안정된 출산율은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지적이었다(김승권 외, 2006).

그런데 이는 기우(杞憂)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7년 말에 불어 닥친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하의 경제위기와 함께 합계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급락하게 되었다. 즉, 경제적 어려움, 구직난, 소득격감 등은 한국사회에서 결혼연기, 출산연기 등으로 귀결되었고, 이는 합계출산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1999년 1.42명, 2000년 1.47명, 2001년 1.30명으로 낮아졌고, 2002년에는 더욱 낮아져 1.17명으로 저하되었다. 이때부터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위기'라는 용어가 널리 회자(膾炙)되기 시작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정책적 관심을 두게 되었다. 2003년에는 출산율이 다소 상승하여 1.19명을 나타냄으로써 다소 안정되는 듯하였으나 2004년에는 다시 1.16명으로 낮아졌고, 더욱 심해져 2005년에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인 1.08명으로 급락하였다. 이후에는 급락에 따른 반발의 결과인지, 정책투입의 효과인지 불분명하지만 출산율이 다소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1.2명의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출산율의 지속적 저하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대량 발생한 기업의 도산 및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실업자 급증, 소득격감, 개인파산, 불투명한 장래 등으로 젊은 연령층의 결혼연기와 기혼부부의 출산기피 또는 출산지연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으며(김승권 외, 1998, 2002, 2003), 한국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현재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참여정부는 2003년 10월 2일 제7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통합기획단 내에 인구고령사회대책팀 설치 대책을 발표하였고, 대통령훈령을 개정하여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의 설치근거를 마련, 동년 10월 24일 Task Force(TF) 형태의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을 설치하였다.[1]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은 2004년 1월 15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35회 국정과제회의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을 수립하여 보고하였는데, 이는 4대 분야, 20개과제로 구성되어 있

1) 인구고령사회대책팀에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의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으로 부터 대책수립을 위한 실무 전문인력이 파견되는 등 10명 수준의 상근인력이 참여하여 고령사회대책 마련에 들어갔음.

다. 비전으로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고령사회를 제시하였으며, 4대 정책분야별 목표로 ① 가족친화적 인구대책을 통한 출산안정 도모, ② 고용확대를 통한 성장기반 강화, ③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보장, 그리고 ④ 고령친화적 재정·산업정책을 설정하고 구체적 정책추진과제 20개를 포함한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었다.

이어서 '인구・고령사회 대책팀'은 2004년 2월9일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규정」(대통령령)을 마련하고, 위원회 내에 자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등 조직면모를 갖추어 동년 3월5일 대통령직속의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가 출범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였다. 또한 2005년 4월 26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 9월 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결과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종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고, 이에 힘입어 '새롭고 희망찬 출산에서부터 노후생활의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라는 의미와 '미래와 행복이 가득한 사회를 새로 맞이한다'는 의지를 동시에 표현하는 '새로마지플랜'으로 명명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렇지만 기본계획의 추진에 의한 효과 거양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는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 많은 필요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가치관 등의 영향을 받는 '출산'이 단기간의 정부정책에 의해 증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행태와 출산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는 다양한 변인들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더군다나 2009년에 또 다시 발생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주었고, 예외 없이 한국사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음으로써 가족형성, 출산, 자녀양육, 가족생활 등 가족을 둘러싼 환경은 결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변화 양상과 원인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여 학문적, 정책적 대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목적

1964년 이래 21번째 실시된 본 조사[2])는 한국사회의 변동을 적극 감안하여 조사회수를 거듭할수록 조사의 목적이 변화되고 조사항목의 범주가 확대되었다. 이는 사회가 복잡할수록 개인과 가족의 출산과 가족생활에 대한 행태(行態)가 복잡하게 상호 얽혀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영역이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부인의 임신행태, 출산행태, 피임행태 등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최근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장단기 인구정책의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둘째, 부부의 취업, 가족주기, 가족생활, 자녀양육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임신 및 출산 행태의 변화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는 등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등 거시적 측면에서의 가족복지 증진 방안을 동시에 모색한다.

셋째, 남아선호, 임신소모(특히, 인공임신중절), 불임 등 임신·출산관련 사회병리현상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한다.

넷째, 산전산후관리, 저체중출생아, 모유수유, 영유아 예방접종 등 모자보건의 실태를 파악하고 수준을 분석하여 인구자질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한다.

다섯째, 궁극적으로 출산율과 가족생활의 안정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을 지연시키고, 가족생활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

2) 본 조사의 명칭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었는데, 이는 조사의 초점을 어디에 두었는지에 따른 것임. 초기에는 '가족계획'이란 단어가 중요하게 포함되었고, 다음으로 '가족계획'과 '출산력'이라는 단어가 함께 포함되었으며, 중기에는 '출산력', '가족보건'이란 단어가 주요하게 포함되었음. 1970년대 말에는 '피임보급'에 초점을 두기도 하였음. 1980년대 중반부터는 국가지정통계가 되면서 '출산력 및 가족보건'으로 표현을 하였으며,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저출산에 영향을 주는 보다 폭넓은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라는 단어로 변경되었음.

제2절 연구의 내용·대상 및 방법

1. 연구내용 및 대상

본 조사에서는 여성의 임신 및 출산의 행태, 피임행태, 인공임신중절, 가족 및 자녀가치관, 결혼 및 가족주기, 모자보건, 가족관계, 기혼부인 취업, 자녀 양육 및 결혼비용, 가족정책 및 복지 등에 관련된 내용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본 조사는 과거에 실시된 조사자료의 분석결과와 시계열적 비교를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인구관련 제 연구에서 초점이 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책방안과 가족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조사내용을 주요 영역별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가. 가구조사

가구조사는 조사대상지역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즉, 개인조사에 해당되는 가구가 아닐지라도 조사구내에 있는 모든 가구는 가구조사를 수행하게 되므로 가구원과 가구의 특성파악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가구원의 특성

가구주를 포함한 전체 가구원의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 생년월일, 교육정도 및 졸업여부, 취업여부 및 직종, 혼인상태 등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본 조사의 특징은 비동거 자녀를 가구원으로 파악한다는 점이다. 비동거 자녀는 조사대상가구에서 책임을 지고 양육하는 비동거 손자녀, 기타 친척 등이 포함된다. 이에는 국외 거주 자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는 조기유학 등의 이유로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부양자녀를 파악함으로써 전반적인 가족생활의 실태, 특히 경제적 부담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비동거 자녀의 조사항목은 가구원 사항과 유사하며, 비동거 시작 연월, 비동거 지역, 해외거주 이유를 추가하고 있다.

2) 출생에 관한 사항

2007년 1월 이후 출생아의 출생 연월일, 성, 출생시 모(母)의 연령, 생존여부 및 사망일시, 출생아 및 모의 현 동거여부 및 비동거 이유, 생존기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내용들은 연령별 출산율, 합계출산율, 유배우출산율을 산출하는 기초자료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또한 2006년부터 파악된 것으로 국외출생아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원정출산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내용은 국내 출생아와 유사하며, 출생국가, 국외 출산의 의도성, 국외출산 이유, 체류기간, 출산 및 체류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다.

3) 가구에 관한 사항

집의 유형, 집의 소유, 가구소득, 가구소비, 저축액, 재산(동산 및 부동산), 부채, 부채의 원인, 경제적 자립수준, 가족의 주관적 사회적 지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에게 주거의 가치와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가족소유가 아닐 경우 따로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사항 외에도 가족생활의 질과 관련하여 행복결정요인, 1년 전과 비교한 가족생활의 변화,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전반적인 가족의 삶의 질을 파악하고 있다. 가족생활 항목에는 가족 내의 지위 및 역할, 가사노동 분담정도, 가족간의 대화 및 친밀도, 지역사회 관계, 의식주 수준, 가족갈등,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 건강수준, 성취정도 등

에 대하여 5점 척도에 의해 주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나. 개인조사

1) 결혼 및 가족주기에 관한 사항

이는 15~64세 기혼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혼인, 이혼 및 재혼에 관한 태도, 혼인관련 실태, 가족주기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 등이다.

혼인, 이혼, 재혼에 관한 태도, 적정 결혼연령 등이 주요 항목이다. 특히, 결혼에 대한 견해로 네 가지 조사항목이 있는데,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하는지,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혼전동거에 대한 의견, 혼전 성관계에 대한 의견 등이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현 결혼의 결혼시기, 혼인당시 연령, 초혼여부 등이다. 아울러 이혼·별거·사별 가정에 대하여는 해혼시 남편 및 부인의 연령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혼·별거 가정에 대하여는 이혼·별거의 이유, 먼저 제의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혼·별거 당시 미성년 자녀의 존재여부, 자녀와의 동거자, 양육비 제공자 등이 조사내용으로 포함되었다.

가족주기에 관한 사항은 현재 초혼인 부인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조사문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자녀출생에 관한 사항이며, 다른 하나는 자녀혼인에 관한 사항이다. 전자는 첫째와 막내 아의 생년월일과 현재 연령, 이들 자녀의 성별에 관한 것이며, 후자는 부인이 출산한 자녀의 첫 결혼과 마지막 결혼에 대한 것으로 혼인자녀와 미혼자녀를 파악하였다. 특히 후자는 자녀의 첫 결혼과 마지막 결혼 당시의 자녀연령과 모(母)의 연령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2) 임신·출산·피임에 관한 사항

임신·출산·피임·취업에 관한 사항은 15~49세 기혼부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는 크게 자녀가치관 및 남아선호에 대한 태도, 임신·출산 및 입양관련 사항, 가족계획실태, 불임실태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된다.

먼저 자녀가치관, 이상자녀수, 아들 필요성 및 필요이유 등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가치관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본 조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현존자녀수, 총임신회수, 임신소모(사산,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회수를 파악한다. 특히, 임신소모 중 가장 관심있게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인공임신중절을 심층적으로 조사항목화 하고 있다. 또한 현 임신여부 및 출산계획, 향후 출산계획,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향후 출산의향, 입양을 고려한 경험 여부 등이다.

부인의 현재까지의 임신력·출산력·피임력·혼인력·취업력에 관한 기록표를 작성토록 하였다. 즉, 2007년 1월부터 조사시점까지 혼인, 임신·출산, 피임, 부인취업, 남편취업 등을 현시점까지 조사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는 변동이 있을 시기의 요인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시도한 것으로 향후 저출산 대책을 마련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가족계획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임실천 및 비실천에 대한 항목을 다양하게 담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시계열적으로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질문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 영역은 15~44세 유배우부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의 조사자료와 시계열적 비교분석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요 조사문항으로는 피임실천여부 및 목적, 피임수용방법 및 이유, 피임방법의 만족여부, 현 피임방법의 계속사용여부 및 원하는 변경방법, 현 방법의 사용시기, 비용부담 또는 구입처, 과거 사용한 피임방법 및 중단이유, 피임무경험 이유 및 향후 계획 등이다.

최근 불임부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로 불임부부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문항으로 새롭게 포함되었다. 임신을 위해 사용한 방법, 양방병원에서의 불임진찰 여부, 검사의 주체, 불임원인, 불임치료경험 유무, 받지 않은 이유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산경험이 있는 부인 중 최종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는 크게 산전관리 및 분만에 관한 사항, 산후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수유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분된다.

산전관리 및 분만에 관한 사항으로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최종아에 대한 산전진찰여부 및 횟수, 출산장소, 분만 형태, 제왕절개의 권유자 및 이유, 최종 출생아의 임신기간, 아기 체중, 저체중 이유, 미숙아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의 인지 등이 조사문항으로 포함되었다.

산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최종출생아의 산후진찰여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이 주요 조사문항이다. 특히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경험여부, 정부의 지원항목 외 추가검사 실시여부, 추가검사로 인한 비용, 선천성대사이상아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의 인지 등이 포함되었다.

최종출생아의 모유수유, 인공유(분유) 수유 등을 기록표에 의하여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혼합유도 파악하도록 조사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전혀 모유수유하지 이유와 모유를 먹이다가 뗀 이유, 모유수유를 돕기 위한 정부정책 등을 조사문항에 포함되었다. 한국사회의 높은 예방접종률로 인하여 그동안 조사항목에서 누락되었던 예방접종에 관한 내용이 OECD의 요구에 의하여 이번 조사에서는 포함하였다. 접종여부, 접종시기, 접종시 월령, 접종장소 등이 BCG, DTaP, MMR, DTaP추가, B형 간염, 일본뇌염, 수두 등의 예방접종 모두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4)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이 항목들은 15~64세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가 핵심으로 포함된다. 부부관계의 세부 조사항목에는 가사분담의 형태, 부부간 의사결정이 일상생활비 지출, 주택매매 및 이사, 투자 및 재산 증식, 자녀양육 및 교육 등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이 조사되었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8개 항목으로 조사되는데, 배우자의 이해도,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 성생활, 가사의 양, 배우자의 소비성향, 부부대화, 부부간 문화생활, 전반적 부부관계 등의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부모-자녀관계는 3세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항목으로는 자녀와의 대화, 자녀와의 문화생활, 자녀의 기대충족, 전반적 자녀관계 등에서의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5) 기혼부인의 취업에 관한 사항

이 항목들은 15~64세 기혼부인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취업에 관한 사항은 부인의 결혼 직전·후, 첫자녀 출산 직전·후, 막내자녀 출산 직전·후, 막내자녀 초교 입학전·후 등에 관한 사항과 부인과 남편의 현재 취업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된다. 먼저 부인의 결혼 직전·후, 첫자녀 출산 직전·후, 막내자녀 출산 직전·후, 막내자녀 초교 입학전·후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단계마다의 취업여부, 동일직장 여부, 중단 및 전직이유 등이다. 이는 여성들이 결혼과 첫자녀 출산, 막내자녀 출산, 막내자녀 초교 입학 등의 주요 생의 주기를 전·후하여 직장을 그만 두게 되는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출산율 변화와 직접적 관련성을 갖는다.

현재의 취업에 관한 내용으로는 부부의 취업여부, 주당 평균근무시간, 지난 3개월 월평균 근로소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일을 하고 있는 부인에게는 일을 하는 이유, 일에 대한 만족도,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데 있어서 애로점, 일의 계속 여부 등이 조사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어서 일을 하

고 있지 않는 부인에게는 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를 개인, 가족, 사회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본 조사에서 취업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출산의 장애요인이 취업이거나 취업의 장애요인이 출산이기 때문이다. 즉, 기혼여성의 취업은 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본 조사문항에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되었다.

6)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

이 항목들은 15~64세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은 가구 내에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와 18세 이상이라도 대학에 재학 중이어서 부모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지출되는 양육비를 조사하도록 문항이 구성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자녀 사교육비 등 과도한 자녀양육비로 인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소자녀관이 정착되어 저출산으로 이어져 사회의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효하며, 구체적으로 자녀 개인에게 지출되는 식료품비, 피복 및 신발비, 보건의료비, 공교육비 관련 비용, 보충교육비(사교육비) 및 관련 비용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7) 출산 및 가족정책

최근 저출산·고령사회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출산율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지원과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 여건, 혼인장려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정책 등의 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2. 조사방법

본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진이 설계한 조사표를 기초로 사전 훈련된 전문조사원이 조사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직접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조사는 가구조사와 개인조사로 구분되었으며, 연구진에 의하여 표본추출된 조사지역 내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3)]

가구조사의 응답자는 가구주를 원칙으로 하였다. 여기서 가구주의 개념은 '가족의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사실상의 가구주'로 정의하였으며, 서류상의 가구주, 세대주 또는 호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조사팀이 조사지역에 머무르는 며칠 동안(보통 2~3일) 가구주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생활을 잘 파악하고 있고 가구내의 모든 가구원의 개인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가구원을 응답자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후자의 경우에는 주로 가구주의 배우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조사는 가구 내에 살고 있는 15~59세 기혼가구조사와 15~49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5~59세 기혼가구조사의 응답자는 가구주나 그 배우자이고, 15~49세 기혼여성 조사의 응답자는 기혼여성 당사자이며, 그리고 가구 내 기혼여성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모두가 응답하도록 설계되었다. 다만, 기혼여성을 만날 수 없어 개인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남편, 가구 내 다른 기혼여성, 성인자녀 등을 대리응답자로 하여 가능한 한 조사를 완료토록 하였다.[4)] 그렇지만 가치관에 관한 조사문항과 본인이 직접 응답하여야 하는 문항이고 대리응답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구방문시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원이 응답대상자에게 전화로 직접 설문토록 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정확도를 최대한 높였다.

---

3)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중 360개 표본조사지역을 추출하였음.

4) 극히 일부가구에서 발생하였으며, 남편 또는 시어머니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대리응답자를 통하여 응답을 받아 냄으로써 조사불가 또는 무응답을 최대한 감소되도록 노력하였음.

제3절 표본설계 개요

1. 기획단계 결정 사항

가. 표본규모

최근의 출산력 감소에 따른 조사가구수의 증가를 고려할 수 있으나 주어진 예산을 감안하여 전체 표본조사수를 360개 조사구로 하고 조사구 당 가구수는 50가구로 하여 약 18,000가구를 조사대상 가구로 하였다.

나. 표본조사구 추출 모집단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자료에서 본 조사의 조사구로 적합하지 않은 시설조사구(기숙사, 사회복지시설, 관광호텔 등)를 제외한 일반조사구 자료를 모집단으로 하였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일반조사구의 총조사구수는 264,207개 조사구이며 총가구수는 15,835,032가구로 집계되었다.

2. 표본추출 방법

가. 모집단자료의 정리(표본틀 구축)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지역특성에 따라 (1) 7대 대도시, (2) 기타 시 (3) 군의 읍·면으로 분류하고, 각 조사구의 주된 주택특성에 따라 2가지의 주택형태로 분류하였는데, (1) 단독주택,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타 와 (2) 아파트 조사구로 분류하였다. 조사구의 지역특성 및 주거형태에 의하여 전체 모집단 조사구를 6개 층으로 층화하였다.

모집단의 각 조사구는 가구수가 동일하지 않음으로 각 조사구의 가구수를 5로 나누어 크기의 측도(MOS; Measure of size)로 사용하였다. 6개 층(조사구

의 지역특성과 주거형태) 내에서 각 모집단 조사구를 행정구역 순으로 정렬하여 지역적으로 골고루 추출되도록 하였다. 행정구역을 분류변수로 사용함으로써 지역(시도)별로 층화추출한 효과를 얻도록 하였다.

나. 표본조사구 및 조사대상가구 선정

각 층별 표본조사구수는 층별 가구수에 비례하여 배분되도록 하되 군의 읍·면 지역은 출산력이 감소하고 가임여성수가 줄어드는 상황임으로 1.2배의 가중치를 주었다. 각 층에서의 조사구 추출은 조사구별 가구수에 대한 크기의 측도에 의한 확률비례로 계통추출 하였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중에서 조사구의 가구수가 적은 조사구는 인접 조사구에서 표본가구를 추가하였다. 즉,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가구수가 55 가구 미만인 표본조사구는 인접한 조사구에서 5가구를 추가하여 조사대상가구를 60가구가 되도록 하며, 65가구 이상일 경우는 거처번호 순으로 하여 65가구 이후 거처에 속하는 가구는 조사대상가구에서 제외하였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의 모집단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축된 아파트를 고려 할 수 있으나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시점이 2005년 11월이므로 신축 아파트는 고려하지 않고 조사구 내에 신축된 일반주택은 조사대상가구에 포함시켰다.

추출결과 7대시의 일반조사구에서 72개 조사구, 기타시의 일반에서 45개 조사구, 읍·면의 일반에서 45개 조사구, 7대시의 아파트 조사구에서 51개 조사구, 기타시의 아파트 46개 조사구, 읍·면의 아파트 14개 조사구가 추출되어 총 273개 조사구에서 조사구 당 60가구를 표본조사 가구로 하여 총 16,38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 하였다(표 1-1 참조).

〈표 1-1〉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의 표본조사구 추출

구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수	가구수	가중치	조사구 추출확률	표본 조사구수
(1) 7대 시의 일반	73,513	4,348,856(27.5)	1	1/1,021	72
(2) 기타시의 일반	45,812	2,726,035(17.2)	1	1/1,018	45
(3) 읍·면의 일반	39,130	2,262,800(14.3)	1.2	1/869	45
(4) 7대 시의 아파트	45,588	3,058,350(19.3)	1	1/893	51
(5) 기타 시의 아파트	44,497	2,759,989(17.4)	1	1/967	46
(6) 읍·면의 아파트	11,667	679,002(4.3)	1.2	1/833	14
계	264,207	15,835,032(100.0)		1/953	273

3. 추정방법

조사결과의 각종 통계치는 가중표본합계치(weighted sample total)를 사용한다. 이는 조사구의 추출된 확률이 동일하지 않고 미방문가구율 및 조사미완율이 조사구마다 다르기 때문이며, 조사결과의 가구수의 가중표본합계치는 전체 조사완료가구수와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 가구조사 결과의 가중표본합계치

어떤 특성 XY를 갖는 가구수 및 인구수에 대한 가중표본합계치는 조사완료된 가구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① 가구총수 추정용 승수

$$M_{hi} = \frac{S_h}{n_h S_{hi}} \quad \frac{A_{hi}}{A_{hi}'} \quad \frac{A_{hi}'}{B_{hi}}$$

$$= \frac{S_h}{n_h S_{hi}} \quad \frac{A_{hi}}{B_{hi}}$$

이 공식에서

M_{hi} = 가구총수 추정용 승수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 h = 1, ·····, 9

i = 조사구를 나타내는 첨자

n = 표본조사구수

S = 가구수 크기의 측도

A = 조사결과 조사구내 총가구수(미방문가구수 포함)

A' = 방문가구수

B = 가구조사 완료가구수

② 공식 (1)의 승수를 조사구별 조사완료 가구수에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조사모집단의 총가구수를 추정한다.

$$\hat{B} = \sum_h \sum_i M_{hi} B_{hi} \qquad (2)$$

③ 조사완료가구수를 집계

$$B = \sum_h \sum_i M_{hi} B_{hi} \qquad (3)$$

④ 공식 (2)의 총가구수 추정치를 (3)의 조사완료 가구수로 조정하기 위하여 공식 (1)의 총수 추정용 승수를 가중표본합계치 산출용 승수로 변환한다.

$$W_{hi} = M_{hi} \left(\frac{B_{hi}}{\widehat{B_{hi}}}\right) \qquad (4)$$

⑤ 공식 (4)의 승수를 조사완료 가구수에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가중표본합계치를 산출한다.

$$\hat{Y} = \sum_h \sum_i W_{hi} Y_{hi} \qquad (5)$$

이 공식에서

$\hat{Y}$ = 어떤 특성 Y를 갖는 가구수(인구수)의 가중표본합계

Y = 특성 Y를 갖는 것으로 조사된 가구수(인구수)

나. 부인조사결과의 가중표본합계치

부인조사 결과에서 어떤 특성 XY를 갖는 부인수의 가중표본합계치는 조사완료된 부인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⑥ 부인총수 추정용 승수 산출은 가구승수에 부인조사 조사미완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eM_{hi} = W_{hi} \frac{C_{hi}}{C_{hi}'} \frac{C_{hi}'}{D_{hi}}$$

$$= W_{hi} \frac{C_{hi}}{D_{hi}} \qquad (6)$$

eM_{hi} = 부인총수 추정용 승수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 h = 1, 2, 3, ·····, 6

i = 조사구를 나타내는 첨자

n = 표본조사구수

C = 조사결과 조사구내 총부인수(미방문부인수 포함)

C' = 방문부인수

D = 부인조사 완료 부인수

⑦ 공식 (6)의 승수를 조사구별 조사완료 부인수에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조사모집단의 총부인수를 추정

$$\hat{D} = \sum_h \sum_i eM_{hi} D_{hi} \qquad (7)$$

⑧ 조사완료부인수를 집계

$$D = \sum_h \sum_i eM_{hi} D_{hi} \qquad (8)$$

⑨ 공식 (7)의 총부인수 추정치를 (8)의 조사완료 부인수로 조정하기 위하여 공식 (6)의 부인총수 추정용 승수를 부인가중표본합계치 산출용 승수로 변환

$$eW_{hi} = eM_{hi} \left(\frac{D_{hi}}{\widehat{D_{hi}}} \right) \qquad (9)$$

⑩ 공식 (9)의 가중치를 조사가 완료된 부인에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가중표본합계치를 산출

$$\hat{X} = \sum_{h} \sum_{i} eW_{hi} \; X_{hi} \qquad (10)$$

이 공식에서

$\hat{X}$ = 어떤 특성 X 를 갖는 부인수의 가중표본합계치

X = 특성 X를 갖는 것으로 조사된 부인수

제4절 현지조사 및 자료처리

1. 현지조사의 준비 및 지도·감독

가. 조사준비절차

1) 조사원 모집

조사원 모집방법은 당 연구원의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공고와 종전에 수차례 연구원의 조사를 수행해 온 조사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통보를 병행하여 활용되었다. 접수된 조사원의 이력서는 연구진에 의하여 검토되었으며 조사원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조사원에 대한 면접은 엄격한 심사와 배점을 거쳐 성적순으로 선발되었다. 연구진은 당초 본 조사를 위해 60명의 조사인력을 확보하였다.

2) 조사원 교육훈련

조사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당 연구원 대강당에서 당 연구진에 의해 2일간 실시되었다. 조사원 교육훈련을 위해 개발된 조사표, 조사지침서, 양·음력 환산표, 가구명부, 조사지역 요도 등이 활용되었으며, 이들 자료는 조사표와 함께 현지조사를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3) 조사팀 구성

현지조사를 담당하는 60명의 조사인력은 15개 팀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팀은 지도원 1명과 조사원 3명으로 구성되었다. 과거조사에서도 많은 유사한 경험을 하였지만 특히 조사팀을 4명으로 구성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한 조사지역은 약 50 가구이기 때문에 1명의 조사원이 하루에 약 4~5가구를 완료한다고 예상할 때 조사팀을 4명으로 할 경우 한 지역을 완료하는 데는 약 3일 정도 소요된다. 이 기일은 한 조사지역의 구조와 특징을 익히고 조사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가구원이 부재중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사원은 몇 차례까지도 재방문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 조사지역에 최소한 4일 정도는 체류를 하여야 조사미완율을 낮추고 조사의 효율을 기할 수 있다.

둘째, 본 조사는 약 18,000가구가 조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여건에서 조사기간이 2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부득이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 이외 지방에서의 조사기간도 1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조사원의 이동, 숙박 등을 고려할 때 조사팀당 4명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각 조사팀의 인원이 소수일 경우 많은 지도원이 필요하며 실제 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사기간이 늘어나야 하고, 따라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증가될 수밖에 없다.

넷째, 본 조사에서는 조사표의 오류를 해당 조사지역에서 수정·보완하여야 하므로 지도원과 조사원간의 역할분담이 중요하며, 지도원이 조사완료된 조사표를 해당지역에서 검토하기 위해서는 조사원 3명이 가장 적당한 규모이다.

나. 현지조사의 운영 및 지도·감독

현지조사는 약 3개월간 이루어졌으며, 2009. 6~9월 기간 중 실시되었다. 특히, 조사초기단계에서는 연구진에 의한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기 설정된 조사지역의 확인 및 조사지역 내 가구의 증감상태 등은 조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점적 확인사항이었다. 또한 지도원과 조사원의 원만한 관계, 조사팀과 조사지역 행정기관 및 주민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요청이 이루어졌다. 현지조사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부인들이 주간에 부재중인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많은 조사원들이 주간에 가구를 방문하여 응답자의 소재와 약속시간을 정한 후 야간에 재방문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2. 조사자료 처리

조사완료된 자료는 일차적으로 현지에서 지도원에 의해 오류수정을 하였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는 완벽한 작업을 기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완료한 후 일부 지도원과 조사원에 의하여 약 1개월간 오류수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한 인력은 모두 조사에 참여한 지도원과 조사원으로 구성되었다. 오류수정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본 조사를 실제로 실시한 인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동 작업은 사전에 연구진에 의해 작성된 「부호화 지침서」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특히 작업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 1일간의 사전교육이 실시되었다.

오류수정 작업이 완료된 조사자료는 입력요원에 의하여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종전과 달리 동 작업은 외부의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되지 않고 연구진이 숙련된 입력요원을 채용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는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아 외부에서 이를 수행한 경우 입력과정에서의 오류가 많이 발생되어 전산화된 자료의 오류수정 기간이 길었기 때문이다. 전산화된 조사자료는 연구진에 의해 정확도가 검증되었고, 전산화된 자료의 정확한 수정을 위해 전 연구진과 4명의 전문 자료정리요원이 투입되었다.

이어서 자료분석을 위한 파일이 재구성되었고, 연구진은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진이 주로 활용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와 SAS 팩케이지 프로그램이었다.

제5절 응답자의 특성과 통계해석시 유의사항

1. 응답자의 특성

응답자의 전반적인 특성은 본 연구의 결과를 이해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이는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서 가족보건실태 및 가족복지욕구가 다르고 가족을 둘러싼 제반 환경적 요소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응답가구의 부인과 남편의 특성에 따른 분석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치관 또는 태도 등 주관적 의견이 중요한 경우에는 응답자의 특성이 고려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본 조사의 대상은 15~64세로 조사결과 10,777명이 응답하였으며, 동부지역에 83.3%(8,975명), 읍·면부지역에 16.7%(1,802명)가 거주하고 있었다. 남성 응답자 9.0%, 여성 응답자 91.0%로 대부분이 여자 응답자이었으며, 지역별로 응답자의 성별비율은 동부는 남자 8.6%, 여자가 91.4%, 읍·면부는 남자 11.4%, 여자 88.6%이었다.

응답자의 연령이 15~44세인 비율은 48.1%였으며, 45~49세 15.8%, 그리고 50세 이상 36.2%로 나타났다. 지역별 구분하여 살펴보면, 동부지역의 경우

15~44세 비율이 50.0%였으며, 45~49세는 15.7%, 그리고 50세 이상 연령층은 34.2%이었고, 읍·면부는 15~44세인 비율이 37.9%였으며, 45~49세는 16.3%, 그리고 50세 이상 연령층은 45.8%이었다. 따라서 읍·면부 지역의 거주인구가 높은 연령이 많아 응답자도 연령층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혼인상태는 86.5%가 유배우자이었으며, 사별 5.0%, 이혼 및 별거는 8.2%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유배우자와 이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동부지역(유배우 86.8%, 이혼 7.0%)이 읍·면부지역(유배우 85.3%, 이혼 5.8%)보다 높은 반면, 사별 및 별거인 응답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읍·면부지역(사별 7.4%, 별거 1.5%)이 동부지역(사별 4.5%, 별거 1.4%)보다 높았다.

교육수준별 응답자의 분포를 보면, 고등학교 학력수준을 가진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비율인 43.1%의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은 대학 이상의 학력 29.8%로 나타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72.9%나 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지역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읍·면부지역의 응답자보다 훨씬 높았다. 즉,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는 동부지역에서는 23.2%인데 비하여 읍·면부지역에서는 47.0%나 되었고, 반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은 동부지역 76.8%, 읍·면부지역 53.0%로 지역간 학력격차가 현저하였다.

응답자의 51.0%가 취업하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취업률은 읍·면부지역(65.5%)이 동부지역(48.0%)보다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읍·면부지역에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응답자와 가구주와의 관계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경우가 80.9%로 높았으며, 가구주 본인인 경우는 18.9%였다. 이는 지역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응답자가 가구주 본인인 경우가 읍·면부지역이 다소 높았다.

〈표 1-2〉 조사대상가구 응답자의 특성

(단위: %, 명)

특성	전국	동부	읍·면부
성			
남자	9.0	8.6	11.4
여자	91.0	91.4	88.6
연령			
15~29세	5.9	6.0	5.1
30~34세	10.4	11.0	7.3
35~39세	15.9	16.5	12.6
40~44세	15.9	16.5	12.9
45~49세	15.8	15.7	16.3
50~54세	15.7	15.4	17.0
55세 이상	20.5	18.8	28.8
결혼상태			
유배우	86.5	86.8	85.3
사별	5.0	4.5	7.4
이혼	6.8	7.0	5.8
별거	1.4	1.4	1.5
기타	0.3	0.3	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7.1	23.2	47.0
고등학교	43.1	44.2	37.7
대학 이상	29.8	32.6	15.3
현취업여부			
취업	51.0	48.0	65.5
비취업	49.0	52.0	34.5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본인	18.9	18.2	21.9
배우자	80.9	81.4	78.0
기타	0.2	0.4	0.1
계(수)	100.0(10,777)	100.0(8,975)	100.0(1,802)

2. 통계해석시 유의사항

본 보고서의 통계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사항 응답부인 및 남편의 특성, 결혼양상, 가족정책 및 가족가치관에 관한 분석은 전체 가구 또는 15~64세 기혼가구이다.

둘째, 본 조사에서 개인조사는 15~64세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임신·출산·피임, 모자보건에 관한 분석은 15~44세 유배우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출생아에 대한 사항은 출산연도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파악하였다.

셋째, 지역별 구분을 함에 있어 도시와 농촌이 아닌 동부와 읍·면부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1996년에 시행된 전국의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종전과 같이 도시와 농촌으로의 구분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부는 도시지역으로, 읍·면부는 농촌지역으로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넷째, 합계출산율, 연령별출산율, 유배우출산율, 그리고 인공임신중절률을 산출함에 있어서 전국의 결과만을 게재하고 지역별, 즉, 동부와 읍·면부를 구분하지 않았다. 이는 1996년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에 의해 동부지역(도시)은 확대되고, 읍·면부지역(농촌)은 더욱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 조사는 표본조사인 관계로 읍·면부지역의 응답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출생아 한 명 또는 인공임신중절 한 건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통계결과의 제시로 이해를 잘못할 수 있는 지표는 전국 통계치만을 사용하였다.

다섯째, 각 통계표에는 '무응답' 수가 표시되지 않고 있다. 제시된 수(數)와 각 통계표의 응답자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응답자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이해하면 된다.

02

선행연구 및 정책동향

제2장 선행연구 및 정책동향

제1절 선행연구

1. 선행연구 개요

본 연구에서의 선행연구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조사연구에 국한하여 검토하였다. 출산력 및 피임, 가족보건 등과 관련된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는 이번에 앞서 이미 20회나 이루어졌다. 최초의 조사는 1964년에 실시되었으며, 1970년대 말부터는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이들 조사는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가족계획사업의 발전과 함께 그 특징이 다양하게 변하여 왔다.

1960년대 전반에 실시된 조사(1964~1967년)에서는 가족계획의 지식, 태도 및 실천(KAP)과 출산행태에 관련된 내용이 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가족계획사업이 진전됨에 따라 사업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에 의해 1967년 조사부터는 「출산기록표」에 의한 출산력과 피임수용 실태 및 그 부작용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어서 1970년대 조사의 특징은 그간의 인구증가억제정책 및 가족계획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고 향후 사업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 부인의 취업, 모유수유 및 출산계획 등의 조사내용이 추가·보완된 점이 특징적이라 하겠다.

1980년대 조사는 1982년부터 3년 간격으로 3회가 실시되었는데, 정부가족계획사업의 특성 및 정책변화와 함께 종래의 조사에 소자녀 규범형성을 촉

진시키기 위한 각종 규제 및 보상제도에 대한 인지도, 홍보·계몽, 그리고 모자보건사업 등에 관한 항목이 추가된 점이 특징이다.

1990년대에 3회 실시된 조사는 그간의 성공적인 가족계획사업에 힘입어 저출산율과 높은 피임실천율이 유지되고 있는 여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종전의 조사내용에 추가하여 출산력 저하가 우리 사회와 가족 및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혼여성의 취업과 역할변화, 가족 및 노인문제 등 가족복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김승권 외, 2004).

〈표 2-1〉 한국에서의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 관련조사의 연혁

연대	조사년도	조사명칭
1960년대 (5회)	1964	전국 가족계획실태조사
	1965	전국 가족계획실태조사
	1966	전국 가족계획실태조사
	1967	전국 가족계획 및 출산력조사
	1968	전국 출산력조사
1970년대 (6회)	1971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973	가족계획종합실태조사
	1974	한국 출산력 조사
	1976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978	가족계획 및 출산력실태조사
	1979	피임보급실태조사
1980년대 (3회)	1982	전국 가족보건실태조사
	1985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98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990년대 (3회)	1991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994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997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2000년대 (3회)	2000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2003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간복지실태조사
	2006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간복지실태조사

2000년대에 실시된 두 번의 조사는 1990년대의 조사내용 특성에 더하여 지속적인 저출산의 원인규명과 그 대책강구 및 원인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가족복지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강화되었다. 이는 출산율 저하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증가와 여성의 사회활동 증대, 그리고 가족복지의 미흡에 기인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김승권 외, 2000, 2004, 2006).

종합하면, 1960년대 조사는 단순히 피임에 관한 지식, 태도, 실천에 관한 내용에 치중되었고, 1970년대 조사는 가족계획사업의 영향으로 인한 출산수준 및 행태 변화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1980년대 조사는 피임 및 출산 관련 내용에 추가하여 모자보건 내용이 포함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조사는 출산력 전환과 인구증가억제정책의 폐지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실시된 두 번의 조사는 1990년대의 조사 내용 특성에 더하여 지속적인 저출산의 원인규명과 그 대책강구 및 원인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가족복지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강화되었다. 이는 출산율 저하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증가와 여성의 사회활동 증대, 그리고 가족복지의 미흡에 기인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 선행연구의 주요 결과와 제언

선행연구의 주요 결과는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는 2000~2006년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그 이전의 연구와는 달리 '저출산' 문제를 주요 초점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 연구의 결과분석과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 2000년 연구의 주요 결과와 제언

1) 주요 결과

① 1989년 가족계획사업의 축소, 1996년 인구증가억제정책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사회변화와 개인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수준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② 부인의 임신경험과 임신종결형태 중 임신소모는 감소하고 정상출생이

증가하여 바람직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의 피임보급과 모자보건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 자연유산, 사산 등의 임신소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었으며, 특히 자연유산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③ 1989년 이래 정부지원에 의한 피임보급물량이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임실천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임실천을 내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종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하나는 피임실천자가 여성위주에서 이제는 남성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어 성 평등적인 측면이 엿보였으며, 다른 하나는 영구적 피임보다는 일시적 피임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④ 추가자녀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임신노출상태의 부인이 각 연령층에 산재해 있어 인공임신중절의 우려가 높다.

⑤ 부인의 인공임신중절률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으나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남아선호에 의한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이 잔존하고 있어 우려된다.

⑥ 임산부의 산전 및 산후수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분만율도 상승하고 있어 안전분만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율 증가와 모유수유율의 저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⑦ 최근 결혼양상은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는 출산율 저하, 평균수명의 연장 등과 함께 가족주기의 전체 기간 및 단계별 기간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었다.

⑧ 결혼과 관련된 가치관과 자녀가치관은 서구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남아선호 가치관도 약화되고 있어 바람직한 양상을 보였으나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우려되며, 이러한 가치관이 실제 행위로 연결될 경우 불법적 의료행위에 의한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⑨ 가족관계는 남성가장중심에서 전체 가족원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

화할 뿐만 아니라 점차 부부중심의 가족관계가 강조되고 있는 경향을 뚜렷이 보였다. 또한 과거의 성 역할분담의 행동양식은 감소되고 있어 성 평등적이고, 능력중심의 균등부담의 생활방식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성과 많은 남성은 전통적인 가부장제적 가치관의 향수에 젖어 사회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문화적 지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⑩ 기혼여성의 취업은 증가하고 있으나 종사직종은 전문직보다는 서비스·판매직, 단순노무직 등이 많았다. 취업이유는 '생계유지형 취업'과 '내조형 취업'이 많았으며, 여성의 자아성취 등을 위한 취업도 주요 이유로 제시되고 있어 향후 전문직 여성의 증가와 함께 이러한 '자아성취형 취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⑪ 영유아 자녀의 보호는 어머니가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는 비취업모 뿐만 아니라 취업모의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었다. 따라서 취업모의 자녀를 돌봐 줄 친·인척, 보육시설 등이 없거나 경제적 또는 시설환경적 이유로 이에 의존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엿볼 수 있었으며, 이는 특히 2세 이하의 영아의 경우에 심각한 수준에 있었다.

⑫ 개인주의적 가치관, 경제적 곤란, 부부갈등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은 심각한 수준에 있었다. 특히 아동학대와 아내학대에 대하여는 강력한 정책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주요 제언

① 적정출산율을 산출하고 이를 달성 및 유지하기 위한 장·단기 사회정책을 마련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효율적 피임실천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피임보급 및 관리의 사각지대와 비효율적 피임방법 이용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③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기혼부인의 부정적 태도가 그들의 개

별행위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홍보계몽이 강화되고, 성 평등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지속화되어야 한다.

④ 임신소모를 감소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제한적 피임보급, 임산부의 체계적 및 효율적 산전관리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⑤ 인구자질향상을 위해서 모자보건사업의 내실화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⑥ 저출산관의 정착,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한 가족주기의 전체 및 단계별 기간의 변화양상을 적극 고려한 가족복지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⑦ 경제적 풍요의 추구, 여성의 자아성취에 대한 욕구증대, 출산부담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기혼여성의 취업희망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아울러 가정 및 직장생활의 양립을 위한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⑧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만연 등으로 인하여 가족갈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핵가족 제도 하에서는 이를 조정 및 중재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가정폭력 등 심각한 상태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아 부부관계를 포함한 가족관계의 질을 저하시켰으며, 심지어 가족해체로 연결될 우려도 없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적은 수의 자녀를 둠으로써 더욱 강하게 나타나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나. 2003년 연구의 주요 결과와 제언

1) 주요 결과

① 부인의 임신경험은 감소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변화를 보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며, 임신소모로 종결되는 임신은 점차 감소하고 정상출생이 증가하여 바람직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높은 피임실천율과 장기간에 추진된 모자보건사업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 자연유산, 사산

등의 임신소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② 1989년 가족계획사업의 축소와 1996년 인구증가억제정책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사회변화, 개인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IMF 경제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읍·면부지역보다도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동부지역의 출산율이 현저히 낮음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현재의 출산수준이 쉽게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한다.

③ 유배우부인들의 출산수준은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최근의 출산율 저하의 한 요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핵심적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즉, 유배우출산율의 저하가 합계출산율의 저하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합계출산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유배우출산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차원에서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④ 정부지원에 의한 피임보급이 폐지되었고, 피임비용은 스스로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임의 생활화에 힘입어 피임실천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피임실천자가 여성위주에서 이제는 남성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어 양성 평등적인 측면이 엿보여 바람직한 양상을 보였다. 그렇지만 질적 측면에서 피임실천은 종전보다도 오히려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특히 피임실천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피임비실천과 피임실패로 인한 임신이 인공임신중절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⑤ 추가자녀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임신노출상태의 부인이 각 연령층에 산재해 있었다. 이와 같은 피임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이 임신할 경우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부인의 인공임신중절률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으나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인공임신중절이 불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회윤리적 측면, 준법적 측면, 그리고 모성건강의 측면에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하여 태아 성감별을 위한 불법행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더군다나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도 자행되고 있어 철저한 단속과 의료인에 대한 윤리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

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⑥ 임산부의 산전 및 산후수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시설분만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안전분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율의 상승은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최근 출생아 중 저체중아와 과체중아가 나타났다. 특히 저체중아는 임신 중 산모의 음주, 흡연, 약물복용 및 조기분만과 산모의 건강상의 이유 등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모유수유율이 증가하지만 여전히 낮은 상태이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자보건차원의 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⑦ 현존자녀수는 다소 증가하였고, 이상자녀수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특히, 이상자녀수와 현존자녀수의 차이가 크고, 현존자녀수의 증가현상이 출산율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미혼층의 초혼연령 상승과 독신율 증가 등이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⑧ 자녀가치관과 혼인가치관은 개인주의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자녀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부모의 책임을 대학 졸업시까지로 생각하는 부모가 가장 많았다. 남아선호 가치관이 약화되고 있어 바람직한 양상을 보였으나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우려된다. 이러한 가치관이 실제 행위로 연결될 경우 불법적 의료행위에 의한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⑨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와 이혼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로의 변화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문제로서 이혼가정의 자녀양육 문제를 들 수 있다. 초혼연령의 상승, 결혼행태의 변화, 자녀출산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가족주기의 전체 기간 및 단계별 기간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⑩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아직까지 전형적인 M자형 곡선을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이 법적으로 가능한 연령인 15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다가 결혼적령기인 25~29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30~34세를 기점으로 다시 급격히 증가하여 40~44세에 절정을 이루다 다시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여성의 취업과 결혼, 출산 및 육아가 밀접

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⑪ 기혼자녀들의 부모와의 동거율은 매우 낮았고, 비동거부모와 접촉률은 높았으나 평균 횟수는 월 1회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자주 접촉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혼자녀들의 부모와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는 매우 빈번하였으나 내용적으로는 매우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게 제공한 신체적 도움, 정서적 도움, 그리고 경제적 도움의 비율이 부모로부터 받은 비율보다 높았다. 이는 부모공경이 우리 사회에 강하게 남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남편의 부모에게 제공하는 도움이 부인의 부모에게 제공하는 도움보다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⑫ 영유아 자녀의 돌봄은 어머니가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취업모인 경우에도 영유아 양육의 책임은 어머니가 상당히 부담하고 있었고, 비취업모인 경우에는 더욱 큰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학생의 자녀양육은 방과후 보육 또는 공부방 등에 의존하기 보다는 사설학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고, 이는 취업모 자녀의 경우에 더욱 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높은 사교육비 부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출산의 한 원인임에 틀림없다.

⑬ 자녀양육비는 가족생활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가구소득에서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고, 이러한 경향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욱 심하였으며, 중산층 이상의 가족에서도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자녀양육비 중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므로 이를 경감시킬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만이 가족생활의 안정과 출산율 제고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⑭ 가족관계는 남자가장중심에서 점차 부부중심의 가족관계가 중요시 되고 배우자에 대하여 만족하는 수준이 높음을 보였다. 또한 과거의 성 역할분담의 행동양식은 감소되고 있어 양성 평등적이고, 능력중심의 균등부담 형태로의 생활방식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성과 많은 남성은 전통적인 가부장제적 가치관의 향수에 젖어 사회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문화적 지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갈등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2) 주요 제언

① 적정 인구규모와 인구구조를 산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출산율을 제시하며, 장·단기 사회정책을 마련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인공임신중절, 사산, 자연유산 등으로 많은 임신이 소모되고 있는 것은 인구자질, 모성보호, 낮은 출산율 등의 측면에서 큰 문제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전·후 관리, 피임실천의 효율화, 피임보급 및 관리의 사각지대와 비효율적 피임방법 이용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기혼부인의 부정적 태도가 그들의 개별행위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홍보계몽을 강화하고, 양성 평등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태아 성감별의 불법의료행위의 단속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④ 인구자질향상을 위해서 모자보건사업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산전 및 산후 수진의 질적 향상, 저체중 및 과체중 출생아 예방, 자연분만의 증대, 모유수유율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⑤ 가족부양에서 부모와의 상호접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고 부모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정도는 용돈과 선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모봉양에 대한 기혼부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남편과 부인의 부모를 불문하고 성평등적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노력이 있어야겠다.

⑥ 낮은 출산율을 회복하고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의 내실화, 취학자녀의 방과후 지도 강화, 그리고 자녀양육비 지원 등의 정책이 과감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보육사업의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자녀양육수당의 지원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⑦ 이혼 예방 및 이혼 후 적응 측면에서 가정생활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실시와 함께 이혼 전 상담서비스 제공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며, 이혼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⑧ 저출산관의 정착,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한 가족주기의 전체 및 단계별 기간의 변화양상을 적극 고려한 가족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노인만의 생활기간이 연장되고 있음은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관심을 두어야 한다.

⑨ 경제적 풍요의 추구, 여성의 자아성취에 대한 욕구증대, 출산부담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기혼여성의 취업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아울러 가정 및 직장생활의 양립을 위한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⑩ 최근 가족관계는 성평등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도 민주적이고 평등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족에서는 여전히 가부장제적이고,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태도가 없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부부관계를 포함한 가족관계의 질을 저하시켰으며, 심지어 가족해체로 연결될 우려도 없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적은 수의 자녀를 둠으로써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자녀양육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 2006년 연구의 주요 결과와 제언

1) 주요 결과

① 수년간 정체를 보이던 부인의 임신경험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전체 임신 중 정상출생 비율은 증가하였고, 임신소모로 종결되는 임신은 점차 감소하여 바람직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높은 피임실천율과 장기간에 추진된 모자보건사업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 자연유산, 사산 등의 임신소모가 뚜렷이 존재하고 있음은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② 198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던 합계출산율이 IMF 관리체제 하에서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게 되면서 낮아졌고, 이제는 세

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수준을 보임으로써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출산력의 저하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고용기회의 확대, 초혼연령의 상승, 소자녀관의 형성에 따른 피임실천율의 증가, 인공임신중절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③ 남아를 출산하기 위한 노력이 일정수준에서 지속되고 있음으로 보아 한국사회에서 가부장제적이고, 전통적이라 비판하는 남아선호의식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는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④ 1985년 이래 피임실천율은 7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1997년에는 80%까지 상승하여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006년의 피임실천율은 79.6%로 2000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고, 2003년 보다는 다소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 등의 임신소모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은 효과적인 피임방법의 사용에 의한 피임실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⑤ 최근 우리나라 부인의 인공임신중절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었으며, 2003년 조사에서는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06년 조사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하여 바람직한 양상을 보여 주었다. 그렇지만 가장 비중이 높은 임신소모로서의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불원임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과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한국사회에서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주요 이유는 자녀불원과 터울조절이었다. 1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높은 피임실천율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인들에게서 인공임신중절이 사라지지 않음은 임신과 출산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에 노출된 부인이 많이 있고, 아울러 지나치게 안이한 피임수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⑥ 태아의 성감별후 여아인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시키는 행위를 직접 경험한 경우가 첫 인공임신중절의 2.5%,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2.6%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부장제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가치관의 발로(發露)라 판단되며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불법행위이므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⑦ 최근 3년간의 출생아를 분석한 2006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시설분만율은 100%이었으며, 이 중에서 0.1%만이 조산소에서 분만하였고 나머지 99.9%는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분만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제왕절개율이 35.0%로 2003년보다 다소 낮았지만 여전히 OECD의 권고수준인 5～15%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⑧ 저체중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3.2%를 차지하였고, 과체중 출생아는 5.5%이었다. 따라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모유가 아기의 건강이나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 좋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데, 최근 모유수유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바람직한 양상을 보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고, 1980년대의 약 50% 수준보다는 현저히 낮아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⑨ 자녀가치관은 약화되고 있었으며, 소자녀관의 정착뿐만 아니라 자녀의 불필요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었다. 또한 남아선호 가치관도 약화되어 양성평등사회로 점차 이행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상자녀수는 2.3명으로 미미하나마 증가하였는데, 합계출산율의 저하와는 괴리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상자녀수에 대한 가치관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⑩ 적절한 자녀양육태도를 보이는 부모(74.8%)가 많으나 부적절한 자녀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25.2%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대부분의 한국가족은 자녀양육의 책임을 대학 졸업 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자녀양육부담은 소자녀관 정착에 일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⑪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기혼여성들은 57.7%이었으며, 소극적 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는 42.2%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치관에 의해 가족을 형성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저출산의 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관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는 개인, 가족, 사회의 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⑫ 이혼·별거당시 평균 1.34명의 18세 미만 자녀를 두었는데, 이혼·별거 가정의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대책이 적극 강구되어 건전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⑬ 부인의 결혼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족주기의 전체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가족주기의 첫 단계인 형성기의 시작시점인 초혼연령은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점점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고, 확대기의 시작시점인 첫째 아 출산시 부인연령도 초혼연령 상승의 영향으로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높았으며, 그리고 확대기의 종료시점이면서 확대완료기의 시작시점인 막내아 출산시 부인연령은 높아졌다. 또한 확대완료기의 종료시점이며 축소기의 시작시점인 자녀결혼 시작 시 부인연령은 최근으로 오면서 점차 상승하였고, 축소기의 종료시점이며, 축소완료기의 시작시점인 자녀결혼 완료시 부인연령은 상승하였으며,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해체기의 시작시점인 남편 사망시 부인연령은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⑭ 유배우부인 중 임신이 안 되어 노력하고 있는 경우는 7.9%, 이 중에서 불임진찰을 받은 경우는 54.2%로 높았는데, 특별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거나 아이를 갖기 위한 비용부담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있으므로 원인규명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며, 불임부부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강화되어져야 한다.

2) 주요 제언

① 임신과 출산 관련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첫째, 자연유산이 더욱 감소될 수 있도록 임신전 관리, 산전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보다 발전적으로 자연유산의 발생원인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임신소모의 다른 형태인 사산의 절대횟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건의료적 측면의 관심이 요구된다. 즉, 사산의 이유를 규명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

사하는 것이다. 셋째, 부인의 임신소모율을 획기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인공임신중절률은 생명존중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회지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넷째, 미혼청소년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홍보계몽을 강화하고 철저한 임산부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불원임신의 예방을 위한 효과가 높은 피임방법의 사용을 홍보한다. 임신 전·후에 필요한 올바른 정보가 많이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실천하는 개인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만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② 피임과 불임 관련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첫째, 보다 효과적, 효율적, 성평등적 측면의 피임방법에 의한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불임대책은 불임부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복지적 관점과 불임을 질병으로 간주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처럼 보건의료적 측면에서도 접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불임에 대한 심층연구가 국가차원에서 추진되고, 불임치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③ 인공임신중절 관련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첫째, 경제적 이유, 소자녀관 정착 등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양한 사회적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피임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홍보계몽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원치 않는 임신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효과적인 피임보급과 피임방법에 대한 정확한 사용방법의 교육이 적극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피임보급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자궁내장치의 교체시기 등에 대한 홍보계몽이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성 평등적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④ 모자보건 관련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첫째, 제왕절개의 실시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OECD의 권고수준인 5~15%선으로 낮추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생아의 저체중 또는 과체중을 예방하기 위한 산모의 건강관리 및 임신 중 생활습관 관리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모유수유는 건강한 모체를 유지하고,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단순히 출산여성과 신생아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전체와 사회가 함께 지지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취업여성이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의 모유수유실 의무설치, 모유수유를 위한 휴식시간 제공, 직장내 모유수유실 의무설치 등과 같은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⑤ 가치관 관련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첫째, 결혼, 이혼 및 재혼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는 가족의 안정성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출산 등 가족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혼관 형성을 위한 학교와 사회교육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가치관확립을 위한 사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가족친화적인 고용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의 인식 및 태도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재혼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생활교육,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⑥ 결혼과 가족주기 관련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첫째, 이혼가정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적 차원에서 경제활동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준의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등의 지원과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기업의 가족친화적인 고용문화 조성, 질 높고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이혼가족의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위해 상담서비스 제공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 노인단독가구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노후생활 보장책으로서 경제적인 지원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증대 및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등의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을 위한 지원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2절 정책동향

1. 저출산대책의 최근 동향

①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이다. 이는 단기목표를 보육료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 확대('09.7) 및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에 양육수당 지원('09.7)에 두고 있으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08년)차상위 계층→('09년)소득하위 50%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다. (중·장기 정책목표는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및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중산층(소득하위 80%)까지 확대하는데 두고 있다.

② 보육전달체계의 효과성 제고이다. 단기적으로는 보육전자바우처제도(i-사랑카드) 도입('09.9월)과 e-보육시스템을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육종사자 자격관리 및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등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 등에 두고 있다.

③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및 역량 강화이다. 단기적으로는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CYS-Net) 확대, 방과후 서비스 지원사업 및 드림스타트 사업지역의 단계적 확대에 두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및 방과후 돌봄 강화로 가난 대물림 및 위기노출 예방, 역량강화,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등에 두고 있다.

④ 의료지원을 통한 저출산 극복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난임가정의 시술비 지원횟수(2회→3회) 등 확대와 예방접종 참여 의료 기관수 확대(목표 : 5,070개소)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난임가정 시술비 지원비용 확대('12년까지 100%) 및 12세 이하 아동의 예방접종률을 퇴치 수준(95%이상)으로 향상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주요 내용 및 정책수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및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양육수당 지원을 통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한다.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을 차상위(39만명)에서 소득하위 50% 이하(61만명)까지 확대('09.7)한다.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8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12년). 또한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70%에 해당하는 기준소득 마련('09.7)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간소화·합리화하고, 차상위 1세 이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급 ('09.7, 월10만원, 324억원)한다.

②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제도) 도입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부모의 복지체감도 증대 및 행정 효율화를 제고한다. 부모에게 i-사랑카드(바우처)를 발급하고 모든 어린이집에서 금융결제망을 활용하여 보육료를 납부('09. 9 전국확대)토록 한다. 또한 보육관련시스템을 연계·통합한 보육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린이집 정보의 접근성 강화로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보육교사자격관리시스템과 보육시설평가인증관리시스템 통합 예정이다('10년도 56억원 반영).

③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의 내실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저소득·한부모·조손 가정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호·학습지도·급식 등 종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의 건강한 방과후 생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학습, 봉사 등) 제공 등 청소년생활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위기청소년의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이하 CYS- Net) 구축을 확대하고 있다. 고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방문상담서비스를 확대하여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지역을 확대하여('08년 32개→ '09년 75개), 사업 수혜자를 추가 발굴하며('08년 22천명→'09년 52천명), 시·군·구별 드림스타트 전담팀 구축, 아동복지 관련 민·관의 지역자원 연계망을 확대하여 통합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면서 사업 집행과정 통일화 및 사례관리 DB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용 전산시스템(통합정보시스템)을 보완 구축한다.

④ 의료지원을 통한 저출산 극복방안으로는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횟수(2→3회) 및 기초수급자 회당 지원금액을 평균시술비의 90% 수준(255→270만원)으로 확대('09.1월~)하고, 인공수정시술비 신규지원(1회 50만원내 3회까지 4만건), 맞벌이부부 지원대상 확대 및 소득기준을 개선한다('10.1월~). 12세 이하 아동(384만명)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의료기관에 일부 위탁하여, 예방접종 비용 지원, 지원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09년 171억원)한다.

2. 가족정책의 최근 동향

최근 한국사회는 경제여건의 악화로 취약위기가족이 증가하고 가족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다. 즉, 가구주의 실직증가와 가구소득의 감소는 많은 가족이 경제적,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가족의 기능 및 역할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의존적 가족원인 자녀의 돌봄기능에 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증가에 의하여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가족의 특성상 다양한 정책 욕구가 분출되고 있다(김승권 외, 2009).

이러한 한국가족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가족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국 가족정책의 비전은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 두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목표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가족돌봄 통합 지원망 구축, 다양한 가족의 자립 역량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예방중심의 가족복지서비스 지원 등 다섯 가지이다.

가족정책의 기본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전달체계의 효율화, 지역단위의 가족지원 연계 및 자조모임 활성화, 아동의 돌봄기능 강화 및 위기가족 상담체계 구축 운영,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및 취약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적 지지 및 자원연계사업 추진,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기업의 가족친화적 제도 도입 및 인증참여 유도를 위한 체계적 홍보 및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발굴 등이다. 이를 요약하면 [그림 2-1]과 같이 제시된다.

〔그림 2-1〕 한국 가족정책의 비전과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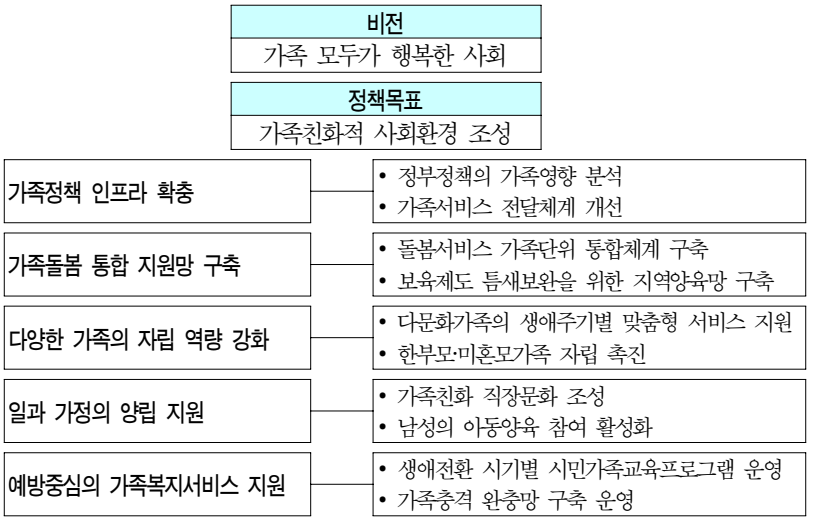

정부조직상의 가족정책 각급 체계의 주요 기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는 첫째,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 둘째, 시책강구를 위하여 가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 셋째, 민주적인 가족형성,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한 노력 등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성보호와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고, 건강한 가정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며, 가족원에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가정생활에 관한 정보관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

며, 그리고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가족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지원,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안정된 주거생활,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직장과 가정의 양립, 음란물, 유흥가, 폭력 등 위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그 밖의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취업여성의 임신·출산·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구, 장애인가족, 그룹홈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하여 아동의 행복추구권 및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육 및 방과후 서비스, 성평등한 육아휴직제 활용을 적극 확대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보험료 산정·부과, 급여 등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사회, 교육·문화, 체육, 지역사회개발 등 각 분야의 제도·정책 및 사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가족우대 방안을 강구하고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종합적인 건강증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강구하고,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원이 있는 가족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아울러 가족원 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 및 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 교육, 부모교육, 가족상담, 평등가족 홍보 등을 추진하며, 가정폭력이 있는 가족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원의 성장을 위해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문화[5]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며, 그리고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육아, 산후조리, 간병 등을 돕기 위하여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지원하고, 이혼전 상담, 이혼조정을 내실화 하여야 하며, 이혼가정의 가족원이 자녀양육, 재산, 정서 등의 제반 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의 건강가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정책은 한국전쟁 이후 전쟁미망인의 보호·지원을 위한 모자보호시설 설치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험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근거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과 지원내용의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의 <표 2-2>와 같다(김승권 외, 2009. 재인용).

5) 가정생활문화에는 가족여가문화,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합리적인 소비문화, 지역사회 공족단위문화 등이 포함됨.

〈표 2-2〉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주요 지원내용의 변화

연도	지원내용
1955	•한국전쟁 이후 전쟁미망인의 보호·지원을 위한 모자보호시설 설치
1989	•모자복지법 제정
1992	•저소득 여성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
1995	•저소득 남성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1998	•모자복지법 개정
1999	•모자복지법 개정
2001	•아동양육비 월 16,000원
2002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
2004	•아동양육비 월 20,000원
2005	•아동양육비 월 50,000원
2006	•모·부자복지법 개정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을 보호대상으로 포함
2007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 •조손가족을 보호대상으로 포함
2008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8세 미만으로 확대
2009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10세 미만으로 확대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009.

한부모가족지원법은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을 통해 저소득 여성 한부모가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에는 「모·부자복지법」으로, 2007년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재개정되었고 대상자도 점차 확대되어 2008년부터 미혼모·부를 포함하는 남녀 한부모가족 뿐만 아니라 조손가족도 포함되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정책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을 통해 모자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아동교육비, 아동부양비 등 복지급여 지급과 복지자금 대여를 시작하였다. 1992년에는 저소득 여성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실업고교생 자녀에 대한 학비 및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졌다. 1995년에는 자녀지원이 남성 한부모가족까지 확대되었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업기반조성을 위한 장기저리복지자금 대출사업이 실시되었다. 1998년에는 모자복지위원회가 폐지되었다.

2000년에는 고교생의 학비지원이 실업계에서 인문계까지 확대되었으며,

2001년에는 아동양육비를 아동 1인당 월 16,000원으로 지급하였으며, 2004년에는 월 20,000원, 2005년에는 월 50,0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2002년, "복지정책의 양성평등 효과성제고 및 대안연구" 결과 빈곤여성 사례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4년에는 무상교육 확대로 인하여 중학생 자녀의 학비 지원은 중단되었다.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면서 아동의 정의 중에서 취학중인 경우를 20세 미만에서 22세 미만으로 보호기간을 연장하였다. 2008년에는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였고, 2009년에는 10세 미만으로 재확대하였다.

03

혼인가치관 및 자녀가치관의 변화

제3장 혼인가치관 및 자녀가치관의 변화

제1절 혼인가치관의 변화

전통사회에서는 결혼이 필수사항이었으나 최근에는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식은 점차 약화되어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도 증가하고 있다. 즉, 과거의 가계계승이나 사회적 관습에 의해서 결혼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던 규범에서 벗어나고 있다. 과거 전통적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금기되었던 이혼도 산업화 사회로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의 증가, 개인주의 가치관 팽배, 여성의 사회진출 급증 등으로 전통적 가족중심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가족의 정서적 유대감의 약화로 인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혼의 증가와 함께 재혼에 관해서도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혼 필요성의 약화로 인해 미혼율 증대와 초혼연령 상승이 이루어졌고, 이는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혼인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

1. 혼인가치관

2009년 조사에서 15~64세 기혼여성들의 결혼의 필요성에 관한 태도를 살펴보면, ‘반드시 해야 한다’ 28.5%, ‘하는 편이 좋다’ 32.1%로 60.6%가 결혼

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중립적인 태도인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35.0%, 부정적인 태도인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4.4%이었다.

이를 2000년, 2003년, 2006년과 비교하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태도는 2000년 26.2%에서 2003년 25.7%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6년 이후에는 27.9%, 2009년 28.5%로 증가양상을 보였다. '하는 편이 좋다'는 비교적 약한 긍정적 태도는 2000년 29.4%에서 2003년 28.7%로 감소하였다가 2006년 29.8%에서 2009년 32.1%로 증가하였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중립적인 태도는 2000년 38.2%에서 2003년 37.1%, 2006년에 다시 38.2%에서 2009년 35.0%로 감소하였다.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부정적인 태도는 2000년 5.4%에서 2003년 7.9%로 증가하였다가 2006년 4.0%로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09년 본 조사에서는 4.4%로 정체를 보였다.

2009년 조사결과를 부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지역별로 살펴보면, 결혼에 대한 적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는 읍·면부지역에서 강하여 극단적인 양상을 보였고, 비교적 약한 긍정적인 태도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은 동부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40대 이하 연령층은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된다'가 가장 많았고, 5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가 가장 많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은 50세 이상이 42.0%로 높았고, 다음은 15~29세 연령층으로 25.7%이었으며, 40대 22.7%, 30대 19.3%로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결혼에 대하여 중립적인 태도인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됨'의 비율도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30대 연령층이 43.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대 39.3%, 15~29세 연령층 37.1%이었으며, 50세 이상 연령층은 23.5%로 가장 낮았다. 따라서 연령이 낮아질수록 결혼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에서 중립적인 태도로 변화하고 있음이 전반적인 현상이며, 최근의 저출산의 우려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29세 이하 연령층의 결혼에 대한 관심이 30~40대 연령층보다는 다소 강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결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인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응답한 부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많았으며, 특히 40대가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년 부인의 경우 가사,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의 부담으로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결혼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중학교 이하 학력의 부인들은 39.9%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대학 이상 학력의 부인들은 22.0%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 결혼에 대한 절대적 가치는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율은 학력이 낮은 층에서도 높게 나타나 연령에 따른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결혼상태별로는 결혼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율은 사별인 경우 가장 높았고, 이혼·별거의 경우 가장 낮았다. '하는 편이 좋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율은 유배우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사별, 이혼·별거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적극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태도를 모두 포함할 경우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사별한 경우가 67.1%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와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비율은 이혼·별거의 경우 가장 높아 결혼에 대한 태도에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별부인이 고연령층일 가능성이 높아 유배우부인 및 이혼·별거부인보다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혼·별거부인의 경우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본인 결혼의 실패 경험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부인보다 비취업부인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소극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는 비취업부인보다 취업부인이 약간 많았다. 이는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기혼여성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이나 국가의 지원체계가 잘 갖추어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하겠다.

〈표 3-1〉 15~64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결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반드시 해야 함	하는 편이 좋음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됨	하지 않는 편이 좋음	모르겠음	계(수)	χ^2
2000[1)]	26.2	29.4	38.2	5.4	0.8	100.0(10,601)	
2003[2)]	25.7	28.7	37.1	7.9	0.7	100.0(11,145)	
2006[3)]	27.9	29.8	38.2	4.0	-	100.0(9,693)	
2009[4)]	28.5	32.1	35.0	4.4	-	100.0(9,791)	
지역							
동부	27.5	32.6	35.8	4.1	-	100.0(8,197)	42.6***
읍·면부	34.1	29.6	30.6	5.7	-	100.0(1,594)	
연령							
15~29세	25.7	34.5	37.1	2.7	-	100.0(603)	
30~39세	19.3	32.3	43.8	4.6	-	100.0(2,699)	554.4***
40~49세	22.7	32.8	39.3	5.2	-	100.0(3,128)	
50세 이상	42.0	31.0	23.5	3.6	-	100.0(3,35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9.9	29.6	25.2	5.3	-	100.0(2,611)	343.8***
고등학교	26.0	30.4	38.3	5.3	-	100.0(4,237)	
대학 이상	22.0	36.8	39.0	2.2	-	100.0(2,941)	
결혼상태							
유배우	28.8	32.9	34.6	3.6	-	100.0(8,745)	247.9***
사별	38.7	28.4	26.5	6.5	-	100.0(476)	
이혼·별거	15.6	22.9	47.4	14.2	-	100.0(572)	
현취업여부							
취업	28.7	31.6	43.8	4.8	-	100.0(4,734)	5.4
비취업	28.4	32.6	35.2	3.9	-	100.0(5,057)	

주: *** p<.001

자료: 1)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2)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3) 김승권 외,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4) 본 조사결과

남성의 경우,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성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율도 낮았다. 남성의 특성별로 보면, 지역별로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편이 좋다'는 적극적인 태도와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는 동부지역보다 읍·면부지역에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이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가 고등학교 이상보다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학력이 낮을 경우 높은 연령층일 가능성이 높아 전통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된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은 유배우자가 사별자나 이혼·별거자보다 높았으며,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태도를 보인 비율은 유배우자 및 사별자보다 이혼·별거자의 경우가 더 높았다.

〈표 3-2〉 15세 이상 기혼남성의 특성별 결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반드시 해야 함	하는 편이 좋음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됨	하지 않는 편이 좋음	모르겠음	계(수)	χ^2
전체	39.8	32.1	25.4	2.8	-	100.0(970)	
지역							
동부	38.4	31.9	26.9	2.7	-	100.0(765)	5.2
읍·면부	44.9	32.7	19.5	2.9	-	100.0(205)	
연령							
15~29세	31.0	55.2	13.8	-	-	100.0(29)	
30~39세	36.2	31.5	29.2	3.1	-	100.0(130)	41.8***
40~49세	29.3	31.7	35.9	3.1	-	100.0(287)	
50세 이상	46.7	30.7	19.8	2.8	-	100.0(50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1.6	32.7	22.8	3.0	-	100.0(303)	5.5
고등학교	38.1	30.5	27.8	3.7	-	100.0(407)	
대학 이상	40.0	33.8	24.6	1.5	-	100.0(200)	
결혼상태							
유배우	50.9	29.1	17.7	2.3	-	100.0(570)	88.1***
사별	34.4	40.6	23.4	1.6	-	100.0(64)	
이혼·별거	22.0	35.6	38.6	3.9	-	100.0(337)	
현취업여부							
취업	39.2	31.9	26.6	2.3	-	100.0(747)	5.4
비취업	41.3	33.2	21.1	4.5	-	100.0(223)	

주: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2. 이혼가치관

이혼에 대한 태도는 이혼에 관해 개인이 지향하는 가치관 및 관념, 신념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혼에 대한 개인의 행위방향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혼 태도의 변화에 따라 이혼의 증감을 예측할 수 있다. 이혼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는 결혼해체를 반대하는 힘으로 작용하여 결혼의 결속력을 증가시키며, 이혼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는 결혼해체를 찬성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최근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서 허용적인 태도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는 이혼 증가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이소희 외, 1998; 김승권 외, 2006에서 재인용).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혼의 원인이 가치관의 변화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인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3-3>과 같다. 2009년 조사에서 15~64세 기혼여성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가급적 해서는 안 됨'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음' 31.8%,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하거나 하는 것이 좋음' 20.5%, '절대로 해서는 안 됨' 8.4% 등의 순이었다.

이를 2000년, 2003년, 2006년과 비교하면, '가급적 또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비율이 2000년 52.8%에서 2003년 50.4%로 감소하였고, 2006년에는 50.8%로 약간 증가하였다가 2009년 47.5%로 다시 감소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는 이혼에 대해 비교적 약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은 2000~2006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2000년 30.2%, 2003년 30.3%, 2006년 34.8%, 2009년 31.8%).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와 '이유가 있으면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00년 15.5%에서 2003년 18.6%로 3.1%pt 증가하였으며, 2006년 13.8%로 2003년에 비해 4.8%pt 감소하였다가 2009년에는 20.5%로 다시 증가하여 연도별 일관성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최근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혼을 수용하는 부인의 비율(반드시 하는 것이 좋음+하는 것이 좋음+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음)은 2000년 45.7%에서 2003년 48.9%로 증가하였다가 2006년 48.6%로 다소 감소하는 듯했으나 2009년에는 52.3%로 다시 증가하였다.

이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의 증가는 이혼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

표로 이해되므로 향후 가족불안정이 증가될 우려가 있다. 물론 이혼자체를 문제로 볼 수는 없지만 이혼의 증가는 출산율 회복과 자녀양육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를 많이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사회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부인의 특성별로 이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이유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은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높았으며, 반대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은 읍·면부지역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일수록 '이유가 있을 경우 하는 편이 좋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혼은 '가급적 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보이는 비율은 고연령층일수록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와 '하는 것이 좋다'는 비율이 높았고,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는 비율도 고학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는 비율은 이혼·별거부인이, '가급적 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비율은 사별이나 이혼·별거부인보다 유배우부인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여부별로는 취업부인이 비취업 부인보다 이혼에 대해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반대로 비취업 부인은 취업부인보다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남성은 62.2%가 '가급적 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응답하여 여성(47.5%)보다 높았고,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와 '하는 것이 좋다'는 비율은 여성이 높게 나타나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이혼에 대해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경우에도 이혼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율은 동부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나 '가급적 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동부지역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여 여성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가급적 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비율은 29세 이하 젊은 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별로는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는 중학교 이하보다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에서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표 3-3〉 15~64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이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이유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음	가급적 해서는 안 됨	절대로 해서는 안 됨	모르겠음	계(수)	χ^2
	반드시 하는 것이 좋음	하는 것이 좋음						
2000	3.3	12.2	30.2	38.0	14.8	1.4	100.0(10,598)	
2003	3.3	15.3	30.3	36.2	14.2	0.7	100.0(11,145)	
2006	2.2	11.6	34.8	40.8	10.0	0.5	100.0(9,693)	
2009	2.0	18.5	31.8	39.1	8.4	0.2	100.0(9,796)	
지역								
동부	2.0	19.5	32.2	38.5	7.5	0.2	100.0(8,203)	90.0***
읍·면부	2.1	13.0	29.4	42.1	8.4	0.4	100.0(1,593)	
연령								
15~29세	3.3	21.9	39.5	29.2	5.8	0.3	100.0(603)	
30~39세	2.1	22.0	36.5	34.2	4.8	0.3	100.0(2,699)	449.9***
40~49세	2.4	19.3	35.5	35.6	7.0	0.2	100.0(3,130)	
50세 이상	1.3	14.3	23.1	48.0	13.1	0.1	100.0(3,36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3	15.9	23.3	45.7	13.5	0.3	100.0(2,617)	272.6***
고등학교	2.1	18.7	33.9	37.5	7.5	0.3	100.0(4,238)	
대학 이상	2.5	20.4	36.3	35.4	6.6	0.2	100.0(2,945)	
결혼상태								
유배우	1.8	17.9	31.9	39.6	8.5	0.3	100.0(8,752)	192.7***
사별	0.8	13.5	24.6	47.6	13.5	-	100.0(475)	
이혼·별거	5.8	31.1	36.0	24.3	2.6	0.2	100.0(572)	
현취업여부								
취업	2.2	18.8	31.8	38.5	8.4	0.2	100.0(4,736)	3.9
비취업	1.8	18.2	31.7	39.7	8.4	0.2	100.0(5,062)	

주: *** p<.001
자료: <표 3-1>과 동일

결혼상태별로도 차이를 보여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는 비율은 이혼·별거부인이 가장 높아 31.5%였으며, 유배우부인의 경우 가장 낮아 17.0%였다.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율은 유배우부인이 가장 높았다. 취업여부별로는 취업부인과 비취업부인 간에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4〉 15세 이상 기혼남성의 특성별 이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하는 것이 좋음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음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음	가급적 해서는 안 됨	절대로 해서는 안 됨	모르겠음	계(수)	X^2
전체	1.2	13.7	22.5	50.7	11.5	0.3	100.0(968)	
지역								
동부	1.4	14.5	20.6	53.4	9.9	0.3	100.0(761)	21.3**
읍·면부	0.5	11.1	29.5	41.1	17.4	0.5	100.0(207)	
연령								
15~29세	-	10.3	17.2	58.6	13.8	-	100.0(29)	
30~39세	1.5	10.8	20.8	49.2	16.2	1.5	100.0(130)	17.0*
40~49세	2.1	15.3	25.0	51.7	5.6	0.3	100.0(288)	
50세 이상	0.8	14.0	22.4	49.6	13.2	-	100.0(5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3	12.3	24.9	49.5	12.6	0.3	100.0(301)	10.9
고등학교	1.2	16.2	20.9	50.6	10.6	0.5	100.0(407)	
대학 이상	2.3	11.5	22.3	52.3	11.5	-	100.0(260)	
결혼상태								
유배우	0.5	8.8	17.0	57.5	15.8	0.4	100.0(569)	97.2***
사별	-	33.3	23.8	38.1	4.8	-	100.0(63)	
이혼·별거	2.7	18.5	31.5	41.7	5.4	0.3	100.0(336)	
현취업여부								
취업	1.5	12.9	22.8	50.0	12.5	0.4	100.0(746)	7.4
비취업	0.5	16.7	21.6	53.2	8.1	-	100.0(222)	

주: * p<.05, ** p<.01,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다음은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에 대한 응답결과로, 여성응답자는 67.8%가 찬성하지 않아 자녀가 있을 경우 이혼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지역보다는 읍·면부지역 거주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이혼·별거인 여성들은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에 대해 58.5%가 찬성하고 있어 유배우(31.1%)나 사별(20.2%)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혼·별거를 경험한 여성응답자 본인의 경험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보다 비취업자가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 3-5〉 15~64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계(수)	X^2
2006[1)]	14.2	42.6	40.4	2.8	100.0(8,727)	
2009[2)]	17.0	50.8	31.4	0.8	100.0(9,792)	
지역						
동부	15.0	51.3	32.9	0.8	100.0(8,198)	155.8***
읍·면부	27.2	48.2	24.1	0.5	100.0(1,594)	
연령						
29세 이하	12.5	51.0	35.4	1.2	100.0(602)	
30~39세	11.0	50.5	37.9	0.6	100.0(2,701)	386.4***
40~49세	13.9	49.7	35.3	1.2	100.0(3,125)	
50세 이상	25.4	52.1	22.0	0.5	100.0(3,361)	
교육수준						
중학 이하	26.4	50.4	22.5	0.7	100.0(2,614)	300.7***
고등학교	15.4	49.7	34.1	0.8	100.0(4,234)	
대학 이상	10.9	52.8	35.5	0.8	100.0(2,944)	
결혼상태						
유배우	17.3	51.5	30.5	0.6	100.0(8,748)	295.4***
사별	25.9	53.9	19.8	0.4	100.0(475)	
이혼·별거	4.0	37.4	54.7	3.8	100.0(572)	
취업여부						
취업	17.5	49.3	32.2	1.0	100.0(4,736)	12.9**
비취업	16.5	52.2	30.7	0.6	100.0(5,058)	

주: ** p<.01, *** p<.001

자료: 1) 김승권 외,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2) 본 조사결과

남성응답자의 경우에는 25.0%가 찬성하였으며, 74.9%는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응답자에 비해 7.1%pt 높았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이혼에 대해 보다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보다는 읍·면부지역에서, 연령별로는 30~40대보다는 20대 이하와 50세 이상에서,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층일수록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결혼상태별로는 이혼·별거의 경우 유배우나 사별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여성 이혼·별거자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남성 36.7%, 여성 58.5%).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중인 경우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비취업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3-6〉 15세 이상 기혼남성의 특성별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계(수)	X^2
2006	21.9	43.3	32.3	2.5	100.0(1,387)	
2009	25.4	49.5	24.1	0.9	100.0(969)	
지역						
동부	22.7	50.6	25.7	1.0	100.0(763)	15.3**
읍·면부	35.4	45.6	18.4	0.5	100.0(206)	
연령						
29세 이하	21.4	60.7	17.9	-	100.0(28)	
30~39세	23.8	49.2	26.2	0.8	100.0(130)	
40~49세	18.1	53.0	26.8	2.1	100.0(287)	
50세 이상	29.5	47.3	23.0	0.2	100.0(49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7.2	50.5	21.6	0.7	100.0(301)	
고등학교	23.6	49.9	25.3	1.2	100.0(407)	
대학 이상	26.2	47.7	25.4	0.8	100.0(260)	
결혼상태						
유배우	35.0	47.6	17.4	-	100.0(569)	
사별	14.3	54.0	31.7	-	100.0(63)	
이혼·별거	11.3	51.9	34.3	2.4	100.0(335)	
취업여부						
취업	25.1	48.4	25.4	1.1	100.0(744)	5.3
비취업	26.1	63.6	20.3	-	100.0(222)	

주: ** p<.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X^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3-5>와 동일

3. 재혼가치관

재혼은 사별이나 이혼·별거로 인해 결혼의 해체경험이 있는 성인남녀의 재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혼을 한 경험이 있는 부부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가 결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한 것을 의미한다(김승권 외, 2006). 재혼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전체 부인의 20.9%는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는 적극적이거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49.5%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외 27.2%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표 3-7〉 15~64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재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반드시 하는 것이 좋음	하는 것이 좋음	해도 되고 안해도 됨	하지 않는 것이 좋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함	모르겠음	계(수)	X^2
2000	0.7	16.1	46.5	23.7	6.6	6.3	100.0(10,590)	
2003	0.8	19.9	47.2	21.5	5.9	4.6	100.0(11,127)	
2006	0.5	17.8	52.1	22.7	3.5	3.5	100.0(9,680)	
2009	0.4	20.5	49.5	23.4	3.8	2.5	100.0(9,797)	
지역								
동부	0.4	20.1	50.5	22.9	3.3	2.7	100.0(8,202)	61.2***
읍·면부	0.3	22.3	43.9	25.8	6.3	1.4	100.0(1,585)	
연령								
15~29세	0.5	21.6	57.5	13.9	2.8	3.6	100.0(603)	
30~39세	0.4	18.4	55.9	18.9	2.9	3.5	100.0(2,700)	224.4***
40~49세	0.4	17.7	50.4	25.2	3.8	2.4	100.0(3,127)	
50세 이상	0.4	24.5	42.1	27.0	4.6	1.5	100.0(3,36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6	23.1	40.0	29.2	5.5	1.6	100.0(2,617)	248.7***
고등학교	0.3	19.4	49.4	24.2	3.9	2.7	100.0(4,237)	
대학 이상	0.4	19.6	57.9	17.1	2.0	2.9	100.0(2,913)	
결혼상태								
유배우	0.4	20.6	49.9	22.8	3.6	2.7	100.0(8,751)	53.3***
사별	0.6	21.6	41.6	27.9	7.6	0.6	100.0(476)	
이혼·별거	0.2	17.2	49.2	28.5	3.7	1.2	100.0(571)	
현취업여부								
취업	0.4	20.3	49.0	24.1	3.9	2.3	100.0(4,737)	3.8#
비취업	0.4	20.8	50.0	22.8	3.7	2.6	100.0(5,058)	

주: # p<.10, *** p<.001
자료: <표 3-1>과 동일

이를 2000년, 2003년, 2006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재혼에 대한 적극적이거나 긍정적 태도는 2000년 16.8%, 2003년 20.7%, 2006년 18.3%로 감소하였다가 2009년 20.9%로 증가하였다. 반면, 소극적인 태도는 2000년 46.5%, 2003년 47.2%, 2006년에는 52.1%로 증가하였다가 2009년 49.5%로 다시 감소하였다. 부정적인 태도는 2000년 30.3%, 2003년 27.4%, 2006년 26.2%, 2009년 28.2%로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재혼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부인의 특성별로 재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재혼에 관해 적극적이거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율은 지역별로는 동부지역보다 읍·면부지역이

높았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율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높았다. 이 외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율은 동부지역(26.2%)보다 읍·면부지역(32.1%)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재혼을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는 태도를 보이는 비율은 29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22.1%였고, 30~39세 연령층에서는 19.2%로 낮아졌으나, 40세 이후 연령층에서부터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50세 이상 연령층은 24.9%였다. 그러나 재혼에 대해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율은 연령이 많을수록 낮아졌으며,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율은 연령이 많을수록 높았다.

〈표 3-8〉 15세 이상 기혼남성의 특성별 재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반드시 하는 것이 좋음	하는 것이 좋음	해도 되고 안해도 됨	하지 않는 것이 좋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함	모르겠음	계(수)	χ^2
전체	1.3	31.3	43.1	17.0	3.0	4.2	100.0(968)	
지역								
동부	1.2	29.8	45.5	16.1	2.5	4.9	100.0(762)	16.3*
읍·면부	1.9	36.9	34.0	20.4	4.9	1.9	100.0(206)	
연령								
15~29세	-	24.1	44.8	20.7	6.9	3.4	100.0(29)	
30~39세	4.6	33.6	29.8	20.6	5.3	6.1	100.0(131)	45.9***
40~49세	0.3	24.6	48.1	19.4	0.7	6.9	100.0(289)	
50세 이상	1.2	23.6	43.6	15.0	3.8	2.8	100.0(500)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0.7	31.8	44.7	18.2	3.6	1.0	100.0(302)	22.3*
고등학교	1.7	30.5	45.0	13.8	2.5	6.6	100.0(407)	
대학 이상	1.5	31.9	38.1	20.8	3.1	4.6	100.0(260)	
결혼상태[1]								
유배우	1.8	33.3	38.6	17.2	4.0	5.1	100.0(579)	
사별	-	39.1	46.9	10.9	-	3.1	100.0(64)	
이혼·별거	0.6	26.2	49.7	18.2	2.1	3.3	100.0(336)	
현취업여부								
취업	1.3	31.8	42.4	17.3	2.9	4.3	100.0(746)	0.8
비취업	1.3	29.1	45.3	16.6	3.1	4.5	100.0(223)	

주: * p<.05, *** p<.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교육수준별로는 재혼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비율은 고학력층일수록 높았으며, '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율은 저학력층일수록 높았다. 결혼상태별로는 재혼에 대한 적극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율은 사별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유배우, 이혼·별거의 순이었다. 재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율은 이혼·별거한 부인(32.2%)이 유배우부인(26.4%)이나 사별부인(35.5%)보다 높았다. 이는 사별부인이 현재 유배우 또는 이혼·별거중인 부인보다 고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혼에 대해서 전통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취업여부별로는 취업부인(28.0%)이 비취업부인(26.5%)보다 재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율이 높았다.

4. 남녀별 적정 결혼연령

15세 이상 기혼가구의 여성응답자가 생각하는 남성의 적정 결혼연령은 30~34세가 55.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25~29세로 25.3%였다. 남성의 평균 적정 결혼연령은 30.38세로 나타났다.

여성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동부지역과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모두 남성의 적정 결혼연령으로 30~34세가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30~34세가 가장 적합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25~29세였다. 교육수준별로는 전체적으로 30~34세가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대학 이상이 70.1%로 가장 높았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자와 사별, 이혼·별거자 모두 30~34세를 남성의 적정 결혼연령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현취업여부별로도 모두 30~34세를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비취업자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았다. 여성이 본 남성의 평균 적정 결혼연령은 읍·면부지역(29.95세)과 중학교 이하(29.68세)의 학력을 가진 여성응답자만이 30세 미만으로 보았고, 나머지는 30세 이상이었다(표 3-9 참조).

〈표 3-9〉 15~64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남성의 적정 결혼연령' 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세)

특성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계(수)	χ^2	평균	F값(T값)
전체	0.1	25.3	69.5	5.2	100.0(9,796)		30.38	
지역								
동부	0.0	23.6	70.9	5.4	100.0(8,202)	80.4***	30.47	(10.2***)
읍·면부	0.2	33.8	62.3	3.7	100.0(1,594)		29.93	
연령								
29세 이하	-	24.9	67.5	7.6	100.0(603)		30.70	
30~39세	0.1	17.5	74.4	8.0	100.0(2,702)		30.98	140.4***
40~49세	0.0	27.4	68.0	4.5	100.0(3,128)		30.20	
50세 이상	0.1	29.7	67.3	3.0	100.0(3,359)		30.0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1	33.5	63.8	2.7	100.0(2,617)		29.68	147.5***
고등학교	0.1	24.5	69.8	5.6	100.0(4,234)		30.42	
대학 이상	0.0	19.2	74.1	6.7	100.0(2,945)		30.78	
결혼상태								
유배우	0.1	25.1	69.6	5.2	100.0(8,752)	7.1#	30.40	3.8*
사별	-	29.9	65.7	4.4	100.0(475)		30.14	
이혼·별거	0.2	24.8	70.1	4.9	100.0(569)		30.37	
현취업여부								
취업	0.0	27.2	68.0	4.7	100.0(4,733)		30.30	(-4.2)
비취업	0.1	23.5	70.9	5.6	100.0(5,062)		30.47	

주: # p<.10, * p<.05, *** p<.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15세 이상 기혼가구의 남성응답자가 인식하고 있는 남성의 적정 결혼연령은 25~29세가 58.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30~34세로 38.8%였다. 남성응답자가 생각하는 남성의 평균 적정결혼연령은 29.62세였다.

남성응답자 특성별 남성의 적정 결혼연령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읍·면부지역 모두 30~34세, 25~29세의 순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읍·면부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34세를 남성의 적정 결혼연령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29세 이하 69.0%, 30~39세 58.5%), 40세 이상은 25~29세를 남성의 적정 결혼연령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40~49세 54.6%, 50세 이상 66.7%).

교육수준별로는 전체적으로 30~34세가 남성의 적정 결혼연령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고학력층일수록 높았다. 결혼상태별로는 사별, 이혼·별거, 유배우자 순으로 30~34세를 남성의 적정 결혼연령이라고 응답한 비

율이 가장 높았다. 현취업여부별로는 모두 30~34세를 남성의 적정 결혼연령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약간 높은 비율이었고, 25~29세가 남성의 적절한 결혼연령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취업자보다 비취업자가 더 높았다(표 3-10 참조).

〈표 3-10〉 15세 이상 기혼남성의 특성별 '남성의 적정 결혼연령' 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세)

특성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계(수)	X^2	평균	F값(T값)
전체	1.1	39.1	55.8	3.9	100.0(971)		29.62	
지역								
동부	1.3	36.6	57.6	4.6	100.0(766)	13.1**	29.73	(3.4)
읍·면부	0.5	48.8	49.3	1.5	100.0(205)		29.15	
연령								
29세 이하	-	31.0	69.0	-	100.0(29)		29.65	
30~39세	0.8	32.3	58.5	8.5	100.0(130)		30.14	2.9*
40~49세	2.8	38.5	55.9	2.8	100.0(288)		29.53	
50세 이상	0.2	41.6	54.4	3.8	100.0(502)		29.53	
교육수준[1)]								
중학교 이하	1.6	41.1	54.3	3.0	100.0(304)		29.42	1.9
고등학교	0.5	39.2	56.4	3.9	100.0(406)		29.63	
대학 이상	1.2	36.9	56.9	5.0	100.0(260)		29.78	
결혼상태								
유배우	1.2	42.8	53.0	3.0	100.0(568)		29.44	4.2*
사별	-	30.2	68.3	1.6	100.0(63)		29.64	
이혼·별거	0.9	34.9	58.6	5.6	100.0(338)		29.67	
현취업여부								
취업	0.4	38.5	56.6	4.3	100.0(748)	15.3**	29.74	(3.5)
비취업	3.2	41.6	52.9	2.3	100.0(221)		29.16	

주: * p<.05, ** p<.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X^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15세 이상 기혼가구의 여성응답자가 생각하는 여성의 적정 결혼연령은 25~29세가 67.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30~34세가 28.8%로 남성의 적정 결혼연령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여성의 평균 적정 결혼연령은 28.08세였다.

여성응답자의 특성별로 여성의 적정 결혼연령을 살펴보면, 지역에 관계없이 25~29세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읍·면부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30세 이상은 동부지역 30.4%, 읍·면부지역 20.8%로 동부지역이 여성의 적정

결혼연령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전체적으로 25~29세를 여성의 적정 결혼연령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40대 이후 연령층에서 더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여성의 적정 결혼연령을 29세 이하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고, 30세 이상은 낮았다.

〈표 3-11〉 15~64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여성의 적정 결혼연령' 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세)

특성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계(수)	χ^2	평균	F값(T값)
전체	2.8	67.7	28.8	0.7	100.0(9,795)		28.08	
지역								
동부	2.4	66.4	30.4	0.8	100.0(8,201)	76.9***	28.16	(8.9)
읍·면부	4.5	74.3	20.8	0.4	100.0(1,594)		27.67	
연령								
29세 이하	4.5	68.4	25.9	1.2	100.0(602)		28.07	
30~39세	1.7	58.2	39.0	1.1	100.0(2,702)	235.9***	28.58	86.5***
40~49세	2.7	70.0	26.6	0.7	100.0(3,127)		28.00	
50세 이상	3.5	73.1	23.2	0.3	100.0(3,358)		27.7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1	75.2	20.4	0.3	100.0(2,617)	204.9***	27.59	145.4***
고등학교	2.6	87.7	29.1	0.6	100.0(4,233)		28.08	
대학 이상	1.8	61.0	36.0	1.2	100.0(2,944)		28.51	
결혼상태								
유배우	2.6	67.4	29.3	0.7	100.0(8,751)	21.3**	28.10	9.2***
사별	4.0	73.3	21.6	1.1	100.0(476)		27.70	
이혼·별거	4.2	68.2	26.7	0.9	100.0(569)		28.01	
현취업여부								
취업	2.9	69.3	27.1	0.7	100.0(4,734)	13.1**	27.99	(-4.0)
비취업	2.7	66.2	30.4	0.7	100.0(5,061)		28.16	

주: ** p<.01,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결혼상태별로는 사별인 경우의 73.3%가 25~29세가 여성의 적정 결혼연령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4세 이하까지 포함하면 77.3%에 이른다. 이에 비해 유배우자와 이혼·별거인 경우는 30세 이후를 여성의 적정 결혼연령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현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모두 25~29세f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비취업자는 30세 이후를 여성의 적정 결혼연령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취업자보다 높은 편이었다. 여성의 평균 적정 결혼

연령은 동부지역(28.16세)보다 읍·면부지역(7.67세)이 낮았으며, 연령별로는 고령층이 여성의 적정 결혼연령을 낮게 잡고 있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배우자, 이혼·별거자, 현 취업중인 경우에 더 낮게 보았다(표 3-11 참조).

<표 3-12>은 남성응답자의 특성별로 여성의 적정 결혼연령에 대해 살펴본 결과이다. 전체적으로는 25~29세가 여성의 적정 결혼연령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70.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30~34세 이하 19.3%, 24세 이하 9.4% 등의 순이었으며, 여성의 평균 결혼적령은 27.21세였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읍·면부지역 모두 25~29세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30~34세였다. 20대 이하를 여성의 적정 결혼연령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읍·면부지역이 높았으며 30세 이상은 동부지역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전체적으로 25~29세를 여성의 적정 결혼연령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0~34세가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29세 이하를, 학력이 높을수록 30세 이상을 여성의 적정 결혼연령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인 경우 25~29세가 71.5%로 가장 높았다. 현취업여부별로는 모두 25~29세가 가장 높았으나, 취업자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았다. 30세 이후를 여성의 적정 결혼연령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높은 편이었다.

〈표 3-12〉 15세 이상 기혼남성의 특성별 '여성의 적정 결혼연령' 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세)

특성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계(수)	평균	F값(T값)
전체	9.4	70.8	19.3	0.5	100.0(969)	27.21	
지역[1)]							
동부	8.4	70.0	20.9	0.7	100.0(764)	27.36	(4.5)
읍·면부	13.2	73.7	13.2	-	100.0(205)	26.58	
연령[1)]							
29세 이하	3.4	82.8	13.8	-	100.0(29)	27.49	
30~39세	8.5	63.1	26.9	1.5	100.0(130)	27.57	1.6
40~49세	9.4	72.8	17.4	0.3	100.0(287)	27.15	
50세 이상	9.8	70.5	19.3	0.4	100.0(502)	27.13	
교육수준[1)]							
중학교 이하	11.2	71.7	17.1	-	100.0(304)	26.92	4.2*
고등학교	8.1	72.2	18.7	1.0	100.0(406)	27.24	
대학 이상	9.2	67.7	22.7	0.4	100.0(260)	27.45	
결혼상태[1)]							
유배우	11.3	71.5	16.5	0.7	100.0(568)	27.06	2.9#
사별	4.8	68.3	27.0	-	100.0(63)	27.51	
이혼·별거	7.1	70.1	22.5	0.3	100.0(338)	27.37	
현취업여부1[1)]							
취업	7.2	71.8	20.5	0.5	100.0(748)	27.32	(3.1)
비취업	16.7	67.1	15.8	0.5	100.0(222)	26.79	

주: # p<.10, * p<.05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5. 본인 결혼연령의 적절성 여부 및 그 이유

여성응답자 특성별로 본인의 결혼연령 적절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적절했다'는 응답은 48.0%였으며, '빨랐다'고 응답한 경우는 32.8%, 그리고 '늦었다' 19.1%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과 읍·면부지역은 모두 '적절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9.2%와 41.9%로 가장 높았다.

초혼연령별로는 19세 이하에 결혼한 여성응답자는 93.2%가, 그리고 20~24세에 결혼한 응답자의 48.9%가 '빨랐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25~29세에 결혼한 여성의 경우에는 63.2%가 '적절했다'고 응답하였으며, 30세 이상에 결혼한 여성은 '늦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80.0%로 가장 높아 초혼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 학력자는 '빨랐다'가 42.1%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학력자와 대학이상 학력자는 '적절했다'가 각각 47.3%와 55.6%로 가장 많았다. 즉, 학력이 낮을수록 본인의 결혼연령이 '빨랐다'가 많은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 '늦었다'가 많았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자와 사별자는 '적절했음'(49.2%, 39.8%)이 가장 많았으나, 이혼·별거자는 '빨랐음'이 가장 많았다(46.4%). 취업여부별로는 '적절했다'가 각각 취업자 47.9%, 비취업자 48.1%로 가장 많았다(표 3-13 참조).

〈표 3-13〉 15~64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본인의 결혼연령 적절성' 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빨랐음	적절했음	늦었음	모름	계(수)	χ^2
전체	32.8	48.0	19.1	0.1	100.0(9,790)	
지역						
동부	31.2	49.2	19.5	0.1	100.0(8,195)	59.5***
읍·면부	41.1	41.9	16.9	0.1	100.0(1,595)	
초혼연령						
15~19세	93.2	6.5	0.3	-	100.0(645)	
20~24세	48.9	46.3	4.7	0.1	100.0(4,381)	4775.5***
25~29세	11.5	63.2	25.1	0.1	100.0(3,907)	
30세 이상	1.2	18.4	80.0	0.4	100.0(85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2.1	40.6	17.2	0.1	100.0(2,617)	213.3***
고등학교	33.2	47.3	19.4	0.1	100.0(4,229)	
대학 이상	24.0	55.6	20.3	0.2	100.0(2,943)	
결혼상태						
유배우	31.6	49.2	19.2	0.1	100.0(8,741)	77.6***
사별	38.7	39.8	20.8	0.6	100.0(475)	
이혼·별거	46.4	37.0	16.6	-	100.0(571)	
현취업여부						
취업	34.1	47.9	17.8	0.1	100.0(4,727)	13.0**
비취업	31.5	48.1	20.3	0.1	100.0(5,062)	

주: ** p<.01,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다음의 <표 3-14>는 남성응답자의 특성별 본인 결혼연령의 적절성 여부를 살펴본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남성응답자의 44.9%가 본인 결혼연령이 '적절

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은 늦었다 31.5%, 빨랐다 23.6%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동부지역은 '빨랐다'와 '적절했다'가 읍·면부지역보다 다소 많았고, 읍·면부지역은 '늦었다'가 동부지역보다 약간 많았다. 초혼연령별로는 19세 이하에 결혼한 경우에는 모두 '빨랐다'고 응답하였으며, 20~24세 결혼한 경우에는 67.3%가 '빨랐다'고 응답하였다. 25~29세는 '빨랐다'가 15.9%인데 비해 '늦었다'는 22.5%였으며, 초혼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늦었다'가 72.9%로 매우 많았다.

〈표 3-14〉 15세 이상 기혼남성의 특성별 '본인의 결혼연령 적절성' 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빨랐음	적절했음	늦었음	모름	계(수)	χ^2
전체	23.6	44.9	31.5	-	100.0(969)	
지역						
동부	23.9	45.6	30.5	-	100.0(763)	1.5
읍·면부	22.8	42.2	35.0	-	100.0(206)	
초혼연령						
19세 이하	100.0	-	-	-	100.0(14)	
20~24세	67.3	30.6	2.0	-	100.0(196)	536.6***
25~29세	15.9	61.6	22.5	-	100.0(497)	
30세 이상	1.6	25.6	72.9	-	100.0(25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2.7	44.1	33.2	-	100.0(304)	7.5
고등학교	27.6	43.6	28.8	-	100.0(406)	
대학 이상	18.8	47.7	33.5	-	100.0(260)	
결혼상태						
유배우	18.5	49.1	32.4	-	100.0(568)	25.4***
사별	29.7	48.4	21.9	-	100.0(64)	
이혼·별거	31.5	36.8	31.8	-	100.0(337)	
현취업여부						
취업	24.3	44.1	31.6	-	100.0(748)	0.9#
비취업	21.6	47.3	31.1	-	100.0(222)	

주: # <.10,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교육수준별로는 모두 본인의 결혼연령에 대해 '적절했다'가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별로는 본인의 결혼연령이 '적절했다'는 응답이 모두 가장 많아 유

배우 49.1%, 사별과 이혼·별거가 각각 48.4%, 36.8%였으며, '늦었다'는 유배우자가, 그리고 '빨랐다'는 이혼·별거의 경우 가장 많았다. 현취업여부별로는 취업중인 경우와 비취업중인 남성 모두 '적절했다'가 가장 많았다.

결혼연령이 '빨랐다'는 여성응답자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배우자의 요구로' 28.9%, '집안어른의 권유' 25.8%, '특별한 이유 없음' 22.8%, '임신이 되어서' 16.4%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은 '배우자의 요구' 29.6%, '특별한 이유 없음' 25.2%, '집안어른의 권유로' 22.5%, '임신이 되어서' 16.6% 등의 순이었으나, 읍·면부지역은 '집안 어른의 권유로' 38.4%, '배우자의 요구' 26.1%로 많았으며, '배우자의 요구'는 동부지역에서, 그리고 '집안어른의 권유'는 읍·면부지역에서 더 많았다. 이 외에도 '임신이 되어서'가 읍·면부지역보다 동부지역에서 더 많았다.

초혼연령별로는 19세 이하는 '집안 어른의 권유로', 20~24세는 '배우자의 권유로', 30세 이상은 '배우자의 요구'가 조기 결혼의 주요 이유였으며, 그 다음으로 조기 결혼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집안 어른의 권유로'가 주요 이유였다. 그 외 '임신이 되어서'도 전체 연령층에서 높았는데, 특히 20~24세 연령층에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는 '집안어른의 권유로', 그리고 고등학교 이상은 '배우자의 요구'가 이른 결혼의 주요 이유였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와 이혼·별거는 '배우자의 요구로', 사별은 '집안어른의 요구'가 가장 많았다. 취업여부별로는 '배우자의 요구'가 취업자, 비취업자 모두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는 모두 '집안 어른의 권유로'가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표 3-15 참조).

〈표 3-15〉 15~64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결혼을 빨리한 이유[1)]

(단위: %, 명)

특성	집안 어른의 권유로	배우자의 요구로	임신이 되어서	배우자의 사정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음	기타	계(수)	χ^2
전체	25.8	28.9	16.4	5.5	22.8	0.6	100.0(3,202)	
지역								
동부	22.5	29.6	16.6	5.5	25.2	0.5	100.0(2,548)	87.7***
읍·면부	38.4	26.1	15.7	5.7	13.1	0.9	100.0(654)	
초혼연령[2)]								
19세 이하	38.1	28.9	13.0	5.7	13.0	1.3	100.0(599)	
20~24세	23.4	29.7	17.3	5.6	23.5	0.6	100.0(2,139	
25~29세	10.5	25.2	16.7	5.1	32.5	-	100.0(449)	
30세 이상	30.0	50.0	-	-	20.0	-	100.0(36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3.0	25.1	11.4	4.4	15.1	1.1	100.0(1,100)	298.6***
고등학교	16.2	30.4	21.4	5.5	26.0	0.5	100.0(1,398)	
대학 이상	17.8	31.9	14.3	7.4	28.3	0.3	100.0(706)	
결혼상태								
유배우	25.1	28.8	16.3	6.1	23.4	0.4	100.0(2,755)	78.2***
사별	44.1	30.1	7.0	1.6	16.1	1.1	100.0(186)	
이혼·별거	19.8	29.3	24.7	2.7	21.3	2.3	100.0(263)	
현취업여부								
취업	26.5	28.2	16.3	5.8	22.5	0.7	100.0(1,612)	1.9
비취업	25.0	29.5	16.6	5.2	23.0	0.6	100.0(1,594)	

주: 1) 결혼연령이 빨랐다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2) *** p<.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는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남성응답자의 경우 결혼을 빨리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 없음'이 37.7%로 가장 많았으며, '집안어른의 권유'(25.4%), '임신이 되어서'(20.2%), '배우자의 요구'(10.1%) 등의 순이었고, 이 중 '특별한 이유 없음'은 여성응답자에 비해 14.9%pt 많았다. 그러나 '배우자의 요구'는 여성응답자에 비해 18.8%pt 적었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읍·면부지역 모두 '특별한 이유 없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집안어른의 권유로'였으며, 특히 읍·면부지역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초혼연령별로는 19세 이하는 '임신이 되어서', 29세 이하에 결혼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 없음', '집안어른의 권유로' 등의 순이었으나 초혼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집안 어른의 권유'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초혼연령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 주었다. 이 외에도 '임신이 되어서'는 초혼연령이 19세 이하인 경우 많이 나타나 혼전임신으로 인해 결혼이 빨리 이루어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3-16〉 15세 이상 기혼남성의 특성별 결혼을 빨리한 이유[1)]

(단위: %, 명)

특성	집안 어른의 권유로	배우자의 요구로	임신이 되어서	배우자 사정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음	기타	계(수)
전체	25.4	10.1	20.2	6.6	37.7	-	100.0(228)
지역							
동부	23.3	10.6	20.6	6.7	38.9	-	100.0(180)
읍·면부	33.3	8.3	18.8	6.3	33.3	-	100.0(48)
초혼연령							
19세 이하	7.1	-	57.1	14.3	21.4	-	100.0(14)
20~24세	28.0	10.6	20.5	3.0	37.9		100.0(132)
25~29세	23.8	11.3	12.5	12.5	40.0	-	100.0(80)
30세 이상	50.0	-	25.0	-	25.0	-	100.0(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5.3	2.9	17.6	2.9	41.2	-	100.0(68)
고등학교	17.0	15.2	25.0	8.0	34.8	-	100.0(112)
대학 이상	30.6	8.2	12.2	10.2	38.8	-	100.0(49)
결혼상태							
유배우	29.5	9.5	6.7	10.5	43.8	-	100.0(105)
사별	42.1	-	26.3	-	31.6	-	100.0(19)
이혼·별거	19.0	12.4	21.4	4.8	32.4	-	100.0(105)
현취업여부							
취업	22.1	11.0	20.4	7.7	38.7	-	100.0(181)
비취업	37.5	6.3	18.8	4.2	33.3	-	100.0(48)

주: 1) 결혼연령이 빨랐다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는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교육수준별로는 '특별한 이유 없음'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순으로는 중학교 이하와 대학 이상은 '집안어른의 권유로'가, 그리고 고등학교는 '임신이 되어서'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유배우자의 경우에 '특별한 이유 없음', '집안어른의 권유로', '배우자의 사정 때문에' 등의 순이었으나 사별은 '집안어른의 권유로', 이혼·별거는 '특별한 이유 없음', '배우자의 요구로', '임신이

되어서', '집안어른의 권유로' 등의 순이었다. 취업중인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 없음', '집안어른의 권유로', '임신이 되어서' '배우자의 요구로' 등의 순으로, 비취업인 경우는 '집안어른의 권유로', '특별한 이유 없음', '임신이 되어서', '배우자의 요구로' 등의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15세 이상 기혼가구의 여성응답자 중 결혼을 늦게 하였다는 여성응답자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특별한 이유 없음' 44.0%였으며, 이 외에도 '배우자감이 없어서' 26.1%, '취업에 방해될까 봐' 10.9%,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 10.1%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특별한 이유 없음'을 제외할 경우 동부지역은 '배우자감이 없어서', '취업에 방해될까 봐',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 등의 순인데 비해, 읍·면부지역은 '배우자감이 없어서',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 '취업에 방해될까 봐' 등의 순이었다. 초혼연령별로도 '특별한 이유 없음'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배우자감이 없어서'로 초혼연령이 높아질수록 많았다. 그 외의 경우는 초혼연령이 20~24세인 경우에는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 25~29세와 30세 이상은 '취업에 방해될까 봐'의 순이었다.

교육수준별로도 가장 큰 이유인 '특별한 이유 없음'을 제외할 경우 '배우자감이 없어서'가 공통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학교 이하는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 고등학교 이상은 '취업에 방해될까 봐'가 결혼이 늦은 이유로 제시되었다. 특히, 학력이 높은 경우에는 '취업에 방해될까 봐'가 많았던 반면, 학력이 낮은 경우에는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가 고학력층 보다 많이 나타나 교육수준에 따라 결혼이 늦은 이유가 다소 차이를 보였다.

결혼상태별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는 '특별한 이유 없음', '배우자감이 없어서' 등의 순이었으나, 그 다음은 유배우와 이혼·별거의 경우, '취업에 방해될까 봐'를, 그리고 사별은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가 많아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현취업여부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배우자감이 없어서'는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는 취업중인 경우가 비취업중인 경우보다 많았다(표 3-17 참조).

〈표 3-17〉 15~64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결혼을 늦게 한 이유[1)]

(단위: %, 명)

특성	취업에 방해가 될까봐	배우자 감이 없어서	배우자의 사정 때문에	경제 형편이 좋지 않아서	특별한 이유 없음	기타	계(수)	χ^2
전체	10.9	26.1	4.5	10.1	44.0	4.5	100.0(1,863)	
지역								
동부	10.9	25.9	4.3	9.3	45.2	4.2	100.0(1,593)	13.2*
읍·면부	10.7	27.8	5.2	14.8	35.9	5.6	100.0(270)	
초혼연령								
19세 이하	50.0	-	-	-	-	50.0	100.0(2)	
20~24세	10.8	19.6	3.9	18.1	40.7	6.9	100.0(204)	
25~29세	11.2	24.7	4.6	10.1	45.5	3.9	100.0(979)	
30세 이상	10.2	30.4	4.3	7.8	42.8	4.6	100.0(67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7	24.9	2.2	19.8	41.6	4.9	100.0(450)	94.0***
고등학교	10.9	28.1	4.2	9.2	44.2	3.4	100.0(816)	
대학 이상	14.1	24.5	6.4	4.0	45.4	5.5	100.0(595)	
결혼상태								
유배우	10.9	26.6	4.6	9.5	44.0	4.5	100.0(1,668)	
사별	11.0	28.0	2.0	15.0	40.0	4.0	100.0(100)	
이혼·별거	10.5	16.8	4.2	16.8	47.4	4.2	100.0(95)	
현취업여부								
취업	11.1	26.2	3.9	11.4	43.4	3.9	100.0(839)	4.8
비취업	10.8	26.1	4.9	9.0	44.4	4.9	100.0(1,023)	

주: 1) 결혼연령이 늦었다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2) * p<.05, *** p<.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는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15세 이상 기혼가구의 남성응답자의 결혼을 늦게 한 이유로는 '특별한 이유 없음' 25.2%였으며,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 32.8%, '배우자감이 없어서' 25.8%, '취업에 방해될까 봐' 7.9%, '기타' 5.0%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과 읍·면부지역 모두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가 많았으며, 특히 읍·면부지역의 경우 많았다(36.6%). 그 외 읍·면부지역은 '배우자감이 없어서'가 동부지역보다 많았다. 초혼연령별로는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배우자감이 없어서' 등의 순이었다.

고등학교 학력 이상은 '특별한 이유 없음'이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이하는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가 가장 많아 학력간 차이를 보였다. 결혼상태별

로는 유배우는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 사별은 '특별한 이유 없음'이, 그리고 이혼·별거는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 '배우자감이 없어서'가 동일한 비율로 높았다.

현취업여부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가 비취업자, 취업자 모두 가장 많았고, '배우자감이 없어서'와 '취업에 방해될까 봐'는 모두 비취업중인 경우에 더 많았다(표 3-18 참조).

〈표 3-18〉 15세 이상 기혼남성의 특성별 결혼을 늦게 한 이유[1)]

(단위: %, 명)

특성	취업에 방해 될까봐	배우자 감이 없어서	배우자 사정 때문에	경제 형편이 좋지 않아서	특별한 이유 없음	기타	계(수)	χ^2
전체	7.9	25.8	3.3	32.8	25.2	5.0	100.0(302)	
지역								
동부	8.7	23.4	3.5	31.6	27.7	5.2	100.0(231)	6.0
읍·면부	5.6	33.8	2.8	36.6	16.9	4.2	100.0(71)	
초혼연령								
19세 이하	-	-	-	-	-	-	-	
20~24세	-	-	-	75.0	-	25.0	100.0(4)	
25~29세	10.7	27.7	4.5	28.6	27.7	0.9	100.0(112)	
30세 이상	7.0	25.1	2.7	34.8	24.1	6.4	100.0(18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	26.5	4.9	48.0	16.7	3.9	100.0(102)	
고등학교	8.6	25.9	3.4	25.9	31.0	5.2	100.0(116)	
대학 이상	17.2	25.3	2.3	24.1	26.4	4.6	100.0(87)	
결혼상태								
유배우	10.4	23.5	3.3	33.9	23.5	5.5	100.0(183)	
사별	-	14.3	-	35.7	42.9	7.1	100.0(14)	
이혼·별거	4.7	31.1	3.8	31.1	25.5	3.8	100.0(106)	
현취업여부								
취업	6.4	26.0	3.0	33.2	25.1	6.4	100.0(235)	7.9
비취업	13.2	26.5	4.4	32.4	23.5	-	100.0(68)	

주: 1) 결혼연령이 늦었다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6.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다음 <표 3-19>는 남녀 응답자 모두를 대상으로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이다. 우선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에 대해 찬성하는 경우가 75.8%였으며, 별로 또는 전혀 찬성하지 않는 경우는 24.1%였다. 전체적으로 찬성한다가 높게 나타나 결혼을 하는 경우 개인보다는 가족간의 관계를 보다 우선시 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표 3-19〉 기혼남녀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내용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계(수)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함	3.2	20.9	65.2	10.6	100.0(10,761)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음	31.0	53.2	15.4	0.5	100.0(10,760)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음	23.6	44.2	30.6	1.6	100.0(10,752)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음	23.1	44.8	31.2	0.9	100.0(10,752)

자료: 본 조사결과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84.2%가 찬성하지 않음으로써 자녀는 결혼을 통해서만 가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지배적임을 보여주었다.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에는 67.8%가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혼전동거에 대해서는 비허용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32.1%가 찬성하는데 비해 67.9%가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을 통해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전통적 성의식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에 대한 의견

응답자의 특성별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

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에 대해서 여성응답자는 '전적으로 찬성' 10.3%, '대체로 찬성' 64.9%로 75.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로 찬성하지 않음' 21.5%, '전혀 찬성하지 않음' 3.3%로 전체 응답자의 24.8%가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은 찬성률이 75.0%인데 비해 읍·면부지역은 75.8%로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결혼에 있어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를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20〉 15~64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 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계(수)	χ^2
전체	3.3	21.5	64.9	10.3	100.0(9,788)	
지역						
동부	3.2	21.8	64.6	10.4	100.0(8,194)	4.3
읍·면부	3.8	20.3	66.3	9.5	100.0(1,594)	
연령						
29세 이하	4.3	26.0	62.5	7.1	100.0(603)	
30~39세	2.8	24.4	63.9	8.9	100.0(2,701)	76.6***
40~49세	3.6	22.2	64.7	9.5	100.0(3,120)	
50세 이상	3.3	17.8	66.1	12.7	100.0(3,36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3	17.2	67.6	11.9	100.0(2,614)	75.2***
고등학교	3.3	21.0	65.3	10.4	100.0(4,228)	
대학 이상	3.4	26.2	61.8	8.6	100.0(2,943)	
결혼상태						
유배우	3.4	21.5	65.0	10.2	100.0(8,740)	2.9
사별	3.2	20.0	65.5	11.4	100.0(475)	
이혼·별거	3.0	23.5	62.9	10.7	100.0(571)	
취업여부						
취업	3.7	21.3	65.8	9.3	100.0(4,732)	13.7*
비취업	3.0	21.8	64.0	11.2	100.0(5,055)	

주: * p<.05,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연령 및 교육수준별로는 고연령층일수록, 저학력층일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저연령층, 고학력층에서 가족간의 관계보다 개인을 우선시 하는 가치관이 보다 더 강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결혼상태별로는 사별인 경우 유배우나 이혼·별거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별인 경우 유배우나 이혼·별거인 경우보다 고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통적인 결혼 및 가족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와 비취업자 간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3-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응답자는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 14.2%, 대체로 찬성 68.7%로 82.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은 찬성이 83.3%인데 비해 읍·면부지역은 84.9%로 읍·면부지역이 결혼에 있어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를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로는 여성응답자와 달리 29세 이하의 저연령층에서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여성응답자와 동일하게 대학 이상의 고학력층보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층에서 전통적인 결혼 및 가족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여성응답자와는 달리 유배우나 사별인 경우에 이혼·별거인 경우보다 전통적인 결혼 및 가족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약간 높았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3-21〉 15세 이상 기혼남성의 특성별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 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계(수)	χ^2
전체	2.3	14.9	68.7	14.2	100.0(968)	
지역						
동부	2.0	14.7	68.5	14.8	100.0(762)	2.7
읍·면부	3.4	15.5	69.4	11.7	100.0(206)	
연령						
29세 이하	3.6	7.1	75.0	14.3	100.0(28)	
30~39세	1.5	15.4	69.2	13.8	100.0(130)	
40~49세	2.4	16.0	69.8	11.8	100.0(288)	
50세 이상	2.2	13.8	68.0	16.0	100.0(5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0	15.9	64.9	17.2	100.0(302)	13.0**
고등학교	2.0	11.8	71.7	14.5	100.0(406)	
대학 이상	3.1	18.5	68.8	9.6	100.0(260)	
결혼상태						
유배우	1.8	13.5	70.3	14.4	100.0(569)	17.8**
사별	4.7	10.9	82.8	1.6	100.0(64)	
이혼·별거	2.7	18.1	63.2	16.0	100.0(337)	
취업여부						
취업	2.4	14.2	68.8	14.6	100.0(746)	2.0
비취업	1.8	17.2	68.8	12.2	100.0(221)	

주: ** $p<.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나.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해 여성응답자의 0.5%는 전적으로 찬성, 15.2%는 대체로 찬성한다고 하여 전체 15.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4.3%가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으며, 특히 읍·면부지역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찬성률은 높았다. 결혼상태별로는 이혼·별거의 경우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20.5%였으며, 사별의 경우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87.6%).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중인 경우에 비취업인 경우보다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22〉 15~64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계(수)	χ^2
전체	31.1	53.2	15.2	0.5	100.0(9,787)	
지역						
동부	31.2	52.8	15.5	0.5	100.0(8,193)	4.2
읍·면부	30.3	55.3	14.0	0.4	100.0(1,594)	
연령						
29세 이하	20.4	50.5	27.9	1.2	100.0(602)	
30~39세	23.7	54.3	21.3	0.7	100.0(2,700)	351.7***
40~49세	31.1	55.6	12.9	0.4	100.0(3,118)	
50세 이상	38.8	50.8	10.2	0.2	100.0(3,36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5.7	52.9	11.1	0.3	100.0(2,613)	78.2***
고등학교	30.0	53.8	15.6	0.5	100.0(4,229)	
대학 이상	28.4	52.7	18.3	0.5	100.0(2,943)	
결혼상태						
유배우	31.2	53.2	15.1	0.4	100.0(8,740)	21.9**
사별	34.7	52.9	11.6	0.8	100.0(478)	
이혼·별거	25.6	53.9	20.0	0.5	100.0(571)	
취업여부						
취업	29.6	54.9	15.1	0.5	100.0(4,731)	11.2*
비취업	32.4	51.7	15.4	0.5	100.0(4,288)	

주: * p<.05, ** p<.01,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해 남성응답자의 경우에는 0.5%가 전적으로 찬성, 16.7%는 대체로 찬성한다고 하여 전체 17.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로 찬성하지 않음 30.4%, 전혀 찬성하지 않음 52.4%로 82.8%가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결과는 여성응답자에 비해 찬성하는 비율이 1.5%pt 높고, 찬성하지 않는 비율은 1.5%pt 낮게 나타난 것이다.

지역별로도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동부지역 82.7%, 읍·면부지역 83.0%로 상당히 높았으며, 특히 읍·면부지역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 학력에서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결혼상태별로는 이혼·별거의 경우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20.2%였으며, 유배우의 경우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84.4%).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중인 경우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23〉 15세 이상 기혼남성의 특성별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계(수)
전체	30.4	52.4	16.7	0.5	100.0(968)
지역					
동부	30.3	52.4	16.7	0.7	100.0(762)
읍·면부	30.6	52.4	17.0	-	100.0(206)
연령					
29세 이하	24.1	44.8	31.0	-	100.0(29)
30~39세	26.2	46.2	26.9	0.8	100.0(130)
40~49세	28.5	54.2	16.7	0.7	100.0(288)
50세 이상	32.0	54.0	13.8	0.2	100.0(5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4.0	59.7	16.0	0.3	100.0(300)
고등학교	33.3	51.2	15.0	0.5	100.0(406)
대학 이상	33.1	46.2	20.0	0.8	100.0(260)
결혼상태					
유배우	34.0	50.4	15.0	0.7	100.0(568)
사별	32.8	50.0	15.6	1.6	100.0(64)
이혼·별거	23.8	56.0	20.2	-	100.0(336)
취업여부					
취업	30.9	50.7	17.9	0.5	100.0(745)
비취업	28.7	57.8	13.0	0.4	100.0(223)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다.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에 대한 의견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에 대해 여성응답자는 전적으로 찬성 1.6%, 대체로 찬성 30.5%, 별로 찬성하지 않음 44.3%, 그리고 전혀 찬성하지 않음 23.6%로 찬성은 32.1%, 찬성하지 않음은 67.9%로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3-24〉 15~64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계(수)	X^2
전체	23.6	44.3	30.5	1.6	100.0(9,783)	
지역						
동부	23.7	44.6	30.1	1.7	100.0(8,189)	4.4
읍·면부	23.2	42.7	32.6	1.4	100.0(1,594)	
연령						
29세 이하	11.6	33.8	48.6	6.0	100.0(603)	
30~39세	14.2	42.2	41.4	2.2	100.0(2,696)	649.1***
40~49세	24.2	47.4	27.4	1.0	100.0(3,119)	
50세 이상	32.8	44.9	21.3	1.0	100.0(3,36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8.7	44.1	28.1	1.1	100.0(2,610)	74.0***
고등학교	22.7	43.4	32.1	1.9	100.0(4,229)	
대학 이상	20.5	45.7	32.1	1.7	100.0(2,942)	
결혼상태						
유배우	23.7	44.6	30.0	1.6	100.0(8,739)	42.2***
사별	29.2	42.4	27.1	1.3	100.0(476)	
이혼·별거	17.0	40.2	40.6	2.1	100.0(569)	
취업여부						
취업	21.9	45.6	31.2	1.3	100.0(4,729)	20.9***
비취업	25.2	43.1	29.8	1.9	100.0(5,054)	

주: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응답자의 특성별로 보면, 지역별로는 동부지역보다 읍·면부지역이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고, 연령이 많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은 낮았으며, 교육수준별

로는 중학교 이하에서 찬성률이 가장 낮았다. 결혼상태별로는 이혼·별거의 경우 찬성률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자가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3-25>는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에 대한 남성응답자의 응답결과이다. 이에 대해 남성응답자는 전적으로 찬성 0.9%, 대체로 찬성 31.9%, 별로 찬성하지 않음 43.3%, 전혀 찬성하지 않음 23.9%로 찬성 32.8%, 찬성하지 않음 67.2%였다. 이는 여성응답자에 비해 혼전 동거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표 3-25〉 15세 이상 기혼남성의 특성별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계(수)	χ^2
전체	23.9	43.3	31.9	0.9	100.0(968)	
지역						
동부	24.1	42.9	32.0	0.9	100.0(762)	0.3
읍·면부	22.8	44.7	31.6	1.0	100.0(206)	
연령						
29세 이하	10.3	24.1	62.1	3.4	100.0(29)	
30~39세	16.9	39.2	42.3	1.5	100.0(130)	
40~49세	19.9	44.3	34.5	1.4	100.0(287)	
50세 이상	28.0	45.2	26.4	0.4	100.0(5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1.7	48.7	28.7	1.0	100.0(300)	
고등학교	25.1	41.4	32.5	1.0	100.0(406)	
대학 이상	24.5	39.9	34.9	0.8	100.0(261)	
결혼상태						
유배우	27.3	43.1	28.9	0.7	100.0(5683)	24.6***
사별	34.4	43.8	21.9	-	100.0(64)	
이혼·별거	16.4	43.2	39.0	1.5	100.0(336)	
취업여부						
취업	23.7	42.0	33.4	0.9	100.0(746)	3.2
비취업	24.2	47.5	27.4	0.9	100.0(223)	

주: 1) *** p<.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남성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약간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젊은 층일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 29세 이하는 65.5%, 30~39세 43.8%, 40~49세 35.9%, 그리고 50세 이상은 26.8%였다. 교육수준별로는 고학력층일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결혼상태별로는 이혼·별거의 경우 가장 찬성률이 높았다(40.5%).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중인 경우 찬성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취업 34.3%, 비취업 28.3%).

라.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의견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해 여성응답자는 찬성률이 31.4%였으며, 68.6%가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부지역보다 동부지역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동부 32.6%, 읍·면부 25.2%), 저연령층일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50세 이상은 15.7%인데 비해 29세 이하는 59.2%나 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고, 결혼상태별로는 이혼·별거의 경우 39.0%의 찬성률을 보여 혼전 성관계에 대해 가장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취업여부별로는 비취업자의 찬성률이 약간 높았다(표 3-26 참조).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해 남성응답자의 찬성률은 39.1%(전적으로 찬성 0.9%, 대체로 찬성 38.2%)였으며, 별로 찬성하지 않음 40.0%, 전혀 찬성하지 않음 20.9%로 찬성하지 않음이 60.9%로 여성응답자에 비해 혼전 성관계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읍·면부지역보다 동부지역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동부 41.5%, 읍·면부 30.5%),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일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29세 이하는 65.5%인데 비해 50세 이상은 29.5%에 불과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 중학교 이하는 27.5%, 고등학교 40.2%, 대학 이상은 51.0%였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는 36.0%가 찬성하였으나 사별은 28,6%, 그리고 이혼·별거의 경우에는 46.1%의

찬성률을 보여 혼전 성관계에 대해 이혼·별거의 경우 가장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중인 경우에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표 3-27 참조).

〈표 3-26〉 15~64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계(수)	X^2
전체	23.3	45.3	30.5	0.9	100.0(9,781)	
지역						
동부	22.4	45.0	31.7	0.9	100.0(8,188)	42.1***
읍·면부	27.9	47.0	24.4	0.8	100.0(1.593)	
연령						
29세 이하	10.3	30.5	56.9	2.3	100.0(603)	
30~39세	11.6	40.7	45.3	1.4	100.0(2,696)	1,124.2***
40~49세	22.8	48.3	28.1	0.7	100.0(3,117)	
50세 이상	35.4	48.9	15.3	0.4	100.0(3,36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2.2	49.7	17.4	0.6	100.0(2,610)	376.3***
고등학교	21.7	44.5	32.8	1.0	100.0(4,229)	
대학 이상	17.6	42.6	38.9	0.9	100.0(2,941)	
결혼상태						
유배우	23.1	45.3	30.7	0.9	100.0(8,737)	55.9***
사별	31.9	48.7	18.7	0.6	100.0(476)	
이혼·별거	18.3	42.8	37.9	1.1	100.0(568)	
취업여부						
취업	23.0	46.1	30.1	0.8	100.0(4,728)	2.4
비취업	23.5	44.6	30.9	0.9	100.0(5.053)	

주: ** p<.01,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표 3-27〉 15세 이상 기혼남성의 특성별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에 대한 가치관

(단위: %, 명)

특성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계(수)	χ^2
전체	20.9	40.0	38.2	0.9	100.0(968)	
지역						
동부	19.8	38.6	40.6	0.9	100.0(761)	8.7*
읍·면부	24.6	44.9	29.5	1.0	100.0(207)	
연령						
29세 이하	10.3	24.1	62.1	3.4	100.0(29)	
30~39세	6.9	29.0	61.8	2.3	100.0(131)	
40~49세	18.5	37.3	42.9	1.4	100.0(287)	
50세 이상	25.7	44.9	29.5	-	100.0(49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0.3	52.2	27.2	0.3	100.0(301)	
고등학교	22.2	37.7	38.7	1.5	100.0(406)	
대학 이상	19.5	29.5	50.2	0.8	100.0(261)	
결혼상태						
유배우	25.0	39.0	35.3	0.7	100.0(569)	
사별	28.6	42.9	27.0	1.6	100.0(63)	
이혼·별거	12.6	41.3	45.2	0.9	100.0(334)	
취업여부						
취업	18.6	38.6	41.6	1.2	100.0(746)	20.8***
비취업	28.1	44.8	27.1	-	100.0(221)	

주: * p<.05, *** p<.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제2절 자녀가치관의 변화

'가치(價値)'란 사람들이 인정하는 상대적 가치(value)와 실제 그 자체가 가진 절대적 가치(worth)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치(value of children)는 상대적 개념이며, 자녀를 가짐으로서 발생되는 이득과 손실을 의미한다(김승권. 2005a). 일반적으로 자녀가치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가계계승, 노동력 창출, 노후부양에의 기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녀가 매우 중요시되었고, 재산과 동등한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하

였다. 그러나 근대 산업사회에서는 많은 수의 자녀는 부부의 자녀부양부담을 증가시키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은 자녀를 노후부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 등 자녀에 대한 가치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아울러 부부중심의 가족생활을 강조함으로써 소자녀관 정착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가족가치관의 한 영역으로서 부인의 자녀가치관을 '자녀의 필요성'에 의하여 살펴본다. 이는 부부의 가치관이 반드시 자녀의 규모 및 성 구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틀림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1. 자녀가치관

부부가 결혼하면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15~44세 유배우 부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00년 58.1%, 2003년 54.5%, 2006년 53.8%로 수준의 차이는 있었지만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왔다. 그렇지만 2009년에는 55.9%로 지난 10여 년간의 감소를 반전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반대로 자녀를 선택적 사항으로 판단하는 '자녀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없어도 상관없다'고 응답한 부인은 2000년 41.5%, 2003년 44.9%, 2006년 46.2%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으나, 2009년에는 44.1%로 감소하였다(표 3-28 참조).

따라서 소자녀관의 정착과 함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퇴색되던 양상이 다소 반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부인이 2000년 10.0%, 2003년 12.6%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던 것이 2006년 12.1%로 감소하더니 2009년에는 더욱 감소하여 11.4%를 나타냈음에서도 엿볼 수 있다.

〈표 3-28〉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자녀필요성

(단위: %, 명)

연도	반드시 가져야 함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음			모르겠음	계(수)
		소계	갖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		
2000	58.1	41.5	31.5	10.0	0.5	100.0(6,363)
2003	54.5	44.9	32.3	12.6	0.6	100.0(6,593)
2006	53.8	46.2	34.1	12.1	-	100.0(5,386)
2009	55.9	44.1	32.7	11.4	-	100.0(4,867)

자료: <표 3-1>과 동일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부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3-29>와 같다. 자녀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55.1%,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61.1%로 농어촌지역 거주부인이 자녀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녀가 '있는 것이 낫다'고 응답한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33.3%,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28.5%로 다소 차이가 있었고,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11.6%,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10.4%로 나타나 지역별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은 25~29세 연령층 부인이 61.2%로 가장 많았고, 그 외의 연령층은 약 54.4~57.9%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반면에 자녀가 '있는 것이 낫다'는 의견은 25~29세 연령층 부인이 28.9%로 가장 적었고, 15~24세 연령층 부인은 36.8%로 많았다. 또한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의견은 30~34세 연령층 부인이 13.6%로 가장 많았고, 15~24세 연령층 부인이 5.3%로 가장 적었다.

〈표 3-29〉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꼭 필요함	있는 것이 나음	없어도 상관없음	계(수)	χ^2
2006	53.8	34.1	12.1	100.0(5,386)	
2009	55.9	32.7	11.4	100.0(4,867)	
지역					
동부	55.1	33.3	11.6	100.0(4,222)	8.3*
읍·면부	61.1	28.5	10.4	100.0(645)	
연령					
15~24세	57.9	36.8	5.3	100.0(76)	
25~29세	61.2	28.9	9.9	100.0(567)	
30~34세	55.8	30.6	13.6	100.0(1,081)	19.0*
35~39세	54.4	34.0	11.6	100.0(1,636)	
40~44세	55.4	34.1	10.5	100.0(1,50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9.9	31.0	9.1	100.0(197)	
고등학교	57.5	30.9	11.6	100.0(2,366)	10.1*
대학 이상	53.8	34.8	11.4	100.0(2,303)	
취업여부					
취업	54.4	34.5	11.2	100.0(2,200)	5.6#
비취업	57.1	31.3	11.6	100.0(2,667)	
현존자녀수					
0명	42.4	38.6	19.0	100.0(495)	
1명	57.7	32.0	10.3	100.0(1,135)	
2명	56.6	32.2	11.2	100.0(2,724)	58.7***
3명	61.4	31.2	7.4	100.0(474)	
4명 이상	53.8	35.9	10.3	100.0(39)	

주: * p<.05, ** p<.01, *** p<.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3-5>와 동일

2. 이상자녀수

한 사회 구성원들의 자녀 가치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는 전술한 자녀 가치관 외에도 '이상자녀수'에 대한 가치관이 있다. 실제로 이상자녀수는 자녀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하는 지표이며, 응답자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의 규모(수)'를 의미한다. 물론 이는 응답자가 실제 두고 있는 현존자녀수와 관계없이 몇 명의 자녀를 두면 이상적인가를 묻는 주관적인 자녀규모에 대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현존자녀수와 관계없이 측

정되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관이 실제로 한 부부의 자녀수를 결정하는 행동에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향후 자녀출산을 예측할 수 있는 간접지표로서의 의미도 가진다(김승권 외, 2006).

사망수준이 높고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전통적 사회에서는 높은 사망률로 인한 자녀의 상실을 보상하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가족 가치가 지배적이다. 그렇지만 인위적인 출산억제를 위한 피임법이 발달하지 않아 실제로 이상자녀수에 대한 가치가 출산력수준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게 된다. 가족규모에 대한 가치가 출산수준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은 개인이 자기의 생각과 결정에 따라 출산조절이 가능하게 되면서 부터이다(김승권, 2005b).

15～44세 유배우부인의 97.9%가 이상자녀수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의견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큰 차이없이 유사한 수준에서 강하였다. 즉, 지역과 취업여부별로는 모두 1.1%pt의 차이를, 연령별로는 97.3~98.9%로 1.6%pt의 차이를, 교육수준별로는 94.9~98.2%로 3.3%pt의 차이를, 현존자녀수별로는 96.2~100.0%로 3.8%pt의 차이를 보였다(표 3-30 참조).

15～44세 유배우부인의 2009년 이상자녀수는 2.3명으로 2006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이상자녀수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면, 1980년대 중반까지는 점차 감소하였고, 그 이후 약 10년간 동일한 수준(0.1명의 미미한 차이)을 유지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약간 상승하는 징후(1997년 2.3명)를 보였으나 2000년은 약간 저하하여 2003년까지 지속되었으며, 2006년 조사에서는 2.3명으로 미미하나마 증가하였고 2009년에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이상자녀수는 1982년의 2.5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5～'88년에는 2.0명이었고, 다시 조금씩 증가하여 1997년에는 2.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과 2003년 2.2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06년 이후 2.3명으로 증가하였다(표 3-31 참조).

〈표 3-30〉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이상자녀수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이상자녀수 있음	잘 모르겠음	계(수)	χ^2
전체	97.9	2.1	100.0(4,868)	
지역				
동부	97.8	2.2	100.0(4,223)	3.7*
읍·면부	98.9	1.1	100.0(645)	
연령				
15~24세	98.7	1.3	100.0(76)	
25~29세	98.9	1.1	100.0(567)	
30~34세	97.9	2.1	100.0(1,081)	
35~39세	98.0	2.0	100.0(1,637)	
40~44세	97.3	2.7	100.0(1,50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94.9	5.1	100.0(197)	
고등학교	97.9	2.1	100.0(2,367)	
대학 이상	98.2	1.8	100.0(2,303)	
취업여부				
취업	97.3	2.7	100.0(2,200)	6.7*
비취업	98.4	1.6	100.0(2,668)	
현존자녀수				
0명	96.2	3.8	100.0(494)	
1명	97.7	2.3	100.0(1,136)	
2명	98.2	1.8	100.0(2,725)	
3명	98.5	1.5	100.0(474)	
4명 이상	100.0	-	100.0(39)	

주: * p<.05, ** p<.01, *** p<.001(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과 이상자녀수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 그 내용은 다르지만 반비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즉,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이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출산율이 이상자녀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이상자녀수가 합계출산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김승권 외, 2000,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조사에서 보여 준 합계출산율(이에 대하여는 제5장에서 상세히 설명함)은 2006년보다 더욱 저하하였음을 감안한다면, 이상자녀수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 그 이유를 명확히 규명하여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여야 저출산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인의 연령별 이상자녀수의 차이가 과거년도 조사에서는 0.2～0.8명이었으나, 2003년, 2006년, 2009년 조사에서의 연령별 차이는 0.1~0.2명에 불과하였다. 특히, 2009년의 이상자녀수는 34세 이하의 부인은 2.2명이었고, 35세 이상의 부인은 2.3명으로 매우 미미하였다.

〈표 3-3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연령별 평균 이상자녀수 변동추이

(단위: 명)

연령	1982[1)]	1985[2)]	1988[3)]	1991[4)]	1994[5)]	1997[6)]	2000[7)]	2003[8)]	2006[9)]	2009[10)]
15~24세	2.1	1.8	1.8	1.8	2.0	2.1	2.1	2.2	2.2	2.2
25~29세	2.2	1.9	1.9	1.9	2.1	2.1	2.1	2.2	2.1	2.2
30~34세	2.5	2.0	2.0	2.1	2.2	2.2	2.2	2.3	2.2	2.2
35~39세	2.6	2.1	2.0	2.2	2.3	2.3	2.3	2.3	2.3	2.3
40~44세	2.9	2.2	2.1	2.3	2.3	2.3	2.3	2.3	2.3	2.3
전체	2.5	2.0	2.0	2.1	2.2	2.3	2.2	2.2	2.3	2.3

주: 1991년은 기혼여성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1) 문현상 외, 『1982년 전국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2) 문현상 외, 『1985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3) 문현상 외,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 보건연구원, 1989.
4)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 (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5)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6)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7)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8)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9) 김승권 외,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10) 본 조사결과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이상자녀수 분포를 살펴보면 <표 3-32>와 같다. 0～1명의 자녀가 이상적이라고 한 부인은 2000년 9.3%, 2003년 11.5%, 2006년 9.5%, 2009년 10.8%로 불안정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3명 이상을 이상자녀수라고 응답한 경우는 2000년 25.8%, 2003년 28.4%, 2006년과 2009년 28.1% 이었다. 또한 2명을 이상자녀수 규모라는 부인이 2000년 64.3%에서 2003년 58.8%로 크게 감소하였고, 2006년에는 61.4%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59.1%로 다시 감소하였다.

2009년의 평균 이상자녀수를 부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이상자녀수는 2.4명으로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2.2명보다 0.2명 많았다. 이러한 양상은 2006년

의 조사결과와 유사하다. 부인연령별 평균 이상자녀수는 35세 미만과 35세 이상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35세 미만 부인은 2.2명이었고, 35세 이상 부인은 2.3명이었다. 따라서 연령별로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하겠다.

〈표 3-32〉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이상자녀수 분포

(단위: %, 명)

특성	이상자녀수 분포						X^2	평균[1] 이상자녀수	F값 (T값)
	1명 이하	2명	3명	4명 이상	기타	계(수)			
2000[1]	9.3	64.3	20.1	5.7	0.7	100.0(6,361)		2.2	
2003[2]	11.5	58.8	21.7	6.7	1.2	100.0(6,599)		2.2	
2006[3]	9.5	61.4	22.6	5.5	1.0	100.0(5,386)		2.3	
2009[4]	10.8	59.1	21.5	6.6	2.1	100.0(4,869)		2.3	
지역									
동부	11.0	60.0	20.5	6.3	2.2	100.0(4,224)	28.0***	2.2	(-4.1***)
읍·면부	9.5	53.0	27.9	8.5	1.1	100.0(645)		2.4	
연령									
15~24세	19.5	51.9	19.5	7.8	1.3	100.0(77)		2.2	
25~29세	10.8	62.3	23.3	2.6	1.1	100.0(567)	38.2***	2.2	2.4*
30~34세	9.4	61.9	20.7	5.7	2.1	100.0(1,080)		2.2	
35~39세	11.4	58.2	21.3	7.2	2.0	100.0(1,637)		2.3	
40~44세	10.6	57.2	21.7	7.8	2.7	100.0(1,507)		2.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0.2	58.7	21.4	4.6	5.1	100.0(196)	29.1***	2.2	8.7***
고등학교	10.1	57.0	23.2	7.6	2.1	100.0(2,367)		2.3	
대학 이상	11.5	61.3	19.7	5.7	1.8	100.0(2,304)		2.2	
취업여부									
취업	10.5	58.6	22.0	6.2	2.7	100.0(2,200)	8.2#	2.3	(.1)
비취업	11.0	59.5	21.1	6.9	1.6	100.0(2,668)		2.3	
현존자녀수									
0명	17.6	60.9	15.2	2.4	3.8	100.0(494)		2.0	
1명	15.4	60.3	18.9	3.1	2.3	100.0(1,136)	194.8***	2.1	38.6***
2명	7.8	60.1	22.6	7.7	1.8	100.0(2,725)		2.3	
3명	9.1	50.4	27.8	11.2	1.5	100.0(474)		2.4	
4명 이상	15.4	33.3	23.1	28.2	-	100.0(39)		2.8	

주: 1) 이상자녀수가 기타(잘 모르겠음)인 경우를 제외하였음.; 2) # p<.10, * p<.05, *** p<.001
자료: <표 3-1>과 동일

부인의 교육수준별 평균 이상자녀수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에 따른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즉, 고등학교 학력의 부인이 2.3명

이었고, 중학교 이하와 대학 이상의 부인은 2.2명이었다. 취업부인과 비취업부인의 이상자녀수는 동일하게 2.3명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현존자녀수가 많을수록 이상자녀수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자녀 부인 2.0명, 4명 이상 자녀를 둔 부인 2.8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연령별 이상자녀수 분포를 거주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3명 이상의 다자녀가 이상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의 지역간 차이를 보면, 15~24세 부인은 동부 28.1%, 읍·면부 26.3%, 30~34세 부인은 동부 25.5%, 읍·면부 33.6%로 차이가 미미하였다. 그렇지만 25~29세 부인은 동부 23.9%, 읍·면부 37.7%로 큰 차이`를 보였고, 35~39세 부인은 동부 27.1%, 읍·면부 38.2%, 40~44세 부인은 동부 28.4%, 읍·면부 37.2%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표 3-33 참조).

〈표 3-3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지역별 및 연령별 이상자녀수 분포

(단위: %, 명)

지역 및 연령	이상자녀수 분포						평균[1) 이상자녀수	F값 (T값)
	1명 이하	2명	3명	4명 이상	기타	계(수)		
동부								
15~24세	17.5	52.6	21.1	7.0	1.8	100.0(57)	2.2	
25~29세	10.8	64.3	22.0	1.9	1.0	100.0(482)	2.2	
30~34세	9.2	63.1	19.7	5.8	2.2	100.0(959)	2.2	
35~39세	12.1	58.7	20.0	7.1	2.1	100.0(1,417)	2.2	
40~44세	10.8	58.0	21.1	7.3	2.8	100.0(1,308)	2.3	
전체	11.0	60.0	20.5	6.3	2.2	100.0(4,223)	2.2	19.1***
읍·면부								
15~24세	21.1	52.6	15.8	10.5	-	100.0(19)	2.1	
25~29세	10.6	50.6	30.6	7.1	1.2	100.0(85)	2.4	
30~34세	11.5	53.3	28.7	4.9	1.6	100.0(122)	2.3	
35~39세	6.4	54.5	30.0	8.2	0.9	100.0(220)	2.4	
40~44세	9.53	52.3	25.6	11.6	1.0	100.0(199)	2.4	
전체	9.3	53.0	28.1	8.5	1.1	100.0(645)	2.4	

주: 1) 이상자녀수가 기타(잘 모르겠음)인 경우를 제외하였음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 p<.05, ** p<.005,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따라서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연령별 평균 이상자녀수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39세 이하 연령층은 모두 2.2명, 40~44세 연령층은 2.3명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읍·면부 거주부인의 평균 이상자녀수는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즉, 15~24세 연령층은 2.1명이었고, 30~34세 연령층은 2.3명이었으며, 그 외의 연령층(25~29세, 35~39세, 40~44세)은 모두 2.4명이었다.

제3절 결혼가치관 및 자녀가치관 변화의 시사점

한국사회에서는 20세기 후반의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인하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족의 규모 및 형태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족 개개인의 의식까지도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시대흐름에 따라 과거의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가계계승을 위해서, 또는 사회적 관습에 의해서 결혼을 해야 한다는 규범적인 의미에서 벗어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점차 약화되어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또한 이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으면 해도 된다는 의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혼율의 증가와 함께 재혼에 대한 가치관도 점차 변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혼, 이혼 및 재혼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는 가족의 안정성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결혼시기의 지연이나 출산 등 가족형성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한국사회는 여전히 '혼인'이라는 사회제도를 통하여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결혼'은 '출산'의 전제조건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구사회의 양상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사회가치관이 존재하는 한 결혼의 중요성은 저출산의 해결방안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혼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자리잡고 있는 결혼이나 출산,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저해하는 성별 가치관의 차이 또는 기업 내 성차별과 각종 관행으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성평등 가치관확립을 위한 사회교육을 강화하고, 가족친화적인 고용문화 조성

을 위한 기업의 인식 및 태도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이혼 및 재혼 가치관 변화에 의해 증가하고 있는 재혼가족은 그 형태만큼 재혼생활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재혼가족 대상의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도 요구된다.

이상자녀수와 합계출산율 및 현존자녀수(제5장에서 상세 설명)를 비교하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교하는 데는 많은 제한점이 있긴 하지만 합계출산율과 이상자녀수의 엄청난 차이는 높은 미혼율과 소자녀관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또한 이상자녀수보다 적은 현존자녀수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결혼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자녀양육을 위한 다양한 장애요인의 제거에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결혼과 출산이 비록 사적 영역이긴 하지만 개인과 가족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 이를 지지할 책임이 국가와 사회가 있기 때문이다.

04

임신·출산 행태와 출생아·현존자녀수

제4장 임신·출산 행태와 출생아·현존자녀수

본 장에서는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임신경험 횟수와 남아임신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전체 임신의 종결형태를 분석한다. 특히, 임신종결형태는 정상출생과 임신소모로 구분하고, 임신소모는 다시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 사산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본 장에서의 분석대상을 15~44세 유배우부인으로 제한한 것은 과거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와의 시계열적 비교를 위한 것이다. 아울러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태분석은 제7장에서 논의한다.

제1절 임신경험 횟수

부인들의 임신횟수에 관한 분포는 큰 변화를 보였는데, 최근 조사에서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는 이전과는 달리 2000년 조사부터는 2회의 임신경험을 가진 부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즉, 2회의 임신경험을 한 부인이 2000년 29.5%, 2003년 30.3%, 2006년 33.5%, 2009년 35.4%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반면에 4회 이상 임신경험부인은 2000년 26.5%, 2003년 26.5%, 2006년 18.9%, 2009년 15.4%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조사대상 부인의 평균임신횟수는 2000년과 2003년 조사에서는 2.7회이었으며, 2006년 2.5회, 2009년 2.3회로 빠른 속도의 감소를 보였다(표 4-1 참조).

〈표 4-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총 임신횟수 변화

(단위: %, 회)

연도	총 임신횟수						평균 임신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이상	계(수)	
2000[1]	4.7	15.6	29.5	23.7	26.5	100.0(6,408)	2.7
2003[2]	4.6	12.8	30.3	25.8	26.5	100.0(6,596)	2.7
2006[3]	5.8	15.9	33.5	25.9	18.9	100.0(5,394)	2.5
2009[4]	6.6	17.0	35.4	25.6	15.4	100.0(4,869)	2.3

자료: 1)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2)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3) 김승권 외,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4) 본 조사결과

임신횟수를 조사대상부인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표 4-2>와 같이 제시된다.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2.55회)이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2.29회)보다 임신횟수가 많았다. 평균 임신횟수는 부인의 연령에 따라 약 2.7배의 큰 차이를 보였다. 즉, 15~24세 연령층 부인은 1.03회로 적었으나 40~44세 연령층 부인은 2.83회로 많았다. 이와 같이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임신횟수가 많음은 결혼기간과 관련되는 것이며, 아울러 고연령층이 저연령층보다 다자녀관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부인의 교육수준이 낮으면 임신횟수가 많았고, 교육수준이 높으면 임신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평균 임신횟수는 중학교 이하 부인 2.62회, 고등학교 학력수준의 부인 2.56회로 미미한 차이를 보이면서 많았으나, 대학 이상의 부인은 2.06회로 적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젊은 연령층 부인의 학력수준이 높고, 그들에게 소자녀관은 보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원임신을 적절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임신횟수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취업부인은 2.30회, 비취업부인 2.36회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상으로 부인특성별 임신횟수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부인의 임신횟수와 부인연령은 비례하고, 임신횟수와 부인 교육수준은 반비례함을 알 수 있다. 거주지역별 임신횟수의 차이도 이와 같은 결과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부인의 학력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경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영아사망률의 감소, 피임실천의 생활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향후 부인의 임신경험은 소자녀관의 정착과 원하지 않는 임신의 감소로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총 임신횟수 분포

(단위: %, 회)

특성	총 임신횟수						χ^2	평균 임신횟수	F값 (T값)
	0회	1회	2회	3회	4회 이상	계(수)			
2006[1)]	5.8	15.9	33.5	25.9	19.0	100.0(5,396)		2.46	
2009[2)]	6.6	17.0	35.4	25.6	15.4	100.0(4,869)		2.33	
지역									
동부	6.9	17.3	36.1	25.0	14.7	100.0(4,223)	26.1***	2.29	(-4.7***)
읍·면부	4.6	15.0	30.7	29.6	20.1	100.0(646)		2.55	
연령									
15~24세	26.7	52.0	14.7	5.3	1.3	100.0(75)		1.03	
25~29세	21.7	40.5	24.6	9.5	3.7	100.0(566)		1.34	230.3***
30~34세	9.1	25.2	36.1	20.6	8.9	100.0(1,082)		1.99	
35~39세	2.8	11.9	39.4	30.4	15.6	100.0(1,636)		2.49	
40~44세	2.1	6.1	35.8	31.1	25.0	100.0(1,507)		2.8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6	12.7	28.4	25.9	24.4	100.0(197)	221.7***	2.62	104.6***
고등학교	4.5	12.0	34.4	29.1	19.9	100.0(2,368)		2.56	
대학 이상	6.6	17.0	35.4	25.6	15.4	100.0(4,869)		2.06	
취업여부									
취업	9.1	15.8	33.7	25.1	16.3	100.0(2,200)	48.4***	2.30	(-1.3)
비취업	4.5	18.0	36.8	26.0	14.7	100.0(2,668)		2.35	

주: *** p<.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1) 김승권 외,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2) 본 조사결과

제2절 임신종결 형태

모든 임신은 본인이 원한 임신이든, 원치 않은 임신이든 어떤 형태로든 종결될 수밖에 없다. 즉, 어떠한 과정을 겪든 모든 임신은 정상출생과 임신소모라고 하는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 사산 중 어느 하나로 종결된다. 물론 임신의 종결형태는 본인의 의도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원한 임신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원하지 않은 임신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임신소모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임신의 종결은 그 사회의 경제수준, 문화적 배경, 보건의료수준, 양성평등의 정도와 부부 또는 출산당사자의 사회경제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본 절에서는 15~44세 유배우부인이 경험한 임신규모와 이들 임신이 어떠한 형태로 종결되었는지를 시계열적 분석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물론 임신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인 현재 임신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2000년, 2003년, 2006년, 2009년의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응답부인 중 15~44세 유배우부인이 경험한 전체 임신 중 정상출생은 2000년 조사에서는 1.72회, 2006년 조사에서는 1.69회, 2009년 조사에서는 1.68회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3 참조).

〈표 4-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종결 형태별 평균횟수

(단위: 회)

연도	총임신	정상출생	사산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	현 임신중
2000[1)]	2.69	1.72	0.01	0.26	0.65	0.06
2003[2)]	2.72	1.78	0.01	0.26	0.63	0.04
2006[3)]	2.46	1.69	0.01	0.23	0.47	0.05
2009[4)]	2.33	1.68	0.01	0.25	0.34	0.05

자료: <표 4-1>과 동일

정상출생 다음으로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은 2000년 조사에서는 0.65회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 조사에서는 0.34회이었다.

자연유산과 사산은 2000년 조사에서 각각 0.26회, 0.01회이었으며, 이 수준이 크게 변하지 않고 2009년 조사에서 각각 0.25회, 0.01회로 나타났다. 현재 임신중인 비율도 유사한 수준이었다.

앞에서는 임신종결형태별 횟수를 설명하였으나, 이제 전체 임신중 임신종결형태의 구성비를 살펴본다. 이는 정상출생과 임신소모 중 어느 것이 증가하고 있는지, 임신소모 중에서는 어떤 종결형태가 증가 또는 감소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정상출생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의미하는 바가 크다.

전체적으로 정상출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0년 조사에서는 63.8%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조사에서는 72.0%로 높아졌다. 임신소모율은 2000년 조사의 34.0%보다 2009년 조사에서는 25.8%로 낮아져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전체 임신의 약 1/4이 임신소모로 귀결된다는 사실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표 4-4 참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공임신중절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지만 2009년 조사에서도 전체 임신의 14.8%를 차지하였다. 또한 자연유산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2000년 9.7%에서 2009년에는 10.7%로 나타났다. 사산은 2000년 이후 약 0.3회의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종합정리하면, 전반적으로 임신횟수가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정상출생,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 사산의 경험횟수는 감소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체 임신 중 자연유산으로 종결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고, 사산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공임신중절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연유산과 사산을 감소시킬 수 있는 모자보건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인공임신중절을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4-4〉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종결형태의 구성비

(단위: %)

임신종결형태	2000[2]	2003[3]	2006[4]	2009[5]
정상출생	63.8	65.5	69.0	72.0
임신소모	34.0	32.9	29.0	25.8
(사산)	(0.3)	(0.2)	(0.3)	(0.3)
(자연유산)	(9.7)	(9.6)	(9.5)	(10.7)
(인공임신중절)	(24.1)	(23.1)	(19.2)	(14.8)
현 임신중	2.1	1.6	2.0	2.2
계(수)	100.0(17,241)	100.0(17,920)	100.0(13,256)	100.0(11,323)

자료: <표 4-1>과 동일

이와 같은 임신종결형태를 15~44세 유배우부인의 거주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4-5>와 같이 제시된다. 간략히 설명하면, 전체 임신 중 정상출생으로 종결되는 비율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미미하나마 높았고(동부 71.9%, 읍·면부 72.1%), 자연유산 비율도 읍·면부 거주부인이 다소 높았다(동부 10.6%, 읍·면부 11.8%). 그렇지만 사산과 인공유산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다소 높았다(사산: 동부 0.3%, 읍·면부 0.2%; 인공유산: 동부 14.9%, 읍·면부 14.4%).

〈표 4-5〉 15~44세 유배우부인의 지역별 임신종결형태

(단위: %)

임신결과	전국	동부	읍·면부
정상출생	72.0	71.9	72.1
임신소모	25.8	25.8	26.4
(사산)	(0.3)	(0.3)	(0.2)
(자연유산)	(10.7)	(10.6)	(11.8)
(인공유산)	(14.8)	(14.9)	(14.4)
현 임신중	2.2	2.3	1.5
계(수)	100.0(11,323)	100.0(9,680)	100.0(1,651)

주: 거주지역 무응답은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에 의하여 동부와 읍·면부를 합하면 전체 수와 차이가 날 수 있음
자료: 본 조사결과

이와 같은 임신종결형태 중 임신소모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6>과 같이 제시된다. 임신소모를 경험하지 않은 부인은 57.6%이었고,

경험한 부인은 42.4%이었다. 따라서 임신소모 경험부인은 2006년 조사의 47.6%보다 5.2%pt 감소한 것으로 높이 평가된다. 또한 전체 부인 중 임신소모를 1회 경험한 부인이 2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회 10.5%이었으며, 전체 부인의 평균 임신소모횟수는 0.60회이었다.

부인의 특성별 임신소모 분포와 평균 횟수를 요약정리하면, 부인의 거주지역과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작은 차이를 보였으나, 부인의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상세히 설명하면, 평균 임신소모 횟수는 동부지역 거주부인 0.59회,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0.67회이었고, 취업부인 0.61회, 비취업부인 0.59회로 근소한 차이만을 보였다. 반대로 15~24세 부인은 0.10회, 40~44세 부인은 0.83회였고, 대학 이상 학력소지 부인 0.47회, 중학교 이하 학력소지 부인 0.75회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표 4-6〉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임신소모 횟수 분포

(단위: %, 회)

특성	총 임신소모 횟수						X^2	평균 임신소모 횟수	F값 (T값)
	0회	1회	2회	3회	4회 이상	계(수)			
2006	52.4	30.6	12.3	3.4	1.2	100.0(5,395)		0.71	
2009	57.6	28.8	10.5	2.4	0.7	100.0(4,867)		0.60	
지역									
동부	58.0	28.9	10.1	2.4	0.7	100.0(4,222)		0.59	(-2.1*)
읍·면부	54.7	28.5	13.2	2.8	0.8	100.0(645)		0.67	
연령									
15~24세	92.1	6.6	1.3	-	-	100.0(76)		0.10	
25~29세	80.2	15.2	3.0	1.2	0.4	100.0(565)		0.26	70.8***
30~34세	66.2	25.4	5.9	1.9	0.6	100.0(1,083)		0.45	
35~39세	53.2	33.4	10.8	2.1	0.4	100.0(1,636)		0.63	
40~44세	45.9	32.4	16.7	3.6	1.3	100.0(1,507)		0.8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4.8	24.9	14.7	3.6	2.0	100.0(197)		0.75	51.0***
고등학교	51.2	31.6	13.3	3.3	0.7	100.0(2,367)		0.71	
대학 이상	64.5	26.3	7.2	1.4	0.6	100.0(2,301)		0.47	
취업여부									
취업	57.3	27.7	12.0	2.5	0.5	100.0(2,199)	11.3*	0.61	(1.0)
비취업	57.8	29.7	9.3	2.4	0.8	100.0(2,719)		0.59	

주: * p<.05, *** p<.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X^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4-2>와 동일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임신소모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그로 인하여 소자녀를 선호하게 되어 임신소모는 유사한 수준에서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임신소모의 평균 횟수를 부인의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표 4-7>과 같다. 15~24세와 30~34세 연령층의 평균 임신소모는 동부지역과 읍·면부지역이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그 외 연령층은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다소 큰 차이로 평균 임신소모가 많았다(차이: 25~29세 0.14회, 35~39세 0.08회, 40~44세 0.14회).

〈표 4-7〉 15~44세 유배우부인의 거주지역별 평균 임신소모 횟수

(단위: 회, 명)

특성	전국	동부	읍·면부	(분석대상수)
2006	0.71	0.71	0.75	(5,395)
2009	0.60	0.59	0.67	(4,867)
연령				
15~24세	0.10	0.10	0.09	(76)
25~29세	0.26	0.24	0.38	(565)
30~34세	0.45	0.45	0.47	(1,082)
35~39세	0.63	0.62	0.70	(1,636)
40~44세	0.83	0.81	0.95	(1,50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75	0.75	0.72	(197)
고등학교	0.71	0.70	0.77	(2,367)
대학 이상	0.47	0.47	0.48	(2,301)
취업여부				
취업	0.61	0.60	0.70	(2,199)
비취업	0.59	0.59	0.64	(2,667)

자료: <표 4-2>와 동일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의 평균 임신소모는 동부지역(0.75회)이 읍·면부지역(0.72회)보다 많았으나,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여성의 평균 임신소모는 읍·면부지역(0.77회)이 동부지역(0.70회)보다 많았고, 대학 이상의 학력소지자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여성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읍·면부지역 거

주여성이 동부지역 거주여성보다 평균 임신소모가 많았다(취업부인: 동부지역 0.60회, 읍·면부지역 0.70회); 비취업부인: 동부지역 0.59회, 읍·면부지역 0.64회).

제3절 출산율의 변동

출산력의 변동추이는 합계출산율에 의하여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연령별 출산율과 합계출산율의 시계열적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최근 주요 국가의 출산수준을 출생통계지표인 조출생률과 합계출산율에 의하여 비교한다. 이어서 유배우부인의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연령별 유배우출산율은 결혼율이 높은 한국사회에서의 출산수준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큰 의미를 가진다.[6)]

1.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

연령별 출산율은 합계출산율을 산출하는 부인연령인 15~49세를 5세 간격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는 여성 1,000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고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연령별 출산율을 산출하였으며 시계열적 변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출산율의 저하는 1974년 이후 1987년까지는 40~44세 연령층을 제외한 전체 연령층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전체기간동안 25~29세 연령층이 전체 출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았다. 그렇지만 25~29세 연령층의 합계출산율에의 기여율은 1990년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즉, 25~29세 연령층이 합계출산율에서 차지하는 기여율은 합계출산율이 3.8명이었던 1974년에는 38.5%이었으며, 합계출산율

6) 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점차 미혼율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에는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에 의한 전체 여성의 출산수준 파악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 인구대체수준인 2.1명이었던 1984년에는 44.8%로 상승하였다. 그런데 합계출산율의 기여율은 합계출산율이 1.6명이었던 1990년에는 60.5%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93년에는 55.9%, 1996년 52.8%, 1999년에는 49.8%, 2002년에는 47.2%, 그리고 2005년에는 42.9%로 점차 낮아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출산연령층이 25~29세 연령층에서 서서히 30대 초반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는 최근 30~35세 연령층의 출산율이 타 연령층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속도가 늦거나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에서 엿볼 수 있다.

둘째, 1974년 이후 연령별 출산율 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20~24세 연령층과 25~29세 연령층에서 보여준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이다. 즉, 여자 1,000명당 출생아수는 20~24세 연령층의 경우 159명에서 19명으로, 25~29세 연령층에서는 276명에서 94명으로 큰 저하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을 것이나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고용기회의 확대, 초혼연령의 상승, 소자녀관의 형성에 따른 피임실천율의 증가, 인공임신중절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최근 한국사회 출산율 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30~34세 연령층의 출산율이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저하를 멈추고 상승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1980년대 초반의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1974년 동 연령층의 연령별 출산율은 164이었으며, 점차 저하하여 1987년에는 39수준으로 최저점에 있었다. 그러나 점차 상승하여 1990년 50, 1993년 64, 1996년 83이었으며, 1999년에는 75로 다시 저하하였으나 2002년에는 83, 2005년에는 87로 재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24세 연령층과 25~29세 연령층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파급효과라 여겨진다.

넷째, 전술한 셋째와 넷째의 이유에 근거하여 25~29세 연령층과 30~34세 연령층의 출산율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점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1974년 연령층의 연령별 출산율은 25~29세 276, 30~34세 164로 큰 격차(112의 차이)를 보였으나 2005년에는 25~29세 94, 30~34세 87로 나타나 미미한 차이(7)만을 보였다.

다섯째, 35세 이상에서 출산하는 '고령출산'이 1980년 초반 이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35세 이상 연령별 출산율의 합이 1974년 106이었고, 1982년에는 26으로 낮아졌으며, 1990년 최저점(8)에 도달한 이후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에는 18로 정점에 달하고 있다.

〈표 4-8〉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

(단위: 명/여성 1,000명당)

연령	1982	1984	1987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15~19세	12	7	3	3	3	3	2	1	1	1
20~24세	161	162	104	62	71	62	50	24	19	16
25~29세	245	187	168	188	195	181	142	110	94	89
30~34세	94	52	39	50	64	83	75	83	87	104
35~39세	23	8	6	7	15	10	13	13	14	30
40~44세	3	1	3	1	1	4	3	2	4	3
45~49세	-	-	-	-	-	-	-	-	-	-

자료: 1) 문현상 외, 『1982년 전국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2) 문현상 외, 『1985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3) 문현상 외, 『1988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4)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5)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6)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7)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8)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9) 김승권 외,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10) 본 조사결과

여섯째, 1996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늦둥이 출산(40대 출산)이 미미하나마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증가하고 있다. 즉, 40~44세 연령층의 출산율은 1974년 29에서 점차 저하하여 1984년에는 1에 불과하였으나, 1987년 잠깐 상승하더니 1990년과 1993년에는 다시 낮아졌다. 그러나 1996년에는 늦둥이 출산이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고 2005년에는 1996년의 수준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체 출산율이나 인구구조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정책 차원에서 관심을 둘 정도는 아니지만 모자보건 측면에서 산전 및 산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일곱째, 가임여성은 15~49세이지만 한국사회에서 45~49세 연령층이 출

산하지 않는 경향은 지난 1982년 이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초혼연령의 지속적인 상승과 늦둥이 출산의 징후가 이 연령층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45~49세 연령층은 실제 출산층은 아닌 것이다.

2. 합계출산율의 변화

우리나라의 출산력 변천은 1960년 이후 수십 년간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이 동시에 추진된 성과로서 나타났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과거조사와 이번 조사를 근거로 한 여성이 평생동안 출산하는 자녀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표 4-9 참조).

1960~1970년대의 출산율 저하는 주로 홍보교육과 피임보급 활동에 의해서, 그리고 1980년대는 소자녀 규범의 형성을 위한 각종 사회지원시책 등 인구증가억제시책의 강화에 의해 급격한 저하가 이루어진 것이다(김승권 외, 2004). 이러한 결과에 힘입어 합계출산율은 1960~1987년 기간 중 6.0명에서 1.6명으로 감소하여 OECD 평균 수준에 도달되었다. 그 후에도 동일한 수준의 출산율이 약 10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비록 1993년에는 1.75명 수준으로 다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이 1% 수준으로 저하된 1989년 이후 정부가족계획사업의 급격한 축소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해석은 1996년 6월에 정부차원의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1993년 1.75명, 1996년 1.71명으로 안정적이었음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IMF 관리체제 하에서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게 되자, 출산율은 이상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즉, 1998년부터 합계출산율은 급속히 저하하기 시작하였는데, 1999년 1.43명으로 감소하였고 2002년에는 1.17명, 205년에는 1.09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면서, 한국 역사상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였다. 이어서 이번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8년의 합계출산율은 1.22명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인구동태통계 자료'에 기초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8년의 합계출산율 1.19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표 4-9〉 합계출산율의 변화

(단위: 명/여성 1명당)

연도	1982[1)]	1984[2)]	1987[3)]	1990[4)]	1993[5)]	1996[6)]	1999[7)]	2002[8)]	2005[9)]	2008[10)]
합계출산율	2.7	2.1	1.6	1.6	1.75	1.71	1.43	1.17	1.09	1.22

자료: <표 4-8>과 동일

이와 같은 결과는 출산력 변천이 종료되고 저출산 행태가 정착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저출산 위기현상'이 한국사회에 도래되었고 '저하하기는 쉽지만, 상승하기는 어려운' 출산력의 기본속성으로 인하여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추진효과는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에 발생된 두 차례의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증대, 소득격감,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활난과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이 야기되었고, 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결혼 및 출산을 연기 또는 기피하게 하였다. 따라서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악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은 결과적으로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된다.

3.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

한 사회의 출산행태 및 그 수준의 변화는 기혼여성(ever-married women)의 '배우 출산율'에 의해서도 파악될 수 있다. '배우 출산율'은 결혼을 한 경험이 있는 여성, 즉, 유배우부인, 사별, 이혼 및 별거 부인의 출산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실제 가정을 이루었거나 또는 현재 이루고 있는 여성의 출산행태를 알아 볼 수 있는 지표라 하겠다. 특히, 한국사회는 서구 국가에 비하여 결혼율이 높기 때문에 유배우 출산율에 의한 출산수준 측정은 의미가 있다(김승권 외, 2006). 그런데 본 분석에서는 기혼여성 중 배우자가 있는 부인만

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이혼 및 별거, 사별인 경우는 제외하고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유배우 출산율'이라고 하겠으며, 이렇게 하는 주요 이유는 기존의 출산력관련 조사 및 분석이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주로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시계열 비교를 하기 위함이다.

1990년부터 이번 조사까지의 유배우 출산율 변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배우 출산율의 전반적 변화를 살펴보면, 주 출산연령층이 2000년대 초까지는 20~24세 연령층이 높았으나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0년대 중반부터는 25~29세 연령층이 높았다.

둘째, 30~34세 연령층의 유배우출산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 연령층의 출산율은 1990년 53, 1993년 65, 1996년 88, 2000년대 진입해서는 100을 넘어서 이번 조사결과인 2008년에는 133.2를 보였다.

셋째, 연령별 유배우출산율의 합(合)[7]은 1990년 이후 1996년까지는 점차 상승하였으나, 1999년부터는 다시 저하하기 시작하여 이번 조사결과인 2008년에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표 4-8>의 연령별 출산율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10〉 연령별 유배우출산율의 변동추이

(단위: 명/유배우부인 1,000명당)

연령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20~24세	306	320	377	386	313	202	127.7
25~29세	234	237	264	224	250	231	188.0
30~34세	53	65	88	86	106	108	133.2
35~39세	7	15	11	14	16	17	34.3
40~44세	1	1	4	4	2	4	3.5
45~49세	-	-	-	-	-	-	-

자료: <표 4-8>과 동일(1990년 이전 자료 제외)

7) 유배우출산율의 합(合)은 통계학적 의미가 없어 제시하지 않았으며,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명함.

제4절 출생아·현존자녀수

본 절에서는 한 부인이 출산한 총 출생아수(children ever-born)와 현존자녀수를 분석하여 시계열적으로 비교한다. 출생아수와 현존자녀수는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상이한 경우도 많이 있다. 그 이유는 다음의 개념적 차이에서 알 수 있다.

'출생아'의 개념은 부인이 낳은 모든 아이를 의미하는데, 이 때 '아이'는 혼인전의 출산이든, 혼인중의 출산이든, 혼외 출산이든, 성장과정에서 사망하였든, 입양시켰든 모두 포함된다. 또한 재혼부인인 경우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아이도 그 아이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여기서의 출생아에 포함된다. 물론 쌍태아 또는 삼태아인 경우도 2명 또는 3명의 출생아로 계산된다. 그렇지만 현재 부부의 아이일지라도 다른 여성이 낳은 아이, 즉 남편의 전처 아이, 혼외자녀는 제외되며, 입양된 아이도 제외된다. 간략히 말해 현재 본인의 자녀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구와의 관계에서 임신이 되었든, 그리고 아이의 생사여부에 관계없이 부인 본인이 생애동안 출산한 모든 아이는 출생아수에 포함되는 것이다(김승권 외, 2006).

'현존자녀'의 개념은 전술한 '출생아'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녀를 낳은 사람이 누구이든, 입양하였든 상관없이 현재 생존하고 있는 자녀를 모두 현존자녀수의 개념에 포함한 것이다. 예를 들면, 재혼한 가정의 경우 전처의 자식, 전남편의 자식도 포함되며, 자녀가 결혼을 하여 출가하였더라도 현존자녀에 포함된다. 물론 부부의 자녀이었지만 다른 집에 입양된 경우와 사망한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김승권 외, 2006).

1. 출생아 규모

2009년 조사에서 나타난 15~44세 유배우부인의 평균 출생아수는 1.79명으로, 2006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표 4-11 참조).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은 평균 1.85명을 출산하였으며,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은 1.66명을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출생아수는 적었고, 반대로 연령이 높을수록 출생아수가 많았다. 또한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생아수가 적었고, 낮을수록 출생아수가 많았는데, 특히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하와 대학 이상 여부에 의하여 차이를 보였다(대학 이상 1.53명, 고등학교 이하 1.83~1.85명).

〈표 4-11〉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특성	2000[2)]	2003[3)]	2006[4)]	2009[5)]
전체	1.7	1.8	1.7	1.69
지역				
동부	1.7	1.8	1.7	1.66
읍·면부	2.0	1.9	1.8	1.85
연령				
15~24세	0.8	0.6	0.6	0.74
25~29세	1.1	1.1	0.9	0.89
30~34세	1.7	1.7	1.6	1.47
35~39세	2.0	2.0	1.9	1.86
40~44세	2.1	2.1	2.0	2.0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3	4.4	4.1	1.85
고등학교	1.7	1.8	1.8	1.83
대학 이상	1.5	1.6	1.5	1.53

자료: <표 4-1>과 동일

15～44세 유배우부인의 제 특성별 출생아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부인 중 2명의 출생아를 가진 부인이 55.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1명을 가진 부인이 23.0%, 3명의 출생아를 가진 부인과 출생아가 없는 부인이 10.1%로 동일한 비율이었다(표 4-12 참조). 15～44세 유배우부인의 89.0%가 2명 이하의 출생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3명 이상의 출생아를 가진 부인은 11.0%로 낮았다. 그렇지만 3명 이상의 출생아를 가진 부인이 2006년 10.6%보다 0.4%pt 증가한 것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즉,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추진에 의한 효과인지에 대한 조심스

러운 관찰이 필요하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출생아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명 이하의 출생아를 보인 부인은 동부지역이 33.9%로 많았고, 읍·면부지역은 27.9%로 적었다. 반면에 3명 이상의 출생아를 보인 부인은 읍·면부지역이 17.3%, 동부지역 10.0%로 나타났다.

〈표 4-12〉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출생아수 분포

(단위: %, 명)

특성	출생아수						χ^2	평균 출생아수	F값 (T값)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계(수)			
2006	9.8	22.6	57.0	9.8	0.8	100.0(5,394)		1.7	
2009	10.1	23.0	55.9	10.1	0.9	100.0(4,866)		1.69	
지역									
동부	10.6	23.3	56.1	9.3	0.7	100.0(4,221)	42.0***	1.66	(-5.4***)
읍·면부	6.5	21.4	54.7	15.3	2.0	100.0(645)		1.85	
연령									
15~24세	36.4	57.1	3.9	1.3	1.3	100.0(77)		0.74	
25~29세	36.4	40.3	21.2	2.1	-	100.0(566)	1195.8***	0.89	313.7***
30~34세	14.1	32.3	46.5	6.7	0.5	100.0(1,081)		1.47	
35~39세	3.7	19.3	64.8	11.6	0.5	100.0(1,637)		1.86	
40~44세	2.9	12.2	68.7	14.4	1.9	100.0(1,506)		2.0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0.2	20.9	47.4	16.8	4.6	100.0(196)	213.7***	1.85	88.7***
고등학교	6.9	18.2	60.9	12.9	1.1	100.0(2,368)		1.83	
대학 이상	13.3	28.2	51.5	6.7	0.3	100.0(2,300)		1.53	
취업여부									
취업	12.9	20.3	55.8	10.0	1.0	100.0(2,198)	45.7***	1.66	(-2.3*)
비취업	7.7	25.3	56.0	10.2	0.8	100.0(2,667)		1.71	

자료: <표 4-2>와 동일

부인연령이 높을수록 출생아수는 많았는데, 3명 이상의 출생아를 가진 부인은 25~29세가 2.1%로 가장 적었고, 40~44세 부인은 16.3%로 가장 많았다. 또한 3명 이상 출생아를 가진 부인은 대학 이상 학력의 부인은 7.0%에 머물렀으나 중학교 이하 학력의 부인은 21.4%로 무려 3배의 격차를 보였다.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출생아수의 차이는 미미하였다.

2. 현존자녀수

15～44세 유배우부인의 현존자녀수 분포는 2006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1명 이하의 자녀를 가진 비율은 증가하였고,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비율은 감소하였다. 즉, 자녀가 0～1명인 부인은 33.4%이었고, 3명 이상인 부인은 10.6%이었으며, 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56.0%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자녀수는 1.7명으로 2000년, 2006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표 4-13 참조).

0～1명의 자녀를 가진 15～44세 유배우부인의 비율은 2000년 31.7%에서 2003년 27.4%로 일시적인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06년 32.2%, 2009년 33.4%로 또 다시 증가추이를 보였다. 반면에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의 비율은 2000년 10.9%에서 2003년에는 12.0%로 증가하는 듯하더니 2006년 11.0%, 2009년 10.6%로 또 다시 감소추이를 보였다.

〈표 4-13〉 15~44세 유배우부인의 현존자녀수 분포

(단위: %, 명)

연도	1명 이하	2명	3명 이상	계(수)	평균자녀수
2000	31.7	57.4	10.9	100.0(6,404)	1.7
2003	27.4	60.6	12.0	100.0(6,599)	1.8
2006	32.2	56.8	11.0	100.0(5,395)	1.7
2009	33.4	56.0	10.6	100.0(4,869)	1.7

자료: <표 4-1>과 동일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자녀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명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동부지역이 34.3%로 많았고, 읍·면부지역은 27.7%로 적었다. 반면에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읍·면부지역이 16.9%, 동부지역 9.5%로 차이를 보였다.

부인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수는 많았는데,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25~29세가 2.3%로 가장 적었고, 40~44세 부인은 15.4%로 가장 많았다. 또한 3명 이상 자녀를 가진 부인은 대학 이상 학력의 부인은 6.9%에 불과하였으나 중학교 이하 학력의 부인은 18.7%로 큰 차이를 보였다.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자녀수의 차이는 미미하였다.

〈표 4-14〉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현존자녀수 분포

(단위: %, 명)

특성	현존자녀수						X^2	평균 자녀수	F값 (T값)
	0명	1명	2명	3명	4명이상	계(수)			
2006	10.0	22.2	56.8	10.2	0.8	100.0(5,397)		1.7	
2009	10.1	23.3	56.0	9.7	0.8	100.0(4,869)		1.68	
지역									
동부	10.7	23.6	56.1	8.9	0.6	100.0(4,223)	43.5***	1.65	(-5.7***)
읍·면부	6.3	21.4	55.4	15.0	1.9	100.0(646)		1.85	
연령									
15~24세	37.7	54.5	5.2	1.3	1.3	100.0(77)		0.74	
25~29세	36.2	40.5	21.0	2.1	0.2	100.0(566)	1153.9***	0.89	302.8***
30~34세	13.6	32.8	46.6	6.6	0.5	100.0(1,082)		1.47	
35~39세	3.9	19.6	64.9	11.2	0.5	100.0(1,636)		1.85	
40~44세	3.3	12.5	68.8	13.8	1.6	100.0(1,509)		1.98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11.1	21.7	48.5	15.7	3.0	100.0(198)	189.3***	1.78	85.7***
고등학교	6.9	18.5	61.1	12.5	1.0	100.0(2,368)		1.82	
대학이상	13.4	28.4	51.3	6.5	0.4	100.0(2,304)		1.52	
취업여부									
취업	12.9	20.5	56.2	9.5	0.8	100.0(2,200)	43.7***	1.65	(-2.2*)
비취업	7.9	25.6	55.8	9.9	0.8	100.0(2,668)		1.70	

주: * p<.05, *** p<.001

자료: <표 4-2>와 동일

제5절 임신·출산 행태와 출생아·현존자녀수 분석결과의 시사점

본 장에서 살펴본 임신·출산 행태와 출생아·현존자녀수 분석결과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임신횟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임신 중 자연유산으로 종결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고, 사산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공임신중절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자연유산과 사산을 감소시킬 수 있는 모자보건의 강화와 인공임신중절을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향후 현재의 낮은 출산율이 계속될 것인지의 여부는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회복여부와 사회경제적 환경이 어떻게, 얼마나 변화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가족형성의 근원인 결혼율이 상승하고 3명 이상을 출산하는 다자녀관이 형성되며, 아울러 경기회복으로 결혼 및 출산 장애요인과 자녀양육 지원이 확대된다면 다소의 출산율 상승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출산율이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른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출산율의 반전은 한계가 있을 것이며,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출산억제정책과는 달리 출산장려정책은 사회정책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출산율의 획기적인 반등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재정에 의한 사회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견된다.

셋째, 2009년 조사에서의 평균 출생아수는 1.7명, 평균 현존자녀수는 1.7명으로 나타난 반면, 이상자녀수 2.3명이었다. 따라서 출생아수 및 현존자녀수와 이상자녀수의 격차인 0.6명을 해소시킬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05

파일수용실태

제5장 피임수용실태

피임이란 임신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피임방법은 수용자의 성별, 피임효과의 영구성과 지속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수용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피임방법과 여성피임방법으로 분류된다. 남성피임방법으로는 정관수술, 콘돔[8], 질외사정법 등이 있으며, 여성피임방법으로는 난관수술, 자궁내장치[9], 먹는 피임약[10], 살정제[11] 등이 있다. 피임효과의 영구성 측면에서는 불임시술인 정관수술과 난관수술, 비영구적인 효과를 갖는 자궁내장치, 콘돔, 먹는 피임약 등이 있다. 또한 피임효과의 지속성에 따라서는 피임효과가 가장 높은 정관수술 또는 난관수술같은 불임수술과 이보다는 효과가 낮으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자궁내장치,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효과적인 피임방법으로 분류되는 콘돔, 먹는 피임약, 살정제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피임방법의 선택은 수용자의 특성, 피임목적, 접근의 용이성, 비용 및 부작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피임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는 1961년 이후 가족계획사업에서 시작되었다. 가족계획사업의 주된 목적은 인구증가억제를 위해 가임기의 부인에게 피임을 권장하여 출산력을 저하하는데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소자녀의 이점과 피임사용방법 등을 교육하면서 피임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가족계획사업이 시작된 이후 약 30년간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되자 1989년부터 정부의 피임보

8) 수정 즉, 난자와 정자의 결합상태를 저지시키는 방법임.
9)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는 방법임.
10) 배란 자체를 억제시키는 방법임.
11) 정자의 활동력 감소 내지 그 자체를 소멸시키는 방법임.

급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1996년에는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되어 정부차원의 피임보급은 극히 일부계층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정부의 피임보급물량의 감소는 피임실천율에 변화를 주게 될 우려가 있고, 불원임신을 증가시켜 인공임신중절률을 높여 인구자질 측면에서 여성의 생식보건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 급속히 진행된 저출산으로 인하여 출산장려정책이 고려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피임보급의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근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12)]과 관련하여 최근 기혼여성의 피임실천행태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장에서는 15~44세 유배우부인 4,868명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한 4,867명을 분석대상으로 피임수용실태를 다음의 네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연도별로 전체 피임실천율, 부인특성 및 피임방법별 피임실천율의 변동추이를 파악한다. 둘째, 피임실천부인을 대상으로 부인특성별, 연령 및 교육수준별, 부인특성 및 피임방법별, 지역 및 취업별로 피임실천 양상을 파악하고, 피임목적 등을 분석한다. 셋째, 피임비실천 부인을 대상으로 최종 사용한 피임방법, 피임중단 및 무경험이유, 향후 피임실천 의향 및 선호피임방법 등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피임노출 상태 및 자녀희망여부별 피임실태를 분석한다.

제1절 피임실천의 변동추이

가임기에 있는 유배우부인은 피임의 필요성에 의해서 실천이 이루어지므로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즉, 일정 시점에서 볼 때 피임을 실천하는 상태와 피임을 실천하지 않은 상태로 구분되고, 피임을 실천하지 않은 상태는 다시 과거에 피임을 실천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와 피임경험이

12) 최근 지속되는 저출산과 함께 남아선호관은 출산행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즉, 기혼여성의 남아선호관은 성감별을 통하여 인공인신중절 등이 행하여질 것이 예측되어 출산저하뿐 아니라 성비불균형이라는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전혀 없는 상태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피임실천 양상을 4가지 유형 즉, 피임실천부인, 피임비실천부인으로 나누고, 피임비실천부인은 다시 피임경험부인, 피임무경험부인으로 구분하여 연도별로 변화를 파악하며, 또한 부인특성에 따른 경향을 살펴본다.

1. 연도별 피임실천율의 변화

연도별로 15~44세 유배우부인의 피임실천상태를 살펴보면, 2000년의 피임실천율은 79.3%에서 2003년에 큰 폭으로 상승하여 84.5%의 높은 피임실천율을 보였다. 2006년에는 2003년에 비해 4.9%pt가 감소한 79.6%로 2000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2009년에는 80.0%로 소폭으로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추세는 결혼연령의 상승으로 인한 피임 불필요 집단의 누적과 불임의 증가에서 오는 영향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피임실천율의 변화는 가족계획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1961년 이후 가족계획사업으로 피임보급물량이 지원됨에 따라 피임실천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9년 이후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감액되고, 1996년 6월을 기점으로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되는 등 인구정책이 인구자질 및 복지정책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피임실천율이 소폭으로 증감을 계속하면서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그동안 피임실천이 안정화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현재의 높은 피임실천 수준은 피임실천이 상당히 보편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피임비실천율은 지속적으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2000년에는 20.7%에서 2003년에는 15.5%로 감소하다가 2006년에는 다시 20.4%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다소 감소하여 20.0%에 이르고 있다. 이를 과거경험이 있으나 현재 실천하지 않은 부인과 피임경험이 전혀 없는 무경험부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과거경험이 있으나 현재 피임실천을 하지 않은 부인은 2000년 10.1%에서 2009년에는 10.0%로 소폭으로 감소하였고, 피임무경험부인은 각각

10.6%에서 10.0%로 감소하여 비슷한 경향과 수준을 보였다.

〈표 5-1〉 15~44세 유배우부인의 피임실태 변화

(단위: %, 명)

연도	실천	비실천			계
		소계	과거경험	무경험	
2000[1)]	79.3	20.7	10.1	10.6	100.0(6,408)
2003[2)]	84.5	15.5	8.5	7.0	100.0(6,598)
2006[3)]	79.6	20.4	9.9	10.5	100.0(5,395)
2009[4)]	80.0	20.0	10.0	10.0	100.0(4,867)

자료: 1)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2)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3) 김승권 외,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4) 본 조사결과

일반적으로 피임은 출산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13)] 피임실천율과 합계출산율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2003년에 84.5%로 정점을 이루었던 피임실천율은 2009년에 80.0%로 소폭으로 감소하는데 그쳤으나, 합계출산율은 1989년 정부피임보급 물량이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에 증감을 반복하다가[14)] 2003년에 1.18명에서 2005년에는 1.19명으로 다소 높아졌다. 이는 피임실천율이 낮아질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일반적인 경향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주목된다.

13) 최근 각국의 조사자료에 의한 합계출산율과 피임실천율과의 관계를 보면, 피임실천율이 10% 증가하는데 따라 합계출산율은 0.7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UN, 1997).

14) 1989년 이후 출산수준이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었고, 이를 반영하듯 1990년의 합계출산율은 1.60명에서 1993년에는 1.75명, 그리고 1996년 1.71명 수준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임.

2.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피임실천율의 변화

연도별 피임실천율의 변화를 유배우부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2 참조). 지역별로는 2000년에는 읍·면부지역이 계속 높은 피임실천율을 보이면서, 지역 간 차이가 줄어들었다. 2003년에는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을 상회하면서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2006년에는 지역간에 소폭의 감소를 보이다가 2009년에는 다시 지역 간 차이가 벌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2000년에 지역 간 차이가 줄어든 것은 피임에 대한 지식 및 생활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3년부터 다시 동부지역의 피임실천율이 높아지면서, 지역간에 차이가 약간 벌어지는 것은 여성의 결혼연령과 이로 인한 출산종료시기의 지역별 차이에서 오는 영향으로 이해된다.

부인의 연령 및 현존자녀수에 따른 피임실천율은 비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0년에서 2003년까지 29세 이하 연령층은 전체보다 낮은 피임실천율을 보였으며, 3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전체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6년부터 연령별 피임실천율은 다른 경향을 보여서 34세 이하 연령층의 피임실천율은 전체보다 낮았고, 35세 이상 연령층으로 오면서 전체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와 같이 피임실천시기가 5년 정도 늦추어지는 현상은 최근 결혼연령이 높아지면서 자녀출산 완료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현존자녀수별 피임실천율은 2000년에 자녀 1명 이하인 경우는 전체보다 낮은 피임실천을 수준을 보인 반면, 2명 이상인 경우는 전체를 상회하였다. 2003년에는 자녀수가 3명 이하인 경우만 피임실천율이 증가하였고, 2009년에는 자녀수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 증가하였고, 5명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한 피임실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피임실천의 보편화로 피임실천은 안정화되었으나 여성의 결혼연령이 늦어지는데서 오는 영향으로 이해되며, 여성의 생식보건과 관련하여 질적인 관리에 집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교육수준별 피임실천율은 연도별로 다른 경향을 보였다. 2000년에는 중학교 이하의 저학력층의 피임실천수준은 전체를 상회하였으나 고학력층은 전체보다 낮았고, 2003년, 2006년에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층까지 전체보다

높았으며, 2009년에는 교육수준별로 일정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고등학교와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 간에 격차가 심화되는 특성을 보였다. 이는 피임이 보편화되고 여성의 학력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기가 늦어지면서 원하는 자녀수를 가진 후 피임을 수용하는 경향이 정착됨에 따라 고학력층 여성의 피임실천율이 낮아진 것으로 이해된다.

〈표 5-2〉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피임실천율 변화

(단위: %)

특성	2000[1)]	2003[2)]	2006[3)]	2009[4)]
전체	79.3	84.5	79.6	80.0
지역				
동부	79.2	84.8	79.8	80.3
읍·면부	80.2	82.7	78.2	77.7
연령				
24세 이하	43.5	56.8	43.3	39.5
25~29세	57.0	64.8	51.3	50.1
30~34세	81.3	80.8	74.2	71.2
35~39세	89.3	90.8	88.0	88.4
40~44세	87.7	91.5	90.3	90.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85.3	88.5	81.8	78.6
중학교	88.9	89.4	85.2	78.6
고등학교	78.4	85.3	81.6	82.7
대학 이상	75.4	81.3	76.2	77.3
현존자녀수				
0명	29.3	38.7	35.4	32.7
1명	58.7	67.0	61.5	65.1
2명	92.7	94.5	92.2	92.8
3명	90.7	93.4	91.5	90.5
4명 이상	92.7	91.7	90.9	86.5
(5명 이상)	(94.1)	(92.9)	(100.0)	(100.0)

자료: <표 5-1>과 동일

3. 피임방법별 피임실천율의 변화

피임방법별 피임실천율은 연도별로 뚜렷한 변화를 보여준다(표 5-3 참조). 난관수술은 2000년에 18.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에는 7.3%에 이

르렀다. 반대로 먹는 피임약의 실천율은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06년에 일시인 감소를 보였고 2009년에는 다시 상승하여 2.7%의 실천율을 보였다. 정관수술 실천율은 2000년에 13.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 21.0%까지 증가하였으며, 콘돔실천은 꾸준히 증가하다 2003년에 일시적인 감소를 보인 후에 2009년에는 다시 25.0%까지 증가하였다. 한편, 자궁내장치는 2000년에 13.7%에서 증감을 계속하다 2009년에는 16.1%로 2006년보다 1.1%pt 증가하였다. 기타 방법은 난관수술이 감소하면서 사용이 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18.2%의 실천율을 보였다. 피임방법별 실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콘돔 실천율의 증가는 대체로 난관수술의 감소와 기타 피임방법의 감소에 의한 영향으로 이해된다.

〈표 5-3〉 15~44세 유배우부인의 피임방법별 피임실천율 변화

(단위: %)

피임방법	2000[1)]	2003[2)]	2006[3)]	2009[4)]
난관수술	18.3	15.6	11.3	7.3
정관수술	13.0	15.7	19.7	21.0
자궁내장치	13.7	16.1	15.0	16.1
먹는 피임약	2.1	2.0	1.1	2.7
콘돔	16.5	8.5	19.2	25.0
기타	15.7	26.6	13.3	18.2

자료: <표 5-1>과 동일

따라서 가족계획사업의 활성화 시기에는 여성을 정부정책의 대상으로 하여 난관수술을 주도하였으나, 정부의 피임보급이 감소함에 따라 난관수술의 의존도가 떨어졌으며, 오히려 남성피임법인 정관수술과 반영구적 피임방법인 자궁내장치, 콘돔에 의한 실천율이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피임방법의 변화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피임방법이 여성피임방법인 난관수술에서 탈피하여 남성피임방법인 정관수술로 변화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성평등적인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경제활동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둘째, 영구적인 피임방법에서 자궁내장치, 콘돔 등 반영

구적 피임방법 및 일시적인 피임방법으로 점차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피임효과가 불확실한 피임방법의 사용증가로 인공임신중절에 노출되어 여성의 생식보건을 저해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제2절 피임실천양상

본 절에서는 가임기에 있는 유배우부인 중 현재 피임을 실천하고 있는 부인을 중심으로 피임실천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부인특성 및 피임방법별 피임실천, 피임을 실천하는 목적 및 현사용 피임방법에 대한 계속 사용의향 및 선호하는 피임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부인특성별 피임실천율의 변화

유배우부인의 특성별로 피임실천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과 읍·면부지역이 각각 80.3%, 77.7%로 동부지역이 2.6%pt 높았다. 이는 2006년의 경우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1.6%pt 높았던 것과 비교할 때 동부지역의 피임실천율의 증가는 읍·면부지역보다 빠르게 진행됨을 알 수 있다(표 5-4 참조).[15]

피임비실천부인 중 과거경험이 있었던 부인은 2006년에 동부지역이 9.7%, 읍·면부지역이 11.2%에서, 2009년에는 각각 10.0%, 10.2%로 3년 동안 피임실천율이 소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과거경험이 있는 부인의 비율은 동부지역이 0.3%pt 높아졌고, 읍·면부지역은 1.0%pt 낮아졌다. 그리고 피임무경험부인의 비율은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다. 3년간 과거에 경험이 없었던 피임비실천 부인의 비율은 동부지역은 0.8%pt 낮아졌고, 읍·면부지역은 1.5%pt가 높아졌다.[16]

15) 2006년 15~44세 유배우부인 5,3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동부지역은 피임실천율이 79.8%, 비실천율이 20.2%였으며, 읍·면부지역은 피임실천율이 78.2%, 비실천율이 21.8%의 분포를 보였음(김승권 외, 2006).

결과적으로 과거경험이 있는 부인의 피임실천율은 동부지역이, 과거에 전혀 경험이 없는 부인의 피임비실천율은 읍·면부지역이 증가하였으며, 피임무경험 부인의 경우에는 읍·면부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큰 증가폭을 보였다.

부인연령에 따른 피임실천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피임실천 부인의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반대로 피임비실천 부인의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였다. 피임비실천 부인 중 과거경험부인과 피임무경험부인의 비율도 각각 연령이 높을수록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30대 초반까지 자녀출산을 종료한 후 30대 후반에는 단산을 위하여 피임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수준별 피임실천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저학력수준 부인의 피임실천이 높은 편이었으며 고학력수준은 상대적으로 피임실천이 낮았다. 이는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보다는 최근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연령에 의한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 즉, 15~44세 유배우부인의 교육수준별 평균연령을 보면 중학교 이하 학력의 부인은 37.7세, 고등학교는 36.9세, 대학 출신의 부인은 35.2세로 나타나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수는 부인의 연령과 정비례의 관계로 부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현존 자녀수는 많았으며, 현존자녀수가 많을수록 피임실천율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동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조사결과, 자녀가 1명인 부인의 경우 피임실천율은 65.1%, 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92.8%로 급격히 상승하였고,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부터는 비슷한 피임실천수준을 보였다. 이는 소자녀 가치관의 정착 때문으로 두 자녀가 일반화됨에 따라 그 이상의 자녀를 둔 부인의 경우는 대부분이 피임을 실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6) 2006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동부지역은 피임비실천 부인 중 과거 경험이 있는 부인의 비율이 9.7%, 피임무경험 부인은 10.5%인 반면 읍·면부지역은 각각 11.2%, 10.6%였음(김승권 외, 2006).

〈표 5-4〉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피임실태 분포

(단위: %, 명)

특성	실천	비실천			계(수)	χ^2
		소계	과거경험	무경험		
전체	80.0	20.0	10.0	10.0	100.0(4,867)	
지역						
동부	80.3	19.7	10.0	9.7	100.0(4,222)	3.826
읍·면부	77.7	22.3	10.2	12.1	100.0(646)	
연령						
24세 이하	39.5	60.5	31.6	28.9	100.0(76)	
25~29세	50.1	49.9	23.8	26.1	100.0(567)	624.927***
30~34세	71.2	28.8	14.0	14.8	100.0(1,082)	
35~39세	88.4	11.7	6.1	5.6	100.0(1,636)	
40~44세	90.4	9.5	5.2	4.3	100.0(1,50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78.7	21.3	9.6	11.7	100.0(197)	21.992***
고등학교	82.7	17.3	8.6	8.7	100.0(2,366)	
대학 이상	77.3	22.7	11.6	11.1	100.0(2,302)	
현존자녀수						
0명	32.7	67.3	23.7	43.6	100.0(493)	
1명	65.1	34.8	18.1	16.7	100.0(1,135)	1279.223***
2명	92.8	7.2	4.8	2.4	100.0(2,726)	
3명	90.5	9.4	6.9	2.5	100.0(475)	
4명 이상	86.5	13.5	10.8	2.7	100.0(37)	

주: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교육수준별 피임실천율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령별로 교육수준에 따른 피임실천상태를 <표 5-5>에 제시하였다. 15~24세 연령층의 경우 중학교 이하 학력의 피임실천율은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의미가 적으며 대체로 고등학교와 대학 이상 학력의 피임실천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결혼시기가 빠른 경우 임신·출산 행태가 결혼 후 단기간 내에 일어나며, 이와 같은 현상은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의 연령층에서는 각각 고등학교와 중학교 학력을 가진 부인의 피임실천율이 가장 높았으며,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은 피임실천율이 가장 낮았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부인이 교육수준이 낮은 부인보다 결혼연령이 높은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임신시기가 늦어지는

데서 오는 영향으로 이해된다.

자녀출산이 종료되는 30대 후반 연령층에서는 피임실천율이 정점을 보였으며, 교육수준에 따라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피임실천율이 높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여성의 고학력화, 취업기회 확대 및 자아성취 욕구의 증대 등으로 인한 결혼연령이 상승하나 소자녀 또는 무자녀 가치관이 확대되면서 결혼 후 단기간 내에 출산을 종결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표 5-5〉 15~44세 유배우부인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피임실태 분포

(단위: %, 명)

특성	실천	비실천			계(수)	χ^2
		소계	과거경험	무경험		
24세 이하						
중학교 이하	50.0	50.1	18.8	31.3	100.0(16)	
고등학교	37.8	62.3	35.6	26.7	100.0(45)	
대학 이상	33.3	66.6	33.3	33.3	100.0(15)	
25~29세						
중학교 이하	53.8	46.2	7.7	38.5	100.0(13)	
고등학교	52.1	47.9	24.2	23.7	100.0(194)	
대학 이상	48.7	51.2	24.2	27.0	100.0(359)	
30~34세						
중학교 이하	54.5	45.5	18.2	27.3	100.0(11)	
고등학교	74.0	26.0	10.3	15.7	100.0(427)	
대학 이상	69.6	30.4	16.5	13.9	100.0(642)	
35~39세						
중학교 이하	81.1	18.9	3.8	15.1	100.0(53)	
고등학교	89.1	10.9	6.0	4.9	100.0(855)	
대학 이상	88.1	11.9	6.3	5.6	100.0(729)	
40~44세						
중학교 이하	86.7	13.4	10.5	2.9	100.0(105)	7.609
고등학교	90.1	9.9	5.4	4.5	100.0(845)	
대학 이상	91.6	8.4	4.1	4.3	100.0(557)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2. 부인의 특성 및 피임방법별 피임실천

유배우부인의 특성 및 사용하는 피임방법에 따른 피임실천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6 참조). 지역별로 보면,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정관수술, 콘돔, 월경주기법 등의 피임방법을 많이 사용하였고, 난관수술, 자궁내장치, 먹는 피임약, 살정제, 기타 방법 등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많았다. 동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동부지역에서는 주로 남성용 피임방법이, 읍·면부지역에서는 여성용 피임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남성의 경우 동부지역보다 피임방법의 선택이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측면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동부지역보다는 읍·면부지역이 정부의 피임보급량의 감소로 인한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임시술 보급량의 감소는 그 속도를 완만하게 하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부인연령 및 피임방법별로 피임실천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난관 및 정관수술 등의 영구적 피임방법에 의한 실천율은 부인연령이 높을수록 상승하였다. 반영구적 피임방법인 자궁내장치는 40~44세 연령층에서 피임실천율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콘돔과 월경주기법은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연령층에서 피임실천이 높았으며, 먹는 피임약, 살정제, 기타 방법 등의 일시적 피임방법에 의한 실천율은 젊은 연령층 부인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나이가 많은 연령층에서는 이미 원하는 자녀를 갖고 단산을 원하기 때문에 불임수술을 수용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은 것이며, 젊은 연령층에서는 아직 원하는 자녀를 모두 출산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터울조절이 가능한 일시적 피임방법의 사용 가능성이 많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피임방법의 지도는 부인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별화하여 관리될 때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피임방법별 실천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부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난관수술 및 먹는 피임약에 의한 피임

실천율이 높았고, 정관수술, 일시적 피임방법인 콘돔, 월경주기법 및 기타 방법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실천율이 높았으며, 자궁내장치 등은 학력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수준과 연령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학력과 피임방법의 관계만으로 단순히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존자녀수 및 피임방법별 실천율은 부인의 연령에 따른 피임방법 실천율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자녀수가 많을수록 난관수술 또는 정관수술과 같은 영구피임방법과 자궁내장치같은 반영구피임방법을 실천하는 비율이 높았고, 자녀수가 적을수록 먹는 피임약, 콘돔, 월경주기법, 기타방법 등의 일시적 피임방법에 의한 실천율이 높았다.

〈표 5-6〉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 및 방법별 피임실천율 분포

(단위: %, 명)

특성	실천									비실천	계(수)	χ^2
	소계	난관수술	정관수술	자궁내장치	먹는피임약	콘돔	살정제	월경주기법	기타방법			
전체	80.0	5.9	16.8	12.8	2.0	24.3	0.9	9.9	7.4	20.0	100.0(4,867)	
지역												
동부	80.3	5.4	17.1	12.7	1.8	25.5	0.9	10.0	6.9	19.7	100.0(4,222)	55.960 ***
읍·면부	77.7	9.2	14.4	13.6	3.0	16.4	1.1	8.8	11.2	22.3	100.0(645)	
연령												
24세 이하	39.5	-	1.2	5.1	6.4	15.4	2.5	3.8	5.1	60.5	100.0(77)	
25~29세	50.1	1.1	2.1	5.1	2.5	27.0	0.5	6.9	4.9	49.9	100.0(567)	998.055 ***
30~34세	71.2	2.4	6.9	9.0	2.4	30.2	1.2	10.4	8.7	28.8	100.0(1,081)	
35~39세	88.4	6.1	20.4	13.8	1.5	26.0	0.7	11.1	8.8	11.6	100.0(1,636)	
40~44세	90.4	10.2	26.1	18.0	1.7	17.8	1.1	9.5	6.0	9.6	100.0(1,50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78.7	4.2	14.6	8.7	1.3	30.4	0.9	10.9	7.7	22.7	100.0(196)	231.266 ***
고등학교	82.7	7.1	19.1	16.3	2.5	19.7	1.1	9.3	7.6	17.3	100.0(2,367)	
대학 이상	77.3	4.0	14.4	8.5	1.1	30.3	0.8	10.7	7.5	22.7	100.0(2,303)	
현존자녀수												
0명	32.7	0.4	-	1.4	3.2	21.3	0.4	3.2	2.8	67.3	100.0(493)	
1명	65.1	1.8	3.9	8.7	2.3	28.2	0.7	11.8	7.7	34.9	100.0(1,136)	1,520.171 ***
2명	92.8	7.1	24.2	15.8	1.6	24.6	1.1	10.2	8.2	7.2	100.0(2,726)	
3명	90.5	13.2	22.6	17.7	1.5	18.1	0.8	9.9	7.2	9.5	100.0(475)	
4명 이상	86.5	21.0	10.4	13.1	5.3	13.1	2.6	15.7	5.3	13.5	100.0(38)	

주: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부인의 취업여부는 피임실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출산 및 자녀양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피임실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피임실천율을 살펴보면 <표 5-7>과 같다. 취업한 부인의 경우 피임실천율은 83.4%로 비취업상태에 있는 부인의 피임실천율인 77.2%보다 6.2%pt 높았다. 지역별 피임실천율도 취업부인이 비취업부인보다 피임실천율이 높아서 전체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피임실천율의 수준은 취업부인은 지역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비취업부인은 지역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여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이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보다 피임실천율이 높았다. 동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5-7〉 15~44세 유배우부인의 지역, 연령 및 취업여부별 피임실천율 분포

(단위: %, 명)

취업여부	실천						비실천	계(수)	χ^2
	소계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전국									
취업	83.4	0.6	5.4	13.0	29.4	35.0	16.6	100.0(2,199)	117.586 ***
비취업	77.2	0.6	6.2	18.2	30.0	22.2	22.8	100.0(2,667)	
동부									
취업	83.1	0.5	5.6	13.6	28.3	35.1	16.9	100.0(1,866)	84.942 ***
비취업	78.2	0.6	5.9	18.4	30.6	22.7	21.8	100.0(2,357)	
읍·면부									
취업	85.3	1.2	4.2	9.3	35.1	35.5	14.7	100.0(333)	53.453 ***
비취업	69.6	1.3	8.6	16.6	25.5	17.6	30.4	100.0(313)	

주: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취업여부에 따른 연령별 피임실천율은 연령층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30대 미만과 35~39세 연령층에서는 취업부인과 비취업부인 간에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30~34세와 40~44세 연령층은 두 집단 간에 다르게 나타났다. 즉, 취업부인과 비취업부인의 피임실천율의 차이는 40~44세 연령층에서 12.8%pt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차이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연령별 피임실천율은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취업부인과 비취업부인 간의 피임실천율의 차이는 동부지역보다 읍·면부지역의 경우에 더 컸다.

대체로 취업부인과 비취업부인의 피임실천경향은 출산가능시기인 젊은 연령층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출산종료 시기인 40대 연령층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취업한 부인은 짧은 시기 안에 출산행위를 종료하는 것에 비해, 비취업부인은 터울을 두고 출산을 조절하고 있으며, 또한 취업부인이 비취업부인보다 소자녀 출산의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지역 간 차이를 보면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이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보다 취업이 출산태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인의 연령 및 현존자녀수별로 피임실천율 및 불임수술실천율을 살펴보면 <표 5-8>과 같다. 자녀가 없는 부인의 피임실천율은 32.7%이고, 불임수술실천율은 0.4%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30~34세 연령층의 피임실천율은 37.2%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았는데, 이는 2006년도 조사결과 15~24세 연령층에서 높은 것과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17]. 이와 같이 2006년보다 높은 연령층에서 피임실천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결혼이 만혼화됨에 따라 출산시기가 늦어지는데서 오는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35～39세 연령층 부인은 34세 이하 연령층보다 피임실천율이 낮았는데, 이는 불임에 의한 영향이거나 자녀가 없을 경우 자녀를 원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부인의 불임실천율은 40대부터 나타나는데 특히 40~44세 연령층의 불임실천율은 자녀출산을 완료하고 단산을 목적으로 피임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로 이해된다.

자녀를 1명 가진 부인들의 경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피임실천율과 불임수술실천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가 2명인 부인의 경우는 1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에 비하여 피임실천율과 불임수술실천율이 훨씬 높았다. 동 부인들의 연령별로는 35세 이상 연령층에서 90% 이상의 높은 피임실천율을

17) 2006년 조사결과 자녀가 0명인 경우 피임실천율은 15~24세 연령층이 44.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44세 40.5%, 30~34세 37.3%의 순이었음(김승권 외, 2006).

보였고, 불임수술실천율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여 40~44세 연령층의 경우 50.7%로 가장 높았다. 자녀가 3명인 부인은 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보다 40~44세 연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피임실천율이 낮은 반면, 불임실천율은 30대 연령층에서 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보다 높았다.

〈표 5-8〉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피임실천율 및 불임실천율

(단위: %)

구분	15~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전체
2006년[1]						
피임실천율	43.3	51.3	74.2	88.0	90.3	79.6
불임수술실천율	0.8	5.2	20.2	37.5	46.6	31.0
2009년[2]						
피임실천율	39.5	50.1	71.2	88.4	90.4	80.0
불임수술실천율	0.1	1.6	9.2	39.3	49.8	22.7
0명						
피임실천율	34.5	33.2	37.2	27.4	22.9	32.7
불임수술실천율	-	-	-	-	100.0*	0.4
1명						
피임실천율	36.6	54.1	58.6	76.6	77.1	65.1
불임수술실천율	1.5*	4.6*	1.5*	41.5	50.8	5.7
2명						
피임실천율	100.0*	72.3	87.7	95.2	95.3	92.8
불임수술실천율	-	1.5	9.2	38.6	50.7	31.5
3명						
피임실천율	-	50.0	83.1	90.7	95.7	90.5
불임수술실천율	-	1.2[1]	12.4	43.2	43.2	35.6
4명 이상						
피임실천율	100.0[1]	-	100.0	87.5	82.6	86.5
불임수술실천율	-	-	15.4*	23.1*	61.5	32.1

주: * 불임수술실천율의 분석대상수가 5명 미만으로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자료: 1) 김승권 외,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2) 본 조사결과

3. 부인의 특성별 피임실천 목적

부인의 피임실천목적은 출산행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표 5-9>와 같다. 우리나라 15~44세의 유배우부인의 68.2%가 단산을 목적

으로 피임을 실천하였고, 출산연기 목적의 피임실천부인은 11.7%, 그리고 기타 등으로 피임을 하고 있는 경우는 0.1%에 불과하였다. 지역별로는 단산을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는 부인의 비율은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0.2%pt, 출산연기는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2.8%pt 높았다.

부인의 연령별로는 24세 이하 연령층의 출산연기를 위한 피임실천율은 25.4%로 2006년의 33.1%에 비하여 감소한 반면, 25~29세와 30~34세 연령층은 각각 32.4%, 21.1%로 2006년의 27.6%, 16.3%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자아성취 등의 욕구 등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젊은 연령층에서 계획출산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34세 이하 연령층의 부인은 출산연기를, 35세 이상 연령층의 부인은 주로 단산을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 피임실천목적도 교육수준이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연령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저연령층에 속해 있는 고학력 수준의 부인일수록 출산연기 목적의 피임실천이 많았던 반면, 고연령층의 저학력 부인은 단산목적의 피임실천이 많았다. 즉,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의 14.7%는 출산연기를 목적으로, 중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부인의 71.6%는 단산을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였다.

현존자녀수는 부인의 연령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인의 연령에 따른 피임실천목적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자녀가 없는 부인은 주로 출산연기를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였고, 1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단산과 출산연기를 목적으로, 그리고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의 경우는 단산을 주목적으로 피임실천을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부인은 1명의 자녀를 출산한 후부터 단산을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였으며, 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의 대다수도 피임을 통하여 단산하고 있어서 저출산의 실태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표 5-9〉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피임목적에 따른 피임실태 분포

(단위: %, 명)

특성	실천				비실천	계(수)
	소계	단산	출산연기	기타		
2006[1)]	79.6	69.7	9.7	0.2	20.4	100.0(5,395)
2009[2)]	80.0	68.2	11.7	0.1	20.0	100.0(4,867)
지역						
동부	80.3	68.2	12.1	-	19.7	100.0(4,222)
읍·면부	77.7	68.4	9.3	-	22.3	100.0(646)
연령						
24세 이하	39.5	14.1	25.4	-	60.5	100.0(76)
25~29세	50.1	17.7	32.4	-	49.9	100.0(567)
30~34세	71.2	50.1	21.1	-	28.8	100.0(1,082)
35~39세	88.4	80.9	7.4	0.1	11.7	100.0(1,636)
40~44세	90.4	89.3	1.1	-	9.5	100.0(1,50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78.7	71.6	7.1	-	21.3	100.0(197)
고등학교	82.7	73.4	9.3		17.3	100.0(2,366)
대학 이상	77.3	62.6	14.7	-	22.7	100.0(2,302)
현존자녀수						
0명	32.7	3.8	28.9	-	67.3	100.0(493)
1명	65.1	41.4	23.7	-	34.8	100.0(1,135)
2명	92.8	87.4	5.4	-	7.2	100.0(2,726)
3명	90.5	88.7	1.8	-	9.4	100.0(475)
4명 이상	86.5	83.6	2.9	-	13.5	100.0(37)

주: 1) 기타에는 건강이나 취업 또는 경제적인 이유 등이 포함됨;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5-8>과 동일

한편 피임실천부인만을 대상으로 피임목적을 보면 부인의 85.0%가 단산을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였고, 15.0%만이 건강이나 취업 또는 경제적인 이유, 가족수발, 자녀양육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출산연기를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0 참조). 따라서 우리나라 부인의 대부분은 원하는 자녀를 모두 출산한 후 피임을 실천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젊은 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부지역은 읍·면부지역보다 건강이나 취업 또는 경제적인 이유, 가족수발, 자녀양육 등의 이유로 출산연기를 위해 피임을 하는 경우가 다소 많아 다양한 피임행태를 보여주었다.

〈표 5-10〉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단산 및 출산연기 이유 분포

(단위: %, 명)

특성	저소득	고용 상태 불안정	자녀 양육 비용 부담	자녀 돌볼 사람/ 시설 없음	출산으로 인한 직장 차별	사회 활동 지장	부부 중심의 생활	가정내 가사 및 양육의 불평등 분담	가족 수발	터울 조절	기타	계(수)	χ^2
2006[1)]	8.3	1.2	49.0	6.0	-	4.8	7.7	1.1	0.5	2.5	18.9	100.0(4,261)	
2009[2)]	7.7	1.5	51.8	3.7	0.1	6.1	14.1	0.9	0.4	3.2	10.4	100.0(3,892)	
지역													
동부	7.5	1.5	52.2	3.8	0.1	6.0	13.8	1.0	0.4	3.2	10.5	100.0(3,390)	7.612
읍·면부	9.5	1.2	49.7	2.6	-	6.6	15.9	0.8	0.4	3.2	10.1	100.0(503)	
연령													
24세 이하	28.1	6.3	31.3	3.1	-	6.3	12.5	-	-	12.5	-	100.0(32)	
25~29세	10.6	1.8	31.8	4.2	-	10.6	15.9	-	0.4	20.1	4.6	100.0(283)	
30~34세	9.7	1.6	49.9	4.9	0.1	6.1	12.1	0.8	-	7.1	7.7	100.0(770)	
35~39세	7.0	1.5	59.7	3.8	0.2	4.8	11.3	1.1	0.7	0.5	9.4	100.0(1,445)	
40~44세	6.2	1.3	49.2	2.7	0.1	6.5	17.8	1.1	0.4	0.1	14.5	100.0(1,36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1.4	1.9	54.5	1.3	-	1.9	11.7	-	0.6	0.6	5.8	100.0(154)	
고등학교	9.9	2.1	57.1	1.6	-	4.2	12.8	0.8	0.6	1.7	9.1	100.0(1,954)	
대학 이상	4.1	0.7	45.8	6.1	0.3	8.5	15.8	1.1	0.2	5.1	12.3	100.0(1,782)	
현존자녀수													
0명	19.1	5.6	3.7	5.6	0.6	19.8	37.0	-	-	-	8.6	100.0(162)	
1명	7.8	2.3	38.5	6.6	0.1	11.2	9.6	0.8	0.5	14.5	8.0	100.0(740)	
2명	7.1	1.2	56.9	3.1	0.1	4.0	14.9	0.9	0.4	0.7	10.7	100.0(2,531)	
3명	7.2	0.5	61.9	0.9	-	4.6	8.8	1.9	0.7	0.2	13.2	100.0(431)	
4명 이상	9.4	-	59.4	3.1	-	-	9.4	3.1	-	-	15.6	100.0(32)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4.0	-	34.0	-	-	4.0	16.0	10.0	8.0	8.0	6.0	100.0(50)	
100~199만원	24.9	5.0	47.2	1.6	-	1.6	6.6	-	1.1	4.0	8.0	100.0(377)	
200~299만원	11.4	2.0	56.9	2.1	-	2.7	11.8	0.4	0.3	4.8	7.6	100.0(951)	
300~399만원	6.7	1.4	58.3	2.4	-	5.2	13.8	1.1	0.4	3.4	7.3	100.0(1,041)	
400~499만원	2.2	0.8	52.0	5.7	-	9.6	16.7	1.1	0.2	2.1	9.6	100.0(627)	
500만원 이상	0.9	0.1	41.0	6.5	0.6	10.3	18.2	1.2	0.2	1.4	19.5	100.0(851)	

주: 1) 피임목적이 '단산 및 출산연기'라고 응답한 부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기타에는 건강이나 취업 또는 경제적인 이유 등이 포함됨; 3)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5-8>과 동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부인들이 사용하는 피임방법은 그 목적이 단산인지 또는 출산연기인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단산의 경우 대다수가 영구피임방법 또는 반영구피임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시적 피임방법을 출산연기 뿐만 아니라 단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높은 비율로 나타나서 피임실패의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피임목적에 따른 적절한 피임사용법의 홍보·계몽 및 지도·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5-11〉 15~44세 유배우 피임실천부인의 피임방법별 피임목적 분포

(단위: %, 명)

피임방법	단산	출산연기	기타	계(수)	X^2
전국	85.3	14.6	-	100.0(3,884)	
난관수술	100.0	-	-	100.0(284)	
정관수술	98.7	1.2	0.1	100.0(816)	
자궁내장치	93.1	6.9	-	100.0(621)	
먹는 피임약	76.8	23.2	-	100.0(95)	
콘돔	74.2	25.8	-	100.0(1,181)	
살정제	82.2	17.8	-	100.0(45)	
월경주기법	78.0	22.0	-	100.0(478)	
기타	79.3	20.7	-	100.0(362)	
동부	84.9	15.0	-	100.0(3,381)	
난관수술	100.0	-	-	100.0(225)	
정관수술	98.5	1.4	0.1	100.0(723)	
자궁내장치	92.5	7.5	-	100.0(532)	
먹는 피임약	74.0	26.0	-	100.0(77)	
콘돔	74.2	25.8	-	100.0(1,075)	
살정제	81.6	18.4	-	100.0(38)	
월경주기법	77.7	22.3	-	100.0(421)	
기타	79.3	20.7	-	100.0(290)	
읍·면부	88.0	12.0	-	100.0(501)	
난관수술	100.0	-	-	100.0(59)	
정관수술	100.0	-	-	100.0(93)	
자궁내장치	97.7	2.3	-	100.0(88)	
먹는 피임약	84.2	15.8	-	100.0(19)	58.1***
콘돔	73.6	26.4	-	100.0(106)	
살정제	85.7	14.3	-	100.0(7)	
월경주기법	80.7	19.3	-	100.0(57)	
기타	79.2	20.8	-	100.0(72)	

주: *** p<.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X^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그리고 피임실천 목적에 대한 지역 간 차이를 보면(표 5-11 참조), 출산연기 목적의 피임실천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15.0%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12.0%보다 3.0%pt가 높았다. 피임방법별로는 동부지역에서는 먹는 피임약(26.0%), 콘돔(25.8%), 월경주기법(22.3%) 등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읍·면부지역에서는 콘돔(26.4%), 기타 방법(20.8%), 월경주기법(19.3%) 등을 선호하였다.

4. 현사용 피임방법에 대한 계속 사용의향 및 선호피임방법

<표 5-12>는 비영구적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부인 중 향후 사용의향 및 앞으로 피임방법을 바꾸려는 부인이 선호하는 피임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향후 부인이 선호하는 피임방법을 살펴보는 것은 출산 및 여성의 생식건강과도 관련이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 피임방법을 계속 사용할 의향을 가진 부인은 77.6%였으며, 다른 피임방법으로 변경할 의향을 갖고 있는 부인은 6.7%,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부인은 15.7%로 적지 않았다. 피임방법별로는 자궁내장치 수용부인의 85.0%가 계속 사용하겠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은 반면, 살정제를 사용하는 부인은 51.0%만이 계속 사용하겠다고 응답하여 가장 적었다. 한편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피임방법을 변경하겠다고 응답한 부인은 먹는 피임약을 사용하는 부인이 1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콘돔 10.4%, 월경주기법 10.3%, 기타 피임방법 9.4%, 살정제 6.1%의 순이었다. 반면에 자궁내장치를 사용하는 부인은 4.0%만이 변경하겠다고 응답하여 가장 적었다.

다른 방법으로 바꾸겠다는 의향을 가진 부인의 바꾸고자 하는 피임방법은 정관수술이 7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궁내장치 9.9%, 난관수술 6.8%, 미결정 5.6%, 콘돔 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의 피임방법은 적어서 향후 부인이 선호하는 피임방법은 사용상의 불편 및 실패임신의 위험이 낮은 정관수술과 자궁내장치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사용 중인 피임방법별로 향후 사용을 희망하는 피임방법을 보면, 현재 사용하는 모든 피임방법에서 정관수술로 바꾸고자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즉, 자궁내장치를 사용 중인 부인의 64.3%, 먹는 피임약 73.1%, 콘돔 79.2%, 살정제 81.0%, 월경주기법 63.4%, 기타 방법을 사용하는 부인은 71.3%로 다른 방법에 비해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 외에 현재 먹는 피임약, 콘돔, 월경주기법 및 기타 방법을 사용하는 부인의 경우도 자궁내장치로 바꾸고자 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자궁내장치, 살정제 및 월경주기법을 사용하는 부인은 난관수술로 바꾸고자 하는 비율도 낮지 않았다. 따라서 안정성

이 떨어지고, 사용상의 번거로움이 따르는 일시적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부인의 경우 향후 선호하는 피임방법은 안정성이 높고, 사용상의 불편함이 적은 영구적 및 반영구적 피임방법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2〉 15~44세 유배우부인 중 비영구적 피임실천부인의 방법별 계속 사용의향 및 변경희망 피임방법

(단위: %, 명)

구분	현 사용 피임방법						
	자궁내 장치	먹는 피임약	콘돔	살정제	월경 주기법	기타	전체
향후 계속사용 의향							
계속 사용하겠음	85.0	61.7	66.7	51.0	65.5	58.8	77.6
바꾸겠음	4.0	14.0	10.4	6.1	10.3	9.4	6.7
생각해보지 않았음 /모르겠음	11.0	24.3	23.0	42.9	24.3	31.8	1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628)	(107)	(1,215)	(49)	(585)	(362)	(3,890)
변경희망 피임방법[1]							
난관수술	18.6	3.8	2.5	19.0	10.6	1.7	6.8
정관수술	64.3	73.1	79.2	81.0	63.4	71.3	72.1
자궁내장치	-	11.5	11.1	-	11.3	13.9	9.9
먹는 피임약	-	-	0.7	-	5.6	0.9	1.8
콘돔	4.3	-	0.7	-	4.2	5.2	2.4
살정제	1.4	-	-	-	-	-	0.1
월경주기법	1.4	-	-	-	-	-	0.3
기타	2.9	11.5	0.4	-	-	-	0.9
미결정	7.1	-	5.4	-	4.9	7.0	5.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70)	(26)	(279)	(21)	(142)	(115)	(610)

주: 1) 현재 사용 중인 피임방법을 바꾸겠다고 응답한 부인을 대상으로 함.
자료: 본 조사결과

제3절 피임비실천실태

본 절에서는 가임기에 있는 유배우부인 중 현재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부인을 중심으로 피임비실천 양상을 파악한다. 이를 위하여 피임중단 및 무경험자로 구분하여 피임중단시 사용했던 피임방법, 피임중단 및 무경험 이유,

그리고 향후 피임실천 의향 및 선호하는 피임방법 그리고 피임불원부인의 이유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피임중단시 사용했던 피임방법

피임비실천 부인 중 과거에 피임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부인이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피임방법을 보면(표 5-13 참조), 콘돔이 48.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월경주기법 17.0%, 기타 피임방법 11.9%, 먹는 피임약 10.1%, 자궁내장치 9.3%의 순이었다. 이외에 불임수술을 사용했던 부인은 극히 미미하였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과거에 많이 사용했던 피임방법은 정관수술, 콘돔, 기타 피임방법 등이었다.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에 비하여 난관수술, 자궁내장치, 먹는 피임약, 살정제, 월경주기법 등을 많이 사용하였다.

연령별로는 24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콘돔을 사용했던 부인이 4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궁내장치와 기타 피임방법이 각각 16.7%로 동일하였으며, 월경주기법도 12.5%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기타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25~29세 연령층에서는 콘돔이 63.4%로 가장 많았고, 또한 기타 피임방법과 월경주기법을 각각 13.4%, 11.2%를 사용하였으며,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콘돔 사용자가 많았다. 30~34세 연령층에서는 콘돔이 53.9%로 전체보다 많았고, 월경주기법 18.4%, 기타 피임방법 13.8%, 먹는 피임약 10.5%로 25~29세 연령층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35~39세 연령층도 콘돔을 사용하는 비율이 38.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월경주기법이 28.6%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사용률이 높았으며, 정관수술 사용자도 6.1%로 타 연령층에 비하여 높았다. 40~44세 연령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콘돔사용자는 24.4%로 낮았으나, 난관수술과 정관수술은 각각 5.1%와 3.8%로 높았으며 자궁내장치 사용자가 29.5%, 먹는 피임약은 16.7%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았다.

이와 같이 24세 이하의 젊은 연령층의 경우, 콘돔, 살정제, 월경주기법 및

기타 피임방법에 편중되었으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궁내장치와 불임수술 등의 방법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서는 콘돔, 월경주기법 및 기타 방법 등을 사용했던 반면,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은 자궁내장치, 먹는 피임약 및 불임수술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 15~44세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 피임방법 분포

(단위: %, 명)

특성	난관 수술	정관 수술	자궁내 장치	먹는 피임약	콘돔	살정제	월경 주기법	기타	계(수)
2006[1)]	1.0	0.4	14.9	7.1	44.1	-	20.5	12.0	100.0(471)
2009[2)]	1.1	1.8	9.3	10.1	48.1	0.7	17.0	11.9	100.0(489)
지역									
동부	0.9	1.9	8.7	9.2	49.6	0.7	16.5	12.3	100.0(423)
읍·면부	3.0	1.5	12.1	15.2	37.9	1.5	19.7	9.1	100.0(66)
연령									
24세 이하	-	-	16.7	8.3	41.7	4.2	12.5	16.7	100.0(24)
25~29세	-	-	3.0	7.5	63.4	1.5	11.2	13.4	100.0(134)
30~34세	-	-	3.3	10.5	53.9	-	18.4	13.8	100.0(152)
35~39세	1.0	6.1	8.2	8.2	38.8	1.0	28.6	8.2	100.0(98)
40~44세	5.1	3.8	29.5	16.7	24.4	-	11.5	9.0	100.0(78)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5-8>과 동일

2. 피임중단 및 무경험의 이유

<표 5-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조사결과, 피임을 실천하지 않은 부인의 비율은 20.0%로 이 중 과거에 피임을 실천한 경험이 있으나 중단한 부인은 10.0%, 그리고 피임경험이 전혀 없는 부인은 10.0%였다. 과거에 피임을 실천한 경험이 있으나 조사당시 피임을 중단한 상태에 있는 부인의 피임중단 이유는 임신을 원하기 때문에 중단한 비율이 54.4%로 피임의 중단 원인이 자녀를 갖는데 있었다. 이 외에도 피임을 중단한 이유는 피임의 일시적인 불필요 18.5%, 피임의 영구 불필요 11.8%, 실패임신 8.6%, 사용상 불편 4.0%, 부작용 2.3%, 자연배출 0.3% 등으로 나타났다. 2006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피임을 중단한 이유로 임신을 원하거나 사용상 불편, 부작용 등은 감소한 반

면, 실패 임신, 자연배출, 피임영구 불필요, 피임 일시 불필요 등의 이유는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임신희망을 이유로 피임을 중단한 경우가 많았던 반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실패임신, 피임의 영구적 또는 일시적 불필요, 부작용 등으로 중단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경우, 과거에 주로 사용했던 피임방법이 피임효과가 불확실한 일시적 피임방법일 가능성이 높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피임경험이 전혀 없는 부인의 피임 무경험이유로는 자녀를 원하기 때문이 8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자연불임인 경우가 9.3%, 피임지식 부족이 6.4%였고, 나머지는 미미하였다. 이를 2006년과 비교하면 자연불임, 피임 일시 불필요 등의 이유는 감소한 반면, 자녀 원함, 피임지식 부족 등인 경우는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피임무경험 이유로 자녀희망, 피임 일시 불필요, 피임 지식 부족 등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자연 불임, 기타 때문이 동부지역 거주부인보다 높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과거에 피임을 실천하였으나 현재 피임을 중단한 부인 또는 과거에 전혀 피임을 실천한 경험이 없는 부인의 경우도 현재 피임을 비실천하는 이유로 불임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정과제인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불임으로 임신을 못하는 부인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리와 불임치료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표 5-14〉 15~44세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 중 피임중단 및 무경험 비율과 이유 분포

(단위: %, 명)

구분	전국		동부	읍·면부
	2006년[1]	2009년[2]		
전체 부인 중 피임중단 부인의 비율(수)	9.9 (536)	10.0 (489)	10.0 (423)	10.2 (66)
피임중단 이유				
임신 원함	60.3	54.4	55.9	42.2
실패 임신	7.3	8.6	8.5	9.4
자연 배출	-	0.3	0.2	1.6
사용상 불편	4.5	4.0	4.0	4.7
피임 영구 불필요	8.7	11.8	11.4	14.1
피임 일시 불필요	13.6	18.5	17.5	25.0
부작용	2.9	2.3	2.4	3.1
기타	2.8	-	-	-
계	100.0	100.0	100.0	100.0
전체부인중 피임 무경험 부인의 비율(수)	10.5 (565)	10.0 (485)	9.7 (407)	12.1 (78)
피임무경험 이유				
자연 불임	14.6	9.3	8.6	12.7
자녀 원함	76.0	83.3	83.5	81.0
피임 일시 불필요	7.8	0.3	0.5	-
피임지식 부족	0.4	6.4	6.6	5.1
기타	1.3	0.8	0.7	1.3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표 5-8>과 동일

3. 향후 피임실천 의향 및 선호 피임방법

현재 피임비실천상태에 있는 부인들의 향후 피임실천 의향을 살펴보면 <표 5-15>와 같다. 피임비실천 부인 중 59.3%가 실천할 의향을 가지고 있으며, 19.9%는 실천할 의향이 없었고, 아직 그 의향을 결정하지 못한 부인은 20.8%였다. 2006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실천하지 않겠다는 부인의 비율은 22.6%로 2009년에 2.7%pt가 감소한 반면, 실천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57.8%로 2009년에 1.5%pt가 증가하였다.

향후 피임실천의향을 과거에 피임실천 경험이 있는 부인과 피임실천 경험이 없는 부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천할 의향을 갖고 있는

경우는 피임 중단 부인이 76.8%, 피임 무경험부인이 45.4%로 피임중단부인이 피임무경험부인보다 31.4%pt나 많았다. 또한 실천할 의향이 없는 경우는 피임중단부인이 13.3%, 피임무경험부인이 25.2%로 무경험부인이 11.9%pt 많아서, 과거에 피임을 실천한 경험이 있는 부인이 향후 피임을 실천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임실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부인의 비율은 피임중단부인의 경우 9.9%, 피임무경험부인은 29.5%로 나타나서 피임실천에 있어서 과거 피임경험자보다는 피임무경험자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향후 피임실천 의향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58.9%,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60.6%로 읍·면부지역이 약간 많았다. 과거 피임경험이 있는 피임중단부인과 경험이 없는 비실천부인으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피임중단부인의 경우 실천할 의향을 갖고 있는 부인은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0.8%pt(동부 76.7%, 읍·면부 75.9%)가 많았고, 피임무경험부인은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5.5%pt(동부 44.5%, 읍·면부 50.0%)가 많았다. 반면 실천할 의향이 없는 경우는 동부지역이 훨씬 높았다(동부 21.0%, 읍·면부 13.6%). 피임을 중단한 부인 중 피임을 실천할 의향이 없는 부인은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4.6%pt(동부 13.9%, 읍·면부 9.3%) 많았으나, 피임무경험부인도 동부지역이 10.1%pt(동부 26.8%, 읍·면부 16.7%) 많았다.

그리고 피임실천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비율은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5.7%pt(동부지역 20.1%, 읍·면부지역 25.8%) 높았으며, 피임중단부인과 피임무경험부인의 경우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읍·면부지역 에 거주하는 부인은 동부지역보다 높은 피임실천의지를 보인 반면,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피임실천여부에 대하여 다소 소극적이었다.

〈표 5-15〉 15~44세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의 향후 실천의향 분포

(단위: %, 명)

향후 피임실천의향	전국			동부			읍·면부		
	중단 부인	무경험 부인	전체	중단 부인	무경험 부인	전체	중단 부인	무경험 부인	전체
실천할 예정	76.8	45.4	59.3	76.7	44.5	58.9	75.9	50.0	60.6
모르겠음/생각해 보지 않았음	9.9	29.5	20.8	9.4	28.7	20.1	14.8	33.3	25.8
실천하지 않겠음/ 피임할 필요없음	13.3	25.2	19.9	13.9	26.8	21.0	9.3	16.7	13.6
계 (수)	100.0 (385)	100.0 (485)	100.0 (870)	100.0 (331)	100.0 (407)	100.0 (738)	100.0 (54)	100.0 (78)	100.0 (132)

자료: 본 조사결과

피임비실천부인 중 향후 피임실천의향을 가지고 있는 부인의 선호하는 피임방법을 파악하는 것은 효과적인 피임관리를 위하여 중요하다. 피임을 희망하는 부인의 선호하는 피임방법을 살펴보면 <표 5-16>과 같다.

현재 피임을 실천하지 않으나 향후 실천할 의향을 갖고 있는 부인이 선호하는 피임방법은 콘돔이 24.2%였고, 정관수술도 23.7%로 많아서 정관수술 수용률이 향후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선호하는 피임방법은 자궁내장치 9.5%였고 이외에 5% 미만이나 난관수술 4.7%, 월경주기법 4.1%, 먹는 피임약 3.6%. 난관 또는 정관 3.5%, 기타 피임방법 2.3%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향후 피임실천 의향은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지 못한 부인도 5분 1 이상이나 해당되었다.

선호하는 피임방법은 부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경향을 보였다. 즉, 두 지역 모두 가장 선호하는 피임방법은 남성피임방법인 정관수술과 콘돔이었으며 또한 자궁내장치도 선호하였다. 이 외에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은 먹는 피임약과 월경주기법 등의 일시적 피임방법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현재 정관수술에 의한 피임실천율은 16.8%에 불과하나 피임비실천자의 정관수술 이용희망률이 23.7%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며, 향후 정관수술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16〉 15~44세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 중 피임희망부인의 선호 피임방법 분포

(단위: %, 명)

선호피임방법	전국	동부	읍·면부
난관수술	4.7	4.8	3.8
정관수술	23.7	22.8	28.8
난관 혹은 정관	3.5	3.9	1.3
자궁내장치	9.5	9.7	8.8
먹는 피임약	3.6	3.0	7.5
콘돔	24.2	24.0	25.0
살정제	0.6	0.5	1.3
월경주기법	4.1	3.7	6.3
기타	2.3	1.8	5.0
방법미결정	23.8	25.8	12.5
계	100.0	100.0	100.0
(수)	(514)	(434)	(80)

자료: 본 조사결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부인이 선호하는 피임방법은 불임수술 및 자궁내장치 등으로 효과적인 피임방법의 선호도가 높다는 사실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피임실패의 우려가 있는 콘돔을 이용하겠다는 부인이 5분의 1 이상이 해당되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한 생식건강의 저하가 우려된다. 따라서 이들 일시적 피임방법을 선호하는 부인과 아직 피임방법을 결정하지 못한 부인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피임사용법에 대한 홍보 및 계몽이 강화되어야 하며, 피임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피임을 실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피임을 실천할 의향이 없는 부인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17 참조). 3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자연불임이 94.3%로 가장 많았고, 자궁적출, 폐경, 양측나팔관 제거 등으로 피임이 불필요한 경우는 4.0%에 불과하였으며, 폐경, 습관성 유산, 자연피임, 성생활 안함 등 기타 이유도 1.6%로 미미하였다. 즉, 전체 피임비실천부인 중 피임을 실천하지 않겠다는 부인(20.0%)의 94.3%가 임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임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7〉 15~44세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 중 피임불원부인의 이유 분포

(단위: %, 명)

이유	전국	동부	읍·면부
피임 불필요[1]	4.0	3.4	13.3
자연불임[2]	94.3	94.5	86.7
기타[3]	1.6	2.1	-
계	100.0	100.0	100.0
(수)	(160)	(145)	(15)

주: 1) 자궁적출, 양측 나팔관 제거; 2) 3년 이상 임신 안 됨; 3) 기타에는 폐경, 성생활안함, 습관성 유산, 자연피임, 생리불규칙, 사용상 불편 등이 해당됨.
자료: 본 조사결과

피임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자연불임으로 피임을 하지 않는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94.5%)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86.7%)보다 약간 많았다. 또한 자궁적출이나 폐경, 양측나팔관 제거 등으로 피임이 불필요한 경우도 동부지역과 읍·면부지역의 거주부인이 각각 3.4%, 13.3%로 읍·면부지역이 9.9%pt 많았다.

제4절 임신노출상태 및 자녀희망 여부별 피임실태

1. 임신노출상태

가임능력이 있는 유배우부인들의 임신가능여부는 일정 시점에서 임신불가능 부인과 임신가능 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부인은 다시 불임수술에 의하여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 자궁적출, 폐경, 양측나팔관 제거 등에 의하여 불가능한 경우, 일정기간 임신이 되지 않은 자연불임상태의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임신가능상태에 있는 부인은 현재 임신중인 부인, 현재 일시적 피임방법을 사용 중인 부인, 또한 임신은 가능하나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부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노출상태를 살펴보면 <표 5-18>과 같다. 임신불가능 상태에 있는 부인은 25.1%, 임신가능상태에 있는 부인은 74.8%였다. 임신이 불가능한 부인은 불임수술을 수용한 부인이 22.7%, 자연불임인 부인

2.3%, 임신이 불가능한 부인이 0.1%였으며, 임신가능부인은 일시피임실천 중에 있는 부인이 57.3%, 피임비실천중인 부인 12.5%, 현재 임신중인 부인이 5.0%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임신에 노출되어 있는 부인은 전체 부인의 12.5%로 이는 현재 임신이 가능하면서 피임을 실천하고 있지 않은 부인이다. 그러나 이들 부인 가운데 실제로 피임이 필요하지만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방임상태에 있는 부인은 훨씬 적은 수준이라 하겠다. 이는 현재 피임비실천 부인 중 68.8%가 자녀를 원하기 때문에[18] 피임을 중단하거나 피임을 실천하지 않았으며, 일시적으로 피임이 불필요한 부인도 12.5%[19]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피임이 필요 하면서 피임을 하지 않는 '방임부인집단'은 극히 적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신노출상태를 2006년과 비교하면, 임신 불가능한 부인은 2006년에 비하여 9.3%pt가 감소한 반면, 임신가능상태에 있는 부인은 9.2%pt 증가하였다.

이를 부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불임수술수용의 경우,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23.7%로 동부지역 거주부인보다 1.1%pt가 많았던 반면, 일시적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3.8%pt가 많았으며, 피임비실천중인 경우는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4.7%pt 많았다. 동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령별 임신노출상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부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임신 불가능한 상태의 부인이 증가하고, 임신가능상태에 있는 부인의 비율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24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임신 가능한 상태에 있는 부인이 98.7%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25~29세 연령층에서 임신 가능한 상태에 있는 부인의 비율이 95.6%로 나타났다. 반면, 35~39세 연령층에서는 불임수술수용 부인이 26.5%, 임신불가능이 0.1%, 자연불임이 2.3%로 임신불가능 상태에 있는 부인은 28.9%의 비율로 상당히

18) 피임중단부인의 54.4%가, 피임무경험부인의 83.3%가 자녀를 원하여 피임을 하지 않았음.
19) 피임중단부인의 18.5%가, 피임무경험부인의 0.3%가 일시적으로 피임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였음.

증가하였다. 40~44세 연령층에서는 임신 불가능한 부인의 비율이 39.9%, 임신 가능한 부인이 60.1%로 임신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부인의 증가로 임신 가능한 상태에 있는 부인 간의 간격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존자녀수별 임신노출상태는 자녀수가 연령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대체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임신이 불가능한 부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5-18〉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임신노출상태 분포

(단위: %, 명)

특성	임신불가능			임신가능			계(수)	χ^2
	불임수술 수용	임신 불가능	자연 불임	현재 임신중	피임 실천중	피임 비실천		
2006[1)]	31.0	0.2	3.2	6.7	48.6	10.3	100.0(5,392)	
2009[2)]	22.7	0.1	2.3	5.0	57.3	12.5	100.0(4,867)	
지역								
동부	22.6	0.1	2.4	5.2	57.8	11.9	100.0(4,221)	16.635**
읍·면부	23.7	0.3	1.5	3.9	54.0	16.6	100.0(646)	
연령								
24세 이하	1.3	-	-	18.4	39.5	40.8	100.0(76)	
25~29세	3.2	-	1.2	18.9	46.9	29.8	100.0(567)	
30~34세	9.4	0.1	1.9	8.1	61.8	18.7	100.0(1,081)	
35~39세	26.5	0.1	2.3	2.0	61.9	7.2	100.0(1,637)	
40~44세	36.5	0.2	3.2	0.1	54.0	6.0	100.0(1,506)	
현존자녀수								
0명	0.4	0.4	12.6	22.9	32.3	31.4	100.0(493)	
1명	5.7	0.4	3.7	9.1	59.4	21.7	100.0(1,137)	
2명	31.5	-	0.2	0.8	61.4	6.0	100.0(2,725)	
3명	35.7	-	0.4	1.1	55.1	7.8	100.0(474)	
4명 이상	32.4	-	-	-	54.1	13.5	100.0(37)	

주: 1) 임신불가능은 자궁적출, 폐경, 양측 나팔관 제거를 말함; 2) 자연불임은 3년 이상 임신이 안 된 경우임; 3) ** $p<.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5-8>과 동일

피임정책 대상 부인의 주요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피임 관련 홍보·계몽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피임실천상태를 피임실천과 피임비실천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표 5-19 참조). 현재 피임비실천 상태에 있는 부인의 피임비실천 이유는 현재 임신중인 부인이 6.1%, 자

연불임인 부인이 2.8%, 자녀를 원하기 때문이 9.5%, 임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0.1%였다. 따라서 현재 임신노출상태에 있는 부인의 비율은 자녀를 원하기 때문에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는 약 10.0%에 이른다.

〈표 5-19〉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피임정책 대상자 분포

(단위: %, 명)

특성	피임실천		피임비실천 이유					계(수)
	불임 수술 수용	일시적 피임방법 수용	임신[1] 불가능	자연[2] 불임	현재 임신중	자녀 희망	기타	
전체	27.5	53.9	0.1	2.8	6.1	9.5	0.1	100.0(4,016)
지역								
동부	27.2	54.4	0.1	2.9	6.3	9.1	0.1	100.0(3,502)
읍·면부	29.7	50.7	0.4	1.9	4.9	12.4	-	100.0(515)
연령								
24세 이하	1.6	40.6	-	-	21.9	35.9	-	100.0(64)
25~29세	3.7	48.5	-	1.4	21.9	24.5	-	100.0(489)
30~34세	10.9	61.1	0.1	2.1	9.4	16.3	-	100.0(933)
35~39세	32.0	58.1	0.1	2.7	2.4	4.5	0.1	100.0(1,356)
40~44세	46.9	46.4	0.3	4.1	0.2	2.1	0.1	100.0(1,173)
현존자녀수								
0명	0.4	31.6	0.4	12.9	23.5	31.2	-	100.0(481)
1명	6.8	59.9	0.4	4.4	10.8	17.5	0.2	100.0(960)
2명	39.3	57.1	-	0.3	1.1	2.2	-	100.0(2,181)
3명	46.2	48.6	-	0.5	1.4	3.3	-	100.0(366)
4명 이상	42.9	53.6	-	-	-	3.6	-	100.0(28)

주: 1) 자궁적출, 폐경, 양측 나팔관 제거; 2) 3년 이상 임신 안 됨; 3)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그런데 이 중 자녀를 원하는 경우는 피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상이므로, 결과적으로 피임정책 대상자는 기타 이유 때문에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0.1%의 부인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산후무월경기간으로 피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인, 남편의 해외출장, 장기입원 등의 이유로 피임이 불필요한 부인을 제외하면 피임이 필요하나 피임을 하고 있지 않는 부인은 0.1%보다는 적은 수준일 것이다. 피임정책고려 대상 부인은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0.1%pt 정도 많았으며, 연령이 높은 부인인 경우, 현존자녀수가 1명

인 경우 피임정책 대상자가 발견되었다.

<표 5-20>은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노출상태에서 추가자녀 희망여부와 피임실천과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대상은 불임수술 수용(27.5%), 임신불가능(0.1%), 자연불임(2.8%), 현재 임신 중(6.1%)인 부인 등을 제외한 부인(63.5%)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추가자녀 희망여부에 따른 피임실천여부를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표 5-20〉 15~44세 유배우부인[1)]의 특성별 자녀추가 희망여부 및 피임실천

(단위: %, 명)

특성	자녀희망 피임실천(A)	자녀비희망 피임실천(B)	자녀희망 피임비실천(C)	자녀비희망피임비실천(D)	계(수)	χ^2
전체	14.6	69.7	5.5	10.2	100.0(2,363)	
지역						
동부	14.9	70.2	5.5	9.4	100.0(2,059)	12.0**
읍·면부	12.5	66.6	5.2	15.7	100.0(305)	
연령						
24세 이하	29.5	20.5	25.0	25.0	100.0(44)	
25~29세	41.7	21.2	12.5	24.6	100.0(321)	748.3***
30~34세	21.7	55.7	8.2	14.4	100.0(637)	
35~39세	6.4	86.0	2.1	5.4	100.0(794)	
40~44세	1.4	94.2	1.6	2.8	100.0(565)	
현존자녀수						
0명	43.3	4.8	17.6	34.3	100.0(289)	
1명	25.8	49.4	10.8	14.0	100.0(656)	1069.7***
2명	3.8	92.6	0.6	3.0	100.0(1,216)	
3명	2.2	91.4	0.5	5.9	100.0(186)	
4명 이상	-	93.3	-	6.7	100.0(1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0.9	68.8	3.1	17.2	100.0(64)	
고등학교	11.3	74.9	3.7	10.2	100.0(1,022)	36.9***
대학 이상	17.4	65.6	7.0	10.0	100.0(1,277)	

주: 1) 15~44세 유배우부인 중 임신불가능(0.1%), 불임상태(2.8%), 불임수술을 받은 경우(27.5%) 및 현재 임신중인 경우(6.1%) 등을 제외한 부인, 즉, 임신의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일시적인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부인(63.5%)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2) ** p<.01, *** p<.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임신의 위험에 노출된 부인의 추가자녀 희망여부 및 현재 피임실천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5-1]과 같이 요약된다. 앞으로 자녀를 원하기 때문에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는 13.3%였으며,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도 않으면서 피임을 하지 않는 경우는 1.8%로 나타났다. 반면 더 이상 자녀를 원치 않기 때문에 피임을 하는 경우는 70.2%, 자녀를 원하지만 피임을 하는 경우는 14.7%였다. 따라서 자녀를 원치 않으면서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부인에 대한 집중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인공임신중절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1〕 15~44세 유배우부인 중 임신노출상태에 있는 부인의 추가자녀 희망여부별 피임실천상태

		추가자녀희망여부		
		희망(+)	비희망(-)	
피임실천여부	실천(+)	A(14.7%)	B(70.2%)	85.0%
	비실천(-)	C(13.3%)	D(1.8%)	15.0%
		28.0%	72.0%	100.0%

이와 같은 A, B, C, 그리고 D 집단을 부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제시한 <표 5-20>과 같다. 피임정책 대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자녀를 원치 않으면서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비율이 15.7%로 동부지역 거주부인보다 6.3%pt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연령층은 자녀를 희망하면서 터울조절 때문에 피임을 실천하는 부인층에 집중되었고,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자녀를 원치 않기 때문에 피임을 실천하는 부인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자녀를 원치 않으면서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는 24세 이하 연령층이 2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5~29세 연령층이 24.6%로 많았다. 전반적으로 피임정책 대상자의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였다. 동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25~34세 연령층에 대한 특별한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존자녀수별로는 연령과 대체로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나, 자녀를 희망하지 않으면서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인 피임정책 대상자층은 2명의 자녀와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을 제외하고 대체로 현존자녀수가 적을수록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자녀수가 없는 부인은 34.3%, 1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14.0%가 관리대상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를 원치 않기 때문에 피임을 실천하는 부인의 비율이 높은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를 희망하면서 터울조절 때문에 피임을 실천하는 경우와 자녀를 희망하기 때문에 피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보였다. 이는 고학력일수록 결혼이 늦어짐에 따라 출산기간이 지연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특히 자녀를 희망하지 않으면서 피임을 하지 않는 관리대상은 중학교 이하의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이 17.2%로 가장 많았다.

제5절 피임수용실태의 시사점

우리나라 15~44세 유배우부인의 피임실천율은 2009년 80.0%로 2006년보다 0.4%pt 상승하였다. 일반적으로 임신중인 경우와 폐경, 자연불임 등과 같이 피임이 불필요한 경우 등이 있어 피임실천율의 한계를 약 80% 로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1989년 이후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감액되고,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되는 등 인구자질정책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계속 높은 수준의 피임실천율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혼부부 사이에 피임실천이 보편화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임방법별 실천율의 변화로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 하나는 여성피임방법인 난관수술에서 남성피임방법인 정관수술과 콘돔 등으로 피임방법이 전환되는 추세이다. 이는 양성 평등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경제활동의 증가와도 관

련이 있다. 다른 하나는 영구적인 피임방법에서 일시적인 피임방법으로 점차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일시적 피임방법은 터울조절의 경우에는 유용하지만 단산을 한 부인의 경우에 일시적 피임방법에 의한 실천율이 높다는 것은 피임실패의 가능성이 예상되어 피임실천의 질적인 측면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일시적 피임방법의 사용은 출산 가능성이 높은 젊은 연령층이 많았으며, 향후 선호하는 피임방법도 일시적 피임방법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연령층의 피임실패는 인공임신중절로 이어지며, 이는 여성의 생식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부인의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피임방법의 지도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피임목적별 피임방법에서 단산을 목적으로 일시적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서 피임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피임목적에 적합한 피임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계몽, 상담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피임비실천 부인이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불임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특히, 과거에 피임을 실천하다가 중단한 이유로 피임불필요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불임여성이 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불임률의 감소는 출산력 제고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불임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추가자녀를 원하지도 않으면서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부인은 임신에 노출되어 있는 방임집단으로 인공임신중절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부인을 대상으로 피임지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추가자녀를 원하지 않는 고연령층 부인의 임신은 그 비율이 높지 않더라도 바로 인공임신중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고연령층 부인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부인의 생식보건을 증진시키고 인구자질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06

인공임신중절 실태

제6장 인공임신중절 실태

인공임신중절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기간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로서 인공유산 또는 낙태라고도 한다. 인공임신중절은 자연유산, 사산 등과 함께 임신소모의 한 형태이다. 그렇지만 자연유산과 사산은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결과임에 반하여 인공임신중절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결정되는 임신종결의 형태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김승권 외, 2006).

1994년 카이로에서 개최된 '인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에서는 여성의 출산권 및 출산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태아는 생성 중에 있는 존중되어져야 할 생명체이기 때문에 인공임신중절은 여성의 출산권 및 출산건강의 내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종교단체의 강력한 주장도 제기된 바도 있다. 인공임신중절의 부정적 인식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이를 정책적으로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는 각 국가 및 사회의 문화적, 가치관적, 종교적, 경제적, 보건의료적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논쟁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형법의 낙태죄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행위를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1973년 모자보건법을 제정하여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가 있으면 제한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의 제한적 허용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둘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셋째,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이 된 경우; 넷째,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친척 간에 임신된 경우; 마지막으로, 임신의 지속

이 보건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는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겠다.

그렇지만 인구증가억제정책이 시작된 1962년 이래 인공임신중절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출산으로 연결시키지 않기 위한 한 수단이 되어 왔다. 더군다나 정부에서는 인구증가를 억제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월경조절술(MR)'이라는 명칭으로 임신초기에 태아를 유산시키기 원하는 기혼부인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정부지원에 의해 추진된 월경조절술은 명백히 인공임신중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인구정책의 명분하에 이루어진 잘못된 시책이라 하겠다. 더군다나 소자녀관의 정착과 함께 태아 성감별을 통한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이 자행되고 있어 인공임신중절 자체의 문제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윤리적 측면에서 인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성비불균형이라는 또 하나의 사회문제를 초래하였다. 다행스럽게 최근에는 의료인 스스로 인공임신중절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임신중절의 부정적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공임신중절률,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및 경험횟수, 첫 번째와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와 중절당시 부인연령 및 자녀수, 임신중절 수용이유 등을 부인의 특성에 따라 분석한다.

제1절 인공임신중절률의 변화

인공임신중절률(Induced Abortion Rate)은 한 여성이 생애동안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횟수를 일정시점에서 측정하는 것이다.[20] 본 연구에서의 인공임신중절률은 과거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20~44세 유배우부인을 분석대상으로

20) 본 연구에서 인공임신중절률은 조사연도의 전년도 1년을 파악한 것으로 보고서에서는 조사연도의 1년 전으로 표기됨.

하였다. <표 6-1>은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부인의 인공임신중절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 조사(2002년 통계)에서는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06년 조사(2005년 통계)와 2009년 조사(2008년 통계)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인공임신중절률을 5세 간격별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1990년과 1993년에 가장 높은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을 보여준 20～24세 연령층은 1990년에 186을 기록한 후 급격히 떨어져 1999년 53으로 최저수준에 달하였다가 2002년에는 과다 저하에 따라 소폭 반등하여 74이었으며, 2005년에는 59로 다시 감소하였고, 2008년(본 조사)에는 16으로 다시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둘째, 30～34세 연령층의 인공임신중절률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았고,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더라도 크게 저하되지 않았다. 이는 초혼연령의 상승과 이에 기인되는 주출산연령의 상승에 의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셋째, 40~44세 연령층의 인공임신중절률이 매우 낮은 것은 불원임신의 감소와 이를 위한 높은 피임실천율에 의한 것이라 긍정적인 결과로 판단된다.

〈표 6-1〉 20~44세 유배우부인의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 변동추이

(단위: 회/1000명당)

연령	1984[1)]	1987[2)]	1990[3)]	1993[4)]	1996[5)]	1999[6)]	2002[7)]	2005[8)]	2008[9)]
20~24세	91	102	186	105	79	53	74	59	7
25~29세	146	103	112	94	51	33	38	15	6
30~34세	115	71	60	63	49	33	30	19	20
35~39세	40	29	21	25	16	12	21	7	6
40~44세	20	7	6	1	3	1	6	5	1

자료: 1) 문현상 외, 『1985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2) 문현상 외,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3)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4)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5)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6)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7)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8) 김승권 외,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9) 본 조사결과

그런데 인공임신중절률의 큰 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높은 피임실천율을 감안한다면 인공임신중절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국민의 인식개선에 문제점이 없지 않음을 짐작케 한다. 즉,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성 높은 피임방법을 선택하여 불원임신이 없어야 하고 이상임신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부의 자녀양육 부담이 감소되어 임신이 출산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인공임신중절경험 실태

우리나라 부인이 얼마나 많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고 있는지는 앞에서 살펴본 인공임신중절률과 함께 본 절에서 살펴보는 인공임신중절경험률, 인공임신중절횟수 분포 및 평균 인공임신중절횟수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들 통계를 시계열과 부인특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전체 부인 중 인공임신중절을 단 한번이라고 경험한 부인의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공임신중절의 경험여부를 중요시하고 반복경험은 감안하지 않는다. 즉, 2회 이상 경험한 경우도 1회 경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험한 것으로 간주된다. 결국 뒤에 설명하는 평균 경험횟수와는 다른 개념이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1980~1990년대 초반까지는 50% 이상의 높은 수준에 있었으나 1991년 이후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1994년 40%대로 낮아졌고, 2000년에는 30%대로 낮아졌으며, 2009년 20%대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즉, 이번 조사에서는 역대 가장 낮은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인 26%로 나타났다. 이는 1980~1990년대 초반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표 6-2 참조).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을 부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지역별로 살펴보면, 2000년과 2006년의 조사에서와 같이 2009년 조사에서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동부지역 거주부인보다 경험률이 높았다. 그렇지만 2000년 이후 조사에서는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의 지역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1997년 6%pt, 2000년 2%pt, 2003년 3%pt, 2006년 1%pt, 2009년 2%pt).

부인연령에 따른 연도별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의 차이와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었다. 첫째, 전반적으로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이 증가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결혼생활의 길이와 불원임신의 가능성이 비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추정된다. 둘째, 2006년 조사에서는 15~24세의 연령층의 경험률이 25~29세 연령층보다 높았으나 2009년 조사에서는 4%로 큰 폭의 저하를 가져왔으며 25~29세 연령층보다 낮은 경험률을 보였다. 셋째, 25~29세 연령층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낮아지지 않았다. 이는 2006년의 조사에서 2003년의 절반 이하로 낮아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표 6-2〉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변동추이

(단위: %)

특성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전체	53	52	54	49	44	39	40	34	26
지역									
동부	55	54	55	49	45	39	41	34	26
읍·면부	48	47	49	49	39	41	38	35	28
연령									
15~24세	22	27	29	21	21	13	15	15	4
25~29세	42	41	40	36	27	17	23	11	11
30~34세	61	57	55	51	45	35	34	24	18
35~39세	63	63	60	58	52	50	46	40	28
40~44세	67	62	65	60	53	52	50	48	37

자료: <표 6-1>과 동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이 점차 낮아지다가 2003년 조사에서는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6년 조사에 이

어 2009년 조사에서도 저하를 계속하였다. 이는 인공임신중절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고, 저출산의 우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3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경향이 미미하나마 나타나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된다.

2. 인공임신중절 경험횟수

인공임신중절횟수는 얼마나 많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였는지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인공임신중절률 및 인공임신중절 경험률과는 달리 2회 이상 반복 경험한 부인의 실제 경험횟수를 정확하게 감안하여 산출하기 때문이다.

인공임신중절을 2회 이상 반복경험한 부인은 2000년 17.1%에서 2003년 15.8%, 2006년 10.1%, 2009년 6.6%로 지속적인 저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인공임신중절의 평균 경험횟수도 2000년 0.7회에서 2003년 0.6회, 2006년 0.5회, 2009년 0.3회로 지속적으로 낮아져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표 6-3 참조).

〈표 6-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횟수 분포

(단위: %, 명, 회)

연도	무경험	유경험			계(수)	평균 경험횟수
		소계	1회	2회 이상		
2000[1]	60.8	39.2	22.1	17.1	100.0(6,408)	0.7
2003[2]	59.6	40.4	24.6	15.8	100.0(6,597)	0.6
2006[3]	66.0	34.0	23.9	10.1	100.0(5,382)	0.5
2009[4]	73.8	26.2	19.6	6.6	100.0(4,867)	0.3

자료: 1)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2)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3) 김승권 외,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4) 본 조사결과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인공임신중절 경험횟수를 살펴보면, 대체로 학력이 낮은 부인과 자녀를 많이 가진 부인이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많았다. 이는 연령이 많다는 사실은 임신기회가 많을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사회과

학분야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나듯이 교육수준과 현존자녀수는 연령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기 때문이다(표 6-4 참조). 또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동부지역 거주부인보다 경험횟수가 미미하나마 많았고(0.3회), 취업부인이 비취업부인보다 경험횟수가 많았다(0.6회). 전자는 동부지역 부인이 젊은 연령층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후자는 취업부인이 자녀양육 부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임신이 출산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6-4〉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인공임신중절 횟수 분포

(단위: %, 명, 회)

특성	무경험	유경험			계(수)	χ^2	평균 횟수	F값 (T값)
		소계	1회	2회 이상				
2006[1)]	66.0	34.0	23.9	10.1	100.0(5,395)		0.5	
2009[2)]	73.8	26.2	19.6	6.6	100.0(4,867)		0.34	
지역								
동부	74.1	25.9	19.4	6.5	100.0(4,221)	1.4	0.34	(-.9)
읍·면부	71.9	28.1	20.9	7.2	100.0(645)		0.37	
연령								
15~24세	96.1	3.9	3.9	-	100.0(77)		0.03	
25~29세	89.4	10.6	8.7	1.9	100.0(565)	246.5***	0.14	57.6***
30~34세	81.6	18.4	15.1	3.3	100.0(1,082)		0.23	
35~39세	72.3	27.7	21.8	5.9	100.0(1,636)		0.34	
40~44세	62.9	37.1	25.3	11.8	100.0(1,507)		0.5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8.4	31.6	23.0	8.7	100.0(196)	100.4***	0.45	49.1***
고등학교	68.2	31.8	22.7	9.0	100.0(2,367)		0.43	
대학 이상	80.1	19.9	16.0	3.9	100.0(2,301)		0.25	
현존자녀수								
0명	93.9	6.1	5.5	0.6	100.0(494)		0.03	
1명	82.6	17.4	14.1	3.3	100.0(1,135)	234.4***	0.14	57.6***
2명	68.6	31.4	23.4	8.0	100.0(2,725)		0.23	
3명	63.4	36.6	25.4	11.2	100.0(473)		0.34	
4명 이상	59.5	40.5	18.9	21.6	100.0(37)		0.52	
취업여부								
취업	72.1	27.9	19.9	8.0	100.0(2,200)	13.0***	0.38	(3.1***)
비취업	75.2	24.8	19.3	5.5	100.0(2,667)		0.32	

자료: 1) 김승권 외,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2) 본 조사결과

3. 총 임신 중 인공임신중절 종결률

조사완료 부인의 전체 임신횟수와 임신소모로 종결된 횟수, 그리고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 횟수를 지난 10여 년간의 조사결과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전체 임신 중 인공임신중절로 소모된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고, 출생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15~44세 유배우부인의 총 임신 중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 경우는 24.1%였고, 임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비율은 70.7%이었다. 그러던 것이 2003년에 조사에서는 전체 임신 중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 경우는 23.2%이었으며, 임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비율은 70.0%로 강하지는 않았지만 저하를 보였다. 이어서 2006년 조사에서도 전체 임신 중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 경우는 19.1%이었으며, 임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비율은 66.2%로 지속적 저하를 보였다. 2009년 조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 유지되어 전체 임신 중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 비율은 14.6%이었고, 임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비율은 56.7%로 나타났다(표 6-5 참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부인들의 임신소모는 계속 감소하고 출생으로 종결되는 임신은 증가하고 있으며, 임신소모 중에서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되는 비율은 감소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여전히 임신소모 중 절반 이상이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사실은 뒤에 설명되는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에서 밝혀지듯이 문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표 6-5〉 15~44세 유배우부인의 총 임신 및 임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 변화

(단위: 회, %)

연도	총임신 (A)	임신소모 (B)	인공임신중절 (C)	총임신 대비 인공임신중절비율(C/A)	임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비율(C/B)
2000	2.70	0.92	0.65	24.1	70.7
2003	2.72	0.90	0.63	23.2	70.0
2006	2.46	0.71	0.47	19.1	66.2
2009	2.33	0.60	0.34	14.6	56.7

자료: <표 6-3>과 동일

제3절 첫 번째와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특성

1.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의 특성

가.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

15~44세 유배우부인이 경험한 인공임신중절이 부인의 임신순위 중 몇 번째 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인공임신중절의 위해성이 임신순위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의하면,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이 부인의 첫 번째 임신인 경우가 23.3%, 두 번째 임신인 경우가 36.7%, 셋째 이상 임신은 40.0%로 2006년 조사결과보다 임신순위가 앞당겨 졌다(표 6-6 참조).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를 부인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젊은 연령층의 부인이, 교육수준이 높은 부인이, 그리고 비취업 중인 부인이 첫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1)]

부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이 첫 임신인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24.3%로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23.1%로 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이 첫 임신인 경우가 15~24세 부인이 66.7%로 가장 많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반비례하여 40~44세 연령층 부인은 16.1%에 불과하였다.[22)]

부인의 교육수준과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를 살펴보면, 대학 이상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의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이 첫 임신인 경우가

---

21) 2006년 조사에서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젊은 연령층의 부인이, 교육수준이 높은 부인이, 그리고 비취업 중인 부인이 첫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하는 비율이 높았음(김승권 외, 2006).

22) 2006년 조사에서는 첫 인공임신중절이 첫 임신인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22.0%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18.0%보다 높았고, 첫 인공임신중절이 첫 임신인 경우가 15~24세 부인이 73.7%로 가장 많았으며, 40~44세 연령층 부인은 14.8%에 불과하였음(김승권 외, 2006).

24.5%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이하 학력수준의 부인은 22.6%로 미미하나마 차이를 보였다.[23] 그런데 첫 임신이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되는 경우의 위해성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고학력층 부인들이 낮은 학력수준의 부인보다 첫 임신을 인공임신중절하고 있음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추정될 수 있다. 이는 혼전임신일 가능성, 출산할 경우 직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 경제적으로 취약하여 출산을 늦추기 위해서 등이 거론될 수 있다.

〈표 6-6〉 15~44세 유배우부인의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1] 당시의 임신순위

(단위: %, 명)

특성	첫째 임신	둘째 임신	셋째 이상 임신	계(수)	χ^2
2006	21.4	36.4	42.2	100.0(1,832)	
2009	23.3	36.7	40.0	100.0(1,274)	
지역					
동부	23.1	37.4	39.4	100.0(1,093)	1.6
읍·면부	24.3	32.6	43.1	100.0(181)	
연령					
15~24세	66.7	-	33.3	100.0(3)	
25~29세	49.2	39.3	11.5	100.0(61)	
30~34세	37.7	27.6	34.7	100.0(199)	
35~39세	22.2	38.5	39.2	100.0(454)	
40~44세	16.1	38.1	45.8	100.0(55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2.6	24.2	53.2	100.0(62)	6.3
고등학교	22.7	37.1	40.2	100.0(752)	
대학 이상	24.5	37.6	38.0	100.0(458)	
취업여부					
취업	22.8	37.0	40.1	100.0(613)	0.2
비취업	23.8	36.3	39.9	100.0(661)	

주: 1)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에는 단 한번의 인공임신중절경험을 가진 경우가 포함됨.
자료: <표 6-4>와 동일

23) 2006년 조사에서는 대학 이상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의 첫 인공임신중절이 첫 임신인 경우가 23.4%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의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의 경우도 21.0%로 많았으며, 초교 이하와 고등학교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이 첫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한 비율은 각각 17.4%와 20.5%이어서 다른 학력수준의 부인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음(김승권 외, 2006).

나.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부인연령

인공임신중절 당시 부인의 연령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전술한 임신순위와 마찬가지로 인공임신중절의 위해성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주 대상층의 파악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의하면,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 당시 부인의 평균연령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27.7세,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27.3세로 미미하나마 차이를 보였다.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 당시 부인의 연령은 15～24세 연령층 21.1세, 25～29세 연령층 23.8세, 30~34세 연령층 26.6세, 35세 이상 연령층은 28.1~28.2세였다.[24] 이와 같이 젊은 부인들이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하는 경우는 혼전임신으로 인한 영향이거나 직장 불안정 및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지연시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부인연령은 고등학교 이하 학력층 부인은 27.0세이었고, 대학 이상 학력층은 28.8세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첫 인공임신중절이 첫 임신인 경우가 많은 고학력층 부인의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 평균연령이 높은 것은 결혼연령이 높아 첫 임신이 늦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부인연령은 자신의 취업여부에 따라서 미미한 차이만을 보였다. 즉, 취업부인의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연령은 27.6세, 비취업부인은 27.8세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24) 2006년 조사에서는 첫 인공임신중절시 평균연령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27.4세,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27.2세로 미미하나마 차이가 있었다. 첫 인공임신중절시 부인의 연령은 15～24세 연령층 20.4세, 25～29세 연령층 24.2세, 30~34세 연령층 26.6세, 35～39세 이상 연령층 27.7세, 40～44세 연령층 27.9세 등이었음(김승권 외, 2006).

〈표 6-7〉 15~44세 유배우부인의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1] 당시의 부인연령

(단위: 세)

특성	첫 인공임신중절시 부인의 평균연령	F값 (T값)
2006	27.3	
2009	27.7	
지역		
동부	27.7	(1.4)
읍·면부	27.3	
연령		
15~24세	21.1	
25~29세	23.8	21.7***
30~34세	26.6	
35~39세	28.1	
40~44세	28.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7.0	26.9***
고등학교	27.0	
대학 이상	28.8	
취업여부		
취업	27.6	(-.9)
비취업	27.8	

주: 1)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에는 단 한번의 인공임신중절경험을 가진 경우가 포함됨.
자료: <표 6-4>와 동일

다.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자녀수 및 자녀 성비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자녀수를 살펴보면, 1명의 자녀를 가진 경우가 3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명의 자녀를 가진 경우가 35.5%이었다(표 6-8 참조). 그런데 자녀가 없는 경우도 24.2%나 되었는데, 무자녀임에도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을 한 비율이 높은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첫 임신이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 경우(23.3%)가 많은 점과도 연결된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3.0%에 불과하여 자녀가 많기 때문에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율은 매우 미미하였다고 판단된다.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평균 자녀수는 1.17명이었으며, 2006년 조사에서 나타난 1.22명 보다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출산율, 소자녀관, 혼전임신,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표 6-8〉 15~44세 유배우부인의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1] 당시의 자녀수

(단위: %, 명, 세)

당시 부인연령	당시 자녀수				계(수)	첫 인공임신 중절시 평균자녀수	F값
	0명	1명	2명	3명 이상			
2006	21.2	38.8	37.1	2.8	100.0(1,828)	1.22	
2009	24.2	37.3	35.5	3.0	100.0(1,275)	1.17	
15~24세	66.7	-	33.3	-	100.0(3)	0.52	
25~29세	55.0	35.0	10.0	-	100.0(60)	0.56	
30~34세	38.7	27.6	30.7	3.0	100.0(199)	0.98	15.7***
35~39세	22.7	39.2	35.5	2.6	100.0(454)	1.18	
40~44세[2]	16.8	39.7	39.9	3.6	100.0(559)	1.31	

주: 1)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에는 단 한번의 인공임신중절경험을 가진 경우가 포함됨.
2) 40~44세 연령층의 부인은 실제 숫자가 적어 통계학적으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자료: <표 6-4>와 동일

첫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할 당시 부인연령별 당시 자녀수의 성분포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성선택적 인공임신중절과의 관련성을 밝히는데 중요하다.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15~44세 유배우부인의 수용당시의 자녀성비는 109이어서 성선호에 의하여 첫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경우도 있음을 짐작케 한다. 특히, 35~39세 연령층 부인의 당시 성비는 무려 118로 높게 나타났다.[25]

〈표 6-9〉 15~44세 유배우부인의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1] 당시의 자녀 성비

(단위: 명)

당시 부인연령	평균 아들수	평균 딸수	성비
전체	0.61	0.56	109
15~24세	0.26	0.26	100
25~29세	0.25	0.33	76
30~34세	0.50	0.48	104
35~39세	0.64	0.54	118
40~44세	0.66	0.64	103

주: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에는 단 한번의 인공임신중절경험을 가진 경우가 포함됨.
자료: 본 조사결과

25) 2006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자녀성비는 113이었고, 특히 15~24세 연령층과 40~44세 연령층의 중절당시의 자녀성비는 각각 140, 130으로 높았음(김승권 외, 2006).

라.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의 수용 이유

15~44세 유배우부인이 수용한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가 무엇인지를 규명하였다. 이에 의하여 모자보건법상의 합법적 이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과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등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으며, 향후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 대책을 강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는 자녀를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3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터울조절 14.6%, 임부의 건강과 자궁외 임신 14.1%, 태아이상에 의한 임부위험 12.2%, 경제적 곤란 10.7%, 혼전임신 9.5% 등의 순이었다. 그 외에도 취업 중이어서 2.4%, 가정문제 2.3%, 태아가 딸이어서 1.3% 등이 있었다(표 6-10 참조).

〈표 6-10〉 15~44세 유배우부인의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1)]의 수용이유

(단위: %)

인공임신중절 이유	2006	2009		
		전국	동부	읍·면부
자녀불원	30.0	32.1	31.9	33.1
터울조절	16.4	14.6	14.7	14.4
임부의 건강상/자궁외 임신	10.0	14.1	14.4	12.7
태아이상에 의한 임부위험 등	5.0	12.2	12.3	11.6
혼전임신	7.9	9.5	9.5	9.4
가정문제	1.3	2.3	2.4	1.7
경제적 곤란	13.4	10.7	10.1	14.4
태아가 딸이므로	2.0	1.3	1.4	1.1
취업중이어서	2.5	2.4	2.5	1.7
기타[2)]	11.5	0.9	1.0	-
계 (수)	100.0 (1,833)	100.0 (1,273)	100.0 (1,092)	100.0 (181)

주: 1)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에는 단 한번의 인공임신중절경험을 가진 경우가 포함됨.
2) 기타에는 쌍둥이어서, 입덧이 너무 심해, 임신중 약물복용, 혼외임신, 딸일 것 같아서, 아들이어서, 아들일 것 같아, 기형아 우려 등이 포함됨.

자료: <표 6-4>와 동일

따라서 모자보건법상에 제시된 이유에 의한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임부의 건강상/자궁외 임신, 태아이상에 의한 임부위험)은 26.3%에 불과하였고, 73.7%는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불법 인공임신중절인 것으로 추정된다.[26)]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가 2006년보다 증가한 것은 태아이상에 이한 임부위험(7.2%pt), 임부의 건강상 또는 자궁외 임신(4.1%pt), 자녀를 원치 않아서(2.1%pt), 혼전임신(1.6%pt), 가정문제(1.0%pt) 등이었다. 반대로 감소한 것은 경제적 곤란(2.7%pt), 터울조절(1.8%pt), 태아가 딸이므로(0.7%pt), 취업중이어서(0.1%pt) 등이었다.

2.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특성

가.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를 살펴보는 것은 특히 인공임신중절의 반복경험이 있는 부인의 최근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 및 당시 부인연령을 감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의하면, 15~44세 유배우부인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이 부인의 첫 임신인 경우가 12.0%, 두 번째 임신인 경우가 22.8%, 세 번째 이상의 임신순위인 경우가 65.1%를 차지하여 비교적 높은 임신순위에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6-11 참조). 이를 2006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첫째 임신순위는 감소하였고, 셋째 이상 임신순위는 증가한 것이다.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를 부인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임신의 비율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14.3%)이 동부지역 거주부인(11.7%)보다 높았다.[27)] 셋째 이상 임신의 비율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67.1%)이 동

26) 2006년 조사에서는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은 15.0%에 불과하였고, 85.0%는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불법적 인공임신중절인 것으로 추정되었음(김승권 외, 2006).

27) 2006년 조사에서는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이 첫 임신인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부인(14.1%)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10.5%)보다 높았음(김승권 외, 2006).

부지역 거주부인(64.8%)보다 높았다.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이 첫 임신인 비율은 젊은 연령층 부인이 높았고, 고연령층 부인은 낮았다. 특히, 30~34세 연령층은 7.8%, 35~39세 연령층은 4.4%이었다. 따라서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이 첫 임신인 경우는 첫 인공임신중절이 아닌가 추정된다. 즉, 한 번의 인공임신중절 경험을 한 경우로 판단될 수 있다.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는 교육수준과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셋째 이상 임신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렇지만 임신순위가 낮은 비율, 첫 임신인 비율은 고학력, 비취업 부인이 저학력, 취업부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연령과 관계가 있으며, 취업부인이 비취업부인보다 출산이 직장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6-11〉 15~44세 유배우부인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1] 당시의 임신순위

(단위: %, 명)

특성	첫째 임신	둘째 임신	셋째 이상 임신	계(수)	χ^2
2006	13.6	26.3	60.1	100.0(1,827)	
2009	12.0	22.8	65.1	100.0(1,595)	
지역					
동부	11.7	23.5	64.8	100.0(1,385)	3.1
읍·면부	14.3	18.6	67.1	100.0(210)	
연령					
15~24세	28.2	29.5	42.3	100.0(298)	
25~29세	13.9	33.5	52.6	100.0(567)	
30~34세	7.8	20.7	71.6	100.0(334)	
35~39세	4.4	22.1	73.5	100.0(68)	
40~44세	-	33.3	66.7	100.0(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3	15.0	78.8	100.0(80)	9.4*
고등학교	11.9	24.6	63.6	100.0(859)	
대학 이상	13.0	21.2	65.8	100.0(655)	
취업여부					
취업	10.5	20.5	69.0	100.0(813)	10.8**
비취업	13.7	25.1	61.2	100.0(781)	

주: 1)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에는 단 한번의 인공임신중절경험을 가진 경우가 포함됨.
2) * $p<.05$, ** $p<.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6-4>와 동일

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부인연령

이번 조사결과에 의하면,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 부인의 평균연령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28.7세,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28.4세로 미미하나마 차이를 보였다.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 당시 부인의 연령은 15～24세 연령층 21.1세, 25～29세 연령층 24.2세, 30~34세 연령층 27.3세, 35~39세 연령층 28.9세, 30~44세 연령층 30.0세였다(표 6-12 참조).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부인연령은 대학 이상 학력층 부인이 29.6세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학력층 부인이 28.1세로 가장 낮아 교육수준에 따른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취업여부에 따른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부인연령은 차이를 보이지 않고 28.7세로 동일하였다.

〈표 6-12〉 15~44세 유배우부인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1] 당시의 부인연령

(단위: %, 세)

특성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시 부인의 평균연령	F값 (T값)
2006	28.5	
2009	28.7	
지역		
동부	28.7	(.94)
읍·면부	28.4	
연령		
15~24세	21.1	
25~29세	24.2	32.5***
30~34세	27.3	
35~39세	28.9	
40~44세	3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8.6	16.7***
고등학교	28.1	
대학 이상	29.6	
취업여부		
취업	28.7	(.05)
비취업	28.7	

주: 1)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에는 단 한번의 인공임신중절경험을 가진 경우가 포함됨.
2) *** p<.001
자료: <표 6-4>와 동일

다.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자녀수 및 자녀성비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자녀수를 살펴보면, 2명의 자녀를 가진 경우가 44.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명의 자녀를 가진 경우로 33.0%이었다(표 6-13 참조). 그런데 자녀가 없는 경우도 18.1%나 되었는데, 무자녀임에도 인공임신중절을 한 비율이 높은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첫 임신이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 경우(23.3%)가 많은 점과도 연결된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서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경우는 4.2%이었다.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평균 자녀수는 1.35명이었으며, 2006년 조사에서 나타난 1.41명 보다 적었다.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에서 밝혔듯이 이러한 결과는 낮은 출산율, 소자녀관, 혼전임신,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표 6-13〉 15~44세 유배우부인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1] 당시의 자녀수

(단위: %, 명)

당시 부인연령	당시 자녀수				계(수)	마지막 인공임신 중절시 평균자녀수	F값
	0명	1명	2명	3명 이상			
2006	15.7	32.6	47.2	4.5	100.0(1,829)	1.41	
2009	18.1	33.0	44.7	4.2	100.0(1,271)	1.35	
15~24세	46.3	39.7	13.1	0.9	100.0(214)	0.52	
25~29세	17.8	42.4	37.6	2.2	100.0(540)	0.65	
30~34세	6.8	21.8	65.5	5.9	100.0(409)	1.12	25.0***
35~39세	7.0	13.0	66.0	14.0	100.0(100)	1.32	
40~44세	-	50.0	37.5	12.5	100.0(8)	1.54	

주: 1)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에는 단 한번의 인공임신중절경험을 가진 경우가 포함됨.
2) *** p<.001
자료: <표 6-4>와 동일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할 당시의 부인연령별로 자녀수의 성분포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성선택적 인공임신중절과의 관련성을 밝히는데 의미가 있다. 전체적으로 성비는 109이어서 성선호에 의하여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35~39세 연령층의 인공임신중절 수용당시 자녀성비는 118이어서 남아선호가치관에 의한 인공임신

중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28)]

〈표 6-14〉 15~44세 유배우부인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1)] 당시의 자녀 성비

(단위: 명)

당시 부인연령	평균 아들수	평균 딸수	성비
전체	0.70	0.65	108
15~24세	0.26	0.26	100
25~29세	0.33	0.34	97
30~34세	0.55	0.56	98
35~39세	0.73	0.59	124
40~44세	0.77	0.77	100

주: 1)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에는 단 한번의 인공임신중절경험을 가진 경우가 포함됨.
자료: 본 조사결과

라.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수용 이유

15~44세 유배우부인이 수용한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가 무엇인지를 규명하였다. 자녀를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3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임부의 건강과 자궁외 임신 14.5%, 태아이상에 의한 임부위험 12.7%, 터울조절 11.2%, 경제적 곤란 11.9% 등의 순이었다. 그 외에도 혼전임신 6.7%, 가정문제 2.3%, 취업 중이어서 2.0%, 태아가 딸이어서 1.2% 등이 있었다(표 6-15 참조).

따라서 모자보건법상에 제시된 이유에 의한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임부의 건강상/자궁외 임신, 태아이상에 의한 임부위험)은 27.2%에 불과하였고, 72.8%는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불법 인공임신중절인 것으로 추정된다.[29)]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가 2006년보다 증가한 것은 태아이상에 이한 임부위험(8.1%pt), 임부의 건강상 또는 자궁외 임신(4.1%pt), 혼전임신(1.3%pt), 가정문제(1.2%pt) 등이었다. 반대로 감소한 것은 자녀불원(1.5%pt),

28) 2006년 조사에서의 성비는 110이었으며, 특히 15~24세와 40~44세 연령층의 인공임신중절 수용당시 자녀성비는 126과 130으로 나타나 강한 남아선호가치관이 영향을 주었다는 견해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짐작하였음(김승권 외, 2006 참조).

29) 2006년 조사에서는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은 15.0%에 불과하였고, 85.0%는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불법적 인공임신중절인 것으로 추정되었음(김승권 외, 2006).

경제적 곤란(1.5%pt), 태아가 딸이므로(1.1%pt), 터울조절(0.5%pt), 취업중이어서(0.1%pt) 등이었다.

〈표 6-15〉 15~44세 유배우부인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1)]의 수용이유

(단위: %, 명)

인공임신중절 이유	2006	2009		
		전국	동부	읍·면부
자녀불원	38.4	36.9	36.8	37.6
터울조절	11.7	11.2	11.4	10.5
임부의 건강상/자궁외 임신	10.4	14.5	14.8	12.7
태아이상에 의한 임부위험 등	4.6	12.7	12.7	12.7
혼전임신	5.4	6.7	6.7	6.6
가정문제	1.1	2.3	2.5	1.1
경제적 곤란	13.4	11.9	11.3	16.0
태아가 딸이므로	2.3	1.2	1.2	1.1
취업중이어서	2.1	2.0	2.0	1.7
기타[2)]	10.6	0.6	0.6	-
계 (수)	100.0 (1,833)	100.0 (1,273)	100.0 (1,092)	100.0 (181)

주: 1)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에는 단 한번의 인공임신중절경험을 가진 경우가 포함됨.
2) 기타에는 쌍둥이어서, 입덧이 너무 심해, 임신중 약물복용, 혼외임신, 딸일 것 같아서, 아들이어서, 아들일 것 같아, 기형아 우려 등이 포함됨.

자료: <표 6-4>와 동일

제4절 인공임신중절 실태의 시사점

모자보건법상에 제시된 이유에 의하지 않는 한 현행법상 인공임신중절은 불법행위이다. 그 동안 의료사고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한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불법 인공임신중절 행위가 최근 저출산 대책과 모자보건차원에서의 정부노력과 함께 의료인의 관심증대로 예방 및 근절대책이 강구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아울러 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혼부인의 인공임신중절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를 살펴보면, 여전히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즉,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의 73.7%,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72.8%가 사회경제적 이유 등 비합법적인 이유

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인공임신중절의 가장 큰 이유가 '(추가)자녀를 원하지 않아서'였음은 자녀양육의 부담이 얼마나 큰 지를 짐작케 한다. 이 외에도 경제적 곤란, 취업, 남아선호 등의 이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도 결코 낮지 않은 비율임을 보면 우리 사회가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편으로는 저출산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출산여성의 불이익, 자녀양육 부담, 남아선호 등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아울러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특히 산전후 관리의 철저를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임부의 건강 때문에, 태아이상에 의한 임부의 위험 때문에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경우가 많음에서 짐작케 한다.

1건의 인공임신중절을 방지하면 1명의 아이가 출생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인공임신중절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저출산대책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은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기혼부인들의 중절원인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07

남이선호 가치관과 임신·출산

제7장 남아선호 가치관과 임신·출산

본 장에서는 한국사회의 남아선호와 관련된 실태를 논의한다. 이는 남아선호 가치관과 임신 및 출산에서의 남아선호가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를 살펴본다. 남아선호 가치관은 아들 필요성과 그 이유에 의해, 임신 및 출산에서의 남아선호 결과는 이상자녀수의 성선호, 남아선호 노력, 태아성감별 여부, 현존자녀의 성비에 의해 파악한다.

제1절 남아선호 가치관의 변화

본 조사에서는 '아들의 필요성 여부'에 의하여 남아선호 가치관을 파악하였다. '아들의 필요 이유'를 규명하는 것은 성선호 가치관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적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15~44세 유배우부인의 남아선호 가치관의 변화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1. 아들 필요성

유배우부인 중 '아들이 꼭 있어야 함'의 의견을 제시한 부인은 2000년 16.2%, 2003년 14.1%, 2006년 10.2%, 그리고 본 조사에서는 8.9%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또한 '아들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있는 것이 좋음'이라는 태도는 2000년 43.2%에서 2003년에는 41.8%로 처음 감소하였고, 2006년 39.3%, 2009년 39.2%로 미미하나마 지속적인 감소를 보였다. 이들과는

반대로 '아들이 없어도 무관함'의 의견은 2000년 39.5%, 2003년 43.3%, 2006년 49.8%, 그리고 본 조사에서는 51.8%로 지속적인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냈다.

따라서 아들이 '꼭 있어야 함'과 '있는 것이 좋음'에서 '없어도 무관함'으로 한국사회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말하면, 한국사회에는 여전히 아들을 선호하는 가치관이 잔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행인 것은 시계열적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아들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강도는 현저히 낮아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가치관이 어느 정도 현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사회의 구조 및 제도가 이를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달렸다. 즉, 성평등을 위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느냐에 따라 남아선호 가치관의 저하의 지속 여부가 좌우될 것이라 판단된다.

〈표 7-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아들 필요성의 변화

(단위: %, 명)

연도	꼭 있어야 함	있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함	모르겠음	계(수)
2000[1)]	16.2	43.2	39.5	1.1	100.0(6,350)
2003[2)]	14.1	41.8	43.3	0.8	100.0(6,599)
2006[3)]	10.2	39.3	49.8	0.7	100.0(5,386)
2009[4)]	8.9	39.2	51.8	0.1	100.0(4,868)

자료: 1)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2)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3) 김승권 외,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4) 본 조사결과

아들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인의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아들이 꼭 있어야 함'의 의견은 동부지역 거주부인 9.0%,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8.7%로 미미한 차이만을 보였으며, '아들이 없어도 무관함'의 의견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51.8%)이었다.[30)]

30) 2006년 조사에서는 '아들이 꼭 있어야 함'의 의견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12.4%, 동부지역 거주부인 9.8%로 차이를 보였으며, '아들이 없어도 무관함'의 의견은 동부지역

부인의 연령과 아들선호도의 관계에서는 과거조사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아들이 꼭 있어야 함'의 의견은 가장 젊은 15~19세 연령층이 1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5~29세 연령층 11.5%, 40~44세 연령층 10.7%의 순이었다. 30~34세와 35~39세 연령층은 각각 7.9%, 6.6%로 낮은 아들선호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아들이 없어도 무관함'의 의견은 연령이 상승할수록 많아졌는데(40~44세 연령층 제외), 가장 젊은 15~24세 연령층은 44.0%로 가장 적었고, 35~39세 연령층 54.2%로 많았다.[31]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라 아들의 선호도 역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아들이 꼭 있어야 함'의 의견은 중학교 이하 학력수준의 부인이 12.2%로 많았고, 대학 이상 학력수준의 부인은 8.5%로 적었다. 반면에 '아들이 없어도 무관함'의 의견은 대학 이상 학력수준의 부인이 54.7%로 가장 많았고, 그 외 학력수준에서는 49.2～49.5%의 범위에 있었다.[32]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아들이 꼭 있어야 함'의 의견은 취업부인이 9.4%로 비취업부인 8.5% 보다 많았고, 반면에 '아들이 없어도 무관함'의 의견은 취업부인이 53.5%, 비취업부인 50.4%보다 많았다.[33]

거주부인이 50.6%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45.3%보다 많았음(김승권 외, 2006).

31) 2006년 조사에 의하면, '아들이 꼭 있어야 함'의 의견이 35～39세 연령층이 8.9%로 가장 적었으나 15～24세 연령층은 13.6%로 가장 많았다. 반대로 '아들이 없어도 무관함'의 의견은 15～24세 연령층이 46.4%로 가장 적었고, 30～34세 연령층이 51.9%로 가장 많았음(김승권 외, 2006).

32) 2006년 조사에 의하면, '아들이 꼭 있어야 함'의 의견이 중학교 이하 학력수준의 부인이 17.8%로 많았고, 대학 이상 학력수준의 부인은 8.0%로 적었다. 반면에 '아들이 없어도 무관함'의 의견은 대학 이상 학력수준의 부인이 52.6%로 가장 많았고, 그 외 학력수준에서는 41.3～48.7%의 범위에 있었음(김승권 외, 2006).

33) 2006년 조사에 의하면, '아들이 꼭 있어야 함'의 의견이 취업부인이 10.7%로 비취업부인의 9.7% 보다 많았고, 반면에 '아들이 없어도 무관함'의 의견은 취업부인 49.8%, 비취업부인 49.9%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음(김승권 외, 2006).

〈표 7-2〉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아들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꼭 있어야 함	있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함	모르겠음	계(수)
2006[1)]	10.2	39.3	49.8	0.7	100.0(5,386)
2009[2)]	8.9	39.2	51.8	0.1	100.0(4,868)
지역					
동부	9.0	39.2	51.8	0.1	100.0(4,223)
읍·면부	8.7	39.5	51.8	-	100.0(645)
연령					
15~24세	16.9	40.0	44.0	-	100.0(75)
25~29세	11.5	40.3	48.2	-	100.0(566)
30~34세	7.9	40.4	51.6	0.1	100.0(1,082)
35~39세	6.6	39.1	54.2	0.1	100.0(1,636)
40~44세	10.7	38.1	51.2	-	100.0(1,50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2.2	38.3	49.5	-	100.0(196)
고등학교	9.0	41.7	49.2	0.0	100.0(2,367)
대학 이상	8.5	36.7	54.7	0.1	100.0(2,303)
취업여부					
취업	9.4	37.0	53.5	0.1	100.0(2,200)
비취업	8.5	41.0	50.4	-	100.0(2,668)
현존자녀수					
0명	8.3	31.0	60.2	0.4	100.0(493)
1명	7.3	36.6	56.1	-	100.0(1,136)
2명	8.8	41.2	50.0	0.0	100.0(2,726)
3명	13.9	42.0	44.1	-	100.0(474)
4명 이상	10.0	45.0	45.0	-	100.0(40)
현존아들수					
0명	5.9	31.2	62.7	0.1	100.0(1,623)
1명	9.8	43.1	47.0	0.0	100.0(2,323)
2명	11.9	43.4	46.7	-	100.0(862)
3명 이상	8.9	39.2	51.8	0.1	100.0(60)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1) 김승권 외,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2) 본 조사결과

남아선호도는 현존자녀수에 따라 일관성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선호도가 높다고 하겠다. '아들이 꼭 있어야 함'의 의견은 자녀가 1명만 있는 부인이 7.3%로 가장 적었고, 자녀가 3명인 부인이 13.9%로 가장 많았다. 반면에 '아들이 없어도 무관함'의 의견은 자녀가 없는 부인

이 60.2%로 가장 많았고, 자녀가 3명인 부인이 44.1%로 가장 적었다.[34]

현재 아들이 몇 명인지에 따라 아들 선호도의 양상을 살펴보면, '아들이 꼭 있어야 함'의 의견은 아들이 없는 부인이 5.9%로 가장 적었고, 현재 아들이 2명인 부인은 11.9%로 가장 많았다. 반면에 '아들이 없어도 무관함'의 의견은 현재 아들이 없는 부인이 62.6%로 가장 많았고, 현재 아들이 1명이라도 있는 부인은 46.7~51.8%의 범위에 있었다.[35] 특징적인 것은 아들이 3명 이상인 부인은 아들이 1~2명 있는 부인보다 '아들이 꼭 있어야 함'의 의견이 8.9%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다.

2. 아들의 필요이유

전술한 바와 같이 2009 조사에서는 남아선호도가 과거연도 조사결과에 비하여 상당히 낮아져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선호 가치관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남아를 필요로 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통적 가계계승의 측면에서 '가문유지와 제사'를, 자식으로부터의 도움과 관련하여 '노후생활과 경제적 도움'을, 정신적 만족감의 측면에서 '심리적 만족과 가정행복', 그리고 '기타 이유'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 중복응답에 의하여 파악하였다.

15~44세 유배우부인이 아들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심리적 만족'이 57.5%로 가장 많았다. 그렇지만 이는 2006년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67.1%보다 낮은 수준이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아들선호 이유는 '가정행복'으로

34) 2006년 조사에서는 '아들이 꼭 있어야 함'의 의견이 자녀가 1명만 있는 부인이 9.0%로 가장 적었고, 현재 자녀가 4명 이상인 부인이 30.2%로 많았음. 반면에 '아들이 없어도 무관함'의 의견은 자녀가 없는 부인이 56.2%로 가장 많았고, 현재 자녀가 4명 이상인 부인은 가장 27.9%로 적었음(김승권 외, 2006).

35) 2006년 조사에서는 '아들이 꼭 있어야 함'의 의견은 아들이 없는 부인이 6.6%로 가장 적었고, 현재 아들이 3명 이상인 부인은 14.5%로 가장 많았음. 반면에 '아들이 없어도 무관함'의 의견은 현재 아들이 없는 부인이 61.1%로 가장 많았고, 현재 아들이 1명이라도 있는 부인은 41.8~46.5%의 범위에 있었음(김승권 외, 2006).

38.8%이었는데, 이 또한 2006년의 조사결과인 51.2%보다 현저히 낮은 결과이다(표 7-3 참조). 결과적으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정신적 만족감을 증대하는 요인으로 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견은 2006년 조사결과보다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신적 만족감' 다음으로 아들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 가계계승'이다. 이를 위한 세부지표는 '가문유지'와 '제사'인데, '가문유지'를 위하여 아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부인은 14.2%로 2006년의 19.0%보다 적었으며, '제사'를 위하여 아들이 필요한 경우는 2.5%로서 2006년의 5.0%보다 적었다.

반면에 아들이 필요한 이유가 '자식으로부터의 도움'을 받기 위한 측면은 '노후생활을 위해서'와 '경제적 도움' 등의 두 세부지표이다.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2.6%로 2006년과 동일한 비율을 보였고, '경제적 도움'은 0.5%로 2006년의 1.0%에서 감소하였다.

아들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인 '정신적 만족감'인 심리적 만족과 가정행복을 제시한 경우를 부인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부인의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두 지표 모두 동부지역 거주부인보다 높았다. 즉, '심리적 만족'을 위해 아들이 필요한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61.1%로 동부지역 거주부인 56.9%보다 많았고, '가정행복'을 위해 아들이 필요한 경우도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39.5%로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38.7%보다 미미하나마 많았다.[36]

부인연령별로 살펴보면, '심리적 만족'을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5~24세 연령층 부인이 39.5%로 가장 적었고, 30세 이상 연령층은 58%대로 많았다. '가정행복'을 위해 아들이 필요한 경우는 연령에 따라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대체로 높은 연령층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1

36) 2006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심리적 만족'을 위해 아들이 필요한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71.0%로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66.4%보다 많았고, '가정행복'을 위해 아들이 필요한 경우도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53.9%로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50.0%보다 많았음(김승권 외, 2006).

5～24세 연령층 부인은 31.0%로 가장 적었으며, 25세 이상 연령층은 37.9~40.3%의 범위에 있었다.[37]

이 외의 부인특성별 정신적 만족감에 대한 의견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들의 필요성이 '정신적 만족감'을 위해라는 부인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많았고, '가정행복'을 위한 아들 필요성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많았다. 또한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점을 살펴보면, '심리적 만족'을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경우는 비취업부인이 다소 많았고, '가정행복'을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경우는 취업부인이 다소 많았다. 자녀수와 아들수에 따른 차이점은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자녀가 한명인 부인은 '심리적 만족'을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60.5%), 자녀가 한명인 부인과 4명 이상인 부인은 '가정행복'을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33.3%).

'정신적 만족감' 외에 아들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은 집단은 '가문유지'에서 나타났다. 15~24세 연령층 부인(26.2%), 자녀가 4명 이상인 부인(27.3%), 아들이 3명 이상인 부인(25.0%)은 가문유지를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였다.

그런데 가장 젊은 연령층 부인이 '가문유지'를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이는 가치관의 특성상 젊은 연령층에서 전통적 사고방식으로 회귀하는 경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가문'에 대한 한국여성의 부정적 견해로 인하여 호주제도의 폐지가 이루어진 사실을 감안한다면 다음 연구에서 재검토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38]

---

37) 2006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심리적 만족'을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5～24세 연령층 부인이 63.1%로 가장 적었고, 40～44세 연령층 부인은 70.9%로 가장 많았다. '가정행복'을 위해 아들이 필요한 경우는 15～24세 연령층 부인이 43.1%로 가장 적었으며, 35～39세 연령층 부인은 53.9%, 35～39세 연령층 부인은 53.0%로 많았음(김승권 외, 2006).

38) 2006년의 조사결과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즉, 15~24세 연령층 부인의 26.2%가 '가문유지'를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25~29세 연령층 22.0%, 30~34세 연령층 17.8%, 35~39세 연령층 16.4%, 40~44세 연령층 20.9%보다 높은 수준이었음(김승권 외, 2006)

〈표 7-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아들의 필요이유[1)]

(단위: %)

특성	전통적 가계계승		자식으로부터의 도움		정신적 만족감		기타
	가문 유지	제사	노후 생활	경제적 도움	심리적 만족	가정 행복	
2006	19.0	5.0	2.6	1.0	67.1	51.2	-
2009	14.2	2.5	2.6	0.5	57.5	38.8	0.1
지역							
동부	14.3	2.1	2.5	0.4	56.9	38.7	0.1
읍·면부	13.8	5.1	3.2	1.0	61.1	39.5	-
연령							
15~24세	26.2	4.7	9.3	2.3	39.5	31.0	-
25~29세	18.7	2.7	3.8	1.0	52.6	39.2	0.3
30~34세	13.2	2.7	3.8	0.4	58.6	37.9	-
35~39세	13.4	2.4	1.7	0.7	58.7	40.3	-
40~44세	13.2	2.3	1.6	0.1	58.5	38.5	0.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7.0	3.0	1.0	1.0	65.0	31.0	-
고등학교	15.0	3.2	3.2	0.6	58.5	39.1	0.1
대학 이상	13.1	1.6	1.9	0.4	55.7	39.3	0.1
취업여부							
취업	13.7	2.1	1.7	0.7	55.8	41.4	0.1
비취업	14.6	2.9	3.2	0.3	58.8	36.8	0.1
현존자녀수							
0명	19.5	2.6	2.1	1.0	48.7	41.5	0.5
1명	14.4	2.4	2.6	0.6	60.5	33.3	-
2명	12.1	2.6	2.5	0.4	58.2	40.7	0.1
3명	19.9	2.6	2.6	0.8	54.7	38.1	-
4명 이상	27.3	-	4.5	-	54.5	33.3	-
현존아들수							
0명	15.6	2.7	3.7	0.8	58.6	34.9	0.2
1명	13.4	2.3	1.9	0.2	56.7	41.0	-
2명	14.1	2.9	2.5	0.8	59.1	38.4	0.2
3명 이상	25.0	3.2	6.5	3.2	38.7	38.7	-

주: 1) 아들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거나 아들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복수응답 결과임.

자료: <표 7-2>와 동일

제2절 이상자녀수의 성선호와 남아출산 노력

1. 이상자녀수의 성 선호

성선호의 수준은 전술한 '아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이상자녀수가 성구분 없이 결정되는지, 아니면 아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의해서도 측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제3장(혼인가치관 및 자녀가치관의 변화)에서 논의된 이상자녀수에 대한 질문항 외에 남아 및 여아하여 이상자녀수를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는 남아선호 가치관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실제 자녀규모를 결정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갖기 위하여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하는 등 출생성비 불균형의 원인이고 법적 및 윤리적 측면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가치관 측면에서의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김승권 외, 2006). 물론 자녀의 성을 구별해서 원한다고 하여 반드시 남아를 선호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남아를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이상자녀수에 대한 성 구성을 분석한 결과, 이상자녀수를 성 구별 없이 원한다는 부인은 71.9%로 나타나 2006년의 74.4%보다는 감소하였다. 따라서 성 구별하여 이상자녀수를 원한다는 경우는 28.1%로 2006년의 25.6%보다 2.5%pt 증가하였다.

단순히 자녀의 성을 구별하여 이상자녀수를 원하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본 장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제인 남아선호 가치관의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과연 자녀의 성을 구별해서 이상자녀수를 원하는 경우 원하는 자녀의 성이 남아인지, 여아인지의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2009년 조사에서의 분석결과는 <표 7-5>에 제시되는데, 매우 의미있는 결과를 보였다. 이상자녀수를 성별로 구분하여 원하는 부인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평균 남아수는 1.22명, 평균 여아수는 1.35명으로 '여아선호'를 보였고, 성비(여아 100명에 대한 남아수)는 90으로 나타났다.

〈표 7-4〉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이상자녀수의 성별 구분여부[1)]

(단위: %, 명)

특성	구별없이	구별해서	기타	계(수)	χ^2
2006	74.4	25.6	-	100.0(5,328)	
2009	71.9	28.1	-	100.0(4,764)	
지역					
동부	72.2	27.8	-	100.0(4,126)	1.9
읍·면부	69.6	30.4	-	100.0(638)	
연령					
15~24세	62.7	37.3	-	100.0(75)	
25~29세	65.8	34.2	-	100.0(561)	17.5***
30~34세	71.4	28.6	-	100.0(1,058)	
35~39세	73.8	26.2	-	100.0(1,603)	
40~44세	73.1	26.9	-	100.0(1.46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70.1	29.9	-	100.0(187)	4.6#
고등학교	70.6	29.4	-	100.0(2,316)	
대학 이상	73.4	26.6	-	100.0(2,260)	
취업여부					
취업	73.1	26.9	-	100.0(2,139)	2.6
비취업	70.9	29.1	-	100.0(2,625)	
현존자녀수					
0명	76.4	23.6	-	100.0(475)	
1명	74.0	26.0	-	100.0(1,110)	13.2**
2명	71.0	29.0	-	100.0(2,674)	
3명	67.2	32.8	-	100.0(467)	
4명 이상	72.5	27.5	-	100.0(40)	

주: 1) 이상자녀수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 p<.10, ** p<.01, *** p<.001
자료: <표 7-2>와 동일

이러한 결과를 부인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현존자녀수가 0명인 경우만 원하는 남아수가 여아수보다 많았고, 그 외의 경우는 모두 원하는 여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인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원하는 자녀는 여아가 남아보다 많았고(동부 0.12명 차이, 읍·면부 0.16명 차이), 모든 연령층에서 남아보다 여아를 원하고 있었으며(15~24세 연령층 0.23명 차이),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여아를 더 원하고 있었다(중학교 이하 0.22명 차이). 또한 부인의 취업여부에 상관없이(비취업부인 0.16명 차이), 현존자녀가 0명을 제

외한 1명 이상인 경우 모두(4명 이상 자녀 가진 부인 0.38명 차이)가 여아를 더 원하고 있었다. 이는 남아선호를 염려하는 그 동안의 한국의 사회현상과는 반대되는 결과로 현실로 연결될 경우 여아선호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간에 유행하는 "아들 덕에 버스타고, 딸 덕에 비행기 탄다"는 말이 실제 현실로 다가왔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표 7-5〉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성별 구별하여 이상자녀수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의 이상 남아수 및 이상 여아수[1)]

(단위: 명, %)

특성	(분석대상수)	평균 남아수	평균 여아수	F값(T값)	성비
전체	(1,339)	1.22	1.35		90
지역					
동부	(1,145)	1.22	1.34	(-.5)	91
읍·면부	(194)	1.24	1.40		89
연령					
15~24세	(28)	1.22	1.45		84
25~29세	(192)	1.17	1.22	2.2#	96
30~34세	(303)	1.17	1.37		85
35~39세	(420)	1.24	1.34		93
40~44세	(395)	1.26	1.39		9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6)	1.17	1.39	.6	84
고등학교	(681)	1.23	1.36		90
대학 이상	(602)	1.21	1.33		91
취업여부					
취업	(576)	1.23	1.31	(2.1*)	94
비취업	(763)	1.22	1.38		88
현존자녀수					
0명	(112)	1.14	1.10		104
1명	(289)	1.10	1.26	10.4***	87
2명	(775)	1.26	1.38		91
3명	(153)	1.29	1.46		88
4명 이상	(10)	1.67	2.05		81

주: 1) 자녀의 성을 구별해서 이상자녀수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 p<.10, * p<.05,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2. 남아출산 노력

남아선호의식은 임신과정에서 남아출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토록 하게 된다. 특히, 이는 본 장의 제3절(태아성감별과 자녀 성비)에서 논의하는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물론 법적으로 성감별을 위한 의료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나 임신당사자 스스로 개인적 방법에 의하여 또는 일부 의료인의 비공식적 협조에 의해 음성적 성감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남아출산을 위한 노력을 한 경험률은 3.6%로 나타나 2006년의 6.1%보다 현저히 감소하였다. 노력한 유형으로는 자연요법이 2.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초음파 검사(1.3%), 양수검사(0.4%), 융모막 검사(0.1%) 등이었다(표 7-6 참조).

부인의 특성별 남아출산 노력 경험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지역별 남아출산 노력 경험률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3.6%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3.3%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15~24세 연령층 부인의 남아출산 노력 경험은 없었으나, 40~44세 연령층 부인의 노력 경험률은 4.9%로 가장 높았다.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아출산을 위한 노력 경험률이 높았는데, 대학 이상 학력의 부인은 3.7%, 중학교 이하 학력의 부인은 2.8%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취업 중인 부인(4.0%) 비취업 부인(3.2%)보다 남아출산 노력 경험률이 높았다.[39]

39) 2006년 조사에 의하면, 지역별 남아출산 노력 경험률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5.9%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7.0%보다 낮았고, 15~24세 연령층 부인의 남아출산 노력 경험률은 1.1%이었으나,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점차 높아져 35~39세 연령층 부인은 6.9%, 40~44세 연령층 부인 8.6%이었음. 초등학교와 중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부인의 남아출산을 위한 노력 경험률은 각각 1.6%, 7.1%%이었으나 고등학교 학력의 부인은 6.0%, 대학 이상 학력의 부인은 6.2%로 대체로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남아출산 노력 경험률이 높았으며, 취업부인이 비취업부인 보다 남아출산 노력경험률이 다소 높았음(김승권 외, 2006).

〈표 7-6〉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전·후 남아출산 노력 경험률

(단위: %, 명)

특성	노력 않음	노력유형별 경험률[1]						(분석 대상수)
		소계	자연 요법	양수 검사	융모막 검사	초음파 검사	기타	
2006	93.9	6.1	3.8	0.5	0.1	1.9	1.0	(5,081)
2009	96.4	3.6	2.0	0.4	0.1	1.3	0.1	(4,779)
지역								
동부	96.4	3.6	2.0	0.4	0.2	1.3	0.1	(4,133)
읍·면부	96.7	3.3	2.0	0.3	-	1.4	-	(636)
연령								
15~24세	100.0	-	-	-	-	-	-	(57)
25~29세	98.2	1.8	1.3	-	-	0.4	0.4	(449)
30~34세	96.4	3.6	2.5	0.2	0.1	1.2	0.1	(1,011)
35~39세	97.2	2.8	1.6	0.2	0.1	1.3	-	(1,649)
40~44세	95.1	4.9	2.5	0.9	0.3	1.8	0.2	(1,61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97.2	2.8	0.9	-	-	1.8	-	(217)
고등학교	96.5	3.5	1.8	0.4	0.2	1.5	0.2	(2,403)
대학 이상	96.3	3.7	2.4	0.4	0.1	1.1	0.1	(2,158)
취업여부								
취업	96.0	4.0	2.2	0.4	0.3	1.5	0.1	(2,182)
비취업	96.8	3.2	1.8	0.4	0.0	1.2	0.1	(2,597)

주: 1) 임신경험이 있는 부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복응답 비율임.
자료: <7-2>와 동일

제3절 태아 성감별과 자녀 성비

1. 태아 성감별

전술한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태아가 딸이어서 첫 번째와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경우가 다소 있었음은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을 직접 경험했음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인공임신중절 전에 태아의 성감별을 경험하였는지를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확인하였다. 즉, 첫 인공임신중절과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 태아 성감별을 실제로 경험하였는지의 여부이다.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 당시 태아 성감별을 실시한 부인은 1.8%로 2006년의 2.5%보다 0.7%pt 감소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 태아 성감별을 실시한 부인은 2.0%로 2006년의 2.6%보다 0.6%pt 감소하였다(표 7-7 참조). 이와 같이 태아 성감별 행위의 감소는 바람직한 것이나, 한편으로는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태아 성감별 행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 당시 태아 성감별 행위를 한 부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동부지역 거주부인(1.9%)이 읍·면부 지역 거주부인(1.1%)보다 태아 성감별 경험률이 높았고, 15~24세와 40~44세 연령층 부인은 경험이 없었으나 30~34세 연령층 부인은 3.3%의 경험률을 가지고 있었다. 고등학교 학력수준의 부인이 태아 성감별 경험률이 가장 높았고(2.3%), 취업부인(2.1%)이 비취업부인(1.7%)보다 경험률이 높았다. 또한 자녀수가 3명인 부인의 태아 성감별 경험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현저히 높았다(5.6%). 아들이 한명도 없거나(2.8%) 2명인 부인(2.3%)의 태아 성감별 경험률이 높았는데, 후자의 경우는 여아를 원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여아를 많이 가진 부인의 태아 성감별 경험률이 현저히 높다는 사실이다(여아 0명 0.6%, 여아 1명 2.0%, 여아 2명 8.3%, 여아 3명 이상 11.1%).

이러한 경향은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 태아 성감별을 실시한 부인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여아를 3명 이상 가진 부인의 태아 성감별 경험률이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의 경우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사실이다(여아 0명 0.6%, 여아 1명 1.0%, 여아 2명 8.6%, 여아 3명 이상 26.7%).

〈표 7-7〉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시 태아 성감별 여부

(단위: %)

특성	첫 중절시 태아 성감별		마지막 중절시 태아 성감별	
	(분석대상수)	실시율	(분석대상수)	실시율
2006	(1,830)	2.5	(1,832)	2.6
2009	(1,271)	1.8	(1,270)	2.0
지역				
동부	(1,090)	1.9	(1,090)	2.1
읍·면부	(181)	1.1	(180)	1.1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				
15~24세	(298)	-	(298)	0.3
25~29세	(566)	2.1	(565)	2.1
30~34세	(334)	3.3	(334)	3.3
35~39세	(68)	1.5	(68)	1.5
40~44세	(5)	-	(5)	-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2)	-	(62)	-
고등학교	(752)	2.3	(752)	2.4
대학 이상	(457)	1.5	(456)	1.5
취업여부				
취업	(613)	2.1	(612)	1.8
비취업	(659)	1.7	(659)	2.1
당시 자녀수				
0명	(307)	-	(228)	-
1명	(475)	1.7	(419)	1.0
2명	(452)	3.1	(567)	2.8
3명	(36)	5.6	(52)	7.7
4명 이상	(2)	-	(3)	-
당시 아들수				
0명	(633)	2.8	(545)	3.5
1명	(502)	0.4	(564)	0.4
2명	(132)	2.3	(153)	2.0
3명 이상	(4)	-	(7)	-
당시 딸수				
0명	(695)	0.6	(623)	0.6
1명	(448)	2.0	(481)	1.0
2명	(120)	8.3	(152)	8.6
3명 이상	(9)	11.1	(15)	26.7

자료: <7-2>와 동일

2. 현존자녀의 성비

15~44세 유배우부인의 평균 현존자녀수는 1.67명이었으며, 남아 0.87명, 여아 0.81명으로 현존자녀 성비는 107로 나타났다(표 7-8 참조). 이는 2006년 조사의 현존자녀 성비 110보다 완화된 것이다.

〈표 7-8〉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현존자녀의 성비

(단위: 명, %)

특성	평균 현존자녀수			현존자녀 성비
	계	남아수(A)	여아수(B)	(A/B)
2006	1.70	0.89	0.81	110
2009	1.67	0.87	0.81	107
지역				
동부	1.65	0.85	0.80	106
읍·면부	1.84	0.97	0.87	111
T값	-5.7***	-3.8***	-2.4*	
연령				
15~24세	0.74	0.38	0.36	106
25~29세	0.90	0.46	0.43	107
30~34세	1.47	0.75	0.73	103
35~39세	1.84	0.96	0.88	109
40~44세	1.95	1.01	0.94	107
F값	292.3***	87.1***	61.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76	0.83	0.94	88
고등학교	1.81	0.93	0.88	106
대학 이상	1.52	0.80	0.72	111
F값	82.5***	21.5***	28.5***	
취업여부				
취업	1.65	0.85	0.79	108
비취업	1.70	0.88	0.82	107
T값	-2.3*	-1.1*	-1.4*	

주: 평균 남아수와 여아수를 합한 값이 평균 현존자녀수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반올림에 의한 것이며, 성비는 이를 감안하여 산출함.
자료: <7-2>와 동일

현존자녀의 성비를 부인특성별로 살펴보면, 읍·면부 지역 거주부인(111)이 동부지역 거주부인(106)보다 높았고, 35~39세 연령층 부인의 성비가 가장 높

았으며(109),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의 성비가 가장 높았다(111). 부인의 취업여부와는 미미한 차이만을 보였다(취업부인 108, 비취업부인 107).

제4절 남아선호 가치관과 임신·출산의 시사점

한국사회에서 남아선호현상은 매우 뿌리 깊다. 다행스럽게 최근에는 성평등 가치관이 존중되고, 남아선호는 점차 사라지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밝혔듯이 아들 필요성의 저하에서 잘 나타났다. 그렇지만 여전히 일부계층에서는 남아선호에 의한 성선택적 인공임신중절 이라는 불법행위도 이루어지고 있었고, 부인 스스로 또는 의료인의 비공식적 협조에 의하여 남아출산을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가 파악되었음은 남아선호현상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현존자녀수의 성비 불균형(균형적 성비는 약 105로 파악)은 미미하나마 존재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상자녀수의 성별구분을 원하는 부인의 원하는 자녀는 남아보다 여아가 많았음은 우리 사회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분석결과이다. 물론 이러한 견해가 현실화되는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렇지만 가치관의 변화는 현실과 연결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한국사회가 '남아선호'에서 '여아선호'로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만, 그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아니면 남아선호도 여아선호도 아닌 시대가 다가올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제도적 변화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성불평등적 요소를 제거하고 남아선호도 여아선호도 아닌 시대가 우선 도래하기를 기대한다.

08

초경폐경 및 불임 실태

제8장 초경·폐경 및 불임 실태

제1절 초경 및 폐경

초경 및 폐경 연령은 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여성의 생식보건에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여성의 초경 및 폐경 연령과 관련된 실태조사가 전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이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여성의 생식건강을 위한 정책수립과 저출산 대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코자 한다.

1. 초경연령

15~64세 기혼부인의 초경연령을 파악한 결과, 14세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16~19세, 13세, 15세 등이었다. 따라서 대체로 13~15세에 초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12세 이하에서도 11.3%가 초경을 경험하고 있었고, 20세 이상에서도 0.5%가 초경을 하여 예외적인 경우도 다소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국 여성의 평균 초경연령은 14.3세로 나타났으며, 지역에 따른 차이는 미미한 반면, 젊은 연령층일수록 초경연령이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즉, 현재 연령이 높은 계층에서는 약 15세 전후에 초경을 경험하였고, 젊은 연령층에서는 13세에 초경을 경험하고 있었다(표 8-1 참조). 이와 같이 초경이 빨라지는 것은 영양개선, 체질 강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8-1〉 15~64세 기혼부인의 초경연령

(단위: %, 명, 세)

특성	초경연령							χ^2	평균 초경연령	F값 (T값)
	12세 이하	13세	14세	15세	16~19세	20세 이상	계(수)			
전체	11.3	20.3	26.7	20.0	21.2	0.5	100.0(10,377)		14.3	
지역										
동부	11.5	20.8	27.3	20.5	19.5	0.4	100.0(8,657)	100.6***	14.3	(-7.9***)
읍·면부	10.2	17.4	23.8	17.8	29.9	0.8	100.0(1,720)		14.7	
연령										
15~24세	31.2	28.6	19.5	11.7	6.5	2.6	100.0(77)		13.2	
25~29세	28.8	28.1	21.8	15.9	5.2	0.2	100.0(573)		13.3	
30~34세	26.8	24.6	27.1	14.4	6.7	0.4	100.0(1,112)		13.4	
35~39세	15.4	29.3	30.4	15.2	9.5	0.1	100.0(1,698)		13.7	292.8***
40~44세	10.4	25.4	31.4	21.6	11.1	0.1	100.0(1,648)		14.0	
45~49세	6.6	19.8	29.6	24.2	19.5	0.2	100.0(1,613)		14.4	
50~54세	5.4	14.4	26.0	22.2	31.0	0.9	100.0(1,623)		14.8	
55~59세	2.9	8.0	22.0	22.7	43.6	0.8	100.0(1,097)		15.3	
60~64세	2.6	9.3	16.2	22.0	48.8	1.1	100.0(921)		15.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7	10.6	19.6	21.8	42.2	1.1	100.0(2,837)	1389.8***	15.3	768.6***
고등학교	11.2	21.8	29.8	20.6	16.2	0.3	100.0(4,454)		14.2	
대학 이상	17.5	26.9	28.7	17.5	9.2	0.2	100.0(3,083)		13.7	

주: *** p<.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2. 폐경연령

40세 이상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폐경여부를 파악하고, 폐경이 된 여성을 대상으로 폐경연령을 파악하였다. 전체 40~64세 기혼여성 중 생리를 지속중인 경우는 49.5%이었고, 폐경된 경우는 50.5%를 차지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44세 연령층에서 폐경이 된 비율은 3.4%에 불과하였으나 45~49세 연령층에서는 18.0%를 차지하였다. 특히, 50세에 진입하면 폐경은 급속히 증가하여 50~54세 여성의 70.8%가 폐경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55세가 넘었음에도 폐경이 되지 않은 여성도 있었다(표 8-2 참조). 한국여성의 평균 폐경연령은 49.0세로 나타났으며, 30대 후반에 폐경된 경우도 있음은 폐경의 원인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표 8-2〉 40세 이상 기혼부인의 폐경연령

(단위: %, 명, 세)

특성	월경 지속 여부			X^2	평균[1) 폐경연령	F값 (T값)
	지속중	폐경됨	계(수)			
전체	49.5	50.5	100.0(6,911)		49.0	
지역						
동부	51.5	48.5	100.0(5,652)	48.1***	49.0	(.5)
읍·면부	40.7	59.3	100.0(1,259)		48.9	
연령						
40~44세	96.6	3.4	100.0(1,648)		38.6	
45~49세	82.0	18.0	100.0(1,613)		44.3	
50~54세	29.2	70.8	100.0(1,620)	4268.0***	48.9	206.9***
55~59세	2.4	97.6	100.0(1,098)		50.1	
60~64세	0.7	99.3	100.0(922)		49.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4.2	75.8	100.0(2,733)		49.1	
고등학교	62.1	37.9	100.0(2,867)	1212.4***	48.9	2.4#
대학 이상	74.7	25.3	100.0(1,312)		48.6	

주: 1) 폐경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 p<.10, ** p<.001, *** p<.0001
자료: 본 조사결과

40세 이상 연령에서 폐경된 64세 이하 기혼부인만을 대상으로 초경~폐경까지의 소요기간을 파악하였다. 평균 소요기간은 33.9년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특성별로 소요기간을 분석하면 <표 8-3>과 같이 제시된다. 부인의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지역 거주부인(34.0년)이 읍·면부 지역 거주부인(33.3년)보다 소요기간이 미미하나마 길었다. 즉,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초경연령은 읍·면부 지역 거주부인보다 0.6년이 빨랐고, 폐경연령은 0.1년이 길었다.

59세까지는 부인연령이 높을수록 소요기간이 길었다. 즉, 40~44세 연령층 부인의 초경~폐경까지의 소요기간이 24.8년으로 가장 짧았고, 55~59세 연령층 부인의 소요기간은 34.7년으로 가장 길었다. 따라서 부인연령에 따라서 최고 9.9년의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3〉 40세 이상 폐경부인의 '초경~폐경' 소요기간

(단위: 세, 년)

특성	평균 초경연령	평균 폐경연령	소요기간
전체	15.1	49.0	33.9
지역			
동부	15.0	49.0	34.0
읍·면부	15.6	48.9	33.3
연령			
40~44세	13.8	38.6	24.8
45~49세	14.3	44.3	30.0
50~54세	14.9	48.9	34.0
55~59세	15.4	50.1	34.7
60~64세	15.5	49.9	34.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5.5	49.1	33.6
고등학교	14.7	48.9	34.2
대학 이상	14.4	48.6	34.2

주: 초경의 경우도 40~64세의 폐경된 기혼부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조사결과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라서 초경~폐경까지의 소요기간은 중학교 이하자와 고등학교 이상자로 구분되었다. 즉, 부인의 초경~폐경까지의 소요기간은 고등학교 이상 학력의 부인은 동일한 34.2년이었고, 중학교 이하 학력의 부인은 33.6년이었다. 특히, 중학교 이하 학력 부인의 초경은 상대적으로 늦었고(15.5세), 폐경연령도 상대적으로 늦었는데(49.1세), 폐경연령의 연장기간보다 초경연령의 늦은 기간이 더 크기 때문에 전체 소요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난 것이다.

제2절 불임 및 치료

환경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불임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특별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불임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비용부담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있어 최근에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불임부부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저출산 사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부정책이 조성되었다기 보다는 그 동안 불임부부의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한국사회에서 불임의 정확한 실태가 시계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2006년도 조사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불임실태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15~49세 유배우부인 중 임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방법은 2006년과 비교하여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노력이 매우 약하였고, 방법으로는 '불임전문 병원의 치료'가 12.7%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한의원/한방병원의 치료' 5.7%, '일반 병의원의 치료' 4.3% 등의 순이었다(표 8-4 참조). 이는 부인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표 8-4〉 15~49세 유배우부인의 임신노력 방법

(단위: %, 명)

구분	2006년	2009년		
		전국	동부	읍·면부
불임 전문병원의 치료	35.4	12.7	13.2	9.6
한의원/한방병원의 치료	59.8	5.7	5.8	5.1
일반 병의원의 치료	39.9	4.3	4.5	3.2
약국에서의 양방약재 복용	8.0	0.6	0.4	1.3
일반 건강원의 약재 복용	5.7	1.2	1.0	1.9
민속요법	8.1	1.3	1.5	-
식이요법	7.0	1.3	1.1	1.9
기타	4.6	-	-	-
중복노력의 합	168.5	27.1	27.5	23
(분석대상수)	(540)	(949)	(793)	(156)

주: 피임비실천 및 피임불필요 부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복응답 비율임.
자료: 본 조사결과

유배우부인의 연령별 임신노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신노력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에 의한 본 질문을 특성을 감안하여 전체의 임신노력 비율을 살펴보면, 29세 미만에서는 8.2%에 불과하였으나 30~34세 연령층 20.8%, 35~39세 연령층 41.1%, 40~44세 연령층 52.4%, 45~49세 연령층 60.8%이었다(표 8-5 참조).

특히, 불임전문병원의 치료가 급증하였는데, 29세 미만에서는 2.9%에 불과하였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치료율은 급증하여 40~44세 연령층에서는 31.3%나 되었다. 45세 이후에서는 다소 감소하여 24.7%를 보였다. 또 다른 특징은 45~49세 연령층의 임신노력 방법은 약재복용, 민속요법, 식이요법 등 다양하다는 점이다.

〈표 8-5〉 15~49세 유배우부인 연령별 임신노력

(단위: %, 명)

구분	29세 미만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불임 전문병원의 치료	2.9	9.4	19.9	31.3	24.7
한의원/한방병원의 치료	1.9	4.9	8.8	11.1	9.0
일반 병의원의 치료	2.2	3.1	5.9	8.0	9.0
약국에서의 양방약재 복용	-	0.3	1.2	-	3.9
일반 건강원의 약재 복용	0.3	1.4	1.2	-	5.2
민속요법	0.3	1.0	1.2	2.0	5.1
식이요법	0.6	0.7	2.9	-	3.9
중복노력의 합	8.2	20.8	41.1	52.4	60.8
(분석대상수)	(314)	(288)	(171)	(99)	(77)

주: 피임비실천 및 피임불필요 부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복응답 비율임.
자료: 본 조사결과

유배우부인의 교육수준별 임신노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이하 학력수준과 대학 이상 학력수준으로 구분된다. 즉, 전자는 33.4~35.0%이었고, 후자는 21.5%로 차이를 보였다(표 8-6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고학력 여성이 비교적 젊은 연령층 여성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신노력 방법은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불임 전문병원에서의 치료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한의원/한방병원에서 치료, 일반 병의원의 치료 등의 순이었다. 그 외의 방법은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다만 대학 이상 교육수준의 여성보다 고등학교 이하 교육수준의 여성이 약재복용, 민속요법, 식이요법에 의한 노력방법이 다소 많았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부인의 연령과 관련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8-6〉 15~49세 유배우부인 교육수준별 임신노력

(단위: %, 명)

구분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 이상
불임 전문병원의 치료	17.5	15.3	10.1
한의원/한방병원의 치료	6.3	7.0	4.5
일반 병의원의 치료	4.8	5.0	3.7
약국에서의 양방약재 복용	1.6	0.8	0.6
일반 건강원의 약재 복용	1.6	1.8	0.8
민속요법	1.6	2.0	0.6
식이요법	1.6	1.5	1.2
중복노력의 합	35.0	33.4	21.5
(분석대상수)	(63)	(400)	(487)

주: 피임비실천 및 피임불필요 부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복응답 비율임.
자료: 본 조사결과

유배우부인의 자녀수별 임신노력을 살펴보면, 자녀가 없는 부인의 노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복응답의 전체에 의해 살펴보면 40.8%나 되었다. 자녀가 있는 부인도 추가자녀를 갖기 위해 임신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 자녀 부인은 24.1%, 두 자녀 부인 10.2%이었고, 세 자녀를 둔 경우도 19.1%나 되었다(표 8-7 참조).

〈표 8-7〉 15~49세 유배우부인 자녀수별 임신노력

(단위: %, 명)

구분	0명	1명	2명	3명
불임 전문병원의 치료	18.0	11.6	6.0	11.9
한의원/한방병원의 치료	9.3	4.7	1.6	2.4
일반 병의원의 치료	6.3	3.9	1.6	2.4
약국에서의 양방약재 복용	0.6	0.8	-	-
일반 건강원의 약재 복용	2.4	0.8	0.5	-
민속요법	2.1	0.8	0.5	2.4
식이요법	2.1	1.5	-	-
중복노력의 합	40.8	24.1	10.2	19.1
(분석대상수)	(333)	(388)	(183)	(46)

주: 피임비실천 및 피임불필요 부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복응답 비율임.
자료: 본 조사결과

결혼 후 부부가 불임진단 또는 치료를 위해 양방병원을 방문한 시기를 살펴보면, 2~3년 미만이 가장 많았고(57.0%), 다음은 5년 이상 16.1%, 3~5년 미만 14.1%이었다. 결혼후 짧은 기간(1년 미만)임에도 양방병원을 찾는 경우도 12.8%로 나타났다(표 8-8 참조). 따라서 결혼후 양방병원 방문까지의 평균 기간은 3.23년 이었으며,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2.88년으로 짧았고, 읍·면부 지역 거주부인은 5.54년으로 상대적으로 늦게 병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8〉 불임진단 또는 치료를 위한 부부의 결혼 후 양방병원 방문시기

(단위: 명, %)

구분	전국	동부	읍·면부
1년 미만	12.8	14.0	5.0
2~3년 미만	57.0	59.7	40.0
3~5년 미만	14.1	13.2	20.0
5년 이상	16.1	13.2	35.0
계(수)	100.0(149)	100.0(129)	100.0(20)
결혼후 양방병원 방문까지의 평균 기간(년)	3.23	2.88	5.54
t값	-2.326**		

주: 1) 불임진단 및 불임치료를 받은 부인을 분석대상으로 함; 2) ** p<.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피임비실천 및 피임불필요 15~49세 유배우부인의 불임검사를 받은 비율은 15.6%로 2006년의 54.2%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러한 저하는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이루어졌다. 또한 부부 모두가 불임검사를 받는 비율은 70.3%로 2006년의 51.1%보다 크게 높아졌는데, 상대적으로 부인 본인만 불임검사를 받는 비율은 27.0%로 2006년의 47.9%보다 현저히 낮아져 바람직한 결과로 받아 들여진다(표 8-9 참조). 그렇지만 이러한 경향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에게서 강하였고, 읍·면부 지역 거주부인에게서는 약하게 나타났다.

〈표 8-9〉 15～49세 유배우부인의 불임진찰 여부

(단위: %, 명)

구분	2006년			2009년		
	전국	동부	읍·면부	전국	동부	읍·면부
불임검사 받음	54.2	54.3	53.2	15.6	16.2	12.2
본인	(47.9)	(25.9)	(52.6)	(27.0)	(24.8)	(42.1)
남편	(1.0)	(0.8)	(2.6)	(2.7)	(3.1)	-
부부 모두	(51.1)	(51.8)	(44.7)	(70.3)	(72.1)	(57.9)
불임검사 받지 않음	45.8	45.7	46.8	84.4	83.8	87.8
계(수)	100.0(539)	100.0(468)	100.0(71)	100.0(949)	100.0(793)	100.0(156)

주: 피임비실천 및 피임불필요 부인이 분석대상임.
자료: 본 조사결과

부인의 특성별 불임진찰 여부는 <표 8-10>~<표 8-12>에서 제시된다. 분석결과를 간략히 제시하면, 불임검사를 받는 비율이 40~44세까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무자녀 및 3자녀 자녀를 둔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임검사를 받는 당사자가 부부모두인 경우는 29세 미만 연령층에서 가장 많았고(85.7%), 교육수준이 높을수록(대학 이상 72.6%), 3명의 자녀를 가진 경우(83.3%)가 많았다.

〈표 8-10〉 15~49세 유배우부인의 연령별 불임진찰 여부

(단위: %, 명)

구분	29세 미만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불임검사 받음	4.8	11.8	23.5	37.4	28.2
본인	(7.1)	(39.4)	(20.0)	(32.4)	(22.7)
남편	(7.1)	(6.1)	(-)	(-)	(-)
부부 모두	(85.7)	(54.5)	(80.0)	(67.6)	(77.3)
불임검사 받지 않음	95.2	88.2	76.5	62.6	71.8
계(수)	100.0(314)	100.0(289)	100.0(170)	100.0(99)	100.0(78)
χ^2	84.436***				

주: 1) 피임비실천 및 피임불필요 부인이 분석대상임; 2) *** p<.0001
자료: 본 조사결과

〈표 8-11〉 15~49세 유배우부인의 교육수준별 불임진찰 여부

(단위: %, 명)

구분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 이상
불임검사 받음	22.2	18.0	12.6
본인	(20.0)	(29.2)	(25.8)
남편	(13.3)	(1.4)	(1.6)
부부 모두	(66.7)	(69.4)	(72.6)
불임검사 받지 않음	77.8	82.0	87.4
계(수)	100.0(63)	100.0(400)	100.0(486)
χ^2	7.312*		

주: 1) 피임비실천 및 피임불필요 부인이 분석대상임; 2) * p<.05
자료: 본 조사결과

〈표 8-12〉 15~49세 유배우부인 자녀수별 불임진찰 여부

(단위: %, 명)

구분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불임검사 받음	22.8	13.7	7.1	14.3	-
본인	(22.4)	(32.1)	(38.5)	(16.7)	(-)
남편	(5.3)	(-)	(-)	(-)	(-)
부부 모두	(72.4)	(67.9)	(61.5)	(83.3)	(-)
불임검사 받지 않음	77.2	86.3	92.9	85.7	100.0
계(수)	100.0(333)	100.0(388)	100.0(183)	100.0(42)	100.0(2)
χ^2	24.746***				

주: 1) 피임비실천 및 피임불필요 부인이 분석대상임; 2)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표 8-13>에 제시된다. 전체 유배우부인 중 피임비실천 및 피임불필요 부인은 15.1%로 2006년 7.9%보다 약 2배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부부의 불임진찰률은 15.6%로 2006년의 54.2%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전체 유배우부인 중 불임진찰률은 2.35%로 2006년의 4.26%보다 절반수준으로 낮았다. 환경악화, 혼전 인공임신중절 등 많은 원인에 의하여 불임부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감안한다면 불임진찰률이 낮아진 것은 우려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정책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8-13〉 15~49세 유배우부인 중 연령별 불임진찰률

(단위: 명, %)

연령	전체 유배우 부인수(A)	피임비실천 및 피임불필요 부인수(B)	부부가 불임진찰 받은 수(C)	피임비실천 및 피임불필요 부인 중 부부 불임진찰률 (C/B*100=C)	유배우부인 중 불임진찰률 (C/A*100)
2006	6,846(100.0)	539(7.9)	292	54.2	4.26
2009	6,305(100.0)	949(15.1)	148	15.6	2.35
24세 이하	76(100.0)	43(56.6)	2	4.7	2.63
25~29세	567(100.0)	271(47.8)	13	4.8	2.29
30~34세	1,082(100.0)	288(26.6)	34	11.8	3.14
35~39세	1,636(100.0)	171(10.5)	40	23.4	2.45
40~44세	1,507(100.0)	99(6.6)	37	37.4	2.46
45~49세	1,437(100.0)	77(5.6)	22	28.6	1.53

주: 피임비실천 및 피임불필요 부인을 분석대상으로 함.

불임진찰을 받은 부부에게 불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8-14>에 제시된다. 부인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원인불명이 35.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궁내막장애 22.3%, 배란장애 19.6%, 나팔관장애 15.5% 등의 순이었다. 원인불명은 2006년(49.3%)보다 현저히 감소한 것이며, 자궁내막장애는 2006년(6.8%)보다 약 3.3배 증가한 것이다. 습관성 유산은 2.9%로 2006년의 1.4%보다 증가하였다.

남편의 경우를 살펴보면, 원인불명이 3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정자무력증 11.4%, 희소정자증 9.1%, 무정자증 2.3% 등의 순이었다. 원인불명은 2006년(81.0%)보다 현저히 감소한 것이며, 정자무력증은 2006년(6.8%)보다 약 1.7배 증가한 것이다. 또한 희소정자증도 2006년(6.1%)보다 약 1.5배 증가하였다.

지역별 불임원인을 비교해 보면,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원인불명은 읍·면부 지역이 남녀 모두에게서 낮았고, 동부지역 거주자에게서 높았다. 여성의 불임원인은 읍·면부 지역 거주자는 배란장애와 나팔관장애가 동부지역 거주자보다 많았고, 자궁내막장애는 동부지역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남성의 불임원인은 희소정자증과 무정자증은 읍·면부 지역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정자무력증은 동부지역 거주자가 많았다.

〈표 8-14〉 부부의 불임진찰 결과 불임의 원인

(단위: %, 명)

구분	2006			2009		
	전국	동부	읍·면부	전국	동부	읍·면부
부인						
원인불명	49.3	48.1	57.1	35.9	37.5	26.7
나팔관장애	15.8	15.2	20.0	15.5	14.8	20.0
배란장애	21.2	21.8	17.1	19.6	18.2	28.6
자궁경관장애	1.1	1.2	-	2.0	1.1	7.1
자궁내막장애	6.8	7.0	5.7	22.3	23.9	13.3
조기폐경	0.4	0.4	-	-	-	-
습관성유산	1.4	1.6	-	2.9	3.4	-
기타	4.0	4.5	-	1.9	2.3	-
모르겠음				3.9	4.5	-
계(수)	(278)	(243)	(35)	(103)	(88)	(15)
남편						
원인불명	81.0	83.8	61.1	34.1	36.8	16.7
무정자증	5.4	4.7	11.1	2.3	1.3	8.3
희소정자증	6.1	5.4	11.1	9.1	7.9	16.7
정자무력증	6.8	6.2	11.1	11.4	13.2	-
염색체이상	-	-	-	1.1	1.3	-
기타	0.7	-	5.6	-	-	-
모르겠음				45.5	42.1	66.7
계(수)	(147)	(129)	(18)	(88)	(76)	(12)

주: 불임진단 및 불임치료를 받은 부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복응답 비율임.
자료: 본 조사결과

불임진단을 받은 15~49세 유배우부인 중 불임치료를 받은 비율은 77.2%로 나타났다. 치료받은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자가가 78.3%로 읍·면부 지역 거주자 70.0%보다 다소 많았다. 불임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않은 부부의 미치료 이유를 분석한 결과,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가 3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22.9%, '한방 또는 민간요법을 이용하려고' 8.6%, '직장 때문에' 5.7%, '시간이 없어서' 2.9% 등의 순이었다(표 8-15 참조).

〈표 8-15〉 15～49세 유배우부인 부부의 불임치료 여부 및 미치료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국	동부	읍·면부
치료 받았다	77.2	78.3	70.0
치료 받지 않았다	22.8	21.7	30.0
계(수)	100.0(149)	100.0(129)	100.0(20)
[미치료 이유][1)]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22.9)	(24.1)	(16.7)
시간이 없어서	(2.9)	(3.4)	(-)
직장 때문에	(5.7)	(6.9)	(-)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37.1)	(34.5)	(50.0)
한방 또는 민간요법을 이용하려고	(8.6)	(10.3)	(-)
기타	(22.9)	(20.7)	(33.3)

주: 1) 불임진단을 받은 부인 중 불임치료를 받은 경험이 전혀 없는 부인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불임진단 및 불임치료를 받은 15~49세 유배우부인 중 과거 치료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치료받지 않는 부인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불임치료기간은 평균 1.78년이었고(동부 1.71년, 읍·면부 2.29년), 치료결과는 55.3%가 결과가 좋지 않아 포기하였으며, 42.7%는 결과가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8-16 참조).

불임치료에 소요된 비용은 평균 317만원이었으며, 전액 본인부담이 83.5%, '본인부담+정부지원'이 15.5%로 나타났다. 이는 불임치료에 대한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고, 동시에 정부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따라서 불임진단과 불임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불임부부의 정서심리적 부담이 큰 현실에서 경제적 부담까지 보탬으로서 불임부부의 고민은 더욱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자녀를 원함에도 임신하지 못하는 부부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저출산대책임이 분명하다.

〈표 8-16〉 15~49세 유배우부인의 거주지역별 불임치료 기간, 결과 및 비용

(단위: 년, %, 만원, 명)

구분	전국	동부	읍·면부
불임치료기간(년)	1.78	1.71	2.29
(분석대상수)	(102)	(90)	(12)
t값	-.962***		
불임치료 결과			
결과가 좋지 않아 포기	55.3	53.8	14.0
결과가 좋았음	42.7	44.0	9.1
기타	1.9	2.2	-
계(수)	100.0(103)	100.0(91)	100.0(12)
불임치료비용(만원)	317.01	309.07	367.66
(분석대상수)	(78)	(67)	(11)
t값	-.555*		
비용부담방법			
전액자비	83.5	83.5	83.3
자비+정부지원	15.5	15.4	16.7
기타	1.0	1.1	-
계(수)	100.0(103)	100.0(91)	100.0(12)

주: 1) 불임진단 및 불임치료를 받은 부인 중 과거 치료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치료받지 않는 부인을 분석대상으로 함; 2) * p<.05, *** p<.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X^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제3절 초경·폐경 및 불임 실태의 시사점

초경 및 폐경에 대한 최초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점은 매우 의미가 있다. 초경연령이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모자보건정책의 대상이 저연령화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교육의 강화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조기에 폐경이 되는 여성이 다소 나타나고 있음이 파악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 임신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불임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을 받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졌으며, 치료를 포기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은 개인에게 지나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물론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불임부부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비용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출산 사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부정책이 조성되었다기 보다는 그 동안 불임부부의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향후에는 더욱 발전되어 불임부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복지적 관점과 불임을 질병으로 간주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처럼 보건의료적 측면에서도 접근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는 불임치료에 건강보험의 적용이 일정부분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09

모자보건실태

제9장 모자보건실태

제1절 조사대상 출생아 출생분포

모자보건실태 조사대상은 2007년 1월 이후 2009년 조사시점인 2009년 7월, 8월까지 출생한 자녀를 가진 부인과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월령에 속한 아이가 두 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먼저 태어난 자녀에 대하여 산전·산후 관리, 분만실태, 수유실태, 영유아 예방접종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모성과 출생아의 주요 모자보건실태를 제시하였다.

2007년 1월 이후 출생한 최종아는 전체 975명이며, 이 중 2007년 42.4%, 2008년 34.6%, 2009년 23.0%를 차지하였다. 대상아에 대한 거주지역, 출생시 모의 연령, 최종아의 출생순위, 모의 교육수준 분포는 <표 9—1>과 같다.

〈표 9-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출생분포

(단위: %, 명)

구분	출생아의 출생연도			계(수)
	2007	2008	2009	
전체	42.4	34.6	23.0	100.0(975)
지역				
동부	41.9	35.2	23.0	100.0(836)
읍·면부	45.3	31.7	23.0	100.0(139)
모의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4.5	31.8	13.6	100.0(22)
고등학교	44.1	32.3	23.6	100.0(365)
대학이상	41.0	36.1	23.0	100.0(588)
출생시 모의 연령				
20세 이하	75.0	-	25.0	100.0(4)
21~24세	45.6	27.9	26.5	100.0(68)
25~29세	41.6	34.0	24.5	100.0(368)
30~34세	43.0	37.0	20.0	100.0(400)
35세 이상	40.7	33.3	25.9	100.0(135)
출생아의 출생순위				
첫째아	40.2	35.7	24.1	100.0(518)
둘째아	44.4	35.6	19.9	100.0(351)
셋째아 이상	46.3	25.9	27.8	100.0(108)

자료: 본 조사결과

〈표 9-2〉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의 성별 연령별 분포

(단위: %, 명)

구분	남아	여아	전체
0~2개월	6.7	5.4	6.1
3~5개월	14.6	10.3	12.5
6~8개월	6.1	9.2	7.6
9~11개월	11.6	7.3	9.5
12~14개월	7.7	10.5	9.0
15~17개월	9.3	10.9	10.1
18~20개월	9.6	9.9	9.7
21~23개월	12.4	11.1	11.8
24~26개월	9.4	9.9	9.6
27~29개월	8.5	10.7	9.5
30개월 이상	4.1	4.9	4.5
계(수)	100.0(508)	100.0(467)	100.0(975)

자료: 본 조사결과

제2절 산전 및 산후관리 실태

1. 산전관리실태

산전관리의 목표는 임신부가 임신기간 동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여 건강한 아기를 분만하는데 있다. 임신중에는 해부학적·생리학적 변화가 있으므로 태아와 모체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출산과정의 위험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태아의 장애발생을 예방하며,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산전관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임신기간 중 위험요인을 발견하여 관리·치료하는 것은 중요한 산전관리의 하나이다. 다른 의학적인 발전들도 모성사망과 주산기사망의 감소에 큰 역할을 했지만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산전관리가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저출산시대에 고령출산이 증가하고, 인공수정의 증가에 따른 다태아 임신의 증가로 산전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출생아수의 감소에 따라 태아기부터 건강한 아기를 출생하고자 하는 관심이 높아져 산전진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산전관리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2008년 12월부터 산전 진찰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액도 확대하고 있다.[40)]

본 조사에서는 2007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의 기간동안 자녀를 출산한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임신기간 중 산전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은 경험 유무로 산전수진율을 구하였으며, 전 임신기간 중 총 몇 회의 산전수진을 받았는지 등을 파악하였다. 동 기간 중 출생아가 2명

40) 2008년 12월부터 체크카드 형태의 e-바우처(전자카드식 바우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전용카드 고운맘 카드)를 모든 임산부에게 20만원씩 제공하고 있음. 2010년 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고운맘 카드)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여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으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 입법 예고되어 있음. 임산부는 산부인과에서 임신이 확인된 경우, 출산할 때까지 초음파 검사, 양수검사 등의 비용을 1회 방문시 최대 4만원씩 총 5회의 e-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음. 산모가 건보공단에 발급신청하면 e-바우처를 발급해주고 가맹 산부인과에서 필요한 산전관리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보건복지가족부, 2008. 8. 27일 보도자료).

이상인 경우는 먼저 출생한 아이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산전수진율의 전국 평균은 100.0%로 조사대상 부인의 특성 즉,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취업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부인이 임신 중 한번이라도 산전수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산전수진율은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가 처음 실시된 1985년 82.4%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도 조사결과에서는 99.9%로 거의 모든 산모가 산전수진을 받았으며, 2009년에는 모든 부인이 임신 중 산전관리를 받았다.

〈표 9-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산전수진율

(단위: %)

구분	2000[1)]	2003[2)]	2006[3)]	2009[4)]
전국	100.0	99.8	99.9	100.0
동부	100.0	99.9	100.0	100.0
읍·면부	100.0	99.6	99.3	100.0

자료: 1)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2)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3) 김승권 외,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4) 본 조사결과

산전관리는 임신 후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 임신 후 바로 산전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첫 산전관리시기를 주요 지표로 평가하고 있다. 2007~2009년 동안 출생한 자녀를 가진 부인이 산전관리를 위해 초진을 받은 평균시기는 임신 후 5.53주였으며, 특히 '임신 5~8주' 에 초진을 받은 부인이 전체 조사대상의 52.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임신 4주 이전'이 41.1%를 차지하여, 전체 부인의 93.6%가 임신 후 8주 이내에 초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신 12~16주'에 초진을 받은 부인이 1.9%, '임신 17주 이후'에 초진을 받은 부인이 전체의 1.2%로 2006년 대비 약간 상승하였다. 이는 산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은 국가로부터 유입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증가도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부인의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평균 초진시기는 5.50주,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5.71주로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약간 빠른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4주 이전에 초진을 한 부인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41.9%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36.7%에 비하여 많았다. 부인의 교육수준별로는 대학 이상 학력의 부인이 5.48주, 고등학교 학력부인 5.52주, 중학교 이하 학력부인 6.83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초진시기가 빠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출산시 부인연령에 따른 평균 초진시기는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부인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24세 이하 부인은 평균 6.78주로 초진시기가 지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임신부의 연령의 어릴수록 고위험임신에 속하는데도 이들의 초진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임신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생순위별로는 첫째아와 둘째아는 유사하나 셋째아의 경우 모성의 출산연령이 높아짐에도 평균 초진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9-4〉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임신기간 중 초진시기

(단위: %, 명, 주)

구분	출생아 임신기간 중 초진시기						평균 초진시기	F값 (T값)
	4주 이전	5~8주	9~12주	13~16주	17주 이후	계(수)		
2006[1)]	44.1	49.8	4.7	0.6	0.7	100.0(952)	5.32	
2009[2)]	41.1	52.5	3.3	1.9	1.2	100.0(975)	5.53	
지역								
동부	41.9	52.0	3.2	1.7	1.2	100.0(836)	5.50	(-.698)
읍·면부	36.7	55.4	3.6	2.9	1.4	100.0(139)	5.7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8.2	54.5	22.7	-	4.5	100.0(22)	6.83	1.736
고등학교	41.4	51.5	4.1	2.5	0.5	100.0(367)	5.52	
대학 이상	41.6	53.0	2.2	1.7	1.5	100.0(589)	5.48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26.0	58.9	8.2	2.7	4.1	100.0(73)	6.78	3.712*
25~29세	42.0	52.0	2.5	3.0	0.5	100.0(367)	5.45	
30~34세	41.4	52.4	3.7	1.2	1.2	100.0(403)	5.40	
35세 이상	45.2	50.4	2.2	0.7	1.5	100.0(135)	5.42	
출생아 출생순위								
첫째아	39.6	54.1	3.1	2.1	1.2	100.0(518)	5.53	3.041*
둘째아	42.2	53.3	2.8	0.9	0.9	100.0(351)	5.31	
셋째아 이상	44.9	42.1	5.6	4.7	2.8	100.0(107)	6.22	

주: * $p<.05$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1) 김승권 외,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2) 본 조사결과

〈표 9-5〉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임신기간 중 산전수진횟수

(단위: %, 명, 회)

구분	수진횟수						X^2	평균 수진횟수	F값 (T값)
	1~5회	6~10회	11~15회	16~20회	21회 이상	계(수)			
2006[1)]	1.4	22.8	58.4	14.7	2.7	100.0(948)		13.24	
2009[2)]	2.6	22.3	57.0	15.5	2.6	100.0(973)		13.49	
지역									
동부	2.2	23.1	56.2	15.3	3.1	100.0(834)		13.58	(1.218)
읍·면부	5.7	17.1	61.4	15.7	-	100.0(140)		12.9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9.5	23.8	61.9	4.8	-	100.0(21)		11.26	1.819
고등학교	3.0	24.5	55.8	14.8	1.9	100.0(364)		13.43	
대학 이상	2.0	20.8	57.7	16.2	3.2	100.0(586)		13.61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4.2	20.8	51.4	18.1	5.6	100.0(72)		13.28	
25~29세	2.2	21.7	54.3	19.8	1.9	100.0(368)		13.62	1.330
30~34세	2.2	23.2	58.4	13.5	2.7	100.0(401)		13.16	
35세 이상	3.8	22.0	63.6	7.6	3.0	100.0(132)		14.25	
출생아 출생순위									
첫째아	1.9	18.2	57.1	19.5	3.3	100.0(517)	44.655***	14.01	8.766***
둘째아	1.7	25.2	58.7	12.6	1.7	100.0(349)		13.35	
셋째아 이상	8.4	32.7	51.4	4.7	2.8	100.0(107)		11.49	

주: *** p<.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X^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1) 김승권 외,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2) 본 조사결과

임신기간 동안 보건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산전수진을 받은 횟수는 <표 9-5>와 같다. 전체 평균 산전수진 횟수는 13.49회였으며, 임신기간 중 총 '11~15회' 산전수진을 받은 경우는 57.0%로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모자보건사업 지침에 따르면 임신기간 중 7회 이상의 산전검진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동 조사결과에 의하면 정부의 권장횟수보다 높은 평균 산전수진횟수를 보이고 있다.

'5회 미만'의 산전수진을 받은 경우는 2.6%로 2006년의 1.4%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특히 읍·면부지역 거주 부인, 교육수준이 중학교 이하인 부인과 출생순위가 셋째아 이상인 경우, 5회 미만의 산전수진을 받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적정 수준의 산전검진을 받지 않은 부인이 증가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임신기간 중 수진횟수를 부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 교육수준이 높은 부인일수록 산전수진 횟수가 많았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첫 번째 출생아인 경우 임신중 산전수진 횟수가 유의하게 높아 초산부가 경산부에 비하여 산전수진을 많이 받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산후관리실태

산후관리는 임신과 분만시의 육체적·정서적 변화로부터 회복하고 신생아의 수유 및 모성의 역할과 전 가족의 조화를 위하여 산모를 건강한 비임신 상태로 회복하고 질병을 예방하도록 돕는 방법과 체계이다(이태균, 2000). 오늘날 경제수준의 향상, 출산빈도의 감소 등으로 산후관리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자궁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 하혈과 감염 등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산후검진을 받은 비율은 2000년 85.0%, 2003년 90.9%, 그리고 2006년도에는 91.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09년에도 91.9%에 이르고 있다.

산후관리를 받은 부인의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 부인이 92.2%로 읍·면부지역 거주 부인 89.9%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산후수진율이 높았다.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소지한 부인은 81.8%, 고등학교 학력을 소지한 부인은 89.6%,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부인은 93.9%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산후수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출산시 부인 연령이 높고 셋째아 출산인 경우 산후수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6〉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출생아 출산후 산후수진율

(단위: %)

구분	2000[1]	2003[2]	2006[3]	2009[4]			
				전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전체	85.0	90.9	91.9	91.9	91.9	92.3	91.6
지역							
동부	85.6	91.7	91.6	92.2	91.4	94.1	90.9
읍·면부	78.4	87.4	93.2	89.9	94.5	80.9	94.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79.5	85.4	87.5	81.8	86.7	100.0	33.3
고등학교	82.3	89.3	90.0	89.6	86.2	91.6	93.8
대학 이상	89.6	93.4	93.5	93.9	94.8	92.2	92.7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77.0	93.7	87.5	93.1	94.9	80.0	100.0
25~29세	86.8	89.8	90.6	92.9	92.4	93.5	100.0
30~34세	85.9	92.1	93.4	91.3	90.5	91.9	91.5
35세 이상	-	88.9	92.2	90.4	88.0	93.3	85.7

자료: <표 9-3>과 동일

제3절 분만실태

1. 분만장소

2008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출생아의 98.2%는 병원(의원, 조산소 포함)에서 태어났고, 자택(집)에서 태어난 경우는 1.3%에 그쳐 안전분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1998년 이후에는 병원·의원 등 시설분만율이 98.0%를 넘고 있다(통계청, 2009). 본 조사에서도 시설분만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99.9%, 2003년 99.3%, 2006년과 2009년 모두 99.9%에 달해 안전분만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시설분만 장소로는 '병원(58.2%)'이 가장 많았고, '의원(23.1%)', '종합병원(18.4%)' 등의 순이었으며, '조산소'에서 분만한 경우는 0.2%로 거의 없었다. '종합병원'에서의 분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97년(39.0%)이후부터 감소추세로 바뀌어 2000년 31.5%, 2003년 22.4%, 2006년 14.2%로 낮아졌다가 2009년에 18.4%로 다시 증가하였다. '병원' 분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43.1%에서 2006년 51.3%, 2009년 58.2%로 나타났다. 또한 '의원' 분만이 감소하고 '병원'에서의 분만이 증가하는 이유는 분만을 하지 않는 의원이 줄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9-7〉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시설분만율 및 분만장소

(단위: %, 명)

구분	2000	2003	2006	2009
비시설분만	0.1	0.7	-	0.1
시설분만				
종합(전문)병원	31.5	22.4	14.2	18.4
병원	43.1	48.6	51.3	58.2
의원	24.6	28.3	34.4	23.1
조산소	0.3	-	0.1	0.2
보건소(보건의료원)	0.4	-	-	-
계 (수)	100.0 (1,338)	100.0 (1,106)	100.0 (953)	100.0 (975)

자료: <표 9-3>과 동일

<표 9-8>과 같이 부인의 특성별 분만시설의 유형을 살펴보면,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19.5%)이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11.4%)에 비하여 '종합병원'에서 분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반대로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31.4%)은 '의원'에서 분만하는 경우가 동부지역 거주 부인(21.8%)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의료기관 유형별로 도시와 농촌 지역별 분포가 다르며 거주지역에 따라 의료기관 유형별로 접근성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종합병원' 분만이 많았고, 학력이 낮을수록 '의원' 분만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볼 수 있다. 연령에 따라서는 35세 이상 연령층 부인과 30~34세 부인의 경우 종합병원에서 분만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았는데, 이는 고령임신으로 야기될 수 있는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분만을 위하여 종합병원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종아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출생순위가 빠를수록 '의원' 분만이 많았고, 출생순위가 높아지면서 '종합병원'이나 '병원' 분만이 다소 많았는데 이는 출생순위가 높아지면서 산모의 연령도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9-8〉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출생아 분만장소

(단위: %, 명)

구분	시설분만					비시설 분만	계(수)
	소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조산소·보건소		
2006[1)]	99.9	14.3	51.3	34.3	-	0.1[1)]	100.0(953)
2009[2)]	99.9	18.4	58.2	23.1	0.2	0.1	100.0(975)
지역							
동부	99.9	19.5	58.4	21.8	0.2	0.1	100.0(836)
읍·면부	100.0	11.4	57.1	31.4	-	-	100.0(14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00.0	8.7	60.9	30.4	-	-	100.0(23)
고등학교	100.0	15.1	60.8	23.8	0.3	-	100.0(365)
대학 이상	99.8	20.7	56.5	22.4	0.2	0.2	100.0(588)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100.0	4.2	63.9	31.9	-	-	100.0(72)
25~29세	100.0	13.8	59.3	26.3	0.5	-	100.0(369)
30~34세	100.0	22.7	58.6	18.7	-	-	100.0(401)
35세 이상	99.3	25.4	50.7	23.1	-	0.7	100.0(134)
출생아 출생순위							
첫째아	99.8	17.2	57.9	24.3	0.4	0.2	100.0(518)
둘째아	100.0	20.2	57.8	21.9	-	-	100.0(351)
셋째아 이상	100.0	18.7	60.7	20.6	-	-	100.0(107)

주: 1) 조산소와 보건소 포함;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9-4>와 동일

2. 분만형태

최근 5년간의 국내 '제왕절개 분만율'은 37.2%로 WHO 최대권고치인 15.0%보다 2배 이상 높고,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하는 미국의 29.1%, 영국의 22.7%보다 높으며, 가장 낮은 스웨덴(15.4%)에 비해서는 약 2배가 넘는 수치이다. 『2008 건강보험통계연보』의 2008년 '제왕절개 분만율'은 36.3%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9). 제왕절개 분만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도 많지만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은 이유는 '의료수가' 문제, 의료인의 의료소송 회피를 위한 '방어적 의료(자연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의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함)', '산모 자신의 제왕절개 선택'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안형식, 2000).

제왕절개시 산모의 감염과 이로 인한 사망, 전신적 기능 저하, 골반 통증, 장폐색, 불임, 태반유착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신생아에게도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및 모유수유 지연, 천식, 다음 임신기 태아 기형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 최근 제왕절개 분만이 당뇨병이나 아토피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보고 등 제왕절개가 산모와 태아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제왕절개 수술을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해 병원의 제왕절개 분만율을 공개하고 제왕절개 분만율에 대한 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연분만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분만 산모의 연령이 고령화되고,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표 9-9〉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제왕절개분만 비율

(단위: %)

구분	2000	2003	2006	2009
전국	37.7	39.2	35.0	36.9
동부	36.9	39.1	35.1	37.2
읍·면부	46.8	39.8	34.5	35.3

자료: <표 9-3>과 동일

전술한 바와 같이 「2008 건강보험통계」에서 발표한 '제왕절개 분만율'은 36.3%로 나타났으며, 본 조사에서도 출생아의 '제왕절개 분만율'은 36.9%로 건강보험통계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 37.7%, 2003년 39.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6년 35.0%로 낮아졌다. 2009년에는 2006년 대비 1.9%pt 상승하였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출생아 출산시 분만형태를 보면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동부지역 거주 부인은 '자연분만'이 65.0%, '제왕절개' 35.0%인 반면, 읍·면부지역 거주 부인은 '자연분만'이 65.5%, '제왕절개'가 34.5%로 읍·면부지역 거주 부인의 자연분만율이 약간 높았다.

부인의 교육수준별로는 '자연분만율'은 대학 이상 학력의 부인이 가장 높아 66.1%였고, '제왕절개 분만율'은 고등학교 학력 부인이 가장 높아 41.6%

였다. 출산시 부인연령에 따라서는 '자연분만율'은 젊은 연령층일수록 높았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제왕절개율'이 증가하였다. 최종아의 출생순위별로도 '자연분만'은 첫째아인 경우에 가장 높아 64.6%였고, 셋째아 이상에서 '제왕절개율'은 41.7%로 높았다. 이는 고연령일수록, 아이의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고령 출산이 증가하여 분만시 위험을 고려하여 제왕절개 분만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고령 임신의 증가추세에서 제왕절개 분만의 지속적인 감소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9-10〉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출생아 출산시 분만형태

(단위: %, 명)

구분	자연분만[1)]	제왕절개	계(수)	χ^2
2006[1)]	65.0	35.0	100.0(953)	
2009[2)]	63.1	36.9	100.0(975)	
지역				
동부	62.8	37.2	100.0(836)	.194
읍·면부	64.7	35.3	100.0(13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0.9	39.1	100.0(23)	5.842#
고등학교	58.4	41.6	100.0(365)	
대학 이상	66.1	33.9	100.0(587)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69.4	30.6	100.0(72)	
25~29세	68.5	31.5	100.0(368)	17.276**
30~34세	61.5	38.5	100.0(400)	
35세 이상	49.3	50.7	100.0(134)	
출생아 출생순위				
첫째아	64.6	35.4	100.0(517)	1.655
둘째아	62.3	37.7	100.0(350)	
셋째아 이상	58.3	41.7	100.0(108)	

주: 1) 유도분만 포함; 2) # p<.10, ** p<.01
자료: <표 9-4>와 동일

출생아 출산시 제왕절개 분만을 '본인이 선택'한 경우는 20.6%, '가족이 권유'한 경우는 3.3%, '의사가 권유'한 경우는 75.8%로 아직까지는 의사의 권유에 의한 제왕절개가 많았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에 의해 제왕절개를 선택한 비율은 2006년의 18.4%보다 2.2%pt 높아졌고, 의사의 권유에 의해서는 2006년 78.6%보다 2.8%pt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읍·면부지역의 제왕절개 분만율은 27.1%로 동부지역 19.6%보다 높았다.

〈표 9-1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출산시 제왕절개분만 권유자

(단위: %, 명)

권유자	2000[1)]	2003[2)]	2006[3)]	2009[4)]		
				전국	동부	읍·면부
본인의사	20.7	20.6	18.4	20.6	19.6	27.1
가족의 권유	4.1	2.4	3.0	3.3	3.5	2.1
의사의 권유	75.0	77.0	78.6	75.8	76.6	70.8
기타	0.2	-	-	0.3	0.3	-
계(수)	100.0(508)	100.0(431)	100.0(332)	100.0(360)	100.0(312)	100.0(48)

자료: <표 9-3>과 동일

제왕절개 분만의 주요 이유는 '첫 출산이 제왕절개'이기 때문이 3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태아이상' 23.5%, '산모이상' 16.9%, '산모의 건강상·고령출산' 17.4%, '양수조기파열' 6.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왕절개 분만에 있어 '산모의 건강 및 고령출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령출산의 영향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9-12〉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출산시 제왕절개분만 이유

(단위: %, 명)

제왕절개 이유	2000[1)]	2003[2)]	2006[3)]	2009[4)]		
				전국	동부	읍·면부
산모이상[1)]	23.1	23.8	16.0	16.9	15.3	26.5
태아이상[2)]	20.2	19.0	26.0	23.5	23.0	26.5
양수조기파열	5.5	5.9	6.0	6.4	7.3	-
자연분만에 대한 두려움	7.3	3.6	5.7	2.2	1.9	4.1
첫 출산이 제왕절개	25.1	30.2	30.5	32.9	33.9	26.5
산모의 건강상·고령 출산	10.8	8.9	11.8	17.4	17.6	16.3
기타	8.0	8.6	3.9	0.8	1.0	-
계 (수)	100.0 (508)	100.0 (431)	100.0 (332)	100.0 (362)	100.0 (313)	100.0 (49)

주: 1) '산모골반에 태아 머리 크기가 맞지 않아서'가 포함; 2) '태아의 건강 때문에'와 '태아의 위치가 이상해서'가 포함
자료: <표 9-3>과 동일

제왕절개분만 권유자별 권유 이유를 살펴보면, 본인의 의사에 의해 제왕절개를 선택한 경우 '첫 출산이 제왕절개'였기 때문이 52.6%로 가장 많았다. 가족이 권유한 경우는 '산모골반에 태아 머리 크기가 맞지 않아서'가 38.5%로 가장 많았다. 의사가 권유한 경우에는 '첫 출산이 제왕절개'이기 때문이 28.2%로 가장 많았다. 제왕절개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임상지침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임산부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필요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표 9-1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제왕절개분만 권유자별 권유 이유

(단위: %, 명)

권유 이유	본인	가족	의사	기타	전체
자연분만에 대한 두려움	10.5	-	-	-	2.2
산모의 건강	10.5	23.1	19.0	-	17.4
태아의 건강	7.9	23.1	16.5	-	14.9
첫 출산이 제왕절개	52.6	15.4	28.2	-	32.8
양수조기파수	1.3	-	8.1	-	6.3
산모골반과 태아 머리 크기가 맞지 않아	10.5	38.5	17.2	100.0	16.8
태아의 위치 이상	3.9	-	10.6		8.8
기타	2.6	-	0.4	-	0.8
계(수)	100.0(76)	100.0(13)	100.0(273)	100.0(1)	100.0(363)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에 대한 분만장소별 분만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합병원에서 분만한 경우 자연분만이 53.6%, 제왕절개 46.4%로 자연분만율이 다소 높았다. 병원에서 분만한 경우에는 자연분만율이 종합병원에서 분만한 것보다 높게 나타나 자연분만 63.0%, 제왕절개 37.0%였다. 의원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자연분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자연분만 70.2%, 제왕절개 29.8%였다.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제왕절개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고위험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을 위하여 의료장비와 의료진이 보다 잘 갖추어진 종합병원과 병원을 선택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9-14〉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출산시 분만장소별 분만형태

(단위: %, 명)

구분	자연분만	제왕절개	계(수)
2006[1)]	64.9	35.1	100.0(952)
2009[2)]	63.1	36.9	100.0(975)
분만장소			
종합병원	53.6	46.4	100.0(179)
병원	63.0	37.0	100.0(568)
의원	70.2	29.8	100.0(225)
조산소	100.0	-	100.0(2)
기타	100.0	-	100.0(1)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9-4>와 동일

3. 출생시 임신 주수 및 조산 여부

출생아의 임신 주수(週數)는 출산 결과에 매우 중요하다. 산모의 신체상 질병이나, 그밖에 스트레스, 피로, 영양결핍 등이 원인이 되어 아기를 정상분만하지 못하고 조기에 출산을 하게 된다. 조산아의 경우에는 체중미달, 완전하지 못한 발육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임신주수 37주 미만은 조산, 37주 이상은 정상 분만으로 구분된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의 출생시 임신 주수는 정상분만인 '37주 이

상'이 93.3%였고, '33~36주 이하'가 5.2%, '32주 이하'가 1.4%였다. 따라서 전체 출생아 중 6.6%는 조산아로 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출생아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정상출생아는 남아 91.5%, 여아 95.3%로 여아의 정상출생아 비율이 약간 높았고, 조산아는 남아 8.5%, 여아 4.7%로 남아의 조산 출생률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조산아 출생은 2006년의 4.8%에서 2009년 6.7%로 1.9%pt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평균 임신기간도 다소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고령 출산과 인공수정에 의한 다태아 출산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9-15〉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출생시 임신 주수

(단위: %, 명, 주)

구분	32주 이하	33~36주	37주 이상	계(수)	X^2	출생시 평균 주수	T값
2006[1)]	0.8	4.0	95.2	100.0(952)		39.19	
2009[2)]	1.4	5.2	93.3	100.0(975)		38.91	
출생아 성							
남아	2.2	6.3	91.5	100.0(507)	6.692*	38.77	-2.742*
여아	0.6	4.1	95.3	100.0(468)		39.06	

주: * p<.05
자료: <표 9-4>와 동일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출생아의 조산율은 6.7%, 만기출산율은 93.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출생아의 조산여부를 살펴보면,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7.0%,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5.0%로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조산율이 높았다. 이는 도시지역 여성이 농촌지역 여성에 비하여 초혼연령과 출산연령이 다소 높은 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부인의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조산율이 높게 나타나 중학교 이하 학력을 소지한 부인이 9.1%로 가장 높았고, 대학 이상 학력소지 부인이 6.3%로 가장 낮았다. 출산시 부인연령에 따라서는 35세 이상 연령층이 11.9%로 가장 높았으며, 30~34세 연령층이 5.0%로 가장 낮았다. 최종아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첫째아가 6.9% 가장 높았다. 즉, 조산율은 도시지역 여성, 저

학력여성, 출산연령이 높은 여성, 첫째아에서 높은 양상을 볼 수 있다.

〈표 9-16〉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출생아의 조산 여부

(단위: %, 명)

구분	조산	만기출산	계(수)	X^2
2006[1)]	4.8	95.2	100.0(952)	
2009[2)]	6.7	93.3	100.0(976)	
지역				
동부	7.0	93.0	100.0(837)	.766
읍·면부	5.0	95.0	100.0(13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9.1	90.9	100.0(22)	.614
고등학교	7.4	92.6	100.0(366)	
대학 이상	6.3	93.7	100.0(588)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5.6	94.4	100.0(72)	
25~29세	7.1	92.9	100.0(368)	7.914*
30~34세	5.0	95.0	100.0(401)	
35세 이상	11.9	88.1	100.0(134)	
출생아 출생순위				
첫째아	6.9	93.1	100.0(518)	.067#
둘째아	6.6	93.4	100.0(351)	
셋째아 이상	6.5	93.5	100.0(108)	

주: # p<.10, * p<.05
자료: <표 9-4>와 동일

4. 신생아 체중

신생아의 체중은 태내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였는지 여부를 반영하는 것으로, 저체중아는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이다. 출생시 체중은 태내성장의 지표로서 산모의 과거 및 현재의 건강상태를 반영하며, 영아기의 사망위험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저체중아의 약 2/3는 조산아이고, 나머지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재태기간에 비해 체중이 적은 아이가 포함된다. 저체중 관련 요인으로는 다태임신, 임신중독증, 조시 양막파수, 전치태반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임신 중 체중 증가가 적고 임신부의 영양상태가 나쁠수록 출생시 저체중아의 체중이 더욱 낮게 나타나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저체중

아의 체중이 더욱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동안 생활수준의 향상, 의학기술의 발전, 산전관리의 향상에 힘입어 저체중아 출생률이 낮아졌으나. 최근 다시 저체중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저체중 출생아와 조산아 생존율이 높아지고, 30세 이상 고령 출산, 임신 중 흡연, 인공수정으로 인한 쌍둥이 출산의 증가에 따라 저체중 조산아 출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신 중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 부족도 태아기에 영양 공급의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체중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체중아는 전체 영아사망율의 약 2/3를 차지하는 신생아 사망의 주요원인 중 하나이며, 최근 연구결과는 저체중 출생아는 장애나 순환기 질환과 당뇨병,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한영자 외, 2007). 인구동태 통계에서 나타난 전국의 저체중아 발생률은 2000년 3.8%에서 2005년 4.3%, 2007년 4.7%, 2008년 4.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09).

<표 9-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9년 조사대상아의 출생시 체중은 저체중아가 전체의 3.8%였고, 정상체중아는 91.7%, 과체중아는 4.5%로 나타났다. 출생시 평균체중은 3,234g였는데, 남아의 평균체중이 3,257g으로 여아의 평균체중 3,208g에 비해 다소 높았다. 출생아의 출생시 체중이 1,000~1,500g 미만의 극저체중아 비율은 0.3%, 1,500~2,000g 미만인 비율은 전체 출생아의 0.9%, 2,000~2,500g 미만의 저체중아 비율은 2.6%로 2,500g 미만의 저체중아는 3.8%에 이르렀다. 출생시 체중이 4,000g 이상인 과체중아 비율은 4.5%로 나타났다.

이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에는 정상체중아의 비율이 92.2%였다가 2003년에는 약간 감소한 90.5%로 나타났고, 2006년 이후에는 다시 증가추세를 보여 2009년 91.7%에 이르고 있다. 2.5kg 미만 저체중아의 경우 2000년에는 약 3.9%였으나 2003년에는 이보다 약간 증가한 4.2%로 나타났고, 2006년 3.2%로 다시 감소하였다가 2009년에는 2000년과 유사한 수준인 3.8%로 나타나 저체중아의 증감을 계속 보이고 있다. 4kg 이상 과체중아의 비율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저체중아보다 약간 높았으며, 2000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에는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7〉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출생시 체중[1)]

(단위: %, 명, g)

구분	2000	2003	2006	2009		
				남아	여아	전체
1,000~1,500g 미만	0.35	0.4	0.1	0.6	-	0.3
1,500~2,000g 미만	0.63	0.5	0.8	1.4	0.4	0.9
2,000~2,500g 미만	2.88	3.3	2.3	2.6	2.6	2.6
2,500~4,000g 미만	92.20	90.5	91.3	90.2	93.4	91.7
4,000g 이상	3.94	5.3	5.5	5.3	3.6	4.5
계(수)	100.0(1,348)	100.0(1,106)	100.0(953)	100.0(508)	100.0(468)	100.0(975)
출생시 평균체중	-	3,257.7	3,253.40	3,257.22	3,208.13	3,233.68
T값	-			1.698*		

주: 1) 저체중은 2,500g 미만, 정상체중은 2,500~4,000g 미만, 과체중은 4,000g 이상임; 2) * p<.05
자료: <표 9-3>과 동일

유배우부인 특성별로 출생아 체중을 살펴보면,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동부지역일수록 과체중아의 비율이 높았고, 저체중아의 비율이 낮았다. 정상체중아의 비율은 읍·면부지역이 약간 높았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의 저학력에서 저체중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출생시 부인연령별로는 35세 이상 부인에게서 저체중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24세 이하의 부인에게서는 과체중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출생순위로는 첫째아에서 저체중아 비율이 높았고, 셋째아 이상에서 과체중아의 비율이 높았다.

〈표 9-18〉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출생아 체중

(단위: %, 명)

구분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계(수)	χ^2
2006[1)]	3.2	91.3	5.5	100.0(953)	
2009[2)]	3.8	91.7	4.5	100.0(975)	
지역					
동부	3.5	91.7	4.8	100.0(836)	1.755
읍·면부	5.0	92.1	2.9	100.0(13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8.2	81.8	-	100.0(22)	
고등학교	3.3	92.3	4.4	100.0(365)	
대학 이상	3.6	91.7	4.8	100.0(588)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2.8	87.5	9.7	100.0(72)	
25~29세	4.1	93.7	2.2	100.0(367)	
30~34세	2.7	92.0	5.2	100.0(401)	
35세 이상	6.0	88.1	6.0	100.0(134)	
출생아 출생순위					
첫째아	4.1	92.1	3.9	100.0(518)	
둘째아	3.7	91.7	4.6	100.0(350)	
셋째아 이상	1.9	90.7	7.5	100.0(107)	

주: 1) 저체중은 2,500g 미만, 정상체중은 2,500~4,000g 미만, 과체중은 4,000g 이상임;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9-4>와 동일

저체중아 37명을 대상으로 저체중의 이유를 살펴본 결과, 저체중 출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조기분만'으로 46.4%였고, 다음은 '산모의 건강상의 이유'가 13.4%로 나타났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로는 지역에 따라서는 동부지역에서는 산모의 약물복용이 저체중아 출산의 원인으로 제시되지 않은 반면, 읍·면부지역에서는 산모의 건강은 저체중아 출산에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특히 출생아의 저체중 '원인을 모르거나 이유가 없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읍·면부지역의 저체중아 출산을 억제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부인의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의 학력에서는 '조기분만'과 '모른다'는 응답이 각각 50.0%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에서는 '조기분만'이 58.3%로 가장 많았다. 대학교 이상의 학력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원인이 출생아의 저체중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조기분만'과 '기타'가 각각 38.1%와 28.6%로

가장 많았다.

출산시 부인연령에 따라서는 24세 이하의 경우 '모른다'는 응답이 100.0%였고, 부인연령이 높을수록 '조기분만'이 출생아의 저체중 원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출생아의 출생순위에 있어서도 '조기분만'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셋째아 이상의 경우 '이유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9-19〉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저체중 이유[1)]

(단위: %)

구분	이유 없음	산모의 약물복용	조기 분만	산모의 건강상 이유	기타	모름
2006[1)]	15.5	2.9	36.7	36.6	14.1	-
2009[2)]	11.7	2.3	46.4	13.4	15.1	13.7
지역						
동부	6.9	-	48.3	17.2	20.0	10.3
읍·면부	25.0	12.5	37.5	-	-	28.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	-	50.0	25.0	-	50.0
고등학교	16.7	8.3	58.3	8.3	-	8.3
대학 이상	10.0	-	38.1	14.3	28.6	9.5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	-	-	-	-	100.0
25~29세	6.7	-	43.8	13.3	25.0	13.3
30~34세	27.3	9.1	36.4	9.1	18.2	9.1
35세 이상	11.1	-	77.8	22.2	-	-
출생아 출생순위						
첫째아	9.5	4.8	38.1	14.3	19.0	19.0
둘째아	14.3	-	57.1	15.4	7.7	7.7
셋째아 이상	50.0	-	50.0	-	-	-
(분석대상수)						

주: 1)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표 9-4>와 동일

5.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정책 수혜

35세 이상의 고령 임신 증가 등으로 미숙아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 '저체중아(2,500g 미만) 및 출생체중 2,500g 이상이면서 임신주수 37주 미만'의 '미숙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1999.2.6)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저체중아나 미숙아로 출생한 신생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즉,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하여 입원치료가 요구되나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능력의 부족으로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미숙아의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중 일부금액을 신청할 경우 지원하고 있다.[41] 의료비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의 13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 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다태아나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저체중아이거나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이다.

<표 9-20>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7년 1월~2009년 9월 중 출산경험이 있는 15~44세 유배우부인 중 미숙아 정부지원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36.9%로 2006년 25.8%에 비해 11.1%pt 향상하였다. 미숙아 정부지원 인지도는 동부지역 거주 부인,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또는 대학 이상인 부인이 높았고, 출산연령이 높고 출생아의 출생순위가 셋째아 이상일수록 높았다.

미숙아 정부 지원을 인지하고 있는 부인만을 대상으로 미숙아 정부지원에 대한 인지방법을 조사한 결과, '대중매체(31.0%)', '인터넷(22.0%)', '보건소(16.7%)', '의료기관(12.8%)' 순으로 나타나 대중매체와 온라인의 홍보에 대한 접근도가 높음을 볼 수 있다. 고학력 부인, 연령이 낮은 젊은 부인일수록 '인터넷'을 통해서 정부지원을 알게 된 경우가 높아 대상별 인지 경로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41) 미숙아의 경우 출생 시 체중별로 의료비 편차가 극심함을 감안하여 본인부담 의료비중 100만원 미만은 전액지원, 100만원 이상의 의료비에 대하여는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인당 최고 지원금액은 2,500gm미만~2,000gm 5백만원, 2,000gm미만~1,500gm은 7백만원, 1,500gm미만은 10백만원까지임(보건복지가족부, 2009).

〈표 9-20〉 15~44세 유배우부인의 미숙아에 대한 정부 지원 인지율 및 인지방법

(단위: %, 명)

구분	인지여부		인지방법[1]					
	인지율	(분석대상수)	인터넷	보건소	의료기관	대중매체	기타	계(수)
2006[1]	25.8	(954)	-					
2009[2]	36.9	(975)	22.0	16.7	12.8	31.0	17.4	100.0(360)
지역								
동부	37.6	(836)	21.3	16.8	13.3	31.1	17.5	100.0(315)
읍·면부	33.1	(139)	28.3	15.2	8.7	30.4	17.4	100.0(4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1.8	(22)	14.3	14.3	14.3	-	57.1	100.0(7)
고등학교	37.0	(365)	18.5	14.1	13.3	32.6	21.5	100.0(135)
대학 이상	37.1	(588)	24.3	18.3	12.4	31.2	13.8	100.0(218)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29.2	(72)	28.6	19.0	-	28.6	23.8	100.0(21)
25~29세	37.2	(368)	23.9	18.1	13.0	26.8	18.1	100.0(138)
30~34세	35.9	(401)	18.2	15.4	13.3	37.8	15.4	100.0(57)
35세 이상	42.5	(134)	22.0	16.7	12.8	31.2	17.3	100.0(359)
출생순위								
첫째아	33.8	(517)	28.4	17.0	8.5	24.4	21.6	100.0(176)
둘째아	40.0	(350)	17.0	12.8	19.1	38.3	12.8	100.0(141)
셋째아 이상	41.7	(108)	13.3	26.7	11.1	33.3	15.6	100.0(45)

주: 1) 미숙아에 대한 정부의 의료비지원을 알고 있는 사람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2006년 조사에서는 인지방법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자료: <표 9-4>와 동일

<표 9-21>에 제시된 것처럼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받은 부인의 비율은 5.7%로 나타났으며, 동부지역보다는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의 지원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부인의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의 부인, 출산시 부인연령에 따라서는 35세 이상인 경우에 12.3%로 가장 높았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의 지원액은 100만원 미만이 46.6%, 100~200만원 미만이 40.1%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300~400만원 미만이 13.3%로 나타났다. 반면 200~300만원 미만의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지원액은 주로 200만원 미만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9-21〉 15~44세 유배우부인의 미숙아에 대한 정부 지원경험 여부 및 지원액

(단위: %, 명)

구분	지원경험 여부		지원액[1]				
	지원경험률	(분석대상수)	100만원 미만	100~200 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300~400 만원 미만	계(수)
2006[1]	2.5	(243)	-				
2009[2]	5.7	(360)	46.6	40.1	-	13.3	100.0(21)
지역							
동부	5.4	(314)	35.3	47.1	-	17.6	100.0(17)
읍·면부	8.7	(46)	100.0	-	-	-	100.0(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8.6	(7)	-	100.0	-	-	100.0(2)
고등학교	5.1	(136)	28.6	42.9	-	28.6	100.0(7)
대학 이상	5.5	(217)	61.5	30.8	-	7.7	100.0(13)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	(21)	37.5	62.5	-	-	100.0(8)
25~29세	5.8	(137)	66.7	-	-	28.6	100.0(6)
30~34세	4.1	(145)	42.9	42.9	-	14.3	100.0(7)
35세 이상	12.3	(57)	47.6	38.1	-	14.3	100.0(21)
출생순위							
첫째아	4.0	(175)	-	62.5	-	37.5	100.0(8)
둘째아	7.1	(140)	80.0	20.0	-	-	100.0(10)
셋째아 이상	6.8	(44)	66.7	33.3	-	-	100.0(3)

주: 1) 미숙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사람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2006년 조사에서는 지원액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자료: <표 9-4>와 동일

6.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정책 수혜

선천성 이상은 출생시에 드러난 신체적 기형, 감각이상, 염색체이상, 대사이상, 신경발달학적 이상 등을 지칭하며 태아사망과 영아사망 그리고 장애발생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다(최정수, 2009. 재인용; 황나미, 2000). 최근 늦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저체중의 조산아가 늘면서 그만큼 선천성 이상아가 태어날 확률도 높아졌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의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조사결과, 신체결함이나 기능장애를 갖고 태어난 선천성 이상아가 2005년에는 신생아 1만명당 272.9명, 2006년에는 314.7명으로 나타났다. 2006년 25세 미만 산모에게서 태어난 선

천성 이상아는 1만명당 228.27명인데 반해 35세 이상에서는 339.28명으로 고령 출산의 경우 선천성 이상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출생 당시 몸무게가 2.5㎏ 미만인 저체중아의 경우 정상아보다 선천성 이상 유병률이 네 배가량 높다. 또한 임신 37주 이전에 태어나거나 둘 이상의 쌍둥이인 경우 정상아에 비해 선천성 이상을 보일 확률이 각각 3.7배, 1.8배 높다(최정수 외, 2009). 이와 같이 선천성기형의 발생률은 출생체중 및 모성의 연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출생체중이 적고 모성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선천성 이상아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1999.2.6)으로 조산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선천성 이상아로 출생한 신생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빈도가 높은 선천성 이상아 5대 질환에 식도패쇄증(Esophageal atresia), 장폐색증(Intestines atresia), 항문직장기형(Anorectal atresia), 선천성횡격막탈장(Diaphragmatic hernia), 제대기저부탈장(Omphalocele), 그 외 신생아기에 선천성 이상으로 응급수술이나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에 대해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신생아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의료비 지원대상은 미숙아 지원대상과 같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의 13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 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다태아나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이다.

본 조사결과,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조사대상 부인의 23.1%였으며, 인지 방법은 '의료기관(28.3%)', '대중매체(27.4%)', '인터넷(22.7%)', '보건소(15.4%)' 순으로 미숙아 정부지원과 달리 의료기관을 통해 인지하게 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셋째아 이상인 경우에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정부지원 인지율이 높았다.

〈표 9-22〉 15~44세 유배우부인의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정부지원 인지 및 수혜 여부

(단위: %, 명)

구분	인지여부		인지방법[1]					
	인지율	(분석대상수)	인터넷	보건소	의료기관	대중매체	기타	계(수)
전체	23.1	100.0(975)	22.7	15.4	28.3	27.4	6.2	100.0(225)
지역								
동부	23.1	100.0(836)	22.3	15.0	28.5	28.5	5.7	100.0(193)
읍·면부	23.0	100.0(139)	24.2	18.2	27.3	21.2	9.1	100.0(3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2.7	100.0(22)	25.0	25.0	50.0	-	-	100.0(4)
고등학교	21.3	100.0(366)	19.0	11.4	36.7	22.8	10.0	100.0(79)
대학 이상	24.2	100.0(587)	24.6	16.9	23.2	31.0	4.2	100.0(142)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9.7	100.0(72)	28.6	42.9	-	28.6	-	100.0(7)
25~29세	24.5	100.0(368)	31.1	14.4	32.2	17.8	4.4	100.0(90)
30~34세	23.5	100.0(400)	20.2	16.0	24.5	31.9	7.4	100.0(94)
35세 이상	25.2	100.0(135)	5.7	11.4	34.3	40.0	8.6	100.0(35)
출생순위								
첫째아	22.8	100.0(517)	28.8	16.9	28.0	22.0	4.2	100.0(118)
둘째아	20.6	100.0(350)	21.9	8.2	30.1	32.9	6.8	100.0(73)
셋째아 이상	31.8	100.0(107)	2.9	26.5	26.5	35.3	8.8	100.0(34)

주: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정부의 의료비지원을 알고 있는 사람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조사결과

<표 9-23>에 제시된 것처럼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받은 대상은 7명으로 3.9%에 불과하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의 지원액은 100만원 미만이 46.4%, 100~200만원 미만이 20.8%, 200만원 이상이 32.8%로 나타났다.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모두 동부지역에 거주하였다.

〈표 9-2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정부 지원경험 여부 및 지원액

(단위: %, 명)

구분	지원경험 여부		지원액[1]			
	지원경험률	(분석대상수)	100만원 미만	100~200 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계(수)
전체	3.9	(216)	46.4	20.8	32.8	100.0(7)
지역						
동부	4.3	(184)	42.9	28.6	28.6	100.0(7)
읍·면부	-	(32)	-	-	-	-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0.0	(5)	-	-	100.0	100.0(1)
고등학교	5.3	(76)	50.0	50.0	-	100.0(4)
대학 이상	2.2	(136)	66.7	-	33.3	100.0(3)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16.7	(6)	-	-	100.0	100.0(1)
25~29세	4.7	(86)	25.0	50.0	25.0	100.0(4)
30~34세	2.2	(90)	100.0	-	-	100.0(2)
35세 이상	-	(32)	-	-	-	-
최종아 출생순위						
첫째아	4.4	(114)	50.0	-	50	100.0(4)
둘째아	1.4	(70)	-	-	-	-
셋째아 이상	6.1	(33)	33.3	66.7	-	100.0(3)

주: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사람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조사결과

제4절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태

선천성대사이상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2,000여종에 이르고 있다.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은 발생 확률은 낮지만 검사와 치료의 적기를 놓치면 후유증을 남기고, 수시로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평생 치료와 관리를 해야 하며, 출생 후 빠른 시기에 적절한 치료와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평생 장애가 발생하고 정상회복이 불가능한 질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구자질 향상과 모자보건 향상을 위하여 1991년부터 출생아의 장애 예방을 위해서 발생빈도가 높은 페닐케톤뇨증과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시작하여, 대상 질환과 대

상자를 점차 확대하여 현재는 6종(페닐알라닌혈증(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과형성증)으로 검사가 확대되어 모든 신생아에 대해서 정부 지원으로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경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근거는 모자보건법(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에 규정되어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7년 1월 이후부터 2009년 9월까지 출생한 출생아 중 선천성대상이상검사를 받은 비율은 97.3%로 2000년 88.8%, 2003년 89.7%, 그리고 2006년 95.8%로 지속적으로 수진율이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97.4%로 읍·면부지역의 96.4%보다 약간 높았다. 또한 부인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선천성대사이상검사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중학교 이하 학력수준인 부인의 출생아는 72.7%인데 비하여 대학 이상 학력수준 부인의 출생아는 99.3%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 이하 학력수준인 부인의 경우 검사 여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27.3%였다. 이는 신생아기에 검사여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통해 선천성대상이상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실제 검사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표 9-24〉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수검률

(단위: %, 명)

구분	2000[1]	2003[2]	2006[3]	2009[4]			
				하였음	하지 않았음	잘 모름	계(수)
전체	88.8	89.7	95.8	97.3	1.2	1.5	100.0(975)
지역							
동부	88.4	89.3	96.2	97.4	1.1	1.6	100.0(837)
읍·면부	93.0	91.3	93.7	96.4	2.1	1.4	100.0(14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1.5	79.6	71.4	72.7	-	27.3	100.0(22)
고등학교	86.7	89.5	95.0	95.6	2.7	1.6	100.0(365)
대학 이상	92.5	91.0	97.2	99.3	0.3	0.3	100.0(588)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83.3	87.4	94.6	88.9	1.4	9.7	100.0(72)
25~29세	90.9	89.2	93.8	98.9	0.8	0.3	100.0(368)
30~34세	87.9	92.6	97.0	97.8	0.7	1.5	100.0(401)
35세 이상	-	85.2	97.3	96.3	3.0	0.7	100.0(134)

자료: <표 9-3>과 동일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 출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수검종류를 정부의 지원항목인 6종 검사만을 한 경우는 35.1%였고, 정부지원 6종에 추가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63.3%였다. 교육수준이 높은 부인일수록, 출생아가 첫째아인 경우에 정부 지원항목 외에 추가로 검사를 한 경우가 많았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추가비용은 조사 대상 부인에게 직접 질문하는 방법으로 파악하였는데 검사 비용이 매우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대사이상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에 따라서 다양한 검사항목을 하고 있으며, 검사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9-25〉 15~44세 유배우부인 출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수검 종류

(단위: %, 명)

구분	정부지원 6종 검사만	정부지원 6종+ 추가검사	기타	잘 모름	계(수)
2006[1)]	27.1	62.5	-	10.4	100.0(913)
2009[2)]	35.1	63.3	0.1	1.5	100.0(948)
지역					
동부	35.1	63.4	0.1	1.4	100.0(814)
읍·면부	34.8	63.0	-	2.2	100.0(13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75.0	25.0	-	-	100.0(16)
고등학교	35.9	62.6	-	1.4	100.0(348)
대학 이상	33.4	64.9	0.2	1.5	100.0(584)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36.9	63.1	-	-	100.0(65)
25~29세	32.6	65.7	-	1.7	100.0(362)
30~34세	34.2	63.8	0.3	1.8	100.0(392)
35세 이상	44.2	55.0	-	0.8	100.0(129)
출생아 출생순위					
첫째아	32.7	65.7	-	1.6	100.0(501)
둘째아	36.5	61.5	0.3	1.7	100.0(348)
셋째아 이상	42.6	56.4	-	1.0	100.0(101)

주: 1)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9-4>와 동일

〈표 9-26〉 15~44세 유배우부인 특성별 출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추가비용

(단위: %, 명)

구분	3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5~7만원 미만	7~10만원 미만	10~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계(수)
자비	0.5	1.6	7.6	20.3	51.6	18.5	100.0(576)

주: 추가적인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조사결과

제5절 수유양상

모유수유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육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는 식품으로 영양학적은 물론 면역학적, 감염학적,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많은 장점을 지닌 수유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모유수유아는 인공수유아에 비하여 호흡

기질환, 소화기계 질환, 변비, 알러지의 이환율이 낮으며 성인 후 비만이 낮으며, 비만성격이 원만하여 안정감을 갖는다고 보고한 바 있다. 더불어 모유수유는 수유 여성에게도 이점이 있어 유방암과 난소암, 제2형 당뇨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DC, 2008; WHO, 1994).

매 3년마다 전국규모로 이루어지는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 파악된 모유수유율은 1970년대 90.0% 정도였으나, 전국표본조사에 의한 모유수유율이 1982년 68.9%, 1985년 59.0%, 1988년 48.1% 1994년 11.4%, 1997년 14.1%, 2000년에는 10.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3년에는 16.5%, 2006년에는 24.2%로 증가하였다(김승권 외, 2006).

본 조사에서는 2007년 1월 이후부터 2009년 8월까지 출생한 최종출생아 975명을 대상으로 14개월까지의 수유실태를 파악하여 주로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와 '모유+이유식'을 하는 경우를 모유수유만을 하는 경우에 합친 모유수유율 추이를 국제기준에 따라 영유아의 월령별로 산출하여 보면 <표 9-27>과 같다.

모유수유율은 2000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영유아의 생후 1주, 1~2개월 미만, 3~4개월 미만, 5~6개월 미만, 11~22개월 미만 시점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간 모유수유 교육과 홍보·캠페인으로 인하여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모유수유율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9-1 참조).

〈표 9-27〉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월령별 모유수유율 추이

(단위: %)

구분	모유수유율 (A)				모유수유율(B)[1]			
	2000[1]	2003[2]	2006[3]	2009[4]	2000[1]	2003[2]	2006[3]	2009[4]
생후 1주	43.9	59.4	58.9	73.0	44.2	59.4	59.1	73.0
1~2개월 미만	35.2	45.6	51.9	65.6	35.7	45.6	52.0	65.0
3~4개월 미만	22.1	34.1	43.4	57.0	26.5	34.1	46.0	57.4
5~6개월 미만	9.5	29.5	26.8	36.2	20.7	29.5	42.8	51.0
11~12개월 미만	1.9	15.5	3.3	1.9	9.4	15.5	30.9	34.5

주: 1) 모유수유율(A)은 주로 모유수유만 먹인 경우이며, 모유수유율(B)은 모유수유와 보충식을 같이 먹인 경우를 합한 모유수유율로 산출함; 2) 2003년에는 모유+이유식에 대한 항목은 조사되지 않고 모유수유에 포함되어 조사됨.
자료: <표 9-6>과 동일

〔그림 9-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월령별 모유수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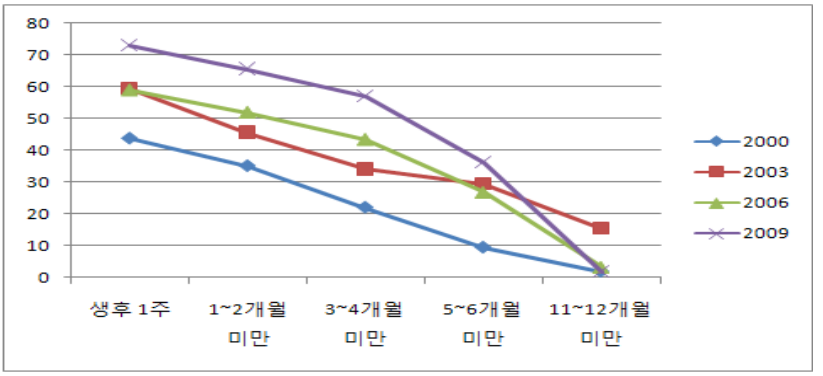

주: <표 9-3>과 동일
자료: 본 조사결과

모유수유 기간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 조사에서는 생후 12개월 이상아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모유수유 중단 시기를 산출하였다. 12개월 미만을 제외한 이유는 현재 모유수유 중인 아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어느 정도 모유수유 기간이 완료된 시점에서 모유수유 중단 시기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현재 12개월 이상의 출생아가 있는 부인중 현재 모우수유중인 부인을 제외한 대상자의 평균 모유수유 중단 시기는 7.48개월이었다. 모유수유 중단 시기는 거주지역, 교육수준, 출산시 모연령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출생순위에 의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셋째아 이상에서 모유수유 기간이 짧은 경향을 보였다.

2006년 대비 모유수유 중단 시기는 더 짧아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12~18개월 미만에 모유수유를 중단한다는 응답은 24.6%로 2006년에 비해 약 3배 정도 증가하였다. 즉, 모유수유 중단 시기도 짧아지고 있지만 역으로 모유수유 중단 시기를 12개월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도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9-28〉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의 모유수유 중단 시기[1)]

(단위: %, 명, 개월)

구분	3개월 미만	3~6 개월 미만	6~9 개월 미만	9~12 개월 미만	12~18 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계(수)	χ^2	평균 모유수유 중단시기[2)]	F값 (T값)
2006[1)]	14.8	17.8	16.9	6.3	8.5	0.9	100.0(575)		6.06	
2009[2)]	21.4	23.1	18.1	7.9	24.6	4.9	100.0(645)		7.48	
지역										
동부	21.4	21.6	18.9	7.7	25.4	4.9	100.0(555)	6.164	7.54	(.674)
읍·면부	20.9	31.9	13.2	8.8	19.8	5.5	100.0(91)		7.1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5.0	18.8	6.3	12.5	37.5	-	100.0(16)		7.99	.112
고등학교	21.3	24.1	17.3	5.6	24.9	6.8	100.0(249)		7.56	
대학 이상	21.2	22.5	19.4	9.2	23.8	3.9	100.0(382)		7.41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20.4	22.4	20.4	12.2	22.4	2.0	100.0(49)		7.25	
25~29세	23.4	22.2	17.3	6.0	25.0	6.0	100.0(248)	17.273	7.44	.096
30~34세	19.4	20.9	22.1	8.4	25.1	4.2	100.0(263)		7.61	
35세 이상	22.4	31.8	7.1	9.4	23.5	5.9	100.0(85)		7.33	
출생아 출생순위										
첫째아	23.6	20.8	21.4	7.7	23.4	3.1	100.0(351)	28.151**	7.12	5.370**
둘째아	16.4	23.7	15.1	10.3	26.3	8.2	100.0(232)		8.38	
셋째아 이상	27.4	33.9	11.3	-	24.2	3.2	100.0(62)		6.22	

주: 1) 모유수유기간은 엄마 젖을 먹이는 것을 완전히 중단한 시기로 산출하였으며, 조사시점에서 모유수유 중에 있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여 조사현재 12개월 이상이 지난 출생아중 모유수유기간 미상아를 제외한 대상에 대해서 산출하였음; 2) 현재 모유수유중이거나 모유수유기간이 미상인 경우는 제외함; 3) * p<.05, ** p<.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9-4>와 동일

조사 시점에서 분유를 전혀 먹이기 시작하지 않은 부인을 제외하고, 622명의 부인의 인공수유(조제분유) 시작 시기를 보면 생후 평균 2.65개월로 3개월 미만 시기에 이미 많은 경우 분유를 먹이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중학교 이하의 부인에서, 출생순위가 둘째아에서 인공수유(조제분유) 도입 시기가 유의하게 늦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이들 그룹에서 모유수유 기간이 그만큼 길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2006년과 비교하면 3개월 미만에 인공수유를 시작한다는 응답이 증가하고 3개월 이상부터 인공수유를 시작한다는 응답은 감소하여 2009년에는 인공수유 시작 시기가 빨라진 것을 볼 수 있다.

〈표 9-29〉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의 인공수유(조제분유) 시작 시기

(단위: %, 명, 개월)

구분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계(수)	χ^2	평균 분유수유 시작시기	F값 (T값)
2006[1)]	61.8	18.2	16.2	3.8	100.0(625)		2.67	
2009[2)]	69.3	11.1	15.7	3.9	100.0(622)		2.65	
지역								
동부	68.8	10.6	16.1	4.5	100.0(529)	5.759	2.73	(1.721#)
읍·면부	73.1	14.0	12.9	-	100.0(93)		2.1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5.6	5.6	16.7	22.2	100.0(18)		4.90	4.467*
고등학교	71.1	12.9	11.6	4.3	100.0(232)		2.37	
대학 이상	69.0	10.2	18.1	2.7	100.0(371)		2.71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65.4	3.8	23.1	7.7	100.0(52)		3.47	
25~29세	72.5	9.9	11.2	6.4	100.0(233)	27.230**	2.68	1.720
30~34세	65.6	11.5	20.5	2.5	100.0(244)		2.66	
35세 이상	72.3	17.0	10.6	-	100.0(94)		2.09	
출생아 출생순위								
첫째아	71.7	7.8	16.8	3.8	100.0(346)	15.125*	2.55	3.136*
둘째아	63.5	15.3	15.8	5.4	100.0(203)		3.08	
셋째아 이상	73.0	16.2	10.8	-	100.0(74)		1.93	

주: 1) 조사시점에서 분유를 아직 먹이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산출함; 2) # p<.10, * p<.05, ** p<.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9-4>와 동일

2009년 조사에서는 추가적으로 보충식 도입 시기를 조사하였다. 아직 보충식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을 때 평균 보충식 시작 시기는 생후 6.46개월이었으며,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충식 시작 시기가 유의하게 빠른 것을 볼 수 있다.

〈표 9-30〉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의 보충식(이유식) 시작 시기

(단위: %, 명, 개월)

구분	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18개월 미만	18~24개월 미만	계(수)	평균 보충식 (이유식) 시작시기	F값 (T값)
전체	28.8	67.8	3.3	0.1	100.0(805)	6.46	
지역							
동부	28.9	68.3	2.7	0.1	100.0(693)	6.43	(-.738*)
읍·면부	28.3	64.6	7.1	-	100.0(113)	6.6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0.0	55.0	25.0	-	100.0(20)	8.45	14.726***
고등학교	27.0	68.3	4.4	0.3	100.0(293)	6.63	
대학 이상	30.3	68.1	1.6	-	100.0(492)	6.27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29.3	60.3	10.3	-	100.0(58)	6.95	
25~29세	31.1	67.9	1.0	-	100.0(296)	6.28	7.423***
30~34세	29.6	67.5	2.6	0.3	100.0(345)	6.32	
35세 이상	19.8	71.7	8.5	-	100.0(106)	7.15	
출생아 출생순위							
첫째아	29.5	66.9	3.6	-	100.0(417)	6.47	1.222
둘째아	25.6	73.1	1.0	0.3	100.0(297)	6.37	
셋째아 이상	36.7	54.4	8.9	-	100.0(90)	6.73	

주: 1) * p<0.05, *** p<0.00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최종아의 월령에 따른 모유수유율[42]을 살펴보면 <표 9-31>과 같다. 2006년도에 비하여 출생후 5개월까지 완전모유수유율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출생아의 생후 1주 이내 완전모유수유율은 73.0%였으며, 생후 1개월에는 65.6%로 낮아졌고, 생후 3개월에 57.0%, 생후 6개월시에는 13.6%로 낮아지면서 영아의 월령 증가와 함께 모유수유율이 급속하게 감소하였다.

6개월 이후에는 완전모유수유율이 2006년에 비하여 낮았다. 이는 2003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와 비교할 때도 2006년도에 5개월까지는 완전모유수유율이 높았는데 2009년 조사에서는 2006년보다 5개월까지 완전모유수유율이 더욱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6개월 이후부터는 2003년,

42) 모유수유율은 완전모유수유를 한 경우만을 말함.

20006년 조사결과에 비하여 완전모유수유율이 저하되면서 혼합영양(모유+분유)과 보충식을 모유와 병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생후 5개월까지의 모유수유율은 증가하였지만 완전모유수유를 하는 기간은 줄어들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생후 1주에 인공수유율은 9.7%에 불과하였지만 생후 1개월 때는 15.4%로 증가하고 이후 생후 3개월 째 27.7%까지 증가하였다.

〈표 9-3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의 생후 14개월간 모유수유 양상

(단위: %, 명)

구분	완전 모유	모유+ 인공유 (분유)	인공유 (분유)	모유+ 보충식 (이유식)	인공유 (분유)+보충식(이유식)	보충식 (이유식)+ 유아식	계(수)
생후 1주	73.0	17.3	9.7	-	-	-	100.0(975)
생후 2주	72.0	17.1	10.8	-	-	-	100.0(973)
생후 3주	70.8	17.8	11.4	-	-	-	100.0(973)
생후 4주	70.4	17.7	11.9	-	-	-	100.0(968)
1~2월 미만	65.6	19.0	15.4	-	-	-	100.0(964)
2~3월 미만	61.2	16.6	22.1	-	-	-	100.0(938)
3~4월 미만	57.0	14.7	27.7	0.4	0.2	-	100.0(917)
4~5월 미만	49.4	11.7	31.5	3.5	3.9	-	100.0(885)
5~6월 미만	36.2	10.4	26.2	14.8	12.3	0.1	100.0(838)
6~7월 미만	13.6	5.5	16.0	34.7	29.8	0.4	100.0(799)
7~8월 미만	6.4	3.9	11.7	37.6	39.6	0.7	100.0(771)
8~9월 미만	4.1	2.9	7.8	37.2	46.0	2.1	100.0(734)
9~10월 미만	3.4	1.5	5.7	36.0	49.5	3.9	100.0(720)
10~11월 미만	2.5	1.0	4.2	35.3	50.7	6.3	100.0(694)
11~12월 미만	1.9	0.4	3.3	32.6	50.6	11.2	100.0(662)
12~13월 미만	0.8	0.5	1.9	24.5	38.4	33.9	100.0(626)
13~14월 미만	0.5	0.4	1.6	17.5	35.2	44.8	100.0(592)
14~15월 미만	0.2	0.2	1.7	13.0	33.8	51.0	100.0(563)

자료: 본 조사결과

출생후 1개월시의 수유양상은 전체 모유수유율이 65.6%로 출생후 1개월시의 모유수유율이 2006년보다 높았다.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 교육수준이 높은 부인, 출산연령이 25~29세, 30~34세의 부인, 자연분만을 한 부인, 비취업상태인 부인, 둘째아인 경우에 모유수유율이 다소 높았으나 부인의 취업여부와 출생아의 출생순위를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9-32〉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출생아의 생후 1개월시 수유양상

(단위: %, 명)

구분	완전 모유	모유+ 인공유(분유)	인공유 (분유)	계(수)	χ^2
2006[1)]	58.0	16.2	25.8	100.0(938)	
2009[2)]	65.6	19.0	15.4	100.0(964)	
지역					
동부	65.9	19.0	15.1	100.0(828)	0.360
읍·면부	63.5	19.7	15.5	100.0(13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0.9	13.0	26.1	100.0(23)	
고등학교	63.3	18.5	18.2	100.0(357)	
대학 이상	67.2	19.7	13.2	100.0(585)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61.1	25.0	13.9	100.0(72)	
25~29세	66.6	18.9	14.5	100.0(365)	3.926
30~34세	66.8	18.1	15.1	100.0(398)	
35세 이상	61.2	19.4	19.4	100.0(129)	
분만형태					
자연분만	66.7	18.6	14.7	100.0(607)	0.905
제왕절개	63.9	19.6	18.5	100.0(357)	
취업여부					
취업	54.5	27.3	18.2	100.0(231)	17.870***
비취업	69.0	16.5	14.5	100.0(733)	
출생아 출생순위					
첫째아	63.6	23.2	13.2	100.0(514)	23.257***
둘째아	70.2	14.9	14.9	100.0(342)	
셋째아 이상	60.7	12.1	27.1	100.0(107)	

주: 1) *** $p<0.001$;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9-4>와 동일

출생아의 출생직후 3개월시의 수유양상을 살펴보면 <표 9-33>과 같다. 완전모유수유율은 57.0%로 2006년보다 1.0%pt 낮았다. 생후 1개월시의 수유양상과 동일하게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 교육수준이 높은 부인, 출산연령이 25~29세, 30~34세의 부인, 자연분만을 한 부인, 비취업상태인 부인, 둘째아인 경우에 모유수유율이 다소 높았다.

〈표 9-33〉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출생아의 생후 3개월시 수유양상

(단위: %, 명)

구분	완전 모유	모유+ 인공유 (분유)	인공유 (분유)	모유+ 보충식 (이유식)	인공유 (분유)+보충식 (이유식)	계(수)
전체	57.0	14.7	27.7	0.4	0.2	100.0(917)
지역						
동부	57.5	14.6	27.4	0.1	0.1	100.0(786)
읍·면부	54.3	15.5	29.5	-	0.8	100.0(12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2.4	4.8	42.9	-	-	100.0(21)
고등학교	55.2	14.0	30.1	0.3	0.3	100.0(335)
대학 이상	58.3	15.5	25.7	0.4	0.2	100.0(561)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48.5	22.1	27.9	1.5	-	100.0(68)
25~29세	56.7	13.7	29.4	0.3	-	100.0(344)
30~34세	60.9	14.1	24.7	0.3	-	100.0(384)
35세 이상	50.0	16.4	32.0	-	1.6	100.0(122)
분만형태						
자연분만	58.1	14.1	27.1	0.5	0.2	100.0(580)
제왕절개	55.2	15.8	28.7	-	0.3	100.0(335)
취업여부						
취업	43.1	18.7	37.8	-	0.4	100.0(225)
비취업	61.6	13.4	24.4	0.4	0.1	100.0(692)
출생아 출생순위						
첫째아	54.6	17.3	27.8	0.2	-	100.0(485)
둘째아	62.7	13.0	23.6	0.3	0.3	100.0(330)
셋째아 이상	50.0	7.8	40.2	1.0	1.0	100.0(102)

주: 1) 2009년 조사결과 분석에서는 생후 12개월시 수유양상보다 생후 3개월시 수유양상 파악이 유의미하다고 판단되어 생후 12개월시 수유양상을 생후 3개월시 수유양상으로 대체함;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출생아의 출생직후 6개월 시점의 수유양상을 살펴보면 <표 9-34>와 같다. 완전모유수유율은 13.6%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생후 6개월 이상인 출생아의 경우에는 모유만으로는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 보충식을 함께 하는 경우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완전모유수유와 '모유+보충식(이유식)'의 경우를 합하면 48.3%가 모유수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특성별 모유수유율을 완전모유수

유와 '모유+보충식(이유식)'을 합한 비율로 비교하면 동부지역 거주 부인, 중학교 이하 및 대학 이상 부인, 출산시 부인연령이 25~29세 및 30~34세 부인, 자연분만을 한 부인, 비취업부인, 둘째아에서 모유수유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9-34〉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출생아의 생후 6개월시 수유양상

(단위: %, 명)

구분	완전 모유	모유+ 인공유 (분유)	인공유 (분유)	모유+ 보충식 (이유식)	인공유 (분유)+보충식(이유식)	보충식 (이유식)+ 유아식	계(수)	χ^2
2006[1)]	14.1	5.5	11.8	25.2	33.3	-	100.0(746)	
2009[2)]	13.6	5.5	16.0	34.7	29.8	0.4	100.0(799)	
지역								
동부	13.9	5.3	15.3	35.6	29.6	0.3	100.0(685)	3.849
읍·면부	11.5	7.1	19.5	30.1	31.0	0.9	100.0(11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5.0	-	30.0	25.0	20.0	-	100.0(20)	
고등학교	13.7	7.5	20.5	30.4	27.6	0.3	100.0(293)	
대학 이상	13.2	4.5	12.6	37.9	31.5	0.4	100.0(486)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16.9	3.4	25.4	27.1	25.4	1.7	100.0(59)	
25~29세	13.7	5.5	17.1	36.0	27.1	0.7	100.0(292)	
30~34세	13.0	3.8	10.1	38.8	34.3	-	100.0(338)	
35세 이상	12.7	11.8	26.4	22.7	26.4	-	100.0(110)	
분만형태								
자연분만	12.2	3.8	16.5	39.4	27.7	0.4	100.0(498)	18.748**
제왕절개	15.9	8.3	15.2	27.2	33.1	0.3	100.0(302)	
취업여부								
취업	13.2	5.9	23.5	14.7	41.7	1.0	100.0(204)	57.567***
비취업	13.8	5.4	13.3	41.7	25.7	0.2	100.0(595)	
출생아 출생순위								
첫째아	14.0	5.8	16.2	33.8	29.7	0.5	100.0(414)	
둘째아	13.5	5.4	13.8	39.7	27.3	0.3	100.0(297)	
셋째아 이상	12.4	4.5	22.5	22.5	38.2	-	100.0(89)	

주: 1) 2006년 조사에서는 '모유+인공유+보충식'이 5.1%로 나왔으며, 2009년 조사에서 이를 대체하여 '보충식(이유식)+유아식'으로 조사함; 2) ** $p<0.01$, *** $p<0.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9-4>와 동일

15~44세 유배우부인이 2007년 1월 이후 출생아에 대하여 모유를 전혀 먹이지 않은 이유로는 53.0%가 '모유량 부족'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엄마의 취업' 16.9%, '아기가 모유를 싫어하거나 젖을 빨지 않아서' 10.8% 등으로 특히 모유량 부족과 엄마의 취업으로 인하여 모유수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다.

〈표 9-35〉 15~44세 유배우부인의 전혀 모유를 먹이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2006[1)]	2009[2)]		
		전국	동부	읍·면부
모유량 부족	50.8	53.0	48.6	76.9
유두 및 유방통증[1)]	-	8.4	8.6	7.7
엄마의 질병	24.6	4.8	5.7	-
엄마의 취업	-	16.9	20.0	-
아기가 모유를 싫어하거나 젖을 빨지 않아서	15.4	10.8	11.4	7.7
아기의 건강	4.6	4.8	5.7	-
우유가 더 좋다고 들어서	1.5	-	-	-
기타	3.1	1.2	-	7.7
계(수)	100.0(65)	100.0(83)	100.0(70)	100.0(13)

자료: <표 9-4>와 동일

모유를 수유하다가 중단한 이유로는 '모유량 부족'이 37.0%로 여전히 가장 높았으나, 2003년과 2006년의 조사결과보다 많이 감소하였다. 다음으로는 '젖을 뗄 시기가 되어서' 27.6%, '취업 때문에' 12.2%, '아기의 건강상 이유로' 6.9% 등의 순이었다. 특히 '취업 때문에'가 동부 지역 거주 부인에서는 13.4%를 차지하고 있음은 정책적으로 주목해야 할 점이다.

〈표 9-36〉 15~44세 유배우부인의 모유수유 중단이유

(단위: %, 명)

구분	2003[1]	2006[2]	2009[3]		
			전국	동부	읍·면부
모유량 부족	40.4	49.4	37.0	36.6	39.6
유두 및 유방통증[2]	-	-	3.5	3.1	5.5
엄마의 질병	8.1	9.7	3.8	3.7	4.4
엄마의 취업	7.8	12.0	12.2	13.4	5.5
아기가 모유를 싫어하거나 젖을 빨지 않아서	7.3	6.6	7.1	6.2	12.1
아기의 건강	5.6	3.9	6.9	7.1	5.5
우유가 더 좋다고 들어서	1.9	0.7	0.5	0.5	-
젖을 땔 시기가 되어서	7.7	17.0	27.6	27.8	26.4
기타	3.3	0.6	1.4	1.5	1.1
계(수)	-	100.0(539)	100.0(637)	100.0(546)	100.0(91)

주: 1) 2003년도 결과는 중복응답 결과임; 2) 2003년과 2006년 조사에서는 문항에서 제외되어 있음.
자료: 1)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2) 김승권 외,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3) 본 조사결과

모유수유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가장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 '공공장소의 모유수유실 의무 설치'가 41.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임산부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철저한 교육 홍보' 17.5%, '직장에서 모유수유를 위한 휴식시간 제공' 13.2%, '직장 내 모유수유실 의무 설치' 11.9% 등의 순이었다. 동부지역 및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 모두 모유수유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직장 내 모유수유실 의무 설치', '임산부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철저한 교육 홍보'에 대해서 보다 많은 의견을 보였다.

부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 의견은 '직장 내 모유수유실 의무 설치', '직장에서 모유수유를 위한 휴식시간 제공'에 대해서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인의 연령이 높은 경우, 취업중인 부인인 경우 '직장 내 모유수유실 의무 설치', '직장에서 모유수유를 위한 휴식시간 제공'에 대해서 필요성이 많았다. 특히 취업부인의 경우 '직장 내 모유수유실 의무 설치', '직장에서 모유수유를 위한 휴식시간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비취업부인은 '임산부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철저한 교육 홍보'의 필요성이 높았다.

〈표 9-37〉 15~44세 유배우부인의 모유수유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단위: %, 명)

구분	① 공공장소의 모유수유실 의무 설치 ② 상업지역에 모유수유실 의무설치 ③ 직장 내 모유수유실 의무설치 ④ 직장에서 모유수유를 위한 휴식시간 제공 ⑤ 분만병의원에 모자동실 운영 ⑥ 산후조리원의 모자동실 운영 ⑦ 임산부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철저한 교육 홍보 ⑧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수)	χ^2
2006[1)]	43.7	6.4	12.0	12.1	4.3	-	21.1	0.4	100.0(953)	
2009[2)]	41.6	6.4	11.9	13.2	7.8	1.1	17.5	0.4	100.0(969)	
지역										
동부	41.8	6.5	12.6	13.2	8.2	1.1	16.2	0.4	100.0(831)	9.153
읍·면부	41.3	5.8	7.2	13.0	5.8	1.4	24.6	0.7	100.0(13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7.8	8.7	4.3	8.7	8.7	-	21.7	-	100.0(23)	
고등학교	41.4	5.8	10.8	11.6	8.3	1.1	20.4	0.6	100.0(362)	
대학 이상	41.5	6.7	13.0	14.4	7.5	1.0	15.4	0.3	100.0(583)	
부인연령										
15~24세	56.9	1.4	4.2	13.9	8.3	1.4	13.9	-	100.0(72)	
25~29세	41.0	5.5	12.6	11.5	7.4	0.8	20.8	0.5	100.0(366)	
30~34세	41.1	9.3	11.3	13.4	8.6	1.3	14.9	0.3	100.0(397)	
35세 이상	36.6	3.7	16.4	17.2	6.7	0.7	17.9	0.7	100.0(134)	
취업여부										
취업	30.2	5.6	18.1	25.0	7.3	0.9	12.5	0.4	100.0(232)	56.689***
비취업	45.1	6.8	9.9	9.5	8.0	1.2	19.0	0.5	100.0(738)	

주: 1) 2006년 조사문항에서는 제외되어 있음; 2) *** $p<0.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9-4>와 동일

제6절 영유아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가장 효율성이 높은 강력한 질병예방 수단이다. 전체 지역사회 대상자가 적정 이상의 비율로 예방접종을 하여 높은 면역성을 유지하여 집단면역(herd immunity)을 획득하게 되면 한 개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전염성 병원체의 전파를 저지함으로써 지역사회 전체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출생 후 3~6개월까지는 모체에서 받은 선천적인 면역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질병으로부터 방어가 되지만 그 이후에는 감염을 받기 쉽기 때문에 영유아기의 적절한 예방접종은 영유아

기는 물론 그 이후의 사망과 질환, 장애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류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영유아 예방접종은 '전염병예방법'과 '모자보건법'에 근거를 두고 영유아기에 발생률이 높은 전염성 질병에 대하여 방역사업과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관리하여 오고 있다.

영유아기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표준예방접종지침'을 정하여 예방접종별로 접종권장 시기와 횟수를 관리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예방접종기록전산등록사업을 통해 보건소 등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예방접종기록을 등록·관리하여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접종관련 업무의 효율화와 개인 예방접종기록 관리 및 예방접종률 추정치를 확보하고 있다. 선행 조사들에서 영유아 예방접종률이 90.0~95.0% 이상 수준을 보이지만, 아직까지 민간의료기관의 등록사업 참여가 완전하지 못하여 예방접종기록전산등록사업을 통한 전국적인 예방접종률 추정치는 결핵(BCG 73.0%, 폴리오 74.0%, MMR 72.0%, 일본뇌염 2.0%로 낮은 수준이다(질병관리본부, 2006)

영유아 예방접종률에 관한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대한 혹은 예방접종대상자중 접종률에 대한 자료를 보면 1989년 6~29개월 아동의 예방접종률은 BCG 93.7%, DPT 및 Polio(3차 완료) 93.0%, MMR 92.4%, B형간염은 1차, 2차, 3차가 각각 90.5%, 86.3%, 78.0%에 이르렀다(김혜련 외, 1989), 1994년 전국출산력조사의 일환으로 조사된 영유아 예방접종률[43]을 미국의 영유아 예방접종률 산출기준인 19~35개월 영유아에 대하여 산출하면 1994년 영유아예방접종률은 BCG 99.4%, DPT 및 Polio(3차 완료) 99.4%, MMR 95.9%, B형간염 1차 99.3%에 이르는 높은 접종수준을 보인다(김혜련 외, 2000). 한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에서 조사된 0~30개월 영유아의 예방접종률[44]은 BCG 99.6%, DPT 및 Polio(3차 완료) 95.3%, MMR 90.2%, B형간염

43)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원자료(raw data) 분석결과임.
44) 접종시기가 권장접종시기를 초과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산출함.

1차 98.3%에 이르는 높은 접종수준을 보인다(김승권 외, 2000). 1994년과의 차이를 대상 영유아의 월령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예방접종률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유아 예방접종률에 관한 전국의 최근 자료는 거의 없다.

조사대상 영유아의 예방접종률은 <표 9-38>과 같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2000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예방접종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예방접종률은 BCG 99.8%, DPaT 및 Polio 1, 2, 3차 각각 99.7%, 99.3%, 98.2%, MMR과 홍역 95.3%, B형간염 1차 98.7%에 이르는 매우 높은 접종수준을 보인다. 다만, 표준접종시기가 생후 18개월인 DPaT 추가접종 78.8%는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인다.

최근 OECD Health at a Glance 2009에 게재된 2007년 한국의 우리나라 영유아의 예방접종률은 2세를 기준으로 볼 때 91.0%, 홍역 92.0%로 OECD 평균(92.2%)이나 그 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OECD, 2009).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 조사에서 밝혀진 예방접종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고된 것이다.[45] OECD의 국제예방접종률 비교기준인 생후 12개월과 생후 24개월 시점이후를 대상으로 산출한 예방접종률은 <표 9-39>와 같다. BCG, DPaT 및 Polio 1, 2 3차, MMR과 홍역, B형 간염 예방접종률은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볼 수 있다.

45) 보고된 대상아 연령의 차이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동안 전국 수준의 예방접종율이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접종 보고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자료로 보임.

〈표 9-38〉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의 예방접종률

(단위: %, 명)

구분	표준 접종시기	접종률 산출대상	접종률[1]
BCG	생후 1개월 이내	생후 1개월 이상(N=963)	99.8
DTaP 1차, 폴리오[2]	생후 2개월	생후 3개월 이상(N=916)	99.7
DTaP 2차, 폴리오[2]	생후 4개월	생후 5개월 이상(N=835)	99.3
DTaP 3차, 폴리오[2]	생후 6개월	생후 7개월 이상(N=768)	98.2
DTaP 추가	생후 18개월	생후 19개월 이상(N=413)	78.8
MMR	생후 12~15개월	생후 16개월 이상(N=507)	95.3
B형 간염 1차	출생직후	생후 0개월 이상(N=974)	99.6
B형 간염 2차	생후 1개월	생후 2개월 이상(N=937)	98.7
B형 간염 3차	생후 6개월	생후 7개월 이상(N=768)	98.1
일본 뇌염[3]	생후 12~23개월	생후 12개월 이상(N=626)	87.8
수두[4]	생후 12~23개월	생후 24개월 이상(N=229)	97.9

주: 1) 각 예방접종별로 표준접종시기와 출생아 나이(월령)를 고려하여 접종률 산출대상 중 접종자로 산출함; 2) 예방접종을 한 경우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각 예방접종별로 표준접종시기 이내 접종자를 적기접종으로 표준접종시기 이후 접종자를 지연접종자로 구분함; 3) 24개월 이상 대상아동 중 일본뇌염 사백신이나 생백신을 한번이라도 맞은 아동으로 산출함; 4) 12개월 이상 및 24개월 이상 대상 아동 중 수두백신을 맞은 아동으로 산출함.

자료: 본 조사결과

〈표 9-39〉 월령 12개월 이상 및 월령 24개월 이상아의 예방접종률

(단위: %, 명)

구분	12개월 이상아의 접종률[1] (N=626)	24개월 이상아의 접종률[2] (N=229)
BCG	99.9	99.6
DTaP 1차, 폴리오[1]	99.7	99.6
DTaP 2차, 폴리오[1]	99.4	99.6
DTaP 3차, 폴리오[1]	98.2	98.4
DTaP 추가	-	86.1
MMR	-	97.1
B형 간염 1차	99.7	100.0
B형 간염 2차	99.6	100.0
B형 간염 3차	98.0	99.6
일본 뇌염[2]	87.8	97.9
수두	89.6	94.3

주: 1) DTaP 예방접종과 폴리오(소아마비) 예방접종은 별도의 접종이나 권장 접종시기가 동일하여 일반적으로 동일시기에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어 본 조사에서는 두 접종을 분리하지 않고 같이 조사하였음; 2) 일본뇌염 사백신이나 생백신을 한번이라도 맞은 아동으로 산출함.

자료: 본 조사결과

표준예방접종시기를 기준으로 접종자의 적기 접종과 지연 접종 현황을 보면 <표 9-40>과 같이 적기 예방접종률은 DTaP 추가 접종을 제외하면 모두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9-40〉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의 적기 예방접종 현황

(단위: %, 명)

구분	접종시기 분포[1]		계(수)
	적기접종	지연접종	
BCG	89.4	10.6	100.0(970)
DTaP 1차, 폴리오2)	96.9	3.1	100.0(934)
DTaP 2차, 폴리오	94.2	5.8	100.0(867)
DTaP 3차, 폴리오	85.6	14.4	100.0(768)
DTaP 추가	77.5	22.5	100.0(343)
MMR	96.7	3.3	100.0(566)
B형 간염 1차	99.6	0.4	100.0(970)
B형 간염 2차	96.6	3.4	100.0(949)
B형 간염 3차	91.4	8.6	100.0(774)
일본 뇌염3)	99.7	0.3	100.0(515)
수두	98.3	1.7	100.0(561)

주: 1) 예방접종을 한 경우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각 예방접종별로 표준접종시기 이내 접종자를 적기접종으로 표준접종시기 이후 접종자를 지연접종자로 구분함; 2) 24개월 이상 대상아동 중 일본뇌염 사백신이나 생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아동으로 산출함.

이제까지 예방접종이 공공과 민간에서 각각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접종비용, 접종에 대한 접근성과 신뢰성 등에 영향을 받는다. 영유아 예방접종 장소에 대한 전국적인 최근 통계는 1989년 및 2000년 이후 제시되지 않았다. 본 조사 결과, 출생후 바로 접종이 이루어지는 BCG와 간염1차 예방접종은 주로 병의원에서 이루어지지만 다른 영유아 예방접종은 보건소(지소, 진료소)에서 접종을 받은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1989년 전국조사결과(김혜련 외, 2000)나 2000년 조사결과(김승권 외, 2000)에 비하여 예방접종 종류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보건소에서 30.0~40.0%, 병의원에서 60.0~70.0% 이루어지던 영유아 예방접종이 최근에는 보건소(지소, 진료소)에서 보다 많은 접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9-4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의 예방접종시 접종장소

(단위: %, 명)

구분	(종합)병·의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	기타	계(수)
BCG	78.5	21.2	0.4	100.0(970)
DTaP				
1차	46.3	53.7	-	100.0(934)
2차	45.8	54.2	-	100.0(867)
3차	44.6	55.3	0.1	100.0(768)
MMR	41.0	59.0	-	100.0(566)
DTaP 추가	43.9	56.1	-	100.0(343)
B형 간염				
1차	99.9	0.1	-	100.0(974)
2차	54.4	45.6	-	100.0(949)
3차	47.4	52.6	-	100.0(774)
일본뇌염				
사백신1차	37.4	62.4	0.2	100.0(515)
사백신2차	35.3	64.7	-	100.0(463)
생백신1차	95.5	4.5	-	100.0(38)
수두	42.7	57.3	-	100.0(561)

주: 1) 예방접종을 한 경우만을 분석 대상으로 함.

제7절 모자보건실태의 시사점

산전·산후 관리, 분만실태, 모유수유, 예방접종 등 모자보건에 대한 최근의 실태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이후 출생아에 대한 모자보건실태를 분석한 2009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산전관리수진율은 100%에 이르렀으며, 임신 8주 이내에 초진을 받은 부인이 93.6%로서 대부분의 임신부가 임신 초기에 산전관리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바람직한 상태를 보였다. 하지만 24세 이하 부인이나 출생순위가 셋째아 이상인 부인에서 산전관리 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어 산전관리에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인구집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설분만율은 100%였으며, 이 중에서 0.2%만이 조산소에서 분만하였고 나머지 99.8%는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분만율이 매

우 높음을 볼 수 있다. 제왕절개분만율이 36.9%로 2006년보다 다소 높아졌는데 고령임신과 다태아 임신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제왕절개분만율을 감소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저체중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3.8%로 2006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임신주수 37주 미만의 조산아 출생률은 6.7%였다. 2006년에 비하여 저체중아와 조산아가 증가하고 있다. 출생시 체중은 출생아의 대표적인 건강지표로서 영아기의 사망위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임산부의 연령, 건강과 영양상태가 반영되는 중요한 모자보건지표이다. 최근 고령출산과 다태아 출산의 증가가 저체중아와 조산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임신전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젊은 가임기 여성의 건강에 대한 인식 부족도 일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출산연령을 낮추기 위한 대책, 가임기 여성에 대한 건강관리의 강화 등이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강화될 필요성이 높다.

넷째, 최근 모유수유율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바람직한 양상을 보였다. 2006년도에 비하여 출생후 5개월까지 완전모유수유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생후 1주 이내 모유수유율은 73.0%였으며, 생후 1개월에는 65.6%로 낮아졌고, 생후 3개월에 57.0%, 생후 6개월시에는 13.6%였다. 생후 5개월까지의 모유수유율은 2003년, 2006년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지만 6개월 이후에는 모유수유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모유수유를 하는 기간은 줄어들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모유수유에 대한 산전 교육과 캠페인 강화, 모유수유 지원 시책이 이루어지면서 모유수유의 장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모유수유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유수유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모유수유 기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취업여성을 지원하는 직장내 모유수유실 설치와 모유수유 지원시책의 추진, 육아휴직의 지원 확대와 함께 비취업 여성에 대한 모유수유 교육의 강화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영유아 예방접종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방접종조사가 포함되었던 이는 「2000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예방접종률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영유아의 예방접종률은 BCG 99.8%, DPaT 및 Polio 1, 2, 3차 각각 99.7%, 99.3%, 98.2%,MMR과 홍역 95.3%, B형간염 1차 98.7%에 이르는 매우 높은 접종수준을 보인다. 예방접종 장소는 예방접종 종류별로 차이가 있지만 50% 이상이 공공 보건기관인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방접종이 많았다. 과거 보건소 30~40%, 병의원에서 60~70% 이루어지던 영유아 예방접종이 최근에는 보건소(지소, 진료소)에서 보다 많은 접종이 이루어져서 공공보건기관의 역할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영유아 예방접종에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공공보건기관의 이용이 실제로 매우 높고,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컸던 것이 높은 예방접종률을 이루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와 같은 높은 영유아 예방접종수준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영유아 예방접종의 민간의료기관 위탁이나 건강보험 급여 등이 검토되고 있는 시점에서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공공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신중한 정책의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

가족생활실태

제10장 가족생활실태

제1절 가구경제

1. 재산보유실태

재산은 건물, 토지, 임야 등을 포함하는 부동산과 저축, 증권, 채권, 적금 등을 포함하는 동산 등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표 10-1>과 같이 조사대상가구의 재산보유현황을 살펴보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가구는 전체의 3.5%에 불과하였다. '1억원 미만'의 재산을 가진 가구는 44.4%, '1~2억 미만'은 19.9%, '2~3억원 미만' 11.1%, '3~5억원 미만' 10.8%, 그리고 '5억원 이상'은 10.3%로 나타나 전체 가구의 평균 재산 보유액은 2억 1,207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재산이 전혀 없는 비율은 동부지역이 2.6%인 반면 읍·면부지역에서는 7.0%로 높았다. 2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동부지역 34.4%, 읍·면부지역 23.2%로 동부지역의 재산보유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평균 재산 보유액은 동부지역이 2억 2,237만원, 읍·면부지역은 1억 6,963만원으로 지역간 재산규모는 약 5,274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 보유재산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재산보유 수준을 살펴보면, 재산이 전혀 없는 비율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99만원 이하가 12.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100~199만원이 3.4%, 200~299만원은 0.8%, 300만원 이상은 0.5%의 분포를 보였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재산규모는 상승하여 2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

한 비율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99만원 이하는 11.2%, 100~199만원은 18.9%, 200~299만원은 23.9%, 300만원 이상은 53.6%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별 평균 재산보유액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99만원 이하가 8,092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100~199만원은 1억 2,398만원, 200~299만원은 1억 6,616만원, 300만원 이상은 3억 4,462만원으로 가구소득에 따른 재산규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가구원수에 따라서도 보유재산 규모는 다르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재산이 전혀 없는 비율은 2인 이하의 가구원을 가진 가구는 6.2%, 3~4인의 가구원을 가진 가구는 1.2%, 5인 이상의 가구원을 가진 가구는 1.3%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재산 보유액은 많아져 2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비율은 2인 이하 가구는 22.6%, 3~4인 가구는 39.6%, 5인 이상 가구는 44.7%로 나타났다. 가구원수별 평균 재산보유액은 2인 이하 가구는 1억 6,178만원이었고, 3~4인 가구는 2억 4,084만원, 5인 이상 가구는 3억 3,211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가구원수에 따른 재산 규모의 차이는 가족주기에 의한 것이 크다고 생각된다. 즉, 2인 이하 가구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대부분 미혼 독신 또는 가족형성 초기의 젊은 부부가구이거나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노인들로 구성된 노인부부가구 또는 노인단독가구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3인 이상 가구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가족확대기로 경제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가구주의 성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재산이 없거나 재산규모가 1억원 미만인 가구의 비율은 남성가구주 가구가 41.6%인 반면, 여성가구주 가구는 75.0%로 훨씬 높았다. 반면, 재산규모가 2억원 이상인 비율은 남성가구주 가구가 36.8%, 여성가구주는 가구 12.3%로 남성가구주 가구가 여성가구주 가구보다 약 3배 높았다. 평균 재산 규모에 있어서도 여성가구주 가구의 평균 재산보유액은 9,054만원으로 남성가구주 가구의 2억 4,021만원보다 훨씬 적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여성 한부모가족과 여성노인 단독가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으

로 여성가구주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006년에 비해서는 보유재산이 없거나 2억 미만이라는 비율이 감소한 반면, 보유재산이 2억 이상인 경우는 증가하여 보유재산의 수준이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다. 평균 재산보유액도 5,764만원 증가하였다.

〈표 10-1〉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보유재산 규모분포

(단위: %, 명, 백만원)

특성	보유 재산 규모							χ^2	평균 재산 보유액	F값 (T값)
	없음	1~99	100~199	200~299	300~499	500 이상	계(수)			
2006[1]	5.8	49.3	20.2	9.1	7.8	7.8	100.0(13,820)		154.40	
2009[2]	3.5	44.4	19.9	11.1	10.8	10.3	100.0(14,952)		212.07	
지역										
동부	2.6	42.7	20.2	11.6	11.7	11.1	100.0(12,033)	270.183***	222.37	(6.743***)
읍·면부	7.0	51.3	18.5	9.1	7.0	7.1	100.0(2,920)		169.63	
월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2.3	63.5	13.1	5.2	3.6	2.4	100.0(2,945)		80.92	
100~199만원	3.4	61.3	16.3	7.7	6.6	4.6	100.0(3,086)	3,738.935***	123.98	394.310***
200~299만원	0.8	52.8	22.5	9.8	8.4	5.7	100.0(2,924)		166.16	
300만원 이상	0.5	22.1	23.8	16.5	17.7	19.4	100.0(5,987)		344.62	
가구규모										
2인 이하	6.2	55.2	15.9	8.1	7.5	7.0	100.0(6,788)	1,090.344***	161.78	119.129***
3~4인	1.2	35.7	23.6	13.6	13.6	12.4	100.0(6,998)		240.84	
5인 이상	1.3	33.6	20.3	14.5	12.9	17.3	100.0(1,165)		332.11	
가구주 성										
남성	2.1	39.5	21.5	12.5	12.3	12.0	100.0(12,142)	1,212.272***	240.21	(25.724***)
여성	9.2	65.8	12.6	5.4	4.1	2.8	100.0(2,811)		90.54	

주: *** p<.001

자료: 1) 김승권 외,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2) 본 조사결과

2. 부채실태

가구 경제수준은 재산규모뿐 아니라 부채수준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조사대상가구의 부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채규모와 부채원인을 살펴보았다.

가. 부채규모

조사대상가구의 부채 현황은 <표 10-2>와 같다. 부채가 전혀 없는 가구는 전체의 57.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1억원 미만'의 부채를 가진 가구는 35.3%, '1~2억 미만'은 4.8%, '3억원 미만' 1.1%, '5억원 미만' 0.6%, 그리고 '5억원 이상'은 0.4%로 나타나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액은 2,389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채가 전혀 없는 비율은 동부지역이 57.0%, 읍·면부지역은 60.8%로 동부지역의 부채비율이 약간 높았다. 부채를 갖고 있는 가구 중에서 부채규모가 1억원 미만인 비율은 동부지역이 35.4%, 읍·면부지역이 35.2%였고, 1억원 이상의 부채규모를 가진 가구의 비율은 동부지역이 7.7%, 읍·면부지역이 4.0%로 나타났다. 지역별 평균 부채액은 동부지역이 2,487만원이었고, 읍·면부지역은 1,984만원으로 동부지역의 부채보유액이 약간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 부채규모의 차이는 도시가 농촌보다 물가 또는 지가 등이 높은 데서 오는 가구지출규모의 차이로 해석된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부채규모를 살펴보면, 부채가 전혀 없는 비율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99만원 이하가 7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100~199만원이 60.5%, 200~299만원은 52.5%, 300만원 이상은 51.9%의 분포를 보여,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채를 가진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평균 부채액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99만원 이하가 1,256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100~199만원은 1,453만원, 200~299만원은 2,102만원, 300만원 이상은 3,564만원으로 가구소득에 따라 부채규모도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채비율과 부채규모가 높은 것은 소득수준에 따라 가구경제규모가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부채규모도 가구원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다르게 나타났다. 부채가 전혀 없는 비율은 2인 이하의 가구원을 가진 가구는 69.5%, 3~4인의 가구원을 가진 가구는 49.5%, 5인 이상의 가구원을 가진 가구는 38.8%의 비율을 보였다. 가구규모별 평균 부채액은 2인 이하 가구는 1,531만원이었고, 3~4인 가구는 2,861만원, 5인 이상의 가구는 4,559만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부채액 규모에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가구원수가 많아질수록 부채율과 부채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가족주기 단계와 관련하여 2인 이하 가구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대부분 가족형성기 또는 가족축소완료기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에 비해 3인 이상 가구원을 가진 가구는 가족확대기 이후에 속하는 가구로 자녀교육, 주택구입, 관혼상제 등으로 가족경제생활에서 목돈 지출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10-2〉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부채 규모

(단위: %, 명, 백만원)

특성	부채규모							X^2	평균 부채액	F값 (T값)
	없음	1~99	100~199	200~299	300~499	500 이상	계(수)			
2006[1]	53.1	39.0	5.0	1.5	0.8	0.6	100.0(14,060)		27.46	
2009[2]	57.7	35.3	4.8	1.1	0.6	0.4	100.0(14,948)		23.89	
지역										
동부	57.0	35.4	5.3	1.3	0.7	0.4	100.0(12,030)	54.118***	24.87	(2.055*)
읍·면부	60.8	35.2	2.8	0.5	0.3	0.4	100.0(2,918)		19.84	
월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71.9	26.3	1.2	0.2	0.1	0.3	100.0(2,946)		12.56	
100~199만원	60.5	36.3	2.2	0.6	0.3	0.1	100.0(3,079)	701.897***	14.53	70.232***
200~299만원	52.5	42.4	3.6	1.0	0.3	0.2	100.0(2,917)		21.02	
300만원 이상	51.9	35.9	8.4	1.9	1.2	0.7	100.0(5,993)		35.64	
가구규모										
2인 이하	69.5	26.7	2.6	0.7	0.4	0.2	100.0(6,791)	820.610***	15.31	84.534***
3~4인	49.5	41.9	6.0	1.4	0.7	0.4	100.0(6,990)		28.61	
5인 이상	38.8	46.2	10.2	2.3	1.3	1.2	100.0(1,167)		45.59	
가구주 성										
남성	54.6	37.4	5.5	1.3	0.7	0.5	100.0(12,138)	306.760***	27.09	(11.769***)
여성	71.4	26.5	1.6	0.4	0.1	0.0	100.0(2,810)		10.07	

주: * p<.05, *** p<.001
자료: <표 10-1>과 동일

그리고 부채를 갖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남성가구주 가구가 45.4%, 여성가구주 가구는 28.6%로 남성가구주 가구가 여성가구주 가구보다 높았다. 부채규모도 남성가구주 가구는 2,709만원, 여성가구주 가구는 1,007만원으로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훨씬 컸다. 이는 남성가구주 가구와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제규모에서 오는 차이로 생각되며, 여성가구주 가구가 남성가구주 가구보다 경제적인 형편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006년에 비해서는 부채가 없다는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부채규모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평균 부채액도 503만원 감소하였다.

나. 부채원인

부채의 원인은 주로 주거생활과 경제터전의 마련 때문으로 '주거비 및 주택마련' 49.1%, '사업자금' 15.9%, '생계비' 14.9%의 순으로 많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빚보증, 자동차구입비 등을 포함한 '기타'가 11.6%, '교육비' 4.8%, '의료비' 2.4%, '관혼상제비' 1.2%로 나타났다. 특히 생계비가 부채의 원인인 가구가 14.9%를 차지하여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부채의 주요 원인은 주거비 및 주택마련이 52.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생계비 14.3%, 사업자금 14.0%로 나타났다. 읍·면부지역은 주거비 및 주택마련이 35.3%로 상대적으로 동부지역보다 적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업자금 24.3%, 생계비 17.6%의 순이었다. 따라서 도시지역은 주로 주거마련 때문에 부채를 지고 있으나, 농촌지역은 주거와 함께 경제터전 마련 때문에 부채를 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지역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부채원인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생계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거비 및 주택마련의 비율이 높았다. 월 가구소득에 따른 부채규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기본생계비와 의료비에 대한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표 10-3〉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부채의 주된 원인

(단위: %, 명)

특성	생계비	주거비/주택마련	교육비	사업자금	의료비	관혼상제비	기타	계(수)	χ^2
2006[1)]	8.4	50.1	4.0	27.5	2.1	0.8	7.1	100.0(6,754)	
2009[2)]	14.9	49.1	4.8	15.9	2.4	1.2	11.6	100.0(6,351)	
지역									
동부	14.3	52.2	4.9	14.0	2.0	1.0	11.5	100.0(5,201)	152.455***
읍·면부	17.6	35.3	4.5	24.3	4.3	2.1	12.0	100.0(1,150)	
월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33.7	28.7	3.0	12.9	8.0	2.2	11.6	100.0(830)	
100~199만원	25.1	36.9	5.2	19.0	3.3	2.2	8.4	100.0(1,229)	853.311***
200~299만원	15.4	50.9	5.5	14.8	1.4	1.1	11.0	100.0(1,394)	
300만원 이상	4.9	59.4	4.9	15.8	1.0	0.6	13.4	100.0(2,893)	
가구규모									
2인 이하	17.2	41.3	4.4	15.7	4.4	2.4	14.6	100.0(2,085)	180.474***
3~4인	13.4	54.1	5.3	15.2	1.4	0.6	10.1	100.0(3,549)	
5인 이상	15.7	47.1	4.2	19.9	1.9	0.4	10.7	100.0(719)	
가구주 성									
남성	13.0	51.1	4.6	16.4	2.0	1.1	11.8	100.0(5,542)	188.728***
여성	27.8	36.0	6.2	12.3	5.6	1.6	10.5	100.0(808)	
가구주 연령									
15~29세	18.2	53.8	8.9	4.7	0.4	0.4	13.6	100.0(236)	
30~39세	13.8	64.1	0.7	10.9	1.0	0.1	9.4	100.0(1,409)	555.779***
40~49세	14.9	48.7	5.2	19.5	1.3	0.3	10.2	100.0(1,949)	
50~59세	15.0	39.6	9.9	20.0	2.2	1.5	11.9	100.0(1,433)	
60세 이상	15.3	43.4	2.6	13.4	6.3	3.6	15.4	100.0(1,325)	

주: *** $p<.001$
자료: <표 10-1>과 동일

가구원수별로도 주거비 및 주택마련, 사업자금, 생계비가 부채의 주된 원인이었으며, 특히 주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3~4인 가구의 주거비 및 주택마련으로 인한 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인 이하 가구원수로 구성된 가구는 생계비도 높은 부채의 원인이었다. 동 자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구주의 성에 따라서는 남성가구주 가구는 주거비 및 주택마련이 주된 부

채의 원인이었으며, 여성가구주 가구는 남성가구주 가구보다 기본 생계비나 교육비, 의료비 때문에 부채를 지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지원의 확대가 요구된다.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서는 모든 연령층에서 주거비 및 주택마련이 공통적인 주요 부채원인으로 나타났으나, 40대 미만의 가족형성기에 가까울수록 주거비 및 주택마련이 부채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40세 이상의 중·장년기에는 주거비 및 주택마련과 사업자금이, 그리고 노년기에 가까울수록 전체 부채 중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와 같이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부채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나서 가족주기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2006년에 비해서는 주된 부채 원인 중 '생계비'의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교육비와 의료비, 관혼상제비 등이 증가하였다. 주거비 또는 주택마련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사업자금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다. 가구의 소득, 소비, 저축 실태

조사대상가구의 소득, 소비, 저축 현황을 통해 가족의 실질적인 경제생활 상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4>와 같이 조사대상가구의 월 소득 분포를 보면, 전체가구의 19.7%가 월 '99만원 이하'였다. 또한 '100~199만원 이하' 20.6%, '200~299만원 이하' 19.5%, '300만원 이상'은 40.1%의 분포를 보였으며,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275만원이었다. 300만원 이상의 월 소득을 가진 가구의 비율은 2006년의 35.5% 대비 4.6%pt 증가하였고, 300만원 미만대의 월 소득을 가진 가구는 2006년에 비해 모두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월 가구소득이 99만원 이하인 가구는 동부지역이 15.4%, 읍·면부지역이 37.6%로 읍·면부지역에서 저소득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00~199만원 이하는 동부지역과 읍·면부지역이 각각 20.2%, 22.5%로 유사하였고, 200~299만원 이하는 각각 20.5%, 15.8%였으며, 300만원 이상은 각각 44.0%, 24.2%였다. 따라서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월 가구소

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월평균 가구소득은 동부지역이 약 294만원, 읍·면부지역 약 196만원으로 두 지역간에 98만원 정도의 소득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읍·면부지역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49만원 이하인 경우가 15%로 나타났다. 이는 읍·면부지역의 평균가구원수가 2.54명[46]임을 고려할 때 최저생계비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소득수준[47]으로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촌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구별 월 소비지출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가구의 20%가 월 '99만원 이하'의 소비지출을 하였고, '100~199만원 이하'는 27.7%, '200~299만원 이하'는 24.3%, '300만원 이상'은 28.2%의 분포를 보였다. 전체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은 약 223만원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의 81.3% 수준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체가구의 소비지출 규모는 소득수준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가구 소득에 기준하여 소비 및 저축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00만원 이상의 지출을 하는 가구의 비율은 2006년의 22.6% 대비 5.6%pt 증가하였다.

지역별 소비지출 규모는 읍·면부지역일수록 작았는데, 월 99만원 이하를 지출하는 가구의 비율은 동부지역 15.6%, 읍·면부지역 38.2%였으며, 100~199만원 이하는 동부지역과 읍·면부지역이 각각 28.0%, 26.2%였다. 또한, 200~299만원 이하는 동부지역이 25.8%, 읍·면부지역은 17.7%였으며, 300만원 이상은 동부지역과 읍·면부지역이 각각 30.7%, 17.8%였다. 지역간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은 동부지역이 약 237만원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의 80.5%를, 읍·면부지역은 169만원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의 86.2% 정도를 지출하였다. 동 자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46) 본 조사 결과임.

47) 2009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490,845원, 2인가구 835,763원, 3인가구 1,081,186원, 4인가구 1,326,609원, 5인가구 1, 672,031원, 6인가구 1,817,454원임(보건복지가족부, 2009).

〈표 10-4〉 소득·소비·저축 규모별 가구분포

(단위: %, 명, 만원)

구분	전국	동부	읍·면부
월 소득			
49만원 이하	7.5	5.7	15.0
50~99만원 이하	12.2	9.7	22.6
100~149만원 이하	10.9	10.5	12.8
150~199만원 이하	9.7	9.7	9.7
200~249만원 이하	10.5	11.1	8.2
250~299만원 이하	9.0	9.4	7.6
300만원 이상	40.1	44.0	24.2
계(수)	100.0(14,979)	100.0(12,057)	100.0(2,922)
χ^2	862.213***		
평균 월 소득	274.69	293.80	195.86
월 소비			
49만원 이하	6.2	4.1	14.9
50~99만원 이하	13.8	11.5	23.3
100~149만원 이하	14.1	13.7	15.6
150~199만원 이하	13.6	14.3	10.6
200~249만원 이하	13.5	14.2	10.3
250~299만원 이하	10.8	11.6	7.4
300만원 이상	28.2	30.7	17.8
계(수)	100.0(14,986)	100.0(12,062)	100.0(2,924)
χ^2	921.742***		
평균 월 소비	223.26	236.47	168.75
월 저축			
49만원 이하	61.1	57.4	76.4
50~99만원 이하	15.5	16.5	11.4
100~149만원 이하	10.4	11.5	5.8
150~199만원 이하	4.9	5.4	2.8
200~249만원 이하	3.5	4.0	1.4
250~299만원 이하	1.3	1.4	0.8
300만원 이상	3.4	3.9	1.3
계(수)	100.0(14,988)	100.0(12,063)	100.0(2,925)
χ^2	381.916***		
평균 월 저축	57.83	63.69	33.64

주: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가구별 월 저축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가구의 76.6%가 월 '99만원 이하'를 저축하였고, '100~199만원 이하'는 15.3%, '200~299만원 이하'를 저축하는 가

구의 비율은 4.8%, '300만원 이상'은 3.4%의 분포를 보였다. 전체 월평균 가구 저축은 약 58만원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의 21.1% 수준을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저축 규모는 월 99만원 이하를 저축하는 가구의 비율은 동부지역이 73.9%, 읍·면부지역이 87.8%였으며, 100~199만원 이하는 동부지역과 읍·면부지역이 각각 16.9%, 8.6%였다. 또한, 200~299만원 이하는 동부지역이 5.4%, 읍·면부지역이 2.1%였으며, 300만원 이상은 동부지역과 읍·면부지역이 각각 3.9%, 1.3%였다. 지역간 월평균 가구 저축은 동부지역이 약 64만원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의 21.7%를, 읍·면부지역은 34만원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의 17.2% 정도를 저축하였다. 동 자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10-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로 월 가구소득의 분포를 보면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높았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구주 연령이 40~49세인 가구가, 그리고 남성가구주 가구가 여성가구주 가구보다 높은 소득분포를 보였다.

이와 같이 도시가 농촌보다 소득분포가 높은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수준의 격차가 크기 때문이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소득이 높게 나타난 것은 가구원수가 적은 가구보다 가구원수가 많은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원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48] 또한 가구주 연령이 40~49세인 경우에는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므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남성가구주 가구가 여성가구주 가구보다 소득이 높은 것은 대체로 여성가구주는 저임금의 비전문직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구소득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006년과 비교할 경우, 가구소득 수준 분포는 3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증가하고 300만원 미만은 모두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가구소득수준

48) 세대구성에서 유추되는 경제활동참여 가구원의 연령별, 직급별 차이 등이 월평균 소득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은 다소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표 10-5〉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구소득 수준 분포

(단위: %, 명)

특성	99만원 이하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만원 이상	계(수)	X^2
2006[1)]	20.9	22.2	21.3	35.5	100.0(14,241)	
2009[2)]	19.7	20.6	19.5	40.1	100.0(14,979)	
지역						
동부	15.4	20.2	20.4	44.0	100.0(12,057)	853.584***
읍·면부	37.6	22.4	15.8	24.2	100.0(2,923)	
가구규모						
2인 이하	39.3	29.5	15.6	15.7	100.0(6,792)	4,889.214***
3~4인	3.8	13.9	23.4	58.9	100.0(7,017)	
5인 이상	1.5	9.9	19.1	69.5	100.0(1,170)	
가구주 성						
남성	12.6	19.1	21.2	47.0	100.0(12,165)	2,582.520***
여성	50.2	27.3	12.2	10.2	100.0(2,813)	
가구주 연령						
15~29세	9.1	40.3	28.3	22.3	100.0(876)	
30~39세	3.4	18.3	30.5	47.8	100.0(2,866)	5,001.462***
40~49세	5.7	14.7	19.7	59.9	100.0(3,739)	
50~59세	11.5	17.6	18.7	52.1	100.0(3,083)	
60세 이상	49.9	25.4	11.1	13.5	100.0(4,417)	

주: *** p<.001
자료: <표 10-1>과 동일

<표 10-6>과 같이 가구 및 가구주 특성에 따른 월 가구소비의 분포는 소득수준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동부지역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구주 연령이 40~49세인 가구가, 그리고 남성가구주 가구가 높은 소비지출 분포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득규모에 따라 소비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생계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의·식·주 비용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에서도 소비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 및 소비지출의 수준이 99만원 이하인 가구의 경우 경제생활의 어려움이 짐작된다. 특히 본 조사결과, 농촌지역과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제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어서 이들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확대가 추가적으로 필

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2006년과 비교할 경우, 가구 소비지출 수준 분포는 3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증가하고 300만원 미만은 모두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가구소득 수준이 증가함과 동시에 소비지출 수준도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표 10-6〉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구 소비지출 수준 분포

(단위: %, 명)

특성	99만원 이하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만원 이상	계(수)	χ^2
2006[1)]	21.7	31.0	24.7	22.6	100.0(14,301)	
2009[2)]	19.9	27.6	24.2	28.2	100.0(14,986)	
지역						
동부	15.5	28.0	25.8	30.7	100.0(12,063)	811.802***
읍·면부	38.2	26.2	17.8	17.8	100.0(2,923)	
가구규모						
2인 이하	41.6	37.7	13.6	7.2	100.0(6,797)	6,133.738***
3~4인	2.3	20.6	34.4	42.7	100.0(7,018)	
5인 이상	0.4	10.9	25.3	63.3	100.0(1,169)	
가구주 성						
남성	12.4	26.6	27.3	33.7	100.0(12,172)	2,827.852***
여성	52.6	32.2	11.1	4.2	100.0(2,814)	
가구주 연령						
15~29세	17.8	53.2	22.7	6.3	100.0(874)	
30~39세	4.3	31.7	36.1	27.9	100.0(2,865)	5,348.838***
40~49세	4.8	18.4	28.0	48.7	100.0(3,744)	
50~59세	9.8	24.0	26.6	39.6	100.0(3,083)	
60세 이상	50.4	30.2	12.0	7.4	100.0(4,418)	

주: *** p<.001
자료: <표 10-1>과 동일

<표 10-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로 월 가구저축의 분포를 보면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높았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구주 연령이 50~59세인 가구가, 그리고 남성가구주 가구가 여성가구주 가구보다 높은 소득분포를 보였다. 특히 가구주 연령대가 40대일 때 가장 소득과 소비가 높아 저축수준이 낮고, 자녀성장이 대부분 완료된 50대에는 저축수준이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구 저축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10-7〉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구 저축 수준 분포

(단위: %, 명)

특성	99만원 이하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만원 이상	계(수)	χ^2
전체	76.7	15.2	4.8	3.3	100.0(14,980)	
지역						
동부	74.0	16.8	5.4	3.8	100.0(12,056)	259.202***
읍·면부	87.9	8.6	2.2	1.3	100.0(2,923)	
가구규모						
2인 이하	85.6	10.3	2.4	1.6	100.0(6,797)	595.952***
3~4인	68.9	19.9	6.6	4.6	100.0(7,012)	
5인 이상	71.0	15.9	7.6	5.5	100.0(1,170)	
가구주 성						
남성	73.5	17.0	5.6	3.9	100.0(12,165)	382.137***
여성	90.5	7.4	1.3	0.8	100.0(2,813)	
가구주 연령						
15~29세	74.0	20.0	4.0	1.9	100.0(874)	699.943***
30~39세	69.8	20.5	6.4	3.4	100.0(2,865)	
40~49세	73.1	17.5	5.2	4.2	100.0(3,743)	
50~59세	68.8	18.9	6.9	5.4	100.0(3,081)	
60세 이상	90.1	6.5	2.0	1.4	100.0(4,415)	

주: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라. 주관적 사회·경제수준

조사대상가구의 주관적인 사회·경제적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자립정도와 가족의 사회적 지위 인식정도를 살펴보았다.

1) 경제적 수준

조사대상가구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적 자립정도를 조사한 결과, '자립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은 전체의 54.1%였고, '보통'이라는 인식은 19.9%, '자립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은 25.8%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2006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

은 12.2%pt 상승하였고, 보통이라는 응답은 9.4%pt 감소하였으며,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은 3.0%pt 감소하였다.

〈표 10-8〉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경제적 자립정도

(단위: %, 명)

특성	전혀 자립못함	별로 자립못함	보통	약간 자립함	상당히 자립함	모르겠음	계(수)	χ^2
2006	10.1	18.7	29.3	16.9	25.0	-	100.0(14,436)	
2009	8.4	17.4	19.9	22.8	31.3	0.1	100.0(14,970)	
지역								
동부	7.7	16.4	19.6	22.0	34.2	0.1	100.0(12,045)	252.291***
읍·면부	11.5	21.5	21.3	25.9	19.7	0.1	100.0(2,926)	
가구규모								
2인 이하	15.3	21.5	18.3	21.0	23.8	0.0	100.0(6,800)	1,095.673***
3~4인	2.8	13.5	21.3	24.2	38.0	0.2	100.0(7,007)	
5인 이상	2.1	16.6	21.2	24.8	35.3	-	100.0(1,163)	
가구주 성								
남성	4.7	15.3	20.5	24.4	35.0	0.1	100.0(12,153)	1,574.745***
여성	24.6	26.2	17.6	15.8	15.8	0.1	100.0(2,817)	
가구주 연령								
15~29세	6.9	15.4	22.2	23.0	32.5	0.1	100.0(875)	
30~39세	2.5	12.2	21.7	24.8	38.6	0.3	100.0(2,856)	1,492.748***
40~49세	3.4	14.7	20.6	23.5	37.6	0.1	100.0(3,743)	
50~59세	5.3	15.0	20.7	23.1	35.7	0.1	100.0(3,080)	
60세 이상	19.1	25.0	17.2	20.7	18.1	-	100.0(4,419)	

주: *** p<.001
자료: <표 10-1>과 동일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다는 비율은 동부지역이 56.2%, 읍·면부지역은 45.6%로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높았다. 이는 농촌지역의 경우 재산규모, 부채규모 및 소득과 소비지출 등에서 나타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다는 비율은 3~4인 가구가 62.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인 이상 가구 60.1%, 2인 이하 가구 44.8%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다는 비율은 2인 이하 가구가 36.8%로 가장 높았고, 5인 이상 가구 18.7%, 3~4인 가구는 16.3%로 가장 낮았다. 이는 2인

이하 가구는 가족주기 상으로 볼 때 가족형성기 또는 가족축소기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였거나 성인 자녀의 독립으로 소득원이 감소하고, 3인 이상 가구는 가족확대완료기로 접어들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는 시기인 것으로 설명된다.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경제적 자립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 사회적 수준

조사대상가구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가족의 사회적 지위 정도를 살펴본 결과, '중산층'이라는 인식은 전체의 54.2%였고, '하층'이라는 인식은 43.6%, '상층'이라는 인식은 2.3%로 나타나 가족의 사회적 지위가 상류층에 속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특히 최저계층인 '하하층'이라는 응답이 14.0%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로도 중산층 또는 하층이라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고, 일부만이 가족의 사회적 지위가 상층에 속하는 것으로 인지하였다. 특히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여성가구주인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많을수록 최하층에 속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동 자료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10-9〉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족의 사회적 지위 인지정도

(단위: %, 명)

특성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	계(수)	χ^2
전체	0.3	1.1	0.9	7.9	26.1	20.2	15.5	14.1	14.0	100.0(14,944)	
지역											
동부	0.3	1.1	1.0	8.4	27.3	20.8	15.0	13.0	13.0	100.0(12,029)	186.444***
읍·면부	0.3	0.7	0.6	5.5	21.2	17.4	17.4	18.6	18.3	100.0(2,915)	
가구규모											
2인 이하	0.2	0.9	0.7	5.3	21.0	16.6	16.0	17.7	21.6	100.0(6,779)	975.541***
3~4인	0.3	1.0	0.9	9.7	30.7	23.1	15.0	11.1	8.1	100.0(7,000)	
5인 이상	0.5	1.9	2.0	11.8	28.2	23.5	15.2	11.0	5.9	100.0(1,163)	
가구주 성											
남성	0.3	1.1	1.0	8.9	28.5	21.4	15.6	12.7	10.3	100.0(12,140)	1,013.601***
여성	0.1	0.7	0.6	3.2	15.8	14.7	14.7	20.0	30.1	100.0(2,805)	
가구주 연령											
15~29세	0.1	0.7	0.7	7.8	35.1	26.5	12.6	12.0	4.6	100.0(873)	
30~39세	0.2	0.8	1.1	8.2	32.7	25.3	14.7	10.5	6.4	100.0(2,858)	1,131.034***
40~49세	0.2	1.3	1.1	11.0	28.8	20.7	14.0	11.7	11.1	100.0(3,732)	
50~59세	0.5	1.2	0.9	8.2	28.2	18.2	15.9	13.9	12.8	100.0(3,075)	
60세 이상	0.2	0.9	0.6	4.7	16.4	16.5	17.4	18.9	24.2	100.0(4,407)	

주: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제2절 주거유형 및 주거소유

1. 주거유형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로 현재 거주하는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표 10-10>과 같다. 조사대상가구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은 42.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단독주택'으로 41.1%였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에 비해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읍·면부지역은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를 2006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동부지역이 62.7%의 비율을 보여 2006년의 63.3%에 비해 0.6%pt 감소하였고,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읍·면부지역의 경우 65.6%로 나타나 2006년의 69.8%에 비해 4.2%pt 감소하였다.

단독주택 거주비율은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29세 이하의 젊은 연령층과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의 경우, 그리고 가구주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아파트 거주비율은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30~40대인 경우, 그리고 고학력층의 가구주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생활이 안정적인 가구일수록 아파트 거주를 선호하며, 향후 일반적 주거형태로서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동 결과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10-10〉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현 거주주택의 유형

(단위: %, 명)

특성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계(수)	X^2
2006[1)]	40.6	43.3	3.2	9.7	3.3	100.0(14,483)	
2009[2)]	41.1	42.5	3.8	10.6	2.0	100.0(14,998)	
지역							
동부	35.2	46.6	3.8	12.3	2.2	100.0(12,071)	961.187***
읍·면부	65.6	25.7	4.1	3.3	1.3	100.0(2,927)	
월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64.7	21.8	4.5	7.7	1.3	100.0(2,949)	
100~199만원	54.0	28.2	4.1	11.0	2.7	100.0(3,091)	1,959.692***
200~299만원	37.5	41.1	4.8	14.0	2.6	100.0(2,927)	
300만원 이상	24.6	60.8	2.9	10.1	1.7	100.0(6,010)	
가구주 성							
남성	37.4	46.4	3.9	10.8	1.5	100.0(12,180)	518.228***
여성	57.1	25.7	3.7	9.6	4.0	100.0(2,818)	
가구주 연령							
15~29세	50.2	27.6	3.1	12.5	6.6	100.0(874)	
30~39세	27.9	51.3	3.8	14.3	2.7	100.0(2,866)	1,127.857***
40~49세	30.0	53.2	3.9	11.5	1.4	100.0(3,749)	
50~59세	41.0	44.8	3.5	8.9	1.8	100.0(3,085)	
60세 이상	57.4	29.1	4.1	8.1	1.2	100.0(4,423)	
가구주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1.3	24.5	4.2	8.8	1.3	100.0(4,530)	1,646.521***
고등학교	39.7	40.0	4.5	13.7	2.1	100.0(5,220)	
대학 이상	25.1	60.6	2.9	9.0	2.5	100.0(5,247)	

주: *** p<.001
자료: <표 10-1>과 동일

2. 주거소유형태

<표 10-11>과 같이 조사대상가구의 현 거주주택의 소유형태를 보면 전체의 57.1%가 '자가'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전세' 20%, '전·월세' 12.6%, '월세' 2.7% 등의 순이었다. 이를 2006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2009년에는 2006년에 비해 자가와 전세는 각각 0.4%pt, 0.3%pt 증가하였고, 전·월세와 월세는 각각 2%pt, 1.1%pt 감소하였다.

〈표 10-11〉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주택소유 유형

(단위: %, 명)

특성	자가	전세	전·월세	월세	기타	계(수)	χ^2
2006	56.7	19.7	14.6	3.8	5.2	100.0(14,482)	
2009	57.1	20.0	12.6	2.7	7.5	100.0(14,999)	
지역							
동부	54.0	23.3	14.4	2.6	5.7	100.0(12,073)	852.972***
읍·면부	70.1	6.6	5.3	3.1	14.9	100.0(2,926)	
월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48.4	14.1	15.8	5.0	16.7	100.0(2,949)	
100~199만원	47.4	18.3	21.9	4.5	7.9	100.0(3,093)	1,417.140***
200~299만원	53.5	24.7	13.9	2.2	5.7	100.0(2,926)	
300만원 이상	68.1	21.6	5.6	0.9	3.7	100.0(6,011)	
가구주 성							
남성	61.8	20.1	9.9	2.2	5.9	100.0(12,182)	911.003***
여성	36.6	19.8	24.5	4.7	14.3	100.0(2,817)	
가구주 연령							
15~29세	13.7	31.5	37.2	7.4	10.2	100.0(874)	
30~39세	42.7	33.3	15.2	2.0	6.8	100.0(2,868)	1,973.564***
40~49세	56.1	23.3	12.7	2.9	4.9	100.0(3,749)	
50~59세	68.2	13.8	11.1	2.8	4.1	100.0(3,086)	
60세 이상	68.1	10.8	7.1	2.0	12.0	100.(4,423)	
가구주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0.3	12.5	12.0	3.7	11.5	100.0(4,529)	439.814***
고등학교	56.2	20.9	14.8	2.8	5.2	100.0(5,222)	
대학 이상	55.2	25.7	11.0	1.7	6.3	100.0(5,247)	

주: *** p<.001
자료: <표 10-1>과 동일

지역별 자가소유율은 읍·면부지역(70.1%)이 동부지역(54%)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며, 전세율은 동부지역(23.3%)이 읍·면부지역(6.6%)에 비해 약 3배정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 등으로 인한 도시와 농촌간 주택공급여건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동부지역은 자가소유 및 전세비율이 증가하고, 전·월세 및 월세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읍·면부지역은 자가소유 및 전세 비율은 감소하고, 전·월세 및 월세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또한 자가소유율은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가구주 연령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난 반면, 전세율은 가구주의 성별과는 큰 관련이 없었으며,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소득이 200~299만원 이하인 경우, 가구주의 연령대가 40대 미만인 젊은 연령층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대체로 주택소유형태가 가구의 경제수준 및 가구주의 경제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주택소유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족소유의 집(자가)이 있는 경우의 소유명의는 <표 10-12>와 같다. 주택소유형태가 자가인 경우 소유명의는 63.2%가 '남편'이었고, '부인' 25.3%이었으며, '부부공동명의'인 비율은 3.8%로 미미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주택소유는 소유자의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므로 소유명의를 대부분 부인보다 경제적 능력을 가진 가구주인 남편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로도 대체로 주택소유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구주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경제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젊은 연령층 또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주택소유주가 직계존속 공동명의 등 기타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주택소유가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는 도시지역과 가구소득 수준이 높은 고학력 3대의 젊은 연령층에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족소유의 집(자가)이 있는 경우 소유명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10-12〉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족소유의 집(자가)이 있는 경우 소유명의

(단위: %, 명)

특성	남편	부인	부부 공동명의	기타	계(수)	X^2
2006	61.3	25.7	2.5	10.5	100.0(8,187)	
2009	63.2	25.3	3.8	7.7	100.0(8,562)	
지역						
동부	62.9	25.2	4.5	7.4	100.0(6,512)	33.226***
읍·면부	64.0	25.7	1.8	8.5	100.0(2,050)	
월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51.8	40.4	0.6	7.2	100.0(1,427)	
100~199만원	62.7	23.9	1.6	11.8	100.0(1,467)	373.078***
200~299만원	64.8	21.5	3.5	10.2	100.0(1,564)	
300만원 이상	66.7	22.0	5.9	5.4	100.0(4,091)	
가구주 성						
남성	71.5	18.2	4.3	6.0	100.0(7,530)	2,191.675***
여성	2.8	77.2	0.2	19.8	100.0(1,032)	
가구주 연령						
15~29세	42.0	5.9	5.9	46.2	100.0(119)	
30~39세	54.6	19.0	7.8	18.5	100.0(1,225)	752.572***
40~49세	63.2	23.4	6.5	6.9	100.0(2,104)	
50~59세	69.0	24.1	2.5	4.4	100.0(2,102)	
60세 이상	63.4	30.8	1.2	4.6	100.0(3,011)	
가구주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9.7	33.2	1.2	5.9	100.0(2,730)	252.179***
고등학교	65.6	22.6	3.3	8.5	100.0(2,934)	
대학 이상	63.9	20.6	6.9	8.6	100.0(8,562)	

주: 1) 가족소유의 집(자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 분석; 2) *** p<.001
자료: <표 10-1>과 동일

제3절 가족생활의 질(質)

15~64세의 배우자가 있는 조사대상가구의 가족생활의 질(質)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정행복의 중요요건, 가족생활 비교(1년전 대비), 가족생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1. 가정행복의 중요요건

가정행복의 중요요건 1순위로는 '가족의 건강'이 60.3%로 월등하게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정의 안정' 22.2%, '권력이나 재산' 6.0%, '자식이 사회에 나가 제 구실하기' 5.4%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는 '가정의 안정'이 33.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족의 건강' 25.2%, '자식이 사회에 나가 제 구실하기' 15.4%, '권력이나 재산' 13.1%로 나타났다. 따라서 15~64세 기혼가구에 있어 가정행복의 중요요건은 '가족의 건강'과 '가정의 안정'임을 알 수 있다.

〈표 10-13〉 15~64세 기혼가구의 가정행복의 중요요건

(단위: %, 명)

요건	1순위	2순위
가족원 모두 일에 성공	3.8	5.6
가정이 안정	22.2	33.2
권력이나 재산	6.0	13.1
배우자의 경제·사회활동	1.7	5.0
자식이 사회에 나가 제 구실하기	5.4	15.4
효성이 뛰어난 자식들	0.4	2.0
가족의 건강	60.3	25.2
기타	0.2	0.3
없음	-	0.3
계(수)	100.0(14,999)	100.0(14,999)

자료: 본 조사결과

이러한 가정행복의 중요요건을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 10-14>와 같이 가구 및 가구주 특성에 상관없이 가족의 건강이 모두 1순위를 차지하였다. 단,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남성가구주 가구인 경우, 가구주 연령이 낮은 젊은 계층일수록,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고 취업상태인 경우 가정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가족 건강에 이어 중요한 가정행복의 요건으로 나타났다. 동 자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10-14〉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정행복의 중요요건(1순위)

(단위: %, 명)

특성	① 가족원 모두 일에 성공 ③ 권력이나 재산 ⑤ 자식이 사회에 나가 제 구실하기 ⑦ 가족의 건강						② 가정이 안정 ④ 배우자의 경제·사회활동 ⑥ 효성이 뛰어난 자식들 ⑧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수)	χ^2
전체	3.8	22.2	6.0	1.7	5.4	0.4	60.3	0.2	100.0(14,999)	
지역										
동부	4.1	23.8	6.1	2.0	5.1	0.3	58.5	0.2	100.0(12,072)	173.580***
읍·면부	2.5	15.6	5.7	0.5	6.9	0.6	68.0	0.2	100.0(2,927)	
월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3.6	14.2	7.7.	0.5	7.5	0.6	65.8	0.2	100.0(2,951)	
100~199만원	4.4	19.9	9.2	1.4	5.9	0.4	58.7	0.2	100.0(3,092)	400.676***
200~299만원	3.9	24.3	6.6	2.4	4.6	0.1	57.9	0.3	100.0(2,926)	
300만원 이상	3.6	26.3	3.3	2.2	4.5	0.3	59.6	0.2	100.0(6,011)	
가구주 성										
남성	3.7	23.3	5.5	2.0	5.0	0.3	60.0	0.2	100.0(12,182)	128.355***
여성	4.3	17.4	8.2	0.5	7.3	0.6	61.7	0.1	100.0(2,817)	
가구주 연령										
15~29세	7.4	35.1	10.2	0.5	2.2	0.3	44.2	0.1	100.0(874)	
30~39세	4.6	28.0	7.1	2.8	1.8	0.1	55.3	0.2	100.0(2,867)	691.076***
40~49세	3.1	25.2	5.3	2.4	4.3	0.3	59.1	0.3	100.0(3,749)	
50~59세	4.2	20.2	5.4	1.8	6.5	0.3	61.4	0.3	100.0(3,084)	
60세 이상	2.9	14.6	5.4	0.6	8.6	0.7	67.0	0.2	100.0(4,424)	
가구주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2	13.6	6.8	0.9	8.5	0.6	66.2	0.1	100.0(4,530)	471.741***
고등학교	3.9	23.5	6.3	2.1	4.7	0.3	59.1	0.1	100.0(5,223)	
대학 이상	4.3	28.2	5.0	2.0	3.4	0.2	56.4	0.4	100.0(5,248)	
가구주 취업여부										
취업	3.9	24.0	5.8	2.0	5.0	0.3	58.8	0.2	100.0(11,356)	121.534***
비취업	3.7	16.6	6.6	1.0	6.7	0.5	64.9	0.1	100.0(3,642)	

주: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2. 가족생활 비교(1년전 대비)

조사대상 기혼가구의 1년전 대비 가족생활을 비교한 결과, 가족생활이 '더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전체의 9.9%에 불과하였고, '동일하다'는 응답이 55.6%로 가장 많았으며, '더 나빠졌다'는 부정적인 응답도 34.2%에 달했다.

가구 및 가주주 특성별로 살펴보면 1년 전 대비 가족생활의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모두 많았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남성가구주 가구일 경우,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주가 고학력이고 취업상태인 경우 1년전에 비해 가족생활이 더 좋아졌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소득이 99만원 이하이거나, 가구주가 중학교 이하의 저학력이거나, 가구주가 비취업 상태인 경우에는 가족생활이 더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족생활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10-15〉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족생활 비교(1년전 대비)

(단위: %, 명)

특성	더 나빠짐	동일함	더 좋아짐	모르겠음	계(수)	χ^2
전체	34.2	55.6	9.9	0.4	100.0(14,999)	
지역						
동부	33.9	55.4	10.3	0.4	100.0(12,072)	14.749**
읍·면부	35.1	56.5	8.1	0.2	100.0(2,927)	
월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47.3	49.5	2.9	0.2	100.0(2,949)	
100~199만원	41.9	49.9	7.8	0.5	100.0(3,093)	740.151***
200~299만원	34.1	55.2	10.4	0.4	100.0(2,927)	
300만원 이상	23.9	61.6	14.2	0.3	100.0(6,010)	
가구주 성						
남성	33.1	56.0	10.6	0.4	100.0(12,181)	53.744***
여성	38.7	54.0	6.9	0.4	100.0(2,818)	
가구주 연령						
15~29세	18.2	58.9	21.7	1.1	100.0(874)	
30~39세	28.1	53.7	17.4	0.8	100.0(2,867)	682.828***
40~49세	32.7	56.7	10.3	0.2	100.0(3,749)	
50~59세	37.9	53.8	8.1	0.2	100.0(3,086)	
60세 이상	39.9	56.5	3.5	0.2	100.0(4,423)	
가구주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3.5	52.0	4.4	0.1	100.0(4,530)	596.524***
고등학교	36.5	52.8	10.3	0.3	100.0(5,222)	
대학 이상	23.7	61.4	14.2	0.6	100.0(5,247)	
가구주 취업여부						
취업	31.1	56.5	12.0	0.4	100.0(11,356)	347.192***
비취업	43.6	52.9	3.2	0.3	100.0(3,642)	

주: ** p<.01,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표 10-16>과 같이 가족생활이 1년전에 비해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경우,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78.7%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의 건강'도 17.0%로 많았다.

〈표 10-16〉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족생활이 더 나빠진 주된 이유(1년전 대비)

(단위: %, 명)

특성	① 가족간의 대화나 공유시간 부족 ② 가족원이 함께 하는 문화생활이 거의 없음 ③ 경제적 어려움 ④ 가족이 사회에 부적응 ⑤ 가족문제를 가족 밖에서 해결 ⑥ 이웃이나 친구들과 교제가 거의 없음 ⑦ 가족원의 건강상의 이유 ⑧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수)	χ^2
전체	1.5	1.3	78.7	0.8	0.3	0.2	17.0	0.1	100.0(5,120)	
지역										
동부	1.7	1.4	81.7	0.8	0.3	0.2	13.8	0.1	100.0(4,093)	160.762***
읍·면부	0.9	0.9	66.6	1.1	0.3	-	30.1	0.2	100.0(1,027)	
월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0.9	0.6	60.9	0.6	0.3	0.2	36.5	0.1	100.0(1,396)	
100~199만원	0.6	1.1	81.1	0.8	0.2	0.2	16.0	0.1	100.0(1,297)	
200~299만원	1.9	2.6	87.0	1.0	0.8	0.2	6.3	0.1	100.0(995)	
300만원 이상	2.7	1.4	87.9	0.9	0.1	0.1	6.6	0.3	100.0(1,433)	
가구주 성										
남성	1.6	1.5	82.1	1.0	0.2	0.2	13.2	0.1	100.0(4,032)	209.823***
여성	1.0	0.6	66.1	0.2	0.6	0.2	31.1	0.3	100.0(1,088)	
가구주 연령										
15~29세	4.4	2.5	86.9	0.6	-	0.6	5.0	-	100.0(160)	
30~39세	2.4	2.2	89.4	0.7	0.1	0.4	4.6	0.1	100.0(804)	
40~49세	2.3	0.9	89.7	0.7	0.3	-	6.0	0.1	100.0(1,224)	
50~59세	1.3	1.7	85.8	1.8	0.6	0.2	8.1	0.5	100.0(1,169)	
60세 이상	0.5	0.8	60.5	0.4	0.2	0.2	37.3	-	100.0(1,765)	
가구주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5	0.7	65.9	0.9	0.3	0.2	31.6	-	100.0(1,970)	
고등학교	1.5	1.6	87.5	0.6	0.4	0.2	8.1	0.2	100.0(1,904)	
대학 이상	3.3	1.9	85.2	1.2	0.3	0.2	7.5	0.3	100.0(1,247)	
가구주 취업여부										
취업	1.8	1.6	85.4	0.9	0.3	0.2	9.7	0.1	100.0(3,533)	
비취업	0.9	0.7	63.6	0.8	0.3	0.2	33.4	0.1	100.0(1,589)	

주: 1) 가족생활이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경우만 분석; 2) *** p<.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소득수준별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남성가구주 가구인 경우, 가구주 연령대가 40대인 경우, 가구주의 학력이 고등학교 수준인 경우, 가구주가 취업상태인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생활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월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여성가구주 가구인 경우,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가구주가 중학교 이하의 저학력인 경우, 가구주가 비취업 상태인 경우에는 1년전 대비 가족생활이 악화된 이유로 가족원의 건강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동 자료에서는 지역과 가구주의 성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가족생활 만족도

가족내에서의 응답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만족'을 포함하여 '만족한다'는 응답은 절반에 가까운 48.5%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라는 응답이 41.9%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가족내 위치와 역할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42점이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읍·면부지역보다 약간 많았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남성가구주 가구인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젊을수록,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주가 취업상태인 경우 가족내에서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도 전체 평균점수보다 높았다. 동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10-17〉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족내에서 본인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값 (T값)
전체	0.6	9.0	41.9	44.7	3.8	100.0(14,983)		3.42	
지역									
동부	0.6	9.1	41.2	44.9	4.2	100.0(12,059)	36.508***	3.43	(3.340**)
읍·면부	0.4	8.9	45.0	43.6	2.1	100.0(2,925)		3.38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5	15.7	49.7	31.7	1.4	100.0(2,940)		3.16	
100~199만원	0.7	10.7	46.9	39.5	2.2	100.0(3,088)	818.340***	3.32	277.236***
200~299만원	0.4	8.0	43.4	45.2	3.0	100.0(2,925)		3.42	
300만원 이상	0.2	5.4	34.9	53.3	6.1	100.0(6,010)		3.60	
가구주 성									
남성	0.5	8.6	40.7	46.2	4.1	100.0(12,174)	96.103***	3.45	(9.538***)
여성	0.9	11.1	47.5	38.2	2.3	100.0(2,809)		3.30	
가구주 연령									
15~29세	-	3.7	35.9	51.6	8.8	100.0(874)		3.66	
30~39세	0.4	6.9	39.7	47.5	5.6	100.0(2,864)	283.203***	3.51	56.288***
40~49세	0.7	9.0	40.0	45.7	4.6	100.0(3,746)		3.44	
50~59세	0.6	10.3	42.9	43.2	3.0	100.0(3,084)		3.38	
60세 이상	0.7	10.6	45.6	41.7	1.4	100.0(4,414)		3.32	
가구주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8	12.6	49.3	36.3	1.0	100.0(4,523)	683.751***	3.24	308.024***
고등학교	0.6	9.0	43.2	44.6	2.6	100.0(5,217)		3.40	
대학 이상	0.4	6.0	34.4	51.9	7.3	100.0(5,242)		3.60	
가구주 취업여부									
취업	0.4	7.8	40.3	47.1	4.3	100.0(11,350)	230.893***	3.47	(15.266***)
비취업	1.2	12.7	46.9	37.0	2.1	100.0(3,634)		3.26	

주: ** p<.01,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가족내에서의 가사노동 분담 정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만족'을 포함하여 '만족한다'는 응답은 36.8%로 다소 낮았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가족 내 가사노동 분담 정도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21점이다.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이,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을수

록, 남성가구주 가구가, 가구주의 연령이 젊을수록,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주가 취업상태인 경우에 가족 내 가사노동 분담 정도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의 평균점수도 전체 평균점수보다 높았다. 동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가구주의 연령대가 30대 미만인 경우에는 가사노동에 대한 분담 정도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보통이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0-18〉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사노동 분담 정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값 (T값)
전체	1.6	14.8	46.8	34.3	2.5	100.0(14,215)		3.21	
지역									
동부	1.6	14.2	46.6	34.9	2.7	100.0(11,450)	39.771***	3.23	(3.340**)
읍·면부	1.6	17.5	47.8	31.6	1.4	100.0(2,765)		3.14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7	18.4	55.4	23.4	1.1	100.0(2,536)		3.04	
100~199만원	1.0	13.0	51.3	33.4	1.3	100.0(2,902)	314.638***	3.21	55.677***
200~299만원	1.5	14.6	44.9	36.6	2.4	100.0(2,825)		3.24	
300만원 이상	1.9	14.3	42.0	38.1	3.7	100.0(5,935)		3.27	
가구주 성									
남성	1.8	15.2	44.5	35.9	2.7	100.0(11,865)	174.994***	3.23	(9.538***)
여성	0.6	13.1	58.8	26.0	1.5	100.0(2,350)		3.15	
가구주 연령									
15~29세	0.5	5.9	45.1	42.5	6.0	100.0(769)		3.47	
30~39세	2.2	13.9	43.2	37.0	3.6	100.0(2,734)	207.132***	3.26	30.794***
40~49세	1.9	15.7	46.5	33.2	2.7	100.0(3,651)		3.19	
50~59세	1.6	15.1	46.0	35.2	2.1	100.0(2,986)		3.21	
60세 이상	1.1	16.1	50.6	31.1	1.2	100.0(4,077)		3.15	
가구주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1	18.4	52.1	27.4	1.0	100.0(4,156)	296.383***	3.09	91.224***
고등학교	2.0	13.8	46.3	36.1	1.9	100.0(5,001)		3.22	
대학 이상	1.5	13.0	43.1	38.1	4.3	100.0(5,057)		3.31	
가구주 취업여부									
취업	1.7	14.5	45.5	35.6	2.8	100.0(10,933)	63.766***	3.23	(15.266***)
비취업	1.2	15.8	51.4	30.0	1.6	100.0(3,281)		3.15	

주: ** p<.01,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가족내에서의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만족'을 포함하여 '만족한다'는 응답은 절반 이상인 56.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라는 응답이 35.2%로 많았다. 전체적인 가족 내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54점이다.

〈표 10-19〉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값 (T값)
전체	0.6	7.8	35.2	49.6	6.7	100.0(14,974)		3.54	
지역									
동부	0.6	7.5	35.5	49.0	7.3	100.0(12,050)	45.746***	3.55	(3.200**)
읍·면부	0.6	9.2	34.1	51.8	4.3	100.0(2,924)		3.50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7	14.7	37.0	43.9	2.7	100.0(2,935)		3.31	
100~199만원	0.4	9.5	39.2	46.1	4.9	100.0(3,085)	616.789***	3.45	181.164***
200~299만원	0.4	6.5	36.3	50.0	6.9	100.0(2,926)		3.56	
300만원 이상	0.3	4.2	31.9	53.9	9.7	100.0(6,008)		3.68	
가구주 성									
남성	0.6	7.0	35.2	50.2	7.0	100.0(12,168)	67.730***	3.56	(6.528***)
여성	0.7	11.3	35.4	47.1	5.5	100.0(2,806)		3.45	
가구주 연령									
15~29세	0.2	4.4	25.9	53.0	16.5	100.0(873)		3.81	
30~39세	0.3	5.3	32.4	51.2	10.7	100.0(2,861)	434.402***	3.67	73.253***
40~49세	0.8	6.5	37.2	48.0	7.4	100.0(3,745)		3.55	
50~59세	0.5	8.6	37.4	49.1	4.4	100.0(3,082)		3.48	
60세 이상	0.9	10.5	35.8	49.5	3.3	100.0(4,411)		3.44	
가구주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1	12.2	37.4	46.7	2.6	100.0(4,517)	578.896***	3.38	250.479***
고등학교	0.7	7.2	38.4	48.0	5.8	100.0(5,216)		3.51	
대학 이상	0.3	4.6	30.2	53.7	11.3	100.0(5,241)		3.71	
가구주 취업여부									
취업	0.5	6.4	34.7	50.7	7.7	100.0(11,344)	205.617***	3.59	(12.967***)
비취업	1.2	12.0	37.0	46.0	3.8	100.0(3,631)		3.39	

주: ** p<.01,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이, 소득이 높을수록, 남성가구주 가구가, 가구주의 연령이 젊을수록,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주가 취업상태인 경우에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의 평균점수도 전체 평균점수보다 높았다. 동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가구주의 연령이 40세 미만이거나 대학 이상의 고학력인 경우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0-20>과 같이 이웃 또는 친인척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만족'을 포함하여 '만족한다'는 응답은 절반을 약간 넘는 52.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 41.5%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이웃 또는 친인척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49점이다.

지역별로는 읍·면부지역이, 소득수준별로는 월 99만원 이하 또는 300만원 이상의 가구가,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의 평균점수도 전체 평균점수보다 높았다. 반면, 가구주의 성별과 취업상태와는 관련이 거의 없었다. 동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10-20〉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이웃 또는 친인척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값 (T값)
전체	0.5	6.0	41.5	48.0	4.0	100.0(14,988)		3.49	
지역									
동부	0.5	6.3	44.2	45.5	3.5	100.0(12,064)	232.168***	3.45	(-13.766***)
읍·면부	0.4	4.8	30.5	58.3	6.0	100.0(2,924)		3.65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2	8.8	36.2	49.3	4.6	100.0(2,943)		3.47	
100~199만원	0.6	8.0	44.1	44.1	3.3	100.0(3,089)	234.601***	3.42	33.887***
200~299만원	0.4	6.4	44.2	45.7	3.4	100.0(2,925)		3.45	
300만원 이상	0.1	3.4	41.6	50.5	4.4	100.0(6,008)		3.56	
가구주 성									
남성	0.4	5.4	41.8	48.4	3.9	100.0(12,176)	42.412***	3.50	(2.640**)
여성	0.6	8.4	40.1	46.2	4.6	100.0(2,812)		3.46	
가구주 연령									
15~29세	0.5	9.3	47.9	36.8	5.6	100.0(873)		3.38	
30~39세	0.5	5.9	45.3	44.2	4.2	100.0(2,867)	170.212***	3.46	23.274***
40~49세	0.6	5.9	44.1	45.5	3.8	100.0(3,748)		3.46	
50~59세	0.3	6.2	41.7	48.7	3.1	100.0(3,082)		3.48	
60세 이상	0.5	5.3	35.6	54.3	4.4	100.0(4,418)		3.57	
가구주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6	6.4	36.5	52.6	3.9	100.0(4,523)	104.629***	3.53	19.088***
고등학교	0.5	6.9	43.5	45.7	3.4	100.0(5,219)		3.45	
대학 이상	0.3	4.7	43.9	46.3	4.7	100.0(5,243)		3.50	
가구주 취업여부									
취업	0.4	5.4	42.1	48.0	4.1	100.0(11,352)	40.673***	3.50	(2.930**)
비취업	0.8	7.8	39.7	48.1	3.7	100.0(3,638)		3.46	

주: ** p<.01,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가족의 의식주 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만족'을 포함하여 '만족한다'는 응답은 36.8%로 다소 적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49.6%로 가장 많았다. 전체적인 가족의 의식주 수준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25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남성가구주 가구가, 가구주의 연령이 40세 미만일수록,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주가 취업상태인 경우 가족의 의식주 수준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의 평균점수도 전체 평균점수보다 높았다. 동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10-21〉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주 특성별 가족의 의식주 수준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값 (T값)
전체	0.9	12.8	49.6	34.1	2.7	100.0(14,986)		3.25	
지역									
동부	0.9	12.0	49.0	35.1	3.0	100.0(12,062)	69.417***	3.27	(7.777***)
읍·면부	0.8	15.9	51.7	30.2	1.4	100.0(2,925)		3.15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2.6	28.3	51.3	17.0	0.7	100.0(2,946)		2.85	
100~199만원	0.9	17.8	54.1	25.9	1.3	100.0(3,088)	1,973.132***	3.09	686.053***
200~299만원	0.7	9.6	54.7	32.9	2.1	100.0(2,924)		3.26	
300만원 이상	0.1	4.1	44.0	47.2	4.6	100.0(6,008)		3.52	
가구주 성									
남성	0.7	10.9	49.2	36.3	2.8	100.0(12,174)	294.874***	3.30	(15.507***)
여성	1.8	20.6	50.9	24.6	2.1	100.0(2,812)		3.05	
가구주 연령									
15~29세	0.3	4.8	39.5	47.5	7.8	100.0(875)		3.58	
30~39세	0.5	7.6	44.3	43.9	3.6	100.0(2,867)	689.240***	3.42	170.364***
40~49세	0.7	11.5	48.8	35.8	3.2	100.0(3,744)		3.29	
50~59세	0.9	13.5	51.1	32.4	2.2	100.0(3,085)		3.22	
60세 이상	1.4	18.3	54.5	24.9	0.9	100.0(4,416)		3.06	
가구주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	22.1	54.5	21.1	0.7	100.0(4,523)	1,329.738***	2.97	696.815***
고등학교	0.9	11.8	53.0	32.3	2.0	100.0(5,217)		3.23	
대학 이상	0.3	5.7	41.8	47.1	5.0	100.0(5,245)		3.51	
가구주 취업여부									
취업	0.5	9.8	48.7	38.0	3.0	100.0(11,349)	632.703***	3.33	(23.878***)
비취업	2.1	21.9	52.4	22.1	1.5	100.0(3,637)		2.99	

주: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표 10-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족원의 갈등문제 해결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만족'을 포함하여 '만족한다'는 응답은 50.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라는 응답이 40.8%로 많았다. 전체적인 가족원의 갈등문제 해결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46점이다.

지역별로는 관련이 거의 없었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남성가구주 가구가, 가구주의 연령이 젊을수록,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주가 취업상태인 경우 가족원의 갈등문제 해결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의 평균점수도 전체 평균점수보다 높았다. 동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10-22〉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족원의 갈등문제 해결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값 (T값)
전체	0.8	7.7	40.8	46.1	4.5	100.0(14,961)		3.46	
지역									
동부	0.8	7.8	40.8	45.9	4.7	100.0(12,040)	5.986	3.46	(.430)
읍·면부	0.8	7.6	40.8	47.1	3.7	100.0(2,920)		3.45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5	12.5	48.7	34.4	2.9	100.0(2,935)		3.25	
100~199만원	1.2	10.2	44.4	41.4	2.8	100.0(3,078)	610.460***	3.34	205.822***
200~299만원	0.6	7.3	40.2	47.9	4.0	100.0(2,927)		3.47	
300만원 이상	0.3	4.3	35.5	53.4	6.5	100.0(6,002)		3.61	
가구주 성									
남성	0.7	7.1	39.2	48.2	4.8	100.0(12,157)	140.749***	3.49	(11.106***)
여성	0.9	10.3	48.0	37.4	3.4	100.0(2,804)		3.32	
가구주 연령									
15~29세	0.2	6.0	33.4	50.6	9.7	100.0(873)		3.64	
30~39세	0.6	5.8	37.8	49.0	6.8	100.0(2,860)	228.035***	3.56	43.784***
40~49세	1.0	7.5	40.3	46.8	4.4	100.0(3,737)		3.46	
50~59세	0.8	7.6	40.5	47.6	3.5	100.0(3,082)		3.45	
60세 이상	0.8	9.6	44.9	41.8	2.9	100.0(4,408)		3.37	
가구주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2	11.1	46.4	38.9	2.3	100.0(4,513)	501.827***	3.30	248.052***
고등학교	0.7	8.1	42.0	45.7	3.5	100.0(5,212)		3.43	
대학 이상	0.4	4.5	34.8	52.8	7.5	100.0(5,234)		3.62	
가구주 취업여부									
취업	0.7	6.7	39.3	48.3	5.0	100.0(11,333)	170.067***	3.50	(12.964***)
비취업	1.1	11.0	45.6	39.3	3.1	100.0(3,629)		3.32	

주: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만족'을 포함하여 '만족한다'는 응답은 30.2%로 다소 적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39%로 가장 많았다. 전체적인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2.99점으로 가족생활 만족도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남성가구주 가구가, 가구주의 연령이 젊을수록,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주가 취업상태인 경

우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의 평균점수도 전체 평균점수보다 높았다. 동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10-23〉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X^2	평균	F값 (T값)
전체	3.4	27.4	39.0	26.7	3.5	100.0(14,974)		2.99	
지역									
동부	3.3	25.3	39.9	27.7	3.8	100.0(12,049)	166.757***	3.03	(11.562***)
읍·면부	4.0	36.2	35.4	22.5	1.9	100.0(2,925)		2.82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7.0	41.6	36.4	14.1	0.8	100.0(2,942)		2.60	
100~199만원	4.6	32.0	41.4	20.3	1.7	100.0(3,086)	1,286.704***	2.82	454.384***
200~299만원	2.9	28.0	39.7	27.0	2.3	100.0(2,922)		2.98	
300만원 이상	1.3	17.9	38.7	35.9	6.2	100.0(6,006)		3.28	
가구주 성									
남성	3.1	25.8	39.2	28.2	3.8	100.0(12,165)	165.220***	3.04	(12.918***)
여성	5.0	34.7	38.2	20.0	2.2	100.0(2,808)		2.80	
가구주 연령									
15~29세	1.3	15.8	39.1	36.8	7.1	100.0(875)		3.33	
30~39세	2.0	19.9	38.9	33.0	6.1	100.0(2,863)	551.670***	3.21	136.303***
40~49세	3.6	25.4	38.9	28.2	3.9	100.0(3,744)		3.04	
50~59세	3.5	30.4	38.5	25.1	2.5	100.0(3,079)		2.93	
60세 이상	4.6	34.3	39.4	20.3	1.3	100.0(4,415)		2.79	
가구주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5	40.7	37.6	15.4	0.8	100.0(4,518)	1,358.088***	2.65	722.374***
고등학교	3.4	27.7	40.8	25.3	2.8	100.0(5,214)		2.96	
대학 이상	1.6	15.8	38.4	37.7	6.5	100.0(5,243)		3.32	
가구주 취업여부									
취업	2.7	25.2	39.1	29.0	4.0	100.0(11,342)	303.134***	3.07	(17.588***)
비취업	5.8	34.4	38.9	19.3	1.7	100.0(3,631)		2.77	

주: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가족원의 건강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만족'을 포함하여 '만족한다'는 응답은 44.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라는 응답이 31.3%로 많았다. 전체적인 가족원의 건강수준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22점이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남성가구주 가구가, 가구주의 연령이 젊을수록,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주가 취업상태인 경우 가족원의 건강수준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의 평균점수도 전체 평균점수보다 높았다. 동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10-24〉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족원의 건강수준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값 (T값)
전체	3.5	20.5	31.3	40.1	4.6	100.0(14,989)		3.22	
지역									
동부	2.7	17.6	32.1	42.6	5.0	100.0(12,064)	485.780***	3.29	(19.572***)
읍·면부	6.8	32.3	28.2	29.8	2.9	100.0(2,926)		2.90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0.9	48.0	24.7	15.1	1.4	100.0(2,946)		2.48	
100~199만원	4.0	25.8	34.1	33.1	3.0	100.0(3,091)	3,327.004***	3.05	1,207.454***
200~299만원	1.3	14.3	34.9	45.1	4.5	100.0(2,925)		3.37	
300만원 이상	0.7	7.4	31.4	53.5	7.0	100.0(6,007)		3.59	
가구주 성									
남성	2.7	17.1	32.0	43.3	5.0	100.0(12,172)	701.570***	3.31	(24.131***)
여성	7.1	35.3	28.7	26.3	2.6	100.0(2,817)		2.82	
가구주 연령									
15~29세	0.6	6.2	26.5	56.6	10.2	100.0(875)		3.70	
30~39세	0.7	6.7	30.4	54.1	8.1	100.0(2,865)		3.62	
40~49세	1.7	10.1	32.2	50.0	6.0	100.0(3,746)	3,052.620***	3.48	850.248***
50~59세	2.9	18.4	35.8	40.0	3.0	100.0(3,086)		3.22	
60세 이상	7.9	42.5	29.1	19.4	1.1	100.0(4,420)		2.63	
가구주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7.9	41.1	29.4	20.7	1.0	100.0(4,526)	2,808.105***	2.66	1,539.982***
고등학교	2.2	15.2	35.2	43.6	3.7	100.0(5,217)		3.32	
대학 이상	1.0	7.9	29.2	53.3	8.5	100.0(5,245)		3.60	
가구주 취업여부									
취업	1.7	13.7	32.4	46.8	5.4	100.0(11,350)	2,118.223***	3.41	(43.915***)
비취업	9.2	41.6	28.2	19.0	1.9	100.0(3,639)		2.63	

주: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삶에서의 성취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만족'을 포함하여 '만족한다'는 응답은 28.4%로 적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49.4%로 가장 많았

다. 전체적인 삶에서의 성취도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06점이다. 특성별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대체로 많았으나,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남성가구주 가구가, 가구주의 연령이 젊을수록,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주가 취업상태인 경우 삶에서의 성취도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의 평균점수도 전체 평균점수보다 높았다. 동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10-25〉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삶에서의 성취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값 (T값)
전체	1.8	20.4	49.4	27.1	1.3	100.0(14,988)		3.06	
지역									
동부	1.8	20.0	49.0	27.9	1.4	100.0(12,062)	22.897***	3.07	(4.014***)
읍·면부	1.6	22.2	51.1	23.9	1.1	100.0(2,927)		3.01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3.4	33.2	49.1	13.9	0.4	100.0(2,946)		2.75	
100~199만원	2.3	25.4	51.6	20.1	0.6	100.0(3,089)	1,157.348***	2.91	401.747***
200~299만원	1.7	19.0	52.7	25.6	1.0	100.0(2,924)		3.05	
300만원 이상	0.8	12.2	46.8	38.0	2.2	100.0(6,006)		3.29	
가구주 성									
남성	1.6	18.6	49.4	29.0	1.4	100.0(12,177)	212.298***	3.10	(14.468***)
여성	2.8	28.1	49.5	18.8	0.9	100.0(2,812)		2.87	
가구주 연령									
15~29세	0.9	14.0	44.5	36.2	4.4	100.0(872)		3.29	
30~39세	1.6	16.4	48.3	32.0	1.7	100.0(2,867)	315.920***	3.16	60.353***
40~49세	2.2	19.8	47.7	28.7	1.5	100.0(3,749)		3.08	
50~59세	1.7	21.0	49.1	27.3	0.9	100.0(3,081)		3.05	
60세 이상	1.8	24.4	52.7	20.7	0.5	100.0(4,419)		2.94	
가구주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0	28.6	52.5	16.6	0.3	100.0(4,525)	923.100***	2.85	440.224***
고등학교	2.4	20.7	51.4	24.5	0.9	100.0(5,218)		3.01	
대학 이상	1.0	13.0	44.7	38.7	2.6	100.0(5,244)		3.29	
가구주 취업여부									
취업	1.5	18.0	49.2	29.8	1.5	100.0(11,348)	291.845***	3.12	(17.142***)
비취업	2.8	27.8	49.8	18.8	0.7	100.0(3,639)		2.87	

주: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전반적인 가족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만족'을 포함하여 '만족한다'는 응답은 40.2%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가족생활 만족도에 대한 전체 만족도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30점이다.

〈표 10-26〉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전반적인 가족생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값 (T값)
전체	0.7	10.0	49.2	39.0	1.2	100.0(14,977)		3.30	
지역									
동부	0.7	9.4	48.5	40.2	1.2	100.0(12,058)	47.805***	3.32	(6.593***)
읍·면부	0.7	12.4	51.7	34.3	1.0	100.0(2,919)		3.22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3.4	33.2	49.1	13.9	0.4	100.0(2,946)		2.93	
100~199만원	2.3	25.4	51.6	20.1	0.6	100.0(3,089)	1,157.348***	3.17	643.596***
200~299만원	1.7	19.0	52.7	25.6	1.0	100.0(2,924)		3.32	
300만원 이상	0.8	12.2	46.8	38.0	2.2	100.0(6,006)		3.54	
가구주 성									
남성	0.6	8.0	48.3	41.8	1.3	100.0(12,170)	397.772***	3.35	(18.366***)
여성	1.1	18.3	52.8	27.0	0.7	100.0(2,807)		3.08	
가구주 연령									
15~29세	-	4.2	40.7	51.0	4.1	100.0(875)		3.55	
30~39세	0.3	5.3	42.6	49.6	2.2	100.0(2,862)	675.036***	3.48	163.208***
40~49세	0.7	8.2	48.4	41.5	1.2	100.0(3,747)		3.34	
50~59세	0.5	10.7	50.8	37.3	0.6	100.0(3,082)		3.27	
60세 이상	1.1	15.1	54.6	28.9	0.3	100.0(4,413)		3.12	
가구주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1	18.2	56.4	24.1	0.2	100.0(4,523)	1,379.358***	3.04	719.283***
고등학교	0.7	8.9	52.6	37.0	0.7	100.0(5,216)		3.28	
대학 이상	0.2	4.0	39.4	53.9	2.5	100.0(5,237)		3.55	
가구주 취업여부									
취업	0.4	7.4	47.8	43.1	1.4	100.0(11,344)	617.312***	3.38	(23.472***)
비취업	1.6	18.1	53.5	26.2	0.6	100.0(3,634)		3.06	

주: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대체로 높았으나, 가구주의 연령이 40대 미만인 경우에만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보통이라는 응답을 제외하고는 동부지역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남성가구주 가구가, 가구주의 연령이 젊을수록,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주가 취업상태인 경우 전반적인 가족생활에 대해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의 평균점수도 전체 평균점수보다 높았다. 동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제4절 가족관계

1. 부부관계

부부관계는 가사분담 형태와 중요한 집안 사건에 대한 결정방식에 의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부부의 가사분담 형태와 관련하여 8가지 유형으로 접근하였는데 ①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고, 부인은 양육과 가사를 맡음, ②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③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남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④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남편과 부인이 반씩 양육과 가사를 맡음, ⑤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⑥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남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⑦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남편과 부인이 반씩 양육과 가사를 맡음, 그리고 ⑧ 남편이나 부인 중 집에 있는 사람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등이다. 시계열적 분석을 위하여 2006년도와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부의 가사분담 형태를 살펴보면,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고,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는 경우'가 4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고,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는 경우'가 33.4%로 많았다. 그리고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는 경우'도 10.8%로 많았다.

2006년의 조사결과에서는,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는 경우'가 3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남편은 밖

에서 돈을 벌고, 부인은 양육과 가사를 맡는 경우'가 29.7%로 많았다. 그리고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는 경우'도 24.2%였다. 즉,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인의 취업여부를 떠나서 양육과 가사는 주로 부인이 담당하고 있었다(김승권 외, 2006).

2009년 조사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인의 취업여부를 떠나 양육과 가사는 주로 부인이 담당하여 여성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성평등적 측면에서 가사분담을 하는 경우라 할 수 있는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남편과 부인이 반씩 양육과 가사를 맡는 경우'는 5.9%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적인 가치관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남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는 경우도 0.6%가 있었음은 특별한 경우라 하겠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지역에서는 남편이 경제활동을 담당하고 부인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는 비율이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읍·면부 지역에서는 남편과 부인이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되 부인이 주로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직장과 가정에서의 부담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남편이나 부인 중 집에 있는 사람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남편 혼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남편과 부인이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가사와 양육은 모두 부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에 따라서는 남성응답자는 남편과 부인 모두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사와 양육은 부인이 담당한다는 응답이 남편 혼자 돈을 벌고 부인이 가사와 양육을 담당한다는 응답보다 약간 많았고, 여성응답자는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고 부인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다는 비율이 남편과 부인 모두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사와 양육은 부인이 담당한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표 10-27〉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가사분담 형태

(단위: %, 명)

특성	①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고, 부인은 양육과 가사를 맡음 ②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③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남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④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남편과 부인이 반씩 양육과 가사를 맡음 ⑤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⑥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남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⑦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남편과 부인이 반씩 양육과 가사를 맡음 ⑧ 남편이나 부인 중 집에 있는 사람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수)	χ^2
2006	29.7	32.2	0.6	7.4	24.2	0.7	3.9	1.3	100.0(8,905)	
2009	40.2	33.4	0.8	5.9	10.8	0.6	2.4	5.8	100.0(9,311)	
지역										
동부	42.3	30.9	0.6	5.6	11.4	0.6	2.4	6.1	100.0(7,776)	183.686***
읍·면부	29.6	46.1	1.6	7.4	7.9	0.8	2.3	4.3	100.0(1,535)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5.3	17.5	0.2	1.8	21.0	1.8	6.2	36.2	100.0(439)	
100~199만원	40.6	22.1	0.9	3.6	15.0	2.0	4.0	11.9	100.0(1,381)	1,402.513***
200~299만원	45.6	29.2	0.7	4.7	11.7	0.4	2.8	4.8	100.0(2,107)	
300만원 이상	40.0	39.3	0.8	7.3	8.5	0.3	1.5	2.2	100.0(5,381)	
응답자 성										
남성	24.8	29.0	1.4	13.1	14.2	1.9	5.5	10.1	100.0(565)	159.546***
여성	41.2	33.7	0.7	5.4	10.6	0.6	2.2	5.6	100.0(8,746)	
응답자 연령										
15~29세	48.3	22.7	0.5	11.9	10.9	0.2	4.3	1.2	100.0(604)	
30~39세	51.5	29.9	0.9	5.9	9.0	0.2	1.3	1.3	100.0(2,698)	1,580.052***
40~49세	37.2	43.6	0.8	6.3	8.3	0.6	1.5	1.7	100.0(2,951)	
50~59세	35.1	31.9	0.6	4.7	13.2	1.0	3.7	9.9	100.0(2,300)	
60세 이상	20.6	20.1	1.1	3.3	19.2	1.7	4.6	29.5	100.0(757)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9.3	34.9	1.1	4.3	13.4	1.0	3.5	12.5	100.0(2,202)	411.867***
고등학교	41.9	33.9	0.7	5.4	10.5	0.6	2.2	4.8	100.0(4,098)	
대학 이상	45.9	31.7	0.6	7.8	9.3	0.4	1.9	2.3	100.0(3,012)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	4.8	69.2	1.6	12.2	8.2	0.9	2.6	0.6	100.0(4,496)	7,174.233***
비취업	73.3	0.1	0.0	-	13.2	0.4	2.3	10.7	100.0(4,815)	

주: 1) 2006년은 15~59세 기혼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음; 2) 배우자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3) *** p<.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10-1>과 동일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서는 40대 미만의 경우 남편이 혼자서 돈을 벌고 부인이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는 비율이 높았고, 40~60세 미만의 경우에는 남편 혼자서 또는 남편과 부인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면서 가사와 양육은 주로 부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남편 혼자서 또는 남편과 부인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면서 가사와 양육은 주로 부인이 담당하거나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는다는 응답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40대 이하의 경우에는 자녀가 주로 부모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령이므로 대부분의 부인이 집에서 양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면서 가사와 양육은 부인이 전담하는 것보다 남편 혼자 밖에서 돈을 벌고 부인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취업과 관련하여 취업상태에서는 대체로 남편과 부인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면서 가사와 양육은 주로 부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 상태에서는 남편이 혼자 돈을 벌고 부인이 전적으로 양육과 가사를 맡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가사분담 형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기혼가구의 부부권력관계를 일상생활비 지출, 주택매매 및 이사, 투자 및 재산증식, 그리고 자녀양육 및 교육 등의 지표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응답문항으로는 전적으로 남편결정, 대체로 남편결정, 부부공동 결정, 대체로 부인결정, 전적으로 부인결정 등의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시계열적 분석을 위하여 2006년도와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 10-28 참조).

먼저 일상생활비 지출을 살펴보면, '대체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가 41.6%,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 26.6%,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 25.8%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양육 및 교육은 '부부공동 결정'이 54.2%로 가장 많았으나,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는 3.5%에 불과하였으며,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42.4%나 되었다. 따라서 일상생활비 지출은 주로 부인이, 자녀양육 및 교육은 부부공동

또는 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주택매매 및 이사는 '부부공동 결정'이 75.4%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는 12.8%,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11.8%였다. 또한 투자 및 재산증식도 '부부공동 결정'이 67.5%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결정'이 15.5%,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결정'이 17%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일상생활비 지출은 대체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외의 지표인 주택매매 및 이사, 투자 및 재산증식, 자녀양육 및 교육 등은 부부공동 결정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주택매매 및 이사, 투자 및 재산증식 등은 남편이 결정하거나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자녀양육 및 교육에 있어서는 남편보다는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가 현저히 많았다.

따라서 기혼가구의 부부권력관계를 전반적으로 설명하면, 일상생활비 지출과 자녀양육 및 교육은 주로 부인이 결정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부동산이나 투자 등의 재산과 관련된 것은 부부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10-28〉 15~64세 기혼가구의 부부권력관계

(단위: %, 명)

권력관계	전적으로 남편결정	대체로 남편결정	부부공동 결정	대체로 부인결정	전적으로 부인결정	계(수)
일상생활비 지출	1.2	4.8	26.6	41.6	25.8	100.0(9,311)
주택매매 및 이사	3.1	9.7	75.4	8.1	3.7	100.0(9,129)
투자 및 재산증식	3.2	12.3	67.5	11.6	5.4	100.0(9,274)
자녀양육 및 교육	0.6	2.9	54.2	32.7	9.7	100.0(8,750)

주: 1) 배우자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자료: 본 조사결과

일상생활비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부부간에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가구 및 응답자 특성에 의하여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일상생활비 지출은 가구 및 응답자의 특성에 관계없이 부인이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그 정도는 특성에 따라서 상이하였다.

먼저 거주지역별로 보면, 동부지역 거주가구는 일상생활비 지출에 대한 결정은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비율(69.1%)이 읍·면부지역 거주가구(58.5%)보다 높았다. 반면에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비율(4.8%)은 읍·면부지역 거주가구(12.7%)보다 낮았다.

〈표 10-29〉 15~64세 기혼가구의 일상생활비 지출에서의 의사결정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남편결정	대체로 남편결정	부부공동 결정	대체로 부인결정	전적으로 부인결정	계(수)	χ^2
2006[1)]	1.4	4.3	29.0	40.2	25.1	100.0(8,903)	
2009[2)]	1.2	4.8	26.6	41.6	25.8	100.0(9,311)	
지역							
동부	0.9	3.9	26.1	42.4	26.7	100.0(7,776)	161.377***
읍·면부	3.0	9.7	28.8	37.3	21.2	100.0(1,535)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2.5	9.8	30.7	32.7	24.3	100.0(437)	
100~199만원	2.2	7.6	30.8	38.1	21.3	100.0(1,383)	166.801***
200~299만원	1.6	5.5	28.8	41.3	22.8	100.0(2,107)	
300만원 이상	0.8	3.5	24.3	43.2	28.3	100.0(5,372)	
응답자 성							
남성	2.1	12.7	34.6	29.3	21.2	100.0(566)	122.309***
여성	1.2	4.3	26.0	42.3	26.2	100.0(8,746)	
응답자 연령							
15~29세	1.3	5.3	38.9	39.4	15.1	100.0(604)	
30~39세	0.9	4.0	29.1	43.7	22.3	100.0(2,698)	172.687***
40~49세	1.2	3.6	22.9	41.8	30.5	100.0(2,950)	
50~59세	1.5	6.3	24.9	40.7	26.5	100.0(2,301)	
60세 이상	2.0	7.4	26.9	37.3	26.4	100.0(757)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5	8.7	25.2	40.3	23.3	100.0(2,201)	152.395***
고등학교	1.1	4.1	25.5	42.0	27.3	100.0(4,099)	
대학 이상	0.5	3.0	29.1	41.8	25.6	100.0(3,012)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	1.6	5.4	29.4	39.5	24.1	100.0(4,495)	58.494***
비취업	0.9	4.3	23.9	43.5	27.4	100.0(4,816)	

주: 1) 2006년은 15~59세 기혼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음; 2) 배우자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3) *** $p<.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10-1>과 동일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며(300만원 이상 계층 71.5%, 99만원 이하 계층 57.0%), 소득이 낮을수록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99만원 이하 계층 12.3%, 300만원 이상 계층 4.3%).

여성응답자가 남성응답자에 비하여 일상생활비 지출의 결정을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여성응답자 68.5%, 남성응답자 50.5%). 일상생활비 지출결정을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한다는 경우는 40대 연령층에서 가장 많았고(72.3%), 29세 이하 연령층에서 가장 적었으며(54.5%), 반면에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한다는 경우는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많았으나(9.4%), 30대 연령층에서 가장 적었다(4.9%).

응답자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일상생활비의 지출결정을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하는 비율은 고등학교 학력에서 가장 높았고, 중학교 이하 학력에서 낮았다(중학교 이하 63.6%, 고등학교 69.3%). 반대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남편이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결정하는 비율이 높았다(중학교 이하 11.2%, 대학 이상 3.5%). 앞서 제시된 결과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비취업 응답자가 취업응답자보다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일상생활비 결정을 부인이 하는 경우가 높았으며(취업자 63.6%, 비취업자 70.9%), 반대로 남편이 결정하는 비율은 취업자가 다소 높았다(취업자 7.0%, 비취업자 5.2%). 많은 응답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기서 취업자는 취업부인이고, 비취업자는 전업주부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으로 이해된다. 동 자료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2006년과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은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부인이 결정한다는 응답이 약간 상승하였다.

<표 10-30>과 같이 주택매매 및 이사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부부간에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가구특성과 응답자의 특성에 의하여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주택매매 및 이사는 가구 및 응답자의 특성에 관계없이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그 정도는 특성에 따라서 상이하였다.

먼저 거주지역별로 보면, 동부지역 거주가구는 주택매매 및 이사에 대한

결정을 부부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76.2%로 읍·면부지역 거주가구 71.2%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었다. 또한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가구(11.5%)가 읍·면부지역 거주가구(19.6%)보다 낮았던 반면,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가구(12.3%)가 읍·면부지역 거주가구(9.3%)보다 높았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주택매매 및 이사를 부부공동으로 결정하는 비율은 월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았고(300만원 이상 계층 76.8%, 99만원 이하 계층 63.6%),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는 99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이 가장 높았으며(20.4%), 그리고 300만원 이상 소득계층이 가장 낮았다(11.5%). 그러나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99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이 조금 높았을 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성응답자가 남성응답자에 비하여 주택매매 및 이사를 부부공동으로 결정한다고 한 비율이 높았으며(여성 75.9%, 남성 68.0%),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한다는 경우는 남성응답자(20.5%)가 여성응답자(12.3%)보다 다소 많았던 반면,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한다는 경우는 여성응답자(11.9%)가 남성응답자(11.5%)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가구특성과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응답자의 연령별 주택매매 및 이사에 대한 부부간의 의사결정권한을 살펴보면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공동으로 결정하는 비율은 낮았다(29세 이하 77.8%, 60세 이상 69.4%). 반면에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비율은 40~49세가 11.0%로 가장 낮았고, 60세 이상은 17.6%로 가장 높았으며, 동시에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비율은 29세 이하 6.9%로 가장 낮았고, 40~49세가 13.6%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에 따른 주택매매 및 이사에 대한 결정은 부부공동으로 하는 경우는 교육수준에 비례하였으나 큰 차이는 나지 않았다. 즉, 중학교 이하의 학력 소지자는 70.2%였고, 대학 이상의 학력소지자들은 78.5%였다. 반면에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는 중학교 이하의 학력

소지자가 18.4%로 가장 많았고, 대학 이상의 학력소지자는 10.1%로 가장 적었다.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고등학교 학력소지자가 12.4%로 가장 많았다.

〈표 10-30〉 15~64세 기혼가구의 주택매매 및 이사에서의 의사결정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남편결정	대체로 남편결정	부부공동 결정	대체로 부인결정	전적으로 부인결정	계(수)	χ^2
2006[1)]	3.5	10.7	74.7	8.3	2.9	100.0(8,899)	
2009[2)]	3.1	9.7	75.4	8.1	3.7	100.0(9,129)	
지역							
동부	2.6	8.9	76.2	8.3	4.0	100.0(7,679)	83.915***
읍·면부	5.7	13.9	71.2	6.8	2.5	100.0(1,449)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5.3	15.1	63.6	9.6	6.5	100.0(418)	
100~199만원	4.4	10.8	72.5	7.6	4.7	100.0(1,329)	65.747***
200~299만원	3.6	9.2	76.5	7.6	3.2	100.0(2,064)	
300만원 이상	2.4	9.1	76.8	8.2	3.5	100.0(5,304)	
응답자 성							
남성	4.5	16.0	68.0	8.2	3.3	100.0(550)	32.664***
여성	3.0	9.3	75.9	8.1	3.8	100.0(8.578)	
응답자 연령							
15~29세	3.1	12.2	77.8	5.6	1.3	100.0(550)	
30~39세	2.2	8.9	78.7	7.2	3.0	100.0(2,654)	84.173***
40~49세	2.9	8.1	75.5	8.9	4.7	100.0(2,922)	
50~59세	4.1	10.8	72.7	8.4	4.0	100.0(2,264)	
60세 이상	4.3	13.3	69.4	8.9	4.1	100.0(739)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0	13.4	70.2	7.4	4.0	100.0(2,138)	90.724***
고등학교	2.6	9.1	75.9	8.7	3.7	100.0(4,049)	
대학 이상	2.4	7.7	78.5	7.7	3.7	100.0(2,942)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	3.3	9.5	74.4	9.2	3.7	100.0(4,380)	14.872**
비취업	2.9	9.9	76.4	7.1	3.8	100.0(4,749)	

주: 1) 2006년은 15~59세 기혼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음; 2) 배우자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3) ** p<.01, *** p<.001(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10-1>과 동일

비취업자가 취업자보다 주택매매 및 이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부부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취업자 74.4%, 비취업자 76.4%). 또한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는 모두 12.8%였으며,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취업자 12.9%, 비취업자 10.9%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응답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므로 결국 취업자는 취업부인이고 비취업자는 전업주부이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이해된다. 즉, 취업부인이 주택매매 및 이사에 신경 쓸 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주택매매 및 이사는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동 결과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006년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유사한 수준이었다.

<표 10-3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투자 및 재산증식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부부간에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가구특성과 응답자의 특성에 의하여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전술한 주택매매 및 이사의 경우와 같이 이는 가구 및 응답자의 특성에 관계없이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가구특성과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다소 있었다.

먼저 거주지역별로 보면, 동부지역 거주가구는 투자 및 재산증식에 대한 결정을 부부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68.0%로 읍·면부지역 거주가구(65.3%)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가구(14.5%)가 읍·면부지역 거주가구(21.1%)보다 낮았던 반면,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가구(17.6%)가 읍·면부지역 거주가구(13.6%)보다 높았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투자 및 재산증식을 부부공동으로 결정하는 비율은 월가구소득 200~299만원인 계층이 70%로 가장 높았고,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는 99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이 가장 많았으며(20.7%), 200~299만원 소득계층이 가장 적었다(14.2%). 그러나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99만원 이하 소득계층(18.2%)과 300만원 이상 소득계층(17.5%)에서 많게 나타났다.

여성응답자가 남성응답자에 비하여 투자 및 재산증식을 부부공동으로 결정한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여성 67.9%, 남성 61.7%),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한다는 경우는 남성응답자(25.5%)가 여성응답자(14.9%)보다 많았던 반면,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한다는 경우는 여성응답자(17.3%)가 남성응답자(12.9%)보다 다소 많았다.

〈표 10-31〉 15~64세 기혼가구의 투자 및 재산증식에서의 의사결정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남편결정	대체로 남편결정	부부공동 결정	대체로 부인결정	전적으로 부인결정	계(수)	χ^2
2006[1)]	4.5	11.6	67.8	11.9	4.2	100.0(8,991)	
2009[2)]	3.2	12.3	67.5	11.6	5.4	100.0(9,274)	
지역							
동부	2.8	11.7	68.0	12.0	5.6	100.0(7,741)	57.290***
읍·면부	5.4	15.7	65.3	9.4	4.2	100.0(1,531)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4.6	16.1	61.1	11.5	6.7	100.0(435)	
100~199만원	4.1	12.3	67.4	10.7	5.4	100.0(1,370)	26.231*
200~299만원	3.2	11.0	70.0	10.6	5.2	100.0(2,092)	
300만원 이상	2.8	12.5	67.2	12.1	5.4	100.0(5,363)	
응답자 성							
남성	3.4	22.1	61.7	9.3	3.6	100.0(561)	55.879***
여성	3.2	11.7	67.9	11.8	5.5	100.0(8.713)	
응답자 연령							
15~29세	3.0	12.0	73.4	8.3	3.3	100.0(602)	
30~39세	3.1	12.6	67.3	11.9	5.0	100.0(2,690)	44.856***
40~49세	2.7	10.8	67.7	12.7	6.1	100.0(2,936)	
50~59세	3.5	13.0	66.7	11.0	5.8	100.0(2,299)	
60세 이상	4.8	15.1	65.0	10.4	4.7	100.0(749)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0	14.6	65.9	10.2	5.2	100.0(2,187)	32.166***
고등학교	2.5	11.4	67.9	12.6	5.5	100.0(4,083)	
대학 이상	3.5	11.8	68.1	11.3	5.4	100.0(3,003)	
가구주 취업여부							
취업	2.9	11.1	67.7	12.8	5.4	100.0(4,478)	23.585***
비취업	3.4	13.5	67.4	10.4	5.3	100.0(4,797)	

주: 1) 2006년은 15~59세 기혼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음; 2) 배우자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3) * p<.05, *** p<.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10-1>과 동일

응답자의 연령별 투자 및 재산증식에 대한 부부간의 의사결정권한을 살펴보면,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공동으로 결정하는 비율이 낮았다(29세 이하 73.4%, 60세 이상 65.0%).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비율은 40~49세 연령층이 13.5%로 가장 낮았고, 60세 이상 연령계층이 19.9%로 가장 높았으며, 동시에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비율은 29세 이하가 11.6%로 가장 낮았고, 40~49세 연령계층이 18.8%로 가장 높았다.

투자 및 재산증식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도 학력간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2006년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대체로 남편이 결정하거나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한다는 응답이 약간 상승하였다.

비취업자와 취업자가 투자 및 재산증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부부공동으로 하는 경우는 유사한 수준이었다(취업자 67.7%, 비취업자 67.4%). 또한 비취업자가 취업자보다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고(취업자 14%, 비취업자 16.9%), 반면에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취업자 18.2%, 비취업자 15.7%). 이와 같은 현상은 많은 응답자가 여성이므로 취업자는 취업부인, 비취업자는 전업주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취업부인이 투자 및 재산증식에 대한 정보를 비취업부인보다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동 자료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10-32>와 같이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부부간에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가구특성과 응답자의 특성에 의하여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자녀양육 및 교육은 가구 및 응답자의 특성에 관계없이 부부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다음은 부인이 결정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동부지역 거주가구는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결정을 부부공동으로 하는 경우는 53.4%로 읍·면부지역 거주가구 58.3%보다 다

소 적었다. 그러나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가구(43.9%)가 읍·면부지역 거주가구(34.9%)보다 높았던 반면,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가구(2.7%)가 읍·면부지역 거주가구(6.8%)보다 낮았다.

〈표 10-32〉 15~64세 기혼가구의 자녀양육 및 교육에서의 의사결정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남편결정	대체로 남편결정	부부공동 결정	대체로 부인결정	전적으로 부인결정	계(수)	χ^2
2006[1)]	0.6	2.5	57.7	31.1	8.1	100.0(8,326)	
2009[2)]	0.6	2.9	54.2	32.7	9.7	100.0(8,750)	
지역							
동부	0.4	2.3	53.4	33.6	10.3	100.0(7,271)	92.683***
읍·면부	1.1	5.7	58.3	28.2	6.7	100.0(1,479)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0	6.5	58.0	26.1	8.4	100.0(417)	
100~199만원	0.7	3.4	57.6	29.2	9.1	100.0(1,273)	57.017***
200~299만원	0.5	2.3	56.8	30.8	9.5	100.0(1,973)	
300만원 이상	0.5	2.6	52.0	34.8	10.0	100.0(5,077)	
응답자 성							
남성	0.4	7.1	57.7	27.2	7.5	100.0(504)	43.317***
여성	0.6	2.6	54.0	33.0	9.8	100.0(8,246)	
응답자 연령							
15~29세	0.8	3.3	57.5	30.1	8.2	100.0(392)	
30~39세	0.2	1.6	51.6	36.5	10.1	100.0(2,473)	78.055***
40~49세	0.6	2.8	53.0	32.6	10.9	100.0(2,868)	
50~59세	0.8	3.9	56.6	30.6	8.2	100.0(2,268)	
60세 이상	0.7	4.0	58.7	28.0	8.7	100.0(751)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1	5.1	57.0	28.4	8.4	100.0(2,148)	113.469***
고등학교	0.5	2.8	54.1	32.7	10.0	100.0(3,913)	
대학 이상	0.2	1.2	52.3	36.0	10.3	100.0(2,689)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	0.6	3.4	56.6	30.4	9.0	100.0(4,166)	32.615***
비취업	0.5	2.4	52.1	34.8	10.3	100.0(4,584)	

주: 1) 2006년은 15~59세 기혼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음; 2) 배우자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3) *** $p<.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10-1>과 동일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자녀양육 및 교육을 부부공동으로 결정하는 비율은 월소득 99만원 이하의 저소득계층이 58%로 가장 높았고,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도 동 계층이 가장 많았다(7.5%). 그러나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99만원 이하의 저소득계층은 34.5%였고, 300만원 이상의 계층은 44.8%로 많았다.

남성응답자가 여성응답자에 비하여 자녀양육 및 교육을 부부공동으로 결정한다고 하는 경우가 약간 많았으며(남성 57.7%, 여성 54%),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한다는 경우는 남성응답자(7.5%)가 여성응답자(3.2%)보다 많았던 반면,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한다는 경우는 여성응답자(42.8%)가 남성응답자(34.7%)보다 많았다.

응답자의 연령별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부간의 의사결정권한을 살펴보면,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연령에 따라서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부부공동결정에 있어 30대의 경우 51.6%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결정을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학력이 높을수록 적었고, 학력이 낮을수록 많았다. 반면에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학력이 높을수록 조금씩 증가하였으며(중학교 이하 36.8%, 고등학교 42.7%, 대학 이상 46.3%),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는 학력이 높을수록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중학교 이하 6.2%, 고등학교 3.3%, 대학 이상 1.4%).

응답자의 취업여부에 따라 자녀양육 및 교육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업자가 56.6%, 비취업자가 52.1%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도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동 분석결과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2006년에 비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비율은 감소하였고, 전반적으로 부인이 결정한다는 응답이 약간 상승한 수준이었다.

3. 배우자 만족도

기혼가구의 배우자 만족도를 배우자 이해도,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 길이(양), 부부 성생활, 배우자 부담 가사량, 배우자 소비성향, 부부간 대화, 부부간 문화생활, 전반적인 부부관계의 지표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응답 항으로는 전적으로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의 5점 척도에 의하였다.

전체적인 평균점수는 3.53점으로 보통과 만족의 사이의 만족도를 보였다.

먼저 배우자 이해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을 포함한 '만족'이 5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통' 33.6%로 나타났으며,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53점이었다.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 길이(양)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43.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통'이 41.7%로 평균점수는 3.30점이었다. 부부 성생활은 '보통'이 49.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만족'이 42.5%로 평균점수는 3.36점이었다. 배우자 부담 가사량은 '보통'이 40.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만족'이 37.9%로 평균점수는 다소 낮은 3.17점이었다.

〈표 10-33〉 15~64세 기혼가구의 배우자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배우자 이해도	1.1	8.6	33.6	49.8	6.9	100.0(9,309)	3.53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 길이(양)	1.2	13.9	41.7	39.8	3.4	100.0(9,306)	3.30
부부 성생활	1.0	6.6	49.9	39.9	2.6	100.0(9,288)	3.36
배우자 부담 가사량	2.7	19.2	40.1	34.3	3.6	100.0(9,304)	3.17
배우자 소비성향	1.1	7.8	32.7	52.2	6.2	100.0(9,300)	3.54
부부간 대화	1.0	8.8	37.3	47.3	5.6	100.0(9,306)	3.48
부부간 문화생활	3.8	24.4	37.5	29.8	4.4	100.0(9,307)	3.07
전반적인 부부관계	0.6	6.2	43.2	46.3	3.7	100.0(9,305)	3.46

주: 1) 배우자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자료: 본 조사결과

배우자의 소비성향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5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이 32.7%로 평균점수는 3.54점이었다. 부부간 대화는

‘만족’이 52.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통’이 37.3%로 평균점수는 3.48점이었다. 부부간 문화생활은 ‘보통’이 3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만족’이 34.2%로 나타났으나 다른 항목에 비해 ‘불만족’이 2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균점수도 가장 낮은 3.07점이었다. 전반적인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50.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43.2%가 ‘보통’, 6.8%가 ‘불만족’이라고 응답하여 평균점수는 3.46점으로 나타났다.

가구 특성 및 응답자 특성에 따라 배우자의 이해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체평균은 3.53점으로 보통과 만족 사이의 만족도를 보였다. 지역간에는 큰 격차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동부지역(56.8%)이 읍·면부지역(56.0%)보다 약간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보통이라는 만족도 비율이 높았다. 평균점수를 비교해 보면 동부지역은 5점 만점에 3.54점이었고, 읍·면부지역은 3.48점으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표 10-34 참조).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이해도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99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 47.7%만이 배우자의 이해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월 300만원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60.9%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평균점수도 소득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지고 있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62.2%)이 여성(56.4%)보다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평균점수에 있어서는 남성응답자 3.58점, 여성응답자 3.52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별로는 젊은 연령층일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29세 이하의 응답자는 67.2%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60세 이상은 48.9%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연령별 차이가 존재하였다. 평균점수에도 29세 이하와 60세 이상 가구간의 격차는 0.34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만족도가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고학력일수록 만족도가 높아져 대학 이상의 학력의 경우 67.3%가 만족하였고, 저학력인 중학교 이하의 경우에는 47.9%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만족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동 분석결과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10-34〉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배우자의 이해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X^2	평균	F값 (T값)
전체	1.1	8.6	33.6	49.8	6.9	100.0(9,309)		3.53	
지역									
동부	1.1	8.3	33.9	49.6	7.2	100.0(7,774)	15.747**	3.54	(2.382*)
읍·면부	1.4	10.1	32.4	50.9	5.1	100.0(1,535)		3.48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2.8	14.2	35.3	42.7	5.0	100.0(436)		3.33	
100~199만원	2.2	9.9	38.8	45.3	3.8	100.0(1,382)	173.996***	3.39	48.509***
200~299만원	0.6	11.0	35.6	47.6	5.2	100.0(2,105)		3.46	
300만원 이상	0.9	6.8	31.4	52.5	8.4	100.0(5,373)		3.61	
응답자 성									
남성	0.4	7.8	29.7	57.2	5.0	100.0(565)	15.900**	3.58	(1.925#)
여성	1.2	8.6	33.9	49.4	7.0	100.0(8,744)		3.52	
응답자 연령									
15~29세	0.5	5.8	26.5	53.5	13.7	100.0(604)		3.74	
30~39세	1.3	6.4	31.4	52.3	8.6	100.0(2,698)	172.227***	3.61	30.292***
40~49세	1.4	8.8	33.6	49.6	6.6	100.0(2,950)		3.51	
50~59세	0.7	11.1	36.1	47.6	4.5	100.0(2,300)		3.44	
60세 이상	1.3	9.8	40.0	45.9	3.0	100.0(758)		3.40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5	13.6	37.1	45.0	2.9	100.0(2,202)	362.902***	3.34	201.072***
고등학교	1.4	8.4	36.6	48.1	5.6	100.0(4,098)		3.48	
대학 이상	0.6	5.1	27.1	55.8	11.5	100.0(3,011)		3.72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	1.1	10.0	32.5	50.1	6.3	100.0(4,496)	28.630***	3.51	(-2.604**)
비취업	1.1	8.6	33.6	49.8	6.8	100.0(4,813)		3.55	

주: 1) 배우자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2) # p<.10, * p<.05, ** p<.01,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표 10-35>와 같이 가구 특성 및 응답자 특성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있는 시간의 길이(양)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체평균은 3.30점으로 보통과 만족 사이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보통과 만족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거주지역, 응답자의 성, 응답자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소득수준과 학력이 높을수록, 비취업자일수록 만족도가 높아졌다. 가구소득, 응답자 연령, 응답자 교육수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와 함께 있는 시간의 길이

(양)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월소득 100~199만원 이하 가구는 만족한다(38.5%)가 보통이다(45.7%)보다 낮았다. 평균점수에 있어서도 동 소득수준대의 가구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 점수가 높아졌다.

〈표 10-35〉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배우자와 함께 있는 시간의 길이(양)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X^2	평균	F값 (T값)
전체	1.2	13.9	41.7	39.8	3.4	100.0(9,306)		3.30	
지역									
동부	1.1	14.0	41.9	39.6	3.3	100.0(7,771)	4.188	3.30	(-.520)
읍·면부	1.6	13.6	40.7	40.4	3.8	100.0(1,535)		3.31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2.1	16.4	37.7	40.4	3.4	100.0(438)		3.27	
100~199만원	1.1	14.8	45.7	36.0	2.5	100.0(1,382)	27.971**	3.24	4.845**
200~299만원	1.4	13.8	42.1	39.7	3.0	100.0(2,102)		3.29	
300만원 이상	1.1	13.4	41.0	40.7	3.8	100.0(5,370)		3.33	
응답자 성									
남성	0.9	14.8	42.4	40.1	1.8	100.0(566)	5.692	3.27	(-.903)
여성	1.3	13.8	41.7	39.7	3.5	100.0(8,740)		3.30	
응답자 연령									
15~29세	2.5	16.9	32.0	43.9	4.8	100.0(604)		3.32	
30~39세	1.7	17.2	39.6	37.6	3.9	100.0(2,694)	1119.975***	3.25	5.677***
40~49세	1.3	12.7	43.9	38.7	3.5	100.0(2,949)		3.30	
50~59세	0.5	12.0	42.2	42.7	2.7	100.0(2,300)		3.35	
60세 이상	0.3	10.4	47.3	39.9	2.1	100.0(757)		3.33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9	13.4	45.6	38.4	1.7	100.0(2,200)	60.618***	3.27	6.103**
고등학교	1.4	13.8	42.3	39.2	3.3	100.0(4,098)		3.29	
대학 이상	1.2	14.4	38.1	41.5	4.7	100.0(3,007)		3.34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	1.2	14.5	42.1	39.2	3.0	100.0(4,495)	6.846	3.28	(-2.010*)
비취업	1.3	13.3	41.4	40.3	3.7	100.0(4,812)		3.32	

주: 1) 배우자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2) * p<.05, ** p<.01,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43.2%)이 남성(41.9%)보다 만족한다는 응답이 약간 많았고, 평균점수에 있어서는 여성응답자 3.30점, 남성응답자가 3.27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별로는 29세 이하는 48.7%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3.32점의 평균점수를 보였고, 50대는 45.4%가 만족한다고 하여 3.35점의 평균점수를 보였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학력일수록 만족도가 높아져 대학 이상의 학력의 경우 46.2%가 만족하였고, 저학력인 중학교 이하의 경우에는 40.1%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비취업자일수록 배우자와 함께 있는 시간의 길이(양)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가구 특성 및 응답자 특성에 따른 부부의 성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평균이 3.36점으로 보통과 만족 사이의 만족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월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응답자의 연령이 젊을수록,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읍·면부지역(8.7%)이 동부지역(7.4%)보다 불만족한다는 비율이 다소 높았고, 보통 또는 만족의 수준은 유사하게 나타나 큰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부부의 성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월소득 99만원 이하 가구(22.3%)는 300만원 이상 가구(46.3%)보다 만족도가 2배 이상 낮았다.

응답자의 연령별로는 29세 이하는 62.5%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3.65점의 평균점수를 보였고, 60대 이상은 18.4%가 만족한다고 하여 3.04점의 평균점수를 보여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학력일수록 만족도가 높아져 대학 이상의 학력의 경우 53.7%가 만족하였고, 저학력인 중학교 이하의 경우에는 25.8%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동 자료들은 응답자의 성이나 취업여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10-36〉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부부의 성생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X^2	평균	F값 (T값)
전체	1.0	6.6	49.9	39.9	2.6	100.0(9,288)		3.36	
지역									
동부	1.0	6.4	49.8	40.1	2.8	100.0(7,756)	10.244*	3.37	(2.611**)
읍·면부	1.2	7.5	50.7	38.9	1.6	100.0(1,533)		3.32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2.3	18.4	57.0	20.9	1.4	100.0(435)		3.01	
100~199만원	1.5	9.5	55.5	32.4	1.2	100.0(1,374)	268.712***	3.22	78.070***
200~299만원	1.6	6.8	48.9	40.0	2.7	100.0(2,099)		3.35	
300만원 이상	0.6	4.8	48.3	43.3	3.0	100.0(5,365)		3.43	
응답자 성									
남성	0.4	8.3	50.3	39.1	1.9	100.0(565)	6.409	3.34	(-.821)
여성	1.1	6.5	49.9	39.9	2.6	100.0(8.723)		3.37	
응답자 연령									
15~29세	0.2	3.3	34.1	56.0	6.5	100.0(604)		3.65	
30~39세	1.3	4.3	42.0	48.4	4.1	100.0(2,693)	651.615***	3.50	139.277***
40~49세	1.1	6.1	47.0	43.4	2.4	100.0(2,949)		3.40	
50~59세	1.0	8.6	61.4	28.2	0.7	100.0(2,292)		3.19	
60세 이상	0.7	13.1	67.9	18.3	0.1	100.0(750)		3.04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4	11.6	61.3	25.4	0.4	100.0(2,192)	502.505***	3.12	242.884***
고등학교	1.1	5.8	49.9	41.0	2.2	100.0(4,087)		3.37	
대학 이상	0.6	4.0	41.7	48.9	4.8	100.0(3,008)		3.53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	1.0	6.8	49.2	40.6	2.4	100.0(4,485)	3.599	3.37	(.146)
비취업	1.0	6.4	50.6	39.3	2.7	100.0(4,802)		3.36	

주: 1) 배우자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2) * p<.05, ** p<.01,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표 10-37>과 같이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배우자가 부담하는 가사량에 대한 만족도는 3.17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보통과 만족 사이의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응답자의 성별이 남성인 경우, 연령이 30대 미만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기타 특성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배우자 부담 가사량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37〉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배우자 부담 가사량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값 (T값)
전체	2.7	19.2	40.1	34.3	3.6	100.0(9,304)		3.17	
지역									
동부	2.6	19.0	40.8	33.9	3.7	100.0(7,770)	14.615**	3.17	(.644)
읍·면부	3.3	20.4	36.7	36.8	2.9	100.0(1,534)		3.16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5.1	19.5	36.8	36.1	2.5	100.0(435)		3.12	
100~199만원	2.7	18.4	39.8	37.5	1.6	100.0(1,383)	39.578***	3.17	.697
200~299만원	2.6	19.5	40.8	33.6	3.6	100.0(2,106)		3.16	
300만원 이상	2.6	19.3	40.3	33.6	4.2	100.0(5,368)		3.18	
응답자 성									
남성	0.7	10.1	39.3	48.0	1.9	100.0(565)	72.074***	3.41	(7.909***)
여성	2.9	19.8	40.2	33.5	3.7	100.0(8,738)		3.15	
응답자 연령									
15~29세	1.7	15.6	31.0	43.0	8.8	100.0(604)		3.42	
30~39세	3.6	20.4	38.2	33.6	4.2	100.0(2,696)	170.193***	3.14	18.880***
40~49세	3.3	21.2	40.9	31.1	3.6	100.0(2,949)		3.11	
50~59세	1.6	17.7	43.4	35.2	2.1	100.0(2,297)		3.19	
60세 이상	2.0	14.6	41.5	40.1	1.9	100.0(755)		3.25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4	19.2	41.2	35.6	1.6	100.0(2,200)	69.040***	3.15	8.463***
고등학교	3.3	19.3	40.8	33.3	3.3	100.0(4,094)		3.14	
대학 이상	2.2	19.0	38.5	34.8	5.5	100.0(3,009)		3.22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	3.0	19.3	38.1	35.5	4.1	100.0(4,493)	21.201***	3.19	(1.741#)
비취업	2.5	19.1	42.0	33.2	3.1	100.0(4,810)		3.15	

주: 1) 배우자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2) # p<.10, ** p<.01,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부담하는 가사량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다만 월소득 99만원 이하 가구는 만족한다(38.6%)가 보통이다(36.8%)보다 약간 많았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49.9%)이 여성(37.2%)보다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평균점수에 있어서는 남성응답자 3.41점, 여성응답자 3.15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별로는 29세 이하와 50세 이상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29세 이하는 51.8%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42점의 평균점수를 보여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응답자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자일수록 배우자 부담 가사량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10-38〉과 같이 가구 특성 및 응답자 특성에 따른 배우자의 소비성향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평균 3.54점으로 보통과 만족 사이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응답자가 남성일수록, 응답자 연령이 젊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소비성향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99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 50.4%가 배우자의 소비성향에 대해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월 300만원 이상 가구는 60.6%가 만족한다고 하였다. 평균점수에 있어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지고 있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60.6%)이 여성(58.2%)보다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평균점수에 있어서는 남성응답자 3.61점, 여성응답자 3.54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별로는 젊은 연령층일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29세 이하의 응답자는 64.8%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60세 이상은 54.2%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연령별 차이가 존재하였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만족도의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고학력일수록 만족도가 높아져 대학 이상의 학력의 경우 63.1%가 만족하였고, 저학력인 중학교 이하의 경우에는 55.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지역이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배우자의 소비성향에 대한 만족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동 자료들은 응답자의 취업여부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38〉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배우자의 소비성향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값 (T값)
전체	1.1	7.8	32.7	52.2	6.2	100.0(9,300)		3.54	
지역									
동부	1.1	7.5	33.0	52.1	6.2	100.0(7,767)	9.549*	3.55	(1.485)
읍·면부	1.2	9.6	31.1	52.4	5.7	100.0(1,533)		3.52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8	11.0	36.8	45.1	5.3	100.0(437)		3.41	
100~199만원	1.6	9.2	38.6	46.3	4.4	100.0(1,379)	68.306***	3.42	20.485***
200~299만원	1.1	8.1	31.5	53.1	6.1	100.0(2,104)		3.55	
300만원 이상	0.9	7.1	31.3	53.9	6.7	100.0(5,366)		3.58	
응답자 성									
남성	0.2	4.8	34.5	55.5	5.1	100.0(566)	14.820**	3.61	(2.214*)
여성	1.2	8.0	32.6	52.0	6.2	100.0(8.734)		3.54	
응답자 연령									
15~29세	1.3	4.5	29.4	53.2	11.6	100.0(603)		3.69	
30~39세	0.8	7.6	30.2	52.9	8.5	100.0(2,696)	116.615***	3.61	14.675***
40~49세	1.5	8.6	33.4	51.4	5.1	100.0(2,947)		3.50	
50~59세	1.0	8.4	34.0	52.8	3.9	100.0(2,295)		3.50	
60세 이상	1.1	6.9	37.9	49.7	4.5	100.0(758)		3.50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3	10.2	32.9	51.1	4.5	100.0(2,198)	88.686***	3.47	32.750***
고등학교	1.2	7.5	35.0	51.0	5.3	100.0(4,094)		3.52	
대학 이상	0.9	6.5	29.5	54.6	8.5	100.0(3,008)		3.63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	1.0	8.3	31.7	52.7	6.2	100.0(4,491)	5.851	3.55	(.485)
비취업	1.2	7.4	33.6	51.7	6.1	100.0(4,809)		3.54	

주: 1) 배우자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2) * p<.05, ** p<.01,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표 10-39>에 제시된 가구 특성 및 응답자 특성에 따른 부부간 대화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평균 3.48점으로 보통과 만족 사이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응답자가 남성인 경우, 응답자 연령이 젊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동부지역(53.2%)이 읍·면부지역(51.1%)보다 약간 만족도가 높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을

수록 부부간 대화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99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 46.4%가 부부간 대화에 대해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월 300만원 이상 가구는 55.7%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평균점수에 있어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지고 있다.

〈표 10-39〉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부부간 대화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X^2	평균	F값 (T값)
전체	1.0	8.8	37.3	47.3	5.6	100.0(9,306)		3.48	
지역									
동부	1.0	8.5	37.3	47.2	6.0	100.0(7,772)	15.573**	3.49	(2.762**)
읍·면부	1.0	10.1	37.7	47.4	3.7	100.0(1,535)		3.43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2.3	13.3	38.0	43.2	3.2	100.0(437)		3.32	
100~199만원	1.5	11.7	39.3	44.3	3.2	100.0(1,381)	96.250***	3.36	28.608***
200~299만원	1.3	9.5	39.1	44.7	5.5	100.0(2,106)		3.44	
300만원 이상	0.7	7.4	36.2	49.2	6.5	100.0(5,369)		3.53	
응답자 성									
남성	0.9	11.5	37.3	48.7	1.6	100.0(565)	22.792***	3.39	(-2.842**)
여성	1.0	8.6	37.3	47.2	5.9	100.0(8,741)		3.48	
응답자 연령									
15~29세	0.5	7.6	24.0	55.2	12.7	100.0(605)		3.72	
30~39세	1.4	7.3	35.5	48.7	7.2	100.0(2,696)	180.669***	3.53	26.668***
40~49세	1.1	8.3	39.4	45.9	5.2	100.0(2,951)		3.46	
50~59세	0.8	11.0	39.2	45.5	3.5	100.0(2,299)		3.40	
60세 이상	0.7	9.8	40.9	46.3	2.4	100.0(756)		3.40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0	12.9	41.4	42.0	2.7	100.0(2,199)	273.286***	3.32	119.549***
고등학교	1.4	8.4	39.8	45.8	4.6	100.0(4,099)		3.44	
대학 이상	0.5	6.3	31.0	53.0	9.2	100.0(3,007)		3.64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	0.9	8.9	37.2	47.9	5.2	100.0(4,495)	5.393	3.48	(.034)
비취업	1.2	8.7	37.5	46.7	6.0	100.0(4,810)		3.48	

주: 1) 배우자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2) ** p<.01,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53.1%)이 남성(50.3%)보다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평균점수는 여성응답자 3.48점, 남성응답자 3.39점으로 나타났

다. 응답자의 연령별로는 40대 미만의 젊은 연령층일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20세 이하의 응답자는 67.9%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60세 이상은 48.7%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연령별 차이가 존재하였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만족도가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고학력일수록 만족도가 높아져 대학 이상의 학력의 경우 62.2%가 만족하였고, 저학력인 중학교 이하의 경우에는 44.7%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동 자료들은 응답자의 취업여부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40>에 제시된 가구 특성 및 응답자 특성에 따른 부부간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평균 3.07점으로 보통과 만족 사이의 만족도를 보였으나 가장 낮은 만족도 점수를 나타냈다. 특성별로는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응답자가 여성인 경우, 응답자의 연령이 젊을수록,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동부지역(35.3%)이 읍·면부지역(29.2%)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부부간 대화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99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 21.1%가 부부간 대화에 대해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월 300만원 이상 가구는 40.9%가 만족한다고 하였다. 평균점수에 있어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지고 있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큰 차이는 없으나 여성(34.3%)이 남성(33.4%)보다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응답자의 연령별로는 40대 미만의 젊은 연령층일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20세 이하의 응답자는 46.7%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60세 이상은 26.6%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연령별 차이가 존재하였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만족도가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고학력일수록 만족도가 높아져 대학 이상의 학력의 경우 46.7%가 만족하였고, 저학력인 중학교 이하의 경우에는 20.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동 자료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40〉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부부간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X^2	평균	F값 (T값)
전체	3.8	24.4	37.5	29.8	4.4	100.0(9,307)		3.07	
지역									
동부	3.3	23.3	38.2	30.5	4.8	100.0(7,774)	82.033***	3.10	(8.083***)
읍·면부	6.1	30.5	34.2	26.7	2.5	100.0(1,534)		2.89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6.9	36.2	35.9	19.5	1.6	100.0(437)		2.73	
100~199만원	5.9	34.6	37.7	20.3	1.4	100.0(1,381)	406.245***	2.77	139.313***
200~299만원	5.3	28.3	38.1	24.9	3.5	100.0(2,104)		2.94	
300만원 이상	2.4	19.3	37.4	35.1	5.8	100.0(5,371)		3.22	
응답자 성									
남성	4.4	27.9	34.3	30.4	3.0	100.0(566)	8.125#	2.99	(-1.921#)
여성	3.7	24.2	37.7	29.8	4.5	100.0(8.742)		3.07	
응답자 연령									
15~29세	4.8	18.5	30.0	36.3	10.4	100.0(604)		3.29	
30~39세	3.7	21.0	36.1	33.0	6.2	100.0(2,697)	224.346***	3.17	33.273***
40~49세	4.1	23.3	38.4	30.5	3.7	100.0(2,946)		3.06	
50~59세	3.4	28.9	39.8	25.2	2.6	100.0(2,302)		2.95	
60세 이상	2.9	32.1	38.4	25.0	1.6	100.0(757)		2.90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2	35.9	38.3	19.6	1.0	100.0(2,200)	588.774***	2.75	294.694***
고등학교	4.4	24.8	38.4	29.1	3.4	100.0(4,097)		3.02	
대학 이상	1.9	15.6	36.7	38.4	8.3	100.0(3,010)		3.36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	4.3	26.7	37.2	27.9	3.9	100.0(4,494)	41.886***	3.00	(-6.346***)
비취업	3.3	22.3	37.8	31.7	4.9	100.0(4,813)		3.13	

주: 1) 배우자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2) # p<.10,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표 10-41>에 제시된 가구 특성 및 응답자 특성에 따른 전반적인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평균 3.46점으로 보통과 만족 사이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동부지역 거주자가,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응답자 연령이 젊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과 취업여부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동부지역(50.6%)이 읍·면부지역(46.5%)보다 약간 만족도가 높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을

수록 부부간 대화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99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 36.4%가 부부간 대화에 대해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월 300만원 이상 가구는 54.9%가 만족한다고 하였다. 평균점수에 있어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지고 있다.

〈표 10-41〉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전반적인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X^2	평균	F값 (T값)
전체	0.6	6.2	43.2	46.3	3.7	100.0(9,305)		3.46	
지역									
동부	0.6	6.0	42.8	46.7	3.9	100.0(7,770)	15.703**	3.47	(3.540***)
읍·면부	0.7	7.2	45.6	44.2	2.3	100.0(1,535)		3.40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8	13.5	48.3	35.0	1.4	100.0(437)		3.21	
100~199만원	1.2	9.4	50.0	37.8	1.5	100.0(1,382)	237.080***	3.29	75.821***
200~299만원	0.6	7.3	45.1	43.4	3.5	100.0(2,102)		3.42	
300만원 이상	0.4	4.3	40.4	50.5	4.4	100.0(5,371)		3.54	
응답자 성									
남성	0.2	6.0	42.1	48.1	3.5	100.0(565)	2.705	3.49	(.958)
여성	0.7	6.2	43.3	46.2	3.7	100.0(8,739)		3.46	
응답자 연령									
15~29세	0.2	5.0	25.7	60.4	8.8	100.0(604)		3.73	
30~39세	1.0	4.6	37.1	51.7	5.6	100.0(2,694)	355.966***	3.56	64.318***
40~49세	0.7	6.2	43.3	46.6	3.1	100.0(2,947)		3.45	
50~59세	0.4	7.5	51.7	38.9	1.5	100.0(2,301)		3.34	
60세 이상	-	8.1	53.2	37.3	1.5	100.0(757)		3.32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6	10.0	55.1	33.4	0.8	100.0(2,201)	511.184***	3.24	244.309***
고등학교	1.0	6.0	44.0	46.2	3.0	100.0(4,095)		3.44	
대학 이상	0.2	3.6	33.6	55.9	6.7	100.0(3,008)		3.65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	0.6	6.7	43.5	45.5	3.6	100.0(4,494)	5.424	3.45	(-1.698#)
비취업	0.7	5.7	43.0	47.0	3.7	100.0(4,811)		3.47	

주: 1) 배우자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2) # p<.10, ** p<.01,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큰 차이는 없으나 남성(51.6%)이 여성(49.9%)보다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응답자의 연령별로는 40대 미만의 젊은 연령층일수

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20세 이하의 응답자는 69.2%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60세 이상은 38.8%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연령별 차이가 존재하였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만족도가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고학력일수록 만족도가 높아져 대학 이상의 학력의 경우 62.6%가 만족하였고, 저학력인 중학교 이하의 경우에는 34.2%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동 자료들은 응답자의 성과 취업여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자녀 만족도

기혼가구의 자녀 만족도를 자녀와의 대화정도, 자녀와의 문화생활, 부모의 의견·기대 충족정도, 전반적인 자녀관계의 지표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응답 항으로는 전적으로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의 5점 척도에 의하였다.

먼저 자녀와의 대화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을 포함한 '만족'이 6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통' 28.8%로 나타났으며,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69점이었다. 자녀와의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42.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 39.0%로 나타났다. 배우자 만족도와 유사하게 자녀와의 문화생활 역시 불만족이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나 응답자의 18.8%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평균점수도 3.26점으로 가장 낮았다.

자녀의 부모의 의견이나 기대에 대한 충족정도는 '만족'이 53.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통' 36.1%로 평균점수는 3.48점이었다. 전반적인 자녀관계는 '만족'이 6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통' 33.5%로 평균점수는 3.64점으로 나타났다.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로 자녀와의 대화정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체평균은 3.69점으로 보통과 만족의 중간에 해당하며, 읍·면부지역 거주자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응답자가,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응답자가 취업상태인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응답자의 연령과 교육수준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10-42〉 15~64세 기혼가구의 자녀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자녀와의 대화정도	0.1	4.9	28.8	57.7	8.5	100.0(8,093)	3.69
자녀와의 문화생활	1.0	17.8	39.0	38.0	4.1	100.0(8,089)	3.26
부모의 의견·기대 충족정도	0.4	9.9	36.1	48.5	5.0	100.0(8,092)	3.48
전반적인 자녀관계	0.1	3.8	33.5	57.1	5.5	100.0(8,093)	3.64

주: 1) 배우자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자료: 본 조사결과

〈표 10-43〉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자녀와의 대화정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값 (T값)
전체	0.1	4.9	28.8	57.7	8.5	100.0(8,093)		3.69	
지역									
동부	0.1	5.1	29.6	56.8	8.5	100.0(6,707)	19.058**	3.68	(-2.672**)
읍·면부	0.3	4.4	24.8	61.9	8.5	100.0(1,385)		3.74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0.8	8.8	24.8	56.6	9.0	100.0(399)		3.64	
100~199만원	0.1	6.9	26.9	60.2	6.0	100.0(1,152)	64.643***	3.65	6.208***
200~299만원	0.1	5.0	31.4	56.0	7.5	100.0(1,732)		3.66	
300만원 이상	0.1	4.2	28.7	57.7	9.4	100.0(4,801)		3.72	
응답자 성									
남성	0.2	11.7	38.0	47.0	3.1	100.0(479)	89.264***	3.41	(-8.650***)
여성	0.1	4.5	28.2	58.3	8.8	100.0(7,615)		3.71	
응답자 연령									
15~29세	-	3.4	28.6	63.9	4.2	100.0(119)		3.68	
30~39세	0.0	2.3	26.0	60.2	11.4	100.0(2,105)		3.81	20.361***
40~49세	0.1	5.0	30.7	55.7	8.5	100.0(2,856)		3.67	
50~59세	0.3	6.7	29.2	57.0	6.8	100.0(2,263)		3.63	
60세 이상	0.1	7.1	28.1	59.1	5.6	100.0(751)		3.63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2	7.3	29.7	57.1	5.6	100.0(2,125)		3.60	38.760***
고등학교	0.1	4.8	29.9	56.6	8.6	100.0(3,703)		3.69	
대학 이상	0.1	2.9	26.0	60.0	11.0	100.0(2,263)		3.79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	0.1	5.3	30.7	56.6	7.2	100.0(3,978)	28.180***	3.65	(-4.955***)
비취업	0.1	4.6	26.9	58.7	9.6	100.0(4,116)		3.73	

주: 1) 배우자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2) ** p<.01, *** p<.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로 자녀와의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체평균은 3.26점으로 보통과 만족의 중간에 해당하며, 동부지역 거주자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응답자가, 응답자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응답자가 취업상태인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동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표 10-44〉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자녀와의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값 (T값)
전체	1.0	17.8	39.0	38.0	4.1	100.0(8,089)		3.26	
지역									
동부	1.0	16.9	38.8	39.1	4.3	100.0(6,703)	30.859***	3.29	(5.251***)
읍·면부	1.1	22.1	40.4	32.9	3.5	100.0(1,385)		3.16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2.8	28.1	38.8	27.8	2.5	100.0(399)		2.99	
100~199만원	1.9	23.6	41.8	30.7	2.0	100.0(1,152)	224.481***	3.07	72.095***
200~299만원	1.3	22.3	39.1	34.0	3.3	100.0(1,731)		3.16	
300만원 이상	0.5	14.0	38.4	42.0	5.1	100.0(4,799)		3.37	
응답자 성									
남성	1.9	25.7	43.5	26.6	2.3	100.0(478)	46.157***	3.02	(-6.677***)
여성	0.9	17.3	38.8	38.7	4.3	100.0(7,610)		3.28	
응답자 연령									
15~29세	1.7	18.5	30.3	46.2	3.4	100.0(119)		3.30	
30~39세	0.4	10.9	34.4	47.3	6.9	100.0(2,103)	263.772***	3.49	64.440***
40~49세	1.1	18.6	39.0	37.8	3.6	100.0(2,854)		3.24	
50~59세	1.4	22.3	42.7	30.7	2.9	100.0(2,263)		3.11	
60세 이상	1.1	20.6	42.6	33.3	2.4	100.0(751)		3.15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	24.3	41.6	30.4	2.1	100.0(2,125)	353.707***	3.07	182.283***
고등학교	1.1	19.1	40.7	35.3	3.9	100.0(3,699)		3.22	
대학 이상	0.3	9.7	33.8	49.7	6.5	100.0(2,264)		3.52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	0.8	22.0	39.7	34.6	2.9	100.0(3,975)	134.670***	3.17	(-10.538***)
비취업	1.1	13.8	38.4	41.3	5.4	100.0(4,113)		3.36	

주: 1) 배우자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2)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견·기대정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체평균은 3.48점으로 보통과 만족의 중간에 해당하며, 읍·면부지역에 거주자가, 여성 응답자가,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응답자가 취업상태일 경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10-45〉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부모의 의견·기대 충족정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값 (T값)
전체	0.4	9.9	36.1	48.5	5.0	100.0(8,092)		3.48	
지역									
동부	0.4	10.3	36.8	47.5	5.1	100.0(6,706)	20.556***	3.47	(-2.918**)
읍·면부	0.6	8.3	32.9	53.5	4.6	100.0(1,385)		3.53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5	9.0	39.9	44.7	4.8	100.0(398)		3.42	
100~199만원	0.8	11.9	35.6	48.5	3.2	100.0(1,151)	59.530***	3.42	12.322***
200~299만원	0.4	11.8	37.9	45.8	4.2	100.0(1,734)		3.42	
300만원 이상	0.2	8.9	35.2	49.8	5.8	100.0(4,801)		3.52	
응답자 성									
남성	0.2	10.6	40.7	44.7	3.8	100.0(479)	6.897	3.41	(-1.934#)
여성	0.4	9.9	35.8	48.7	5.1	100.0(7,613)		3.48	
응답자 연령									
15~29세	0.8	10.1	33.6	49.6	5.9	100.0(119)		3.49	
30~39세	0.6	6.0	33.1	53.6	6.7	100.0(2,103)	96.973***	3.60	19.374***
40~49세	0.5	11.5	38.6	45.3	4.2	100.0(2,856)		3.41	
50~59세	0.3	11.2	36.4	47.2	4.9	100.0(2,263)		3.45	
60세 이상	0.3	11.5	34.8	49.8	3.7	100.0(751)		3.45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2	13.4	36.8	47.1	2.5	100.0(2,125)	152.012***	3.38	52.731***
고등학교	0.6	9.3	38.8	46.8	4.5	100.0(3,703)		3.45	
대학 이상	0.4	7.7	31.1	52.6	8.2	100.0(2,263)		3.61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	0.4	11.3	36.1	48.2	4.1	100.0(3,977)	28.309***	3.44	(-3.881***)
비취업	0.5	8.7	36.2	48.8	5.9	100.0(4,114)		3.51	

주: 1) 배우자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2) # p<.10, ** p<.01,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로 전반적인 자녀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체평균은 3.64점으로 보통과 만족의 중간에 해당하며, 읍·면부지역 거주자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응답자가,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응답자가 취업상태인 경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10-46〉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전반적인 자녀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값 (T값)
전체	0.1	3.8	33.5	57.1	5.5	100.0(8,093)		3.64	
지역									
동부	0.1	3.7	34.2	56.4	5.5	100.0(6,708)	11.290*	3.64	(-1.703#)
읍·면부	0.3	3.9	30.2	60.1	5.6	100.0(1,386)		3.67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0.5	7.0	35.6	52.4	4.5	100.0(399)		3.54	
100~199만원	-	6.5	35.8	54.9	2.9	100.0(1,152)	103.625**	3.54	24.824***
200~299만원	0.1	3.5	37.3	54.6	4.4	100.0(1,733)		3.60	
300만원 이상	0.1	2.9	31.4	58.9	6.6	100.0(4,801)		3.69	
응답자 성									
남성	-	6.1	40.7	50.3	2.9	100.0(479)	25.912***	3.50	(-4.782***)
여성	0.1	3.6	33.1	57.5	5.7	100.0(7,614)		3.65	
응답자 연령									
15~29세	-	1.7	26.7	68.3	3.3	100.0(120)		3.73	
30~39세	0.0	1.9	25.7	63.8	8.5	100.0(2,105)		3.79	42.214***
40~49세	0.2	3.5	35.7	55.5	5.1	100.0(2,856)		3.62	
50~59세	0.1	5.4	37.2	53.1	4.2	100.0(2,264)		3.56	
60세 이상	0.1	5.1	37.3	54.2	3.3	100.0(751)		3.56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1	6.4	38.9	51.9	2.6	100.0(2,126)	223.602***	3.50	101.154***
고등학교	0.1	3.2	34.9	56.6	5.1	100.0(3,704)		3.63	
대학 이상	0.2	2.1	26.1	62.7	8.9	100.0(2,264)		3.78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	0.2	4.2	35.0	56.1	4.5	100.0(3,977)	27.080***	3.61	(-4.818***)
비취업	0.1	3.3	32.1	58.0	6.5	100.0(4,116)		3.68	

주: 1) 배우자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2) # p<.10, * p<.05, ** p<.01, *** p<.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제5절 가족생활실태의 시사점

가구경제, 주거유형 및 주거소유, 가족생활의 질, 가족관계 등의 가족생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가구는 전체의 3.5%로 2006년의 조사결과보다 낮아져 재산보유수준이 다소 상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 및 가구주 특성에 따라서는 도시가구일수록, 월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주가 남성일수록 재산보유수준이 높았다. 무엇보다 가구소득과 가구주의 성에 따른 재산보유액 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부채가 없는 가구는 2006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가구 및 가구주 특성에 따라서는 도시가구, 월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주가 남성일수록 부채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가구규모에 따른 부채 규모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부채의 주요원인으로 생계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사업자금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으로 많은 가구들이 고충을 겪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둘째, 월평균 가구소득과 소비수준을 보면 조사대상가구의 월 소비지출은 가구소득의 81.3%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소비하였고, 지역간에도 농촌(86.2%)이 도시(80.5%)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과 저축수준을 보면, 조사대상사구의 월 저축수준은 가구소득의 21.1%이며, 도시(21.7%)가 농촌(17.2%)보다 월소득 대비 저축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월가구소득 및 소비 분포는 동부지역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구주 연령이 40~49세인 가구가, 그리고 남성가구주 가구가 높은 소비지출 분포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득규모에 따라 소비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셋째,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80% 이상이며, 경제생활이 안정적인 가구일수록 아파트 거주를 선호하며, 향후 일반적 주거형태로서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택소유 현황과 관련하여 도시지역은 농촌지역에 비하여 자가소유율은 낮은 반면, 전세율은 높아서 주거생활이 불안정함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남성가구

주 가구에 비해 여성가구주 가구는 자가소유율이 낮아서 안정적이지 못한 주거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유명의는 여전히 남편 명의로 된 가구가 많으나, 부부 공동 명의도 조금씩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넷째, 가족생활의 질(質)을 파악한 결과, 행복의 중요요건은 가족원의 건강과 가족의 안정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생활은 1년전에 비해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좋아졌다는 응답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가족내 가사노동 분담정도, 의식주 수준,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 삶의 성취도는 만족도가 낮아 가족구성원간에 보다 많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가족문화 및 환경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섯째, 부부의 가사분담 형태는 여전히 가부장제적 가치관이 강하게 잔존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인의 취업여부를 떠나 양육과 가사는 주로 부인이 담당하고 있어 여성에게 과중한 부담이 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부권력관계 측면에서는 부동산이나 투자 등의 재산과 관련된 것은 부부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일상생활비 지출과 자녀양육 및 교육은 주로 부인이 결정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는 가사와 자녀양육에 대한 남편의 무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민주평등,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남성의 노력이 있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여섯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가 부담하는 가사량과 부부간 문화생활, 자녀와의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가족내에서의 배우자간 가사 및 양육과 관련한 역할분담과 가족구성원간 문화생활 향유 등 가족의 공유시간 증대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11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의 변화

제11장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의 변화

본 장에서는 기혼부인의 결혼양상과 이혼·사별 등의 해혼실태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혼가족의 자녀양육 실태를 파악하고자 이혼가족 자녀의 동거자 및 양육비 제공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출산력 저하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 등에 따른 가족주기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결혼양상

1. 결혼상태

본 조사 대상자인 15세 이상 기혼여성은 10,367명으로 동부지역 8,649명, 읍·면부지역 1,718명이었다. 이들의 결혼상태는 유배우 89.8%, 사별 4.7%, 이혼·별거 5.5%로 대부분의 부인이 유배우 상태였다. 지역별로는 사별부인의 비율은 동부지역보다 읍·면부지역이 높은 반면, 유배우부인과 이혼·별거부인의 비율은 동부지역이 높았다. 이는 동부지역은 읍·면부지역보다 젊은 층 부인들의 거주비율이 높고, 읍·면부지역은 고연령층 부인들의 거주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 하겠다.

〈표 11-1〉 기혼여성의 지역별 결혼상태

(단위: %, 명)

결혼상태	전국	동부	읍·면부	X^2
유배우	89.8	89.9	89.2	
사별	4.7	4.2	7.0	34.8***
이혼·별거[1)]	5.5	5.9	3.8	
계(수)	100.0(10,367)	100.0(8,649)	100.0(1,718)	

주: 1) 미혼모 포함; 2)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결혼경력별로는 대부분의 부인이 초혼(98.0%)으로서 재혼부인의 비율은 극히 낮은 수준(2.0%)이었다. 이를 2006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경우 초혼은 1.1%pt 증가하였으며, 재혼비율은 1.1%pt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49]. 지역별로는 읍·면부지역의 재혼부인 비율이 동부지역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동부 1.7%, 읍·면부 3.7%). 기혼여성 남편의 경우 초혼 및 재혼비율은 부인들과 동일하였다. 지역별로는 부인과 마찬가지로 초혼비율은 동부지역에서, 그리고 재혼비율은 읍·면부지역에서 보다 높았다.

〈표 11-2〉 기혼여성 및 남편의 결혼경력별 분포

(단위: %, 명)

결혼경력	전국	동부	읍·면부	X^2
부인				
초혼	98.0	98.3	96.3	29.0***
재혼	2.0	1.7	3.7	
계(수)	100.0(10,368)	100.0(8,649)	100.0(1,719)	
남편				
초혼	98.0	98.3	96.4	27.3***
재혼	2.0	1.7	3.6	
계(수)	100.0(10,368)	100.0(8,649)	100.0(1,719)	

주: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49) 2006년 조사결과 부인의 초혼비율은 96.9%이었으며, 재혼비율은 3.1%이었음(김승권 외, 2006).

부부의 결혼경력별 결합형태를 살펴보면, 부부가 모두 초혼인 경우가 97.3%였으며,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 1.3%, 부인 초혼·남편 재혼 0.7%, 그리고 부인 재혼·남편 초혼은 0.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어 여성보다는 남성의 재혼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2000년 및 2003년, 2006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는 2000년 97.3%에서 2003년 96.9%, 그리고 2006년 96.0%로 다소 낮아졌으며, 2009년 다시 97.3%로 높아졌다. 남녀 모두 재혼인 비율과 남편이 초혼이고 부인이 재혼인 비율은 점차 높아지다가 2009년 조사결과에서는 다소 낮아졌다.

〈표 11-3〉 기혼여성 및 남편의 결혼경력별 분포의 비교

(단위: %, 명)

결혼경력	2000[1]	2003[2]	2006[3]	2009[4]
부인, 남편 모두 초혼	97.3	96.9	96.0	97.3
부인 재혼, 남편 초혼	0.3	0.6	0.9	0.7
부인 초혼, 남편 재혼	0.9	0.9	1.0	0.7
부인, 남편 모두 재혼	1.5	1.6	2.2	1.3
계(수)	100.0(10,700)	100.0(11,200)	100.0(9,707)	100.0(10,367)

자료: 1)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2)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3) 김승권 외,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4) 본 조사자료.

이러한 변화양상은 15~49세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부부간 결혼경력별 결합형태에서 보다 더 잘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녀 모두 초혼인 결합형태의 비율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고, 재혼인 결합형태의 비율은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남편, 부인 모두 초혼인 비율은 2000년 98.0%, 2003년 97.4%, 그리고 2006년 96.3%로 점차 감소하였으나 2009년 다시 증가하였다. 남편 초혼, 부인 재혼비율은 동일 연도별로 0.4%, 0.7%, 그리고 0.9%로 점차 증가하다가 2009년에 약간 감소하였다. 또한 남편 재혼, 부인 초혼인 비율은 2000년 1.6%, 2003년 0.7%, 2006년 0.8%, 2009년 0.6%로, 그리고 남편 부인 모두 재혼인 비율은 동일 연도별로 1.0%, 1.3%, 2.0%로 점차 증가하다가

2009년 1.1%로 감소하였다.

〈표 11-4〉 15~49세 기혼여성과 남편의 결혼경력

(단위: %, 명)

부인의 결혼경력	남편의 결혼경력		계(수)
	초혼	재혼	
2000	98.4	1.6	100.0(7,961)
초혼	98.0	1.6	98.6(7,852)
재혼	0.4	1.0	1.4(109)
2003	98.0	2.0	100.0(8,890)
초혼	97.4	0.7	98.1(8,719)
재혼	0.7	1.3	1.9(171)
2006	97.2	2.8	100.0(7,357)
초혼	96.3	0.8	97.1(7,144)
재혼	0.9	2.0	2.9(213)
2009	98.3	1.7	100.0(6,723)
초혼	97.6	0.6	98.2(6,602)
재혼	0.7	1.1	1.8(121)

자료: <표 11-3>과 동일

2. 남녀 특성별 초혼연령

남편과 부인의 평균 초혼연령은 남편 27.49세, 부인 24.58세로 남녀간에 2.91세의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자가 읍·면부지역 거주자보다 남녀 모두 초혼연령이 높았으나, 남녀 간의 초혼연령 차이는 읍·면부지역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동부 2.78세, 읍·면부 3.58세).

남편의 초혼연령을 보면, 동부지역 거주자는 27.56세, 읍·면부지역 거주자는 27.11세로 0.45세의 차이를 보였으며, 부인의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자는 24.78세, 읍·면부지역 거주자는 23.53세로 부인의 초혼연령의 지역 간 차이는 1.25세로 남성보다 여성의 초혼연령이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편은 39세 이하까지 높아지다가 40세 이후부터 점차 낮아지고, 부인은 34세 이하까지는 증가추세이나 35세 이상부터 차츰 감소하여 연령이 많을수록 초혼연령은 낮아졌다. 남편과 부인간의 초혼연령 차이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높아져 24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0.44세로 남녀 간에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나, 50세 이후의 경우 3.75세의 차이를 보였다.

〈표 11-5〉 남편 및 부인의 특성별 평균 초혼연령[1)]

(단위: 세, 명)

특성	남편	부인	차이(남편－부인)
전체	27.49	24.58	2.91
지역			
동부	27.56	24.78	2,78
읍·면부	27.11	23.53	3.58
F값(T값)	(17.3***)	(10.1**)	
연령			
15~24세	20.29	20.73	-0.44
25~29세	25.70	25.12	0.58
30~34세	27.88	26.19	1.69
35~39세	28.53	26.00	2.53
40~44세	28.33	25.22	3.11
45~49세	27.69	24.31	3.38
50세 이상	26.98	23.23	3.75
F값(T값)	66.2***	216.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6.57	22.38	4.19
고등학교	27.28	24.66	2.62
대학 이상	28.25	26.42	1.83
F값(T값)	140.2***	1115.0***	
초혼연도			
1979년 이전	25.98	22.06	3.92
1980~’89년	26.70	23.98	2.72
1990~’99년	27.90	25.40	2.50
2000~’09년	29.83	27.43	2.40
F값(T값)	538.3***	1296.3***	
(분석대상수)	(10,160)	(10,156)	

주: 1) 남편과 부인 모두 초혼인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 p<.01,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교육수준별로는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초혼연령은 높아졌으며, 남녀 간의 차이는 고학력일수록 감소하였다. 즉, 중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인 남편의 초혼연령은 26.57세, 동일한 교육수준인 부인의 초혼연령은 22.38세였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초혼연령도 점차 높아져 대학 이상의 학력수준인 남편의 초혼연령은 28.25세, 부인은 26.42세였으며, 남녀 간 차이는 중학교

이하 학력의 경우 4.19세에서 대학 이상 학력의 경우 1.83세로 감소하였다. 또한 초혼연도별로는 최근에 결혼한 남녀일수록 초혼연령은 높아지고, 남녀별 초혼연령간의 차이는 감소하여 1979년 이전에 결혼한 남편의 초혼연령은 25.98세, 부인의 초혼연령은 22.06세로 남녀 간의 초혼연령의 차이는 3.92세였으나 2000년대에 결혼한 남편은 29.83세, 부인은 27.43세로 그 차이는 2.40세로 감소하여 최근에 결혼한 젊은 층일수록 남녀 간 초혼연령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남녀 특성별 결합형태

가. 초혼연령별 결합형태

부인과 남편의 초혼연령별 결합형태를 보면, 아직도 남성이 연상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나 점차 남녀 동갑이거나 여성이 연상인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1-6〉 15세 이상 기혼여성과 남편의 초혼연령별 분포[1)]

(단위: %, 명)

부인	남편					계(수)	χ^2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19세 이하	12.4	45.6	37.2	3.0	1.8	100.0(667)	
20~24세	0.7	26.7	62.0	9.6	1.0	100.0(4,553)	
25~29세	-	4.0	67.9	25.8	2.3	100.0(4,030)	5450.1***
30~34세	-	0.3	17.9	62.0	19.9	100.0(728)	
35세 이상	-	-	6.8	18.4	74.8	100.0(103)	
전체	1.1	16.7	59.0	19.5	3.7	100.0(10,081)	

주: 1) 부인, 남편 모두 초혼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함; 2)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남녀의 초혼연령별 결합형태를 살펴보면, 19세 이하 여성의 경우 20~24세 이하의 남성과 결혼한 비율이 45.6%, 25~29세 남성과 결혼한 비율은 37.2%로 대부분(82.8%) 20대의 남성과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세에 결혼한 여

성은 25~29세의 남성과 결혼한 비율이 62.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같은 연령층인 20~24세 연령층과 결혼한 비율(26.7%)이 높았다. 이에 비해 25~29세에 결혼한 여성은 같은 연령층의 남성과 결혼한 비율이 67.9%였으며, 30~34세에 결혼한 여성은 같은 연령층의 남성과 결혼한 비율이 62.0%, 그리고 35세 이상에 결혼한 여성은 같은 35세 이상 연령층의 남성과 결혼한 비율이 74.8%에 달했다.

이는 비슷한 연령대에서 결혼하고자 하는 결혼연령상의 동질혼의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남녀 결혼연령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인의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연하의 남성과 결혼하는 비율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 최근의 초혼연령별 남녀 결합형태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50].

나. 교육수준별 결합형태

교육수준은 결혼당사자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남녀의 교육수준별 결합형태에 있어서도 대부분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수준의 상향혼을 선택하는 경향이다. 이는 본 조사대상 부인의 남편과의 교육수준별 결합형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중학교 이하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 부인의 경우 같은 학력을 가진 남성과의 결합률이 가장 높아 65.2%를 차지하였으나 부인보다 높은 학력의 남편과 결혼한 비율도 34.9%나 되었으며, 고등학교 학력의 부인의 동일 학력의 남성과의 결합률은 65.2%였으며, 대학 이상의 남성과 결혼한 비율은 31.5%로 전체 고등학교 이상의 남성과의 결합률이 96.7%였다. 또한 대학 이상 부인의 동일학력 남성과의 결합률은 더욱 높아 87.8%에 달했다. 반대로 남성보다 여

50) 통계청 자료에 의한 초혼부부의 연령차이별 구성비를 보면, 남성이 연상인 경우는 2003년 73.6%에서 2006년 71.8%, 2008년 70.4%로 감소하였으며, 남녀 동갑인 경우는 2003년 14.7%에서 2006년 15.4%, 2008년 15.9%로, 그리고 여성이 연상인 경우는 동일 년도에 각각 11.7%, 12.8%, 13.7%로 점차 증가추세임(통계청, 2009).

성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의 결합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표 11-7〉 15세 이상 기혼여성 및 남편의 교육수준별 분포

(단위: %, 명)

부인	남편			계(수)	χ^2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 이상		
중학교 이하	65.2	31.1	3.8	100.0(2,253)	
고등학교	3.3	65.2	31.5	100.0(4,074)	7530.2***
대학 이상	0.7	11.5	87.8	100.0(2,977)	
전체	17.4	39.8	42.8	100.0(9,304)	

주: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4. 혼인지속기간

부인의 평균 혼인지속기간은 19.77년으로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이 19.18년인데 비해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들은 22.80년으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혼인지속기간이 3.62년 더 길었다.

혼인지속기간은 부인의 연령, 학력 및 초혼연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 연령이 높을수록, 저학력일수록, 그리고 초혼연도가 빠를수록 혼인지속기간은 길었다. 연령별로는 대부분 20대에서 초혼이 이루어짐으로써 연령이 높을수록 혼인지속기간도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이며,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층일수록 고연령층으로 초혼연령이 빠른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초혼년도별로도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혼인지속기간은 짧았다. 전체적으로 동부지역보다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들의 혼인지속기간이 길게 나타나는 것은 동부지역은 저연령층, 고학력층 부인들의 비율이 높아 최근에 결혼한 부인이 많은 반면, 읍·면부지역은 고연령층, 저학력층 부인들의 비율이 더 높아 초혼연령이 낮기 때문이다.

〈표 11-8〉 기혼여성의 특성별 평균 혼인지속기간[1)]

(단위: 년, 명)

특성	전국	동부	읍·면부
전체	19.77	19.18	22.80
F값(T값)	(22.5***)		
연령			
15~24세	2.43	2.09	3.49
25~29세	2.94	2.93	3.00
30~34세	6.34	6.23	7.29
35~39세	11.45	11.37	11.96
40~44세	17.10	17.05	17.44
45~49세	23.05	22.85	24.04
50세 이상	32.80	32.42	34.27
F값(T값)	8921.6***	7522.0***	1389.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1.48	31.31	31.89
고등학교	18.72	18.92	17.60
대학 이상	12.65	12.72	11.90
F값(T값)	2801.2***	2080.9***	638.1***
초혼연도			
1979년 이전	35.37	35.16	36.05
1980~’89년	24.57	24.56	24.61
1990~’99년	14.60	14.63	14.39
2000~’09년	4.82	4.81	4.89
F값(T값)	36076.6***	30066.3***	5621.6***
(분석대상수)	(9,117)	(7,639)	(1,478)

주: 1) 초혼 유배우부인만을 대상으로 함; 2)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제2절 해혼실태

1. 해혼부인의 일반특성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족해체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배우자의 사망, 이혼, 별거 등을 들 수 있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전체 응답대상부인 중 10.2%가 해혼상태였다(사별 4.7%, 이혼·별거 5.5%). 이들 해혼부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별 분포는 30대 이하는 45.4%였으며, 40대 이후는 54.7%(40대 34.2%, 50대 20.5%)로 연령이 높을수록 해혼비율은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30~40대는 동부지역이, 20대 이하와 50대 이상은 읍·면부지역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11-9〉 사별·이혼·별거부인의 일반특성

(단위: %, 명)

특성	전국	동부	읍·면부	X^2
연령				
29세 이하	10.9	10.7	12.0	
30~39세	34.5	35.4	29.9	7.2
40~49세	34.2	34.9	31.0	
50세 이상	20.5	19.0	27.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4.5	50.5	73.9	35.5***
고등학교	35.4	38.1	22.8	
대학 이상	10.0	11.8	3.3	
현존자녀수				
0명	4.0	4.0	4.0	
1명	20.9	22.9	11.4	54.2***
2명	46.5	47.9	39.8	
3명	18.4	18.0	20.5	
4명 이상	10.2	7.2	24.4	
취업여부				
취업	64.4	62.0	75.7	12.4***
비취업	35.6	38.0	24.3	
계 (수)	100.0 (1,056)	100.0 (872)	100.0 (184)	

주: 1) 해혼부인(사별, 이혼, 별거)만을 대상으로 함; 2)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 학력층에서 해혼비율이 가장 높았으며(54.5%), 특히 읍·면부지역이 가장 높았다(73.9%). 현존자녀수별로는 2명인 부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동부지역 부인의 비율이 높았다.

해혼부인 중 취업부인은 64.4%로서 읍·면부지역 해혼부인들의 취업률이 75.7%로 동부지역 해혼부인들의 취업률(62.0%) 보다 높았다. 이와 같이 해혼부인들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51] 대부분 생계책임자이던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별거에 따라 가구소득이 감소되거나 상실됨으로써 가구원의

51) 본 조사결과에 의한 유배우부인들의 취업률은 48.1%였음.

생계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하겠다. 즉, 대부분 가정에서 남성을 통해 가족내부로 경제적인 자원이 유입되고 분배되어 왔기 때문에 부부관계의 소멸은 해혼부인들에게 있어 직접적인 소득상실로 이어져 생계유지와 자녀양육을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이다.

다음의 <표 11-10>은 해혼유형별 부인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이다. 연령별 분포는 사별부인은 50대가 가장 많아 35.7%였고, 이혼·별거부인은 30대가 가장 많아 46.9%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사별부인은 44.73세, 이혼·별거부인은 38.23세로 사별부인이 이혼·별거부인보다 고연령층이었다.

교육수준은 사별부인이 고등학교 이상 비율이 28.6%인데 비해 이혼·별거부인들은 59.9%였다. 현존자녀수는 사별부인은 2명 이하 55.5%, 3명 이상이 44.6%였으나 이혼·별거 부인은 2명 이하가 85.4%, 3명 이상은 14.6%로 사별부인의 현존자녀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취업률은 각각 57.5%와 70.3%로 사별부인보다는 이혼·별거부인의 취업률이 높은 편이었다. 이는 이혼·별거부인이 사별부인보다 젊은 연령층으로 어린 자녀의 양육부담과 생계 및 부양책임자로서 취업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혼·별거 전 이미 취업 중인 부인이 경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혼·별거를 선택한 경우일 수도 있다.

〈표 11-10〉 사별 및 이혼·별거부인의 해혼유형별 특성

(단위: %, 명, 세)

특성	사별	이혼·별거	전체	X^2 (t값)
지역				
동부	75.3	88.6	82.5	32.5***
읍·면부	24.7	11.4	17.5	
연령				
29세 이하	9.3	12.2	10.9	
30~39세	19.8	46.9	34.4	158.3***
40~49세	35.3	33.2	34.2	
50세 이상	35.7	7.7	20.5	
(평균 연령)	44.73	38.23	41.22	(39.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71.4	40.1	54.5	103.8***
고등학교	22.0	46.9	35.5	
대학 이상	6.6	13.0	10.0	
현존자녀수				
0명	2.9	4.9	4.0	
1명	11.8	28.9	20.9	142.1***
2명	40.8	51.6	46.6	
3명	25.3	12.4	18.4	
4명 이상	19.3	2.2	10.2	
취업여부				
취업	57.5	70.3	64.4	18.6***
비취업	42.5	29.7	35.6	
계	100.0	100.0	100.0	
(수)	(485)	(572)	(1,057)	

주: 1) 해혼부인(사별, 이혼, 별거)만을 대상으로 함; 2)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2. 해혼시기

해혼유형별 해혼시기를 살펴보면, 사별부인은 사별당시 40대였던 경우가 35.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30대로서 34.5%, 그리고 50대가 19.7%였다. 그러나 이혼·별거부인의 경우는 30대가 49.6%, 40대가 29.4%로 30~40대에서 이혼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해혼당시 평균연령은 사별부인은 44.73세, 이혼·별거부인은 38.23세였다.

남편의 경우도 사별은 40~50대(65.5%)에서, 그리고 이혼·별거는 30~40대

(81.6%)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해혼당시 남편의 평균연령은 사별은 49.55세, 이혼·별거는 41.40세였다.

〈표 11-11〉 해혼유형별 해혼당시 부인 및 남편의 연령분포

(단위: %, 명, 세)

해혼당시 연령	사별	이혼·별거	전체	X^2
부인				
15~29세	9.3	12.2	10.9	
30~39세	19.8	46.9	34.4	158.3***
40~49세	35.3	33.2	34.2	
50세 이상	35.7	7.7	20.5	
계(수)	100.0(485)	100.0(572)	100.0(1,057)	
평균연령	44.73	38.23	41.22	
남편				
15~29세	2.1	4.6	3.4	
30~39세	17.5	41.7	30.6	159.4***
40~49세	30.9	37.1	34.2	
50~59세	30.7	13.8	21.6	
60세 이상	18.9	2.8	10.2	
계(수)	100.0(488)	100.0(571)	100.0(1,057)	
평균연령	49.55	41.40	45.14	

주: 1) ***p<.001
자료: 1) 본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사별의 경우 부인, 남편 모두 40대에서, 그리고 이혼·별거는 부인은 30대에서, 그리고 남편은 30~40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해체의 비의도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배우자 사망에 의한 해혼은 남녀 모두 40대에서, 의도적인 요인인 이혼·별거는 남녀 각각 30대와 40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부인의 경우 20대 이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12.2%에 이르며, 남편의 경우에는 50세 이후가 16.6%나 되어 결혼 초기나 황혼기 이혼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3. 해혼이유

이혼·별거한 부인만을 대상으로 해혼이유를 살펴본 결과, 성격차이 28.6%, 경제문제 22.8%, 배우자의 외도 25.2%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52]. 지역별로는 학대·폭력과 성격차이, 기타에 의한 해혼비율은 읍·면부지역에서 높았고, 특히 성격차이에 의한 이혼·별거는 읍·면부지역이 40.6%로 동부지역(27.0%)보다 13.6%pt 높았다. 그 외 이유는 모두 동부지역에서 높았다.

이혼·별거 당시 부인의 연령별 해혼이유를 보면, 40대와 20대 이하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별거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대는 배우자의 외도 등으로 인한 이혼·별거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50대는 경제문제가 해혼의 주요 이유가 되고 있어 다른 연령층과의 차이를 보였다.

부인의 교육수준별 이혼·별거의 이유를 보면, 중학교 이하 학력수준의 부인은 외도(28.5%), 성격차이(28.1%), 경제문제(21.1%)의 순이었고, 고등학교 학력수준의 부인들은 성격차이(28.3%), 경제문제(26.0%)등의 순이었으며, 대학 이상의 학력수준의 부인들은 성격차이가 31.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외도(24.3%)였다.

부부의 이혼·별거의 이유는 결혼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여 결혼기간이 10년 미만인 부인은 성격차이에 의한 해혼비율(26.8%)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경제문제(25.5%)로 인한 해혼비율이 높았다. 특히 가족부양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이혼·별거 비율이 14.5%로 결혼기간이 10년 이상된 부인과 차이를 보였다.

결혼기간이 10~19년 이하인 부인은 성격차이(35.7%), 외도(27.8%), 경제문제(21.4%)의 순으로, 그리고 20년 이상인 부인은 외도(40.7%), 성격차이(25.4%)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해혼당시 18세 미만의 자녀유무에 따른 이혼·별거 이유는 모두 성격차이

52) 통계청 자료(2009)에 의하면, 이혼사유로 성격차이(47.8%), 경제문제(14.2%), 배우자 부정(8.1%)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이었음.

로 인한 이혼·별거가 가장 높은 비율로 자녀유무에 따른 의미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11-12〉 이혼·별거부인의 특성별 이혼·별거 이유

(단위: %, 명)

특성	외도	학대·폭력	성격차이	경제문제	가족부양의무 불이행	가족간 불화	기타[1]	계(수)	X^2
전체	25.2	7.4	28.6	22.8	10.6	3.2	2.3	100.0(503)	
지역									
동부	26.2	7.4	27.0	23.5	10.7	3.2	2.0	100.0(503)	8.4*
읍·면부	17.2	7.8	40.6	17.2	9.4	3.1	4.7	100.0(64)	
이혼·별거당시 연령									
29세 이하	28.6	10.0	38.6	8.6	11.4	0.0	2.9	100.0(70)	
30~39세	28.2	8.6	22.9	26.3	10.2	2.3	1.5	100.0(266)	54.2***
40~49세	19.9	5.2	37.2	18.3	11.5	5.8	2.1	100.0(191)	
50세 이상	25.6	7.0	9.3	44.2	7.0	0.0	7.0	100.0(4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8.5	9.2	28.1	21.1	8.8	1.8	2.6	100.0(228)	20.8*
고등학교	22.6	6.8	28.3	26.0	12.1	2.3	1.9	100.0(265)	
대학 이상	24.3	4.1	31.1	16.2	12.2	9.5	2.7	100.0(74)	
결혼기간									
10년 미만	20.9	7.0	26.8	25.5	14.5	3.5	1.9	100.0(373)	36.6***
10~19년	27.8	8.7	35.7	21.4	2.4	1.6	2.4	100.0(126)	
20년 이상	40.7	8.5	25.4	8.5	6.8	5.1	5.1	100.0(59)	
이혼·별거시 18세 미만 자녀유무									
없었음	24.2	5.3	33.3	19.7	11.4	2.3	3.8	100.0(132)	5.4
있었음	25.6	8.0	27.0	23.6	10.5	3.4	1.8	100.0(437)	

주: 1) 건강상 이유, 가출 등이 포함됨; 2) * p<.05,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이혼·별거 이유는 부부의 결혼연도별로도 차이를 보여 1979년 이하 결혼한 부인들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별거가 32.7%로 다른 결혼연도에 비해 높았으며, 1980년대 결혼한 부인은 성격차이, 외도, 경제문제 순으로, 1990년대 결혼한 부인은 성격차이, 경제문제, 외도 그리고 가족부양의무 불이행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2000년대 결혼한 부인들은 경제문제, 외도, 가족부양의무 불이행, 성격차이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외도로 인한 이혼·별거비율은 낮아지는 반면, 경제문제, 가족부

양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이혼·별거비율은 높아지는 추세였다.

〈표 11-13〉 이혼·별거부인의 결혼연도별 이혼·별거 이유

(단위: %, 명)

결혼연도	외도	학대·폭력	성격 차이	경제 문제	가족부양 의무 불이행	가족간 불화	기타[1]	계(수)	χ^2
1979년 이하	32.7	6.9	27.6	17.6	9.4	2.5	3.8	100.0(159)	24.7
1980~1989년	26.8	6.8	28.2	25.5	8.6	2.3	1.8	100.0(220)	
1990~1999년	16.3	8.8	33.1	23.1	13.1	4.4	1.3	100.0(160)	
2000~2009년	21.2	9.1	15.2	27.3	18.2	6.1	3.0	100.0(33)	
전체	25.2	7.5	28.5	22.7	16.7	3.1	2.3	100.0(572)	

주: 1) 건강상의 이유, 가출 등이 포함됨.
자료: 본 조사결과

4. 해혼부인의 평균 혼인지속기간

이들 해혼부인들의 결혼 시부터 배우자의 사별, 이혼·별거시까지의 평균 혼인지속기간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10.21년으로 이 중 사별부인은 11.67년, 이혼·별거부인은 8.95년으로 사별부인의 혼인지속기간이 긴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혼·별거부인보다는 사별부인이 고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하겠다.

결혼연도별로는 사별이나 이혼·별거부인 모두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혼인지속기간이 짧았으며, 특히 이혼·별거부인의 혼인지속기간이 짧았다. 1979년까지 결혼한 부인들 중 사별한 부인은 12.89년 동안 결혼이 지속되었으며, 이혼·별거부인은 14.48년 동안 지속되었다. 1980~'89년 결혼한 부인들은 각각 8.23년과 8.68년 동안 결혼이 지속되었으며, 1990~'99년 결혼한 부인들은 8.26년과 5.48년 동안, 그리고 2000년대 결혼한 부인 중 이혼·별거한 부인들은 1.90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러한 결혼연도별 혼인지속기간의 변화는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젊은 층이며, 저연령층의 경우 사별보다는 이혼·별거에 의한 해혼율이 높기 때문이다.

〈표 11-14〉 해혼부인의 결혼연도별 평균 혼인지속기간

(단위: 년, 명)

결혼연도	사별	이혼·별거	전체
1979년 이하	12.89	14.48	12.54
1980~1989년	8.23	8.68	8.54
1990~1999년	8.26	5.48	5.84
2000~2009년	-	1.90	1.90
전체	11.67	8.95	10.21
(분석대상수)	(480)	(561)	(1,041)

자료: 본 조사결과

5. 이혼·별거 제의자

이혼·별거 제의자는 남편 25.2%, 부인 73.4%, 그 외 시부모나 친정부모 등에 의한 비율이 1.4%로 남편보다는 부인의 이혼·별거 제의율이 높았다. 해혼 당시 연령별로는 전체적으로 부인의 제의율이 높았으며, 특히 30대가 가장 높았다. 남편이 제의한 경우는 5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교육수준별로도 전체적으로 부인이 제의한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고등학교 학력에서 가장 높았다. 결혼기간별로는 결혼기간이 길수록 부인이 제의한 비율이 높았으며, 남편이 제의한 경우는 결혼기간이 길수록 점차 비율이 낮았다.

이혼·별거당시 18세 미만 자녀수별 부인에 의한 이혼·별거 제의율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부인에 의한 이혼·별거 제의율이 높았으나 18세 미만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인의 이혼·별거 제의율은 낮아졌다. 부부간의 연령차이에 따른 부인의 이혼·별거 제의율은 부부간 연령이 10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부인에 의한 이혼·별거 제의율(80.0%)이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해 남편이 제의한 경우는 부부간 연령차이가 적은 경우에 오히려 높게 나타나 1~2세 차이가 나는 경우 29.6%의 제의율을 보였으나 10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제의율은 16.7%이었다.

〈표 11-15〉 이혼·별거부인의 특성별 이혼·별거 제의자

(단위: %, 명)

특성	남편	부인	기타[1]	계(수)	X^2
전체	25.2	73.4	1.4	100.0(567)	
이혼·별거당시 연령					
29세 이하	29.0	68.1	2.9	100.0(69)	10.9
30~39세	19.9	78.2	1.9	100.0(266)	
40~49세	29.1	70.4	0.5	100.0(189)	
50세 이상	34.9	65.1	-	100.0(4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0.7	68.4	0.9	100.0(228)	10.3*
고등학교	22.3	76.6	1.1	100.0(265)	
대학 이상	18.9	77.0	4.1	100.0(74)	
결혼기간					
10년 미만	25.9	72.7	1.3	100.0(374)	2.5
10~19년	28.3	70.1	1.6	100.0(127)	
20년 이상	17.5	80.7	1.8	100.0(57)	
이혼·별거당시 18세 미만 자녀수					
없음	21.2	78.0	0.8	100.0(132)	3.1
1명	23.9	74.6	1.5	100.0(197)	
2명 이상	28.2	70.2	1.7	100.0(238)	
부부간 연령차이					
동갑	26.0	74.0	-	100.0(50)	7.1
1~2세	29.6	69.0	1.5	100.0(203)	
3~4세	24.4	74.8	0.8	100.0(131)	
5~9세	21.6	75.8	2.6	100.0(153)	
10세 이상	16.7	80.0	3.3	100.0(30)	

주: 1) 시부모·친정부모 및 기타 가족원; 2) * p<.05
자료: 본 조사결과

6. 이혼·별거 부인의 자녀양육

가. 이혼·별거 당시 18세 미만 자녀수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별거는 부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본 조사결과에서 이혼·별거당시의 18세 미만 자녀수를 살펴보면, 29세 이하에 이혼·별거한 부인들의 경우 10.1%가 아직 자녀를 두지 않은 상태였으

며, 나머지 89.8%는 자녀를 둔 상태였다. 30대에 이혼·별거한 부인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아 93.6%였으며, 40대에 이혼한 부인은 61.4%였다. 그러나 50세 이상에 이혼·별거한 부인 중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비율은 18.6%에 불과하였다.

이는 18세 미만의 평균 자녀수에서도 나타났는데, 이혼·별거당시 29세 이하인 부인의 자녀는 평균 1.33명이었으며, 30대는 1.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 40대는 0.95명, 50대는 0.25명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18세 미만 자녀수가 적었다. 이는 부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의 연령도 높아지고 대부분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결혼을 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표 11-16〉 이혼·별거부인의 이혼·별거 당시 연령별 18세 미만 자녀수

(단위: %, 명)

이혼·별거 당시 연령	이혼·별거 당시 18세 미만 자녀수				χ^2	평균 자녀수	F값 (T값)
	없음	1명	2명 이상	계(수)			
29세 이하	10.1	47.8	42.0	100.0(69)	163.194***	1.33	50.7***
30~39세	6.4	37.2	56.4	100.0(266)		1.63	
40~49세	38.6	30.7	30.7	100.0(189)		0.95	
50세 이상	81.4	16.3	2.3	100.0(43)		0.25	
전체	23.3	34.7	42.0	100.0(567)		1.26	

주: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이혼·별거 당시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인 중 현재에도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인은 전체 이혼·별거부인 중 57.2%나 되었다. 이혼·별거 당시 18세 미만 자녀수별 현재의 18세 미만 자녀수를 살펴보면, 이혼·별거 당시 1명이었던 부인 중 현재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부인은 50.3%, 1명은 49.2%, 2명 이상은 0.5%였으며, 이혼·별거 당시 2명이었던 부인 중 현재 1명도 없는 부인은 36.7%, 1명 24.1%, 2명 이상 39.2%로 현재에도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인은 각각 49.7%와 63.3%였다.

〈표 11-17〉 이혼·별거당시 18세 미만 자녀수별 현재의 18세 미만 자녀수

(단위: %, 명)

이혼·별거당시 18세 미만 자녀수	현재의 18세 미만 자녀수				χ^2
	없음	1명	2명 이상	계(수)	
전체	42.9	35.5	21.7	100.0(434)	
1명	50.3	49.2	0.5	100.0(197)	98.4***
2명 이상	36.7	24.1	39.2	100.0(237)	

주: 1) 이혼·별거부인 중 현재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함; 2)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나. 자녀와의 동거자 및 양육비 제공자

조사당시 이혼·별거자의 18세 미만의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의 동거자는 84.1%가 자녀의 모, 13.9%는 자녀의 부로서 대부분이 부모 중 한 쪽과 동거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2.0%는 조부모 및 기타 친척 등과 동거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의 경우 자녀의 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83.9%, 부와 동거하는 비율은 13.9%, 조부모나 기타 친척이 2.2%였다. 그러나 읍·면부지역의 경우에는 자녀의 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85.7%, 부와 동거하는 비율은 14.3%였으며 조부모 및 친척과 동거하는 경우는 없었다.

〈표 11-18〉 현재의 18세 미만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의 특성별 동거자[1)]

(단위: %, 명)

구분	자녀의 부	자녀의 모	조부모 및 기타 친척	계(수)
전체	13.9	84.1	2.0	100.0(251)
지역				
동부	13.9	83.9	2.2	100.0(223)
읍·면부	14.3	85.7	-	100.0(28)
자녀의 연령				
0~ 5세	12.5	84.4	3.1	100.0(32)
6~11세	9.3	86.7	4.0	100.0(75)
12~17세	16.2	83.1	0.7	100.0(142)

주: 1) 이혼·별거부인 중 현재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함;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자녀의 연령별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주동거자가 자녀의 모인 경우가 84.4%, 자녀의 부인 경우 12.5%, 그리고 조부모 및 기타 친척인 경우 3.1%였다. 만 6세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에도 모두 자녀의 모가 주 동거자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만 6~11세 자녀를 둔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86.7%)이었다.

다음 <표 11-19>는 자녀의 연령 및 동거자별 주 양육비 제공자를 살펴본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자녀의 주 양육비 제공자는 자녀의 모로 44.2%였고, 그 다음은 국가(31.7%)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이거나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이다[53]. 이 외 자녀의 부와 조부모 및 기타 친척 등은 각각 11.2%였다.

자녀의 연령별로는 0~5세 이하는 자녀의 모 38.7%, 국가 25.8%, 조부모 및 기타 친척 22.6%, 자녀의 부 9.7% 순이었다. 6~11세는 자녀의 모, 국가, 조부모 및 기타 친척, 자녀의 부 순으로, 12~17세는 자녀의 모, 국가, 자녀의 부, 조부모 및 기타 친척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의 모가 주 양육비 제공자인 비율이 높아졌으며, 조부모 및 기타 친척은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주 양육비 제공비율은 낮아졌다. 자녀의 부는 자녀연령에 따른 일관성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12세 이상일 때 양육비 제공 비율이 가장 높았다.

53) 국가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노동능력을 상실했거나 노동능력이 있어도 최저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족과 그 가족구성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많은 한부모가구가 수혜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음. 반면,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은 보험가입자와 그 가족에 한해 지원이 제공됨.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모 또는 부가 세대주이거나 18세 미만 (취학중인 경우는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써 배우자와 사별, 이혼한 자, 미혼자, 조손가족 및 외국인임. 일부 유배우자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는 배우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가 있어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6개월 이상의 장기복역 중인 경우, 생사가 불분명하거나 가족 내 불화로 인해 가출한 경우에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김승권 외, 2009).

〈표 11-19〉 현재의 18세 미만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 및 동거자별 주 양육비 제공자[1)]

(단위: %, 명)

동거자	주 양육비 제공자					
	자녀의 부	자녀의 모	조부모/기타 친척	국가	기타	계(수)
자녀의 연령						
0~5세	9.7	38.7	22.6	25.8	3.2	100.0(31)
6~11세	8.0	40.0	13.3	38.7	-	100.0(75)
12~17세	13.4	47.2	7.7	29.6	2.1	100.0(142)
자녀와의 동거자						
자녀의 부	82.4	5.9	11.8	-	-	100.0(32)
자녀의 모	-	51.4	9.0	37.6	1.9	100.0(210)
조부모 및 기타	-	-	100.0	-	-	100.0(5)
전체	11.2	44.2	11.2	31.7	1.6	100.0(249)

주: 1) 이혼·별거부인 중 현재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함;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제3절 가족주기

1. 가족주기 분석대상의 특성

가족주기에 있어서 결혼과 자녀의 출산이 각 가족주기 단계의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으로서 가족주기 단계를 구분 짓는 전환점이 된다는 점에서 본 분석대상은 자녀 출산경험이 있는 초혼부인으로서 유배우이거나 사별 상태인 부인 9,05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15~64세 초혼부인 중 94.3%가 자녀출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혼연도별로 보면, 1970년대 이하 결혼한 부인들은 99.4%가 출산경험이 있는 부인들이었으며, 1980년대 결혼한 부인들은 98.8%, 1990년대는 98.4%, 그리고 2000년대 결혼한 부인들 중에서는 77.2%만이 출산경험이 있었다. 이는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저연령층으로 출산계획은 있으나 아직 출산하지 않은 부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54)].

54) 본 조사결과, 2000년대 결혼한 부인 중 현재 자녀가 없으면서 향후 출산계획 중인, 즉

〈표 11-20〉 15~64세 이하 초혼부인의 초혼연도별 출생아 유무[1)]

(단위: %, 명)

출생아 유무	초혼연도				전체	X^2
	1979년 이전	1980~1989년	1990~1999년	2000~2009년		
없음	0.6	1.2	1.6	22.8	5.7	1396.2***
있음	99.4	98.8	98.4	77.2	9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467)	(2,430)	(2,676)	(2,031)	(9,604)	

주: 1) 초혼 유배우·사별 부인만을 대상으로 함; 2)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이들 가족주기 분석대상 부인들의 초혼연도별 특성을 살펴보면,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젊은 층이어서 2000년대 결혼한 부인은 30대 이하가 97.4%인데 비해 1990년대 결혼한 부인은 51.6%, 1980년대 결혼한 부인은 0.5%에 불과하고 40대 이상이 99.5%였다. 1970년대 결혼한 부인은 대부분(97.8%)이 50세 이상이었다.

교육수준 역시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높아 1970년대 이하는 중학교 이하가 68.6%를 차지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결혼한 부인은 중학교 이하의 학력은 점차 감소하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 높아지는 추세였으며, 특히 2000년대 결혼한 부인은 대학교 이상의 학력이 60.5%로 다른 연도에 결혼한 부인에 비해 학력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출산아수는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1명뿐인 비율이 높았고, 2명은 1980년대와 1990년대 결혼한 부인의 비율이 높았으며, 3명 이상인 비율은 1970년대 이전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다. 출산완료율은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낮았다. 결혼한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전체 분석대상 부인 중 22.7%였으며, 이 중 자녀의 결혼이 완료된 부인의 비율은 1970년대 이하에 결혼한 부인의 26.2%와 1980년대 결혼한 부인의 0.7%뿐이었다.

자녀를 희망하는 부인은 46.2%였음.

〈표 11-22〉 15~64세 이하 가족주기 분석대상 부인의 초혼연도별 특성[1)]

(단위: %, 명)

특성	1979년 이하	1980~1989년	1990~1999년	2000~2009년	전체	X^2
연령						
29세 이하	-	-	0.4	25.1	4.5	
30~39세	-	0.5	51.2	72.3	27.5	10859.7***
40~49세	2.2	63.1	47.4	2.6	31.6	
50세 이상	97.8	36.4	1.0	-	36.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8.6	26.8	3.5	2.1	27.1	3961.8***
고등학교	25.0	53.5	54.9	37.4	43.4	
대학 이상	6.4	19.7	41.6	60.5	29.5	
출산자녀수						
1명	5.4	13.1	14.2	48.5	17.5	
2명	45.2	70.7	71.0	46.4	59.7	2634.0***
3명	32.4	13.6	13.7	4.9	17.2	
4명 이상	17.0	2.6	1.0	0.2	5.6	
출산완료 여부						
출산완료	100.0	100.0	97.5	71.6	94.3	1856.7***
출산 중	-	-	2.5	28.4	5.7	
자녀혼인여부						
모두 혼인	26.2	0.7	-	-	7.3	
일부 혼인, 일부 미혼	51.0	5.9	-	-	15.4	5762.9***
모두 미혼	22.8	93.4	100.0	100.0	77.3	
계 (수)	100.0 (2,451)	100.0 (2,402)	100.0 (2,634)	100.0 (1,568)	100.0 (9,055)	

주: 1) 초혼 유배우이거나 사별이면서 출산자녀 있는 부인만을 대상으로 함; 2)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이들의 초혼연도별 평균연령은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57.34세였으며, 1980~198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48.10세, 1990~199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39.46세, 그리고 2000년대 결혼한 부인들은 32.13세였다. 이들의 평균 출생아 수는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2.67명, 1980~198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2.06명, 1990~199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2.02명, 그리고 2000년대에 결혼한 부인들은 1.57명으로 최근 결혼한 부인일수록 적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평균출생아 수의 감소양상은 자녀관의 변화 등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평균 현존자녀수는 총 출생자녀 중 사망자녀를 제외한 자녀수로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평균 2.60명이었으나 1980~198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2.03명, 1990~199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2.01명, 그리고 2000~200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1.56명이었다. 따라서 평균 출산자녀수와 평균 현존자녀수와의 차이는 그 간의 사망률 개선에 의한 영향으로 최근 들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균 추가희망자녀수는 출산이 완료되지 않은 부인들이 포함된 1990년대 결혼한 부인들부터 살펴보면, 1990~199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0.03명, 그리고 2000~200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0.40명으로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많았고, 따라서 출산완료율은 1990~1999년 97.5%, 2000~2009년 71.6%로 낮았다.

〈표 11-23〉 15~64세 이하 초혼 출산경험 부인의 초혼연도별 특성

특성	초혼연도				F값(T값)
	1979년 이전	1980~1989년	1990~1999년	2000~2009년	
평균 연령(세)	57.34	48.10	39.46	32.13	16,453.8***
평균 출생아수(명)	2.67	2.06	2.02	1.57	800.7***
평균 현존자녀수(명)	2.60	2.03	2.01	1.56	758.1***
평균 추가희망자녀수(명)	0.00	0.00	0.03	0.40	845.3***
출산완료율(%)[1]	100.00	100.00	97.50	71.60	-
결혼자녀 둔 비율(%)	77.20	6.60	-	-	-
평균 결혼자녀수(명)	1.90	1.06	-	-	116.6***
(분석대상수)	(2,451)	(2,402)	(2,634)	(1,568)	

주: 1) 추가자녀 희망 여부에서 '생각 중'인 경우를 완료에 포함함; 2)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또한 결혼한 자녀를 둔 부인은 연령이 높고 결혼연도가 빠를수록 비율이 높아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은 77.2%, 1980~1989년에 결혼한 부인은 6.6%에 불과하였다. 평균 결혼자녀수 역시 결혼연도가 빠른 부인일수록 많아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1.90명, 1980~1989년 결혼한 부인은 1.06명, 그리고 1990~1999년과 2000~2009년 결혼한 부인들은 아직 결혼한 자녀가 없었다.

2. 가족주기의 변화

가족주기의 각 단계별 시작 및 종료시점을 결정짓는 가족생애사건을 살펴보면, 제1단계인 형성기는 결혼부터 첫째아 출산시점까지, 제2단계인 확대기는 첫째아 출산부터 막내아 출산시점까지이며, 제3단계인 확대완료기는 막내아 출산시부터 자녀의 결혼시작 시까지, 제4단계인 축소기는 자녀의 결혼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자녀의 결혼이 완료된 시점, 제5단계인 축소완료기는 자녀를 모두 결혼시킨 시점에서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6단계인 해체기는 배우자 사망으로부터 본인 사망 시까지의 기간으로 하였다.

가족주기의 첫 단계인 형성기의 시작시점인 초혼연령은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점점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22.08세였으나, 1980~1989년 결혼한 부인은 23.98세, 1990~1999년 결혼한 부인은 25.35세, 그리고 2000~2009년에 결혼한 부인은 27.13세로 나타나고 있다.

확대기의 시작시점인 첫째아 출산시 부인연령도 초혼연령 상승의 영향으로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높아져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은 23.14세였으나 1980~1989년 결혼한 부인은 25.01세, 1990~1999년 결혼한 부인은 26.34세, 그리고 2000~2009년 결혼한 부인은 28.16세였다. 확대기의 종료시점이면서 확대완료기의 시작시점인 막내아 출산시 부인연령은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은 27.45세, 1980~1989년 결혼한 부인은 28.25세로 높아졌다. 1990~1999년에 결혼한 부인은 29.48세, 2000~2009년 결혼한 부인은 30.99세에 출산을 완료할 것으로 추정된다.

확대완료기의 종료시점이며 축소기의 시작시점인 자녀결혼 시작 시 부인연령은 최근으로 오면서 점차 상승하는 추세로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의 경우 52.83세였으나, 2000~200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57.50세로 추정된다. 이는 자녀의 결혼연령 상승으로 인해 자녀출산완료 후 자녀결혼 시작 시까지의 기간이 연장됨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축소기의 종료시점이며, 축소완료기의 시작시점인 자녀결혼 완료시 부인연령은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은 57.30세, 2000~2009년 결혼한 부인은 60.84세로 추정된다. 이는 자녀의 결

혼연령이 상승하고는 있으나 과거에 비해 자녀수 감소가 보다 뚜렷하여 출산자녀를 모두 결혼시키는 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체기의 시작시점인 남편사망시 부인연령은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69.35세, 2000년~2009년 결혼한 부인들은 77.54세로 추정되었으며, 해체기의 종료시점인 부인사망시 연령은 같은 기간에 결혼한 부인들간에 각각 71.31세에서 82.24세로 추정되었다. 이는 평균수명의 연장 및 남녀간 평균수명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표 11-24〉 가족주기 각 단계의 시작 및 종결당시 부인[1)]의 평균연령

(단위: 세)

초혼연도	초혼 연령	첫째아 출산	막내아 출산	자녀결혼 시작	자녀결혼 완료	남편 사망	본인 사망
1979년 이전	22.08	23.14	27.45	52.83	57.30	69.35	71.31
1980~1989년	23.98	25.01	28.25	54.78	58.10	72.73	75.69
1990~1999년	25.35	26.34	29.48	56.23	59.33	73.63	78.06
2000~2009년	27.13	28.16	30.99	57.50	60.84	77.54	82.24

주: 1) 15~64세 이하 기혼여성 중 초혼이면서 출산경험이 있는 부인(9,055명)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조사결과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인의 결혼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족주기의 전체기간은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점점 길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즉,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49.23년이었으나 2000~2009년 결혼한 부인들은 55.11년으로 추정되어 약 30여 년 동안 5.88년 정도 더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족주기 전체 기간의 연장은 사망수준의 개선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그에 따른 가족주기 전체기간의 연장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4절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 변화의 시사점

최근 교육수준의 향상, 취업률의 상승, 자아성취 욕구 증대와 함께 결혼의 필요성이 약화되어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있으며, 남녀의 결혼연령별 결합형태도 점차 남녀가 동갑이거나 여성이 연상인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결혼경력별 남녀 결합형태도 최근으로 올수록 초혼남녀의 결합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초혼남성과 재혼여성의 결합비율과 재혼남녀의 결합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가족가치의 변화, 이혼의 법제적 요인 변화, 그리고 이혼에 대한 인식 및 태도변화 등에 의해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혼부인은 주 생계부양자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자녀양육 문제, 그리고 정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혼가족의 문제는 개인 및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주요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혼가족을 위한 사회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이혼가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최근 정부에서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이들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제한되어 있고,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이 거의 없어 이들의 현실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김승권 외, 2009). 특히 이혼여성의 경우 생계부양자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됨으로써 이혼전보다 이혼 후에 취업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절반 이상이 임시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등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어 이들의 경제적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적 차원에서 경제활동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준의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등의 지원과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기업의 가족친화적인 고용문화 조성, 질 높고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외 이혼가족의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위해 상담서비스 제공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족주기는 부부의 결혼에서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을 가족생애 사건발생시기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한 것이다. 최근의 초혼연령의 상승, 출산율의 저하에 따른 자녀규모의 축소, 그리고 사망률 개선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각 단계별 기간의 변화양상이 뚜렷함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가족주기 단계별 기간의 변화양상은 가족주기단계 구분에 있어 주요 출발점과 종료시점이 되고 있는 자녀수의 감소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결혼부터 남편사망시까지 부부의 결혼기간은 길어지고 있다. 또한 가족주기의 후기단계인 축소완료기 및 해체기가 연장됨으로써 노인부부가구 및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별 평균수명의 차이로 인해 남성보다 여성 노인단독가구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12

기혼여성의 취업과 가족생활

제12장 기혼여성의 취업과 가족생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취업여성에 대한 사회적 기반이 미흡하고, 가정 내 양육분담 또한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혼 취업여성의 일-가정의 과도한 이중부담은 여성으로 하여금 취업지속과 출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김선자, 2010). 이러한 점에서 본 장에서는 기혼여성의 현 취업 및 생애단계별 취업실태를 살펴보고,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 자녀출산 및 양육과 취업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결혼 전·후 취업실태

1. 기혼여성의 결혼 전·후 취업실태

조사대상부인 중 결혼전에 취업경험이 있으면서 부인 중 현재에도 취업중인 부인은 전체의 50.5%, 결혼 전 비취업 부인 중 현재 취업중인 부인은 전체의 47.5%이었다. 이외 결혼전 취업 부인 중 현재 비취업중인 부인은 49.5%, 결혼직전과 현재 모두 비취업중인 부인은 52.5%로 결혼직전 취업중이던 부인 중에는 현 취업중인 부인의 비율이 높았고, 결혼직전 비취업중이던 부인 중에는 현재 비취업중인 부인의 비율이 높았다.

〈표 12-1〉 15세~49세 기혼여성의 결혼전·후 취업실태

(단위: %, 명)

결혼직전 취업여부	현취업여부		계(수)	X^2
	취업	비취업		
전체	50.0	50.0	100.0(6,723)	
취업	50.5	49.5	100.0(5,601)	3.3
비취업	47.5	52.5	100.0(1,122)	

자료: 본 조사결과

2. 기혼여성의 특성별 취업률

기혼여성의 특성별 취업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부인의 결혼 전 취업률은 83.3%, 현 취업률은 50.0%로 그 차이는 33.3%pt나 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읍·면부지역보다 동부지역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동부 35.0%pt, 읍·면부 22.4%pt).

연령별로는 혼전취업률은 20대에서 점차 증가하여 30대 초반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현 취업률은 30대 초반에 다소 낮아지다가 35세 이후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결혼 후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시기에는 낮아지고, 자녀가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에는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자녀들이 성장하고 어느 정도 기반을 닦은 시기에는 낮아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기혼여성의 취업에 자녀출산 및 양육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교육수준별 혼전 취업률은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현 취업률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아 결혼전과 후의 취업률간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부인의 결혼 후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학력층인 경우 저학력층에 비해 젊은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린 자녀가 있을 확률이 높으며, 따라서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해 취업률이 낮은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표 12-2〉 15세~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결혼직전 및 현 취업률

(단위: %, 명)

특성	결혼 직전 취업률	현 취업률
전체	83.3	50.0
지역		
동부	83.6	48.5
읍·면부	81.4	59.0
연령		
15~24세	61.5	32.5
25~29세	87.5	41.4
30~34세	92.1	35.4
35~39세	89.6	45.1
40~44세	81.6	58.7
45~49세	72.0	60.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5.6	61.3
고등학교	82.8	51.2
대학 이상	88.3	45.6
현 결혼상태		
유배우	84.0	48.1
사별	71.1	85.5
이혼·별거	73.6	77.4
(분석대상수)	(6,722)	(6,723)

자료: 본 조사결과

현 결혼상태별 결혼전 취업률에 있어서는 유배우부인이 84.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이혼·별거부인이었으며(73.6%), 사별부인의 혼전 취업률(71.1%)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현 취업률은 유배우부인이 48.1%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은 이혼·별거부인(77.4%), 사별부인(85.5%)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유배우부인이 가장 젊은 층으로 현재 자녀출산 또는 양육기에 있을 확률이 높고, 이혼·별거 또는 사별중인 해혼부인들의 경우는 가족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주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게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현 취업실태

1. 기혼여성의 현 취업률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는 가구의 특성이나 남편의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특성별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많은 경우 부인 취업률이 높은 편이었는데, 이는 고소득층은 고학력 젊은 부인의 자아성취를 위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부인의 취업으로 인한 소득이 가구소득에 기여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이 외 가구원 규모가 3인 이상인 경우 보다 2인 이하인 경우, 그리고 현존자녀수가 있는 가구 보다 없는 가구에서 부인 취업률이 높았다. 이는 가구원 규모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유배우 부부만이 사는 경우이거나, 해혼상태의 부인, 특히 이혼·별거상태의 부인이 많아 생계를 책임져야 하므로 취업률이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존자녀수가 없을 경우에는 자녀양육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취업하는데 장애가 없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적 자립여부에 따른 취업률은 일관성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남편의 특성별로는 남편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인 취업률이 높았으며, 남편이 비취업인 경우에도 부인의 취업률은 높게 나타났다. 이 외 가구소득과는 달리 남편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부인 취업률이 낮았다. 즉, 남편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99만원 이하일 경우 부인의 취업률은 71.0%이었으나 100~199만원 이하에서는 57.3%이었고, 이후 점차 더 낮아져 남편이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일 경우 부인의 취업률은 31.3%에 불과하였다[55].

55) 장지연 외(2001)의 연구결과에서도 남편의 소득이 낮을수록 여성이 출산이후 바로 노동시장에 복귀하고, 남편 등 기타 가족원의 수입과 자산이 많을수록 기혼여성의 취업확률이 낮다고 함. 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업할 확률은 67%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즉 가구소득이 높은 경력단절 여성일수록 미취업에 남아있을 확률이 높음(오은진, 2009).

〈표 12-3〉 가구 및 남편 특성별 15세 이상 기혼여성의 취업률

(단위: %, 명)

가구특성	취업률	남편특성[1]	취업률
전체	50.0	전체	48.0
월평균 가구소득		연령	
99만원 이하	41.3	15~29세	42.2
100~199만원	43.8	30~34세	36.3
200~299만원	41.2	35~39세	40.3
300~399만원	51.0	40~44세	47.8
400~499만원	57.5	45~49세	56.3
500만원 이상	58.3	50~54세	60.3
		55세 이상	54.9
가구 규모		교육수준	
2인 이하	62.6	중학교 이하	59.3
3~4인	47.2	고등학교	51.1
5인 이상	50.8	대학 이상	44.1
현존 자녀수		취업여부	
없음	58.2	취업	47.5
1명	44.7	비취업	60.1
2명 이상	50.7		
경제적 자립정도		월평균 근로소득	
전혀 자립 못함	41.1	99만원 이하	71.0
별로 자립 못함	51.2	100~199만원	57.3
보통임	50.6	200~299만원	50.3
약간 자립함	51.1	300~399만원	45.2
상당히 자립함	49.4	400~499만원	39.9
모르겠음	27.3	500만원 이상	31.3
(분석대상수)	(6,717)		(6,301)

주: 1) 부인이 있는 남편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본 조사결과

2. 직종, 종사상 지위 및 직장유형

가. 직종 및 종사상 지위

현 취업여성의 직종은 서비스·판매직 종사자가 35.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사무직 종사자 18.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8.4%, 단순노무자 및 기타 15.1%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은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단순노무자 및 기타 순으로, 읍·면부지역은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단순노무자 및 기타, 농·임·어업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순으로 높은 비율이었으며, 농·임·어업 종사자와 단순노무자 및 기타 비율만이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 보다 높았고, 그 외 직종은 읍·면부지역 보다 동부지역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4세 이하는 단순노무자 및 기타가 41.7%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 종사자 25.0%,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16.7% 등의 순이었다. 25~34세 이하는 사무직 종사자 비율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순이었다. 35세 이상은 서비스·판매직 종사자가 가장 많았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순으로 연령별 차이를 보였다.

〈표 12-4〉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현 취업 직종

(단위: %, 명)

구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농·임·어업	단순 노무직 및 기타	계(수)	X^2
전체	0.9	18.4	18.9	35.8	7.4	3.5	15.1	100.0(3,360)	
지역									
동부	0.9	19.9	20.3	36.8	7.5	0.8	13.8	100.0(2,803)	416.7***
읍·면부	0.5	10.6	12.0	31.1	6.8	17.2	21.7	100.0(557)	
연령									
15~24세	-	-	25.0	16.7	8.3	8.3	41.7	100.0(24)	
25~29세	0.4	30.1	38.1	21.3	3.3	1.3	5.4	100.0(239)	
30~34세	0.8	28.1	32.7	26.1	3.3	1.3	7.8	100.0(395)	480.4***
35~39세	0.5	22.1	25.0	30.1	8.5	1.6	12.2	100.0(768)	
40~44세	1.6	17.0	14.9	40.5	7.8	2.4	15.9	100.0(967)	
45~49세	0.6	10.4	7.5	43.6	8.9	7.6	21.3	100.0(97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	-	1.7	34.4	14.7	14.5	34.7	100.0(421)	1487.9***
고등학교	0.3	4.1	17.1	46.6	9.6	2.8	19.4	100.0(1,687)	
대학 이상	1.8	43.9	27.1	21.7	1.9	0.7	2.8	100.0(1,249)	

주: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 학력층은 단순노무자 및 기타 34.7%,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34.4%, 고등학교 학력층은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단순노무자 및 기타 19.4%, 사무직 종사자 17.1% 순으로, 그리고 대학이상의 학력층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3.9%, 사무직 종사자 27.1%,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21.7% 등의 순으로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아졌고, 기능직·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농·임·어업 종사자, 단순노무자 및 기타는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이었다(표 12-4 참조).

기혼여성 남편의 현 직종은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8.1%, 사무직 종사자 19.5%,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18.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3.7%, 관리자 10.2% 순으로 기혼여성에 비해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관리자 비율은 높았고,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단순노무자 및 기타, 농·임·어업직의 비율은 낮았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은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관리자, 단순노무자 및 기타 순으로, 읍·면부지역은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농·임·어업직, 사무직 종사자, 단순노무자 및 기타 순으로 동부지역에 비해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농·임·어업직과 단순노무자 및 기타직 종사비율만 높았다.

연령별로는 24세 이하는 서비스·판매직 종사자(41.7%), 단순노무자 및 기타(33.3%),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25.0%)이었으며, 25~34세는 사무직 종사자가, 35세 이상은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55세 이상 연령층에서 많았다.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 학력자는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46.6%), 단순노무자 및 기타(25.9%), 농·임·어업직(14.6%) 순으로, 고등학교 학력층은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45.4%), 서비스·판매직 종사자(22.6%), 사무직 종사자(11.5%) 순으로, 그리고 대학 이상은 사무직 종사자(27.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4.5%), 관리자(15.7%) 순으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의 비율은 높아졌고,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농·임·어업직 종사자, 단순노무자 및 기타는 학력층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았다(표 12-5 참조).

〈표 12-5〉 15~49세 기혼여성 남편의 특성별 현 취업 직종

(단위: %, 명)

구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농·임·어업	단순 노무직 및 기타	계(수)	χ^2
전체	10.2	13.7	19.5	18.1	28.1	2.7	7.8	100.0(6,044)	
지역									
동부	11.0	14.7	20.7	18.7	26.9	0.8	7.1	100.0(5,190)	595.9***
읍·면부	5.4	7.5	11.8	14.4	35.2	14.1	11.6	100.0(854)	
연령									
15~24세	-	-	-	41.7	25.0	-	33.3	100.0(12)	
25~29세	1.9	15.8	27.4	20.7	24.1	0.4	9.8	100.0(266)	
30~34세	3.8	18.1	28.6	16.4	25.9	0.6	6.5	100.0(780)	
35~39세	7.0	15.3	23.3	20.1	28.2	1.1	4.9	100.0(1,355)	463.9***
40~44세	13.1	14.2	18.9	17.9	26.9	1.8	7.1	100.0(1,471)	
45~49세	13.9	11.9	15.7	16.8	29.9	3.4	8.3	100.0(1,384)	
50~54세	13.7	8.7	10.2	17.3	29.6	8.3	12.2	100.0(699)	
55세 이상	10.4	5.2	3.1	17.7	35.4	10.4	17.7	100.0(9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5	0.3	1.0	10.1	46.6	14.6	25.9	100.0(397)	2211.7***,
고등학교	4.7	2.0	11.5	22.6	45.4	2.8	11.0	100.0(2,469)	
대학 이상	15.7	24.5	27.9	15.5	12.3	1.2	3.0	100.0(3,176)	

주: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현 취업 기혼여성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 42.9%, 임시근로자 22.2%, 무급가족종사자 13.5%, 자영업자 11.1%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은 상용근로자(45.0%), 임시근로자(22.9%), 무급가족종사자(11.1%) 순이었으나 읍·면부지역은 상용근로자(32.4%), 무급가족종사자(25.7%), 임시근로자(18.5%) 순으로 동부지역은 읍·면부지역 보다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비율만 높았다.

연령별로는 모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순이었고, 그 다음은 30~34세만이 자영업자 순이었으며, 나머지 연령층은 모두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높았

다. 상용근로자 비율은 25~29세 6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점차 낮아져 45~49세에는 31.8%를 보였다. 또한 자영업자와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연령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출산이나 가사, 가족부양 등의 이유로 취업을 중단했다가 재취업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상용근로자에서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로 고용형태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교육수준별로 중학교 이하 학력층은 임시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순이었고, 고등학교 학력층은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순으로, 그리고 대학이상의 학력층은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자영업자 순이었다. 고용주와 상용근로자는 고학력층일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일용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저학력층일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다(표 12-6 참조).

〈표 12-6〉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현 취업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구분	고용주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계(수)	χ^2
전체	2.0	11.1	42.9	22.2	8.3	13.5	100.0(3,355)	
지역								
동부	1.9	11.0	45.0	22.9	8.1	11.1	100.0(2,799)	96.2***
읍·면부	2.2	12.1	32.4	18.5	9.2	25.7	100.0(556)	
연령								
15~24세	-	4.0	40.0	36.0	4.0	16.0	100.0(25)	
25~29세	-	5.0	66.8	13.9	6.7	7.6	100.0(238)	
30~34세	3.0	8.1	58.9	17.5	5.6	6.9	100.0(394)	197.7***
35~39세	1.0	10.3	46.3	23.3	7.3	11.7	100.0(767)	
40~44세	2.4	10.7	39.0	24.8	9.6	13.5	100.0(966)	
45~49세	2.5	15.2	31.8	22.2	9.3	19.1	100.0(96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7	11.6	20.6	25.1	20.4	21.6	100.0(422)	378.6***
고등학교	1.9	10.3	36.2	26.8	9.5	15.4	100.0(1,685)	
대학 이상	2.5	12.1	59.6	15.0	2.6	8.3	100.0(1,248)	

주: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다음 <표 12-7>은 기혼여성의 취업 중인 남편의 종사상 지위를 나타낸다. 남편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 59.6%였으며, 그 다음은 자영업자(20.4%), 고용주(8.4%) 순이었다. 상용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는 기혼여성의 동일 종사상 지위 보다 높았고, 특히 상용근로자는 16.7%pt 높았으며,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낮았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은 상용근로자가 61.6%로 읍·면부지역(47.4%) 보다 높았으며, 고용주 역시 읍·면부지역 보다 3.5%pt 높았다. 그러나 자영업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동부지역 보다는 읍·면부지역에서 높았다. 연령별로는 54세까지는 상용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저연령층일수록 높았다. 그러나 55세 이상은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고연령층일수록 높았다.

〈표 12-7〉 15~49세 기혼여성 남편의 특성별 현 취업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구분	고용주	자영업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무급가족 종사자	계(수)	χ^2
전체	8.4	20.4	59.6	6.4	4.9	0.3	100.0(6,041)	
지역								
동부	8.9	18.4	61.6	6.3	4.6	0.2	100.0(5,187)	120.5***
읍·면부	5.4	32.8	47.4	7.3	6.6	0.6	100.0(854)	
연령								
15~24세	-	-	63.6	36.4	-	-	100.0(11)	
25~29세	2.3	8.6	76.3	9.0	3.4	0.4	100.0(266)	
30~34세	3.1	8.6	76.4	8.2	3.5	0.3	100.0(780)	
35~39세	5.6	16.6	67.6	7.1	2.8	0.2	100.0(1,334)	
40~44세	10.1	20.0	59.4	6.3	4.2	0.1	100.0(1,469)	
45~49세	11.6	27.2	49.8	4.8	6.4	0.2	100.0(1,384)	
50~54세	12.2	30.6	43.1	4.7	8.6	0.9	100.0(699)	
55세 이상	8.2	37.1	32.0	9.3	13.4	-	100.0(97)	
교육수준							100.0(1,438)	
중학교 이하	2.8	39.8	30.7	7.8	18.6	0.3	100.0(397)	703.4***
고등학교	7.3	25.5	50.0	9.3	7.6	0.4	100.0(2,467)	
대학 이상	10.0	14.0	70.7	4.1	1.1	0.2	100.0(3,177)	

주: *** p<.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 학력층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비해 고등학교 이상은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고용주나 상용근로자는 고학력층일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고,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는 저학력층일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임시근로자는 학력별 일관성 있는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자가 대학이상의 학력자 보다 높게 나타났다.

나. 직장유형

현 취업여성의 직장유형을 보면, 개인사업체 및 기타에 다니는 경우가 48.0%로 상당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기업체에 다니는 경우가 40.9%로 이 중 50인 미만의 소기업에 다니는 경우가 22.9%였다. 이 외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다니는 경우가 11.1%였다.

지역별로는 동부, 읍·면부지역 모두 개인사업체 및 기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치지하였으며, 특히 동부지역 보다는 읍·면부지역이 더 높았다(동부: 45.8%, 읍·면부: 59.1%). 나머지 공무원이나 대기업, 중·소기업에 다니는 비율은 읍·면부지역 보다 동부지역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도 모두 개인기업체 및 기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40세 이상에서 높았다. 그 다음 순으로 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35~39세와 45~49세는 대기업이, 그 외 연령층은 중소기업의 순이었다. 공무원과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은 30대에서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도 개인사업체 및 기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다. 그 다음 순으로 중학교 이하의 학력층은 소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고등학교 학력층은 소기업, 대기업 순으로, 대학이상의 학력층은 소기업, 공무원 순으로 교육수준별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대학이상의 경우 공무원과 대기업 종사비율이 타 학력층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표 12-8〉 15~49세 현 취업 기혼여성의 특성별 현 직장유형

(단위: %, 명)

구분	공무원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개인사업체 및 기타	계(수)	χ^2
전체	6.5	4.6	9.0	9.0	22.9	48.0	100.0(3,360)	
지역								
동부	7.3	4.4	9.5	9.4	23.6	45.8	100.0(2,802)	44.7***
읍·면부	2.7	5.4	6.6	7.2	19.0	59.1	100.0(550)	
연령								
15~24세	4.0	4.0	8.0	16.0	20.0	48.0	100.0(25)	
25~29세	4.6	5.0	14.7	16.4	26.1	33.2	100.0(238)	
30~34세	10.4	5.1	10.9	14.0	26.4	33.2	100.0(394)	143.8***
35~39세	7.4	6.0	10.7	5.6	25.5	44.8	100.0(768)	
40~44세	6.0	3.9	7.4	10.2	22.1	50.3	100.0(967)	
45~49세	5.3	3.8	7.2	6.7	19.4	57.7	100.0(97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2	3.3	2.4	7.8	19.4	66.8	100.0(422)	400.2***
고등학교	0.9	3.7	9.9	9.3	24.1	52.1	100.0(1,688)	
대학 이상	16.2	6.2	10.2	9.1	22.4	35.8	100.0(1,250)	

주: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기혼여성 남편의 직장유형은 개인사업체 및 기타 37.4%, 소기업 20.8%, 중소기업 16.1%, 대기업 14.7% 순이었으며, 공무원과 정부투자 기관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11.0%였다. 이는 기혼여성과 비교할 때 개인사업체 및 기타와 소기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기혼부인보다 낮았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종사 비율은 기혼부인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은 읍·면부지역 보다 기업체에 다니는 경우가 많았고, 읍·면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공무원과 개인사업체 및 기타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30~34세는 소기업에, 그리고 그 외 연령층은 모두 개인사업체 및 기타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개인사업체 및 기타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기업체 규모별 종사율을 보면, 24세 이하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소기업 종사율이 가장 높았으며, 300인 이상의 대기업과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종사율은 대체로 25~34세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인 기업체 종사

율은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층일수록 개인사업체 및 기타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고학력층일수록, 소기업은 고등학교 이하 학력층에서 높았다. 또한 공무원과 정부투자·출연기관 등의 종사율은 대학 이상 고학력층에서 높았다.

〈표 12-9〉 15~49세 기혼여성 남편의 특성별 현 직장유형

(단위: %, 명)

구분	공무원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개인사업체 및 기타	계(수)	X^2
전체	7.3	3.7	14.7	16.1	20.8	37.4	100.0(6,046)	
지역								
동부	7.2	3.8	15.3	16.8	21.3	35.7	100.0(5,192)	56.8***
읍·면부	8.0	3.0	10.9	11.7	18.3	48.1	100.0(854)	
연령								
15~24세	9.1	-	9.1	27.3	18.2	36.4	100.0(11)	
25~29세	6.3	3.7	23.1	19.4	23.5	23.9	100.0(268)	
30~34세	5.8	3.0	19.4	23.4	25.2	23.4	100.0(779)	
35~39세	6.0	3.7	17.2	18.0	22.0	33.1	100.0(1,334)	291.5***
40~44세	8.6	3.4	15.0	15.7	20.8	36.5	100.0(1,471)	
45~49세	7.9	4.8	11.7	11.8	18.7	45.1	100.0(1,384)	
50~54세	8.9	3.3	7.9	12.7	16.7	50.5	100.0(699)	
55세 이상	-	2.1	5.2	10.4	24.0	58.3	100.0(9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0	1.3	3.0	9.0	21.4	64.3	100.0(398)	599.6***
고등학교	3.7	2.7	8.6	14.7	23.0	47.2	100.0(2,468)	
대학 이상	10.8	4.8	20.9	18.0	19.1	26.4	100.0(3,177)	

주: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3. 주당 평균 근무시간 및 월평균 소득

현 취업부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부인은 44.87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초과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보다는 읍·면부지역의 근로시간이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부인의 경우 24세 이하는 45.25시간이었다가 점차 감소하여 30~34세에 42.93시간으로, 그리고 35세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여 45~49세는 47.64시간에 이른다. 교육수준별로

는 학력이 낮을수록 평균 근무시간이 많았다.

〈표 12-10〉 현 취업부인 및 남편의 특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시간, 만원)

특성	부인		남편	
	근로시간	근로소득	근로시간	근로소득
전체	44.87	134.94	52.14	299.42
지역				
동부	44.72	142.96	52.04	306.79
읍·면부	45.60	94.61	52.75	254.79
F값(T값)	(-1.1***)	(10.5***)	(-1.3***)	(10.2***)
연령				
15~24세	45.25	92.37	58.31	169.45
25~29세	42.65	143.34	53.39	212.15
30~34세	42.93	151.03	52.58	250.53
35~39세	43.22	131.63	53.02	290.90
40~44세	44.71	136.77	52.78	325.17
45~49세	47.64	128.25	50.82	332.43
50~54세	-	-	50.52	297.32
55세 이상	-	-	53.41	219.79
F값(T값)	10.9***	3.2**	5.5***	43.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9.30	79.55	53.00	184.13
고등학교	46.62	111.48	53.90	256.32
대학교 이상	41.00	185.21	50.67	347.41
F값(T값)	74.3***	222.2***	40.3***	382.5***
(분석대상수)	(3,354)	(3,358)	(6,042)	(6,037)

주: ** p<.01, *** p<.001

부인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34.94만원으로 남편의 근로소득을 100%로 봤을 경우 부인의 근로소득은 45.1%에 불과하였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근로소득이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부인의 경우 30~34세에 151.03만원으로 근로소득이 가장 많았다. 40세 이후부터는 점차 소득이 감소하여 45~49세에는 128.25만원으로 30~34세 부인에 비해 약 23만원 정도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고학력층으로 갈수록 소득이 증가하여 중학교 이하의 학력층은 79.55만원에서 고등학교 학력층 111.48만원, 대학 이상의 학력층은 185.21만원 이었다.

남편의 근로시간 및 근로소득은 모두 부인보다 많았으며(근로시간: 52.14시간, 근로소득: 299.42만원), 근로시간은 20대 초반에서, 근로소득은 40대 후반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근로시간은 고등학교 학력층에서, 근로소득은 대학 이상의 고학력층에서 가장 많았다. 현 직종별 근로시간은 부인은 기능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남편은 서비스·판매직 종사자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소득은 부인, 남편 모두 관리자가 가장 많았다(부인: 392.51만원, 남편: 449.91만원).

〈표 12-11〉 현 취업부인 및 남편의 직종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시간, 만원)

특성	부인		남편[1]	
	근로시간	근로소득	근로시간	근로소득
전체	44.87	134.95	52.14	300.25
관리자	44.10	392.51	51.08	449.9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9.05	205.30	49.59	372.84
사무직 종사자	43.14	164.25	47.41	316.07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48.63	119.74	57.29	287.87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49.23	99.62	54.25	247.37
농·임·어업	41.55	9.87	50.52	217.76
단순노무직 및 기타	43.85	81.01	50.88	183.75
F값(T값)	36.4***	143.8***	67.2***	248.7***
(분석대상수)	(3,353)	(3,358)	(6,043)	(6,045)

주: 1) 유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함; 2) *** p<.001

3. 현 직장에서의 취업기간

현 취업부인의 현 직장에서의 취업기간을 보면, 10년 이상이 23.1%로 가장 많았고, 1~3년 미만 22.9%, 5~10년 미만 21.8% 등의 순이었으며, 평균 6.3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은 1~3년 미만이, 읍·면부지역은 10년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평균 취업기간으로는 동부지역 6년, 읍·면부지역 7.8년으로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 보다 1.8년 정도 더 길었다.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일수록 1년 미만인 비율이 높았고, 고연령층일수록 10년 이상인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평균 취업기간에서도 잘 나타나 24세 이하는 평균 1.5년이었으나 45~49세 연령층은 8.3년으로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29.8%)와 대학 이상(27.7%)은 10년 이상이, 고등학교 학력층은 1~3년 미만(25.9%)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평균 기간으로는 중학교 이하 7.5년, 고등학교 5.3년, 대학이상 7.2년으로 중학교 이하 학력층의 취업기간이 가장 길었다. 이는 중학교 이하의 학력층의 경우 고연령층이 많은 것과도 관련성이 있다.

〈표 12-12〉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현 직장에서의 총 취업기간

(단위: %, 명, 년)

구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계(수)	χ^2	평균	F값(T값)
전체	14.5	22.9	17.7	21.8	23.1	100.0(3,194)		6.3	
지역									
동부	14.5	23.2	18.4	22.4	21.4	100.0(2,715)	30.1***	6.0	(-4.8***)
읍·면부	14.4	21.3	13.6	18.4	32.4	100.0(479)		7.8	
연령									
15~24세	54.5	22.7	18.2	4.5	0.0	100.0(220)		1.5	
25~29세	23.8	23.3	22.9	26.4	3.5	100.0(227)		3.6	
30~34세	18.9	24.8	15.9	26.7	13.7	100.0(371)	192.4***	4.5	41.7***
35~39세	16.0	26.8	17.2	18.9	21.1	100.0(725)		5.4	
40~44세	12.6	23.2	19.7	21.6	22.9	100.0(920)		6.3	
45~49세	10.4	18.9	15.5	21.6	33.6	100.0(931)		8.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1	21.9	14.8	17.3	29.8	100.0(392)		7.5	39.8***
고등학교	15.9	25.9	18.8	21.6	17.8	100.0(1,599)	66.7***	5.3	
대학 이상	12.2	19.4	17.2	23.5	27.7	100.0(1,204)		7.2	

주: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남편의 취업기간 분포는 10년 이상이 46.4%, 5~10년 미만 21.2%, 1~3년 미만 13.6% 등의 순으로 평균 취업기간은 9.9년 이었다. 기혼여성의 평균 취업기간과 비교하면 3.6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과 읍·면부지역 모두 10년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특히 읍·면부지역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 취업기간은 동부지역(9.8년)

보다 읍·면부지역(10.9년)이 더 길었다.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일수록 1년 미만의 비율이 높았고, 고연령층일수록 10년 이상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평균 취업기간은 24세 이하는 1.8년인데 비해 30~34세 4.9년, 40~44세 10.3년, 50세 이상은 15년 이상으로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취업기간도 길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전체적으로 10년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중학교 이하에서 높았다. 평균 취업기간도 중학교 이하 학력층이 13.2년으로 고등학교 학력층(9.8년)이나 대학이상 학력층(9.6년) 보다 3.4~3.6년 더 길었다.

〈표 12-13〉 15~49세 기혼여성 남편의 특성별 현 직장에서의 총 취업기간

(단위: %, 명, 년)

구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계(수)	X^2	평균	F값(T값)
전체	7.1	13.6	11.8	21.2	46.4	100.0(5,804)		9.9	
지역									
동부	7.0	13.8	11.6	21.5	46.1	100.0(5,052)	4.9***	9.8	(-3.4***)
읍·면부	7.7	12.2	12.8	19.0	48.3	100.0(752)		10.9	
연령									
15~24세	36.4	45.5	9.1	9.1	0.0	100.0(11)		1.8	
25~29세	14.6	31.2	30.0	22.7	1.6	100.0(247)		3.3	
30~34세	13.2	19.1	20.4	34.6	12.8	100.0(745)		4.9	
35~39세	8.9	14.3	13.2	26.9	36.6	100.0(1,285)	1006.0***	7.4	219.1***
40~44세	5.9	12.4	8.4	18.3	54.9	100.0(1,398)		10.3	
45~49세	3.6	9.3	8.0	15.9	63.2	100.0(1,342)		13.0	
50~54세	3.2	9.9	8.4	12.6	65.9	100.0(680)		15.1	
55세 이상	4.3	14.9	4.3	12.8	63.8	100.0(94)		15.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3	10.1	9.5	14.6	60.5	100.0(377)		13.2	37.0***
고등학교	7.8	15.0	11.3	20.1	45.8	100.0(2,374)	45.0***	9.8	
대학 이상	6.7	13.0	12.4	22.8	45.1	100.0(3,052)		9.6	

주: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4. 현재의 일과 가정생활 병행상의 어려움

일과 가정생활 병행에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가사부담'이 27.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녀양육 부담' 23.0%,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 12.8% 등의 순이었다.[56] 지역별로는 동부지역과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모두 '가사부

담'과 '자녀양육 부담'을 지적한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가사부담'과 '자녀양육 부담', '노부모 부양'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의 연령층은 '별 어려움 없다'는 비율이 높았으나, 그 다음으로 '가사부담'과 '자녀양육 부담'을 지적하였으며, 30대 연령층에서는 '자녀양육 부담'을, 그리고 40대 연령층에서는 '가사부담'을 지적한 비율이 높았다.

〈표 12-14〉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일과 가정생활 병행상 어려움

(단위: %, 명)

특성	없음	자녀양육 부담	가사 부담	부부 공유시간 부족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	직장 생활과 육아병행	노부모 부양	기타	계(수)	X^2
전체	27.2	23.0	27.2	3.2	12.8	4.9	0.9	0.8	100.0(3,360)	
지역										
동부	26.9	22.9	27.0	3.1	13.3	5.2	0.6	0.8	100.0(2,803)	18.2*
읍·면부	28.7	23.9	28.0	3.4	9.9	3.4	2.0	0.7	100.0(557)	
연령										
15~24세	32.0	12.0	24.0	20.0	4.0	-	8.0	-	100.0(25)	
25~29세	32.9	19.8	19.8	8.4	8.0	9.3	-	1.7	100.0(237)	
30~34세	24.9	32.7	12.7	11.2	11.2	13.2	1.0	0.5	100.0(394)	618.4***
35~39세	15.3	37.7	18.3	17.5	17.5	8.1	0.4	0.9	100.0(767)	
40~44세	26.2	22.2	30.3	15.9	15.9	2.4	0.4	0.4	100.0(967)	
45~49세	37.2	9.4	39.0	7.8	7.8	0.7	1.6	1.1	100.0(971)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32.8	11.9	41.3	1.9	7.1	0.2	3.1	1.7	100.0(421)	191.7***
고등학교	26.8	22.5	28.3	3.3	14.4	3.7	0.7	0.5	100.0(1,689)	
대학 이상	25.9	27.5	21.0	3.4	12.5	8.2	0.4	1.0	100.0(1,250)	

주: * p<.05,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층 부인일수록 '가사부담'을 지적한 비율이, 고학력층으로 갈수록 '자녀양육 부담'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자녀출산 및 양육기에 있는 취업부인들의 자녀양육 및 가사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56) 이삼식 외(2009) 조사결과에 의하면 직장일과 가정일을 하면서 겪는 힘든 일로 일·가사 병행의 어려움(39.9%), 자녀양육, 대화시간 부족(34.6%), 부인과 함께 하는 시간 부족(8.2%), 직장 일 전념하기 어려움(3.9%), 직장에서의 차별(2.1%) 등을 들고 있음.

다음의 <표 12-15>는 현 취업부인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별 일·가정 병행상 어려움을 나타낸 결과이다.

현취업부인 중 일과 가정생활 병행상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이 가장 낮은 직종은 관리자(7.1%)로 다른 직종에 비해 일과 가정생활 병행상 어려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92.9%), 일과 가정생활 병행상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농·임·어업 종사자(37.8%)이었다.

일과 가정생활 병행상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는 '자녀양육 부담'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이들 직종에 종사하는 부인들의 경우 비교적 젊은 고학력층으로 자녀양육기에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농·임·어업 종사자와 단순노무직 및 기타는 '가사부담'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자영업자의 경우 일과 가정생활 병행상의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33.8%). 이는 자영업자의 경우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함에 있어 시간의 제약이나 직장상사 등으로 부터의 제제 등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 하겠다. 종사상 지위별 구체적인 어려움으로 고용주는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을, 자영업자, 상용근로자는 '자녀양육 부담'을,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는 '가사부담'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12-15〉 15~49세 현 취업여성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별 일과 가정생활 병행상 어려움

(단위: %, 명)

특성	없음	자녀 양육 부담	가사 부담	부부 공유시간 부족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	직장 생활과 육아병행	노부모 부양	기타	계(수)
전체	27.3	23.1	27.2	3.2	12.7	4.9	0.8	0.8	100.0(3,357)
직종									
관리자	7.1	32.1	28.6	7.1	21.4	3.6	-	-	100.0(2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5.5	28.4	20.8	3.7	12.8	7.5	0.5	0.8	100.0(616)
사무직 종사자	24.1	29.2	21.0	3.5	12.0	9.3	0.3	0.6	100.0(634)
서비스·판매직종사자	27.4	22.3	27.5	3.2	15.1	3.1	0.7	0.7	100.0(1,204)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2.6	19.0	38.7	2.8	11.7	3.6	0.8	0.8	100.0(248)
농·임·어업	37.8	12.6	34.5	1.7	6.7	0.8	5.9	-	100.0(119)
단순노무직 및 기타	33.9	15.0	34.6	2.2	9.4	2.6	1.2	1.2	100.0(508)
종사상 지위									
고용주	23.9	19.4	19.4	3.0	26.9	7.5	-	-	100.0(67)
자영업자	33.8	23.6	22.8	5.4	11.3	2.1	0.5	0.5	100.0(373)
상용근로자	24.4	25.6	24.2	3.6	13.1	7.4	0.8	1.0	100.0(1,440)
임시근로자	27.7	22.7	29.6	2.0	12.2	4.3	0.5	0.9	100.0(746)
일용근로자	25.5	22.3	33.5	4.7	9.7	2.2	0.7	1.4	100.0(278)
무급가족종사자	30.9	16.1	34.0	0.9	13.9	2.0	2.2	-	100.0(453)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5. 일의 만족도

현재 일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만족'이 52.4%였으며, '(매우)불만족'은 13.3%였다. 지역별 평균 만족도를 보면, 읍·면부지역보다 동부지역의 만족도가 높았고(동부: 3.42점, 읍·면부: 3.39점), 연령별로는 30대 초반에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3.54점).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일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아져 중학교 이하 3.13점, 고등학교 3.31점, 대학 이상 3.66점이었다.

〈표 12-16〉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현재 일 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값(T값)
전체	1.0	12.3	34.3	48.9	3.5	100.0(3,354)			
지역									
동부	1.0	12.4	33.9	49.1	3.7	100.0(2,798)	3.8	3.42	(0.9)
읍·면부	1.1	11.9	36.7	48.0	2.3	100.0(556)		3.39	
연령									
15~24세	-	12.0	32.0	56.0	-	100.0(25)		3.44	
25~29세	0.4	10.6	28.8	56.8	3.4	100.0(236)		3.51	
30~34세	0.5	9.7	29.0	57.5	3.3	100.0(393)	39.0**	3.54	4.7***
35~39세	0.9	9.2	36.5	49.9	3.5	100.0(762)		3.46	
40~44세	1.2	13.7	36.0	45.5	3.6	100.0(967)		3.37	
45~49세	1.0	14.7	34.6	46.1	3.5	100.0(970)		3.3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2	23.0	38.0	36.8	1.0	100.0(418)	232.4***	3.13	106.4***
고등학교	1.0	13.8	40.2	42.8	2.1	100.0(1,685)		3.31	
대학 이상	0.8	6.6	25.2	61.3	6.2	100.0(1,247)		3.66	

주: ** p<.01,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직종별로는 관리자(3.96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3.76점), 사무직 종사자(3.60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직종은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였다(3.18점).

〈표 12-17〉 15~49세 기혼여성의 직종별 현재 일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값(T값)
전체	1.0	12.3	34.4	48.9	3.5	100.0(3,351)		3.42	
관리자	-	3.6	14.3	64.3	17.9	100.0(28)		3.9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8	4.2	18.3	67.9	7.8	100.0(616)		3.76	
사무직 종사자	0.8	6.2	28.9	61.0	3.2	100.0(634)		3.60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0.4	15.1	41.7	39.9	2.9	100.0(1,202)	357.8***	3.30	47.3***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8	19.4	40.5	39.3	-	100.0(247)		3.18	
농·임·어업	1.7	16.8	42.9	38.7	-	100.0(119)		3.19	
단순노무직 및 기타	1.4	18.8	39.6	38.6	1.6	100.0(505)		3.20	

주: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종사상 지위별 일의 만족도를 보면, 고용주가 (매우) 만족이 67.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상용근로자 62.5%, 자영업자 57.5% 순이었다. 평균 만족도는 고용주 5점 만점에 3.60점, 상용근로자 3.57점, 자영업자 3.47점 등의 순이었으며, 일용근로자가 3.06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12-18〉 15~49세 기혼여성의 종사상 지위별 현재 일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값(T값)
전체	1.0	12.2	34.4	48.9	3.5	100.0(3,350)		3.42	
고용주	0.0	13.4	19.4	61.2	6.0	100.0(67)	185.9***	3.60	33.2***
자영업자	1.1	12.6	28.9	52.7	4.8	100.0(374)		3.47	
상용근로자	0.6	8.1	28.9	58.3	4.2	100.0(1,438)		3.57	
임시근로자	1.1	13.9	40.7	40.8	3.5	100.0(740)		3.32	
일용근로자	1.8	23.0	43.5	30.9	0.7	100.0(278)		3.06	
무급가족종사자	1.5	15.7	42.6	38.4	1.8	100.0(453)		3.23	

주: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6. 현 취업 계속여부

현재의 일 계속여부에 있어서 '당장 그만 둘 생각'은 1.4%에 불과하였고, '건강이 허락할 때 까지'가 32.2%, '경제적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26.9%, '정년으로 일할 수 없을 때까지' 21.6%, '쉬고 싶을 때까지' 14.8%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는 동부지역보다는 읍·면부지역에서 비율이 더 높았고, '경제적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는 읍·면부지역보다는 동부지역에서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는 '경제적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40대 고령층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자녀출산 시까지'는 20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연령별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이하까지는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를, 대학이상은 '정년으로 일할 수 없을 때까지'를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아 교육수준별 차이를 보였다.

〈표 12-19〉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현재 일 계속 여부

(단위: %, 명)

특성	당장 그만둘 생각	자녀 출산시 까지	경제적 여건 좋아질 때 까지	정년 등으로 일할 수 없을 때까지	건강 허락할 때 까지	쉬고 싶어질 때 까지	기타	계(수)	χ^2
전체	1.4	2.7	26.9	21.6	32.2	14.8	0.4	100.0(3,351)	
지역									
동부	1.4	2.9	27.5	21.6	30.9	15.3	0.4	100.0(2,797)	16.6*
읍·면부	1.8	1.6	23.6	21.1	38.6	12.6	0.4	100.0(554)	
연령									
15~24세	4.0	28.0	40.0	20.0	8.0	-	-	100.0(25)	
25~29세	4.2	20.7	22.4	18.6	13.1	20.7	0.4	100.0(237)	
30~34세	1.8	5.9	30.1	23.7	21.7	16.1	0.8	100.0(392)	561.9***
35~39세	0.9	1.4	28.7	24.7	26.6	17.2	0.4	100.0(762)	
40~44세	1.2	0.2	28.4	20.7	33.9	15.3	0.3	100.0(966)	
45~49세	1.0	-	23.5	19.8	44.5	10.8	0.3	100.0(96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0	1.4	26.3	16.9	48.2	6.0	0.2	100.0(419)	252.0***
고등학교	1.5	1.9	33.2	16.7	33.8	12.7	0.2	100.0(1,686)	
대학 이상	1.5	4.3	18.7	29.6	24.7	20.5	0.7	100.0(1,248)	

주: * p<.05,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직종별로는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그리고 사무직 종사자는 '정년 등으로 일할 수 없을 때까지'를, 기능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경제적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그리고 서비스·판매직, 농·임·어업, 단순노무직 및 기타는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가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표 12-20〉 15~49세 기혼여성의 직종별 현재 일 계속 여부

(단위: %, 명)

구분	당장 그만 둘 생각	자녀 출산 시 까지	경제적 여건 좋아질 때 까지	정년 등으로 일할 수 없을 때까지	건강 허락 할 때 까지	쉬고 싶어 질 때 까지	기타	계(수)	χ^2
전체	1.4	2.7	26.9	21.5	32.2	14.8	0.4	100.0(3,349)	
관리자	3.6	-	17.9	35.7	25.0	17.9	-	100.0(28)	348.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8	3.6	16.6	32.2	27.6	18.5	0.7	100.0(615)	
사무직 종사자	1.9	5.8	19.6	32.4	22.9	17.1	0.3	100.0(633)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1.7	1.5	32.6	13.1	35.0	15.0	0.5	100.0(1,202)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4	3.6	44.9	15.4	27.5	8.1	-	100.0(247)	
농·임·어업	0.8	0.8	13.4	18.5	61.3	5.0	-	100.0(119)	
단순노무직 및 기타	1.4	0.8	29.9	18.0	37.2	12.5	0.2	100.0(505)	

주: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7. 기혼여성의 취업 및 비취업 이유

15~49세 기혼여성 중 취업부인의 특성별 취업 이유를 살펴보면, '생활에 보탬'이 주요 이유인 경우가 40.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생계유지' 28.7%, '사회활동·자기발전' 13.8%, '자녀교육비 충당' 12.6%, '노후대책 마련' 4.0%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동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모두 '생활에 보탬', '생계유지' 순으로 많았으며, 특히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동부지역 거주부인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도 모두 '생활에 보탬'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의 부인은 '생계유지(51.6%)', '생활보탬(35.1%)' 순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부인은 '생활에 보탬(44.1%)', '생계유지(31.2%)' 순이었다. 그리고 대학 이상의 부인은 '생활보탬'(38.6%), '사회활동 및 자기발전'(29.6%)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취업은 생계유지나 생활에 보탬이 주요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에 의한 취업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고연령층, 저학력층 부인들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2-21〉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현 취업이유

(단위: %, 명)

특성	생계 유지	생활 보탬	자녀교육비 충당	노후대책 마련	사회활동 및 자기발전	기타	계(수)	X^2
전체	28.7	40.9	12.6	4.0	13.8	0.1	100.0(3,353)	
지역								
동부	28.1	40.7	12.3	4.2	14.6	0.1	100.0(2,798)	20.3**
읍·면부	31.5	41.6	13.9	2.9	9.5	0.5	100.0(555)	
연령								
15~24세	36.0	52.0	4.0	-	8.0	-	100.0(25)	
25~29세	25.4	50.0	1.7	3.4	19.5	-	100.0(230)	
30~34세	23.4	44.7	9.4	4.1	18.5	-	100.0(394)	132.9***
35~39세	23.2	44.6	13.1	2.6	16.0	0.4	100.0(762)	
40~44세	28.5	38.9	16.4	3.3	12.8	-	100.0(9682)	
45~49세	35.8	35.8	12.5	5.9	9.8	0.2	100.0(969)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51.6	35.1	8.4	3.6	1.2	-	100.0(418)	548.4***
고등학교	31.2	44.1	15.9	3.2	5.2	0.3	100.0(1,686)	
대학 이상	17.5	38.6	9.4	5.1	29.6	-	100.0(1,247)	

주: ** p<.01,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현취업부인의 직종별 현 취업이유는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사회활동 및 자기발전'이 주요 이유였으며, 사무직 종사자와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자 및 기타는 모두 '생활에 보탬'이 주요 취업이유였으며, 그 다음은 '생계유지' 이었다. 그러나 농·임·어업 종사자는 생계유지(48.7%)가 가장 큰 취업이유이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이유를 보면, 고용주의 경우 '생계유지', '사회활동 및 자기발전' 순으로,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는 모두 '생활에 보탬', '생계유지' 순이었으며, '생활에 보탬'은 무급가족종사자가, '생계유지'는 일용근로자인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12-22〉 15~49세 기혼여성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별 현 취업이유

(단위: %, 명)

특성	생계 유지	생활에 보탬	자녀교육비 충당	노후 대책 마련	사회활동 및 자기발전	기타	계(수)	χ^2
전체	28.7	40.8	12.6	3.9	13.8	0.1	100.0(3,353)	
직종								
관리자	6.9	27.6	3.4	13.8	48.3	-	100.0(2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5.6	31.2	11.0	5.5	36.7	-	100.0(616)	
사무직 종사자	21.3	45.3	9.9	4.9	18.5	0.2	100.0(634)	
서비스·판매직종사자	33.7	41.6	14.0	3.3	7.0	0.3	100.0(1,201)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2.7	47.6	16.9	2.4	0.4	-	100.0(248)	
농·임·어업	48.7	34.5	11.8	3.4	1.7	-	100.0(119)	
단순노무직 및 기타	36.6	44.1	13.0	2.6	3.8	-	100.0(506)	
종사상 지위								
고용주	31.8	22.7	9.1	12.1	24.2	-	100.0(66)	
자영업자	30.1	36.3	12.8	6.4	14.1	0.3	100.0(375)	
상용근로자	21.4	39.3	14.5	4.7	20.0	0.1	100.0(1,437)	246.1***
임시근로자	33.0	40.5	13.9	2.4	10.2	-	100.0(743)	
일용근로자	41.2	43.0	10.1	0.4	4.3	1.1	100.0(277)	
무급가족종사자	35.4	51.1	6.2	3.1	4.0	0.2	100.0(452)	

주: *** p<.001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15~49세 이하 비취업 기혼여성들의 비취업 이유를 살펴보면, ‘자녀양육’(61.7%)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건강상의 이유’(10.7%), ‘가사’(7.3%), ‘일하고 싶지 않아서’(6.8%), ‘일자리가 없어서’(6.5%) 등의 순이었으며, 이 외 ‘남편·시댁식구의 반대’(2.6%), ‘일자리 찾는 방법을 몰라서’(1.4%)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동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모두 ‘자녀양육 때문’이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45~49세 연령층 부인을 제외한 전체 연령층에서 ‘자녀양육 때문’에 취업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25~34세 연령층에서 높았다(25~29세 78.3%, 30~34세 86.5%). 이는 이들 연령대의 경우 자녀가 어린 경우가 많고, 따라서 자녀양육의 책임이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하겠다.

〈표 12-23〉 15-49세 기혼여성의 거주지역 및 연령별 비취업이유[1)]

(단위: %, 명)

구분	지역		연령						전체
	동부	읍·면부	15~24	25~29	30~34	35~39	40~44	45~49	
일하고 싶지 않아서	7.0	4.9	7.7	4.2	1.9	4.2	6.8	17.3	6.8
건강상 이유로	10.5	12.6	1.9	3.9	4.0	7.3	12.9	25.0	10.7
일자리 찾는 방법 몰라서	1.4	1.5	1.9	0.3	0.1	0.9	2.6	2.8	1.4
기타 개인적인 이유	0.9	0.3	-	1.8	1.3	0.6	0.6	0.6	0.8
자녀양육	61.5	63.1	71.2	78.3	86.5	72.9	50.4	20.1	61.7
가사	7.6	5.4	11.5	3.3	1.1	4.8	11.0	16.0	7.3
남편 및 시댁식구의 반대	2.5	3.1	1.9	2.4	1.3	2.8	2.8	3.9	2.6
기타 가족적인 이유	1.2	2.8	1.9	-	0.4	0.6	2.1	3.6	1.4
임금	0.3	0.5	-	0.6	-	0.2	0.9	0.2	0.3
근로시간	0.2	0.3	-	-	0.3	0.4	0.4	-	0.2
일자리가 없어서	6.7	5.4	1.9	5.4	2.8	5.3	9.4	10.6	6.5
기타 사회적인 이유	0.1	-	-	-	0.3	-	0.1	-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9
(수)	(2,974)	(388)	(52)	(336)	(718)	(933)	(681)	(644)	(3,362)

주: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교육수준별 현 비취업이유를 보면, 중학교 이하의 학력자는 '건강상 이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40.2%),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자는 '자녀양육'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대학이상의 학력자에게서 더 높았다(고등학교: 59.2%, 대학이상: 71.8%). 이는 학력이 낮은 경우 고연령층이 많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젊은 연령층으로 자녀양육기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존자녀수별로는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에 '일하고 싶지 않아서' 즉, 자발적인 비취업률(17.8%)이 높았으며, 그 외 이유로는 현존자녀가 없는 경우 '건강상 이유'(25.1%)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자녀양육', '가사' 등의 순이었다. 현존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자녀양육'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12-24〉 15-49세 기혼여성의 교육수준, 현존자녀수별 비취업이유[1)]

(단위: %, 명)

구분	교육수준			현존자녀수			전체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 이상	없음	1명	2명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서	7.1	7.0	6.4	17.8	6.0	6.1	6.8
건강상 이유로	40.2	11.6	4.5	25.1	7.7	9.9	10.4
일자리 찾는 방법 몰라서	6.8	1.3	0.5	0.5	0.9	1.6	1.3
기타 개인적인 이유	-	0.6	1.3	7.3	0.1	0.5	0.8
자녀양육	19.5	59.2	71.8	14.2	74.1	62.8	62.3
가사	10.9	7.7	6.4	9.6	4.2	8.2	7.3
남편 및 시댁식구의 반대	3.4	3.0	2.0	5.9	1.1	2.7	2.6
기타 가족적인 이유	2.6	1.6	1.0	1.4	1.5	1.3	1.4
임금	0.8	0.1	0.5	0.5	0.3	0.3	0.3
근로시간	-	0.3	0.2	0.5	0.3	0.2	0.2
일자리가 없어서	8.6	7.7	5.1	16.4	3.8	6.4	6.4
기타 사회적인 이유	-	-	0.2	0.9	-	-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66)	(1,607)	(1,491)	(219)	(789)	(2,296)	(3,304)

주: 1) 비취업부인만을 대상으로 함;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8. 비취업부인의 향후 취업의향 및 희망직종

현재 비취업 중인 부인이 향후 취업의향이 있는 경우는 56.9%였으며, 지역별로는 동부지역(56.5%)보다 읍·면부지역(59.9%)이 높았고, 저연령층일수록 취업의향이 높았으며, 고학력일수록 높았다. 현존자녀수별로는 2명 이상보다는 1명 이하일 경우 취업의향이 높았다. 현 결혼상태별로는 사별이나 이혼·별거인 경우 유배우부인보다 취업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별이나 이혼·별거인 경우 가족의 생계부양자로서 취업욕구가 많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가구소득은 적을수록 취업의향이 높아 99만원 이하는 68.0%였으나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점차 낮아져 300~399만원은 58.4%, 그리고 500만원 이상은 35.8%에 불과하였다.

〈표 12-25〉 15세~49세 비취업 기혼여성의 향후 취업의향

(단위: %, 명)

특성	취업의향 없음	취업의향 있음	계(수)	χ^2
전체	43.1	56.9	100.0(3,363)	
지역				
동부	43.5	56.5	100.0(2,976)	2.7
읍·면부	40.1	59.9	100.0(387)	
연령				
15~24세	25.0	75.0	100.0(52)	
25~29세	25.2	74.8	100.0(237)	
30~34세	29.5	70.5	100.0(718)	268.0***
35~39세	40.6	59.4	100.0(932)	
40~44세	48.4	51.6	100.0(680)	
45~49세	67.2	32.8	100.0(6,41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0.8	49.2	100.0(266)	9.9**
고등학교	44.0	56.0	100.0(1,606)	
대학 이상	40.8	59.2	100.0(1,491)	
현존자녀수				
없음	37.6	62.4	100.0(221)	20.5***
1명	37.2	62.8	100.0(788)	
2명 이상	45.7	54.3	100.0(2,296	
현 결혼상태				
유배우	43.7	56.3	100.0(3,274)	16.9***
사별	36.4	63.6	100.0(11)	
이혼·별거	20.5	79.5	100.0(78)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32.0	68.0	100.0(125)	
100~199만원	33.0	67.0	100.0(491)	
200~299만원	34.9	65.1	100.0(934)	167.7***
300~399만원	41.6	58.4	100.0(794)	
400~499만원	49.4	50.6	100.0(417)	
500만원 이상	64.2	35.8	100.0(597)	

주: ** p<.01,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향후 취업의향이 있는 부인이 희망하는 취업 직종으로는 서비스·판매직(38.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5.9%), 사무직 종사자(21.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읍·면부지역 모두 서비스·판매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동부지역에서, 그리고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직 및 기타는 읍·면부지역에서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12-26〉 15~49세 비취업 기혼여성의 특성별 향후 취업희망 직종[1)]

(단위: %, 명)

특성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농·임·어업	단순 노무직 및 기타	계(수)	χ^2
전체	0.8	25.9	21.2	38.3	4.1	0.4	9.3	100.0(1,914)	
지역									
동부	0.8	26.4	21.2	38.3	3.8	0.3	9.2	100.0(1,682)	7.6
읍·면부	1.3	22.0	21.1	38.4	6.5	0.9	9.9	100.0(232)	
연령									
15~24세	-	20.5	17.9	25.6	7.7	2.6	25.6	100.0(39)	
25~29세	0.4	32.7	29.9	29.1	3.2	-	4.8	100.0(251)	
30~34세	0.6	28.8	28.2	34.9	3.0	0.4	4.1	100.0(507)	
35~39세	0.9	25.6	21.8	40.0	4.0	0.2	7.6	100.0(555)	
40~44세	1.4	25.8	13.3	40.8	5.1	0.8	12.7	100.0(353)	
45~49세	0.9	12.8	5.7	51.2	6.6	-	22.7	100.0(21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	1.5	4.6	44.3	11.5	1.5	36.6	100.0(131)	540.7***
고등학교	0.3	11.2	19.1	51.3	5.9	0.4	11.7	100.0(899)	
대학 이상	1.4	44.4	25.7	24.3	1.2	0.1	2.8	100.0(882)	
현존자녀수									
없음	1.4	31.2	29.7	28.3	2.2	0.7	6.5	100.0(138)	
1명	0.4	29.6	27.0	32.5	4.4	0.4	5.6	100.0(496)	
2명 이상	1.0	24.4	18.1	41.4	4.0	0.3	10.8	100.0(1,246)	
현 결혼상태									
유배우	0.8	26.6	21.6	37.7	4.0	0.4	8.9	100.0(1,844)	
사별	-	-	-	85.7	14.3	-	-	100.0(7)	
이혼·별거	-	8.1	12.9	51.6	6.5	-	21.0	100.0(62)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	7.1	15.3	48.2	8.2	-	21.2	100.0(85)	
100~199만원	0.6	18.8	18.8	40.7	7.0	0.9	13.1	100.0(329)	
200~299만원	-	22.9	23.8	38.2	3.3	0.2	11.7	100.0(608)	
300~399만원	0.9	29.7	23.5	36.4	3.9	0.2	5.4	100.0(464)	
400~499만원	2.8	34.4	17.9	37.3	1.4	0.9	5.2	100.0(212)	
500만원 이상	1.9	35.8	18.6	36.3	3.3	-	4.2	100.0(215)	

주: 1) 향후 취업의향이 있는 부인만을 대상으로 함; 2) *** p<.001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연령별로는 25~29세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외 연령층에서는 서비스·판매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자는 서비스·판매직을, 그리고 대학이상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단순노무직 및 기타는 저학력일수록 높게 나타나 학력별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현존자녀수별로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그리고 1명 이상은 서비스·판매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현 결혼상태별로는 사별이나 이혼·별거상태인 경우 서비스·판매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유배우부인보다 높았으며, 가구소득별로는 전체적으로 서비스·판매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두 번째로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직종은 99만원 이하의 가구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노무직 및 기타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무직 종사자를, 3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서비스·판매직이나 단순노무자 및 기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희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제3절 생애단계별 취업실태

본 절에서는 기혼여성의 생애단계별 취업상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혼여성의 특성별로 결혼 전·후, 출산 전·후 취업유형과 첫째아 출산 전·후, 막내아 출산 전·후, 그리고 막내아 입학 전·후의 취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각 생애단계별 취업을 지속한 부인의 취업직장의 변화와 취업중단 이유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생애단계별 취업실태

생애단계별 기혼여성의 취업률을 보면, 결혼 직전에 83.3%였던 취업률이 결혼 직후 41.6%로 41.7%pt 감소하였고, 첫째아 출산전에 27.6%였던 취업률은 첫째아 출산 후 21.8%로 5.8%pt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막내아 출산전

에 23.5%였던 취업률이 막내아 출산 후 22.4%로 감소하였다[57]. 그러나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전에는 36.4%로 증가하였고,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41.8%로 더욱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혼과 자녀출산이 부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2-27〉 생애단계별 부인의 취업여부

(단위: %, 명)

구분	취업	비취업	계(수)
결혼 직전	83.3	16.7	100.0(6,723)
결혼 직후	41.6	58.4	100.0(6,723)
첫째아 출산 전	27.6	72.4	100.0(6,199)
첫째아 출산 후	21.8	78.2	100.0(6,195)
막내아 출산 전	23.5	76.5	100.0(6,194)
막내아 출산 후	22.4	77.6	100.0(6,193)
막내아 초교 입학 전	36.4	63.6	100.0(4,139)
막내아 초교 입학 후	41.8	58.2	100.0(4,139)

자료: 본 조사결과

2. 생애단계별 취업부인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

가. 결혼직전·직후 직종 및 종사상 지위

결혼직전·직후 모두 취업한 부인의 직종간 연계성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결혼직전 취업했던 직종에 결혼직후에도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농·임·어업직 종사자의 경우 100.0%가 결혼직전 직종과 동일하였다. 이 외 결혼직전과 직후 동일 직종 종사비율이 가장 낮은 직종은 단순노무직 및 기타로 결혼후에도 동일 직종에 종사한 경우는 76.9%였으며, 나머지는 농·임·어업직 11.2%, 서비스·판매직 9.1%,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에 2.1%가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7) 여성부 외(2009) 조사에서는 결혼직전과 직후에 전체의 45.6% 정도가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경험이 있으며, 출산 전·후로는 23.6%가 퇴장하여 결혼 및 출산에 의해 약 69.2%가 취업을 중단함.

결혼직전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결혼직후에도 동일 직종에 종사한 경우는 87.3%이었으며, 나머지 직종이 변경된 부인 중 농·임·어업직에 종사하는 비율(5.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28〉 15~49세 기혼여성의 결혼직전·직후 취업 직종[1)]

(단위: %, 명)

결혼직전 직종	결혼직후 직종							계(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농·임·어업	단순 노무직 및 기타	
전체	0.6	28.0	39.7	17.6	7.5	2.2	4.4	100.0(2,726)
관리자	93.8	6.3	-	-	-	-	-	100.0(1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1	98.5	0.7	0.4	0.1	0.0	0.1	100.0(748)
사무직 종사자	0.1	1.5	94.2	2.7	0.4	0.7	0.4	100.0(1,129)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	1.3	1.5	93.2	0.9	2.6	0.4	100.0(458)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0.9	2.3	2.7	87.3	5.0	1.8	100.0(220)
농·임·어업	-	-	-	-	-	100.0	-	100.0(12)
단순노무직 및 기타	-	-	0.7	9.1	2.1	11.2	76.9	100.0(143)

주: 1) 결혼직전, 직후 모두 취업한 부인만을 대상으로 함;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종사상 지위별로는 결혼직전·직후 고용주, 자영업자, 상용근로자로 종사한 경우는 모두 92% 이상이 동일 종사상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는 동일한 종사상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가 84~89% 수준으로 종사상 지위가 변경된 경우가 많았다. 결혼직전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였던 경우는 결혼 직후 무급가족종사자가 된 경우가 가장 많아 각각 7.8%, 5.6%이었으며, 결혼직전 무급가족종사자 였으나 결혼직후 고용주(10.5%)가 되거나, 자영업자(5.3%)가 된 경우도 일부 있었다.

〈표 12-29〉 15~49세 기혼여성의 결혼직전·직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1)]

(단위: %, 명)

결혼직전 종사상 지위	결혼직후 종사상 지위						계(수)
	고용주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체	1.5	6.6	76.7	9.4	1.4	4.4	100.0(2,724)
고용주	92.1	2.6	2.6	2.6	-	-	100.0(38)
자영업자	0.6	92.9	2.6	0.6	-	3.2	100.0(156)
상용근로자	0.1	1.4	93.7	1.1	0.3	3.4	100.0(2,218)
임시근로자	0.4	0.8	1.9	88.7	0.4	7.8	100.0(257)
일용근로자	-	-	2.8	2.8	88.9	5.6	100.0(36)
무급가족종사자	10.5	5.3	-	-	-	84.2	100.0(19)

주: 1) 결혼직전, 직후 모두 취업한 부인만을 대상으로 함;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나. 첫째아 출산전·후 직종 및 종사상 지위

첫째아 출산 전·후 모두 취업한 부인의 동일 직종간 취업여부를 살펴보면,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농·임·어업직 종사자, 단순노무직 및 기타 종사자는 첫 자녀 출산직전·직후 모두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99.1%, 사무직 종사자 98.5%,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 종사자 97.1%가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판매직 종사자와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 종사자 중 일부는 단순노무직 및 기타로 변경된 경우도 있었다.

첫째아 출산전·후 종사상 지위의 변화는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에서만 일부 나타났다. 첫째아 출산 전 상용근로자였으나 출산 후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가 있었으며, 무급가족종사자로 변경된 경우도 일부 있었다. 첫째아 출산전에 임시근로자였던 경우 중 자영업자로 변경된 경우가 2.5%이었으며, 일용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변경된 경우가 각각 1.3%이었다.

〈표 12-30〉 15~49세 기혼여성의 첫째아 출산전·후 취업 직종[1)]

(단위: %, 명)

첫째아 출산전 직종	첫째아 출산후 직종							계(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농·임·어업	단순 노무직 및 기타	
전체	0.7	32.1	32.1	18.1	5.7	6.4	4.8	100.0(1,226)
관리자	100.0	-	-	-	-	-	-	100.0(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100.0	-	-	-	-	-	100.0(392)
사무직 종사자	0.3	0.5	98.5	0.5	0.3	-	-	100.0(400)
서비스·판매직종사자	-	-	-	99.1	0.5	-	0.5	100.0(221)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	-	1.4	97.1	-	1.4	100.0(70)
농·임·어업	-	-	-	-	-	100.0	-	100.0(79)
단순노무직 및 기타	-	-	-	-	-	-	100.0	100.0(57)

주: 1) 첫 자녀 출산직전, 직후 모두 취업한 부인만을 대상으로 함;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표 12-31〉 15~49세 기혼여성의 첫째아 출산전·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1)]

(단위: %, 명)

첫 자녀 출산직전 종사상 지위	첫 자녀 출산직후 종사상 지위						계(수)
	고용주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체	1.7	11.0	65.5	6.5	2.0	13.2	100.0(1,227)
고용주	100.0	-	-	-	-	-	100.0(19)
자영업자	-	100.0	-	-	-	-	100.0(132)
상용근로자	0.2	0.1	98.2	0.6	0.6	0.2	100.0(819)
임시근로자	-	2.5	0.0	94.9	1.3	1.3	100.0(79)
일용근로자	-	-	-	-	100.0	-	100.0(19)
무급가족종사자	-	-	-	-	-	100.0	100.0(159)

주: 1) 첫 자녀 출산직전, 직후 모두 취업한 부인만을 대상으로 함;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다. 막내아 출산전·후 직종 및 종사상 지위

막내아 출산전·후 모두 취업한 부인의 동일 직종간 취업 여부를 살펴보면, 관리자, 농·임·어업직 종사자, 단순노무직 및 기타 종사자는 막내 자녀 출산 직전·직후 모두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서비스·판매직 종사자는 모두 99% 이상이 동일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동일 직종 종사비율이 가장 낮은 직종은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 종사자(97.1%) 이었다. 막내아 출산전·후 취업직종이 변경된 경우를 보면, 출산 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 농·임·어업직 종사자로 변경된 경우(0.3%)와,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중에서는 농·임·어업직 종사자(0.4%)와 단순노무직 및 기타(0.4%)로 변경된 경우가 일부 나타났다.

〈표 12-32〉 15~49세 기혼여성의 막내아 출산전·후 취업 직종[1)]

(단위: %, 명)

막내아 출산 전 직종	막내아 출산후 직종							계(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농·임·어업	단순 노무직 및 기타	
전체	0.5	29.8	28.4	22.3	5.8	7.8	5.4	100.0(1,173)
관리자	100.0	-	-	-	-	-	-	100.0(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3	99.4	-	-	-	0.3	-	100.0(351)
사무직 종사자	-	0.3	99.7	-	-	-	-	100.0(334)
서비스·판매직종사자	-	-	-	99.2	-	0.4	0.4	100.0(262)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	-	2.9	97.1	-	-	100.0(70)
농·임·어업	-	-	-	-	-	100.0	-	100.0(89)
단순노무직 및 기타	-	-	-	-	-	-	100.0	100.0(62)

주: 1) 막내아 출산전·후 모두 취업한 부인만을 대상으로 함;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막내아 출산전·후 종사상 지위의 변화는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에서 일부 나타났다. 막내아 출산 전 상용근로자였으나 출산 후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로 변경된 경우가 일부(1.6%) 있었다. 반대로 막내아 출산전에 임시근로자였던 경우 중 상용근로자로 변경된 경우(1.5%)와 무급가족종사자로 변경된 경우(1.5%)도 일부 나타났다. 막내아 출산전 무급가족종사자였던 부인 중 0.9%는 자영업자로 변경된 경우였다.

〈표 12-33〉 15~49세 기혼여성의 막내아 출산전·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1)]

(단위: %, 명)

막내아 출산 전 종사상 지위	막내아 출산 후 종사상 지위						계(수)
	고용주	자영업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체	1.9	13.9	57.3	5.9	3.0	18.1	100.0(1,174)
고용주	100.0	-	-	-	-	-	100.0(22)
자영업자	-	100.0	-	-	-	-	100.0(160)
상용근로자	-	0.1	98.2	0.7	0.6	0.3	100.0(684)
임시근로자	-	-	1.5	97.0	-	1.5	100.0(66)
일용근로자	-	-	-	-	100.0	-	100.0(31)
무급가족종사자	-	0.9	-	-	-	99.1	100.0(211)

주: 1) 막내 자녀 출산직전, 직후 모두 취업한 부인만을 대상으로 함;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라.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전·후 직종 및 종사상 지위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전·후 모두 취업한 부인의 동일 직종간 취업 여부를 살펴보면,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전 관리자였던 경우에는 모두 입학 후에도 계속 동일한 직종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그 외에는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전과 후에 일부 직종의 변화를 보였다. 즉,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였던 경우에는 사무직 종사자(0.4%)와 서비스·판매직 종사자(0.4%)로 직종이 변경되었으며,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서비스·판매직 종사자로 변경된 경우가 1.6%이었다. 막내아가 초등학교 입학 전 서비스·판매직 종사자였던 경우에는 입학 후 기능원·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종사자와 단순노무자 및 기타로 직종이 변경된 경우가 있었다. 기능원·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종사자였던 경우와 농·임·어업직 종사자였던 경우 단순노무자 및 기타로 직종이 변경된 경우가 각각 1.5%와 1.0%이었다. 반대로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전에 단순노무자 및 기타였으나 입학 후에 사무직 종사자,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그리고 기능원·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 종사자로 변경된 경우도 각각 0.5%이었다.

〈표 12-34〉 15~49세 기혼여성의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전·후 취업 직종[1)]

(단위: %, 명)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전 직종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후 직종							계(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농·임·어업	단순 노무직 및 기타	
전체	0.8	18.6	16.7	35.4	9.1	6.6	12.9	100.0(1,465)
관리자	100.0	-	-	-	-	-	-	100.0(1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99.3	0.4	0.4	-	-	-	100.0(272)
사무직 종사자	-	-	98.4	1.6	-	-	-	100.0(245)
서비스·판매직종사자	-	0.6	0.2	98.7	0.2		0.4	100.0(519)
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	-	-	98.5	-	1.5	100.0(133)
농·임·어업	-	-	-	-	-	99.0	1.0	100.0(97)
단순노무직 및 기타	-	-	0.5	0.5	0.5	-	98.4	100.0(187)

주: 1) 막내자녀 초등학교 입학직전, 직후 모두 취업한 부인만을 대상으로 함;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전·후 종사상 지위의 변화를 보면, 고용주였다가 임시근로자로 된 경우가 3.6%이었으며, 자영업자였으나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 된 경우가 각각 0.5%이었다.

〈표 12-35〉 15~49세 기혼여성의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전·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1)]

(단위: %, 명)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전 종사상 지위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후 종사상 지위						계(수)
	고용주	자영업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체	1.8	15.5	38.7	18.3	7.0	18.6	100.0(1,462)
고용주	96.4	-	-	3.6	-	-	100.0(28)
자영업자	-	98.6	0.5	-	0.5	0.5	100.0(222)
상용근로자	-	0.0	99.1	0.7	0.2	-	100.0(566)
임시근로자	-	2.6	1.1	96.3	-	-	100.0(272)
일용근로자	-	-	1.0	1.0	98.0	-	100.0(102)
무급가족종사자	-	-	-	-	0.4	99.6	100.0(272)

주: 1) 막내자녀 초등학교 입학직전, 직후 모두 취업한 부인만을 대상으로 함;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전 상용근로자였으나 입학 후 임시근로자(0.7%), 일용근로자(0.2%) 등으로 변경된 경우도 있다. 또한 임시근로자인 경우에는 자영업자나 상용근로자로,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나 임시근로자로,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종사상 지위가 변경된 경우 등이 나타났다.

3. 생애단계별 취업부인의 직장 변화

다음은 생애단계별로 취업한 부인들의 동일직장에의 근무여부를 파악한 결과이다.

결혼 직전과 직후 모두 취업한 부인의 경우 동일직장이 88.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 6.4%, 직장을 다니다가 자영업을 하게 된 경우 4.2%, 자영업에서 자영업으로 0.7%, 그리고 자영업이었다가 직장으로 옮긴 경우 0.2%였다.

첫째아 출산 전·후에는 동일직장에 근무한 경우는 93.9%였고, 이 외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 4.7%, 직장에서 자영업으로 옮긴 경우 0.8% 등이었다. 막내아 출산 전·후에는 동일직장에 근무한 경우가 93.8%로 가장 높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 5.0%, 직장에서 자영업으로 옮긴 경우와 자영업에서 자영업으로 옮긴 경우가 각각 0.6%이었다. 그러나 첫째아 출산 전·후와 막내아 출산 전·후에 자영업에 종사하다가 직장으로 옮긴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전·후에는 동일직장에 근무한 경우는 93.8%,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 5.3% 등이었으며, 직장에서 자영업으로 옮기거나 자영업에서 자영업으로 옮긴 경우는 다른 생애단계보다는 낮은 편이었다. 자영업에 종사하다가 직장으로 옮긴 경우는 결혼 전·후보다 약간 더 높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결혼직전·후 모두 취업한 부인의 경우 동일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가장 낮은 비율로 다른 생애단계에 비해 다른 직장이나 직종으로 옮기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여성의 직장이나 직종 변동에는 결혼에 의한 영향이 큰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2-36〉 생애단계별 취업부인의 동일 직장 여부[1)]

(단위: %, 명)

구분	동일 직장 여부[1)]					
	동일 직장	다른 직장	직장→ 자영업	자영업→ 직장	자영업→ 자영업	계(수)
결혼직전, 결혼직후	88.5	6.4	4.2	0.2	0.7	100.0(2,693)
첫째아 출산 전, 첫째아 출산 후	93.9	4.7	0.8	-	0.6	100.0(1,221)
막내아 출산 전, 막내아 출산 후	93.8	5.0	0.6	-	0.6	100.0(1,170)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전,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후	93.8	5.3	0.4	0.3	0.2	100.0(1,443)

주: 1) 각 생애단계별 취업부인 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본 조사결과

가. 결혼 전·후 취업직장의 변화

결혼 전·후 취업을 지속한 부인의 직장 변화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일 직장에 다닌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많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직장에서 자영업으로 전직한 경우, 그리고 자영업에서 자영업으로 옮긴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보다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결혼 전·후 동일직장인 경우는 연령이 높을수록 적었고,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는 24세 이하 젊은 연령층이 가장 많았다. 직장에서 자영업으로는 24세 이하를 제외할 경우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비율 또한 높아졌다. 자영업에서 자영업으로 옮긴 경우는 45세 이상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 전·후 동일직장인 비율이 높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와 직장에서 자영업으로 전직한 경우는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이었다. 이는 혼전에 다니던 직장을 결혼으로 인해 중단하였다가 재취업하는 경우로 학력이 낮을수록 저임금의 근로자로서 정규직보다는 안정적이지 못한 임시직 등에 근무하게 되거나 자영업으로 전환하게 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자영업에서 자영업으로 옮긴 경우는 고학력층보다는 저학력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12-37〉 결혼 전·후 취업을 지속한 부인의 취업직장의 변화

(단위: %, 명)

특성	동일 직장	다른 직장	직장→ 자영업	자영업→ 직장	자영업→ 자영업	계(수)
전체	88.5	6.4	4.2	0.2	0.7	100.0(2,693)
지역						
동부	90.8	6.1	2.8	0.1	0.2	100.0(2,383)
읍·면부	71.3	8.4	15.5	0.6	4.2	100.0(310)
연령						
15~24세	81.0	9.5	9.5	-	-	100.0(21)
25~29세	93.7	4.6	1.0	0.7	-	100.0(302)
30~34세	91.8	6.0	2.0	-	0.2	100.0(600)
35~39세	89.7	6.3	3.6	0.1	0.3	100.0(727)
40~44세	87.5	6.3	5.6	0.2	0.5	100.0(591)
45~49세	80.5	8.2	8.2	0.2	2.9	100.0(45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2.2	11.0	20.7	-	6.0	100.0(164)
고등학교	86.9	7.7	4.6	0.3	0.6	100.0(1,065)
대학이상	92.7	4.9	2.1	0.1	0.1	100.0(1,463)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나. 첫째아 출산 전·후 직장의 변화

첫째아 출산 전·후의 직장 변화를 살펴보면, 출산 전·후 동일직장인 경우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93.5%, 읍·면부지역 95.1%로 읍·면주지역 거주부인의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결혼 전·후의 동일직장인 경우와 비교하면 동부지역 2.7%pt, 읍·면부지역 23.8%pt가 높은 편이다. 연령별로는 40~44세 연령층에서 동일직장에 근무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교육수준별로는 동일직장은 대학이상의 고학력층에서, 그리고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층에서 높았다.

〈표 12-38〉 첫째아 출산전·후 취업을 지속한 부인의 취업직장의 변화

(단위: %, 명)

특성	동일 직장	다른 직장	직장→자영업	자영업→직장	자영업→자영업	계(수)
전체	93.9	4.7	0.8	-	0.6	100.0(1,221)
지역						
동부	93.5	4.9	0.9	-	0.7	100.0(1,016)
읍·면부	95.1	3.4	0.5	-	-	100.0(205)
연령						
15~24세	100.0	-	-	-	-	100.0(1)
25~29세	93.8	1.3	-	-	5.0	100.0(80)
30~34세	93.0	6.5	0.5	-	-	100.0(200)
35~39세	93.6	4.9	1.2	-	0.3	100.0(328)
40~44세	95.4	3.3	1.0	-	0.3	100.0(304)
45~49세	94.1	4.9	0.7	-	0.3	100.0(30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93.9	6.1	-	-	-	100.0(115)
고등학교	91.0	6.9	1.7	-	0.5	100.0(421)
대학 이상	95.9	2.9	0.4	-	0.7	100.0(684)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다. 막내아 출산 전·후 직장의 변화

막내아 출산 전후의 직장 변화에 대해서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지역,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모두 동일 직장에 근무한 경우가 각각 93.5%, 95.2%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는 동부지역(5.3%)이 읍·면부지역(3.3%) 거주부인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25~29세 연령층을 제외할 경우 저연령층일수록 동일직장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는 45~49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직장에서 자영업으로 옮긴 비율은 35~39세에서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동일 직장은 중학교 이하 학력층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는 고등학교 학력층에서 가장 높았다.

〈표 12-39〉 막내아 출산 전·후 취업을 지속한 부인의 취업직장의 변화

(단위: %, 명)

특성	동일 직장	다른 직장	직장→ 자영업	자영업→ 직장	자영업→ 자영업	계(수)
전체	93.8	5.0	0.6	-	0.6	100.0(1,170)
지역						
동부	93.5	5.3	0.6	-	0.5	100.0(1,084)
읍·면부	95.2	3.3	0.5	-	1.0	100.0(209)
연령						
15~24세	100.0	-	-	-	-	100.0(1)
25~29세	89.2	5.4	-	-	5.4	100.0(74)
30~34세	94.6	4.9	0.5	-	-	100.0(184)
35~39세	94.1	5.0	1.0	-	-	100.0(303)
40~44세	94.1	4.2	0.7	-	1.0	100.0(287)
45~49세	93.8	5.6	0.6	-	-	100.0(32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95.2	4.8	-	-	-	100.0(124)
고등학교	91.8	6.6	0.9	-	0.7	100.0(426)
대학이상	94.7	4.0	0.6	-	0.6	100.0(621)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라.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전·후 직장의 변화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전·후의 직장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동일직장에 근무한 경우가 주를 이루며 동부지역 93.4%,읍·면부지역 95.4%로 읍·면부지역 비율이 높았다. 이 외 다른 직장으로 옮긴 비율은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도 동일직장 비율이 가장 높았고, 특히 45세 이상에서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도 동일직장 근무가 대부분이었고, 특히 고학력층일수록 동일직장에 근무한 비율이 높아 고등학교 이하는 92.6~92.7%이었으나 대학이상은 95.8%로 고등학교 이하 학력층에 비해 3%pt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표 12-40〉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전·후 취업을 지속한 부인의 취업직장의 변화

(단위: %, 명)

특성	동일 직장	다른 직장	직장→ 자영업	자영업→ 직장	자영업→ 자영업	계(수)
전체	93.8	5.3	0.4	0.3	0.2	100.0(1,443)
지역						
동부	93.4	5.8	0.5	0.3	0.1	100.0(1,161)
읍·면부	95.4	3.5	-	0.4	0.7	100.0(282)
연령						
15~24세	-	-	-	-	-	-
25~29세	50.0	50.0	-	-	-	100.0(2)
30~34세	95.1	4.9	-	-	-	100.0(61)
35~39세	92.4	6.7	0.3	0.3	-	100.0(342)
40~44세	92.9	5.6	0.4	0.4	0.4	100.0(536)
45~49세	95.4	4.0	0.4	0.4	0.2	100.0(50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92.7	5.9	-	0.9	0.5	100.0(219)
고등학교	92.6	6.6	0.5	0.1	0.1	100.0(746)
대학 이상	95.8	3.1	0.6	0.2	0.2	100.0(477)

주: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3. 생애단계별 취업중단 이유

조사대상 기혼여성들의 생애단계별 취업 중단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 <표 12-41>과 같다. 결혼직전 취업 중이었다가 결혼직후 중단한 이유는 '결혼 때문'이 89.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배우자나 기타 가족의 반대', '자녀양육 때문에'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첫째아 출산 전 취업 중이었다가 출산 후 중단한 경우는 '자녀양육 때문'이 92.2%로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한 취업중단이 주를 이루었다. 막내아 출산 전 취업 중이었다가 출산 후 중단한 경우 역시 '자녀양육 때문'이 91.3%로 첫째아 출산 후 중단한 경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막내아가 초등학교 입학전에는 취업 중이었다가 입학 후 중단한 경우도 '자녀양육 때문'이 가장 높은 비율(64.2%)이었으나 첫째아나 막내아 출산 전 취업이었다가 출산 후 중단한 경우보다 낮은 비율이었다. 이 외 비율이 높은 중단 이유는 '건강이 안 좋아서'였다.

〈표 12-41〉 생애단계별 취업 중단 이유

(단위: %, 명)

구분	결혼 때문에	배우자, 기타가족 반대	회사에서 나가기를 원해서	자녀 양육 때문에	부모, 기타 가족부양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서	기타[1]	계(수)
결혼직전 취업, 결혼직후 중단	89.3	4.4	0.7	3.9	0.3	0.6	0.6	100.0(2,840)
첫째아 출산 전 취업, 첫째아 출산 후 중단	0.6	1.7	0.6	92.2	-	2.1	2.8	100.0(482)
막내아 출산 전 취업, 막내아 출산 후 중단	1.6	3.1	0.3	91.3	-	2.1	1.6	100.0(278)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전 취업,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후 중단	-	7.1	-	64.2	1.9	16.1	10.8	100.0(43)

주: 1)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 기타 등이 포함됨.
자료: 본 조사결과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기혼여성의 각 생애단계별 취업이 중단되는 이유는 결혼과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배우자나 기타 가족의 반대, 부모 부양부담 등은 낮은 수준이었으며, 건강이 안 좋아서나 기타 등은 각 생애단계별 일관성 있는 변화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으나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후 중단한 경우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회사에서 나가기를 원해서와 같이 타율적인 취업중단 비율도 미미하나마 나타나고 있어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4절 기혼여성의 취업과 가족생활의 시사점

본 조사결과 대부분의 취업여성들이 결혼과 자녀출산 및 집중적인 양육기에 취업률이 낮았고, 현재의 일과 가정생활 병행상의 어려움으로 가사와 자녀양육의 순으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취업부인들의 비취업 이유로 자녀양육 때문인 경우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자녀출산 및 양육기에 있는 34세 이하 부인들에게서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자녀양육이 기혼여성들의 취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혼여성의 각 생애단계별 취업률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결혼전보다 결혼후에, 첫째아 출산전보다 출산후에, 막내아 출산전보다 출산후에 취업률이 저하되

고 있으며, 막내아가 초등학교를 입학한 후에야 입학전보다 취업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과 출산, 자녀양육 등이 기혼여성의 취업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과 출산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과의 관계는 각 사회가 제공하는 경제활동의 기회와 양육지원 체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혼여성들의 취업에 장애요인이 되는 자녀출산 및 양육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 정책의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취업으로 인한 근로소득과 각 생애단계별 고용형태 변화에 있어서도 남녀간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기혼여성의 근로소득의 경우 남편 근로소득의 45% 수준이며, 기혼여성은 남편에 비해 상용근로자나 고용주, 자영업자 비율은 낮고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비율은 높은 편이다. 이는 노동시장 내 성차별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며, 기혼여성의 경우 결혼, 출산, 자녀양육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하거나 사회적 차별이나 불만족스러운 근로조건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관행과 제도의 개선 노력과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기혼여성들이 재취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들 기혼여성들이 그들의 인적자원 수준에 상응하는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3

자녀양육태도와 양육비 및 결혼비용

제13장 자녀양육태도와 양육비 및 결혼비용

제1절 자녀양육 태도

1.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는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를 세 가지 내용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지 여부, 아버지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지 여부,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잘 키울 수 있는지 여부 등이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음'에 (전적으로 또는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은 59.6%로 2006년(54.6%)보다 5.0%pt 증가하였고, 반대로 (별로 또는 전혀) 찬성하지 않는 비율은 40.4%로 2006년(45.4%)보다 5.0%pt 감소하였다.

'아버지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음'에 (전적으로 또는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은 85.4%로 2006년(24.5%)보다 현저히 증가하였고, 반대로 (별로 또는 전혀) 찬성하지 않는 비율은 14.6%로 2006년(75.6%)보다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잘 키울 수 있음'에 (전적으로 또는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은 54.8%로 2006년(59.9%)보다 다소 감소하였고, 반대로 (별로 또는 전혀) 찬성하지 않는 비율은 45.2%로 2006년(40.0%)보다 같은 수준의 증가를 보였다.

〈표 13-1〉 15~59세 기혼가구의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내용	조사연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수)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음	2006	5.6	49.0	39.9	5.5	100.0(10,054)
	2009	8.8	50.8	38.2	2.2	100.0(9,074)
아버지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음	2006	1.9	22.6	52.6	23.0	100.0(10,051)
	2009	30.7	54.7	14.0	0.6	100.0(9,074)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잘 키울 수 있음	2006	9.9	50.0	31.0	9.0	100.0(9,979)
	2009	11.3	43.5	41.1	4.1	100.0(9,073)

자료: 본 조사결과

자녀양육에 대한 세 가지 태도를 남성응답자와 여성응답자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먼저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에 대한 남성응답자의 의견을 간략히 보면, (전적으로 또는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은 56.7%로 2006년(47.2%)보다 증가하였고, 반대로 (별로 또는 전혀) 찬성하지 않는 비율은 43.3%로 2006년(52.7%)보다 감소하였다. 남성응답자 특성별로는 읍·면부 거주자, 젊은 연령층 남성이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고,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3-2 참조).

〈표 13-2〉 15~59세 기혼가구의 남성특성별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수)	χ^2
2006	2.7	44.5	46.8	5.9	100.0(1,330)	
2009	6.9	49.8	40.3	3.0	100.0(787)	
지역						
동부	5.7	50.5	40.0	3.8	100.0(637)	13.2**
읍·면부	12.0	46.7	41.3	-	100.0(150)	
연령						
29세 이하	-	82.1	10.7	7.1	100.0(28)	
30~39세	11.8	52.0	32.3	3.9	100.0(127)	27.6
40~49세	4.9	50.7	41.7	2.8	100.0(288)	***
50세 이상	7.0	45.6	44.8	2.6	100.0(34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7	49.0	43.3	1.0	100.0(208)	
고등학교	7.4	49.9	37.4	5.4	100.0(353)	13.3*
대학 이상	6.2	50.2	42.3	1.3	100.0(227)	
결혼상태						
유배우	7.1	49.9	40.5	2.6	100.0(425)	
사별	6.4	42.6	44.7	6.4	100.0(47)	3.0
이혼·별거	6.2	50.5	40.0	3.3	100.0(305)	

주: * p<.05, ** p<.005, *** p<.001
자료: 1) 김승권 외,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2) 본 조사결과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에 대한 여성응답자의 의견을 간략히 보면, (전적으로 또는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은 59.9%로 2006년(55.8%)보다 다소 증가하였고, 반대로 (별로 또는 전혀) 찬성하지 않는 비율은 40.1%로 2006년(44.3%)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여성응답자 특성별로는 읍·면부 지역 거주자, 유배우부인의 찬성 비율이 높았고, 연령,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동 결과는 결혼상태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13-3 참조).

〈표 13-3〉 15~59세 기혼가구의 여성특성별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수)	χ^2
2006[1)]	6.1	49.7	38.9	5.4	100.0(8,724)	
2009[2)]	9.0	50.9	38.0	2.1	100.0(8,288)	
지역						
동부	8.8	50.4	38.8	2.1	100.0(7,045)	13.2**
읍·면부	10.5	53.9	33.8	1.9	100.0(1,243)	
연령						
29세 이하	8.6	50.2	38.9	2.3	100.0(602)	
30~39세	9.8	51.7	36.6	2.0	100.0(2,702)	8.1
40~49세	8.2	50.8	38.9	2.1	100.0(3,123)	
50세 이상	9.5	50.2	38.2	2.1	100.0(1,86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9.3	50.0	38.8	2.0	100.0(1,535)	
고등학교	8.6	50.6	38.9	1.9	100.0(3,889)	7.1
대학 이상	9.5	51.8	36.4	2.3	100.0(2,863)	
결혼상태						
유배우	9.6	53.0	35.8	1.6	100.0(7,482)	303.9***
사별	5.4	39.1	49.5	6.1	100.0(279)	
이혼·별거	2.5	26.9	63.6	7.0	100.0(517)	

주: ** p<.005, *** p<.001
자료: <표 13-2>와 동일

다음으로 '아버지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에 대한 남성응답자의 의견을 간략히 보면, (전적으로 또는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은 76.0%로 2006년(29.5%)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반대로 (별로 또는 전혀) 찬성하지 않는 비율은 24.1%로 2006년(70.4%)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남성응답자 특성별로는 유배우자가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고, 교육수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거주지역과 연령에 따라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3-4 참조).

〈표 13-4〉 15~59세 기혼가구의 남성특성별 '아버지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수)	χ^2
2006[1)]	2.0	27.5	50.7	19.7	100.0(1,338)	
2009[2)]	21.2	54.8	21.9	2.2	100.0(787)	
지역						
동부	21.4	55.3	20.9	2.5	100.0(637)	3.5
읍·면부	20.7	52.7	26.0	0.7	100.0(150)	
연령						
29세 이하	20.7	72.4	-	6.9	100.0(29)	
30~39세	24.2	55.5	18.8	1.6	100.0(128)	14.1
40~49세	20.5	52.8	24.0	2.8	100.0(288)	
50세 이상	20.6	54.5	23.2	1.7	100.0(34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0.6	55.5	23.4	0.5	100.0(209)	
고등학교	22.4	55.7	18.2	3.7	100.0(352)	12.6*
대학 이상	19.7	52.6	26.3	1.3	100.0(228)	
결혼상태						
유배우	24.1	57.5	17.5	0.9	100.0(424)	
사별	8.5	51.1	31.9	8.5	100.0(47)	30.0***
이혼·별거	18.4	51.6	27.3	2.6	100.0(304)	

주: * p<.05, *** p<.001
자료: <표 13-2>와 동일

'아버지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에 대한 여성응답자의 의견을 간략히 보면, (전적으로 또는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은 86.3%로 2006년(23.7%)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반대로 (별로 또는 전혀) 찬성하지 않는 비율은 13.8%로 2006년(76.3%)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여성응답자 특성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와 유배우자인 경우 찬성 비율이 높았고, 거주지역과 연령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13-5 참조).

〈표 13-5〉 15~59세 기혼가구의 여성특성별 '아버지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수)	X^2
2006[1)]	1.9	21.8	52.9	23.4	100.0(8,714)	
2009[2)]	31.6	54.7	13.3	0.5	100.0(8,287)	
지역						
동부	30.1	55.5	13.9	0.5	100.0(7,043)	50.9***
읍·면부	39.9	49.8	9.9	0.4	100.0(1,244)	
연령						
29세 이하	30.4	56.6	12.6	0.3	100.0(602)	
30~39세	30.4	54.0	15.0	0.5	100.0(2,701)	39.7***
40~49세	29.9	56.5	13.0	0.6	100.0(3,122)	
50세 이상	36.5	52.0	11.3	0.2	100.0(1,86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7.1	52.8	10.0	0.1	100.0(1,535)	
고등학교	30.8	55.1	13.6	0.5	100.0(3,887)	42.7***
대학 이상	29.7	55.1	14.5	0.7	100.0(2,863)	
결혼상태						
유배우	32.2	54.5	12.9	0.4	100.0(7,483)	
사별	31.5	57.0	10.4	1.1	100.0(279)	51.1***
이혼·별거	22.5	56.0	20.0	1.6	100.0(516)	

주: *** p<.001
자료: <표 13-2>와 동일

마지막으로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잘 키울 수 있다'에 대한 남성응답자의 의견을 간략히 보면, (전적으로 또는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은 53.8%로 2006년(64.6%)보다 감소하였고, 반대로 (별로 또는 전혀) 찬성하지 않는 비율은 46.2%로 2006년(35.3%)보다 증가하였다. 남성응답자 특성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이혼·별거자가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거주지역과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3-6 참조).

〈표 13-6〉 15~59세 기혼가구의 남성특성별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잘 키울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수)	χ^2
2006[1)]	10.5	54.1	26.2	9.1	100.0(1,319)	
2009[2)]	11.9	41.9	43.5	2.7	100.0(787)	
지역						
동부	11.3	41.2	45.0	2.5	100.0(636)	3.5
읍·면부	14.6	45.0	37.1	3.3	100.0(151)	
연령						
29세 이하	10.7	35.7	50.0	3.6	100.0(28)	
30~39세	7.9	42.9	48.4	0.8	100.0(126)	9.4
40~49세	15.0	43.6	38.7	2.8	100.0(287)	
50세 이상	11.0	40.7	45.3	2.9	100.0(34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4.4	46.6	38.0	1.0	100.0(208)	
고등학교	13.6	42.0	41.2	3.1	100.0(352)	16.6*
대학 이상	7.5	37.3	52.2	3.1	100.0(228)	
결혼상태						
유배우	8.9	40.7	48.2	2.1	100.0(425)	
사별	10.6	34.0	48.9	6.4	100.0(47)	18.5**
이혼·별거	15.8	45.7	36.5	2.0	100.0(304)	

주: * p<.05, ** p<.005
자료:<표 13-2>와 동일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잘 키울 수 있다'에 대한 여성응답자의 의견을 간략히 보면, (전적으로 또는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은 54.9%로 2006년(59.3%)보다 다소 감소하였고, 반대로 (별로 또는 전혀) 찬성하지 않는 비율은 45.1%로 2006년(40.7%)보다 같은 수준에서 증가하였다. 여성응답자 특성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에 찬성 비율이 높았고, 연령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거주지역과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3-7 참조).

〈표 13-7〉 15~59세 기혼가구의 여성특성별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잘 키울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수)	X^2
2006[1)]	9.9	49.4	31.7	9.0	100.0(8,660)	
2009[2)]	11.2	43.7	40.9	4.2	100.0(8,287)	
지역						
동부	11.1	43.6	40.9	4.3	100.0(7,043)	1.7
읍·면부	11.7	44.1	40.7	3.6	100.0(1,244)	
연령						
29세 이하	13.0	41.4	42.4	3.3	100.0(602)	
30~39세	10.3	46.5	39.1	4.1	100.0(2,701)	17.3*
40~49세	11.3	42.7	41.6	4.3	100.0(3,122)	
50세 이상	11.6	41.9	41.9	4.7	100.0(1,86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3.3	44.1	38.1	4.5	100.0(1,536)	
고등학교	11.4	45.4	39.5	3.8	100.0(3,887)	35.6***
대학 이상	9.8	41.2	44.3	4.8	100.0(2,864)	
결혼상태						
유배우	11.0	44.0	40.9	4.2	100.0(7,483)	
사별	14.7	42.7	37.3	5.4	100.0(279)	9.1
이혼·별거	12.0	39.5	43.6	4.8	100.0(516)	

주: * p<.05, *** p<.001
자료:<표 13-2>와 동일

2. 자녀양육 책임

자녀양육 책임의 한계에 대해 부모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최근 자녀양육으로 소자녀관이 정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조사(2003년 및 2006년)와 동일한 질문항과 답변항을 유지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양육의 책임 한계는 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②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③ 취업할 때까지, ④ 혼인할 때까지, ⑤ 언제(까지)라도 등의 5가지 척도에 의하여 측정하였으며, 응답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⑥ 기타, ⑦ 생각해 보지 않음·모르겠음 등도 답변항으로 제시하였다.

15~59세 기혼가구 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파악된 부모들의 자녀양육 책임한계는 '대학 졸업 할 때까지'가 49.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혼인할 때까지' 23.1%, '취업할 때까지' 12.2%의 순이었다. 이 외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9.6%, '언제(까지)라도' 5.0% 등이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한국가족은 자녀양육의 책임을 자녀의 대학 졸업~결혼까지의 기간에 종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사회와는 달리 자녀가 경제적 기반을 잡기까지 책임을 인식하고 있음은 결국 다자녀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소자녀관 정착이 되는 요인이지 않나 판단된다.

이를 가구와 가구주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지역별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는 동부지역 거주가구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가 50.1%로 많았으나 읍·면부지역 거주가구는 46.8%로 다소 적었다. 반면에 '혼인할 때까지'를 책임한계라고 응답한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가구가 25.7%로 동부지역 거주가구의 22.6%보다 많았다. 또한 '언제(까지)라도' 자녀양육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가구가 6.2%로 동부지역 거주가구의 4.8% 보다 많았다.[58]

가구소득별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99만원 이하 소득가구 37.2%, 100만원대의 소득가구 44.9%, 200만원대의 소득가구 48.8%, 300만원 이상 소득가구 52.4% 등이었다. 반면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녀양육의 책임한계가 있다는 응답은 99만원 이하 소득가구 12.6%, 100만원대의 소득가구 13.8%, 200만원대의 소득가구 11.2%, 300만원 이상 소득가구 7.6% 등이었다. 또한 '혼인할 때까지' 자녀양육 책임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99만원 이하 소득가구가 28.1%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대의 소득가구는 22.1%로 가장 적었다. 평생 자녀양육의 책임이 있다는 의미인 '언제(까지)라도'의 비율은 99만원 이하

58) 2006년 조사에서는, 동부지역 거주가구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가 47.5%로 많았으나 읍·면부지역 거주가구는 40.4%로 다소 적었음. 반면에 '혼인할 때까지'를 책임한계라고 응답한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가구가 32.4%로 동부지역 거주가구의 25.9% 보다 많았음. 또한 '언제(까지)라도' 자녀양육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가구가 6.5%로 동부지역 거주가구의 5.3% 보다 많았음(김승권 외, 2006).

소득가구가 6.8%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소득가구는 4.5%로 가장 적었다.[59]

남성가구주의 자녀양육 책임한계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가 5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혼인할 때까지'로 22.7%이었다. 여성가구주의 자녀양육 책임한계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와 '혼인할 때까지'의 비율이 높아 각각 42.7%, 26.7%이었다. 극단적인 형태인 언제(까지)라도 자녀양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경우는 여성가구주가 6.2%로 남성가구주 4.9%보다 많았다.[60]

대체로 가구주 연령이 높은 경우 자녀양육 책임한계가 높았으며,[61]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책임한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주었다.[62] 혼인상태가 유배우인 경우 자녀양육 책임한계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가 50.5%인 반면, 사별 가구주는 35.0%로 적었다. 사별 가구주는 자녀양육 책임한계가 '혼인할 때까지' 33.2%로 다른 혼인상태의 가구주보다 많았으며, '언제(까지)라도'에

59) 2006년 조사에서는, 99만원 이하 소득가구 40.8%, 100만원대의 소득가구 42.6%, 200만원대의 소득가구 47.6%, 300만원 이상 소득가구 47.9% 등이었다. 반면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녀양육의 책임한계가 있다는 응답은 99만원 이하 소득가구 11.8%, 100만원대의 소득가구 10.5%, 200만원대의 소득가구 8.5%, 300만원 이상 소득가구 7.4% 등이었음. 또한 '혼인할 때까지' 자녀양육 책임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99만원 이하 소득가구가 29.4%로 가장 많았고, 200만 원대의 소득가구는 25.9%로 가장 적었다. 평생 자녀양육의 책임이 있다는 의미인 '언제(까지)라도'의 비율은 100~199만원 소득가구가 6.4%로 가장 많았고, 200~299만원의 소득가구는 4.8%로 적었음(김승권 외, 2006).

60) 2006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남성가구주의 자녀양육 책임한계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가 4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혼인할 때까지' 26.9%이었음. 마찬가지로 여성가구주의 경우에도 자녀양육 책임한계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와 '혼인할 때까지'의 비율이 높아 각각 44.2%, 28.2%이었음. 그리고 언제(까지)라도 자녀양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경우도 남성가구주 5.6%, 여성가구주 5.1%로 유사하였음(김승권 외, 2006).

61) 2006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가구주 연령이 높은 경우에는 '혼인할 때까지'를 자녀양육 책임한계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라고 응답한 경우는 다른 연령층보다 낮았음. 또한 젊은 연령층의 가구주는 '언제(까지)라도' 자녀양육 책임을 가진다는 비율이 다른 어느 연령층보다 많은 8.4%를 나타냈음(김승권 외, 2006).

62) 2006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학교 이하의 저학력층 가구주의 37.2%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를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라 하였고, 다음으로 '혼인할 때까지'가 36.5%이었음. 반면에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는 49.1%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를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라고 하였고, 23.8%는 '혼인할 때까지'를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라고 응답하였음. 또한 '언제(까지)라도'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를 제시한 경우는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가구주와 중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가구주가 모두 5.7%이었고,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가구주는 5.2%이었음(김승권 외, 2006).

응답한 비율도 7.9%로 다른 혼인상태보다 높았다.[63)]

〈표 13-8〉 15~59세 기혼가구의 자녀양육 책임한계

(단위: %, 명)

구분	①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④혼인할 때까지 ①	②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⑤언제(까지)라도 ②	③취업할 때까지 ⑥기타 ③	④	⑤	⑦생각해 보지 않음·모르겠음 ⑥	⑦	계(수)	X^2
2006[1)]	8.6	46.3	11.9	27.0	5.5	0.1	0.5	100.0(10,117)	
2009[2)]	9.6	49.6	12.2	23.1	5.0	0.1	0.4	100.0(9,075)	
지역									
동부	9.6	50.1	12.4	22.6	4.8	0.1	0.4	100.0(7,681)	13.9*
읍·면부	9.5	46.8	11.5	25.7	6.2	0.1	0.2	100.0(1,394)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2.6	37.2	14.7	28.1	6.8	0.2	0.4	100.0(516)	
100~199만원	13.8	44.9	12.6	22.1	5.9	-	0.7	100.0(1,382)	113.0***
200~299만원	11.2	48.8	11.8	22.9	5.1	0.1	0.2	100.0(2,034)	
300만원 이상	7.6	52.4	12.1	22.9	4.5	0.1	0.3	100.0(5,143)	
가구주 성									
남성	9.6	50.3	12.1	22.7	4.9	0.1	0.4	100.0(8,224)	20.9**
여성	10.1	42.7	14.0	26.7	6.2	-	0.2	100.0(850)	
가구주 연령									
29세 이하	21.0	45.0	11.3	19.3	3.0	0.3	-	100.0(300)	
30~39세	15.2	52.1	10.3	16.4	5.1	0.1	0.7	100.0(2,303)	488.1***
40~49세	8.2	56.0	11.2	19.6	4.6	0.1	0.3	100.0(3,504)	
50~59세	5.7	40.5	15.0	32.9	5.6	0.0	0.2	100.0(2,966)	
가구주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8	37.3	15.2	31.8	6.8	-	0.2	100.0(1,417)	
고등학교	9.1	49.7	12.4	23.3	4.8	0.1	0.5	100.0(3,795)	158.1***
대학 이상	10.4	54.0	11.0	19.7	4.5	0.1	0.3	100.0(3,862)	
가구주 혼인상태									
유배우	9.2	50.5	12.2	22.9	4.8	0.1	0.4	100.0(7,906)	
사별	10.3	35.0	13.6	33.2	7.9	-	-	100.0(331)	57.6***
이혼·별거	13.1	46.7	12.7	21.1	5.6	-	0.7	100.0(837)	

주: 1) 기타에는 아들은 군대 제대까지, 딸은 결혼할 때까지 또는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대학입학 때까지, 자녀가 원하는 수준의 교육이 끝날 때까지 등이 있음.
2) * p<.05, ** p<.005, *** p<.001

자료: <표 13-2>와 동일

63) 2006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유배우 가구주는 자녀양육의 책임한계에 대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가 46.5%로 가장 많았고, '혼인할 때까지'는 27.0%이었음. 사별 가구주는 자녀양육 책임한계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에 37.1% 응답하였고, 다음은 '혼인할 때까지'33.2%이었음. 이혼·별거 가구주는 자녀양육 책임한계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가 48.4%로 가장 많았고, '혼인할 때까지'는 23.6%로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반면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11.5%로 상대적으로 많았음(김승권 외, 2006).

제2절 자녀양육비

1. 양육비 지출항목

인구부양비에 있어서 유년부양비는 낮은 출산율에 힘입어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부모들이 실제로 지출하고 인지하고 있는 자녀부양부담은 그 어느 시대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한국부모의 높은 자녀교육열,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자녀의 다양한 요구 등에 기인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자녀양육비의 증가는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히 사교육비의 증가는 가계의 전체 소비지출에서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사실이다(김승권 외, 2006).

자녀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은 출산율 저하의 직접적인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빈곤가족의 부적절한 자녀양육으로 연결되기도 하여 '출발에서의 불평등'이 야기되고 결과적으로 빈곤의 악순환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 자녀의 양육비 규모의 추정은 개별가구 측면에서는 출산과 관련한 각종 의사결정, 가계예산 수립, 생애주기를 통한 가계재무관리 등의 측면에서 중요하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빈곤이나 소득분배, 공공복지정책 등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김승권 외, 2006).

가계의 자녀양육비 지출규모와 이러한 자녀양육비 지출규모의 실제 가계의 부담정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본 실태조사에서도 2003년, 2006년에 이를 조사하였고, 이번 조사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본 절에서는 실제 가구소비지출 중 18세 미만의 자녀(기본적으로 18세 미만의 자녀로 하였으며, 재수생과 대학생은 18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부모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포함하였음)에게 소비되는 지출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소비지출의 구조별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실태를 분석하였다.

가구원 모두의 가구소비지출 항목으로 10개를 분류하였으며, 이는 식료품비, 피복비,[64] 보건의료비, 교육비, 사교육비, 주거 및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소비지출비 등이다[65]. 이 중에서 식료품비, 피복 및 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사교육비는 자녀순위별 지출액을 각각 질문하여 자녀의 소비지출 규모를 파악하였다. 각 소비지출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3-9〉 지출항목별 세부 내용

항목	내용
식료품비	• 곡류, 육류, 낙농류, 어패류, 채소, 해조류, 과실류, 조미료, 빵 및 과자류, 외식비(학교급식비 포함), (각종 이유식)
피복비	• 외의, 스웨터, 셔츠, 내의, 직물, 기타 피복, 신발 등(양말, 모자, 운동화, 교복, 종이기저귀, 세탁비, 수선비 등)
보건의료비	• 의약품, 보건의료용품·기구(안경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비 및 입원비 등)/(영양제, 한약제)
교육비	• 유치원비, 초·중·고등학교 납입금, 대학등록금, 교재비(교과서 및 기타 학교교재, 참고서, 학습용 테이프), 문방구비
보충교육비	• 개인과외, 학원과외, 학습지 방문지도, 피아노·미술·기타 예능계 학원 등
주거 및 광열수도비	• 주택설비 및 수선비, 공동주택관리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난방연료비(도시가스, 기름) 등
가구집기·가사용품비	• 일반가구, 가정용기기, 식기 주방용품, 침구 및 직물제품, 실내장식품(커텐 등 포함)
교양오락비	• 신문, 잡지, 도서, 교양오락기구(TV, 오디오, 컴퓨터 등)구입, 극장입장료, 스포츠관람료, 스포츠시설 이용료, 문화시설 입장료, 교양오락강습료, 사진대, 단체여행비 등/(완구, 오락기기 구입)
교통통신비	• 공공교통비, 개인교통비(자동차구입, 연료비, 정비수리비, 자동차보험료 등), 통신비(일반전화, 이동통신, 인터넷 및 PC 통신이용료, 기타 통신/(스쿨버스비)
기타 소비지출	• 담배, 술, 아·미용비(목욕비 포함), 장신구(가방, 핸드백 등)구입비, 종교관계비, 회비 및 교제비, 경조금, 기타 잡비(용돈 등)

64) 일반적으로 피복비라 함은 신발이나 장신구까지 포함되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함.

65) 가계소비지출은 응답자 가구의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의 합으로 계산되며, 소비지출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입을 위한 지출임.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비소비지출, 즉, 법적 또는 제도에 의한 의무적 지출로써 소득세, 재산세 등의 각종 조세와 기여금,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가구소비 지출조사에서 제외하였음.

2. 개별아동의 특성별 양육비 구조 및 규모

가. 개별아동의 특성별 양육비 구조

가족공동비용은 가구의 전체 지출액을 가구원수로 균등하게 나눈 것이다. 가족공동비용인 주거 및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소비지출 등은 2003년 29만 4천원에서, 2006년 35만 6천원, 2009년 41만원으로 증가하였다. 본 조사결과, 자녀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가족공동비용의 지출액은 증가하였으며, 가족공통항목 중 기타소비지출이 20만 4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녀연령에 따라 가족공동비용 중 자녀 1인이 지출하는 비용은 현저한 차이를 보여 영아(0~2세)가 유아(3~5세)보다 더 많이 지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녀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용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3-10 참조).

〈표 13-10〉 자녀 1인당 평균 자녀양육비의 구조: 가족공동비용 중 개인자녀 몫

(단위: 명, 만원)

특성	(분석 아동수)	주거 및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교양 오락비	교통 통신비	기타 소비지출	전체
2003[1]	(14,221)	4.8	0.9	1.7	8.2	13.8	29.4
2006[2]	(11,816)	5.6	1.1	2.6	10.6	15.7	35.6
2009[3]	(11,496)	5.5	1.3	2.6	11.2	20.4	41.0
자녀연령							
0~ 2세	(1,347)	4.8	1.5	2.2	10.0	19.0	37.5
3~ 5세	(1,227)	4.6	1.4	2.4	9.7	18.7	36.8
6~11세	(3,176)	4.7	1.2	2.4	9.8	18.3	36.4
12~14세	(1,791)	5.1	1.3	2.5	10.8	19.4	39.1
15~17세	(1,778)	5.7	1.3	2.6	12.0	20.8	42.4
18세 이상	(2,177)	7.7	1.4	3.3	14.4	25.8	52.6
F값		123.0***	10.2***	15.1***	164.2***	47.9***	

주: 가족공통비용은 모든 가구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가구소득, 자녀의 성 및 연령의 무응답으로 인해 특성별 양육비 오차가 있음.

자료: 1)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2) 김승권 외,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3) 본 조사결과

가족공동비용의 항목별로 살펴보면, 5개 항목 중 기타소비지출 다음으로 교통통신비의 부담이 자녀 1인당 월 11만 2천원으로 컸다. 이는 대중교통비와 개인휴대폰 요금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항목은 주거 및 광열수도비였다.

자녀양육을 위한 개인비용은 식료품비, 의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사교육비 등이다. 이 비용은 2003년 45만 4천원, 2006년 55만 6천원, 2009년 59만 9천원으로 증가하였다. 자녀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개인비용의 지출액은 증가하였다. 항목별로는 사교육비(23만원)가 가장 많이 지출되었고, 다음은 식료품비(15만 6천원), 공교육비(15만 3천원) 등의 순이었다. 의복·신발비와 보건의료비는 미미하나마 2006년 보다 감소하였다(표 13-11 참조).

〈표 13-11〉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의 구조: 자녀 개인비용

(단위: 명, 만원)

특성	(분석 아동수)	식료품비	의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사교육비	전체
2003[1]	(14,221)	12.7	3.7	1.7	12.1	15.2	45.4
2006[2]	(11,816)	15.4	4.8	2.1	13.1	20.3	55.6
2009[3]	(11,496)	15.6	4.4	1.6	15.3	23.0	59.9
자녀연령							
0～ 2세	(1,347)	12.2	6.5	4.0	0.8	7.5	31.0
3～ 5세	(1,227)	12.8	3.8	1.6	8.5	18.1	44.8
6～11세	(3,176)	14.2	3.7	1.4	3.2	28.6	51.1
12～14세	(1,791)	15.7	3.8	1.2	4.3	34.1	59.1
15～17세	(1,778)	17.8	4.1	1.4	16.2	33.5	73.0
18세 이상	(2,177)	19.6	5.3	0.9	54.1	9.4	89.3

자료: <표 13-10>과 동일

나. 개별아동의 특성별 양육비 규모

자녀에게 지출되는 가족 공통비용과 자녀 개인비용을 모두 합한 자녀 1인당 지출되는 월평균 양육비는 2009년 100만 9천원으로 2003년 74만 8천원, 2006년 91만 2천원보다 증가를 보였다. 이를 자녀연령별로 살펴보면, 영아 68만 5천원, 유아 81만 6천원, 초등학생 87만 5천원, 중학생 98만 2천원, 고등학

생 115만 4천원, 대학생 141만 9천원이었다(표 13-12 참조).

〈표 13-12〉 자녀연령별 1인당 평균 양육비

(단위: 만원)

특성	가족 공통비용 중 개인자녀 몫	자녀 개인비용	계
2003[1)]	29.4	45.4	74.8
2006[2)]	35.6	55.6	91.2
2009[3)]	41.0	59.9	100.9
자녀연령			
0～ 2세	37.5	31.0	68.5
3～ 5세	36.8	44.8	81.6
6～11세	36.4	51.1	87.5
12～14세	39.1	59.1	98.2
15～17세	42.4	73.0	115.4
18세 이상	52.6	89.3	141.9

자료: <표 13-10>과 동일

3. 아동의 출생~대학졸업까지의 총비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에 대한 의견은 '대학 졸업 때까지'가 가장 많았다. 따라서 출생 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의 자녀양육비를 추정하였으며, 이는 <표 13-13>에 제시된다.

영아기(0~2세) 3년간 지출되는 비용은 2,466만원이었고, 유아기(3~5세) 3년간 지출되는 비용은 2,937만 6천원이었다. 따라서 취학전 아동 1인당 5,403만 6천원이 지출되었다. 초등학교 학생(5~11세)에게 6년간 지출되는 비용은 6,300만원이었고, 중학교 학생(12~14세)에게 3년간 지출되는 비용은 3,535만 2천원이었으며, 고등학교 학생(15~17세)에게 3년간 지출되는 비용은 4,154만 4천원이었다. 따라서 취학아동 1인당 1억 3,989만 6천원이 지출되었다. 4년제 대학생(18~21세)에게 4년간 지출되는 비용은 6,811만 2천원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출생후 대학 졸업시까지 자녀 1인당 지출되는 총비용을 추정하면 2억 6,204만 4천원이었다. 이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전혀 중단이 없이, 또는 재수하지 않고 다닌다는 가정을 한 것

이다. 따라서 휴학, 재수, 어학연수 등을 할 경우에는 이보다 더 많은 양육비를 지출하게 된다.

〈표 13-13〉 자녀 1인당 각 단계별 및 전체 양육비용 추정

자녀의 연령	양육비용	비고
영아기(0~2세)	2,466만원	3년간 총비용
유아기(3~5세)	2,937.6만원	3년간 총비용
초등학교(6~11세)	6,300만원	6년간 총비용
중학교(12~14세)	3,535.2만원	3년간 총비용
고등학교(15~17세)	4,154.4만원	3년간 총비용
대학교(18~21세)	6,811.2만원	4년간 총비용
전체(출생후 대학졸업시까지)	2억 6,204만 4천원	22년간 총비용

자료: 본 조사결과

제3절 결혼비용

결혼은 한 가정이 탄생하는 의식이다. 한국사회는 여전히 결혼을 통하여 출산이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출산 사회에서의 결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 이를 위한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부모가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부담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 연령이 15~64세인 가구 중에서 최근 2007년 이후 결혼이 이루어진 가구를 대상으로 결혼비용을 파악하였다. 전체 1,372건의 결혼이 있었는데, 결혼 1건당 평균 4,492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42.0%인 1,884만 8천원이 결혼당사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결혼비용은 성과 결혼년도를 제외하고, 결혼당사자 부담비용은 성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13-14 참조).

지출된 결혼비용을 결혼당사자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가구주와의 관계를 보면, 가구주의 아들이 7,400만 4천원을 지출하였고, 가구주의 딸은 3,349만 4천원을 지출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가구주 본인의 결혼에 5,943만 6천원을, 가구주의 배우자는 3,209만 4천원을

결혼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비용 중 결혼당사자의 부담비율은 가구주 배우자와 가구주의 딸이 각각 52.9%, 50.9%로 높았으며, 가구주 본인과 가구주의 아들은 각각 38.7%, 29.7%로 낮았다.

〈표 13-14〉 15~64세 가구의 가장 최근 결혼당사자 특성별 결혼비용[1)]

(단위: 명, 만원)

특성	(분석대상수)	총 결혼비용		결혼당사자 부담비용		결혼비용 중 결혼당사자 부담비율
		비용	F값(t값)	비용	F값(t값)	
전체	(1,372)	4,492.0		1,884.8		42.0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본인	(63)	5,943.6		2,300.7		38.7
배우자	(489)	3,209.4		1,696.9		52.9
아들	(352)	7,400.4	51.2***	2,197.0	4.4**	29.7
딸	(435)	3,349.4		1,705.1		50.9
기타[2)]	(34)	4,774.8		2,948.5		61.8
성						
남성	(4178)	7,299.8	(14.7)	2,310.3	(4.1)	31.6
여성	(95369)	3,263.2		1,693.5		51.9
결혼당시 연령						
24세 이하	(129)	3,091.9		834.1		27.0
25~29세	(742)	4,138.8	11.5***	1,673.1	19.2***	40.4
30~34세	(401)	5,611.3		2,552.5		45.5
35세 이상	(101)	4,431.1		2,139.5		48.3
결혼당시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8)	1,472.8		965.1		65.5
고등학교	(307)	2,523.6	40.3***	1,307.6	12.9***	51.8
대학 이상	(1036)	5,161.6		2,081.7		40.3
당시 취업여부						
비취업	(105)	3,133.0		878.1		28.0
취업	(1248)	4,600.3	4.4*	1,981.5	9.8***	43.1
기타	(17)	5,291.7		1,267.4		24.0
결혼연도						
2007	(487)	4,326.8		1,768.5		40.9
2008	(590)	4,617.1	.4	1,807.7	3.4*	39.2
2009	(295)	4,514.5		2,228.9		49.4

주: 1) 결혼비용을 정확히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2) 가구주와의 관계가 기타인 경우에는 가구주의 형제자매가 포함됨.
3) # p<.10 * p<.05, ** p<.005,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결혼비용은 신랑 7,299만 8천원, 신부 3,263만 2천원이 지출되어 신랑측의 비용부담이 약 2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신랑 본인의 결혼비용 부담은 31.6%로 신부 본인의 결혼비용 부담률 51.9%에 비하여 낮았다. 따라서 신랑측 부모의 자녀 결혼비용 부담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결혼당시 연령이 30~34세 연령층이 가장 많은 결혼비용을 지출하였고(5,611만 3천원), 다음은 35세 이상 연령층(4,431만 1천원)이었으며, 24세 이하 젊은 연령층은 가장 적은 3,091만 9천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결혼당시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비용 중 결혼당사자의 부담비율이 높았다. 결혼당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비용은 많이 지출되었는데, 중학교 이하자(1,472만 8천원)와 대학 이상자(5,161만 6천원)의 결혼비용은 큰 격차를 보였다.

결혼당사자가 취업하고 있는 경우 4,600만 3천원의 결혼비용이 지출되었던 반면 비취업자는 3,133만원이 지출되어 차이를 보였다. 또한 2009년 거행된 결혼이 2008년보다 비용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된 결혼비용이 '경제능력에 맞게 적당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최소한으로 검소하게 함' 39.7%이었다. '체면유지를 위해 계획 초과'한 결혼은 9.8%에 불과하였다(표 13-15 참조). 따라서 대부분 무리하지 않고, 적절하게 결혼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체면유지를 위해 계획 초과'한 비율은 읍·면부지역(12.7%)이 동부지역(9.1%)보다 높았고, 가구소득이 100만원대(12.2%)의 경우가 높았다.

응답자의 성별로는 여성응답자(9.4%)보다는 남성응답자(14.3%)가 '체면유지를 위해 계획 초과'하여 결혼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견해는 40세 이상 연령층이(40대 12.5%, 50대 이상 12.0%) 많았다. 또한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하자(11.8%)가 대학 이상 학력자(5.8%)보다 '체면유지를 위해 계획 초과'하였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13-15〉 15~64세 기혼가구의 응답자 특성별 가정의 경제능력 대비 결혼비용 정도

(단위: %, 명)

특성	체면유지를 위해 계획초과	경제능력에 맞게 적당했음	최소한으로 검소하게 함	기타	계(수)	χ^2
전체	9.8	50.4	39.7	0.1	100.0(1,377)	
지역						
동부	9.1	52.6	38.2	0.1	100.0(1,093)	11.3*
읍·면부	12.7	41.9	45.4	-	100.0(284)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1.2	34.4	53.6	0.8	100.0(125)	
100~199만원	12.2	42.9	44.9	-	100.0(303)	
200~299만원	10.1	49.6	40.3	-	100.0(377)	
300만원 이상	8.2	58.4	33.4	-	100.0(572)	
응답자 성						
남성	14.3	51.6	34.1	-	100.0(126)	
여성	9.4	50.3	40.2	0.1	100.0(1,250)	
응답자 연령						
29세 이하	7.1	56.6	36.3	-	100.0(311)	
30~39세	5.5	58.7	35.7	-	100.0(235)	
40~49세	12.5	35.2	52.3	-	100.0(88)	
50세 이상	12.0	47.0	40.8	0.1	100.0(742)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1.8	40.6	47.6	-	100.0(510)	
고등학교	11.8	50.6	37.3	0.2	100.0(415)	
대학 이상	5.8	61.4	32.8	-	100.0(451)	

주: * $p<.05$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결혼비용이 부담스러웠다는 1순위 항목은 신혼주택 비용으로 30.2%를 차지하였고, 다음은 신혼살림 18.5%, 배우자측 예단 14.1%, 결혼식 비용 6.4% 등의 순이었다. 2순위 항목에서는 결혼식 비용이 1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신혼살림 18.6%, 배우자 예물 18.3%, 배우자측 예단 16.9% 등의 순으로 부담스러운 결혼비용이라고 제시하였다(표 13-16 참조).

〈표 13-16〉 15~64세 기혼가구의 결혼관련 비용중 부담스러운 항목

(단위: %, 명)

요건	1순위	2순위
부담스럽지 않았음	25.2	1.6
결혼식비	6.4	19.0
신혼여행비	1.5	5.3
배우자 예물	3.4	18.3
배우자측 예단	14.1	16.9
신혼살림	18.5	18.6
신혼주택 비용	30.2	4.0
함값	-	1.2
결혼중개(중매) 수수료	0.4	15.0
기타	0.3	0.2
계(수)	100.0(1,380)	100.0(965)

자료: 본 조사결과

제4절 자녀양육태도와 양육비 및 결혼비용의 시사점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양육 비용을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면서도 자녀를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가족문화에서 변화가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지나치게 자녀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자녀들도 부모에게 기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의 이러한 자녀양육에 대한 높은 책임의식은 자녀양육비의 과다한 지출로 나타나고 있었다. 출생후 대학 졸업시까지 자녀 1인당 지출되는 총비용을 추정하면 2억 6,204만 4천원이나 되었다는 사실은 자녀양육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케 한다.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부모와 자녀 스스로 불필요한 지출을 감소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교육비와 교통통신비의 지출이 과다한 점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녀양육에 대한 올바른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를 기본으로 부모의 특성과 자녀의 특성에 따라 조율이 된다면 자녀양육 부담의 완화와 함께 출산율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향은 결혼비용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자녀결혼 비용을 부모가 부담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결국 한국부모는 자녀의 출생에서부터 결혼할 때까지 약 28~30년간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는 구조인 것이기 때문에 소자녀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저출산사회가 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특히, 결혼비용 중 주거비용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사실로 미루어보다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이 정책적으로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아울러 신혼살림과 배우자측 예단을 위한 지출이 부담스럽다고 하였는데, 이는 결혼당사자와 양가 집안의 합의에 의하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4

출산 및 가족정책 욕구

제14장 출산 및 가족정책 욕구

제1절 출산정책

1. 혼인정책

국정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야기하는데 결혼연령 상승, 혼인 및 출산기피 등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미혼남녀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자아성취욕구의 상승, 그리고 결혼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비롯하여 양성불평등적인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형성은 결혼을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요인들로 작용한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소득 및 고용 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자녀양육 부담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따라서 결혼을 부담스러워 하거나 자아욕구 충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가치관의 변화와 결혼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결혼을 하지 못하는 미혼남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우리 사회에 자리잡고 있는 사회규범은 미혼남녀가 결혼을 통하여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보편적인 가치관이므로 결혼은 출산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음이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5~64세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혼인장려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국가정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표 14-1 참조). 혼인장려정책 1순위로 '청년실업 해소'가 36.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서민층의 주택융자' 18.9%, '혼인 및 출산가치관 확립' 17.8% 등의 순으로 높았다. 그 외에

‘건전혼례 문화 조성’이 7.1%, ‘최저임금의 보장 및 인상’ 6.3%, ‘결혼자금 융자 확대’ 5.4% 등도 혼인장려를 위해 필요한 국가정책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별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동부와 읍·면부지역 거주자 모두 ‘청년실업 해소’, ‘서민층의 주택융자’, ‘혼인 및 출산 가치관의 확립’을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외에 동부지역 거주자는 ‘건전혼례 문화 조성’, ‘소득공제’, ‘양성평등가치관 확립 및 문화조성’이 많았고, 읍·면부지역 거주자는 ‘최저임금의 보장 및 인상’, ‘결혼자금 융자 확대’가 많았다. 또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서민층의 주택융자’, ‘최저임금의 보장 및 인상’, ‘결혼자금 융자확대’가 많았으며,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혼인 및 출산가치관 확립’, ‘양성평등가치관 확립 및 문화조성’ 등 사회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욕구가 많은 편이었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전체와 비슷하여 ‘청년실업 해소’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민층의 주택융자’, ‘혼인 및 출산가치관의 확립’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전체적으로 ‘청년실업 해소’가 가장 많았고, 20대 후반부터 40대까지는 ‘혼인 및 출산 가치관의 확립’, ‘서민층의 주택융자’가 많았다. 이외에도 20~30대 연령층은 타 연령층에 비해 ‘결혼자금 융자 확대’, ‘소득공제’에 대한 욕구가 많았고, 40대 이상 연령층은 ‘건전혼례 문화조성’에 대한 욕구가 많은 편이어서 응답자 개인적인 욕구가 어느 정도는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교육수준별로는 전체적으로 ‘청년실업 해소’가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이하 학력소지자는 ‘서민층의 주택융자’에 대한 응답이 많았으며, 이외에도 ‘최저임금의 보장 및 인상’, ‘결혼자금 융자 확대’, ‘건전혼례 문화 조성’ 등도 필요한 정책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 이상 학력소지자는 ‘혼인 및 출산가치관의 확립’이 우선순위가 높았고, 이외에도 ‘소득공제’와 ‘양성평등가치관 확립 및 문화조성’에 대한 정책 욕구가 다소 많았다.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와 비취업자 모두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표 14-1〉 15~64세 기혼가구의 혼인장려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정책 분포(1순위)

(단위: %, 명)

특성	1. 혼인 및 출산가치관 확립 2. 건전혼례 문화 조성 3. 모기지제도 확대 4. 서민층의 주택융자 5. 청년실업 해소 6. 최저임금의 보장 및 인상 7. 결혼자금 융자 확대 8. 소득공제(결혼비용, 주택자금) 9. 양성평등가치관 확립 및 문화조성 10. 기타										계(수)	χ^2
	1	2	3	4	5	6	7	8	9	10		
전체	17.8	7.1	1.7	18.9	36.1	6.3	5.4	2.9	3.7	0.2	100.0(10,678)	
지역												
동부	18.1	7.1	1.8	18.7	36.0	6.2	5.1	3.0	3.9	0.2	100.0(8,900)	19.7*
읍·면부	16.3	7.0	1.4	19.7	36.6	6.9	6.6	2.6	2.8	0.1	100.0(1,778)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1.1	7.6	1.9	21.7	39.2	7.8	5.9	2.4	2.3	-	100.0(874)	
100~199만원	12.7	6.8	1.3	24.3	36.6	7.4	5.9	2.8	2.2	0.1	100.0(1,885)	
200~299만원	16.3	5.5	1.4	20.8	35.0	7.7	6.5	3.5	3.1	0.1	100.0(2,340)	311.4***
300~399만원	18.9	7.9	1.6	18.2	34.9	5.6	5.7	2.5	4.4	0.2	100.0(2,243)	
400~499만원	21.3	7.7	2.2	14.9	35.3	5.4	5.6	3.1	4.3	0.2	100.0(1,337)	
500만원 이상	23.3	7.8	2.1	13.7	37.6	4.5	2.7	2.9	5.1	0.4	100.0(1,984)	
응답자 성												
남성	17.3	6.7	1.4	20.1	39.4	6.9	4.1	1.7	2.3	0.2	100.0(902)	18.1*
여성	17.8	7.1	1.7	18.8	35.8	6.3	5.5	3.0	3.8	0.2	100.0(9,778)	
응답자 연령												
24세 이하	13.6	6.1	-	13.6	39.4	6.1	13.6	7.6	-	-	100.0(66)	
25~29세	20.1	4.7	2.0	25.0	20.8	8.2	9.8	5.8	3.6	-	100.0(552)	
30~34세	22.1	4.9	1.7	22.1	25.6	7.0	7.1	4.6	4.7	0.2	100.0(1,120)	
35~39세	21.1	5.6	1.8	18.0	31.3	7.5	5.6	2.9	5.9	0.2	100.0(1,705)	426.2***
40~44세	19.7	7.5	1.2	18.9	33.0	6.7	5.3	2.8	4.8	0.1	100.0(1,710)	
45~49세	17.6	8.3	2.1	17.2	39.6	5.2	3.5	2.6	3.6	0.3	100.0(1,704)	
50세 이상	14.1	8.0	1.7	18.2	43.2	5.6	4.8	2.1	2.0	0.2	100.0(3,823)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0.6	7.0	1.7	21.0	42.7	6.5	5.9	2.7	1.6	0.2	100.0(2,883)	366.1***
고등학교	17.9	7.3	1.8	19.6	35.6	7.0	4.9	2.8	3.1	-	100.0(4,613)	
대학 이상	24.0	6.9	1.5	16.0	30.8	5.2	5.5	3.3	6.4	0.3	100.0(3,181)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	16.8	7.2	1.6	19.6	37.0	6.1	5.1	2.9	3.5	0.2	100.0(5,457)	16.2#
비취업	18.8	7.0	1.8	18.1	35.1	6.6	5.7	2.9	3.9	0.2	100.0(5,221)	

주: # p<.10, * p<.05, *** p<.001(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정리하면 혼인장려를 위해 국가에서 제공되어야 할 정책으로 '청년실업 해소'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민층의 주택융자', '혼인 및 출산가치관의 확립'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아서 국가적 차원에서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거시경제적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혼인 및 출산가치관 확립', '서민층을 위한 주택융자 정책' 등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표 14-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혼인장려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정책의 2순위로는 '최저임금의 보장 및 인상'이 20.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청년실업 해소' 19.7%, '서민층 주택 융자' 14.9%, '혼인 및 출산가치관 확립'이 10.4%의 순으로 많았다. 이외에도 10% 미만이나 '결혼자금 융자 확대'(9.4%), '양성평등 가치관 확립 및 문화조성(7.4%)' 등도 필요한 정책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별로는 성별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는 '서민층 주택 융자', '최저임금의 보장 및 인상', '결혼자금 융자 확대' 등이 많았고,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는 '혼인 및 출산가치관 확립', '건전혼례문화 조성', '모기지제도 확대', '양성평등가치관 확립 및 문화조성' 등이 많았다. 또한 젊은 연령층은 '최저임금의 보장 및 인상', '서민층 주택 융자', '소득공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았고, 고 연령층은 '건전혼례문화 조성', '모기지제도 확대', '청년실업 해소' 등을 희망하였다. 그리고 30대와 40대 연령층에서는 '혼인 및 출산가치관 확립', '양성평등가치관 확립 및 문화조성'이 필요한 정책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가구소득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혼인장려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정책의 1순위와 2순위를 고려하면, 국가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은 '청년실업 해소', '혼인 및 출산가치관 확립', '서민층 주택 융자', '최저임금의 보장 및 인상', '양성평등가치관 확립 및 문화조성' 등으로 정리된다. 또한 우선순위는 낮지만 '결혼비용 및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결혼자금 융자 확대' 등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표 14-2〉 15~64세 기혼가구의 혼인장려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정책 분포(2순위)

(단위: %, 명)

특성	1. 혼인 및 출산가치관 확립 2. 건전혼례 문화 조성 3. 모기지제도 확대 4. 서민층의 주택융자 5. 청년실업 해소 6. 최저임금의 보장 및 인상 7. 결혼자금 융자 확대 8. 소득공제(결혼비용, 주택자금) 9. 양성평등가치관 확립 및 문화조성 10. 기타										계(수)	χ^2
	1	2	3	4	5	6	7	8	9	10		
전체	10.4	7.1	3.7	14.9	19.7	20.7	9.4	6.7	7.4	0.1	100.0(10,564)	
지역												
동부	10.4	7.0	4.1	14.7	19.9	20.4	8.9	6.7	7.8	0.1	100.0(8,818)	52.8***
읍·면부	10.4	7.3	1.7	15.8	18.9	22.2	11.7	6.5	5.3	0.1	100.0(1,746)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8.4	6.6	2.2	16.9	19.2	26.1	11.2	5.1	4.4	-	100.0(850)	
100~199만원	8.6	6.1	3.2	15.8	21.4	23.2	11.2	5.8	4.7	0.1	100.0(1,857)	
200~299만원	9.3	7.4	3.5	16.8	19.1	21.0	9.8	7.4	5.7	-	100.0(2,330)	225.1***
300~399만원	11.2	6.9	3.6	13.5	19.7	19.6	9.2	7.8	8.3	0.1	100.0(2,223)	
400~499만원	12.1	7.3	4.7	13.8	19.0	20.3	6.8	7.2	8.7	0.1	100.0(1,327)	
500만원 이상	12.2	7.7	4.7	13.1	19.7	17.0	8.2	5.8	11.6	0.1	100.0(1,963)	
응답자 성												
남성	8.7	8.0	4.4	14.7	21.7	19.1	11.2	6.0	6.3	-	100.0(886)	14.4
여성	10.5	7.0	3.7	14.9	19.5	20.8	9.2	6.7	7.5	0.1	100.0(9,678)	
응답자 연령												
24세 이하	12.3	3.1	1.5	23.1	15.4	26.2	4.6	12.3	1.5	-	100.0(65)	
25~29세	7.8	6.9	2.2	14.2	17.5	20.2	12.9	13.7	4.6	-	100.0(549)	
30~34세	10.6	5.8	4.1	13.3	19.1	18.0	11.8	9.1	8.1	0.1	100.0(1,110)	
35~39세	13.5	7.0	3.1	15.2	15.8	19.4	8.3	7.7	9.9	-	100.0(1,691)	290.5***
40~44세	10.5	7.6	3.9	12.3	18.4	20.1	9.3	6.4	11.5	0.1	100.0(1,703)	
45~49세	10.9	7.1	4.0	14.3	22.2	20.7	7.9	5.5	7.3	0.1	100.0(1,691)	
50세 이상	8.9	7.3	4.0	16.6	21.5	22.2	9.4	5.1	4.9	0.1	100.0(3,759)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7.7	6.2	3.1	17.6	21.6	24.4	11.3	4.7	3.4	0.1	100.0(2,827)	313.7***
고등학교	10.5	7.4	4.0	14.7	18.8	22.0	8.5	6.9	7.2	-	100.0(4,581)	
대학 이상	12.7	7.5	4.0	12.7	19.3	15.4	8.9	8.1	11.4	0.1	100.0(3,153)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	10.5	6.9	3.5	14.7	20.1	21.0	9.5	5.9	7.9	0.1	100.0(5,397)	16.8#
비취업	10.2	7.3	4.0	15.0	19.3	20.3	9.2	7.5	7.0	0.1	100.0(5,169)	

주: # p<.10, *** p<.001(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2. 출산정책

저출산시대에 대응하는 정책의 수립은 저출산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아실현 욕구를 뒷받침하는 가족·사회구조 및 인식의 변화

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으로 다양하고 질 좋은 육아인프라 부족, 자녀양육 비용 부담의 증가들이 해당된다. 이런 맥락에서 자녀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과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적 여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자녀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

15~64세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의 1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4-3 참조).

우선순위로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이 18.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아동 양육수당 지급' 12.4%, '영유아 보육비 지원' 12.0%,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영'이 11.1% 순으로 높았다. 그 외에도 '임신·출산에 드는 비용 지원', '다자녀 가정 학비 지원', '아동의 방과후 교육 지원', '출산전후 및 육아시 직장여성의 휴가 제공' 등도 필요한 사회적 지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동부지역 거주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영',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이 많았고, 읍·면부지역 거주자는 '아동 양육수당 지급', '영유아보육비 지원 지급', '다자녀 가정 학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많았다.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는 '임신·출산에 드는 비용 지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 '다자녀 가정을 위해 아파트·국민주택 등 우선분양', '아동 양육수당 지급', '다자녀 가정 학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희망하였다.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는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영',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에 대한 욕구가 많았다. 남성은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다자녀 가정 학비 지원'이 많았고, 여성은 '임신·출산에 드는 비용 지원',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영', '아동 양육수당 지급'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았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비 지원'은 남녀 모두 동일한 비율을 보였다.

젊은 연령층은 '임신·출산에 드는 비용 지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 '아동

양육수당 지급'이 많았고, 고 연령층은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다자녀 가정 학비 지원' 등을 희망하였다. 그리고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 연령층은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저학력층은 '영유아 보육비 지원', '아동 양육수당 지급', '다자녀 가정 학비 지원'이 많았고, 고학력층은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영',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영', '아동의 방과후 교육 지원', '다자녀 가정 학비 지원'이 많았다. 반면, 비취업자는 '임신·출산에 드는 비용 지원',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아동 양육수당 지급' 등 다양한 욕구를 보였다.

정리하면, 자녀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은 양육시설 등의 인프라 확충, 보육비용, 양육수당 및 임신·출산 비용 등의 현금 지원,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제도, 아동의 방과후 서비스 제공,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근무시간제도의 탄력적 운영 등으로 집약된다. 그리고 사회적 지원에 대한 욕구는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별로 다양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자녀출산·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은 대상 집단의 지역, 소득계층, 연령, 취업 여부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책효과를 제고해야 될 것이다.

〈표 14-3〉 15~64세 기혼가구의 자녀 출산·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1순위)

(단위: %, 명)

특성	1. 임신·출산에 드는 비용 지원 2. 불임부부의 치료 지원 3. 태아나 임산부의 건강 지원 4. 출산전·후 및 육아시 직장여성에 대한 휴가 제공 5. 자녀가 아픈 경우 휴가 제공 6. 자녀양육을 위해 아버지에게 휴가 제공 7.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시차별 출퇴근, 시간제 근무 등) 8.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의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시차별 출퇴근, 시간제 근무 등) 9.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10. 영유아 보육비 지원 11. 다자녀가정을 위해 아파트·국민임대주택 등 우선분양 12. 직장여성 고용차별 해소 13. 아동 양육수당 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전체	8.2	2.3	1.6	5.2	2.6	0.6	11.1	0.7	18.6	12.0	4.6	1.6	12.4
지역													
동부	8.1	2.4	1.5	5.3	2.7	0.6	11.8	0.7	19.4	11.8	4.1	1.7	12.1
읍·면부	8.5	1.7	2.5	4.9	2.5	0.8	7.4	0.7	15.0	13.5	6.7	1.2	13.8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8.5	1.6	1.4	3.2	1.9	0.1	5.7	0.3	18.0	14.4	7.0	0.8	16.1
100~199만원	9.7	2.3	1.2	3.7	2.9	0.5	6.8	0.5	16.5	13.8	5.8	1.2	14.8
200~299만원	9.8	2.1	2.2	4.9	2.1	0.5	9.0	0.8	15.4	13.9	6.1	1.6	13.6
300~399만원	8.3	2.8	1.5	5.4	2.9	0.7	11.1	0.6	20.6	12.2	3.7	1.5	11.7
400~499만원	6.8	1.7	1.9	5.4	3.4	0.8	14.2	0.9	19.4	9.8	3.8	1.9	10.7
500만원 이상	5.6	2.7	1.5	7.4	2.7	1.1	18.0	0.7	22.2	8.7	2.0	1.9	8.8
응답자 성													
남성	7.2	2.2	1.3	5.0	2.5	1.1	7.3	1.4	20.5	12.0	7.2	1.0	11.6
여성	8.3	2.3	1.7	5.2	2.6	0.6	11.5	0.6	18.5	12.0	4.3	1.6	12.4
응답자 연령													
24세 이하	26.6	-	1.6	4.7	1.6	3.1	6.3	1.6	4.7	25.0	3.1	-	17.2
25~29세	19.8	0.9	2.0	4.5	3.1	2.0	12.2	0.9	13.6	16.0	2.4	1.8	13.6
30~34세	11.9	2.9	1.9	4.0	2.6	0.7	10.5	1.3	20.2	14.7	2.2	0.9	14.4
35~39세	7.5	2.6	1.6	3.7	2.2	0.6	12.2	0.5	18.4	11.5	3.3	1.3	13.6
40~44세	5.7	3.4	1.2	5.9	2.7	0.9	12.5	0.6	18.1	7.5	4.6	1.5	10.8
45~49세	6.3	2.5	1.3	6.5	3.2	0.7	11.1	0.9	18.8	9.6	5.3	2.8	11.3
50세 이상	7.4	1.6	1.8	5.4	2.6	0.3	10.1	0.5	19.5	13.8	5.8	1.4	12.1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7.9	2.1	1.6	3.6	3.0	0.3	7.0	0.4	17.4	15.1	6.7	1.4	14.0
고등학교	8.4	2.4	1.6	5.3	2.7	0.5	10.7	0.5	17.7	11.2	5.0	1.8	12.0
대학 이상	8.1	2.4	1.8	6.5	2.2	1.1	15.3	1.2	21.1	10.5	2.0	1.4	11.4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	6.6	2.2	1.4	5.6	3.2	0.6	12.0	0.6	18.1	11.2	4.9	1.9	11.6
비취업	9.8	2.4	1.9	4.8	2.1	0.7	10.1	0.8	19.2	12.9	4.2	1.3	13.1

〈표 14-3〉 계속

(단위: %, 명)

특성	14.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15.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경감 16. 아동관련 지출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17. 아동의 방과후 교육 지원 18. 다자녀 실직가정 취업지원 19. 다자녀 가정 학비 지원 20. 기타							계(수)	χ^2
	14	15	16	17	18	19	20		
전체	1.6	0.6	1.5	5.2	2.6	6.3	0.7	100.0(10,681)	
지역									
동부	1.6	0.5	1.6	5.4	2.4	5.8	0.5	100.0(8,902)	138.2***
읍·면부	1.2	0.8	1.2	4.0	3.5	8.7	1.4	100.0(1,783)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0	0.3	0.5	2.5	5.6	10.0	1.0	100.0(874)	
100~199만원	1.5	0.4	1.3	5.2	4.0	7.0	1.0	100.0(1,888)	
200~299만원	1.5	0.7	1.3	4.9	2.6	6.5	0.5	100.0(2,338)	615.5***
300~399만원	1.6	0.6	1.6	5.7	1.9	5.5	0.2	100.0(2,245)	
400~499만원	2.5	0.6	1.6	6.0	1.9	6.1	0.6	100.0(1,338)	
500만원 이상	1.4	0.7	2.3	5.3	1.3	4.8	1.1	100.0(1,987)	
응답자 성									
남성	1.2	0.6	0.4	3.4	4.3	8.5	1.0	100.0(902)	80.9***
여성	1.6	0.6	1.6	5.3	2.4	6.1	0.7	100.0(9,777)	
응답자 연령									
24세 이하	-	-	-	1.6	-	1.6	1.6	100.0(64)	
25~29세	0.5	0.2	2.5	1.1	0.4	1.6	0.9	100.0(551)	
30~34세	0.7	0.4	2.4	3.8	1.0	3.1	0.4	100.0(1,119)	779.3***
35~39세	2.1	0.8	2.3	8.5	1.2	5.5	0.7	100.0(1,704)	
40~44세	2.6	0.8	2.0	9.2	2.5	6.7	0.7	100.0(1,709)	
45~49세	1.5	0.9	0.9	5.4	2.9	7.6	0.5	100.0(1,706)	
50세 이상	1.4	0.3	0.8	2.8	4.0	7.6	0.8	100.0(3,823)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1	0.4	0.6	3.1	4.6	8.8	0.8	100.0(2,884)	509.1***
고등학교	2.1	0.7	1.7	6.4	2.1	6.7	0.6	100.0(4,615)	
대학 이상	1.2	0.6	2.2	5.2	1.5	3.5	0.7	100.0(3,180)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	1.6	0.6	1.2	6.0	2.6	7.2	0.8	100.0(5,460)	127.5***
비취업	1.5	0.5	1.9	4.3	2.6	5.3	0.5	100.0(5,225)	

주: 1) 기타에는 불임부부의 치료 지원, 태아나 임산부의 건강 지원, 자녀가 아픈 경우 휴가 제공, 자녀양육을 위해 아버지에게 휴가 제공,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의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다자녀가정을 위해 아파트·국민임대주택 등 우선분양, 직장여성 고용차별 해소,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경감, 아동관련 지출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다자녀 실직가정 취업지원 등이 포함됨; 2)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표 14-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의 2순위로는 '아동양육수당지급'이 1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아동의 방과후 교육 지원' 12.6%, '영유아 보육비 지원' 12.4%,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11.9%의 순으로 많았다. 이외에도 '다자녀 가정 학비 지원', '여성의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등도 필요한 사회적 지원으로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지역, 성 및 취업여부별로는 전체와 비슷하였다.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는 '영유아 보육비 지원', '아동양육수당지급', '다자녀 가정 학비 지원' 등을 희망하였고,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는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이 많았다. 젊은 연령층은 '영유아 보육비 지원'이 많았고, 30대와 40대 연령층은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과 '아동의 방과후 교육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가구소득과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의 1순위와 2순위를 고려하면, '아동양육수당 지급', '영유아 보육비 지원', '아동의 방과후 교육 지원',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등으로 정리된다. 또한 우선순위는 낮지만 '임신·출산에 드는 비용 지원', '다자녀 가정 대상의 다양한 지원' 등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표 14-4〉 15~64세 기혼가구의 자녀 출산·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2순위)

(단위: %, 명)

특성	1. 임신·출산에 드는 비용 지원 2. 불임부부의 치료 지원 3. 태아나 임산부의 건강 지원 4. 출산전·후 및 육아시 직장여성에 대한 휴가 제공 5. 자녀가 아픈 경우 휴가 제공 6. 자녀양육을 위해 아버지에게 휴가 제공 7.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시차별 출퇴근, 시간제 근무 등) 8.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의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시차별 출퇴근, 시간제 근무 등) 9.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10. 영유아 보육비 지원 11. 다자녀가정을 위해 아파트·국민임대주택 등 우선분양 12. 직장여성 고용차별 해소 13. 아동 양육수당 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전체	3.5	1.4	1.2	4.0	2.9	1.3	7.4	0.9	11.9	12.4	4.5	3.1	12.9
지역													
동부	3.5	1.5	1.2	3.8	3.0	1.2	7.7	0.9	12.2	12.1	4.3	3.2	13.0
읍·면부	3.5	1.3	1.1	4.8	2.5	1.9	5.9	0.7	10.6	13.6	5.8	2.6	12.9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3.1	1.2	1.6	2.7	2.3	0.7	5.1	-	9.4	15.7	6.4	3.6	16.1
100~199만원	3.9	1.4	1.1	2.8	2.8	0.7	5.1	0.5	8.6	15.2	5.8	2.6	15.8
200~299만원	3.4	0.8	1.0	3.5	3.1	1.5	6.8	0.8	11.1	14.2	4.8	2.3	12.7
300~399만원	4.1	1.8	1.3	4.6	2.6	1.7	7.9	1.3	12.2	11.1	4.2	2.6	11.6
400~499만원	3.3	1.6	0.8	3.9	2.7	1.6	9.6	1.2	11.7	9.3	4.1	3.3	12.6
500만원 이상	2.8	1.7	1.3	5.7	3.2	1.2	9.0	1.2	16.9	9.6	2.9	4.8	11.1
응답자 성													
남성	4.5	1.3	1.3	3.1	2.4	2.1	3.6	0.6	11.2	11.4	5.9	2.4	15.7
여성	3.4	1.5	1.2	4.1	2.9	1.2	7.7	0.9	12.0	12.5	4.4	3.2	12.7
응답자 연령													
24세 이하	12.5	3.1	1.6	-	7.8	1.6	3.1	1.6	6.3	20.3	3.1	1.6	10.9
25~29세	7.3	0.7	2.9	5.1	3.8	2.7	7.8	1.5	12.5	18.9	2.7	0.9	13.2
30~34세	4.2	1.3	0.9	3.7	3.5	2.2	9.0	1.2	13.9	14.4	3.6	2.1	11.9
35~39세	2.6	2.2	1.1	3.3	2.5	1.4	8.1	1.4	10.8	10.8	2.5	2.6	12.2
40~44세	2.8	1.2	1.1	3.9	3.6	1.1	8.0	0.6	10.9	7.7	4.9	3.3	11.2
45~49세	2.8	1.9	0.9	4.5	2.6	0.8	8.4	1.0	11.2	10.2	5.1	4.0	11.5
50세 이상	3.5	1.1	1.2	4.1	2.5	1.1	5.8	0.6	12.6	14.5	5.6	3.4	15.0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2	0.8	1.2	3.3	2.8	0.5	5.1	0.3	10.3	15.6	6.6	2.8	15.5
고등학교	3.6	1.7	1.0	3.7	2.9	1.4	7.3	1.0	11.0	11.3	4.6	3.4	12.6
대학 이상	3.6	1.6	1.4	5.0	3.0	1.8	9.5	1.3	14.7	11.1	2.5	3.0	11.1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	3.2	1.5	0.9	4.2	3.2	1.1	7.6	1.1	11.0	11.3	5.5	3.0	12.8
비취업	3.7	1.4	1.5	3.8	2.6	1.5	7.1	0.7	12.9	13.5	3.6	3.2	13.1

〈표 14-4〉 계속

(단위: %, 명)

특성	14.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15.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경감 16. 아동관련 지출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17. 아동의 방과후 교육 지원 18. 다자녀 실직가정 취업지원 19. 다자녀 가정 학비 지원 20. 기타							계(수)	χ^2
	14	15	16	17	18	19	20		
전체	2.2	1.9	3.6	12.6	3.5	8.4	0.4	100.0(10,605)	
지역									
동부	2.3	1.8	3.6	13.4	3.2	7.8	0.4	100.0(8,850)	97.3***
읍·면부	1.7	1.9	3.6	8.7	5.0	11.4	0.5	100.0(1,755)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4	1.4	2.2	10.7	5.0	10.7	0.5	100.0(858)	
100~199만원	1.8	2.2	2.5	11.4	4.8	10.5	0.4	100.0(1,870)	
200~299만원	3.2	1.7	3.3	12.9	4.1	8.5	0.3	100.0(2,325)	451.8***
300~399만원	2.1	1.8	3.5	14.7	3.1	7.3	0.4	100.0(2,232)	
400~499만원	2.1	1.9	5.5	13.7	3.4	7.6	0.2	100.0(1,337)	
500만원 이상	1.9	2.0	4.6	11.1	1.5	6.9	0.6	100.0(1,972)	
응답자 성									
남성	1.8	1.9	2.6	13.2	4.4	10.2	0.2	100.0(891)	55.0***
여성	2.2	1.9	3.7	12.5	3.4	8.2	0.4	100.0(9,714)	
응답자 연령									
24세 이하	-	1.6	1.6	6.3	6.3	10.9	-	100.0(64)	
25~29세	1.3	1.8	5.6	6.9	0.7	3.6	-	100.0(551)	
30~34세	1.5	1.8	4.8	12.0	1.6	5.8	0.4	100.0(1,117)	647.4***
35~39세	2.9	1.7	6.3	17.6	1.5	8.0	0.4	100.0(1,701)	
40~44세	3.6	2.5	4.4	15.2	3.3	10.0	0.5	100.0(1,703)	
45~49세	2.5	2.5	3.4	12.7	4.9	8.7	0.5	100.0(1,699)	
50세 이상	1.5	1.4	1.6	10.2	4.9	9.1	0.4	100.0(3,773)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8	1.7	1.6	9.7	5.9	10.8	0.4	100.0(2,844)	486.6***
고등학교	2.4	2.0	3.6	14.2	3.5	8.6	0.4	100.0(4,595)	
대학 이상	2.3	1.8	5.5	12.9	1.5	5.9	0.5	100.0(3,165)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	2.3	2.0	3.8	12.8	3.9	8.6	0.4	100.0(5,406)	70.1***
비취업	2.1	1.8	3.5	12.4	3.1	8.2	0.4	100.0(5,200)	

주: 1) 기타에는 불임부부의 치료 지원, 태아나 임산부의 건강 지원, 자녀가 아픈 경우 휴가 제공, 자녀양육을 위해 아버지에게 휴가 제공,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의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다자녀가정을 위해 아파트·국민임대주택 등 우선분양, 직장여성 고용차별 해소,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경감, 아동관련 지출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다자녀 실직가정 취업지원 등이 포함됨; 2)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나.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 여건

15~64세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 여건 1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4-5 참조).

바람직한 사회 여건으로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이 2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교육비 경감' 21.2%, '공교육 강화' 12.3%, '경기 활성화(고용안정)' 11.6%의 순으로 많았다. 또한 10% 미만이나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도 8.5%가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동부지역 거주자는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읍·면부지역 거주자는 '학벌 위주 사회문화 타파'와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바람직한 사회 여건으로 응답하였다.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는 '경기 활성화(고용안정)'를,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는 '학벌 위주 사회문화 타파'와 '공교육 강화'를 희망하였다. 남성은 '학벌 위주 사회문화 타파'와 '경기 활성화(고용안정)'의 욕구를 보인 반면, 여성은 '사교육비 경감',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등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았다. 젊은 연령층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확립',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등을 희망하였고, 고 연령층은 '지나치게 치열한 경쟁적 사회 지양'을 바람직한 사회여건으로 응답하였다. 저학력소지자는 '학벌 위주 사회문화 타파'와 '경기 활성화(고용안정)'의 응답이 많았고, 고학력소지자는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이 많았다. 취업자는 '학벌 위주 사회문화 타파'와 '경기활성화(고용안정)'를, 비취업자는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희망하였다.

따라서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 여건은 '양육환경의 안전성 보장',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 경감', '경기 활성화', '보육·육아지원 시설의 질적 제고' 등으로 정리된다. 그리고 바람직한 사회 여건에 대한 욕구는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출산정책은 대상별로 차별화되어 설계되고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14-5〉 15~64세 기혼가구의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여건 분포(1순위)

(단위: %, 명)

특성	1. 양성평등 구현 2. 학벌 위주 사회문화 타파 3. 공교육 강화 4. 사교육비 경감 5. 경기 활성화(고용안정) 6.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확립 7.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 해소 8.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9.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10. 복지수준의 향상 11. 지나치게 치열한 경쟁적 사회 지양											계(수)	χ^2
	1	2	3	4	5	6	7	8	9	10	11		
전체	2.4	9.7	12.3	21.2	11.6	2.2	0.9	21.7	8.5	5.2	4.2	100.0(10,680)	
지역													
동부	2.4	9.4	12.7	21.5	11.7	2.2	0.9	21.3	8.3	5.4	4.2	100.0(8,899)	22.4*
읍·면부	2.5	11.3	10.7	19.7	11.1	2.0	1.1	23.7	9.3	4.5	4.2	100.0(1,779)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3.5	8.5	11.3	18.6	15.2	0.6	2.6	23.2	6.1	6.3	4.0	100.0(874)	
100~199만원	2.2	9.7	10.1	21.3	15.0	1.6	1.6	21.3	8.3	6.1	2.7	100.0(1,886)	
200~299만원	1.5	9.8	12.5	21.3	12.0	2.2	0.7	21.5	9.7	4.6	4.2	100.0(2,336)	228.1***
300~399만원	2.1	9.6	12.4	22.0	11.7	2.4	0.6	21.9	8.5	4.8	4.1	100.0(2,245)	
400~499만원	2.5	10.7	13.8	21.7	8.4	2.8	0.4	20.5	7.9	6.0	5.2	100.0(1,339)	
500만원 이상	3.6	9.6	13.6	20.9	8.2	2.8	0.3	22.4	8.6	4.6	5.4	100.0(1,984)	
응답자 성													
남성	2.1	12.3	13.2	17.4	17.5	2.2	1.9	15.1	5.7	7.5	5.0	100.0(902)	100.9***
여성	2.5	9.4	12.3	21.6	11.0	2.2	0.8	22.3	8.8	5.0	4.2	100.0(9,777)	
응답자 연령													
24세 이하	1.5	9.1	10.6	6.1	16.7	6.1	3.0	28.8	12.1	4.5	1.5	100.0(66)	
25~29세	1.3	7.1	6.2	21.9	6.7	3.5	0.4	31.0	14.0	6.0	2.0	100.0(549)	
30~34세	1.4	6.4	10.3	20.6	7.1	3.4	0.9	29.7	10.6	6.0	3.6	100.0(1,119)	
35~39세	2.5	8.8	12.7	23.3	7.1	2.0	0.5	25.2	8.2	5.6	4.0	100.0(1,715)	416.4***
40~44세	2.1	10.6	14.7	23.7	10.8	2.0	1.3	19.1	7.4	3.9	4.4	100.0(1,711)	
45~49세	3.2	12.5	13.8	21.1	11.5	2.1	1.1	18.7	6.4	4.8	4.6	100.0(1,707)	
50세 이상	2.7	9.7	12.0	19.5	16.0	1.7	0.8	18.8	8.6	5.5	4.7	100.0(3,823)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4	10.7	12.2	19.9	16.3	1.5	1.1	20.1	7.2	2.1	3.4	100.0(2,885)	
고등학교	2.3	10.4	12.4	22.7	11.1	2.0	1.1	20.5	8.2	5.0	4.2	100.0(4,616)	202.5***
대학 이상	2.7	7.6	12.3	20.3	8.1	3.1	0.4	24.8	10.2	5.6	4.9	100.0(3,180)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	2.3	10.7	11.8	20.6	12.5	2.2	1.1	20.5	8.8	5.1	4.4	100.0(5,458)	40.6***
비취업	2.6	8.6	12.9	21.8	10.7	2.2	0.7	23.0	8.2	5.4	4.0	100.0(5,225)	

주: * $p<.05$, *** $p<.001$(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표 14-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녀를 낳아 안심하고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 여건의 2순위로는 '사교육비 경감'이 1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16.5%,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13.4%, '복지수준의 향상' 12.3%, '지나치게 치열한 경쟁적 사회 지양'이 10.2%의 순으로 많았다. 또한 10% 미만이지만 '공교육 강화'와 '경기 활성화(고용안정)'도 각각 9.6%와 7.2%가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는 '경기 활성화(고용안정)'의 응답이 많았고,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는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지나치게 치열한 경쟁적 사회 지양' 등을 희망하였다. 또한 가구소득이 200~399만원인 경우는 '복지수준의 향상'을, 300~499만원인 경우는 '사교육비 경감'을 바람직한 사회 여건으로 응답하였다. 남성은 '공교육 강화', '지나치게 치열한 경쟁적 사회 지양' 등의 욕구가 많았고, 여성은 '사교육비 경감',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복지수준의 향상' 등을 다양하게 응답하였다. 젊은 연령층은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복지수준의 향상' 등을, 고 연령층은 '공교육 강화' 등을 희망하였다. 중학교 이하의 학력소지자는 '공교육 강화',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등이 많았고, 고등학교 학력소지자는 '사교육비 경감',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바람직한 사회여건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대학 이상 학력소지자는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복지수준의 향상' 등 다양한 욕구를 보였다. 취업자는 '사교육비 경감', '경기활성화(고용안정)', '지나치게 치열한 경쟁적 사회 지양'이 많은 반면, 비취업자는 '공교육 강화',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등을 희망하였다.

따라서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여건의 1순위와 2순위를 고려하면, '사교육비 경감',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보육·육아지원 시설의 질적 제고', '복지수준의 향상', '경쟁적 사회 지양', '공교육 강화' 그리고 '경기 활성화' 등으로 정리된다. 또한 우선순위는 낮지만 '학벌위주의 사회문화 타파' 등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14-6〉 15～64세 기혼가구의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여건 분포(2순위)

(단위: %, 명)

특성	1. 양성평등 구현 2. 학벌 위주 사회문화 타파 3. 공교육 강화 4. 사교육비 경감 5. 경기 활성화(고용안정) 6.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확립 7.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 해소 8.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9.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10. 복지수준의 향상 11. 지나치게 치열한 경쟁적 사회 지양 12. 기타												계(수)	χ^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체	1.2	6.5	9.6	18.5	7.2	2.4	2.2	16.5	13.4	12.3	10.2	0.0	100.0(10,636)	
지역														
동부	1.2	6.3	9.5	18.3	7.0	2.5	2.1	16.9	13.6	12.4	10.1	-	100.0(8,869)	19.3
읍·면부	1.1	7.6	10.0	19.6	7.8	2.0	2.7	14.3	12.3	11.9	10.6	-	100.0(1,766)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4	6.5	11.6	16.1	10.8	2.3	4.6	13.7	12.0	12.9	8.0	-	100.0(861)	
100~199만원	1.0	6.8	8.6	18.4	9.1	2.0	3.6	15.8	15.4	11.6	7.7	-	100.0(1,872)	
200~299만원	1.1	6.6	8.9	18.3	7.1	2.1	2.3	17.0	13.3	13.4	10.0	-	100.0(2,334)	184.3***
300~399만원	0.9	6.4	10.1	19.7	6.4	2.6	1.7	16.5	11.7	12.9	11.1	-	100.0(2,235)	
400~499만원	1.5	7.2	9.3	19.4	6.1	3.1	1.4	17.6	11.8	11.3	11.2	-	100.0(1,337)	
500만원 이상	1.4	6.0	9.7	18.0	5.5	2.8	0.9	17.0	15.1	11.7	12.0	0.1	100.0(1,980)	
응답자 성														
남성	1.1	7.1	10.8	16.9	9.2	2.1	5.2	14.1	11.2	10.8	11.3	-	100.0(899)	59.6***
여성	1.2	6.5	9.4	18.7	7.0	2.5	1.9	16.7	13.6	12.5	10.1	-	100.0(9,736)	
응답자 연령														
24세 이하	-	-	7.8	20.3	4.7	3.1	-	17.2	17.2	18.8	10.9	-	100.0(64)	
25~29세	1.1	6.5	5.1	15.6	6.5	4.2	1.3	16.4	23.3	10.5	9.5	-	100.0(550)	
30~34세	1.3	4.3	6.5	17.8	5.0	2.8	2.0	20.3	17.8	14.2	8.0	-	100.0(1,115)	306.3***
35~39세	1.1	6.2	9.1	20.5	4.6	2.6	1.5	17.9	13.9	12.1	10.4	0.1	100.0(1,700)	
40~44세	1.2	8.2	9.8	19.5	6.1	1.8	2.3	16.1	10.3	11.2	13.5	-	100.0(1,707)	
45~49세	1.5	8.5	10.0	17.0	8.7	2.7	2.9	14.3	9.7	13.0	12.0	-	100.0(1,698)	
50세 이상	1.0	5.9	11.0	18.4	8.9	2.2	2.4	15.9	13.3	12.3	8.7	-	100.0(3,802)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0	6.1	11.3	18.7	10.4	2.0	3.0	14.2	13.4	11.7	8.4	-	100.0(2,862)	155.6***
고등학교	1.2	7.1	8.8	19.5	6.2	2.3	2.2	17.8	12.1	11.8	11.0	-	100.0(4,598)	
대학 이상	1.3	6.2	9.1	16.8	5.6	3.0	1.5	16.6	15.2	13.8	10.8	-	100.0(3,175)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	1.2	6.9	8.9	19.0	7.8	2.1	2.7	15.2	12.9	12.4	10.8	-	100.0(5,431)	48.7***
비취업	1.1	6.2	10.2	17.9	6.5	2.8	1.7	17.8	13.8	12.3	9.6	-	100.0(5,205)	

주: *** p<.001

자료: 본 조사결과

제2절 가족정책

1. 국제결혼에 대한 견해

15~64세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국제결혼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4-7 참조). 국제결혼에 대하여 '찬성'하는 비율은 41.5%였고, '그저 그럼'이 39.0%, '반대'가 19.5%로 국제결혼을 찬성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반대보다 두 배 높았다.

응답자의 특성별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국제결혼의 찬성은 동부지역 거주자가 41.8%로 읍·면부지역 거주자보다 다소 많았고, 국제결혼의 반대는 읍·면부지역이 25.4%로 많았다. 가구소득이 200~299만원인 경우와 500만원 이상인 경우 국제결혼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고, 반대하는 비율은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성별로는 국제결혼에 찬성하는 비율은 남성이 49.7%로 여성보다 9.0%pt 높았고, 반대 여성이 남성보다 1.2%pt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20~30대 연령층에서 찬성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특히 24세 이하 연령층에서 52.3%로 가장 많았다. 반면 국제결혼의 반대는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많았다. 그리고 찬성하는 비율은 대학 이상이 47.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고등학교, 중학교 이하의 순이었다. 그러나 반대하는 비율은 중학교 이하인 경우 28.1%로 가장 높았으며 학력이 낮은 순으로 높았다. 한편, 다문화 가족인 경우는 찬성이 41.0%였고, 다문화가족이 아닌 경우는 86.6%로 나타나서 결혼이민자 본인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의 경우 국제결혼에 대하여 부정적인 성향을 보였다.

정리하면, 국제결혼에 찬성하는 비율은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인 경우, 20~30대 연령층인 경우,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다문화 가족이 아닌 경우에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14-7〉 15~64세 기혼가구의 국제결혼에 대한 견해 분포 및 평균

(단위: %, 명, 점)

특성	국제결혼에 대한 견해 분포					계(수)	χ^2	평균	F값 (T값)
	매우 반대	반대	그저 그럼	찬성	매우 찬성				
전체	1.6	17.9	39.0	40.6	0.9	100.0(10,681)		3.21	
지역									
동부	1.4	16.9	39.8	40.9	0.9	100.0(8,901)	50.6***	3.23	(4.6***)
읍·면부	2.4	23.0	34.8	39.0	0.8	100.0(1,781)		3.13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2.7	22.7	33.9	39.7	0.9	100.0(875)		3.13	
100~199만원	2.0	21.4	36.2	39.3	1.1	100.0(1,886)		3.16	
200~299만원	1.6	18.2	39.1	41.1	1.1	100.0(2,339)	82.7***	3.22	6.5***
300~399만원	1.5	17.1	40.5	40.0	0.8	100.0(2,246)		3.22	
400~499만원	1.0	17.0	41.3	40.2	0.5	100.0(1,338)		3.22	
500만원 이상	1.0	14.0	41.6	42.5	0.9	100.0(1,984)		3.28	
응답자 성									
남성	2.1	16.3	31.9	48.0	1.7	100.0(902)	35.5***	3.31	(3.6***)
여성	1.5	18.1	39.7	39.9	0.8	100.0(9,778)		3.20	
응답자 연령									
24세 이하	1.5	13.8	32.3	50.8	1.5	100.0(65)		3.36	
25~29세	1.1	11.6	46.0	39.3	2.0	100.0(550)		3.30	
30~34세	1.0	9.2	46.5	42.8	0.5	100.0(1,119)	272.0***	3.33	20.1***
35~39세	0.8	11.9	42.2	44.3	0.8	100.0(1,705)		3.32	
40~44세	1.3	15.9	40.6	41.3	0.9	100.0(1,711)		3.24	
45~49세	1.8	21.2	37.3	38.5	1.1	100.0(1,706)		3.16	
50세 이상	2.1	23.7	34.5	38.8	0.8	100.0(3,826)		3.13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9	25.2	33.9	37.1	0.9	100.0(2,884)	271.1***	3.08	90.9***
고등학교	1.3	17.9	41.0	39.0	0.7	100.0(4,615)		3.20	
대학 이상	0.8	11.4	40.7	45.8	1.2	100.0(3,180)		3.35	
응답자 다문화가족여부									
해당	1.6	18.1	39.3	40.2	0.8	100.0(10,584)	159.7***	3.88	(-9.4***)
비해당	1.0	6.2	6.2	76.3	10.3	100.0(97)		3.21	

주: * p<.05, ** p<.01, *** p<.001(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2. 다문화가족정책

<표 14-8>과 같이 15~64세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 결과, ‘언어통역서비스’가 3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녀양육 지원’ 24.9%, ‘취업교육 및 훈련’ 17.9%, ‘경제적 지원’ 15.2%의 순으로 많았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다문화가족여부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동부지역 거주자는 읍·면부지역보다 ‘자녀양육 지원’, ‘의료상담 및 지원’, ‘법률상담 및 지원’이 많은 반면, 읍·면부지역 거주자는 ‘경제적 지원’, ‘언어통역서비스’,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이 많았다. 대체로 소득이 낮은 경우는 ‘경제적 지원’과 ‘언어통역서비스’를,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는 ‘자녀양육 지원’을 희망하였으며, 나머지는 소득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성은 ‘경제적 지원’과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에 대한 욕구가 많았고, 여성은 ‘자녀양육지원’과 ‘언어통역서비스’가 많았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언어통역서비스’,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았으나, 나머지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는 ‘경제적 지원’과 ‘언어통역서비스’를,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는 ‘자녀양육 지원’을 희망하였으나 나머지는 교육수준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리하면, 응답자 모두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로 ‘언어통역서비스’, ‘자녀양육 지원’, ‘취업교육 및 훈련서비스’에 집약되고 있으며, 우선순위는 낮으나 ‘경제적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8〉 15～64세 기혼가구의 다문화가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분포

(단위: %, 명)

특성	경제적 지원	의료 상담 및 지원	법률상담 및 지원	자녀 양육 지원	언어 통역 서비스	취업 교육 및 취업훈련	기타	계(수)	χ^2
전체	15.2	4.8	4.4	24.9	31.7	17.9	1.2	100.0(10,680)	
지역									
동부	14.9	5.0	4.8	25.9	30.4	17.9	1.2	100.0(8,898)	73.1***
읍·면부	16.7	3.8	2.7	19.5	37.9	18.1	1.3	10000(1,781)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7.5	4.1	3.4	20.4	34.8	18.9	0.8	100.0(873)	
100~199만원	16.9	4.3	4.5	22.0	33.6	17.6	1.2	100.0(1,884)	
200~299만원	16.4	5.8	3.5	23.7	31.3	17.8	1.5	100.0(2,338)	87.2***
300~399만원	14.8	4.8	4.7	26.4	31.0	17.4	0.8	100.0(2,245)	
400~499만원	13.5	3.8	4.6	27.3	32.1	17.9	0.7	100.0(1,339)	
500만원 이상	12.8	4.8	5.4	27.3	29.4	18.5	1.8	100.0(1,985)	
응답자 성									
남성	20.6	5.0	5.1	19.6	28.9	19.4	1.5	100.0(904)	35.4***
여성	14.7	4.7	4.4	25.3	31.9	17.8	1.2	100.0(9,779)	
응답자 연령									
24세 이하	24.6	1.5	4.6	27.7	27.7	13.8	-	100.0(65)	
25~29세	15.6	4.7	4.0	30.1	28.5	16.3	0.7	100.0(551)	
30~34세	14.9	5.7	3.8	28.8	29.5	16.3	0.9	100.0(1,118)	
35~39세	14.1	5.5	3.9	29.7	28.2	17.4	1.2	100.0(1,705)	146.1***
40~44세	14.5	4.7	4.9	28.2	29.7	16.6	1.5	100.0(1,711)	
45~49세	14.7	5.6	4.9	23.6	32.8	17.6	0.9	100.0(1,706)	
50세 이상	16.1	3.9	4.5	19.8	34.7	19.6	1.4	100.0(3,825)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7.1	3.9	4.5	18.1	36.5	18.8	1.0	100.0(2,885)	164.2***
고등학교	15.8	5.1	4.2	25.3	31.4	17.0	1.3	100.0(4,616)	
대학 이상	12.6	5.0	4.7	30.3	27.7	18.4	1.3	100.0(3,180)	
응답자 다문화가족여부									
해당	15.1	4.8	4.5	24.8	31.8	17.9	1.2	100.0(10,583)	
비해당	21.4	5.1	2.0	28.6	20.4	20.4	2.0	100.0(98)	

주: *** p<.001(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조사결과

제3절 출산 및 가족정책 욕구의 시사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유래 없이 급격한 속도로 저출산 사회로 전환되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자녀양육의 어려움, 과다한 자녀양육비 등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여성의 자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제도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출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당사자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장에서는 혼인정책, 출산정책, 그리고 가족정책 욕구 등을 검토하였다. 조사결과, 혼인정책으로는 청년실업 해소, 자녀양육비 지원,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강화,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조성,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혼인 및 출산가치관 확립, 서민층 주택 융자, 최저임금의 보장 및 인상, 양성평등가치관 확립 및 문화조성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의 저출산 대책을 포함한 사회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출산정책의 일환인 자녀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으로는 양육시설 등의 인프라 확충, 보육비용, 양육수당 및 임신·출산 비용 등의 현금 지원,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제도, 아동의 방과후 서비스 제공, 근무시간제도의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 여건으로는 양육환경의 안전성 보장,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 경감, 경기 활성화로 가족경제생활의 안정화, 보육·육아지원 시설의 질적 제고 등으로 정리된다. 그리고 사회지원 및 바람직한 사회여건에 대한 욕구는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별로 다양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출산정책은 정책 대상의 거주지역, 소득계층, 연령, 취업여부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책효과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이동의 증가, 혼인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화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내국인의 의견과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제결혼에 찬성하는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자,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20~30대 연령층, 대학 이상의 고학력 소지자, 다문화가족이 아닌 경우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다문화가족인 경우는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언어통역서비스, 자녀양육 지원, 취업교육 및 훈련서비스에 집약되고 있으며, 우선순위는 낮으나 경제적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내국인의 경우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 인지도는 높으나, 국제결혼에 대한 수용도는 낮은 편이었다. 이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15

종합논의 및 정책제언

제15장 종합논의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 가족보건, 그리고 가족복지 등의 세 측면에서 다양한 영역의 실태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며, 그리고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분석결과와 그 의미는 해당 분야에서 상세히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분석결과의 모든 내용을 나열하고 설명하기보다는 최근 사회적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제언을 한다.

제1절 종합논의

본 연구에서의 종합논의는 임신과 출산, 피임, 인공임신중절, 모자보건, 가치관, 결혼과 가족주기, 여성취업, 자녀양육, 출산 및 가족정책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혼인 및 자녀관련 가치관

첫째,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치관에 의해 가족을 형성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저출산의 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관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는 개인, 가족, 사회의 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자녀가치관은 약화되고 있으며, 소자녀관의 정착뿐만 아니라 자녀의 불필요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또한 남아선호 가치관도 약화되어 성평등

사회로 점차 이행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셋째, 이상자녀수는 과거와 유사한 수준에 있는데, 합계출산율의 저하와는 괴리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상자녀수에 대한 가치관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이상자녀수의 성별구분을 원하는 부인의 원하는 자녀는 남아보다 여아가 많았음은 우리 사회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가치관의 변화는 현실과 연결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한국사회가 '남아선호'에서 '여아선호'로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섯째, 대부분의 한국가족은 자녀양육의 책임을 대학 졸업까지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심지어 취업 또는 결혼까지 책임져야 한다거나 평생 책임져야 한다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와 같은 자녀양육에 대한 높은 책임감은 양육부담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소자녀관 정착에 일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임신·출산·피임

첫째, 부인의 임신경험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전체 임신 중 정상출생 비율은 증가하였고, 임신소모로 종결되는 임신은 점차 감소하여 바람직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높은 피임실천율과 장기간에 추진된 모자보건사업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 자연유산, 사산 등의 임신소모가 뚜렷이 존재하고 있음은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인의 임신종결 형태를 분석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전체 임신 중 임신소모로 종결되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임신의 상당수가 소모되고 있다. ②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임신소모는 감소되고 있으나 높은 피임실천율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신이 출산이 아닌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다는 사실은 피임실천의 사각지대가 넓게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사산과 자연유산을 감소시키기 위해 미혼남녀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홍보계몽을 강화하고 철저한 임산부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④ 첫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한 경우에

자연유산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불원임신의 예방을 위한 효과가 높은 피임방법의 사용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⑤ 임신을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 부인 중 불임진찰을 받은 경우가 높았음은 저출산 사회에서 심각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⑥ 임신 당사자인 여성과 그 배우자의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정책차원에서 홍보·계몽이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198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던 합계출산율이 가치관의 지속적인 변화와 함께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게 되면서 낮아졌고,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수준을 보임으로써 사회문제화 되었다. 국가차원의 저출산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고 여전히 세계 최저수준에서 소폭의 등락을 하고 있음은 보다 효과적인 정책개발과 추진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증대, 소득격감,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활난과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이 야기되었고, 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결혼 및 출산을 연기 또는 기피하게 하였으며, 그리고 이에 기인된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향후 현재의 낮은 출산율이 계속될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어떻게, 얼마나 변화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경기회복과 함께 연기된 결혼 및 출산이 이루어진다면 다소의 출산율 상승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출산율이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른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출산율의 반전은 한계가 있을 것이며,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남아를 출산하기 위한 노력이 감소하였지만 일정수준에서 지속되고 있음으로 보아 한국사회에서 가부장제적이고, 전통적이라 비판하는 남아선호의식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는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책적 관심을 증대해야 할 것이다.

넷째, 1985년 이래 피임실천율은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 등의 임신소모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은 효과

적인 피임방법의 사용에 의한 피임실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피임실천율의 특징 중 하나는 여성피임방법인 난관수술에서 남성피임방법인 정관수술과 콘돔 등으로 피임방법이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성 평등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경제활동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다른 하나는 영구적인 피임방법에서 일시적인 피임방법으로 점차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시적 피임방법은 터울조절의 경우에는 유용하지만 단산을 한 부인의 경우에 일시적 피임방법에 의한 실천율이 높다는 것은 효과적 피임방법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인공임신중절

첫째, 최근 우리나라 부인의 인공임신중절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었으며, 2003년 조사에서는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06년 및 2009년 조사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하여 바람직한 양상을 보여 주었다.

둘째, 임신소모 중 여전히 비중이 큰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불원임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과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한국사회에서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주요 이유는 자녀불원과 터울조절이었다. 1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높은 피임실천율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인들에게서 인공임신중절이 사라지지 않음은 임신과 출산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에 노출된 부인이 많이 있고, 아울러 지나치게 안이한 피임실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넷째,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의 73.7%,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72.8%가 사회경제적 이유 등 비합법적인 이유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태아의 성감별후 여아인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시키는 행위를 직접 경험한 경우가 다소 나타났는데, 이는 가부장제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가치

관의 발로(發露)라 판단되며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불법행위이므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섯째, 1건의 인공임신중절을 방지하면 1명의 아이가 출생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인공임신중절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겠다. 따라서 가장 우선순위에 둘 저출산대책은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기혼부인들의 중절 원인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두어야 할 것이다.

4. 초경 및 폐경과 불임

첫째, 최초로 조사된 초경 및 폐경연령은 각각 14.3세, 49.0세이었으므로 약 35년간 임신이 가능하다. 또한 초경연령이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모자보건정책의 대상이 저연령화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교육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유배우부인 중 임신이 안 되어 노력하고 있는 경우와 이 중에서 불임진찰을 받은 경우는 많았는데, 특별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거나 임신을 위한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불임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을 받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졌으며, 치료를 포기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은 개인에게 지나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임부부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5. 모자보건

첫째, 시설분만율은 100%로 모든 출산이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안전분만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제왕절개분만율이 36.9%로 2006년보다 다소 높아졌고 OECD의 권고수준인 5~15%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제왕절개분만율의 원인이 고령임신과 다태아 임신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제왕절개분만율을 감소시

키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산전관리수진율은 100%에 이르렀으며, 임신 8주 이내에 초진을 받은 부인이 93.6%로서 대부분의 임신부가 임신 초기에 산전관리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24세 이하 부인이나 출생순위가 셋째아 이상인 부인에서 산전관리 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어 산전관리에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인구집단이 있음을 보였다.

셋째, 최근 고령출산과 다태아 출산의 증가가 저체중아와 조산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임신전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젊은 가임기 여성의 건강에 대한 인식 부족도 일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출생아의 3.8%가 저체중 출생아이었고, 임신주수 37주 미만의 조산아 출생률은 6.7%였다. 출산연령을 낮추기 위한 대책, 가임기 여성에 대한 건강관리의 강화 등을 저출산대책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모유가 아기의 건강이나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 좋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데, 최근 모유수유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바람직한 양상을 보였다. 생후 1주 이내 모유수유율은 73.0%였으며, 생후 1개월에는 65.6%로 낮아졌고, 생후 3개월에 57.0%, 생후 6개월시에는 13.6%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고, 1980년대의 약 50% 수준보다는 현저히 낮아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다섯째, 영유아의 예방접종률은 BCG 99.8%, DPaT 및 Polio 1, 2, 3차 각각 99.7%, 99.3%, 98.2%,MMR과 홍역 95.3%, B형간염 1차 98.7%에 이르는 매우 높은 접종수준을 보였다. 예방접종 장소는 예방접종 종류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건소에서 50% 이상이 공공 보건기관인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방접종이 많았다.

6. 가족생활

첫째, 행복의 중요요건은 가족원의 건강(60.3%)과 가족의 안정(22.2%)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생활은 1년전에 비해 더 나빠졌다는 응답(34.2%)이 좋아졌

다는 응답(9.9%)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가족내 가사노동 분담 정도, 의식주 수준,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 삶의 성취도는 만족도가 낮아 가족구성원간에 보다 많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회제도의 개선과 가족원 스스로의 자발적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부부권력관계 측면에서는 부동산이나 투자 등의 재산과 관련된 것은 부부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일상생활비 지출과 자녀양육 및 교육은 주로 부인이 결정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는 부인의 가족내 권력이 커졌다는 측면과 가사 및 자녀양육에 대한 남편의 무관심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민주평등,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유지와 가사 및 양육에 대한 남성의 관심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부의 가사분담 형태는 여전히 가부장제적 가치관이 강하게 잔존하고 있었다. 부인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가정에서 양육과 가사는 주로 부인이 담당하고 있어 여성에게 과중한 부담이 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가 부담하는 가사량과 부부간 문화생활, 자녀와의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따라서 가족내에서의 배우자간 가사 및 양육과 관련한 역할분담과 가족구성원간 문화생활 향유 등 가족의 공유시간 증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7.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

첫째, 교육수준의 향상, 취업률의 상승, 자아성취 욕구 증대와 함께 결혼의 필요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아울러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있다. 또한 남녀의 결혼연령별 결합형태를 보면, 점차 남녀가 동갑이거나 여성이 연상인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혼인시 남녀 연령차이 약 3~4세(남성이 높은 연령)의 보편적 패턴이 깨어지고 있음을 보였다.

둘째, 이혼여성의 경우 생계부양자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취업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절반 이상이 임시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등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이들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적 차원에서 경제활동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현실적 수준의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등의 지원과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고용문화 조성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혼가족의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위해 상담서비스 제공 등도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부인의 결혼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족주기의 전체기간은 초혼연령의 상승, 출산율의 저하에 따른 자녀규모의 축소, 그리고 사망률 개선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각 단계별 기간의 변화양상이 뚜렷하였다. 결혼부터 남편사망시까지 부부의 결혼기간은 길어지고 있고, 후기단계인 축소완료기 및 해체기가 연장됨으로써 노인부부가구 및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성별 평균수명의 격차는 여성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서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8. 기혼여성의 취업과 가족생활

첫째, 대부분의 취업여성들이 결혼과 자녀출산 및 집중적인 양육기에 취업률이 낮았고, 현재의 일과 가정생활 병행상의 어려움으로 가사와 자녀양육의 순으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 부인들의 비취업이유로 자녀양육이 가장 많았으며, 자녀출산 및 양육기에 있는 34세 이하 부인들에게서 이러한 의견이 강하게 나타나 자녀양육이 기혼여성들의 취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결혼 및 임신·출산이 취업중단 또는 취업장애 요인이 되지 않도록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이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할 수 있게 제도개선과 직장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혼여성의 각 생애단계별 취업률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결혼 전보다 결혼후에, 첫째아 출산 전 보다 출산후에, 막내 아 출산 전 보다 출산후에 취업률이 저하되고 있으며, 막내아가 초등학교 입학 후에야 입학전보다 취업률이 상승하여 결혼과 출산, 자녀양육 등이 기혼여성의 취업률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자녀양육 태도와 양육·결혼 비용

첫째, 한국인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녀양육 비용을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자녀를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가족문화에서 변화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출생후 대학 졸업시까지 자녀 1인당 지출되는 총비용을 추정하면 2억 6,204만 4천원이나 되었다는 사실은 자녀양육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케 한다. 자녀양육에 지출되는 과다한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본 연구에서는 뚜렷이 보여 주었다. 사교육비 경감, 중·고등학생을 위한 자녀양육비 지원, 자녀양육비 세제혜택 등이 사회제도적으로 강력히 추진되지 않는다면 출산율의 뚜렷한 반전(反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부모와 자녀 스스로 불필요한 지출을 감소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교육비와 교통통신비의 지출이 과다한 점에 대한 가족 스스로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셋째, 결혼비용 중 주거비용이 가장 부담스러운 것으로 나타났고, 신혼살림과 배우자측 예단을 위한 지출이 부담스럽다고 하였다. 따라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이 정책적으로 강화되어야 하고, 결혼당사자와 양가 집안의 합의에 의하여 신혼살림 및 예단 등을 스스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10. 출산 및 가족정책 욕구

첫째, 현재의 저출산 대책을 포함한 사회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혼인정책으로는 청년실업 해소, 자녀양육비 지원,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강화,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조성,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혼인 및 출산가치관 확립, 서민층 주택 융자, 최저임금의 보장 및 인상, 양성평등가치관 확립 및 문화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양육시설 등의 인프라 확충, 보육비용, 양육수당 및 임신·출산 비용 등의 현금 지원,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제도, 아동의 방과후 서비스 제공, 근무시간제도의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출산정책은 정책 대상의 거주지역, 소득계층, 연령, 취업여부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책효과를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되며, 이는 사회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전반적 정책방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내국인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제2절 정책제언

본 조사결과와 선행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혼인 및 자녀관련 가치관

첫째, 결혼, 이혼 및 재혼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는 가족의 안정성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개인의 행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혼인관 형성과 성평등 가치관확립을 위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가족친화적인 고용문화 조성을 위한 직장인의 인식 및 태도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사회분위기 조성과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이 바람직하다.

셋째, 재혼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생활교육,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 보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

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성평등적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매스컴을 통한 국민계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성 차별적 사회제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의료계의 자정노력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상호협조에 의한 감시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2. 임신·출산·피임·인공임신중절

첫째, 이상자녀수가 실제 출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결혼 및 출산 장애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현재의 저출산대책의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효과성 및 효율성이 높은 정책을 선정하여 확대하고 그렇지 못한 정책은 과감히 축소 및 폐지하거나 적극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부인의 임신소모율을 획기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인공임신중절률은 생명존중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회지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셋째, 임신소모의 한 형태인 사산의 절대횟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건의료적 측면의 관심이 요구된다. 즉, 사산의 이유를 규명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자연유산이 더욱 감소될 수 있도록 임신전 관리, 산전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보다 발전적으로 자연유산의 발생원인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미혼청소년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홍보계몽을 강화하고 철저한 임산부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불원임신의 예방을 위한 효과가 높은 피임방법의 사용을 홍보한다. 임신 전·후에 필요한 올바른 정보가 많이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실천하는 개인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만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보다 효과적, 효율적, 성평등적 측면의 피임방법에 의한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임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임목적에 적합한 피임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계몽, 상담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은 현행법상 불법행위이므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을 강화하면서 불원임신일지라도 출산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 초경 및 폐경과 불임

첫째, 초경연령이 빨라지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증대할 수 있는 학교교육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조기폐경 여성에 대한 원인규명과 치료방안이 정책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젊은 여성의 폐경은 추가출산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이에 대한 추적연구와 적극적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불임대책은 불임부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복지적 관점과 불임을 질병으로 간주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처럼 보건의료적 측면에서도 접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불임부부의 정서심리적 부담이 매우 심하므로 불임진단과 치료의 전체과정에서 경제적 부담만은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불임에 대한 후속 심층연구가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불임치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모자보건

첫째, 제왕절개의 실시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OECD의 권고수준인 5~15%선으로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출산당사자와 의료인의 공동노력에 의해 가능하다.

둘째, 신생아의 저체중 및 조산을 예방하기 위한 산모의 건강관리 및 임신중 생활습관 관리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고령출산과 다태아 출산의 증가가 이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출산연령을 낮

추기 위한 대책, 가임기 여성에 대한 건강관리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임신전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젊은 가임기 여성의 건강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모유수유는 건강한 모체를 유지하고,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단순히 출산여성과 신생아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와 사회가 함께 지지하고 노력해야 한다. 특히, 취업여성의 모유수유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취업여성이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의 모유수유실 의무설치, 모유수유를 위한 휴식시간 제공, 직장내 모유수유실 의무설치 등과 같은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5. 가족생활

첫째, 가족내 가사노동 분담 정도, 의식주 수준,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 삶의 성취도 증대를 위하여 가족원들이 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가족문화 및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직장근무시간의 유연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등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점을 검토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부의 가사분담이 성평등적이 될 수 있도록 가족원, 특히 남편의 노력이 요구된다. 즉, 부인의 취업여부를 떠나 가사 및 양육에 대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남성들은 '여성을 도와준다는 인식'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이나 투자 등의 재산과 관련된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비 지출과 자녀양육 및 교육에 부부가 함께 상의하고 결정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가사 및 자녀양육에 대한 남편의 지나친 무관심은 스스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부간의 문화생활을 공유함으로서 배우자 만족도를 증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이혼율이 높고 부부간의 갈등이 많음은 문화생활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과 관련되는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는 부부생활뿐만 아니라 가족생활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기제가 될 것이다.

6.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

첫째, 이혼가정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사회적 차원에서 경제활동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준의 자녀양육비의 지원과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기업의 가족친화적인 고용문화 조성, 질 높고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혼가족의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위해 상담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

둘째, 가족주기의 총기간이 연장되고 있음을 적극 반영하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보완과 경제적 지원 강화, 보건·의료서비스의 증대 및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이들 인력의 적극적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안정적 가족생활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여성 노인단독가구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초고령 여성노인의 증가는 보건의료적 측면과 경제생활 측면에서 많은 욕구를 증대시킬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7. 기혼여성의 취업과 가족생활

첫째,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남성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문화 및 사회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확대, 육아휴직 요건 완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중 대체인력 채용 요건 완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근로형태 유연화,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직장의 가족친화제도의 적극적인 시행과 함께 실질적인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직장이 출산 및 가족친화적 경영을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세제혜택 및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8. 자녀양육 태도와 양육·결혼 비용

첫째, 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자녀양육이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의 과도한 자녀양육에 대한 한국부모의 책임인식은 양육부담의 증가와 함께 자녀의 독립심 저하와 비정상적인 부모의존적 태도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보육료 및 양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아동연령이 높아질수록 양육비가 많이 지출된다는 점을 고려한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영유아에 초점을 맞춘 지원을 전체 아동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은 자녀양육 부담의 핵심요인이므로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양적 및 질적 강화를 도모하고 중산층 아동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균등한 방과후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넷째, 저소득층 아동의 교양오락프로그램의 제공을 확대하여 소득에 따른 문화향유의 격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이는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아동청소년의 일탈을 예방하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결혼비용 중 가장 부담이 큰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이 정책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신혼살림과 배우자측 예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결혼문화의 개선과 결혼당사자 및 양가 집안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9. 출산 및 가족정책 욕구

첫째, 현재의 저출산 대책을 포함한 사회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추가자녀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출산지원정책들이

광범위하게 마련해야 한다.

둘째, 청년실업 해소, 자녀양육비 지원,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강화,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조성,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혼인 및 출산가치관 확립, 서민층 주택 융자, 최저임금의 인상 및 보장, 양성평등가치관 확립 및 문화조성 등의 정책을 제시한다.

참고문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제왕절개 분만 적정성 평가 결과서』, 2005.

경제기획원, 『1966년도 인구센서스 보고』, 제1권, 전국편, 1969.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5년도 총인구및주택조사』, 제1권, 전국편, 1977.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가족계획연구원, 『1974년 한국출산력조사』, 1977.

고갑석 외, 『1979년 한국피임보급실태조사』, 가족계획연구원, 1980.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금재호, 『여성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2.

김광옥, 「산욕기 산모의 산후간호지식과 자가간호수행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두헌,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김미숙·원영희·이현송·장혜경, 『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족 지원정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김미숙 외, 『가족의 사회학적 이해』, 학지사, 2002.

김세광 외, 「다발성 선천성기형의 산전진단과 위험인자의 분석」, 『대한산부회지』, 제32권 제12호, 1989.

김승권 외, 『한부모가족 생활안정화 및 자녀양육 지원강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11.

김승권 외, 『가족정책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8.

김승권, 「자녀의 가치」, 『인구(통계)사전 편찬연구』, 한국인구학회 통계청 용역 보고서, 2005a.

김승권, 「이상자녀수」, 『인구(통계)사전 편찬연구』, 한국인구학회 통계청 용역 보고서, 2005b.

김승권, 「최근 한국사회의 출산율 변화원인과 전망」, 『한국인구학』, 제27권 제2호, (사)한국인구학회, 2004.

김승권 외,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김승권 외,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김승권 외,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김태홍·김미경,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2002.

김혜련 외, 「모유수유 실천수준과 모유수유 결정요인」,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의 변화양상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김혜선·박혜인·옥선화, 『가족관계학』,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2002.

김희숙, 「출산여성의 일반 분만과 선택 분만에 따른 출산경험의 지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문현상 외, 『1982년 전국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문현상 외, 『1985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문현상 외,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박미숙·김혜원, 「초임부의 산전 자가간호행위와 모성관련 지식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6(1), 2000.

박병태 외, 『197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계획평가조사』, 가족계획연구원, 1978.

박인화·황나미, 『모자보건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03.

보건복지부, 『모자보건 사업안내』, 2003, 2006.

박천만, 「모유수유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17(3), 2000.

변화순,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6.

변화순·조은희, 『다양한 가족 출현에 따른 쟁점과 가족관련법의 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3.

여성부 외,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2009.

오은진,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성공요인 및 경로분석, 여성의 경로단절과 재취업: 원인과 진단』, 정책세미나,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이삼식 외, 『미래세대의 결혼·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종합연구』,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이광렬 외, 「임신간격이 신생아 체중에 미치는 영향」, 『영남의대학술지』, 16(2), 1999.

이무식 외, 「산모의 임신전 비만지수, 임신중 체중증가와 출생아 체중과의 관련성」, 『한국모자보건학회지』, 제3권, 1999.

이삼식 외,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이삼식 외, 『미래세대의 결혼·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종합연구』,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이삼식 외,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이삼식 외,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이소희 외, 『현대가족복지론』, 양서원, 1998.

이연주, 「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변화와 가정 및 직장의 양립방안」, 김승권 외,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200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이인재,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고용활성화 방안」, 『노동리뷰』, 2005년 10월호, 통권 제10호, 한국노동연구원, 2005.

이정명,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한 신생아 선별검사의 재검률, 소환율 및 참고치 설정」,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장지연 외,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의 현황과 정책방안- 모성관련 휴가제도를 중심으로』, 2004.

장지연·김지경, 「양육형태와 비용이 기혼여성의 취업단절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직업이동과 계층이동-노동패널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1.

이삼식 외, 『미래세대의 결혼·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종합연구』,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장지연·부가청, 「숨겨진 선택: 기혼여성노동자의 일과 자녀양육」, 『여성연구』, 통권 65호, 한국여성개발원, 2003.

조정문·장상희, 『가족사회학: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무엇인가』, 대우학술총서, 2001.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강식·정진화, 『여성 잠재인력의 활용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7.

최재석, 『현대가족연구』, 일지사, 1985.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2000.

통계청, 『주로 찾는 통계』, 2004.

통계청, 『19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제1권, 전국편, 1997.

통계청, 『200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제1권, 전국편, 2001.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각 연도.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1999.

한영자 외, 『영아사망 사산원인 및 위험요인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한영자 외, 『저출생체중아 발생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황원주, 「모유수유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3.

허경옥, 「가계의 자녀양육에서 지출액 측정: 출생부터 18세까지의 양육비」, 『소비자학 연구』, 제8권 제2호, 1997.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KBS, 『생로병사의 비밀』, 2006.

부 록

「부록1」 조사지역

1. 서울특별시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101	종로구	사직동	136	양천구	신월1동
102	중구	신당1동	137	양천구	신정3동
103	중구	신당3동	138	양천구	신정5동
104	은평구	응암1동	139	강서구	등촌3동
105	성동구	행당2동	140	강서구	화곡5동
106	성동구	금호1가동	141	강서구	방화2동A
107	광진구	노유2동	142	강서구	방화2동
108	광진구	능동	143	구로구	고척2동A
109	광진구	자양3동	144	구로구	고척2동
110	동대문구	용두1동	145	금천구	독산2동
111	동대문구	장안4동	146	영등포구	영등포1동
112	중랑구	면목2동	147	구로구	오류1동
113	중랑구	면목4동	148	영등포구	신길6동
114	중랑구	중화2동	149	영등포구	신길6동A
115	성북구	동선1동	150	동작구	상도3동
116	성북구	보문동	151	동작구	사당3동
117	성북구	종암2동	152	동작구	신대방1동
118	강북구	미아3동	153	관악구	봉천5동
119	강북구	번2동	154	관악구	남현동
120	강북구	수유2동	155	관악구	신림5동
121	도봉구	방학2동	156	관악구	신림11동
122	도봉구	창3동	157	관악구	신림12동
123	노원구	월계3동	158	서초구	반포3동
124	노원구	중계본동	159	서초구	방배2동
125	노원구	상계1동	160	강남구	논현2동
126	노원구	상계2동	161	강남구	대치1동
127	노원구	상계10동	162	강남구	역삼1동
128	은평구	갈현1동	163	강남구	개포3동
129	은평구	응암4동	164	송파구	마천1동
130	서대문구	북아현2동	165	송파구	방이2동
131	서대문구	홍은3동	166	송파구	석촌동
132	서대문구	남가좌1동	167	송파구	가락본동
133	마포구	대흥동	168	강동구	명일1동
134	마포구	망원1동	169	강동구	천호1동
135	양천구	목1동	170	강동구	천호4동
서울특별시: 총 62개 조사구					

2. 부산광역시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201	중구	영주2동	214	해운대구	반송1동
202	동구	수정3동	215	해운대구	좌제2동
203	영도구	봉래1동	216	사하구	하단1동
204	부산진구	부전1동	217	사하구	하단2동
205	부산진구	당감3동	218	사하구	감천1동
206	부산진구	가야1동	219	금정구	부곡2동
207	동래구	온천3동A	220	강서구	명지동
208	동래구	온천3동	221	연제구	연산9동
209	남구	대연5동	222	수영구	수영동
210	남구	감만1동	223	사상구	괘법동A
211	북구	구포3동	224	사상구	괘법동
212	북구	화명1동	501	기장군	기장읍
213	해운대구	우1동			
부산광역시: 총 22개 조사구					

3. 대구광역시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225	동구	신암1동	234	수성구	범어1동
226	동구	신천1,2동	235	수성구	중동
227	동구	해안동	236	수성구	범물2동
228	서구	비산7동	237	달서구	감삼동
229	남구	이천동	238	달서구	이곡1동
230	남구	대명1동	239	달서구	상인3동
231	북구	침산3동	240	달서구	송현2동
232	북구	태전2동	241	달서구	이곡2동
233	북구	관음동	502	달성군	화원읍
대구광역시: 총 16개 조사구					

4. 인천광역시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242	남구	숭의4동	251	부평구	청천2동
243	남구	도화1동	252	부평구	삼산동
244	남구	주안1동	253	계양구	효성2동
245	연수구	선학동	254	계양구	계산1동
246	연수구	청학동	255	계양구	계양2동
247	남동구	구월4동	256	서구	신현원창동
248	남동구	간석4동	257	서구	검단1동
249	부평구	부평1동	503	강화군	강화읍
250	계양구	작전2동			
인천광역시: 총 13개 조사구					

5. 광주광역시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258	동구	산수2동	263	북구	중앙동
259	서구	상무2동	264	북구	두암1동
260	서구	서창동	265	북구	오치2동
261	서구	금호1동	266	광산구	송정1동
262	북구	중흥2동	267	광산구	첨단1동
광주광역시: 총 9개 조사구					

6. 대전광역시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268	동구	대동	273	서구	내동
269	동구	홍도동	274	서구	갈마2동
270	중구	대흥동	275	서구	관저2동
271	서구	도마2동A	276	유성구	신성동
272	서구	도마2동	277	대덕구	오정동
대전광역시: 총 7개 조사구					

7. 울산광역시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278	중구	학성동	282	남구	야음2동
279	중구	태화동	283	동구	남목2동
280	남구	신정1동	504	울주군	범서읍
281	남구	무거2동	505	울주군	두동면
울산광역시: 총 8개 조사구					

8. 경기도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301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A	341	고양시 덕양구	화정1동
302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	342	고양시 덕양구	화정2동
303	부천시 소사구	송내2동	343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304	수원시 영통구	태장동	344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305	수원시 권선구	권선1동	345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
306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	346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307	수원시 장안구	조원1동	347	구리시	교문1동
308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A	348	구리시	수택3동
309	안양시 만안구	석수3동	506	남양주시	와부읍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310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507	남양주시	와부읍A
311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508	남양주시	오남읍
312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509	남양주시	퇴계원면
313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349	오산시	대원동
314	성남시 분당구	정자1동A	350	오산시	남촌동
315	안산시 상록구	일동	351	시흥시	연성동
316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352	시흥시	정왕본동
317	의정부시	신곡1동	353	군포시	군포2동
318	의정부시	신곡1동A	354	군포시	산본1동
319	의정부시	송산2동	355	군포시	광정동
320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356	구리시	수택2동
321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357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322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358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
323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359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324	부천시 원미구	심곡3동	360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325	부천시 원미구	중1동	361	용인시 수지구	상현2동
326	부천시 원미구	중1동A	510	파주시	파주읍
327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11	파주시	교하읍
328	부천시 소사구	역곡3동	512	이천시	신둔면
329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A	513	안성시	일죽면
330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362	안성시	안성3동
331	광명시	철산2동	514	김포시	고촌면
332	광명시	하안3동	515	화성시	봉담읍A
333	평택시	비전1동	516	화성시	봉담읍
334	평택시	세교동	517	광주시	오포읍
335	안산시 상록구	사1동	363	광주시	경안동
336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364	양주시	양주1동
337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18	포천시	소흘읍
338	안산시 단원구	와동	519	포천시	소흘읍A
339	안산시 단원구	선부3동	520	여주군	능서면
340	안산시 단원구	선부3동A	521	양평군	양평읍
경기도: 총 71개 조사구					

9. 강원도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365	춘천시	후평2동	370	동해시	천곡동
366	춘천시	퇴계동	371	삼척시	성내동
522	원주시	귀래면	523	홍천군	홍천읍A
367	원주시	우산동	524	홍천군	홍천읍
368	원주시	태장1동	525	평창군	대화면
369	강릉시	경포동	526	양구군	남면
강원도: 총 12개 조사구					

10. 충청북도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372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77	충주시	칠금동
373	청주시 상당구	용암2동	378	충주시	연수동
374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28	청원군	오창면
375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529	옥천군	옥천읍
376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	530	영동군	학산면
527	충주시	앙성면	531	음성군	대소면
			535	음성군	음성읍
충청북도: 총 11개 조사구					

11. 충청남도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532	천안시	직산읍	536	논산시	강경읍
533	천안시	입장면	537	논산시	광석면
379	천안시	봉명동	384	논산시	부창동
380	천안시	쌍용2동	538	서천군	장항읍
381	천안시	쌍용3동	539	부여군	옥산면
382	공주시	옥룡동	540	청양군	비봉면
534	보령시	주교면	541	예산군	삽교읍
			542	태안군	태안읍
383	아산시	온양6동	543	당진군	당진읍
충청남도: 총 15개 조사구					

12. 전라북도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385	전주시 완산구	평화2동	391	익산시	신동
386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	392	익산시	영등2동
387	전주시 완산구	완산동	545	정읍시	정우면
388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546	완주군	삼례읍
389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547	장수군	천천면
544	군산시	성산면	548	부안군	부안읍
390	군산시	나운3동			
전라북도: 총 12개 조사구					

13. 전라남도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393	목포시	용당2동	399	광양시	중마동
394	목포시	원산동	552	고흥군	도양읍
395	여수시	대교동	553	보성군	웅치면
396	여수시	여서동	554	강진군	도암면
549	순천시	해룡면	555	영암군	덕진면
550	순천시	서면	556	함평군	엄다면
397	순천시	덕연동	557	영광군	영광읍
398	나주시	영강동	558	완도군	완도읍
551	광양시	진상면			
전라남도: 총 16개 조사구					

14. 경상북도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559	포항시 북구	흥해읍	563	영주시	부석면
400	포항시 북구	학산동	407	영주시	가흥2동
401	포항시 북구	우창동	564	상주시	은척면
560	경주시	안강읍	408	문경시	점촌2동
561	경주시	양남면	565	경산시	남산면
402	경주시	용강동	566	경산시	압량면
403	김천시	대곡동	409	경산시	서부2동
562	안동시	풍천면	567	청송군	부동면
404	안동시	서구동	568	청도군	이서면
405	구미시	형곡1동	569	칠곡군	동명면
406	구미시	인동동	570	봉화군	재산면
경상북도: 총 20개 조사구					

15. 경상남도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410	창원시	팔룡동	574	김해시	진영읍
411	창원시	용지동	420	김해시	북부동
412	창원시	상남동	421	김해시	삼안동
571	마산시	내서읍	575	밀양시	상남면
572	마산시	진북면	576	거제시	신현읍
413	마산시	월영동	577	양산시	웅상읍
414	마산시	합포동	578	양산시	동면
415	진주시	망경동	422	양산시	중앙동
416	진주시	상평동	579	함안군	산인면
417	진주시	이현동	580	남해군	남해읍
418	통영시	무전동	581	산청군	금서면
419	통영시	봉평동	582	거창군	가조면
573	사천시	곤명면			
경상남도: 총 23개 조사구					

16. 제주특별자치도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번호	시·군·구	읍·면·동
423	제주시	이도2동	583	북제주군	구좌읍
424	제주시	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총 3개 조사구					

「부록2」 조사표

승인(협의)번호
제 33101 호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조 사 표 번 호														
조사구 번호			거처 번호		거처내 가구 번호		조사구내 가구 일련번호		가구내 부인 번호	조사구내 응답부인 일련번호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인구 및 가족보건·복지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매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국가지정통계' 로서 전국에서 표본추출한 약 18,000가구에 대한 가구조사와 만 15~64세 기혼가구의 개인조사가 실시되며, 이에 전국을 대표하는 표본가구로 귀댁이 선정되었습니다. 조사대상가구의 선정은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에서 활용한 조사지역에 근거하여 표본추출하였으며, 추출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전체가구' 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부디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어 조사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개인 및 가구의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연락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승권 박사
전 화: 02-380-8212/02-380-8274 팩 스: 02-384-3084

주소	____ 시·도 ____ 구시군 ____ 동읍면 ____ 아파트·리 ____ 동·번지 ____ 호통호 ____ 반			
가구주성명 (가명 가능)		응답자성명 (가명 가능)		(집 전화)
				(휴대전화)
조사원 성명	(인)	조사지도원 성명	(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제1장 가구사항

Ⅰ. 가구원 사항

응답자 가구원 번호		

번호	1. 가구원 이름	2. 가구주와의 관계	3. 성	4. 연령(생년월일 및 띠)		5. 교육정도 및 졸업여부		6. 취업여부 및 직종		7. 혼인상태	8. 조사대상 구분 <Ⅰ>	조사대상 구분 <Ⅱ>
								6-1. 취업여부	6-2. 직종			
일련번호	가구주부터 기록 (가족은 아니지만 같이 먹고 자는 사람은 포함) (※ 조사원: 가구원 명을 밝히기 곤란해하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	01. 본인 02. 배우자 03. 장남(외동포함) 05. 차남 07. 삼남+ 09. 장녀(외동딸 포함) 11. 차녀 13. 삼녀+ ※ 그 외 지침서 <부록 1> 참조	① 남 ② 여	만 연령으로 기재 (※ 조사원: 생년월일 확인하여 2009. 6. 1일 기준 작성) ※ 지침서 <부록 4> 참조	생년월일(띠), 양력으로 기재 (※ 조사원: 양, 음력 확인하여 음력인 경우, 양력으로 환산하여 기록하시오)	⓪ 무학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2~3년제 대학 ⑤ 4년제 대학 ⑥ 대학원 이상 ⑦ 미취학	① 졸업 ② 수료 ③ 중퇴 ④ 재학 ⑤ 휴학 ⑧ 비해당	① 취업 ② 비취업 ⑧ 비해당 (만 14세 이하)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직종사자 ⑥ 농·임·어업 숙련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⑩ 기타(　　) ⑪ 무급가족종사자 ⑧ 비해당 ※ 지침서 <부록 2> 참조	① 유배우(사실혼 포함) ② 사별 ③ 이혼 ④ 별거(이혼전제 별거) ⑤ 미혼 ⑥ 미혼모 ⑧ 비해당(만 14세 이하) (※ 조사원: 사실상의 결혼상태 확인 요망, 취업으로 인한 별거는 동거로 간주)	① 출산력조사대상 (만 15~49세 기혼부인 및 만 15~49세 미혼모) ⑧ 비대상 (만 15~49세 기혼부인이 아닌 사람)	**※ 조사원: 다음 해당번호에 0표 또는 해당사항을 기록 하시오.** **9. 만 15~64세 기혼가구 여부** **① 대상가구임** **② 대상가구 아님** **10. 자녀양육조사 대상가구여부** • 만 0세~18세 미만의 (동거·비동거)자녀가 있는 가구, 단 만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생이면 포함 • (동거·비동거)대학생이나 재수생이 있는 경우는 만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① 대상가구임** 동거자녀수____명 비동거자녀수____명 **② 대상가구 아님** **11. 만 6세 미만 대상 유무** **⓪ 없음** **① 있음(____명)** **12. 다문화가구 여부** (외국인배우자가 있는 가구) **⓪ 다문화가구 아님** **① 다문화가구임(본국국적:　　)** **13. 노인가구 여부** (만 65세 이상 가구여부) **⓪ 노인가구 아님** **① 노인가구임** **14. 한부모가구 여부** (편부/편모+미혼자녀) **⓪ 한부모가구 아님** **① 한부모가구임** **15. 미혼조사 대상유무** (만 20~39세 미혼 유무) **⓪ 없음** **① 있음(____명)**
01		01(가구주)		만 나이:____세	____년____월____일 (____)띠 (양, 음) 양력환산:____년____월 ____일							
02				만 나이:____세	____년____월____일 (____)띠 (양, 음) 양력환산:____년____월 ____일							
03				만 나이:____세	____년____월____일 (____)띠 (양, 음) 양력환산:____년____월 ____일							
04				만 나이:____세	____년____월____일 (____)띠 (양, 음) 양력환산:____년____월 ____일							
05				만 나이:____세	____년____월____일 (____)띠 (양, 음) 양력환산:____년____월 ____일							
06				만 나이:____세	____년____월____일 (____)띠 (양, 음) 양력환산:____년____월 ____일							
07				만 나이:____세	____년____월____일 (____)띠 (양, 음) 양력환산:____년____월 ____일							

Ⅱ. 비동거 자녀(양육하는 비동거 손자녀, 기타 친척, 국외 거주 자녀 포함)

번호	1. 가구원 이름	2. 가구주와의 관계	3. 성	4. 연령(생년월일 및 띠)		5. 교육정도 및 졸업여부		6. 취업여부 및 직종		7. 비동거 시작년월 (부모와 떨어진 최초시기)	8. 비동거 지역	8-1. 해외 거주 이유
								6-1. 취업여부	6-2. 직종			
21				만 나이:____세	____년____월____일(양, 음) 양력환산:____년____월					____년____월	① 국내 다른 지역 ② 해외(국가:　　)	① 유학　② 어학연수 ③ 기타(　　)
22				만 나이:____세	____년____월____일(양, 음) 양력환산:____년____월					____년 ____월	① 국내 다른 지역 ② 해외(국가:　　)	① 유학　② 어학연수 ③ 기타(　　)

III. 출생아 사항

* ① 현재 이 집에 살고 있는 아이 중에서 2007년 1월부터 조사시점까지 이 가구에서 출생한 아기와(병원에서 출생한 경우도 가구에서 출생한 것으로 간주)
② 2007년 1월부터 조사시점까지 이 가구에서 출생하였으나 현재 이 집에 살고 있지 않는 아기(사망아 포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친가, 외가에서 사는 경우, 입양된 경우, 사망한 경우 포함).
(**※ 조사원:**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로 가구원사항에 기록된 아이부터 먼저 한 명씩 질문하고 (출생년월, 성별, 연령은 가구원 사항에서 그대로 이기하고 나머지 사항만 질문)
그 다음 이 가구에서 2007년 1월 이후 출산하였으나 가구원으로는 기록되지 않은 아기에 대해 질문하시오. 어머니 조사에서의 기록여부는 **<제3장 임신·출산·피임에 관한 사항(p.9)>**을 작성한 후 확인하여 기입하시오.

※ 우선 그런 아기가 있는지요?: ⓪ 없다 ➡ **<III-1. 국외출생아 사항>**으로 가시오 ① 있다 (_____명)

번호	1. 출생년월일	2. 성	3. 출생당시 모의 연령	4. 생존여부 및 사망일시	5. 아기의 현 동거여부 및 비동거이유	6. 어머니 동거여부 및 비동거이유	7. 출생신고 여부	8. 출생지
	이 아기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① 남 ② 여	이 아기 출생당시 아주머니(아기엄마)는 몇 세이셨습니까?	이 아기는 현재 살아 있습니까? 언제 사망하였습니까?(아기가 사망한 경우)	이 아기는 현재 여기에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 1 참조】	이 아기를 낳은 어머니는 현재 이댁에 살고 계신지요?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 2 참조】	이 아기를 읍·면·동 사무소에 출생신고 하였습니까?	출생한 국가는 어디입니까?
1	____년___월___일 (양, 음) (_____)띠		만 나이: _____세 19__년 _월 _일(양, 음) 양력환산: __년 _월 _일	① 생존 ② 사망 → (__년__월__일)(양, 음) ③ 모름	① 동거(가구원번호:____) ② 비동거(이유:_____) ⑧ 비해당(사망, 생존여부 모름)	① 산다(가구원번호:_____) ② 안 산다(이유:_____)	① 하였음(출생후 __월) ② 아직 하지 않았음	① 국내 ② 국외
2	____년___월___일 (양, 음) (_____)띠		만 나이: _____세 19__년 _월 _일(양, 음) 양력환산: __년 _월 _일	① 생존 ② 사망 → (__년__월__일)(양, 음) ③ 모름	① 동거(가구원번호:____) ② 비동거(이유:_____) ⑧ 비해당(사망, 생존여부 모름)	① 산다(가구원번호:_____) ② 안 산다(이유:_____)	① 하였음(출생후 __월) ② 아직 하지 않았음	① 국내 ② 국외
3	____년___월___일 (양, 음) (_____)띠		만 나이: _____세 19__년 _월 _일(양, 음) 양력환산: __년 _월 _일	① 생존 ② 사망 → (__년__월__일)(양, 음) ③ 모름	① 동거(가구원번호:____) ② 비동거(이유:_____) ⑧ 비해당(사망, 생존여부 모름)	① 산다(가구원번호:_____) ② 안 산다(이유:_____)	① 하였음(출생후 __월) ② 아직 하지 않았음	① 국내 ② 국외

※ 확인사항: 혹시 2007년 1월~조사시점까지의 기간 중 태어나서 바로 사망하였거나 또는 얼마동안 자라다가 사망한 아기는 없는지요? ⓪ 없다 ① 있다 ➡ (위 표에 추가 기입하시오)
【보기 1】 **아기를 낳은 어머니는 살고 있으나 아기는 같이 살지 않는 이유:** ① 아기사망, ② 아기를 친정·시댁·남의 집에 맡겨 놓은 경우, ③ 아기를 양자로 보낸 경우, ④ 아기 어머니의 이혼·재혼 등으로 아기를 어머니가 데리고 살지 않는 경우 등
【보기 2】 **아기는 살고 있으나 아기를 낳은 어머니는 살고 있지 않는 이유:** ① 어머니 사망, ② 아기 어머니가 이혼·별거·재혼 등으로 타 지역에 거주, ③ 아기만 맡겨 놓고 어머니가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④ 전처의 자식인 경우 등

※ 조사원: <질문 8> 출생지가 ② 국외인 경우 출생아 수만큼 <질문 1><질문 8>까지 질문한 후 <III-1. 국외출생아 사항>으로 간다.

※ 조사원: <질문 III-1> 국외출생아 사항의 <질문 1><질문 7> 까지는 <III. 출생아 사항>에서 이기한다.

III-1. 국외출생아 사항

※ 이 가구에서는 2007년 1월 1일 이후에 해외에서 출산한 아이가 있습니까? ⓪ 없다 ➡ <IV. 가구에 관한 사항>으로 가시오 ① 있다 (_____명)

번호	1. 출생년월일	2. 성	3. 출생당시 모의 연령	4. 생존여부 및 사망일시	5. 아기의 현 동거여부 및 비동거이유	6. 어머니 동거여부 및 비동거이유	7. 출생신고 여부	8. 한국거주 여부
	이 아기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① 남 ② 여	이 아기 출생당시 아주머니(아기엄마)는 몇 세이셨습니까?	이 아기는 현재 살아 있습니까? (아기가 사망한 경우) 언제 사망하였습니까?	이 아기는 현재 여기에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 1 참조】	이 아기를 낳은 어머니는 현재 이댁에 살고 계신지요?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 2 참조】	이 아기를 읍·면·동 사무소에 출생신고 하였습니까?	이 아기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1	____년____월____일 (양, 음)	① 남 ② 여	만 나이: _____세 19__년 __월 __일(양, 음) 양력환산: __년 __월 __일	① 생존 ② 사망 → (___년__월 __일)(양, 음) ③ 모름	① 동거(가구원번호:____) ② 비동거(이유:_____) ⑧ 비해당(사망, 생존여부 모름)	① 산다(가구원번호:_____) ② 안 산다(이유:_____)	① 하였음(출생후 __월) ② 아직 하지 않았음	① 한국거주 ② 비거주
2	____년____월____일 (양, 음)	① 남 ② 여	만 나이: _____세 19__년 __월 __일(양, 음) 양력환산: __년 __월 __일	① 생존 ② 사망 → (___년__월 __일)(양, 음) ③ 모름	① 동거(가구원번호:____) ② 비동거(이유:_____) ⑧ 비해당(사망, 생존여부 모름)	① 산다(가구원번호:_____) ② 안 산다(이유:_____)	① 하였음(출생후 __월) ② 아직 하지 않았음	① 한국거주 ② 비거주

번호	9. 출생국가	10. 국외 출산의 의도성	11. 국외 출산 이유	12. 체류기간	13. 출산 및 체류비용	
	이 아기가 태어난 국가는 어디입니까?	이 아기의 출산을 위해 해외로 나가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로 나갔다가 출산하게 된 것입니까?	이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아기의 출산을 위해 해외에 머문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 아기의 출산을 위해 해외에 머문 기간 동안 소요된 비용은 모두 얼마나 됩니까?	
1	국가명 : _____	① 출산목적으로 나감(의도적) ➡ <질문 1>로 이동 ② 다른 목적으로 나감(비의도적) ➡ (IV. 가구에 관한 사항)으로	① 국적취득 ② 좋은 교육기회 제공 ③ 병역의무 면제 ④ 한반도 유사시 전쟁대비/국내사회 불안정 ⑤ 기타( )	해외 체류기간 : _____년 _____개월	총 소요비용: _____만원	
2	국가명 : _____	① 출산목적으로 나감(의도적) ➡ <질문 1>로 이동 ② 다른 목적으로 나감(비의도적) ➡ (IV. 가구에 관한 사항)으로	① 국적취득 ② 좋은 교육기회 제공 ③ 병역의무 면제 ④ 한반도 유사시 전쟁대비/국내사회 불안정 ⑤ 기타( )	해외 체류기간 : _____년 _____개월	총 소요비용: _____만원	

※ 조사원: <Ⅰ. 가구원 사항 참조>　　가구원수: _____명,　　취업자수: _____명

Ⅳ. 가구에 관한 사항

1. 현재 살고 계시는 집의 유형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기타(_____)

2. 현재 살고 계시는 집은 댁의 소유인가요? 전세 또는 월세인가요?
   ① 자가 → (질문 2-2로)
   ② 전세
   ③ 전·월세(보증부 월세)
   ④ 월세
   ⑤ 기타(_____)
   → (질문 2-1로)

2-1. 가족 소유의 집이 따로 있습니까?　① 예 → (질문 2-2로)　② 아니오→ (질문 3으로)
2-2. (따로 있는) 집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① 남편　② 부인　③ 부부 공동명의　④ 기타(_____)

3.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나 됩니까?(소득은 세금공제전의 금액) → 월평균 _____만원
4.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비는 얼마나 됩니까? → 월평균 _____만원
5. 귀댁의 월평균 저축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월평균 _____만원
6. 귀댁의 재산(동산+부동산)은 얼마나 됩니까? → 총 _____만원

※ 조사원: 동산은 예금, 금융자산, 자동차, 회원권, 농기계와 농축산물 등이며, 부동산은 토지, 주택 건물 등을 말한다.

7. 귀댁의 부채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총 _____만원

7-1. 귀 댁 부채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
   ① 생계비　② 주거비/주택마련　③ 교육비　④ 사업자금　⑤ 의료비　⑥ 관혼상제비　⑦ 기타(___)

8. 귀댁은 타인(기관)의 도움 없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자립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　② 별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자립하고 있다　⑤ 상당히 자립하고 있다　⑥ 모르겠다

9. 귀하께서 판단할 때 귀하가족의 사회적 지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상　② 상중　③ 상하　④ 중상　⑤ 중중　⑥ 중하　⑦ 하상　⑧ 하중　⑨ 하하

Ⅴ. 가족생활의 질

1. 귀하 가정의 행복을 이루기 위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로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① 가족원 모두 일에 성공하여야 한다　② 가정이 안정되어야 한다
   ③ 권력이나 재산이 있어야 한다　④ 배우자가 사회에 나가 경제·사회활동을 하여야 한다
   ⑤ 자식이 사회에 나가 제 구실을 하여야 한다　⑥ 효성이 뛰어난 자식들이 있어야 한다
   ⑦ 가족의 건강　⑧ 기타(_____)

2. 귀댁의 가족생활을 1년 전과 비교할 때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더 나빠졌다 ② 동일하다 ③ 더 좋아졌다 ④ 모르겠다

⬇

2-1. 더 나빠진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가족간의 대화나 공유시간이 부족하므로 ② 가족원이 함께 하는 문화생활이 거의 없음
③ 경제적 어려움으로 ④ 가족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므로
⑤ 가족문제를 가족 밖에서 해결하므로 ⑥ 이웃이나 친구들과 교제가 거의 없으므로
⑦ 가족원의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⑧ 기타(_____)

3. 귀하는 다음의 가족생활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⑧ 비해당
3-1. 가족내에서 나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①	②	③	④	⑤	⑧
3-2. 가사노동 분담 정도에 대하여	①	②	③	④	⑤	⑧
3-3.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에 대하여	①	②	③	④	⑤	⑧
3-4. 이웃 또는 친인척과의 관계에 대하여	①	②	③	④	⑤	⑧
3-5. 가족의 의식주 수준에 대하여	①	②	③	④	⑤	⑧
3-6. 가족원의 갈등문제 해결에 대하여	①	②	③	④	⑤	⑧
3-7.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하여	①	②	③	④	⑤	⑧
3-8. 가족원의 건강수준에 대하여	①	②	③	④	⑤	⑧
3-9. 이제까지의 삶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의 성취정도에 대해서	①	②	③	④	⑤	⑧

4. 귀하께서 판단할 때 전반적인 가족생활의 만족도는 어느 수준입니까?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불만족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스럽다 ⑤ 매우 만족스럽다

제2장 결혼 및 가족주기에 관한 사항(만 15~64세 기혼가구 대상)

(응답자 가구원 번호: ____)

Ⅰ. 혼인, 이혼 및 재혼에 관한 태도

1. 귀하께서는 혼인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반드시 해야 한다 ② 하는 편이 좋다 ③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경우에 따라서)
   ④ 하지 않는 편이 좋다

2. 귀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면 몇 세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녀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남자: 만_____세, 여자: 만_____세

3. 귀하께서 결혼한 나이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초혼년월일: ____년 ____월 ____일(양, 음), 초혼연령: 만____세)

① 빨리했다 →
3-1. 결혼을 빨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집안 어른의 권유로 ② 배우자의 요구로 ③ 임신이 되어서
④ 배우자의 사정 때문에 ⑤ 특별한 이유없음 ⑥ 기타(_____)

② 적절하다

③ 늦게 했다 →
3-2. 결혼을 늦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취업에 방해가 될까봐 ② 배우자감이 없어서 ③ 배우자의 사정 때문에
④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 ⑤ 특별한 이유없음 ⑥ 기타(_____)

④ 모르겠다

4. 귀하는 결혼에 관한 다음의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4-1.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4-2.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4-3.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①	②	③	④
4-4.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귀하께서는 이혼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②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③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 ④ 이혼은 가급적 해서는 안된다
   ⑤ 이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⑥ 모르겠다

6. 귀하께서는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찬성하지 않음 ② 별로 찬성하지 않음 ③ 대체로 찬성 ④ 전적으로 찬성

7. 귀하께서는 재혼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② 하는 것이 좋다 ③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④ 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⑥ 모르겠다

II. 응답자 및 배우자의 혼인관련 사항

※ 조사원: 현재 이혼·별거·사별중인 응답자의 남편(부인)에 관한 사항은 이혼·별거 사별 당시의 남편(부인)에 관하여 질문하시오. 단, 이혼·별거·사별 중인 남편(부인)의 가구원번호는 ⑧⑧로 기재하시오.

질문내용	부인(가구원 번호:____)	남편(가구원 번호:____)
1. 부인/남편께서는 언제 혼인하셨습니까?(**현재 혼인**) 혼인당시 년월일: ___년 ___월 ___일(양, 음)	혼인연령: 만____세	혼인연령: 만____세
2. 현재의 혼인이 두 분 모두에게 초혼입니까? ① 초혼 ② 재혼 이상 ➞ **(질문 2-1로)**	(번호기재) ____	(번호기재) ____
2-1. (재혼 이상인 경우) 그러면 초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초혼년월: __년 __월 __일 (양, 음) 만 _____세	초혼년월: __년 __월 __일 (양, 음) 만 _____세
3. 두 분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⓪ 없음 ① 불교 ② 개신교 ③ 천주교 ④ 기타(_____)	(번호기재) _____	(번호기재) _____

※ 조사원: 응답자의 현 혼인상태를 가구원사항을 참조하여 표시하시오	① 유배우 ➞ **(p.8의 III. 가족주기에 관한 사항으로)** ② 이혼, 별거, 사별 ➞ **(질문 4로)**

질문내용	부인	남편
4. (이혼/별거/사별) 당시 부인/남편께서는 각각 몇 세이셨으며, 해혼 년월은 언제이었습니까?	해혼시 연령: 만_____세	해혼시 연령: 만_____세 생년월일: _____년 _____월 ____일
	해혼 당시 년월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양, 음)	

※ 조사원: 현재 사별인 응답자는 <p.8의 III. 가족주기에 관한 사항>으로

5. (이혼/별거의 경우) 이혼/별거하게 된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외도 (1남편, 2부인) ② 학대 또는 폭력 (1남편, 2부인 3기타 가족)
③ 성격차이 ④ 가족부양의무 불이행 (1남편, 2부인)
⑤ 가족간 불화 (1시댁식구, 2친정식구) ⑥ 경제적 문제 (1남편, 2부인, 3시댁식구, 4친정식구)
⑦ 건강상 이유(1남편, 2부인, 3자녀, 4기타(_____))
⑧ 기타(_____)

5-1. (이혼/별거의 경우) 이혼/별거를 먼저 제의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① 남편 ② 부인 ③ 시부모 또는 기타 시댁식구 ④ 친정부모 또는 기타 친정식구 ⑤ 기타(_____)

5-2. 이혼/별거 당시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중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은 몇 세이었습니까?
⓪ 없었음 ➞ (p.8의 III. 가족주기 사항으로) ① 있었음(___명)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만____세)**

5-3. 이혼/별거 당시 만 18세 미만 자녀 중 현재까지도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있습니까?
⓪ 없음 ➞ (p.8의 III. 가족주기 사항으로) ① 있음(_____명) ➞ **(질문 5-3-1로)**

5-3-1.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경우) 가장 어린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주양육자는 누구입니까?
(※ **조사원**: 해당되는 번호 **하나만** 적으시오)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만____세, 동거 주양육자: _____
① 자녀의 부(남편) ② 자녀의 모(부인) ③ 조부모(친가/외가) ④ 기타 친척
⑤ 혼자 살고 있음 ⑥ 사회복지시설 ⑦ 기타(_____)

5-3-2. 현재 그 자녀(가장 어린 자녀)를 위해 양육비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사람 또는 기관은?(중복응답 가능)
(※ **조사원**: 해당되는 번호를 **모두** 표시하시오) **가장 어린 자녀: _____, _____, _____, _____**
⓪ 없음 ① 자녀의 부(남편) ② 자녀의 모(부인) ③ 조부모(친가/외가)
④ 기타 친척 ⑤ 국가(생활보호대상자, 모부자가정) ⑥ 사회복지시설 ⑦ 기타(_____)

Ⅲ. 가족주기에 관한 사항

[자녀출생에 관한 사항]

※조사원: 현재 **초혼**인 부인(p.7의 <질문 Ⅱ-2>에서 응답자가 ①(초혼)로 응답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이며, 재혼한 남편의 자녀는 제외하고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오
1) 현존자녀수: _____ 명, 2) 사망자녀수: _____ 명, 3) 총출생아수: _____ 명

※ 현재 비동거중인 자녀 중 제1장의 <Ⅱ. 비동거자녀>에 기재된 자녀의 가구원 번호는 ㉑ 또는 ㉒ 등으로 기재하고, 그 외 혼인이나 취업으로 인한 분가 등으로 가구원 사항에 기록되지 않은 비동거자녀의 가구원 번호는 ㉗ 또는 ㉘ 등으로, 그리고 사망한 자녀의 가구원 번호는 ㊽로 기재한다. 출산자녀(사망자녀 포함)가 한 명도 없는 경우는 p.8의 <조사원 사항: 4. 가족주기단계>로 간다.

질문내용	첫째아(가구원 번호: _____)	막내아(가구원 번호: _____)
1.(첫째/막내)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① 남자 ② 여자

※ 조사원: (첫째/막내) 자녀를 낳을 당시 부인의 연령을 가구사항 및 임신·출산피임사항을 참조하여 확인하시오.
첫째아 출산시 부인연령: 만____세 막내아 출산시 부인연령: 만____세

[자녀혼인에 관한 사항]

2. 부인께서 낳으신 자녀들은 몇 명이나 혼인하였습니까?
① 모두 혼인 (혼인자녀수: ___명) ② 일부 혼인, 일부 미혼 (혼인자녀수: ___명, 미혼자녀수: ___명)
③ 모두 미혼 → p.8 아래의 4. 가족주기단계로

※ 조사원: 부인이 낳은 자녀 중 첫 번째 또는 맨 마지막에 혼인한 자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내용	첫 번째 혼인한 자녀(가구원 번호: ____)	마지막 혼인한 자녀(가구원 번호: ____)
3. (첫 번째/마지막) 혼인한 자녀가 혼인한 년월일은 언제이며, 그 당시 자녀의 연령은 몇 세이었습니까?(출생순위와 다를 경우 생년월일 확인)	자녀 혼인년월일 _____년 ____월____일(양, 음) (자녀혼인 연령: 만_____세) 생년월일:___년____월___일(양, 음)	자녀 혼인년월일 _____년 ____월____일(양, 음) (자녀혼인 연령: 만_____세) 생년월일:___년___월___일(양, 음)
3-1. (첫 번째/마지막) 혼인한 자녀가 혼인할 당시 부인께서는 몇 세이셨습니까?	만_____세	만_____세
3-2. (첫 번째/마지막) 혼인한 자녀의 성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① 남자 ② 여자
3-3. (첫 번째/마지막) 혼인한 자녀의 출생순위는 몇 째입니까?	출생순위: _____번째	출생순위: _____번째

※ 조사원: 가구사항, 혼인사항 및 위의 질문사항을 참조하여 해당되는 단계를 골라 표시하시오.

<4. 가족주기단계>	<4-1. 남편이 이혼·별거·사망한 단계>
⓪ 혼인후 출산경험 없는 경우(자연불임) ① 혼인후 출산전인 경우(현 임신중, 앞으로 출산할 계획인 경우) ② 출산경험이 있으나 현존자녀는 없는 경우로 계속 출산할 예정인 경우 ③ 출산경험이 있으나 현존자녀는 없는 경우로 계속 출산을 안(못)할 경우 ④ 현존자녀가 1명 이상 있으면서 계속 출산할 예정인 경우 ⑤ 출산을 완료한 경우 ⑥ 자녀가 1명도 혼인하지 않은 경우 ⑦ 자녀중 일부가 혼인한 경우(자녀의 혼인이 시작된 경우) ⑧ 자녀가 모두 혼인한 경우 ⑨ 남편이 이혼·별거·사망한 경우(※ 조사원: 오른쪽의 해당 단계에 체크하시오)	① 혼인후 첫 자녀 출산전 이혼·별거·사망 ② 현존자녀 없고 출산할 단계에서 이혼·별거·사망 ③ 현존자녀 있고 계속 출산할 단계에서 이혼·별거·사망 ④ 자녀출산 완료후 이혼·별거·사망 ⑤ 자녀가 1명도 혼인하지 않은 단계에서 이혼·별거·사망 ⑥ 자녀중 일부가 혼인한 후 이혼·별거·사망 ⑦ 자녀가 모두 혼인한 후 이혼·별거·사망

제3장 임신·출산·피임에 관한 사항(만 15~49세 기혼부인 대상)

(응답자 가구원 번호: ____)

Ⅰ. 자녀가치관 및 남아선호에 대한 태도

1. 귀하께서는 혼인을 하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꼭 있어야 한다 ②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③ 없어도 상관없다

2. 귀하께서는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이상자녀수: ___ 명 ② 잘 모르겠다

   ⬇

   2-1. 딸·아들 구별해서 입니까? 구별없이 입니까?
   ① 구별없이 ② 구별해서(1 아들: _____명, 2 딸: _____명)

3.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아들의 필요성 정도를 알고 싶습니다. 꼭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꼭 있어야 한다 ➞ **(질문 3-1로)** ②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 **(질문 3-1로)**
   ③ 없어도 상관없다 ➞ **(질문 Ⅱ로)** ④ 모르겠다 ➞ **(질문 Ⅱ로)**

3-1. 왜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사항 모두 표시)**
① 가문(대)을 잇기 위해 ② 노후생활을 위해서 ③ 제사를 지내야 하므로
④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⑤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서(든든하다, 울타리가 된다, 얕보이지 않는다 등)
⑥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서 ⑦ 기타(_____)

Ⅱ. 임신·출산 및 입양관련 사항

1. 부인께서는 현재 몇 남 몇 녀를 두고 계십니까? (출가/분가한 자녀 모두 포함)
   현존자녀수: _____명 (아들: _____명, 딸: _____명)

2. 부인께서는 지금까지 모두 몇 번의 임신을 하셨으며, 그 중에서 정상출생은 몇 번 하셨습니까?
   또한 낳으신 아들, 딸은 각각 몇 명입니까? (※ 현재 임신중인 경우는 현재의 임신 포함할 것)

   2-1. 총임신횟수: ____회 ➞ 임신횟수가 0회인 경우는 <질문 7>로 가시오.

   2-2. 정상출생횟수: ____회(쌍생아 이상인 경우는 1회 출생으로 간주)➞ 쌍태아:___회, 삼태아:___회

   2-3. 출생아수: ____명(아들: ____명, 딸: ____명)

3. 부인께서 낳으신 자녀가운데 혹시 사망한 자녀가 있습니까?
   ⓪ 없다 ① 있다 (사망자녀수(계): ____명, 아들: ____명, 딸: ____명)

4. 혹시 임신 중에 인공유산을 하셨거나 자연유산이나 사산이 된 적이 있습니까?
   ⓪ 없다 ① 있다 (총_____회= 인공유산 _____회, 자연유산_____회, 사산_____회)

   ⬇

질문내용	첫 인공유산	마지막 인공유산
4-1. 인공유산 시킨 임신은 몇 번째 임신이었으며, 그 당시 부인의 연령은 몇 세이었습니까?	임신순위: ____번째 임신 그 당시 부인연령: 만 ____세	임신순위: ____번째 임신 그 당시 부인 연령: 만 ____세
4-2. 인공유산 할 당시 현존자녀수	현존자녀수:_____명 (남아: ___명, 여아: ___명)	현존자녀수:_____명 (남아:_____명, 여아: ____명)
4-3. 인공유산시 태아 성감별 실시	⓪ 실시 안함 ① 실시함	⓪ 실시 안함 ① 실시함
4-4. 인공유산을 하게 된 이유	① 자녀 원치않음 ② 터울조절 ③ 임부의 건강상/자궁외임신 ④ 태아이상 ⑤ 혼전임신 ⑥ 가정문제 ⑦ 경제적 곤란 ⑧ 태아가 딸이었으므로 ⑨ 취업중이어서 ⑩ 기타(_____)	
	번호: _____	번호: _____

5. 부인께서는 남아출산을 위해 임신전 또는 임신후에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⓪ 없다 ① 있다

5-1. 있다면,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해당사항 모두 체크)
① 자연요법 ② 양수검사 ③ 용모막검사 ④ 초음파검사 ⑤기타(_____)

6. 부인께서는 현재 임신중이십니까?
⓪ 아니다 ① 그렇다

6-1. 현재의 임신을 출산할 예정이십니까?
⓪ 아니다 ① 그렇다 → 출산예정일은 언제입니까?(출산예정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7. 부인께서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임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2006년에 임신하여 2007년까지 진행된 경우와 현재 임신 중인 경우도 포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① 있다(임신횟수: ____회, 정상출생횟수: ____회) ⓪ 없다 → <질문 8>로

(※ 조사원: 2007년 1월 이후 **임신·출산기록표**를 간단히 작성한 후 매 임신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십시오)

연도/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7												
2008												
2009												

기입요령	**임**: 임신 **출**: 출생 **사**: 사산 **자**: 자연유산 **인**: 인공유산 또는 월경조절술(MR)

번호	7-1. 언제 임신하셨는지요?	7-2. 임신당시 그 임신은 원했었는지요? 원하지 않았었는지요?	7-3. 그 임신 당시 피임을 하셨는지요? 하셨다면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 보기 참조)	7-4 임신 당시 자녀수는 몇명이었습니까?	7-5. 임신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7-6. 그 때가 언제였습니까?	(※ 조사원: 출생아가 p.2의 <출생아 사항>에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오.
1	____년 ____월	⓪ 원치 않음 ① 원함	⓪ 비사용 ① 사용 ↓ (피임방법: _____)	아들:___명 딸: ___명 계: ___명	① 출생 ② 사산 ③ 자연유산 ④ 인공유산 ⑤ 임신중	①____년 ____월 ② 임신중	① 예 ② 아니오 ③ 비출생
2	____년 ____월	⓪ 원치 않음 ① 원함	⓪ 비사용 ① 사용 ↓ (피임방법: _____)	아들:___명 딸: ___명 계: ___명	① 출생 ② 사산 ③ 자연유산 ④ 인공유산 ⑤ 임신중	①____년 ____월 ② 임신중	① 예 ② 아니오 ③ 비출생
3	____년 ____월	⓪ 원치 않음 ① 원함	⓪ 비사용 ① 사용 ↓ (피임방법: _____)	아들:___명 딸: ___명 계: ___명	① 출생 ② 사산 ③ 자연유산 ④ 인공유산 ⑤ 임신중	①____년 ____월 ② 임신중	① 예 ② 아니오 ③ 비출생

보기			
<피임방법>	① 난관수술	② 정관수술	③ 자궁내장치	④ 먹는 피임약
⑤ 콘돔	⑥ 살(질)정제	⑦ 월경주기법	⑧ 콘돔 + 월경주기법	⑨ 기타(_____)

8. 부인께서는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실 생각입니까?
(※ **조사원**: 현재 임신중인 부인은 현재의 임신 외에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인지의 여부를 질문하시오)
① 낳겠다 ② 낳지 않겠다 ⟶**(질문 9로)** ③ 생각중이다 ⟶**(질문 9로)**
⬇

8-1. 지금 생각으로 몇 명이나 더 낳으실 생각입니까? ____명 8-2. 그러면 그 자녀는 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딸이기를 원하십니까? ① 구별없이 ② 구별해서(아들: _____명, 딸 : _____명)

⟶ **(질문 10으로)**

9. 부인께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다면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실 생각입니까?
① 낳겠다(_____명) ② 낳지 않겠다 ⟶ **(질문 10으로)** ③ 생각중이다⟶ **(질문 10으로)**
⬇

9-1. 그러면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정책으로는 어떠한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출산지원금 지급 ② 자녀양육비 지원 ③ 보육시설 확충 ④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확충 ⑤ 기타(____)

10. 귀하의 가정에서는 입양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고려한 적이 없다 ② 고려한 적이 있으나 포기하였다
③ 입양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④ 입양하였다

※ 조사원: 이상에서 응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다시 한번 기록하여 확인하시오. 총임신횟수(____회) = 출생횟수(____회) + 자연유산수(____회) + 사산횟수(____회) + 인공유산수(____회) + 현임신(0 또는 1)

III. 가족계획실태

※ 조사원: <III. 가족계획실태>는 15~49세 **유배우 부인**을 위한 질문입니다(이혼, 별거, 사별상태의 부인은 제4장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가시오)

1. 부인과 남편께서는 지금까지 실제로 피임을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⓪ 없다⟶ p.12 (질문 8)로 ① 있다
⬇

1-1. 그러면 부인과 남편께서는 지금도 피임을 하고 계십니까? ⓪ 안한다 ⟶ (질문 5로) ① 한다⟶ (질문 2로)

[과거에 피임경험 있으며 현재 피임을 하고 있는 부인]

2.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피임방법은 무엇입니까?
(※ 조사원: 일시적 피임방법을 두 가지 이상 병용하는 경우 모두 표시하시오)

① 난관수술 ② 정관수술 ③ 자궁내장치 ④ 먹는피임약 ⑤ 콘돔
⑥ 살(질)정제 ⑦ 월경주기법 ⑧ 콘돔+월경주기법 ⑨ 기타(_____)

3. 현재 피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단산 ⟶ (질문 3-1로) ② 출산연기 ⟶ (질문 3-1로) ③ 기타(_____)

3-1. 출산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소득이 적어서 ②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 ③ 자녀양육비용 부담 때문에 ④ 자녀를 돌볼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⑤ 출산으로 인한 직장 차별 ⑥ 사회활동 지장 ⑦ 부부중심의 생활을 위하여 ⑧ 가정내에서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아서 ⑨ 장애 또는 만성질환 등의 가족수발 때문에 ⑩ 터울조절 ⑪ 기타(_____)

4. 현재 사용중인 피임방법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하실 생각입니까?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 보실 생각입니까?
① 계속 사용하겠다 ② 생각해보지 않았다/모르겠다 ③ 바꾸겠다/바꾸고 싶다

4-1. 어떤 방법으로 바꾸시겠습니까?/바꾸고 싶으십니까?(해당사항 모두 표시 하시오)
① 난관수술 ② 정관수술 ③ 자궁내장치 ④ 먹는 피임약 ⑤ 콘돔 ⑥ 살(질)정제
⑦ 월경주기법 ⑧ 콘돔+월경주기법 ⑨ 기타(_____) ⑩ 미결정/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 조사원: <질문 4-1> 질문 후 p.14의 **<제4장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과거에 피임경험이 있으나 현재 피임을 중단하고 있는 부인]

5. 그러면 부인과 남편께서 그동안 사용해보신 피임방법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 조사원: 두 가지 이상 병용했을 경우 모두 표시하시오)
① 난관수술 ② 정관수술 ③ 자궁내장치 ④ 먹는피임약 ⑤ 콘돔
⑥ 살(질)정제 ⑦ 월경주기법 ⑧ 콘돔+월경주기법 ⑨ 기타(_____)

6. 왜 피임방법 사용을 중단하셨는지요?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① 임신하기 위해/자녀를 갖기 위해 ② 피임중 임신이 되어서/실패임신
③ 자연배출되어서(자궁내장치의 경우) ④ 사용상 불편해서/번거로워서
⑤ 일시적으로 피임할 필요가 없어서(해외출장, 산후무월경 등) ⑥ 부작용 때문에
⑦ 영구적으로 더 이상 피임할 필요가 없어서(1 자궁적출 2 폐경 3 양측나팔관 제거 4 기타(_____)

<제4장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⑧기타(_____)

7. 부인께서는 피임중단후 임신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최소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⓪ 없다 ① 있다

이 문항 질문 후 <질문 10>으로

[피임경험이 전혀 없는 부인]

8. 혼인후 아직 한번도 피임방법을 사용해보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가장 주된 이유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① 자연불임 ② 자녀를 원해서 ③ 피임방법을 잘 몰라서
④ 일시적 불필요(해외취업 등으로 인한 남편과의 별거, 산후 무월경 기간 등) ⑤ 기타(_____)

9. 부인께서는 임신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혼인 후 최소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⓪ 없다 ① 있다

이 문항 질문 후 <질문 10>으로

[현재 피임중단과 피임경험이 전혀 없는 부인]

10. 부인께서는 앞으로 피임방법을 사용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질문 10-1로)** ② 모르겠다/생각해보지 않았다 → **<Ⅳ. 불임실태 및 치료>로**
③ 없다/피임할 필요가 없다 → **(질문 10-2로)**

10-1. 앞으로 어떤 피임방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해당 피임방법 모두 표시)
① 난관수술 ② 정관수술
③ 자궁내장치 ④ 먹는 피임약
⑤ 콘돔 ⑥ 살(질)정제
⑦ 월경주기법 ⑧ 콘돔+월경주기법
⑨ 난관이든 정관이든 불임수술
⑩ 기타(_____)
⑪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

10-2. 계속해서 피임을 하지 않으시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자궁적출(이유는 무엇인가요?)
1 자궁근종 2 자궁내막증 3 자궁경부암
4 난소암 5 자궁내막암
6 기능성 자궁출혈 7 기타(_____)
② 자연불임
1 10년 이상 임신 안됨
2 5~10년 미만 임신 안됨
3 3~5년 미만 임신 안됨
4 1~3년 미만 임신 안됨
③ 기타(_____)

Ⅳ. 불임실태 및 치료

1. 부인께서는 임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해당사항 모두 표시)
① 불임전문 병원의 치료 ② 한의원/한방병원의 치료 ③ 일반 병의원의 치료
④ 약국에서의 양방약재 복용 ⑤ 일반 건강원의 약재 복용 ⑥ 민속요법
⑦ 식이 요법 ⑧ 기타(_____) ⓪ 사용한 적 없다

2. 부인의 부부께서는 **양방병원**에서 불임진단을 받았거나 불임치료를 받았습니까?
① 불임진단 또는 불임치료를 받았다 ② 받지 않았다 → <제4장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

2-1. 처음 **양방병원**을 방문한 시기는 언제 입니까? 결혼 후 _____ 년 _____ 개월

2-2. 검사는 누가 받으셨습니까?
① 부인 ② 남편 ③ 부부 모두

2-3. 검사 결과 불임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부인: ⓪ 부인에게는 원인 없음 ① 원인불명 ② 나팔관 장애 ③ 배란장애
④ 염색체이상 ⑤ 자궁경관장애 ⑥ 자궁내막장애 ⑦ 조기폐경
⑧ 습관성 유산 ⑨ 기타(_____) ⑩ 잘 모르겠다

남편: ⓪ 남편에게는 원인 없음 ① 원인불명 ② 무정자증 ③ 희소정자증
④ 정자무력증 ⑤ 염색체이상 ⑥ 기타(_____) ⑦ 잘 모르겠다

2-4. 불임 치료를 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과거 받은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받고 있지 않다

2-4-1. 얼마동안 받았습니까? _____ 년 _____ 개월
2-4-2. 결과는 어땠습니까?
① 결과가 좋지 않아 포기했다 ② 결과가 좋았다 ③ 기타(_____)
2-4-3. 부담한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_____만원)
2-4-4.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셨습니까?
① 전액자비 ② 전액정부 ③ 자비+정부지원 ④ 기타(_____)

② 현재 받고 있다(과거받은 경험에 상관없이 현재 받은 경우)

2-4-5. 얼마동안 받았습니까? _____ 년 _____ 개월
2-4-6. 경과는 어땠습니까?
① 좋지 않은 것 같으나 희망을 갖고 있다 ② 경과가 좋아 매우 희망적이다
③ 모르겠다 ④ 기타(_____)
2-4-7. 부담한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_____만원)
2-4-8.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셨습니까?
① 전액자비 ② 전액정부 ③ 자비+정부지원 ④ 기타(_____)

③ 받은 경험이 전혀 없다

2-4-9.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② 시간이 없어서 ③ 직장 때문에
④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⑤ 한방 또는 민간요법을 이용하려고
⑥ 기타(_____)

제4장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만 15~49세 기혼부인 대상)

※ 조사원: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현존자녀 유무를 확인하여 아래에 표시한 후 질문을 시작하되, 아기 이름을 호명하면서 질문하시오.

■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현존자녀 유무:

⓪ 없음 ➞ **(제5장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① 있음

■ 조사대상 아이의 생년월일 및 연령: ① 생년월일(양력): _____년 _____월 _____일

(※ 조사지침서 참조하여 조사대상 아이 선정) ② 연령: 만_____년 _____개월 _____일 (※ 조사일 기준)

■ 조사대상 아이 출생시 어머니의 연령(**※ 조사원**: 질문하지 말고 앞에서 조사된 부인의 생년월일과 조사대상 아이의 생년월일을 기초로 해당 아이의 출생시 어머니의 연령을 계산하여 기입하시오.)

◎ 출생시 어머니의 연령 : 만_____세

■ 조사대상 아이의 출생순위: _____번째 ■ 조사대상 아이의 성: ① 남아 ② 여아

■ 조사대상 아이의 이름: (_____)

Ⅰ. 산전관리, 분만에 관한 사항

1. 부인께서는 조사대상 아이 ○○(이)의 임신기간 동안에 산전진찰을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⓪ 없다 ① 있다

1-1. 있다면 언제부터 몇 회나 받았습니까?

산전진찰(초진)시기: 임신 후_____주 산전진찰 총 횟수: _____회

2. 부인께서는 ○○(이)를 어디에서 분만하셨습니까?

① 종합(전문)병원 ② 병원 ③ 의원 ④ 조산소 ⑤ 보건소(보건의료원) ⑥ 기타(_____)

3. 부인께서는 ○○(이)를 자연분만으로 낳으셨습니까? 제왕절개로 낳으셨습니까?

① 자연분만 ② 제왕절개

3-1. 제왕절개로 분만시 누가 권유하였습니까?

① 본인 의사 ② 가족의 권유 ③ 의사의 권유 ④ 기타(_____)

3-2. 제왕절개를 결정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한 가지만 선택)

① 출산의 고통이 두려워서 ② 산모의 건강 때문에 ③ 태아의 건강 때문에
④ 첫아이를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아서 ⑤ 양수조기파수
⑥ 산모 골반에 태아 머리 크기가 맞지 않아서 ⑦ 태아의 위치가 이상해서 ⑧ 기타(_____)

4. 부인께서는 ○○(이)를 임신 몇 주만에 분만하였으며, 출생시 체중은 얼마였습니까?

4-1. 출산시기: 임신 _____ 주후 분만 4-2. 출생시 아기체중: _____ g

※ 출생시 아이의 체중이 2,500g 미만인 경우만 답하십시오.

4-3. 출생시 아이의 체중이 2,500g 미만인 경우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사원**: 의사 등으로부터 진찰내용을 기억하여 응답토록 하고, 해당 사항을 모두 표시하시오).

⓪ 이유없음 ① 산모의 음주습관 때문에 ② 산모의 흡연습관 때문에 ③ 산모의 약물복용 때문에
④ 조기 분만 ⑤ 산모의 건강상의 이유로 ⑥ 기타(_____) ⑦ 알지 못함/모름
⑧ 비해당(2,500g 이상)

5. 미숙아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⓪ 모른다 ① 알고 있다 → (질문 5-1로)

⬇

5-1.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① 인터넷 ② 보건소 ③ 의료기관 ④ TV, 신문 등 대중매체 ⑤ 기타(_____)
5-2. 지원받으셨습니까?
① 아니다 ② 그렇다 → (지원받은 금액 : _____만원)

II. 산후관리에 관한 사항

1. 부인께서는 ○○(이)를 출산한 후 산후진찰(산모의 출산과 관련하여)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⓪ 없다 ① 있다

2. ○○(이)의 뇌기능장애 또는 정신박약에 관한 조기발견을 위하여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하셨습니까?
⓪ 하지 않았다 ① 했다 ② 잘 모르겠다/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

2-1. 그러면 몇 종을 검사하셨습니까?
① 정부의 지원항목인 6종 검사만 했음 ② 정부지원 6종에 추가 검사를 했음(추가비용 : _____만원)
③ 기타(_____) ④ 잘 모르겠다

3. 선천성이상아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⓪ 모른다 ① 알고 있다 → (질문 3-1로)

⬇

3-1.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① 인터넷 ② 보건소 ③ 의료기관 ④ TV, 신문 등 대중매체 ⑤ 기타(_____)
3-2. 지원받으셨습니까?
① 아니다 ② 그렇다(지원받은 금액 : _____만원)

III. 수유에 관한 사항

1. 조사대상 아이 ○○(이)에게 엄마 젖(모유수유)을 먹이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현재 모유수유중
2. ○○(이)에게 엄마 젖 먹이는 것을 완전히 중단한 것은 언제입니까? 생후 ____개월 ⑧⑧ 비해당(모유수유중)
3. ○○(이)가 분유를 계속 먹기 시작한 것은 언제입니까? 생후 _____개월 ⑧⑧ 비해당(분유를 먹이지 않음)
4. ○○(이)가 모유나 분유 외에 다른 보충식(이유식)을 처음 먹은 것은 언제입니까?
생후 _____개월 ⑧⑧ 비해당(보충식을 먹이지 않음)
5. ○○(이)의 현재까지의 수유형태(모유, 인공유(분유)를 얼마동안 먹였는지, 보충식은 언제부터 하였는지)를 각각 아기 월령별로 말씀해주십시오. 단, 아기가 15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4개월까지만 기록 하십시오

(※ **조사원**: 출생 이후 매월별로 수유양상을 파악하여 아래 보기에서 번호를 골라 표기 하시오).

※ 조사원: 조사대상 조사대상 아이의 현 월령을 확인하시오. _____개월

개월	신생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14월
아기월령	1주	2주	3주	4주	1~2 개월 미만	2~3 개월 미만	3~4 개월 미만	4~5 개월 미만	5~6 개월 미만	6~7 개월 미만	7~8 개월 미만	8~9 개월 미만	9~10 개월 미만	10~11 개월 미만	11~12 개월 미만	12~13 개월 미만	13~14 개월 미만	14~15 개월 미만
	0~1개월																	
수유형태																		

↑ 출생 ↑ 백일 ↑ 첫돌

보기		
① 모유	② 모유 + 인공유(분유)	③ 인공유(분유)
④ 모유 + 보충식(이유식)	⑤ 인공유(분유) + 보충식(이유식)	⑥ 보충식(이유식) + 유아식

6. 모유를 먹이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한 가지만 선택)
① 모유량이 부족하여 ② 유두 및 유방통증 ③ 엄마의 질병으로 ④ 엄마의 취업 때문에
⑤ 아기가 젖을 잘 빨지 않아서(유두 혼동/유방 거부) ⑥ 아기 건강 때문에
⑦ 우유가 더 좋다고 들어서 ⑧ 기타(_____) ⓪ 비해당

7. 모유를 먹이다가 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한 가지만 선택)
① 모유량이 부족하여 ② 유두 및 유방통증 ③ 엄마의 질병으로 ④ 엄마의 취업 때문에
⑤ 아기가 젖을 잘 빨지 않아서(유두 혼동/유방 거부) ⑥ 아기 건강 때문에
⑦ 우유가 더 좋다고 들어서 ⑧ 젖을 뗄 시기가 되어서
⑨ 기타(_____) ⓪ 비해당

8. 모유수유를 돕기 위해서 어떠한 정부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한 가지만 선택)
①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모유수유실 의무 설치 ② 백화점 등 상업지역에 모유수유실 의무 설치
③ 직장 내 모유수유실 의무 설치 ④ 직장에서 모유수유를 위한 휴식시간 제공
⑤ 분만 병의원에 모자동실 운영 ⑥ 산후조리원의 모자동실 운영
⑦ 임산부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철저한 교육 홍보 ⑧ 기타(_____)

Ⅳ. 영유아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1. ○○이가 지금까지 BCG, DTaP, 소아마비, MMR, B형 간염, 일본뇌염, 수두 등의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⓪ 전혀 없다 → (제5장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① 있다
⬇

※ 조사원: 어머니의 응답과 **아기수첩이나 모자보건수첩의 예방접종기록의 내용**을 대조하여 정확히 기재토록 함(**※ 조사원 ⇒ 예방접종기록의 보관여부 확인: ⓪ 없음 ① 있음**).
접종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어머니가 기억을 통하여 응답하도록 함.

예방접종 종류		표준 접종시기	1. 접종여부	2. 접종시기	3. 접종시 만월령	4. 접종장소
			(조사원: '① 예'인 경우 질문 2~4까지 질문)	(조사원: 수첩이 있는 경우 수첩에서 이기함)	(조사원: 생후 아기의 개월수를 환산함)	① (종합)병·의원 ② 보건(지)소/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 ③ 기타(_____) ⑧ 비해당(미접종)
1-1. BCG		생후 1개월 이내	⓪ 아니오 ① 예	____년____월____일	만_____개월	
1-2. DTaP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폴리오	1차	생후 2개월	⓪ 아니오 ① 예	____년____월____일	만_____개월	
	2차	생후 4개월	⓪ 아니오 ① 예	____년____월____일	만_____개월	
	3차	생후 6개월	⓪ 아니오 ① 예	____년____월____일	만_____개월	
1-3. MMR(홍역, 볼거리, 풍진)		12~15개월	⓪ 아니오 ① 예	____년____월____일	만_____개월	
1-4. DTaP 추가		18개월	⓪ 아니오 ① 예	____년____월____일	만_____개월	
1-5. B형 간염	1차	출생직후(0개월)	⓪ 아니오 ① 예	____년____월____일	만_____개월	
	2차	생후 1개월	⓪ 아니오 ① 예	____년____월____일	만_____개월	
	3차	생후 6개월	⓪ 아니오 ① 예	____년____월____일	만_____개월	
1-6. 일본뇌염	사백신1차	12~23개월	⓪ 아니오 ① 예	____년____월____일	만_____개월	
	사백신2차	12~23개월 (1차 접종 1~2주 후)	⓪ 아니오 ① 예	____년____월____일	만_____개월	
	생백신1차	12~23개월	⓪ 아니오 ① 예	____년____월____일	만_____개월	
1-7. 수두		12~15개월	⓪ 아니오 ① 예	____년____월____일	만_____개월	

제5장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만 15~64세 기혼가구 대상)

Ⅰ. 부부관계

※ 조사원: 응답가구가 모부자가정인 경우 <질문 1~3>까지는 비해당으로 표시한 후 <Ⅱ. 부모-자녀관계>로

1. 귀댁은 현재 가사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고, 부인이 양육과 가사행위를 맡는다
   ②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행위를 맡고 경우에 따라 남편이 돕는다
   ③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남편이 주로 양육과 가사행위를 맡고 경우에 따라 부인이 돕는다
   ④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남편과 부인이 반씩 양육과 가사행위를 나눈다
   ⑤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행위를 맡고 경우에 따라 남편이 돕는다
   ⑥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남편이 주로 양육과 가사행위를 맡고 경우에 따라 부인이 돕는다
   ⑦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남편과 부인이 반씩 양육과 가사행위를 나눈다
   ⑧ 집에 있는 남편이나 부인의 경우 주로 양육과 가사행위를 맡는다
   ⑨ 비해당(모부자가정인 경우) → **<Ⅱ. 부모-자녀관계>로 이동**

2. 귀댁의 다음 가정 일에 대한 부부간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구 분	전적으로 남편 결정	대체로 남편 결정	부부 공동 결정	대체로 부인 결정	전적으로 부인 결정	비해당
2-1. 일상생활비 지출	①	②	③	④	⑤	⑧
2-2. 주택매매 및 이사	①	②	③	④	⑤	⑧
2-3. 투자 및 재산증식	①	②	③	④	⑤	⑧
2-4. 자녀양육 및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⑧

3. 배우자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수준입니까?

구 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⑧ 비해당
3-1. 배우자의 이해도	①	②	③	④	⑤	⑧
3-2.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의 길이(양)	①	②	③	④	⑤	⑧
3-3. 부부의 성생활	①	②	③	④	⑤	⑧
3-4. 배우자가 부담하는 가사의 양	①	②	③	④	⑤	⑧
3-5. 배우자의 소비성향	①	②	③	④	⑤	⑧
3-6. 부부간의 대화	①	②	③	④	⑤	⑧
3-7. 부부간의 문화생활(영화, 연극, 스포츠관람, 운동, 산책, 외식)	①	②	③	④	⑤	⑧
3-8. 부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⑧

Ⅱ. 부모-자녀관계

※ 조사원: 자녀가 없거나 만 3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⑧ 비해당으로 표시한 후 <제6장 기혼여성의 취업 사항으로>

1. 자녀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수준입니까?

구 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⑧ 비해당
1-1. 자녀와의 대화정도	①	②	③	④	⑤	⑧
1-2. 자녀와의 문화생활(영화, 연극, 스포츠 관람, 운동, 산책, 외식)	①	②	③	④	⑤	⑧
1-3. 자녀들이 귀하의 의견이나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정도(성적, 취업 등)에 대하여	①	②	③	④	⑤	⑧
1-4. 자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⑧

제6장 기혼부인의 취업에 관한 사항(만 15~64세 기혼부인 대상)

Ⅰ. 생애단계별 취업에 관한 사항

※ 조사원: 생애단계별 취업여부를 확인한 후 각 단계별 모두 취업한 경우 동일직장 여부를 질문토록 한다.

1. 부인의 생애단계별 취업여부 및 직종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보기
취업여부: ① 취업 ② 비취업 ⑧ 비해당
직 종: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직종사자 ⑥ 농·임·어업 숙련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⑩ 기타( ) ⑧⑧ 비해당
종사상 지위: ① 고용주 ② 자영업자 ③ 상용근로자 ④ 임시근로자 ⑤ 일용근로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⑧ 비해당
동일직장 여부: ① 동일직장, ② 다른 직장, ③ 직장→자영업, ④ 자영업→직장, ⑤ 자영업→자영업, ⑧ 비해당

구분	1-1. 결혼직전	1-2. 결혼직후	1-3. 첫 자녀 출산직전	1-4.첫 자녀 출산 직후	1-5. 막내 출산 전	1-6. 막내 출산 후	1-7. 막내 초교 입학 전	1-8. 막내 초교 입학 후
취업여부								
직종	1-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종사상 지위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동일직장 여부	1-25.		1-26.		1-27.		1-28.	
중단 및 전직 이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선택)	1-29.		1-30.		1-31.		1-32.	
	① 결혼(자의에 의한 중단) ② 배우자, 기타 가족 반대로 ③ 회사에서 나가기를 원해서 ④ 자녀양육 때문에 ⑤ 부모, 기타 가족 부양으로 ⑥ 건강이 안 좋아서 ⑦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서 ⑧ 기타(_____) ⓪ 비해당							

Ⅱ. 현 취업에 관한 사항

1. 응답자와 남편(부인)의 현재 취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 조사원: 귀댁의 부인이 현재 취업중인 경우 부인 질문 후 <남편 질문>으로 가고, 현재 부인이 비취업 중인 경우는 남편사항 조사 후 **<p.19의 질문 6>**으로 가시오.

구 분	부인(가구원번호: ____)	남편(가구원번호: _____)
1-1. 현 취업여부 ⓪ 비취업 ① 취업(직종: 위 보기 참조하여 해당 번호 기재)	⓪ 비취업→ (**질문 6**으로) ① 취업(직종: _____)	⓪ 비취업→ (**제7장**으로) ① 취업(직종: _____) ⑧ 비해당
1-2.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의 총 취업기간	____년___개월	____년___개월
1-3. 현재 종사상 지위(보기 참조하여 해당 번호 기재)		
1-4. 현재 직장유형(해당 번호 기재) ① 공무원(국공립교사포함) ② 정부투자·출연기관 ③ 기타 공공기관 ④ 대기업(300인 이상) ⑤ 중소기업(50~299인) ⑥ 소기업(5~49인) ⑦ 개인사업체(5인 미만) ⑧ 기타(_____)		
1-5. 주당 평균근무시간	_____ 시간	_____ 시간
1-6. 지난 3개월간의 월 평균 근로소득	_____ 만원	_____ 만원

구 분	부인	
2. (응답자가 일을 하는 경우) 귀하께서 일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계유지를 위하여 ② 생활에 보탬이 되려고 ③ 자녀교육비 충당을 위해 ④ 노후대책 마련을 위해 ⑤ 사회활동 및 자기발전을 위해 ⑥ 기타(_____) ⑧ 비해당		
3. (응답자가 일을 하는 경우) 귀하께서 현재 하시는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데서 오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⓪ 없음 ① 자녀양육 부담 ② 가사부담 ③ 부부간의 공유시간(대화) 부족 ④ 자녀와의 공유시간(대화) 부족 ⑤ 직장생활과 육아병행 ⑥ 노부모 부양 ⑦ 성 차별로 인한 불평등한 근로요건(채용, 승진 등) ⑧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적 관행 및 제도 ⑨ 기타(_____) ⑧⑧ 비해당		
4. (응답자가 일을 하는 경우) 귀하께서는 현재 하시는 일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불만족스럽다 ③ 보통 ④ 만족스럽다 ⑤ 매우 만족스럽다 ⑧ 비해당		
5. (응답자가 일을 하는 경우) 귀하께서는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하실 생각입니까? ① 당장 그만 둘 생각 ② 자녀를 출산할 때까지 ③ 경제적 여건이 좋아질 때 까지 ④ (정년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까지 ⑤ 건강이 허락할 때 까지 ⑥ 쉬고 싶어질 때까지 ⑦ 기타(_____) ⑧ 비해당		
6. (응답자가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개인(1 일하고 싶지 않아서 2 건강상 이유로 3 일자리 찾는 방법을 몰라서 4 기타(_____)) ② 가족(1 자녀양육 2 가사일 3 남편(부인) 및 (시댁)식구의 반대 4 부모(가족)부양 5 기타(_____)) ③ 사회(1 임금 2 근무시간 3 학력수준에 맞지 않아서 4 일자리 없어서 5 기타(_____)) ⑧ 비해당		
7. (응답자가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경우) 향후 취업할 의향은 있습니까? ⓪ 아니오→ (질문 8로) ① 예 → (질문 7-1로) ⑧ 비해당		
7-1. (취업의향이 있는 경우) 향후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종사하고 싶은 직종은 어떤 직종입니까?(일의 종류를 질문하여 적은 후 해당되는 직종은 아래 해당번호를 기재토록 함)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직종사자 ⑥ 농·임·어업 숙련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⑩ 기타(_____) ⑧⑧ 비해당(취업의향 없음)	일 종류	직종

8. 부인께서는 초경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또 현재도 월경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8-1. 초경시작연령: 만 _____ 세

8-2. 현재 지속여부: ⓪ 폐경됨 → (**질문 8-2-1**로) ① 지속 중임

※ 조사원: 자연적인 폐경뿐만 아니라 자궁적출 등으로 인한 폐경의 경우에도 그 당시 부인의 연령을 질문하도록 함.

8-2-1. (폐경된 경우) 폐경시 부인의 연령은 몇 세 이었습니까? 폐경시 부인연령: 만 _____ 세

제7장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만 15~64세 기혼가구 대상)

Ⅰ. 자녀양육에 관한 태도

1. 귀하께서는 자녀양육에 관한 다음의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
1-1.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1-2. 아버지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1-3.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잘 키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귀하는 부모로써 자녀양육(교육, 정서, 경제)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①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책임져야한다
②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책임져야한다
③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한다
④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 책임져야한다
⑤ 언제(까지)라도 책임져야한다
⑥ 기타(_____)
⑦ 생각해보지 않았다/모르겠다

Ⅱ. 자녀양육 비용

1. 귀댁의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지난 3개월간 평균)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전체가구의 소비지출액 중 귀댁의 자녀를 위해 지출된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 각 항목별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 조사원: (　　)에는 자녀의 가구원 번호를 기입. 단, 비동거자녀는 ㉑부터 별도로 부여(제1장 가구사항 참조). 조사대상은 영유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자녀로 둔 경우로 대학진학을 위한 재수생, 삼수생 자녀를 둔 경우도 포함된다. 취업한 자녀는 제외하며, 가장 어린 자녀부터 기재한다.

번호	전체 가구		자녀(어린 순서부터)		
	항목	지출금액	가장 어린 자녀 (　　)	두 번째로 어린 자녀 (　　)	세 번째로 어린 자녀 (　　)
1- 1	식료품비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 2	피복 및 신발비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 3	보건의료비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 4	공교육비 및 관련 비용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 5	보충교육비(사교육비) 및 관련 비용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 6	주거 및 광열수도비	만원			
1- 7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만원			
1- 8	교양오락비	만원			
1- 9	교통통신비	만원			
1-10	기타소비지출	만원			
	⑪ 총계(①~⑩)	만원	만원	만원	만원

III. 결혼비용

1. 귀 댁에서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지금까지 가구주 부부나 형제·자매 또는 자녀/손자녀 등 동거하던 가족 중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응답자 본인 포함)

⓪ 없다 → (제8장 가족정책 및 다문화가족 관련 사항으로)　　① 있다 (___명)

⬇

※ 조사원: 2007년 1월 1일 이후 조사시점까지 가족 중 결혼한 분이 2명 이상일 경우 가장 최근에 결혼한 분을 중심으로 기재한다.

2. 가장 최근에 결혼한 분의 결혼년도는 언제 입니까?

① 2007　　② 2008　　③ 2009

3. 가장 최근에 결혼한 분은 이 댁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또한 결혼한 분의 성별, 결혼당시 연령, 교육수준 및 취업여부 등 특성에 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구분	3-1. 가구주와의 관계 (※ 지침서 부록 1 참조)	3-2. 성	3-3. 결혼당시 연령	3-4. 결혼당시 교육정도 (보기 참조)	3-5. 결혼당시 취업여부
결혼당사자		① 남 ② 여	만_____세		⓪ 비취업　① 취업 ② 학생 및 군의무복무　③ 기타(_____)

보기			
교육정도: ⓪ 무학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2·3년제 대학	⑤ 4년제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⑨ 무응답

4. 가장 최근에 결혼한 분의 결혼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총 결혼비용 : _____ 만원

※ 조사원: ① 결혼식 비용　② 신혼여행 비용　③ 배우자의 예물, 예단 비용 ④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의 예단비용　⑤ 신혼 살림살이 비용 ⑥ 신혼주택 비용　⑦ 기타 결혼관련 비용 등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5. 전체 결혼비용 중 가장 최근에 결혼한 분(결혼당사자)이 충당한 결혼비용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결혼당사자가 충당한 결혼비용: _____ 만원

6. 귀댁에서 가장 최근에 결혼한 분의 결혼비용은 귀 댁의 경제능력에 비추어 적당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체면유지를 위해 계획 초과　　② 경제능력에 맞게 적당했음
③ 최소한으로 검소하게 하였음　　④ 기타(_____)

7. 귀댁에서 가장 최근에 결혼한 분의 결혼관련 비용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선순위별로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제1순위: _____　제2순위: _____

⓪ 없었음　① 결혼식비　② 신혼여행비　③ 배우자 예물　④ 배우자측 예단
⑤ 신혼살림　⑥ 신혼주택 비용　⑦ 함값　⑧ 기타(_____)

제8장 가족정책 및 다문화가족 관련 사항(만 15~64세 기혼가구 대상)

Ⅰ. 출산 및 가족정책

※ 조사원: 응답자가 대답한 내용을 토대로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기입하시오. 또한, 2순위는 있는 경우에만 기입하고 없는 경우에는 ㊽로 기입하시오.

1. 귀하가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지원은 무엇입니까? 중요 순서대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① 임신·출산에 드는 비용 지원	② 불임부부의 치료 지원
③ 태아나 임산부의 건강 지원	④ 출산전·후 및 육아시 직장여성에 대한 휴가 제공
⑤ 자녀가 아픈 경우 휴가 제공	⑥ 자녀양육을 위해 아버지에게 휴가 제공
⑦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시차별 출퇴근, 시간제 근무 등)	
⑧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의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시차별 출퇴근, 시간제 근무 등)	
⑨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⑩ 영유아 보육비 지원
⑪ 다자녀가정을 위해 아파트·국민임대주택 등 우선분양	⑫ 직장여성 고용차별 해소
⑬ 아동 양육수당 지급 ⑭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⑮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경감
⑯ 아동관련 지출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⑰ 아동의 방과후 교육 지원
⑱ 다자녀 실직가정 취업지원	⑲ 다자녀 가정 학비 지원
⑳ 기타(_____)	

2. 귀하는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 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보기			
① 양성평등 구현	② 학벌 위주 사회문화 타파	③ 공교육 강화	④ 사교육비 경감
⑤ 경기 활성화(고용안정)	⑥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확립	⑦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 해소	
⑧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⑨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⑩ 복지수준의 향상	
⑪ 지나치게 치열한 경쟁적 사회 지양	⑫ 기타(_____)		

3. 최근 만혼이나 혼인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인 장려를 위하여 어떠한 정책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보기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부터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보기		
① 혼인 및 출산가치관 확립	② 건전혼례 문화 조성	③ 모기지 제도 확대
④ 서민층의 주택융자	⑤ 청년실업 해소	⑥ 최저임금 보장 및 인상
⑦ 결혼자금 융자 확대	⑧ 소득공제(결혼비용, 주택자금)	
⑨ 양성평등가치관 확립 및 문화 조성	⑩ 기타(_____)	

Ⅱ. 국제결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사항

1. 귀하는 국제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반대 ② 반대 ③ 그저 그럼 ④ 찬성 ⑤ 매우 찬성

2. 귀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 중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서비스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경제적 지원 ② 의료상담 및 지원 ③ 법률상담 및 지원 ④ 자녀양육 지원
   ⑤ 언어통역 서비스 ⑥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 ⑦ 기타(_____)

저희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재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식관리센터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234)

도서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신간 안내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2009-01	의료서비스 질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통합적 의료전달 시스템 구축 방안	신호성	7,000
연구 2009-02	고가의료장비의 적정공급과 효율적 활용방안	오영호	8,000
연구 2009-03	신의료기술의 패턴 변화에 따른 의사결정제도의 발전방향 -의약품 허가제도와 약가제도를 중심으로-	박실비아	6,000
연구 2009-04	생애의료비 추정을 통한 국민의료비 분석(1)	정영호	6,000
연구 2009-05	미충족 의료수준과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	허순임	5,000
연구 2009-06	식품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취약점 중점 관리방안 구축	정기혜	7,000
연구 2009-07	부문간 협력을 통한 비만의 예방관리체계의 구축 방안 -비만의 역학적 특성 분석과 비만예방관리를 위한 부문간 협력체계의 탐색	김혜련	8,000
연구 2009-08	국가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최은진	7,000
연구 2009-09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방안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	윤석명	7,000
연구 2009-10	글로벌 금융위기상황하의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안	원종욱	8,000
연구 2009-11	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재정효율화 방안 -본인부담 구조조정 방안 중심으로	신현웅	6,000
연구 2009-12	A study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health security system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홍석표	5,000
연구 2009-13	사회수당제도 도입타당성에 대한 연구	노대명	7,000
연구 2009-14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유형 및 특성	여유진	8,000
연구 2009-15	저소득층 금융지원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김태완	6,000
연구 2009-16	한국의 사회위기 지표개발과 위기수준 측정 연구	김승권	13,000
연구 2009-17	아동청소년복지 수요에 기반한 복지공급체계 재편방안 연구 II: 지역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김미숙	8,000
연구 2009-18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경제위기 이후 가족생애주기별 위기유형을 중심으로	김유경	8,000
연구 2009-19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 연계 동향 및 정책과제	윤상용	8,000
연구 2009-20	사회자본과 민간 복지자원 수준의 국가간 비교연구: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를 중심으로	박세경	6,000
연구 2009-21	사회복지부문별 정보화현황 및 정책적용방안	정영철	6,000
연구 2009-22	노인건강정책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 일상생활기능의 자립향상을 중심으로	선우덕	7,000
연구 2009-23	노인의 생산활동 실태 및 경제적 가치 평가	정경희	6,000
연구 2009-24	보건복지가족부 웹사이트 통합·연계 및 발전방안 연구	송태민	7,000
연구 2009-25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09	장영식	9,000
연구 2009-26-1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법제정 10년의 제도운영 점검-	이태진	10,000
연구 2009-26-2	가난한 사람들의 일과 삶: 심리사회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현주	6,000
연구 2009-26-3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개편방안 연구	노대명	8,000
연구 2009-26-4	사회복지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남상호	5,000
연구 2009-26-5	저소득층의 자산 실태 분석	남상호	5,000
연구 2009-26-6	2009년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2009-27-1	유럽의 능동적 복지정책 비교연구	홍석표	6,000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2009-28	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정영호	7,000
연구 2009-29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9년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오영호	6,000
연구 2009-30-1	2009년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권 (총괄)	강은정	10,000
연구 2009-30-2	2009년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권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강은정	11,000
연구 2009-31-1	2009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9,000
연구 2009-3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7,000
연구 2009-31-3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3차년도): 중앙재정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고경환	6,000
연구 2009-31-4	보육지원정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분석	최성은	6,000
연구 2009-31-5	자활사업의 평가 연구: 정책설계와 정책효과 그리고 쟁점들	고경환	7,000
연구 2009-32-1	200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손창균	14,000
연구 2009-32-2	2008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	여유진	6,000
연구 2009-33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	김승권	14,000
연구 2009-34-1	다문화가족 증가가 인구의 양적 ·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삼식	5,000
연구 2009-34-2	저출산에 대응한 육아 지원 인프라의 양적·질적 적정화 방안	신윤정	6,000
연구 2009-34-3	장기요양등급외자 관리를 위한 노인복지관과 보건소의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방안	오영희	6,000
연구 2009-34-4	노인자살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이소정	6,000
연구 2009-34-5	고령친화용품 소비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김수봉	7,000
연구 2009-35	보건복지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연희	6,000
연구 2009-36	2009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영철	7,000
연구 2008-01	건강수명의 사회계층간 형평성과 정책과제	강은정	6,000
연구 2008-02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서미경	9,000
연구 2008-03	공공보건조직의 효율성 분석 및 운영 합리화 방안	신호성	7,000
연구 2008-04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영양 관련 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모유수유 및 아동·청소년 영양문제를 중심으로	김혜련	7,000
연구 2008-05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이상영	6,000
연구 2008-06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강신욱	7,000
연구 2008-07	건강보험 지불제도와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 의료공급자의 유인수요와의 연관성 파악	허순임	7,000
연구 2008-08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재정적정치적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윤석명	7,000
연구 2008-09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평가	원종욱	7,000
연구 2008-10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사회적 배제의 역동성 및 다차원성 분석을 중심으로	김안나	9,000
연구 2008-11	사회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최성은	6,000
연구 2008-12	한국복지모형에 대한 연구: 그 보편성과 특수성	노대명	6,000
연구 2008-13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김승권	10,000
연구 2008-14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	김유경	15,000
연구 2008-15	아동 · 청소년복지 수요 추계 연구 I	김미숙	8,000
연구 2008-16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형성의 실태와 과제	박세경	6,000
연구 2008-17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분석	이소정	8,000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2008-18-1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조건부 수급자를 중심으로	이태진	7,000
연구 2008-18-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 법, 조직, 정보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현주	6,000
연구 2008-18-3	2008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2008-18-4	의료급여 사례관리 효과분석 II	신영석	6,000
연구 2008-18-5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제도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신현웅	5,000
연구 2008-18-6	서구 근로빈곤문제의 현황과 쟁점	노대명	6,000
연구 2008-19-1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 기준개선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원종욱	6,000
연구 2008-19-2	한국의 복지 GNP	홍석표	5,000
연구 2008-20-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실태와 효율화 방안 연구	오영희	10,000
연구 2008-20-2	저출산·고령사회관련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연구	오영희	9,000
연구 2008-20-3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이삼식	7,000
연구 2008-20-4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여성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방안	신윤정	6,000
연구 2008-20-5	노인 장기요양보장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선우덕	9,000
연구 2008-20-6	농촌지역 고령자의 생활기능 자립을 위한 보건복지 지원체계 모형 개발	선우덕	5,000
연구 2008-20-7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산 활용방안	김수봉	미정
연구 2008-20-8	국제적 관점에서 본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현황과 과제	정경희	6,000
연구 2008-21-1	200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김미곤	15,000
연구 2008-21-2	2007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여유진	9,000
연구 2008-22-1	한국의료패널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정영호	9,000
연구 2008-22-2	2008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진행 보고서	정영호	8,000
연구 2008-23-1-1	사회재정사업의 평가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3-1-2	사회재정사업의 평가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운영평가: 상담서비스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고경환	6,000
연구 2008-23-2	사회재정평가지침-사례와 분류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3-3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남상호	5,000
연구 2008-23-4	의료급여 재정모형과 재정지출 전망	최성은	6,000
연구 2008-23-5	복지제도의 발전방향 모색-가족부문 투자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3-6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2차년도)	고경환	5,000
연구 2008-23-7	2008 사회예산 분석과 정책과제	최성은	7,000
연구 2008-24-1	국립소록도병원의 만성병 관리체계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강은정	5,000
연구 2008-24-2	드림스타트의 건강영향평가	강은정	7,000
연구 2008-24-3	KTX의 건강영향평가 -의료이용을 중심으로	김진현	6,000
연구 2008-24-4	기후변화에 따른 전염병 감시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6,000
연구 2008-25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1년차)	오영호	5,000
연구 2008-26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8,000
연구 2008-27-1	능동적 복지의 개념정립과 정책과제	김승권	8,000
연구 2008-27-2	보건복지재정 적정화 및 정책과제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7-3	능동적 복지개념에 부합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체계개편 방안	신영석	6,000
연구 2008-27-4	능동적 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 실천방안	김승권	7,000
연구 2008-27-5	능동적 복지 구현을 위한 건강투자 전략	최은진	6,000